

제9회

학생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2021

주관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일시 : 2021년 10월 7일(목) 오후 13:00-18:00

실시간 온라인 발표회 참여링크 :

<https://snu-ac-kr.zoom.us/j/81031785127>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SNU HUMAN RIGHTS CENTER

제9회 학생인권연구프로젝트 발표회

주관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일시 : 2021년 10월 7일(목) 오후 13:00-18:00

실시간 온라인 발표회 참여링크 : <https://snu-ac-kr.zoom.us/j/81031785127>

학생연구 발표

13:00-17:30

미안마 시민 저항 운동 보도에 대한
20대 수용자 반응 분석: 내러티브 뉴스가
인권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규희(언어학과 18)
이소현(미학과 18)
구효주(정치외교학부 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소상공인 생계권의 조화

신동규(경영학과 19)
서익훈(경영학과 19)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이 경험하는
페미니즘 운동과 백래시에 대한
생애사 연구

김세연(인류학과 19)
박채연(사회교육과 18)

코로나19와 고립된 병사들
: 감염병 시기 병사 휴가
통제 규정 개선 방안 연구

이경호(경제학부 16)

청년 소외와 '청년 인권'
: 청년 인권의 향상을 위한
청년 정치대표성 제고 방안 모색

고서영(동양사학과 20)
류동오(동양사학과 19)

군인의 종교 자유 보장과
개선 방향 제언

원종빈(종교학과 16)
조윤재(국사학과 17)

대학 내 '포괄적 학습 장애'
지원 제도 마련의 필요성 연구
- ADHD 대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권소원(경제학부 19)
이정환(소비자어동학부 19)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가은(경제학과 17)
이종민(지리교육과 18)
김은서(자유전공학부 19)

언택트 시대
노인의 디지털 소외 경험을 통한
정보기본권 개념적 검토 및 제언

김종원(경영학과 17) 전서은(사회교육과 18)
이윤서(아시아언어문명학부 19)
탁서영(경영학과 17)

온라인 성폭력 논의 속
여성혐오표현과
성적 시민권

최진실 (아시아언어문명학부 15)

폐지수집노인의
안전권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이승민(경영학과 18) 안유빈(자유전공학부 17)
김건은(중어중문학과 19)
박나은(사회복지학과 19)

모두가 존엄한 노인돌봄을 위한 제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권적 성찰을 중심으로

홍승희(서어서문학과 16)
이주희(사회학과 18)

가정보호 청소년의
자립지원제도 속 인권사각지대
-그룹홈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재영 (종교학과 16)

프라이버시권 친화적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제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여자중학교 학생들의 학생다음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이창수(사회교육과 15)

성소수자간 관계성에 주목한
트랜스젠더 정체성 연구
:소수자 내의 다름과 다양성에 주목하여

이유진(자유전공학부 19)
이수연(자유전공학부 19)
박성원(자유전공학부 19)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식

17:30 - 18:00

시상 : 이상원(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송지우 정치외교학부 교수, 신윤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주영 인권센터 연구교수

■ 목 차 ■

- **미얀마 시민 저항 운동 보도에 대한 20대 수용자 반응 분석:
내러티브 뉴스가 인권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3
김규희(언어학과 18) 이소현(미학과 18) 구효주(정치외교학부 19)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소상공인 생계권의 조화** 41
서익준(경영학과 19) 신동규(경영학과 19)
-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이 경험하는 페미니즘 운동과 백래시에 대한 생애사 연구** 71
김세연(인류학과 19) 박채연(사회교육과 18)
- **코로나19와 고립된 병사들:
감염병 시기 병사 휴가 통제 규정 개선 방안 연구** 109
이경훈(경제학부 16)
- **청년 소외와 ‘청년 인권’:
청년 인권의 향상을 위한 청년 정치대표성 제고 방안 모색** 135
고서영(동양사학과 20) 류동오(동양사학과 19)
- **군인의 종교 자유 보장과 개선 방향 제언** 159
원종빈(종교학과 16) 조윤재(국사학과 17)
- **대학 내 ‘포괄적 학습 장애’ 지원 제도 마련의 필요성 연구:
ADHD 대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191
권소원(경제학부 19) 이정환(소비자아동학부 19)
-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229
이가은(경제학과 17) 이종민(지리교육과 18) 김은서(자유전공학부 19)
- **언택트 시대 노인의 디지털 소외 경험을 통한 정보기본권 개념적 검토 및 제언** 257
김종원(경영학과 17) 전서은(사회교육과 18) 이윤서(아시아언어문명학부 19)
탁서영(경영학과 17)

온라인 성폭력 논의 속 여성혐오표현과 성적 시민권 291 최진실(아시아언어문명학부 15)
폐지수집노인의 안전권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313 이승민(경영학과 18) 안유빈(자유전공학부 17) 김건운(중어중문학과 19) 박나은(사회복지학과 19)
모두가 존엄한 노인 돌봄을 위한 제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권적 성찰을 중심으로 361 홍승희(서어서문학과 16) 이주희(사회학과 18)
가정보호청소년의 자립지원제도 속 인권사각지대: 그룹홈의 사례를 중심으로 395 신재영(종교학과 16)
프라이버시권 친화적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제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학생들의 학생다움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433 이창수(사회교육과 15)
성소수자 간 관계성에 주목한 트랜스젠더 정체성 연구: 소수자 내 다름과 다양성에 주목하여 461 이우진(자유전공학부 19) 박성현(자유전공학부 19) 이수연(자유전공학부 19)

미얀마 시민 저항 운동 보도에 대한 20대 수용자 반응 분석

— 내러티브 뉴스가 인권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규희, 이소현, 구효주

미얀마 시민 저항 운동 보도에 대한 20대 수용자 반응 분석*

— 내러티브 뉴스가 인권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규희, 이소현, 구효주**

[목 차]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검토

II. 연구 설계

1. 인터뷰 및 분석 방법
2. 인터뷰 참여자의 선정
3. 인터뷰 과정
4. 인터뷰 내용

III. 미얀마 시민 저항 운동에 대한 한국 뉴스 수용자들의 기존 인식

1. 미얀마 시민 저항 운동에 대한 관심
2. 독재 정권 아래 인권 탄압에 대한 인식
3. 유형화 작업: 인권 의식

IV. 내러티브 기사 형식과 인권 감수성 간 관계

1. 기사에 대한 감정적 반응 및 평가
2. 미얀마 사태에 대한 공감 정도와 상황 개선 의지
3. 기사 형식의 면밀성과 보도 적합성에 관한 판단

V. 결론

1. 연구 결론
2. 기사 모델 제언
3. 대안으로서 내러티브 저널리즘

참고문헌

부록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 연구임(IRB No. 2109/002-001).

** 김규희(언어학과 18) 이소현(미학과 18) 구효주(정치외교학부 19)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는 군부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로 군부의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대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군부는 현재 자국의 상황을 보도하는 미얀마 내 모든 언론을 차단하고, 군부에 우호적인 기사만 선별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현재 국제 사회에서는 외신 기사를 통해 미얀마의 내부 상황을 증례하고 있으며, 한국 언론 또한 이 대열에 동참해 한국에서 거주 중인 미얀마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취재해 현 사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미얀마 운동에 대해 후원 운동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유례없는 관심에 한국인의 관심과 공감은 주로 과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집단적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가설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독재 아래의 인권 탄압을 직접 겪은 40~50대와 달리, 20대는 이러한 문제를 직접 마주한 적이 없다. 20대의 관점에서 민주화 운동은 교과서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때 민주화 운동을 과거 역사의 일부로 생각하는 20대 뉴스 수용자들의 반응이 현재 미얀마 사태와 내부 민주화 운동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비교군으로 이미 유사한 형태의 민주화 운동을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50대를 설정해, 이들과 비교했을 때 20대가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인지, 20대 실험 참가자들의 인권 감수성은 어떤 부분에 반응할 것인지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20대 뉴스 수용자들의 인권 감수성이 교감과 공감을 강조하는 형식의 기사와 관계있을 것이라 가정했다. 지난 3월 20일, 본 연구팀은 학보사 기자 신분으로 미얀마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 운동가들을 국제전화로 인터뷰한 바 있다. (『대학신문』 3월 29일 자 기획 기사 「미얀마의 아침을 기다리며」 참고) 해당 기사는 정보성 스트레이트 보도 기사와 달리 미얀마 학생들 개인의 내러티브를 담아 독자에게서 현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집중했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근거로 한국 사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다룸으로써,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해 독자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었다.

미얀마 시민 저항 운동처럼 국가에 의해 인권 탄압이 자행되는 사례에서는, 자국 시민들의 힘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고, 이에 국제 사회의 폭넓은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저널리즘의 내러티브 기사가 그 도움을 촉구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예측한다. 기사를 접한 독자가 미얀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함으로써,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관점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팀

이 주목하는 요소는 독자의 '인권 감수성'이다. 사태의 전개 양상과 피해 규모를 산술적으로 기술하는 일반 보도 기사와 달리, 내러티브 기사에서는 사태의 현장을 톺아내며 묘사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진술을 스토리텔링의 형식으로 담아낸다. 이로써 독자가 기사를 읽을 때 현장 상황에 더욱 몰입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인권 감수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이 저널리즘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이 목적으로 삼는 '진실 추구'는 그간 객관적이고 정확한 뉴스 보도로 귀결돼왔다. (정수영, 2015) 하지만 이때의 '객관성'은 언론인의 이데올로기나 언론사의 상업적 목적, 이해관계, 미디어 관행 등에 영향을 받아 성립된 객관성이기에, 결론적으로 주관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같은 객관주의 저널리즘에서는 '건전한 객관성'에서 멀어진 기사들이 양산되기 쉽다. 세월호 사태에서 언론 보도가 확인되지 않은 오보를 경쟁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엽적인 이슈들을 선정적으로 확대 재생산했던 것처럼, (김언경, 2015) 각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기사를 객관성 추구에 따른 결과물로 제시할 경우, 독자는 해당 기사가 편향된 객관성임을 지적하고 기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커뮤니케이션 이론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감'과 '연민'의 감정을 도입해 저널리즘 생태계를 혁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독자는 '불편부당한 관찰자'로서 언론의 보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주체가 된다. (김선호 외, 2014) 단순한 가십성 보도 기사를 접할 때와 달리 사안을 적극적으로 살필 수 있게 되고, 사건의 피해자들을 도울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등 비판적 능력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저널리즘은 건전한 공론장의 역할을 이행해, 편파적인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극복할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 내러티브 기사의 형식으로 미안마의 민주화 운동을 보도하고, 독자의 인권 감수성을 자극하는 것은 그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예다. 미안마의 민주화 운동은 자국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의의가 있다. 기사를 통해 보도되는 내용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을 수용자가 재해석하게끔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미안마 시민 저항을 비롯한 갈등을 전달하는 기사는 인권 침해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구성하기도 한다. 기사를 읽는 독자 역시 민주화 운동에 임하는 미안마 시민들의 인권이 보호돼야 함을 인지하고 그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쓰인 내러티브 기사가 미안마 사태와 같은 반인권적 상황을 해결할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나아가 인권 의제 전반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어떠한 요소가 수용자의 공감, 이타적 동기와 같은 감정적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 앞으로 국제 사회

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에 뉴스 이용자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촉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보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저널리즘이 공감과 연민의 감정을 동원해 건전한 공론장을 만들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저널리즘 생태계의 발전 모델 또한 탐구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1) 인권 감수성과 공감의 필요성

모든 사람은 불가침의 인권을 가지고, 이성적 능력으로 인권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인간은 삶에서 인권 감수성을 갖추고 이를 실천할 것을 요구받는다. 인권 감수성은 여러 개념과 혼용되지만, 정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실천에 대한 당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권 의식이나 인권 민감성의 개념과는 차별화된다. 인권 감수성은 “인권 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해보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문용린 외, 2002) 인권 감수성의 척도와 단계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구분될 수 있다. 인권 감수성은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상황지각은 주어진 상황을 얼마나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각 능력에 기반한다. 결과지각은 이러한 상황이 당사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지각 능력에 기반한다. 책임지각은 인권과 관련해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인지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능력에 기반한다. (심태은 외, 2018) 이 중 정서적 과정과 실천을 강조하는 책임지각이 인권 의식과는 구별된다.

인권 감수성과 경험에 관련된 연구는 경험의 종류와 분야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 학습 내용과 인권 관련 강좌의 수강에 따라 학생의 인권 감수성이 향상되었다는 사회복지학의 접근(박형원, 2013), 연령·성별·인권 교육 등의 요소들이 인권 감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한태식 외, 2012) (설양환 외, 2016)를 포함해 인권 감수성과 그 활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인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실천적 의지를 포함하는 인권 감수성의 효과적 향상이 필요하며, 이에 인권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해야만 한다. 이때, 그 요인은 개인의 특성일 수도 있으며, 개인이 경험한 활동의 내용일 수도 있다.(심태은 외, 2018) 그러므로 언론 역시 매체를 활용하고 정보를 접하는 개인의 경험 여역에 속하며, 언론이 인권 침해 사례를 다루는 방식도 수용자의 인권 감수성 수준과 대상의 특성에 따라 변모해 인권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의 감정은 ‘정서적 반응’으로서의 인권 감수성의 토대가 되는데, 단순한 감정과 인권 감수성이 구분될 수 있는 척도가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사람이 언어로 표현하는 감정에 대한 유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감정 단어 목록을 작성하고 원형성, 친숙성, 쾌·불쾌, 활성화 수준에 따라 분류한 뒤, 감정 단어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이렇게 작성된 감정 단어를 활성화 차원에서 보았을 때, ‘타인 초점적-자기 초점적 정서’의 스펙트럼이 제시됐다.(박인조 외, 2005) 초점 대상에 따라 구분된 감정은 그 목적에 따라 이를 경험하는 주체의 상태를 명명할 수 있다. 감정의 목적이 타인을 이해하고 알아감에 있다면, 이는 타자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덜 밀접한 것이지만, 주체가 마치 그 대상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든다. 이를 ‘공감’의 상태로 볼 수 있다. (박지희, 2015, 재인용) 목적인 ‘앓’이 아닌 상상력을 매개로 느끼는 것에 둔다면 이는 동정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괴로움에 대해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연민으로 규정하고 있다.(정수영, 2015, 재인용) 하지만 상황에 대한 공감과 주체가 느끼는 불편감은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는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에 기반한다. (이한중, 2018)

2) 공감과 저널리즘의 관계

저널리즘과 공감은 그 개념이 커뮤니케이션에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에 기반해 공감을 비롯한 다양한 감정이 저널리즘에서 지니는 중요성과 그 역으로 저널리즘이 감정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 언론 보도가 “감정과 이성이 복잡하게 얽힌 사회적 환경을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감정을 매개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정수영, 2015) 감정은 저널리즘과 인권 감수성이 맺는 관계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언론과 저널리즘 영역에서 표현과 보도가 가치중립적일 수 없으며, 그 효용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저널리즘 행태를 성찰함과 동시에 그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졌다. 특히 사실성과 불편 부당성을 강조하던 기존의 객관주의 저널리즘은 “누가 불편 부당성을 판단할 것인가”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영욱 외, 2002) 불편 부당성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논의 하에, 새로운 객관성 개념이 합의될 필요가 생겼고, 그 대안으로 ‘시민 인륜’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발리바르가 제안한 시민 인륜은 정치적 영역에서만 해석됐지만, 언론의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둘러싸고 논의의 교착이 생긴 경우에는 저널리즘 영역에서의 윤리적 판단의 기준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다. 이는 시민이 민주적 삶의 형식을 만드는데 언론은 필수적이기에, ‘시민 인륜’은 시민 대리인인 언론 실천의 궁극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민이 정치 과정에서 추구해야 하는 규범적 가치와 언론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다르지 않다. (남재일, 2017)

언론이 시민의 대리인 자리에 위치할 경우, 언론은 자신이 대리하는 시민의 위치에 감정 이입할 것을 요구받는다. (남재일, 2017) 이때의 감정 이입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언론이 인권 문제를 다룰 때는 공감이라는 감정 형태와 결합한다. 그렇다면 언론은 감정 이입과 공감을 어떻게 구체화해 실천할 것인가? 이는 수용자와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뉴스가 소비 과정에서 사용자와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콘텐츠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진이 외, 2016) 사용자가 뉴스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 디자인’이 필요하며, 언론은 기사를 통해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험 목표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공감 디자인은 ‘내러티브’라는 기사의 형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내러티브 저널리즘은 기사 내용을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기술하는 뉴스 방법론이다. 사실과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달리, 내러티브 저널리즘에서는 기사에서 다루는 사건을 소설을 쓰듯 이야기식으로 풀어낸다. 서사를 넣어 독자가 기사 내용에 감정적으로 이입하고 사건의 전개 과정에 몰입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선호 외, 2014) 초기에는 소설의 형식을 빌려 ‘문학 저널리즘’에 가까운 기사를 작성하는 것에서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취재원과의 인터뷰 내용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현장을 세밀히 묘사함으로써 현장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실재적인 사실에 서사를 가미해 수용자가 기사 내용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 사안과 관련된 후속 보도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 내러티브의 특징이다. (이진이 외,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감과 경험에 기반한 ‘내러티브’라는 기사 형식에 착안해, 내러티브 기사가 인권 감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관계를 확실히 하고, 이를 통해 인권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게 하는 저널리즘의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II. 연구 설계

1. 인터뷰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일대일 심층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전체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 한 명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추가적 면담 없이 1회 진행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세를 고려해 인터뷰는 대부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전화로 진행되었다.

인터뷰에서는 미안마 시민 저항 운동에 관해 서술한 비내러티브 기사 A와 내러티브 기사 B를 활용했다. 두 기사는 2021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보도된 기사들을 편집해 분량과 정보 측면에서 차이가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세부 주제를 알게 되었을

경우 실험 결과에 영향이 미치리라 판단했기 때문에 내러티브 기사와 인권 감수성이라는 주요 키워드에 눈가림법을 사용했다. 연구 참여자는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인터뷰 녹음과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 또한 인터뷰 후에는 눈가림법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했다.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전사한 후 자료화했다.

전사된 자료는 근거이론 방법론에 기반한 코딩의 방법으로 분석했다. 근거이론은 자료에 근거해 이론을 귀납적으로 구축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연구 대상자 개인의 경험을 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점(권향원 외, 2011)에서 특정 경험의 요인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채택했다. 본 연구는 《근거 이론》 4판(Corbin & Strauss, 2019)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인터뷰 참여자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20대 뉴스 수용자에 대한 비교 집단으로 50대를 선정하고, 각 집단 내에서 최대한 다양하게 출신지를 구성했다. 세대와 출신지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뉴스 수용자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검색량을 살펴보았다.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에 따르면, 미얀마 시민 저항 운동을 검색한 사람들의 연령별 비율은 40대(37%)와 50대(37%), 60대(16%), 30대(8%), 20대(2%) 순으로 많았다. 또한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지역의 검색 관심도는 100으로, 총 검색 수에서 ‘미얀마 쿠데타’가 차지한 비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과거 한국 민주화 운동 및 정부의 폭력 진압 역사를 고려할 때, 유의미한 데이터로, 세대와 출신지가 미얀마 시민 저항운동에 대한 뉴스 수용자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의 1980년대 민주화 이행 과정을 경험한 50대(만 49~59세)와 그렇지 않은 20대(만 19~29세)로 코호트를 구분했다. 그리고 세대에 따른 뉴스 수용 반응의 차이가 출신지에 의해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코호트 내 연구 참여자의 출신지 구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지역적 배경을 가진 참여자를 선정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권 및 지방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나 카카오톡 오픈 및 단체 채팅방에 모집 공고문 및 구글 설문 폼을 올려 모집했다. 모집 과정에서 연구 참여 희망자의 출신지와 나이에 따라 스크리닝 탈락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했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인터뷰 참여자 24명의 특징은 부록에 첨부했다.

3. 인터뷰 과정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인터뷰에 참여했다.

- (1) 연구 참여자는 평소 언론 활용 행태와 미얀마 시민 저항 운동에 대한 사전 인식에 대해 10분간 인터뷰를 진행한다.
- (2) 이후 연구 참여자는 30분 동안 미얀마 시민 저항 운동 보도에 관련된 기사를 읽는 시간을 가진다. 연구 참여자는 인터뷰어가 전송한 링크를 통해 기사 한 편을 먼저 받아 읽은 후, 다시 다른 기사 한 편을 받아 읽는다. 본 연구에서는 기사를 읽는 순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코호트 내 연구 참여자 중 절반에게 비내러티브 기사를 먼저, 내러티브 기사를 이후에 보냈으며 나머지에게 역순으로 기사를 보냈다.
- (3) 두 편의 기사를 읽은 후, 연구 참여자는 5분간 휴식 시간을 갖는다.
- (4) 휴식 시간이 끝나면, 각 기사에 관한 연구 참여자의 생각과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약 30분에서 45분간 진행한다.

4. 인터뷰 내용

연구 참여자에게는 언론 활용 행태, 민주화 운동의 경험과 의식, 미얀마 시민 저항 운동에 대한 인식, 기사 반응, 기사 형식 적합성 등에 관해 물었다. 다음과 같은 반구조화 질문지를 사용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표 1〉 심층 인터뷰 질문지

기저 인식	언론 활용 및 시사 관심	뉴스 시청 및 정보 수집 경로
		뉴스 시청 빈도
		미얀마 시민 저항운동에 대한 소식을 처음 접한 시기와 경로
	미얀마 시민저항운동에 대한 인식	미얀마 시민 저항운동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미얀마 시민 저항운동에 대한 소식을 마지막으로 접한 시기
		미얀마 시민 저항운동에 대한 관심 정도
민주화 경험 및 인권의식	미얀마 시민저항운동에 대한 인식	
	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	
	독재 정권 아래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관심	
기사에 따른 뉴스 수용자 반응	기사에 대한 이해와 반응	독재 정권 아래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인식
		각 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각 기사에서 미흡했던 점/ 좋았던 점
		각 기사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
		각 기사를 읽고 들었던 감정
		비슷한 감정이 들었던 경험
		기사 내용에 대한 공감 여부와 정도
	기사 형식의 적합성	인권 탄압 상황에 대한 개선 의지
		면밀성 - 기사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의 양과 질
		적합성 - 인권 문제를 보도함에 있어 적합한 기사형식

Ⅲ. 미얀마 시민 저항 운동에 대한 한국 뉴스 수용자들의 기존 인식

1. 미얀마 시민 저항 운동에 대한 관심

1) 시사 및 인권에 대한 관심

〈표 2〉 뉴스 시청 빈도

	하루 30분 이내	하루 30분~2시간*	2시간 이상**	수시로 봄***
20대	7	4	1	0
50대	1	2	8	1

*하루 1회, 30분 이상 소비 / 하루 3~7회, 5~10분 소비

**하루 2~3회, 1회에 1시간 이상 소비

***횟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봄

20대 참여자의 평소 뉴스 시청 빈도를 조사한 결과 하루 30분 내로 뉴스를 접한다는 응답이 7회로 가장 많았다. 하루 30분 이상 2시간 미만으로 뉴스를 접한다는 응답은 4회였으며, 2시간 이상은 1회였다. 수시로 본다는 응답은 없었다. 50대 참여자의 경우 2시간 이상 뉴스를 시청한다는 응답이 8회로 가장 많았다. 하루 30분 이상 2시간 미만 뉴스를 본다는 응답은 2회였으며, 30분 이내로 본다는 응답과 수시로 본다는 응답이 각각 1회로 가장 적었다.

〈표 3〉 활용 매체 (중복 집계 포함)

	인터넷 포털	인터넷 기사	TV	유튜브	SNS	카카오톡	해외 언론	뉴스레터
20대	11	0	2	6	3	2	0	1
50대	9	2	4	2	1	0	1	0

뉴스를 접하는 과정에서 20대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응답 횟수는 총 11회였다. 다음으로는 유튜브가 6회를 기록했고, SNS와 카카오톡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는 응답은 총 5회였다. 전통 매체인 TV를 본다는 응답은 2회로 낮았으며, 온라인 뉴스레터를 구독한다는 응답이 1회 있었다. 50대 참여자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9회로 가장 많았다. TV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4회로 그 다음으로 많았고, 유튜브와 특정 신문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한다는 응답은 각각 2회였다. SNS와 해외 언론을 이용한다는 응답

은 각 1회였다.

〈표 4〉 인권 문제에 대한 평소 관심 수준을 질문한 결과

	20대	50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7
다른 주제에 비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	3
중간이라고 생각한다	3	0
크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5	2

〈표 5〉 미얀마 시민 저항 운동에 대한 관심 수준을 질문한 결과

	20대	50대
평균 이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1	1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발발 초기에는 관심을 가졌다	2	5
중간 정도라고 생각한다	5	2
그다지 관심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2	4
전혀 알지 못했다	2	0

이어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문제 및 미얀마 시민 저항 운동에 대한 관심 수준을 조사했다. 먼저 20대 집단에서는 자신이 적어도 중간 수준의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총 7명으로 절반을 넘겼다. 50대 집단에서도 전반적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됐다. 자신이 다른 주제에 비해 특히 인권 분야에 더 관심이 많다고 답한 응답자가 총 10명으로 절반을 훨씬 넘겼다. 미얀마 시민 저항 운동으로 분야를 특정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본인이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시위에 대해 적어도 사건이 국내에 이슈화된 초기에는 관심을 가졌다고 주장한 응답자가 총 8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50대 참여자들 역시 8명이었으나, 20대 참여자에 비해 중간 정도의 꾸준한 관심을 보인다고 답한 응답자 수가 3명 적었다.

이러한 현상은 평소 뉴스를 통해 시사 문제를 접하는 빈도와 차이를 보인다. 앞선 결과에서 20대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은 1일 뉴스 시청 시간이 30분을 넘기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1명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는 하루에 뉴스를 2시간 미만으로 접한다고 밝혔다. 인권이라는 분야가 기사 등 뉴스 하위 분야로 지정된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사회나 국제면에 배정된 기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20대 참여자들의 통상적인 이용 시간으로는 기사들을 정리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 미얀마 시민 저항 운동에 대한 관심

이어서 미얀마 시민 저항 운동에 관해 참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배경 지식 수준, 관련 기사를 처음 접한 시기, 마지막으로 접한 시기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인권 문제에 대해 실제로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분석했다.

〈표 6〉 미얀마 시민 저항 운동에 대한 배경 지식 수준

		20대	50대
전혀 알지 못한다		2	0
뉴스를 접하긴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0	1
쿠데타의 발생 및 민주화 시위에 대해 알고 있다	현재 시위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8	7
	이전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	2	4

20대와 50대 실험 참여자 모두에게서 현재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 및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8회와 7회로 가장 많았다. 현 사태 이전의 역사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0대 집단과 50대 집단에서 각각 2회와 4회였다. 이때 언급됐던 대표적인 사례는 로힝야족 탄압 사태였다.¹⁾ 해당 사례를 직접 언급한 응답자는 20대 집단에서 1명, 50대 집단에서 2명이었다. 이를 언급한 참여자들은 해당 사건이 민주화 운동의 성공 가능성과 별개로 미얀마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 중 하나라고 봤다. 시민 저항 운동 사태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응답은 20대 집단에서만 2회 나왔으며, 관련 뉴스를 접하긴 했지만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모른다는 응답은 50대 집단에서만 1회 나왔다.

〈표 7〉 미얀마 시민 저항 운동의 경위를 처음 접한 시기 (소식을 접한 적 없는 참여자는 제외)

		20대	50대
올해 초 군사 쿠데타 발발 당시에 접함	정확히 기억(2,3월)	3	0
	어렴풋이 기억	1	6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음	1	2
상황이 전개되고 시간이 꽤 지난 이후 접하게 됨	몇 달 전(5월~8월 초)에 접함	2	1
	최근(8월 초 이후~9월)에 접함	3	0
처음 접한 시기가 기억나지 않음		0	3

1) 미얀마에 거주 중인 소수 민족 중 하나다. 역사와 종교, 인종 등이 주류 민족인 버마족을 비롯해 미얀마 내 여타 소수 민족과도 현저히 다른 탓에 박해의 대상이 돼 왔다. 아웅 산 수 치 정부는 이 사태를 묵인하며 국적법에 따라 1823년 이전부터 미얀마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로힝야인에게만 3등 시민권을 부여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표 8〉 미안마 시민 저항 운동을 마지막으로 접한 시기 (소식을 접한 적 없는 참여자는 제외)

		20대	50대
올해 초 군사 쿠데타 발발 당시에 접함	당시 이후로 들은 바 없음*	1	0
	처음 소식을 접한 이후로 한두 달까지(5-7월)	3	2
	최근 한 달 내로 소식을 접함(8-9월)	1	6
상황이 전개되고 시간이 꽤 지난 이후 접하게 됨	당시 이후로 들은 바 없음	4	0
	처음 소식을 접한 이후로 한두 달까지(5-7월)	0	1
	인터뷰 날짜로부터 일주일 내로 소식을 들음	1	0
처음 접한 시기가 기억나지 않음	당시 이후로 들은 바 없음	0	3

* 처음 접한 시기로부터 2주 내로 마지막 소식을 접한 경우

시민 저항 운동을 처음 접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자 50대 집단에서는 올해 초에 사건을 접했다는 응답이 8회로 가장 많았다. 접한 시기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응답은 3회였다. 20대 집단에서는 동일한 항목에 대한 응답과 최초 보도 시기로부터 2~3개월이 지난 때 사건을 접했다는 응답이 각각 5회로 같았다.

관련 소식을 마지막으로 접한 시기의 경우 50대 집단에서는 최근 한 달 내인 8월과 9월에 소식을 접했다는 응답이 6회로 가장 많았다. 이때 응답자들은 모두 시민 저항 운동이 국내에 처음 알려졌던 2~3월에 사건을 처음 접한 이들이었다. 처음 소식을 접하고 5~7월까지 관련 정보를 찾아봤다는 응답은 도합 3회였다. 접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응답자들은 모두 당시 이후로 정보를 찾아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사 쿠데타 발발 당시에 소식을 접했던 20대 집단에서는 최근 한 달 내로 관련 소식을 접했다는 응답이 1회에 그쳤다. 또한 미안마 시민운동에 대한 소식을 시간이 지난 뒤 접한 20대 집단에서는 인터뷰 날짜로부터 일주일 전에 인터뷰 준비를 위해 소식을 직접 찾아봤다는 응답도 있었지만 1회에 불과했다. 20대에서 처음 소식을 접한 뒤 5~7월까지 관련 내용을 접했다는 응답은 3회로, 응답자들은 모두 올 초에 사건을 접했다. 사건을 처음 접한 이후 관련 내용을 찾아보지 않았다는 응답은 절반인 총 5회로 집계됐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배경 지식 면에서 20대와 50대 참여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은 미안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사를 마지막으로 접한 시기였다. 50대 참여자 중 절반은 최근 한 달까지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 경과에 대한 정보를 탐색했다. 하지만 20대 참여자 중에서는 단 2명만이 최근 한 달 내로 관련 정보를 찾았다. 기사를 처음 접한 시기 또한 50대 집단에서는 올해 초가 과반을 훨씬 넘겼으나, 20대 집단에서는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를 통해 미안마 사태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에 50대 집단이 20대 집단보다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아울러 50대 응답자들 가운데에서는 한국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 이들은 실험 진행자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기사 내용과 민주화 운동을 연결해 미얀마 내부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기사 B를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일이 미얀마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하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랑 비슷한 역사가 미얀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19)

다른 한편 50대 응답자 중에서는 현재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기 전 미얀마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경우, 민주화 가능성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관찰됐다. 민주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친 한국과 달리 미얀마는 로힝야 사태와 같은 민족 사이의 갈등과 아웅 산 수 치 정부의 불안정한 민주 정치 등 여러 문제가 있는 탓에 민주화 운동에 성공할 가능성이 다소 낮다는 판단이었다. 독재 정부에 권력이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점 역시 민주화가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혔다. 미얀마의 과거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 20대에서는 이 같은 태도가 나오지 않았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랑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얀마 쪽은 너무 군부가 오랫동안 독재를 했고 너무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몰려 있고.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죠.” (참여자23)

2. 독재 정권 아래 인권 탄압에 대한 인식

1)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경험

〈표 9〉 민주화 경험

20대 ²⁾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경우	7
	가족 등 주변인의 경험을 청취한 경우	5
50대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경우	1
	가족 등 주변인의 경험을 청취한 경우	3
	시위를 목격한 경우	7
	시위에 직접 참여한 경우	1

2) 이른바 ‘촛불 혁명’으로 불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화 과정에 동참했다고 생각하는 실험 참가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정의한 민주화 운동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 당시 군부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도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한 과정들을 가리키므로, 이런 경우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경험한 사례로 분류하지 않았다.

		20대	50대
매체 종류	뉴스	3	1
	소설	1	4
	교과서	8	0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11	5

20대 참여자 가운데 7명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한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매체를 통해 간접 경험했다고 밝혔다. 간접 경험 과정에서 언급된 매체 종류로는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 등 영상물이 11회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영화 <택시 운전사>와 <화려한 휴가>가 각각 4회로 언급 빈도가 높았다. 영상물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매체는 학교 교과서로, 총 8회 언급됐다. 주변인의 민주화 운동 경험을 청취했다고 밝힌 응답자는 5명이었다. 응답자들은 가족·친인척 또는 중고등학교 재학 당시 교사들의 회상으로 민주화 운동 당시 상황을 접했다고 답했다.

20대 집단과 달리 50대 집단에서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현장을 목격하는 등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응답자가 약 67%인 단 한 명이었지만 나머지 7명 역시 시위 현장을 목격하거나 시위가 당시 일어났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는 등 민주화 운동을 일상의 일부로서 경험했다. 주변인의 참여 경험만 전해 듣거나 매체물을 통해서만 사건을 접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3명과 1명으로 20대 집단보다 훨씬 적었다. 직접 경험이 있는 상태로 매체물을 접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매체는 20대 집단과 마찬가지로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 등이 5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 가운데 <택시 운전사>가 총 4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영상 매체물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매체는 소설로 총 4회였다.

2) 독재 정권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참여자들이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발생한 인권 탄압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인식 척도를 유형화해 아래의 표를 도출했다.

〈표 10〉 독재 정권 아래서 일어난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생각

20대	절대 미화될 수 없으며,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7
	과거 한국의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의견을 이해하지만, 동의하진 않는다	2
	과거 한국의 독재 정권이 이룩한 경제 성장에 대한 공적은 인정해야 한다	1
	공익을 위한 독재는 허용될 수 있다	2
50대	독재 정권의 과오는 절대 미화될 수 없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9
	독재 정권의 인권 탄압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안타깝다	2
	과거 한국의 독재 정권이 이룩한 경제 성장에 대한 공적은 인정해야 한다	1

20대 참여자 중 인권 탄압 문제를 절대 미화할 수 없다고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한 참여자는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인권이 불가침의 영역이라 판단하며 경제 성장 등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인권 침해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명분이 존재해도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 아래에서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독재 정권이 행하는 폭력과 억압의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었다.

“인권은 가장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권이 만들어진 것 자체도 사람들이 정해 놓은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만론 부족하니까 그런 기초적인 게 세워진 건데, 기초적인 걸 지키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사회를 운영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참여자16)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런 억압으로 인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자유로움 속에서도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면 충분히 목표나 나라의 성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폭력이나 억압의 방식으로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참여자8)

한편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의견들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본인은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참여자도 있었다. 20대 전체 응답자 가운데 2명이 이와 같은 입장이었다. 이들은 단기간에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효율적 수단으로 독재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 의견의 타당성 자체는 인정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 독재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물론 존중하지만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성장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인식 성장보다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도 (...) 경제 성장이 되게 빠르게 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인식에 대한 성장이 경제 성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독재 정권 아래에서 경제 성장을 도모할 바에야 민주적으로 성장을 천천히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24)

독재의 가능성을 용인하는 참여자도 2명 있었다. 참여자들은 국민의 합의가 전제된다면 독재도 허용가능하다고 보거나, 공익 달성을 위해 독재가 필요하다면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독재 정치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정치를 하는 거다 보니 사람들을 먼저 보살펴야 (...) 독재를 선택하고 싶으면 무조건 국민과의 공감을 끌어내야 하고, 올바른 정치 방향을, 소통을 하는 상태에서 좋은 방향으로 독재를 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이 다 알맞게 어우러진?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10)

“독재 정권 하에서 정부가 잘 운영될 수 있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좋았던 것들이 나중에는 나쁜 것들로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자20)

민주화 운동의 현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50대 참가자와 달리 20대 참가자는 민주화 과정을 소재로 다룬 매체물이나 주변인의 발화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응답자들은 민주화 운동을 자신의 일상에서 유리된 과거 세대의 산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³⁾ A, B 기사를 읽고 느낀 감정을 느꼈던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물어봤을 때도 5·18 민주화 운동을 직접 언급한 응답자는 1명에 불과했다. 인권 탄압 사례를 언급하더라도 신장 위구르 수용소 사태나 아프가니스탄 내 탈레반 정권의 폭압 등 해외 사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폐지를 주우며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함을 느꼈던 기억을 떠올리는 등 응답자 본인의 개인적인 일화를 이야기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대다수 참여자의 관점에서 현재 한국은 독재 문제로부터 자유로웠다. 이는 독재 정권 아래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됐다. 20대 참여자들은 군사 정권을 직접 경험한 기억이 없어 독재 상황을 이론적으로 가정해 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50대 참여자 가운데 독재 정권의 행적이 절대 미화될 수 없다고 답한 사람은 총 9명으로 20대 집단보다 많았다. 이처럼 강경한 반응을 보인 참여자는 당시의 민주화 운동이 특정 집단만의 일이 아닌, 시민 모두의 일상이나 마찬가지로 회상하며 그와 같은 역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항쟁 현장에서 정부가 시민들을 최루탄 등 위험한 무기로 압박하거나 항쟁 참여자에게 취업 불이익을 주는 등 비인도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말하며 당시 참상을 떠올렸다.

“제가 80년대 중반 학번이거든요. 그때는 [민주화 운동이] 특정 계층의 일이 아니고 [모두의]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경제 논리보다도 인권을 등한시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참여자12)

“일단 독재 정권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인권 탄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독재 정권 아래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독재 정권은 일단 생기면 안 되죠.” (참여자22)

동시에 민주화 운동 때의 기억을 연관시키지 않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참여자 중 2명

3) 민주화 운동의 요새인 광주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온 실험 참가자8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지역 특성상 정규 교육과정에 편제된 역사 교육과 별개로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각종 추모 행사를 진행했음에도,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는 해외 사례 등을 직접 찾아볼 정도로 민주화 운동 자체에 관심이 많진 않다고 진술했다.

은 단지 미안마 시민처럼 독재 정권의 탄압을 받는 희생자들을 보니 안타깝다는 반응만 보였다. 이들은 항쟁이 일어났던 시절 도심으로부터 먼 곳에 거주했거나 유소년층에 속했던 관계로 상황 자체를 접할 기회가 없었다. 이들은 긴 시간이 지난 후 언론 매체나 주변인의 경험 등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었다고 답했다.

“저는 5·18에 대해 잘 몰랐어요. 영화나 언론 매체 통해서 알았지, 알고는 충격받았죠. 내가 몰랐던 사실이 일어났구나.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는데 언론이나 주위 사람들 들어 보니까 정말로 있었던 일이라구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참가자5)

아울러 독재 정권이 쌓은 업적은 업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참여자도 1명 있었다. 참여자는 윗세대인 아버지가 겪었던 경제적 빈곤함을 언급하며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줬던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경제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으리라는 의견이다.

“저희 아버지가 계속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 배고픔을 해결해 준 게 너무 감사하다고 대통령한테. 배고픔이라는 걸 저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 그분들은 죽기 살기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 해결을 해 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분의 공적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15)

50대 참여자들은 대부분 항쟁 현장에 대한 직간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각 기사를 읽으며 생김 감정이 유발됐던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묻자 대부분의 참여자는 5·18 민주화 운동을 언급했다. 자신들도 과거에 유사한 사건을 겪었기에 현재 미안마 사태를 바라보면서 당시의 기억을 환기하게 된다는 태도였다. 우선 독재 정권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참여자들 가운데서는 시위의 최전선에 섰던 참가자들의 희생으로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여기는 사례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동료나 동창생 중에 데모하고 감옥 갔다가 나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 저는 나이를 먹으니까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데에는 여러 사람의 희생이 있었구나, 그 사람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데모를 하다가 나라를 위해 자기 미래를 버린 거잖아요. 부귀영화를 버리고 자기를 바친 사람들. (...) 그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죠.” (참여자3)

하지만 당시 활발하게 활동했던 운동권 세력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참여자들도 있었다.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운동권의 의지 자체는 순수했고, 그들이 만든 유의미한 성과

도 분명 존재했다고 회상하면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자의 이권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시절의 의지가 부정적으로 희석됐다는 비판이었다. 또한 독재 정권을 옹호했던 윗세대의 심정을 이해하게 돼 민주화 운동의 폭력성을 다시 고민해보게 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요즘 학생들이 생각에는 뭐 상황이 그렇지 싶은데 우리는 그런 해방의 기쁨을 맞본 그런 기억들이 있었던 세대죠. 그런데 586세대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다 사분오열되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그렇네요.” (참여자11)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지만 여전히 정치인들이 세련되지 못했잖아요. 보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저는.” / “[나라가] 조금 잘살게 되면서 [너희가] 공부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머리 커졌다고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계속 저한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참여자15)

이와 별개로 대중들이 스스로 계몽 의식을 고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참여자가 있었다. 참여자는 독재 정권의 폭압에 대처하려면 독재자의 농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지성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하며, 정부 주도의 교육이 아닌 시민들 각자의 교육을 통해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고 정리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일반 대중들을 우민화시키는 게 그들의[=독재자들의] 모습인 것 같고. (...) 미얀마 사태를 보면 내부적으로 소수 민족 사이에도 증오심을 부추기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독재자들이. 근데 그걸 해결할 방법은 정부 주도의 교육이라기보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지식을 넓혀 가서 스스로 생각할 힘을 기르는 게 어떻게든 막아설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23)

20대 집단과 비교했을 때 50대 참여자는 직간접적으로 한국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독재 정권 시대를 경험한 만큼 독재의 심각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항쟁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있더라도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미얀마 시민 저항 운동은 진행 양상이 다르다며 미얀마의 시위 성공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점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시위가 성공하길 바란다는 답변만 내놓았던 20대 참여자들과 구별되는 점이었다.

3. 유형화 작업: 인권 의식

1) 20대 유형

이어서 분석 결과를 종합해 참여자별로 인권 인식 유형화를 시도했다. 기준으로 삼은 척도는 각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인권 의식과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 수준이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 인권 의식은 참여자들이 평소 인권 문제를 접하는 과정에서 발휘하는 인지적, 지각적 능력 및 배경지식을 통칭한다. 유형화 과정에서 이를 인권 민감성과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 수준의 합으로 정의했다. 먼저 참여자의 응답을 바탕으로 인권 민감성의 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눠 분류했다. 20대 참여자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인권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참여자들의 판단을 바탕으로 의식 척도를 나눴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의 불가침성을 피력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권이 침해될 수 없다고 판단한 참여자들은 ‘상’에 분류됐다. 인권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인권을 항상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의견도 존중한다는 참여자들은 ‘중’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명분이 정당하다면 인권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은 ‘하’ 수준의 인권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다음으로,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 수준은 해당 문제를 뉴스 등을 통해 인식할 때 참여자들이 보이는 관심의 정도를 가리킨다. 20대 참여자들의 경우 평소 미안마 시위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인권 탄압 문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접하는지, 관련 사건들을 알아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기준으로 ‘상’, ‘중’, ‘하’로 나눠 관심 수준을 분류했다. 평소 인권 탄압 문제가 연관된 과거 역사를 적극 조사하거나 관련된 매체 자료를 자주 접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상’으로 분류됐다.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지만 이슈화가 될 때만 접하고 자발적으로 자료를 탐독하진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중’ 수준의 관심을 가진 것으로 분류됐다. 이전에 미안마 사태에 대한 정보를 접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나 인권 문제에 평소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았다고 답한 참여자는 ‘하’ 수준으로 분류됐다.

〈표 11〉 20대 인권 의식 유형화

인권 민감성 ‘상’,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 ‘상’	2
인권 민감성 ‘상’,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 ‘중’ 이하	5
인권 민감성 ‘중’,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 ‘중’	2
인권 민감성 ‘하’,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 ‘중’ 이하	3

이 같은 분류 기준을 적용한 결과 20대에서는 총 4가지 인식 유형이 나왔다. 인권민감성과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이 모두 ‘상’인 참여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2명이었다. 인권민감성은 ‘상’이지만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은 ‘중’인 참가자가 5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았다. 인권이 절대 침해돼선 안 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문제를 적극 찾아보지는 않는 참여자들이었다. 다음으로 인권민감성과 관심 수준이 모두 ‘중’인 참여자가 2명이었다. 인권민감성이 ‘하’면서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 수준이 ‘중’ 이하인 참여자들은 총 3명이었다. 아울러 참여자들의 인권의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 7명, 중 2명

으로 높았음에도 50대 참여자와 비교했을 때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한 실제적 관심이 적은 경우가 많았다.

2) 50대 유형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경험했던 세대인 만큼 과거 한국의 상황을 대입해 미안마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경우 또한 '상'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분류는 20대 참여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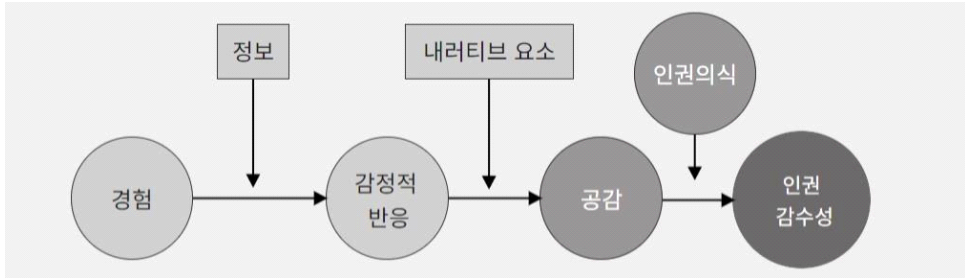
〈표 12〉 50대 인권 의식 유형화

인권 민감성 '상',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 '상'	국내외 인권 문제 관심의 차이 드러나지 않음	4
	국내외 인권 문제 관심의 차이 드러남	3
인권 민감성 '상',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 '중' 이하	국내외 인권 문제 관심의 차이 드러나지 않음	2
인권 민감성 '중',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 '중'	국내외 인권 문제 관심의 차이 드러나지 않음	2
인권 민감성 '하',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 '중' 이하	국내외 인권 문제 관심의 차이 드러남	1

유형화 작업 결과 50대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총 5가지 인식 유형이 도출됐다. 인권 의식과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모두 '상'이었던 참여자들은 총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 의식은 '상'이지만 관심 척도가 '중' 이하인 참여자와 인권의식 및 관심 척도가 모두 '중'인 참여자는 각각 2명으로 같았다. 인권 의식이 '하'이면서 관심 척도 또한 '중' 이하인 참여자들은 전체 참여자 중 1명이었다.

한편 인권의식과 관심 척도가 높았던 참여자들 가운데에서 인권 문제가 국내에서 일어났는지, 국외에서 일어났는지에 따라 관심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7명 중 4명은 인권 유린 문제가 일어난 장소가 해외든 국내든 똑같이 안타까움을 느꼈으며, 한국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시절을 떠올림으로써 유사한 탄압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 대해 심각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반면 3명의 참여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면 큰 관심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문제 발생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관심 정도가 달랐던 참여자는 인권 의식이 '하'고 인권 문제에 관한 관심이 '중' 이하인 집단에서도 1명 있었다. 나머지 유형 집단에서는 관심 수준의 차이가 일어나지 않았다.

IV. 내러티브 기사 형식과 인권 감수성 간 관계



〈그림 1〉 내러티브 기사가 인권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내러티브 기사가 인권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도식화한 결과는 위와 같다. 개인이 기사를 읽고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까지는 기사의 정보, 기사의 형식(내러티브/비내러티브), 인권 의식이라는 3개의 요소가 개입한다. 시작점은 ‘경험’이다. 이는 한국 민주화의 경험, 정치 성향, 언론 활용도 등을 포함해 개인이 놓여있는 다양한 환경을 뜻한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개인은 기사를 읽으며, 정보 그 자체로서의 미안마 사태를 수용하고 그 결과로 감정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은 ‘답답하다’, ‘불쌍하다’, ‘무섭다’ 등의 일차적인 감정이다. 이후 내러티브라는 기사의 형식이 개입해 앞서 수용자가 보인 감정적 반응을 자극해 이차적 감정인 공감으로 증폭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개인이 기존에 지닌 인지적, 지각적 차원의 인권 의식이 개입한다. 개인이 보인 감정적 반응·공감 정도와 인권 의식 정도에 따라 최종적인 인권 감수성 정도가 결정되며, 이는 ‘상황 개선 의지’라는 척도로 확인할 수 있다.

1. 기사에 대한 감정적 반응 및 평가

기사가 서술한 미안마 사태에 대한 감정을 묻자 수용자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표 13〉 기사에 대한 20대의 감정적 반응 및 평가 *중복 집계

	A 기사	B 기사
감정	안타까움(7), 적개심(2), 두려움 및 불안함(2), 답답함(1)	안타까움(6), 대단함 및 감동적(3), 슬픔(2), 측은함(2), 잔인함(1), 분노(1), 불편감(1)
연상	해외 인권 침해 사례(2), 일상 생활 사례(2), 한국 민주화(1)	한국 민주화(5), 해외 인권 침해 사례(4), 일상 생활 사례(3)
인상 깊은 부분	국제 사회 동향(3), 피해 규모(1), 군부의 부정선거(1)	군부의 억압 묘사(3), 국제 사회 동향(2), 한국 독자 언급(2), 학생 운동 양상(1)

〈표 14〉 기사에 대한 50대의 감정적 반응 및 평가 *중복 집계

	A 기사	B 기사
감정	안타까움(8), 분노(3), 답답함(1)	안타까움(7), 분노(2), 동정(2), 불편감(1), 미안함(1), 걱정(1)
연상	한국 민주화(6), 일상 생활 사례(3), 해외 인권 침해 사례(2)	한국 민주화(8), 일상 생활 사례(3), 해외 인권 침해 사례(2)
인상 깊은 부분	국제 사회 동향(3), 피해 규모(2), 군부의 부정선거(1), 해결 방향(1)	군부의 억압 묘사(4), 국제 사회 동향(1), 한국 독자 언급(1), 학생 운동 양상(1)

1) 기사에 따른 감정적 차이

참여자 50명이 미안마 사태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그에 대한 감정을 서술한 바는 내러티브 기사인 A 기사와 내러티브 기사인 B 기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모든 참여자가 미안마 사태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A 기사와 B 기사에서 나타나는 감정들의 빈도에서 확연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참여자는 같은 종류의 감정이라고 해도 A 기사보다 B 기사에서 더 강한 정도의 감정적 반응이 나타났다고 답변했다. 또한 20대와 50대에서 A 기사에서 나타난 감정은 각각 4가지, 3가지였지만, B 기사에서 나타난 감정은 각각 7가지, 6가지로 B 기사에서 더 다양한 감정적 반응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경험과 감정적 반응의 관계

A 기사와 B 기사에서 감정적 종류의 차이가 나타났다면, 20대와 50대 집단 간에서는 표현된 감정의 종류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감정적 반응을 타인 초점적-자기 초점적 정서 차원으로 나누었을 때(박인조 외, 2005) 50대는 곧바로 ‘분노’, ‘동정’, ‘미안함’, ‘걱정’ 등의 타인 초점적 감정을 표현하는 총 빈도가 9회로, ‘분노’와 ‘측은함’을 3회 표현한 20대 집단보다 그 종류와 빈도가 높았다. 이러한 20대 집단과 50대 집단 간 차이는 각 집단이 같은 기사를 읽었으므로, 각 참여자가 실험 전부터 지닌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민주화의 경험 종류, 언론 매체 활용 정도, 미안마 사태에 대한 기존 지식, 개인의 체험 등 다양한 요소를 모두 포함한 총체적인 경험의 양이 20대 집단보다 50대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감정이 경험과 어떻게 관련이 있으며, 참여자들이 표현한 감정이 정확히 어떤 종류의 감정인지 구체화하기 위해 동일한 감정이 연상된 경우를 물어보았다. A 기사와 B 기사에서 연상된 사례의 종류와 빈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대 집단과 50대 집단 사이에서는 한국 민주화를 언급한 정도에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50대 집단의 경

우 한국 민주화를 연상한 빈도는 A 기사와 B 기사에서 각 6회, 8회로, 기사 본문에 한국이 언급된 B 기사에서 3회만 언급한 20대 집단보다 빈번했다. 기사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 해당 감정이 들었던 부분을 묻은 결과에서는 기사 종류나 집단에 따라 변화를 보인 부분은 없었다. 다만, 세부적인 이유에서 20대 집단은 UN 혹은 국제 사회가 미얀마에서의 인권 탄압 상황에 개입해야 한다는 당위적 책임을 물었고, 그 예시는 다음과 같았다.

“UN이라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아쉬운 점, 조금 더 발전하거나 개선돼야 할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비난의 화살을 UN에게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 (...) UN이라는 기구가 자본도 많이 모이는 곳이고 어찌 됐든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정작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망설이는 것 같고, 미얀마는 기댈 곳이 없어진 거라서 안타깝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6)

“UN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운 (...) 국제 사회의 시대에서 UN에서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느낌을 받아서 인식적인 개선이 많이 돼야 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 (참여자16)

“UN이라는 기구라고 하면 각국의 이해관계를 포함하기보다 보편적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기구 같은데, 여기서는 미얀마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4)

2. 미얀마 사태에 대한 공감 정도와 상황 개선 의지

두 번째 개입되는 요소로 기사의 형식, 즉 내러티브가 어떻게 감정적 반응을 자극하고 증폭시켰는지 보기 위해 참여자에게 미얀마 시민의 상황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는지를 물었다. 공감 수준은 감정의 목적과 그 정도에 따라(정수영, 2015) ‘공감되지 않음’, ‘소극적으로 공감함’, ‘적극적으로 공감함’의 세 단계로 나뉘었다.

〈표 15〉 20대 집단과 50대 집단의 공감 수준 분류

공감 수준	둘 다 소극적	A 공감 안 됨, B 적극적	A 소극적, B 적극적	둘 다 적극적
20대	1	8	2	1
50대	2	2	0	8

1) 20대 집단과 50대 집단의 공감 수준 비교

앞서 A 기사와 B 기사 간에는 감정적 반응 정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20대와 50대 모두 자기 초점적 정서와 타인 초점적 정서가 혼재되어 나타남을 확인했다. 기사를 읽는

순서에 공감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참여자 집단 절반에는 B 기사를 먼저, 나머지 절반에는 A 기사를 먼저 읽도록 했으나, 순서에 따른 영향은 없었다. 20대 집단의 경우에는 B 기사에만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는 경우가 8회로 가장 많았고, 50대 집단의 경우에는 두 기사 모두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는 경우가 8회로 가장 많았다. 이에 50대 집단에서는 내러티브라는 형식이 독자적으로 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검증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대 집단의 경우에는 B 기사에서만 적극적인 공감이 일어났기에 내러티브 요소가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B 기사에만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분류된 20대 참여자들은 공감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B에 인터뷰를 넣어서 읽는 데는 흡입이 잘 됐고, 그 사태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현장감 있게 들을 수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 A는 미안마 사람들에게 측은한 마음을 느끼거나 아니면 공감을 했느냐와 같은 부분에서 저한테 잘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공감이 되기 보다는 정보가 전달이 되는 느낌이라, 이런 사건이 났구나 정도 느꼈던 것 같아요. (...) 제가 대한민국 운동을 했던 세대는 아니지만, 강압적인 분위기라던가, 물론 저기는 적의 군대가 진압한 입장이지만 저도 군대 갔다 오고,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미안마 시민의 입장에 아주 많이 공감했습니다.” (참여자7)

“A 기사를 봤을 때는 포털한 기사를 읽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감정적인 변동은 크지 않았고,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 B 기사를 읽었을 때는 실제 학생 운동가들의 인터뷰를 따가지고 현지 상황을 보니까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은 감정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16)

20대 참여자 중 유일하게 ‘둘 다 소극적’으로 공감했다고 분류된 1명의 참여자는 “제가 저런 것을 겪은 경험이 없으니 완전히 공감이 안 된다”와 같은 이유로 B 기사에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20대와 50대 집단 모두 둘 다 소극적으로 공감했거나, 둘 다 적극적으로 했던 참여자들에게도 내러티브라는 요소가 영향을 미쳤음은 A 기사와 비교했을 때 B 기사에서 공감의 정도가 더 강했다는 다음의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기사 모두 저희 세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고, 어쨌든 그런 똑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동지애,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잖아요. (...) A 기사보다는 B 기사가 조금 더 경험을 가지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처절함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2)

“활자로만 이렇게 봐서는 크게 공감은 가진 않았죠. (...) A 기사에서 느꼈던 것과 구분 짓기가 어렵네요. 거의 비슷하게 느끼는데 그래도 B는 학생들이 저항 운동하니까 B 기사가 조금 더 와닿네요. 학생들 인터뷰한 기사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참여자18)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공감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는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과 이로 인해 촉발된 감정, 그리고 내러티브라는 기사의 형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0대 집단의 경우 20대 집단과 비교해 가지고 있던 경험의 양이 풍부했고, 이를 감정 표현의 차원에서 비교했을 때는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내러티브라는 요소로 인해 감정이 증폭되며 두 집단이 A 기사에 공감하는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내러티브라는 요소가 공감 정도에 미치는 비율을 고려해봤을 때 20대 집단에서 그 비율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 공감, 인권 의식, 인권 감수성 간의 관계

공감을 정서적인 반응으로, 인권 감수성을 ‘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이라 정의했을 때(문용린 외, 2002), 이 둘 사이에는 인지적·지각적 과정이 개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앞서 다룬 ‘인권 의식’으로 정의했고,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척도를 ‘돕고 싶다’,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와 같은 언어 표현을 통해 포착하고자 했다. 물질적·비물질적 도움을 직접 주고 싶다고 말한 사람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였다고 분류했고,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모색 없이 개선 의지만 보인 사람은 ‘소극적’인 태도로 분류했다.

〈표 16〉 실험 집단별 개선 의지의 정도 분류

개선 의지	B만 소극적	둘 다 소극적	A 소극적, B 적극적	둘 다 적극적
20대	1	3	6	2
50대	0	2	2	8

이전에 보였던 공감 정도와 인권 의식, 그리고 인권 감수성이 가진 관계를 참여자가 답한 각각의 답변을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공감, 인권 의식, 개선 의지에 관한 답변을 보았을 때 실험 참여자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참여자가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을 지니고 있고 각 기사에 적극적인 공감을 보이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가진다. 둘째, 참여자가 보통 이하의 인권 의식을 지니고 있고 각 기사에 소극적인 공감을 보이거나 공감을 보이지 않으면, 소극적인 개선 의지를 가지거나 개선 의지를 갖지 않는다.

높은 공감 수준과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A 기사와 B 기사 유형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음은 B 기사에 적극적인 공감 수준을 가졌고, 높은 인권 의식을 가진 20대 참여자의 답변이다.

“A 기사는 돕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B를 읽고 나서는 제가 물질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7)

내러티브 기사 형식이 곧바로 인권 감수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 수준에 영향을 주고, 기존의 인권 의식과 결합해 인권 감수성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소극적인 공감을 보였다고 해서 반드시 소극적인 개선 의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적극적인 공감을 보였다고 해서 반드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인권 의식이 개입되어야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다만, 적극적인 공감을 하고 높은 인권 의식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참여자도 50대 집단에서 한 명 존재했다. 이 경우에는, 미얀마에서 시민 저항 운동을 진행하는 세력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소수 민족에 대한 또 다른 인권 탄압을 하는 인물이 있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파악하는 양상을 띠었다.

(주 진행자: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한국의 군부 쿠데타와 비슷하다는 생각 외에 추가적으로 미얀마 사태에 대해 하신 생각이 있으실까요?) “난민 문제 같은 것들도 생각났었고요. 또 아웅 산 수 치가 그때 민주화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소수 민족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소수 민족을 굉장히 탄압했었잖아요. 그런 것이 생각하면서 결국 자기 안의 문제는 또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막상 보면 저런 면도 또 있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참여자22)

높은 인권 의식이 개입됐을 때, 낮은 공감 수준에 머물렀던 참여자가 개선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참여자 12의 경우에는 A 기사에서 공감하지 못했지만, A 기사에서도 인권 탄압을 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답했다. 이러한 경우는 기존의 인권 의식이 매우 높아, 정서적 공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인권 감수성 측면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례였다. 다음은 20대 집단에 속한 참여자12의 발화이다.

“A 기사를 읽고 나서는 사실 현지에서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것 보다는 왜 미국이나 유엔에서 개입할 수 없는지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니까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이 주로 들었던 것 같아요. (...) A 기사와 B 기사 모두 인권탄압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거나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B 기사를 읽고 그게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12)

보통 수준 이하의 인권 의식과 낮은 수준의 공감 수준이 만나게 되면,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한 참여자는 없었다. 다음은 인권 의식이 보통 이하이고, 소극적인 공감을 보인 20대 참여자의 개선 의지에 관한 발화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저도 제 코가 석 자입니다. 제가 돈이 넘쳐난다면 기부도 많이 할 텐데, 현실적으로 뭐 안타깝고 측은한 생각은 들지만, 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없고. 마음은 돕고 싶은데,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게...국제 사회에서 개입한다고 하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고 봐요. 개선이 필요하긴 한데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여자1)

이처럼 다양한 예시를 통해, 공감 수준에 인권 의식이 개입해 인권 감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대부분이 보통 수준 이상의 인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개선 의지는 앞서 언급한 하나의 예외 사례 외에는 공감 수준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앞서 20대 참여자 집단이 기사 A에 공감하지 못했다고 기사 B에서만 적극적인 공감을 보였던 유형이 가장 많았고, 개선 의지에서 기사 A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기사 B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대 참여자 집단도 동일하게, 두 기사 유형 모두에 적극적으로 공감한 유형이 가장 많았고 두 기사 모두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인 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20대와 50대 집단 모두 같은 양상을 보였다.

3. 기사 형식의 면밀성과 보도 적합성에 관한 판단

앞선 과정을 통해 내러티브 기사가 인권 감수성 형성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러티브 기사 역시 ‘내러티브’가 아닌 ‘기사’로서의 가치를 가져야만 한다. 뉴스 수용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저널리즘의 근본 목적과 반한다면, 인권 감수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참여자 집단 전체에 두 기사 가운데 어떤 기사가 더 면밀한지, 미안파 시민 저항 운동 외의 포괄적인 인권 문제를 다룰 때 내러티브와 비내러티브 중 어떤 형식이 적합한지 물었다. 그 응답은 다음과 같다.

〈표 17〉 면밀함과 인권 문제 적합성에 대한 기사 선호도 응답

		A기사 선택	B기사 선택	차이가 없다	상황 따라 다르다
20대	면밀함	4	7	0	1
	인권 문제 적합성	1	10	0	1
50대	면밀함	3	8	0	1
	인권 문제 적합성	1	8	1	2

20대 참여자 집단과 50대 참여자 집단에서는 모두 B 기사가 더 면밀하다고 보는 응답

이 더 많았다. A 기사를 선택한 20대 참여자 4명과 50대 참여자 3명 모두 B 기사의 정보가 전반적인 사건 전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정보가 부족했다고 답변했다.

B 기사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현상은 포괄적인 주제로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의 ‘형식’ 적합성을 물어봤을 때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20대 집단과 50대 집단에서 A 기사의 형식, 즉 ‘비내러티브’ 기사가 더 적합하다고 답한 참여자는 각각 한 명씩이었다. 다음은 참여자의 답변이다. 이 중 참여자8은 면밀성에 있어서는 B 기사가 더 낫다고 판단하였는데, 다음의 답변을 통해 ‘미안마 시민 저항’이라는 특정 사건과 ‘인권 문제’라는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에 대한 형식적 적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두 기사를 합쳤으면 좋겠어요. 흐름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잡고, 탄압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걸 같이 엮었으면 좋지 않나. A 기사는 발제 같은 기분이 들고요, B 기사는 발제에 대한 약간의 추가적인 것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각각 따지면 A 기사가 저에게는 더 와닿네요.” (참여자17)

“인권 탄압이라는 주제에는 뭔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사 A 같은 형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8)

50대 참여자 집단에서는 A 기사와 B 기사가 인권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형식에서는 적합성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참여자가 1명 있었다. 다음은 참여자의 응답이다.

“두 기사 모두 비슷하기는 한데, 저는 두 개 방식은 차이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느끼는 글의 내용이 제한돼서 다가오는 거지, 기사의 방식은 저에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참여자13)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변한 20대 참여자와 50대 참여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어떤 기사가 해당 상황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독자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답변한 참여자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사에 대한 가치관으로부터 차이가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읽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A 기사는 무언가를 알고 싶은 사람한테 알려주는 소개용이라고 생각하고, B 기사는 모르는 사람에게 관심 두게 하는 홍보용이라고 생각한다. … 누구한테 이것을 알려주냐에 따라 다른데.” (참여자1)

“보는 독자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A 기사 같은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정도 대충이라도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B 기사를 보내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집중 심층취재 같은 느낌.” (참여자22)

〈표 18〉 A 기사와 B 기사의 장단점

		A 기사	B 기사
20대	장점	체계적(1) 명료함(1), 객관적(1), 상황 이해(1)	생동감(5), 전달력(2), 몰입감(1)
	단점	흥미롭지 않음(1), 가독성 떨어짐(2)	필요 이상으로 자세(1)
50대	장점	정돈돼 있음(1), 이해 쉬움(1)	생동감(5), 잘 이해됨(1), 객관적(1)
	단점	인터뷰이 다양성(1), 흥미롭지 않음(1), 주관적(1)	인터뷰이 다양성(2)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에서 형식 적합성은, 위의 표에서 그 판단 근거가 잘 나타난다. B 기사를 선택한 이유로는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공감이 더 잘 된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참여자들의 중 ‘내러티브’라는 형식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답변하거나, 인권 문제에서 ‘내러티브’라는 형식이 특별히 적합한 이유에 대해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감되어야 기사도 계속 읽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B 기사처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사람들은 인권에 대해 아무리 떠들어봐도 자기랑 관련이 없으면 관심이 없기 마련이라서. 관심 분야나, 공감되어야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서 공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참여자10)

“어떤 사건을 단순히 상황에 대한 서술로 접할 때랑, 사람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때랑은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여자12)

“무언가 계속 이슈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니야. 자국민들도 계속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일어나서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깨우는 작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 감정에도 호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3)

“감정이 배제된 이런 것은 설득력도 좀 약하고, 기사를 읽는 사람의 마음에 남기에도 쉽지가 않거든요.” (참여자 11)

“묻고 답하고 끝났잖아요. 그거 끝나면 결론적으로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인 얘기도 괜찮고. 기자의 생각을 녹여낸, 기사를 쓰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써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여자15)

IV. 결론

1. 연구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 기반해 미안마 시민 저항 운동을 접하는 과정에서 20대 수

용자와 50대 수용자 간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했다. 이를 매개로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 감수성에 내러티브 기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연구 결과, 내러티브 기사가 뉴스 수용자인 독자의 인권 감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을 탄압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면밀히 접함으로써 비슷한 사건을 겪어보지 않았더라도 상황의 심각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게 되고, 비슷한 사건을 겪었을 경우 그때의 기억을 회상해 사안의 참혹함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내러티브 기사가 보여주는 형식적 특징을 바탕으로 뉴스 수용자들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참상에 공감하게 되며 인권 문제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과 참상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

2. 기사 모델 제언

내러티브 기사가 뉴스 수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계한 실험으로 얻을 수 있었던 중간적인 결론은 경험과 기존의 배경지식만으로는 높은 수준의 인권 감수성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용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이 아주 풍부하더라도, 감정적인 반응에 관해 물었을 때 곧바로 타인 초점적 정서나 상황 공감을 보인 참여자는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주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을 지니고 있더라도 경험과 내러티브로부터 촉발된 공감이 없다면, 개선 의지는 소극적인 단계에 그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인권 감수성은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촉발된 감정 혹은 인권교육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인지적·지각적 능력만으로는 온전히 향상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인권 감수성을 자극하는 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는 요소는 ‘내러티브’라는 기사 형식이다. 특히나 이 요소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특정 경험의 부재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었던 20대 참여자 집단이었다. 이에 특정 경험의 체험을 결여한 20대에게 관련 사안에서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내러티브 기사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러티브 저널리즘은 단순히 공감을 끌어내고, 인권 감수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가 실험 참여자에게 기사 형식의 적합성을 물을 때, 이를 ‘인권’과 관련된 주제에 한정했듯, 내러티브 저널리즘의 역할은 인권이라는 하위 주제 하에서 저널리즘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며 인권 감수성을 자극하는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내러티브 저널리즘은 인권이라는 주제에 적합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그에 대한 답은 인권 문제가 특정 시대, 상황, 국가에 한정해 발생하는 일이 아니며, 모든 개인이 이를 해결할 실천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개인의 노력이 없다면 인권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다.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무가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인권 감수성은 뉴스 수용자가 단순히 인

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용’하기만 하는 수용자가 아닌, 그 너머의 실천적인 인간으로 거듭나게 한다. 앞서 실험 참여자들이 미안마 사태에 대해 응원의 메시지 보내기·세 손가락 캠페인 참여부터 물질적인 기부까지, 자기 삶의 큰 부분이 침해받지 않는다면 미안마 시민을 위한 행동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내러티브가 불러온 유의미한 변화였다.

그러나 여전히 내러티브 저널리즘에 부족한 부분은 존재하고, 이 중 일부는 ‘내러티브’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특성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내러티브 기사가 ‘생동감 넘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장황해지면, 이 역시 읽기 싫다’, ‘인터뷰이의 다양성이 필요하다’와 같은 단점을 가진다고 뽑았다. 따라서 내러티브 기사에 다음과 같은 요소가 보완되기를 바란다. 첫째, 사건 전반에 대한 배경지식을 포함해 서술되어야 한다. 인권 문제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엮혀있는 사회적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해야 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정보를 담을 때, 수용자가 기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편향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완화해준다. 둘째, 소재목을 다는 등의 효과적인 레이아웃을 도입해야 한다. 상황을 묘사하고, 개인의 말을 그대로 서술하거나, 이에 서사를 부여하는 내러티브의 특성상 기사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선 실험에서 참여자들이 소재목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기사가 내러티브 내에서도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소재목을 붙임으로써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시각 자료도 좋은 대안이 된다. 셋째, 인터뷰이의 다양성이 제고돼야 한다. 이 특성은 비단 내러티브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러티브 기사에서 더욱 요구되는 특성이다. 개인의 말을 그대로 서술하는 내러티브의 특성상, 해당 사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관점에 편향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인터뷰이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3. 대안으로서 내러티브 저널리즘

그간 언론은 정보의 단순 제공을 목적으로 삼는 스트레이트 기사 위주로 보도를 진행해왔다. 영상이나 글 등 구체적인 보도 형태만 다를 뿐 발생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스트레이트 형식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언론이 지향하는 ‘보도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의 일종이었다. 뉴스 제공자의 편향된 의견을 배제한 채 정보 및 사건의 경위 그 자체만을 수용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방향이 객관적 보도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라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 제공을 빙자로 트래픽 유입을 위한 가십성 기사가 난무하는 등 부정적 효과 또한 발생하기 마련이었다. 아울러 보도할 이슈를 선정하고 기사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1차 생산자인 뉴스 제공자의 의견이 어떤 방식으로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돼 객관성 자체의 진위를 의심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푼진하게 묘사해 독자의 공감을 끌어냄으로써 기사 내용에 몰입 하도록 하는 내러티브 기사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미얀마 민주화 항쟁과 같은 인권 문제를 다룰 때는 더욱 그러하다. 기사에 항쟁 참여자들 및 탄압 피해자들의 서사를 가미해 독자가 기사에서 다루는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접할 수 있게 유도하면서도, 독자가 자신의 경험 및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사안을 다각적으로 해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독자는 뉴스 제공자에 의해 일차로 검열된 객관성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건을 스스로 분석할 객관적·비판적 시각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사건 자체만을 받아들일 때보다 사건 이면의 문제점들을 다층적으로 이해할 시각도 갖춘다. 스트레이트 기사와 비교했을 때 내러티브 기사는 단지 뉴스 제공자의 주관이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독특한 기사 방식이 아니라, 뉴스 수용자를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주체로 격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사 대안이 되는 셈이다.

참고문헌

<국내외 문헌>

- 권향원, 최도립. 2011. “근거이론적 방법의 이론화 논리에 대한 이해”. 『한국행정학보』 45(1), pp.275-302.
- 김언경. 2015. “민언련 모니터보고서 속의 세월호 언론보도의 문제점”, pp.38-50.
- 김선호, 성민규. 2014. “커뮤니케이션 실천으로서의 공감: 시론적 고찰”. 『언론과 사회』 22(1), pp.5-34.
- 남재일. 2017. “시민인권의 저널리즘을 위한 이론적 탐색: 객관주의 저널리즘에 대한 성찰과 모색”. 『민주주의와 인권』 17(4), pp.233-272.
- 박인조, 민경환. 2005. “한국어 감정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19(1), pp.109-129.
- 박지희. 2015. “공감(empathy)과 동정(Sympathy): 두 개념에 대한 고찰”. 『2015 한국수사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발표집』, pp.121-133.
- 박형원. 2013. “사회복지과목 이수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8), pp.191-200.
- 설양환, 박상준, 이지혜, 이선영. 2016. “인권실태조사를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9(3), pp.55-74.
- 심태은, 이송이. 2018.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과 인권인식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9(10), pp.352-360.
- 이진이, 김성훈. 2016. “포털 뉴스 플랫폼의 공감 경험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2(2), pp.547-560.

- 이한중. 2018. “상황 공감-불편감 척도의 개발-당신은 이 사람의 아픔에 얼마나 공감합니까?”. 『아시아교육연구』 19(1), pp.283-303.
- 정수영. 2015. “공감과 연민, 그리고 정동(affect): 저널리즘 분석과 비평의 외연 확장을 위한 시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pp.38-76.
- 정수영. 2015. “‘세월호 언론보도 대참사’는 복구할 수 있는가?: 저널리즘 규범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이론적 성찰”. 『커뮤니케이션 이론』 11(2), pp.56-103.
- Corbin, J., & Strauss, A. 2019. 『근거이론』. 현문사.

〈온라인 자료〉

- 한겨레. “기획기사 단골 ‘내러티브 저널리즘’”. 201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59032.html>>
- 구글 트렌드. 2021.09.26. <[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date=2021-02-01%2021-03-31&geo=KR&q=%EB%AF%B8%EC%96%80%EB%A7%88%20%EC%BFA0%EB%8D%B0%ED%83%80](https://trends.google.co.kr/trends/explore?date=2021-02-01%202021-03-31&geo=KR&q=%EB%AF%B8%EC%96%80%EB%A7%88%20%EC%BFA0%EB%8D%B0%ED%83%80)>
-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 2021.09.26. <<https://datatrend.kakao.com/result?q=%EB%AF%B8%EC%96%80%EB%A7%88&from=20210201&to=20210331>>

〈기타 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02.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2009. “인권 친화적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서울 소재 1개 대학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자료집”.
- 한국언론재단. 2002. “저널리즘의 객관성”.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2020 언론수용자 조사”.

■ 부록

[부록 1] 연구 참여자 특성

연구 참여자	성별	나이 (만 나이 기준)	출신지
1	남	27	대전
2	여	53	경기도
3	여	57	경기도
4	여	20	충청북도
5	여	51	전주
6	여	25	대구
7	남	23	경기도
8	여	21	광주
9	남	20	경기도
10	남	20	충청남도
11	여	53	전라북도
12	남	22	대전
13	남	49	경상북도
14	여	19	경기도
15	여	53	경기도
16	여	21	대구
17	남	54	경상북도
18	남	55	충청남도
19	여	51	경기도
20	남	21	경기도
21	여	50	충청남도
22	여	50	대구
23	남	49	대구
24	여	24	전라북도

심의결과 통보서

수신

연구책임자	이름: 김규희	소속: 인문대학 언어학과	직위: 학사과장
지원기관	서울대학교		

과제정보

승인번호	IRB No. 2109/002-001		
연구과제명	미안마 시민 저항 운동 보도에 대한 20대 수용자 반응 분석: 내러티브 뉴스가 인권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종류	학술연구, 면담(FGI 포함)		
심의종류	신규		
심의일자	2021-08-24		
심의대상	설명문 및 동의서 또는 서면동의 면제사유서, 연구결과정리양식, 생명윤리준수서약서, 모집문건, 설문지(면담 질문지), 연구비 수주용 연구계획서, 연구책임자 경력사항		
심의결과	승인		
승인일자	2021-08-24	승인유효기간	2022-08-23
정기보고주기	12개월		
심의의견	1. 심의결과 제출하신 연구계획에 대해 승인합니다. 2. 연구자께서는 승인된 문서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연구진행 과정에서 계획상에 변경사항(연구자 변경, 연구내용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본 위원회에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3. 유효기간 내 연구가 끝났을 경우 종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유효기간 이후에도 연구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 2022-07-23까지 지속심의를 받도록 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	계획서 검토의견		
	동의서 검토의견		
	기타 검토의견		

2021년 08월 24일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본 위원회가 승인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반드시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참여 동의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연구참여자에게는 승인된 동의서를 연구참여자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해야 하며 번역본은 인종 및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4. 연구참여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 진행중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참여자의 보호를 위해 취해진 응급상황에서의 변경에 대해서는 즉각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5. 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계획서에 따라 등록된 연구참여자의 사망, 입원, 심각한 질병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6. 임상시험 또는 연구참여자의 안전에 대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는 즉각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7.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8. 연구참여 모집광고는 사용 전에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연구참여자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잠재적인 연구참여자에 대해서 연구 참여 여부를 숙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소상공인 생계권의 조화

서익준, 신동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소상공인 생계권의 조화

서익준, 신동규*

[목 차]

1. 서론
 2.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개인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
 - 2.1. 헌법적 논거
 - 2.2. 국제법적 논거
 - 2.3. 정치철학적 논거
 3.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상공인의 권리
 - 3.1.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생계권의 정의
 - 3.2. 소상공인 생계권의 침해 양상
 - 3.3. 현금성 지원 방식의 한계
 4.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소상공인 생계권에 미치는 영향
 - 4.1. 통계분석을 위한 변수 정의
 - 4.2. 통계분석 모델의 설명
 - 4.3. 시뮬레이션에서의 활용 방안
 5.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감염병 확산에 미치는 영향
 - 5.1. 감염병 확산 모델의 활용
 - 5.2. 감염률 β 의 산출
 - 5.3.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감염률 β 사이의 관계
 6. 시뮬레이션을 통한 각 거리두기 안의 효과 파악
 - 6.1. 시뮬레이션 모델의 설계
 - 6.2. 가능한 가이드라인 후보 생성
 - 6.3.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6.4. 백신 접종률의 고려
 7.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 19”)은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 서익준(경영학과 19) 신동규(경영학과 19)

환자가 확인된 이후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후 약 20개월의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43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도 총 22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000명 이상의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공중보건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격리, 지역 봉쇄, 강제 입원, 집합 금지 등의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들이었다.

코로나 19 사태에서의 방역 조치는 공중보건과 개인의 권리 간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는 점에서, 방역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 또한 국가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아직까지는 방역 조치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는 상점 폐쇄 등의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미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정부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국내에서도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코로나 19의 변이종이 출현하며 팬데믹의 위협이 계속될 것이 예측되고 있기에 이러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는 방역 조치로 인한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쟁점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단 중 하나인 소상공인의 권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해 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코로나 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를 포기해서는 안 될 이유를 법적·정치학적으로 정리한다(II). 다음으로는 방역조치로 인해 제한되는 소상공인의 기본권인 '생계권'을 정의하고, 소상공인의 생계권이 침해되고 있는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III).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소상공인 생계권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IV).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는 정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뒤(V),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중보건과 소상공인 생계권 사이의 조화를 달성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모델을 도출한다(VI).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3개년의 월별 소상공인 시장경기동향지수(Business Survey Index, 이하 "BSI")와 2020년 2월 이후 발표된 서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분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소상공인 생계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각 구성 요소'를 독립변수로, '소상공인 BSI'를 종속변수로 두고 외부 변수를 통제한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설계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조치가 감염병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Wolfram Alpha에서 제공되는 감염병 확산 모델(SIR, SEIR)을 활용할 것이다. 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시점에서 기존 예측치와 실제 감염률의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함으로써 각 조치가 코로나 19 확산세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여러 유형의 거리두기 조치가 감염률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설계된 두 모델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거리두기 안이 감염병 확산과 소상공인 BS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이때 감염병 확산 방지와 소상공인 생계권 보호라는 두 목적변수를 포함한 다목적함수를 설계하여 파레토 최적해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한 파레토 최적점은 감염병 확산과 소상공인 생계권 보호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현행 거리두기 가이드라인보다 우위에 있는 최적의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찾아 이를 현행 거리두기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2.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개인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

코로나 19라는 위협은 국민의 삶에 전례가 없었던 정도의 통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통제는 더 많은 사망자의 발생을 막고 공중보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어왔다. 실제로 많은 국민은 이러한 통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장기간 보건당국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이처럼 일상적 통제에 대한 대중적 공감이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의 권리 보호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답해볼 수 있다.

2.1. 헌법적 논거

먼저, 현대 국가들의 헌법 속에서 그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현대 국가의 헌법은 공익을 위한 개인의 권리 제한을 정당화하지만, 그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을 살펴보면, 헌법 제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경우’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특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된다.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화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으로 구성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목적이 정당한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고른 방법이 적합한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수단을

택하였는지, 이루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큰지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다.¹⁾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만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방역 조치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은 공공복리를 증진에 부합함이 분명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함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유사한 방식의 통제 조치는 코로나 19의 위협에 직면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어 왔고, 다수의 보건학적 연구를 통해 그 효과성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과연 ‘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경우에는 침해되는 사익이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잉금지원칙의 판단 요소들은 아무리 공익을 위한 조치일지라도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정헌법 제 1조부터 제 10조까지의 권리장전 조항들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청원의 권리 등 국민의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국가의 권력 작용이 중대한 법익(compelling interest)을 보호하기 위한 제재라면 헌법상 보장된 권리, 그중에서도 근본적 기본권(fundamental right)마저도 제한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실체적 적법절차, 평등권 등 중요한 권리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 판단을 내릴 때 그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총 세 개의 단계로 이뤄진 심사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²⁾ 가장 엄격한 경우에 해당되는 첫 번째 심사기준은 ‘엄격심사기준(strict scrutiny)’으로, 중대한 법익의 존재, 중대한 법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밀하게 구성된 필요성, 최소침해수단 선택 및 법익의 균형성을 그 핵심요소로 한다. 앞서 언급된 수정헌법 제1조부터 제 10조의 근본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 또는 종교·국적·인종에 따라 분리된 소수를 겨냥한 입법 등이 엄격심사기준의 적용 대상이 된다.³⁾

두 번째로 엄격한 심사기준인 ‘중간심사기준(intermediate scrutiny)’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별, 혼외자에 대한 차별 등 위헌의 의심이 가는 차별에 준하는 차별에 대해 적용된다. 중간심사기준은 미 연방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개념은 아니나 1969년~2005년 사이의 버저 대법원·렌퀴스트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수차례 중간심사를 제의하는 말들을 판결문에 쓴 바 있다.⁴⁾

1) 김대환, “우리나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공법학연구』 6권 3호, 2005, p.193.

2) 홍완식 외, “미국의 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법제처 정책연구』, 2010, p.79.

3) 황경환, “미국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리(strict scrutiny를 중심으로)의 연구”, 『법학연구』 22권 4호, 2014, p.276.

마지막으로 가장 덜 엄격한 심사기준인 ‘합리성심사기준(rationality test)’의 경우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권리 제한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정부의 법적 차별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자의적인 경우에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기준이다. 1980년대 이후 일련의 판결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목적 달성을 위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수단이나 지나치게 배제적인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그러한 권리 제한의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사의 강도를 높인 바 있다. 경제활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자유나 공공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평등보호 사안에는 합리성심사기준이 적용된다.⁵⁾ 이러한 삼중 심사기준은 판단 기준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의 제한이 합당하고 적절한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미 연방대법원은 삼중심사기준 외에도 ‘보다 덜 제한적인 대안의 원칙(Less Restrictive Alternative)’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할 때, 보다 완화된 대안으로도 동일한 입법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미시경제학의 이론을 원용하면, 덜 제한적인 대안의 도입은 곧 ‘파레토 최적점(Pareto Optimality)’에로의 이동을 뜻한다.⁶⁾ 다만 이 경우 규제 입법으로 증진되는 정부의 이익과 제한되는 개인의 헌법적 이익 중 어느 한쪽에 우위를 두는 것이 아니기에, 덜 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특정 규제입법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보다 덜 제한적인 대안의 원칙’ 또한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때 실행하고자 하는 규제보다 개인의 권리를 덜 침해하는 대안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다.

독일의 경우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기본법 제 19조 2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며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⁷⁾ 또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심사할 때 비례의 원칙을 고려한다. 여기서 비례의 원칙은 우리나라의 과잉금지원칙의 경우와 유사하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는 엄격한 심사 기준이다.

이처럼 근대 국가들의 헌법 및 법률 절차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이러한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한 기준을 엄격하게

4) 홍완식 외, *op. cit.*, p.62.

5) *Ibid.*, p.77.

6) 양건, “법률의 위헌심사의 기준”, 『헌법재판연구』 제1권, 헌법재판소, 1990, p.99.

7) 표명환, “독일기본법상의 기본권제한의 구조와 체계에 관한 고찰 - 우리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4권 4호, 2013, p.33.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의 불가침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 조치를 시행할 때에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함을 드러낸다.

2.2. 국제법적 논거

다음으로, 세계 각국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일련의 국제 규범에서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은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세계 인권 선언에 열거된 권리 중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근로의 자유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⁸⁾ 그러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1984년 열린 회의에서 “전 국민의 생명의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 인권 선언의 일부 조항들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의결하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그러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동시에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이 “엄격한 법적 기준으로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justified on a legal basis as strictly necessary)도 명시했다.

해당 회의에서 의결된 ‘시라쿠사 원칙(Siracusa Principles)’은 공중 보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최후의 방편으로서만 가능하며, 이하의 다섯 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정당화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i) 해당 제한은 합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ii) 합당한 공익적 목표를 위해 이뤄져야 하며, (iii)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어야 한다. 또한 (iv) 동일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침해나 제한의 성격이 약한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v) 해당 제한은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방식으로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⁹⁾ 다시 말해, 국가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기본적 권리 간의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법률에 근거한 차별적이고 최소한의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00년에 열린 회의에서 의결된 일반논평 제14호에서 감염병 대응 조치들은 국제인권기준을 포함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만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해당 논평은 공중 보건

8)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eamble · Article 13.1. Article 20.1. · Article 23.1 · Article 23.3 · Article 25.1., 1949.

9)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Siracusa Principles on the Limitation and Derogation Provision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84.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을 때 그중에서 가장 권리의 제한이 적은 대안을 선택해야 하며, 이렇게 선택된 대안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⁰⁾

한편으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유엔 자유권규약’) 제 4조는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국은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약에는 동시에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권리에 대한 침해는 일시적·제한적이어야 하며, 생명권·노예상태에 처하지 않을 권리·구금당하지 않을 권리 등 가장 근본적인 권리들은 불가침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들은 공중보전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을 드러낸다. 이상의 규정들에서 핵심은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다양한 방식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유엔, 국제보건기구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구는 보건증진과 인권 존중 간의 적절한 균형(fine balance)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두 법익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정 조치가 공중보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하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¹¹⁾

2.3. 정치철학적 논거

다음으로, 공익 판단 과정에 대한 정치철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도덕의 근본 원리로부터 공익을 도출하고자 하는 ‘도덕적 공익관’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정치철학자인 리처드 플래스먼의 논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플래스먼은 사익추구가 공익의 정당한 구성 부분이자 공익 개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사익들의 총합이 공익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¹²⁾ 플래스먼은 다수 개인의 이익이라는 ‘사실’로부터 ‘규범’ 개념인 공익은 결코 도출될 수 없으며, 그 이상의 다른 요소가 덧붙여져야만 한다고 비판한다. 플래스먼이 제시하는 사익 총합 이상의 요소로서의 공익 구성에 필요한 규

10)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icle 12 of the Covenant), 2000.

11) 백범석, “COVID-19와 국제 인권법의 역할”, 서울국제법연구』 27권 1호, 2020, p.43.

12) R. Flathman, *The Public Interes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6, p.43.

범적 원리들은 다음과 같이 세 층위로 나뉜다.

제 1층위는 실천적 논의를 이끄는 도덕적 최고원리들이며, 제 2층위는 공익의 내용을 채워줄 실질적인 정치적 도덕원리들이다. 제 3층위는 공익판단이 내려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contextual consideration), 즉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고려이다. 특히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때에는 제 3층위에서의 판단이 핵심이 된다. 플래스먼은 공익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시도는 상대방과 공중을 향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정당화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득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쪽 가치의 일방적인 옹호 대신 객관적 사실증거를 바탕으로 한 속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¹³⁾ 이러한 논의는 당면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공리주의적 논거를 바탕으로 다수 개인의 이익인 공중보건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제 3층위적 논거, 즉 객관적 사실 증거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공익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각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공중을 향해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 증거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3.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소상공인의 권리

3.1.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생계권의 정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분명 코로나 19로 인한 공중 보건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였으나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초래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그 피해가 컸던 인구집단으로 고객이 매장에 직접 방문해야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꼽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업장의 운영 시간부터 방문 가능한 인원까지를 포괄하는 많은 부분에 제한을 받았고, 이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피해를 완화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소상공인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는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리 제한이라는 문제에 대해 실증적으로 탐구하고, 더 나은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발견하

13) 김도균, “법원리로서의 공익: 자유공화주의 공익관의 시각에서”, 『서울대학교법학』 47권 3호, 2006, p.180.

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소상공인의 권리 침해 양상을 검토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 어떤 범위의 사람들을 지칭하는지 명확히 하고자 한다. 법적으로 소상공인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미만(그밖의 업종)인 사업체”이다. 여기서 『중소기업기본법』 제 8조 1항에 따른 매출액 기준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경우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등의 경우 평균매출액 3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의 경우 평균매출액 50억원 이하, 각종 제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80억원~120억원 이하이다. 정리하자면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10인 미만인 동시에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인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 중 약 93.7%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에서는 약 44.2%를 차지한다.¹⁴⁾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침해되는 소상공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세계 인권선언 제 23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세계 인권선언 제 25조 1항은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력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 인권선언이 대체로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196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자유권규약에는 개인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 제 6조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범들에서 폭넓게 규정되는 노동 및 생계 보장에 관련된 권리들을 소상공인에게 적용하여 “생계권”이라고 통칭하고자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계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헌법 제 23조 1항은 재산권을, 제 32조 1항은 근로의 권리를 천명함으로써 국민이 근로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근로의 권리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해석된다.¹⁵⁾ 또한,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 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14)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2020.

15) 김경재, “복지국가의 개념과 본질”, 법제월보 11권 1호, 1969, p.10.

리” 또한 국민의 생계권을 지지하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생계는 인간다운 생활의 최저한의 물질적인 기초로서 헌법 제34조 1항 그 자체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¹⁶⁾

한편 단순히 소상공인의 수입이 감소하는 것과 소상공인의 생계권이 침해되는 것 사이의 구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 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수입이 일정 범위 내에서 하락하는 것은 권리의 심각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지만, 그 정도가 일정 수준을 지나쳐 본인과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결핍을 초래하게 된다면 이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 6조에 규정된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수입 감소를 단순한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넘어 생계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경제적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 이후 서울 지역의 카페, 일반음식점, 주점 등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 매출이 전년 대비 50% 가량 하락했고, 소상공인 중 약 97.6%가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¹⁷⁾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 19 발생 이후 전체의 12%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주인 혼자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19 본격화 이후 약 1년 사이에 금융부채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소상공인 수는 11.1만 곳에서 20.7만 곳으로 2배 가량 급증했고, 그 사이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약 126조원 가량 증가해 18% 이상 늘어났다.¹⁸⁾

소상공인들이 직원을 모두 내보내고 추가로 빚을 지면서도 적자를 보는 사업체를 유지하는 이유는 폐업하는 순간 대출금과 밀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 이후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료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¹⁹⁾ 2021년 9월 현재 명동·이태원·가로수길 등 핵심 상권의 1층 상가마저 공실율이 60~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폐업 후 권리금을 회수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²⁰⁾ 다수의 소상공인은 기약 없이 매달 발생하는 손실을 개인 대출로 감당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모든 피해를 떠안고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단순한 영업의 자유 제한을 넘어 생계권 침해의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재산권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생계권에 주목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은 재산권 침해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때에는 온전히 파악하기

16) 최규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심사기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p.39.

17) 변희원, “4단계 한달... 자영업자 매출 50%가 사라졌다”, 『조선일보』, 2021년 8월 9일.

18) 서유정, “840조 빚더미 자영업자... 9월 부채 상환 시한폭탄”, 『MBC 뉴스』, 2021년 7월 20일.

19) 안재승, “폐업이 부럽다는 자영업자들의 한탄”, 『한겨레』, 2021년 7월 28일.

20) 박현군, “거리두기 4단계장기화로 자영업 빈사 상태”, 『식품외식경제』, 2021년 9월 2일.

어렵기 때문이다. 생계권은 근로의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재산권과는 구분되는 여타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렇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권리 제한을 오로지 재산권 제한의 관점으로 접근해 금전적 보상만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이는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과소계상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3.2. 소상공인 생계권의 침해 양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부담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불균등하게 배분되었다. 공무원, 기업 근로자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의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지는 않았지만, 보다 취약한 근로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생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특히 식당, 카페, PC방, 미용실, 학원, 숙박시설, 체육시설 등 다른 사람들이 직접 방문해야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권리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비해 크게 제한된 측면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0년 3월 이후 지난 18여 개월간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에 있어서 제약을 받아왔다. 2020년 9월부터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면적 당 인원 상한선 기준이 의무화되어 활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제한되었다. 2020년 11월부터는 운영 시간이 05시부터 21시~22시까지로 제한되며 저녁 시간대에 발생하던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는 소상공인이 많아졌다. 2020년 12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실내 집합 가능 인원이 4~2명으로 줄어들며 숙박·교육서비스·음식점·카페 등 주요 업종에서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나아가 2020년 3월 및 2020년 12월 ~ 2021년 1월의 일부 기간에는 PC방·노래방·실내체육시설·학원 등 특정 업종 전체의 영업을 제한하는 엄격한 규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 노래방·PC방(-34.8%), 술집(-28.9%), 카페(-21.5%), 외식업(-18.7%) 등 총 147개 업종 중 81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평균 10% 이상의 급격한 매출 하락을 겪었다. 이에 2020년 한 해에만 소상공인 영업 손실이 21조원 가량 발생하였고, 44.6%의 소상공인이 폐업을 고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²¹⁾ 이러한 피해는 2021년에도 지속되었는데, 이미 2019년 대비 매출이 저조해진 상태에서 2021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선포된 이후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추가적으로 26.4% 하락했다.²²⁾ 이러한 수치는 많은 소상공인이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에 심각한 실체적 위협을 겪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1) 홍규빈, “소상공인도 코로나 양극화”, 『연합뉴스』, 2021년 5월 24일.

22) 김정환, “자영업자 91%, ‘이대로라면 1년 안에 폐업할 수밖에’”, 『매일경제』, 2021년 9월 1일.

이에 더해, 소상공인의 생계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영업 제한 규정들이 자의적이고 그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정 업종들은 영업을 전면 제한되지만 다른 업종들은 영업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고, 10시 이후 영업 금지라는 시간 기준과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인원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어왔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근거 제시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보건행정학회의 권순만 회장은 2021년 2월 개최된 ‘사회적 거리두기체계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논리와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며 9시 이후 영업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에 대해 논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순만 회장은 “거리두기 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없다. 아예 안하면 엄청난 파국을 부르고 완전 봉쇄하면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점은 알지만 중간 단계 거리두기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집단 감염이 계속될텐데 근거를 쌓아 근거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거리두기 단계가 아니라 거리두기의 구체적 구성 요인 중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봐야 한다. 단계에 매몰돼서는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²³⁾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필연적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공중 보건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를 최소화하려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별다른 근거 없이 제시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의 세부 구성요소들을 검토하고, 각각의 요소들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있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소상공인 생계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3.3. 현금성 지원 방식의 한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발생한 집중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의 현금성 복지 지원이 수차례 이뤄지기도 했다. 정부는 코로나 19 발생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1차 최대 200만원, 2차 최대 200만원, 3차 최대 300만원, 4차 최대 500만원, 5차 최대 2,000만원에 불과했는데, 많은 소상공인은 “한 달 임대료와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²⁴⁾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23) 권희현,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어떻게...‘단체기합’ 방식 벗어나야”, 『연합뉴스』, 2021년 2월 22일.

24) 강나림, “코로나보다 굶주림, 주저앉는 소상공인들”, 『MBC 뉴스』, 2020년 9월 7일.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 제 23조 3항에서 제시된 “정당한 보상”은 재산권에 가해진 객관적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안은 소상공인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현금성 지원은 한정된 재원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만을 지원의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는 배제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의 자격을 규정하여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2021년 3월 추진된 제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경영 위기’ 유형의 지급 기준은 “속한 업종의 평균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는지”의 여부였고, ‘매출 감소’ 유형의 지급 기준은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업체인 동시에 매출이 감소했는지”였다. 이에 업종 평균 매출 감소율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업종 구분 없이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라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 전액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재정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피해야 할 조치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소상공인의 가계 대출 잔액은 2019년 대비 118.6조원 늘어난 데에 반해 정부가 2020년 말까지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14조원에 불과했다.²⁵⁾ 만약 2020년에 늘어난 소상공인의 가계 대출 잔액을 전액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2020년 대한민국 총 예산인 512조 3000억 원 중 약 23%가 소요될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손실액 전액을 정부 재정으로 보상하기 어렵다면, 보상 정도를 완만하게 높이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간헐적인 소규모 재정 지원보다는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한 생계권의 확실한 보호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2021년 9월 2일 열린 자영업 관련 5개 단체의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6.8%는 코로나 공존시대를 대비한 완화된 방역체계의 전환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고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한 지원보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2021년 8월 개최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심포지엄’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윤 교수는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일부를 병상과 의료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에 투입하여 코로나 19의 치명률을 낮추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 관점에서 봤을 때 더 효

25) 조정훈, “개인을 위한 국가인가? 국가를 위한 개인인가?”, 『월간 복지동향』 14호 4권, 2013, p.33.

울적”이라고 언급했다.²⁶⁾

4.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소상공인 생계권에 미치는 영향

4.1. 통계분석을 위한 변수 정의

해당 절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생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각 구성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소상공인 생계권이 제한되는 정도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되는 월별 소상공인 시장경기동향 지수(Business Survey Index, 이하 “BSI”)를 사용하고자 한다. 앞서 3.1.절에서 언급되었듯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동향이 얼어붙는 것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코로나 19 시대에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곧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어진다. 평균적인 소상공인의 월 평균 매출액 중 약 20%가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으로 남고, 비용의 대부분이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의 고정비용이므로, 매출이 5% 하락하는 것은 소상공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25% 급락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⁷⁾ 매출이 20% 이상 하락하면 소상공인은 적자를 감당하며 영업을 이어나가거나 영업을 포기하고 임대료 및 대출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 결국, BSI로 나타나는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 활성화 정도가 낮아지는 것은 소상공인 생계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또한, 이어질 통계 분석에 앞서 몇 가지 변수들을 정의하고자 한다. 우선 소상공인 생계권 침해 정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편의상 11가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요소를 각각 다음과 같이 지칭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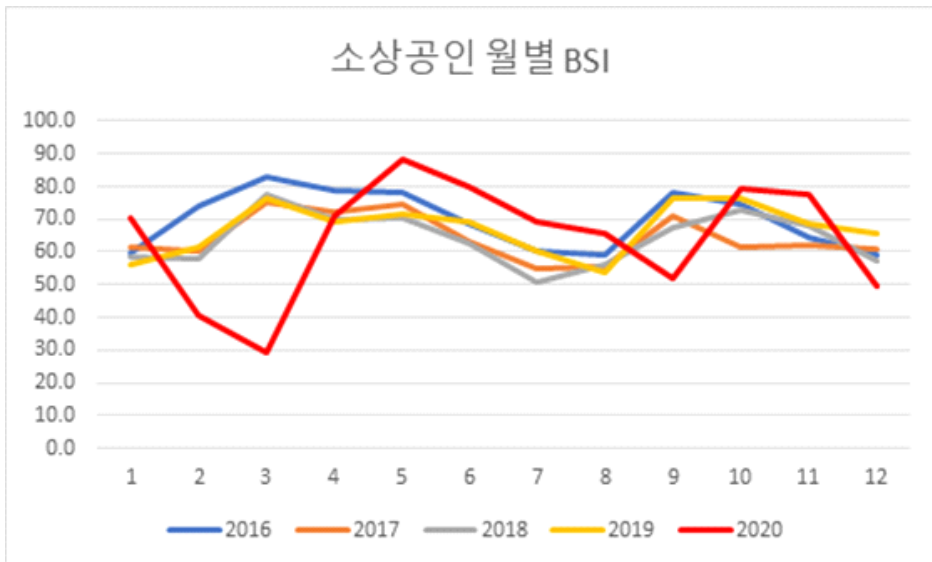
X1	실외집합 99명 제한
X2	실외집합 49명 제한
X3	실외집합 9명 제한
X4	실외집합 4명 제한
X5	실내집합 99명 제한
X6	실내집합 49명 제한
X7	실내집합 9명 제한
X8	실내집합 4명 제한
X9	실내집합 2명 제한
X10	영업시간 22시 제한
X11	영업시간 21시 제한

26) 김나현, “‘확일적 거리두기 효과 없다’ 전문가들, 방역체계 전환 주문”, 『메디컬업저버』, 2021년 8월 25일.

27) 안재승, *op. cit.*

4.2. 통계분석 모델의 설명

기존의 BSI는 월별 경향성을 띠고 있었다. 즉, 서로 다른 해의 월별 BSI는 서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가령 2~3월 무렵에는 상향세를, 7~8월 무렵에는 하향세를 보이는 경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식이다. 이는 BSI가 일반적으로 계절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6, 2017, 2018, 2019년까지의 월별 BSI 자료에 대해 서로 다른 두 자료의 상관계수를 계산해보면 그 절댓값이 최소 0.72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인 2020년과 이전 연도들의 BSI 상관계수를 계산해보면 그 값들이 모두 0에 가깝다. 이전에 존재했던 BSI의 계절성이 코로나 이후로 깨졌으며 BSI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음을 시사한다. 월별 BSI의 탈계절화는 기존에 우세했던 계절성이라는 요소를 압도할만한 변수가 나타났음을 의미하며, 본 절에서는 그 새로운 변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요소를 설명변수로 하여 소상공인 BSI를 예측하는 모델을 정당화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설명변수가 BSI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X1~X11을 독립변수로, BSI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일부를 예시로 들자면 아래와 같다.

		adBSI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170	2020-08-16	67.545161	0.0	1.0	0.0	0.0	0.0	1.0	0.0	0.0	0.0	0.0	0.0
171	2020-08-17	67.435484	0.0	1.0	0.0	0.0	0.0	1.0	0.0	0.0	0.0	0.0	0.0
172	2020-08-18	67.325806	0.0	1.0	0.0	0.0	0.0	1.0	0.0	0.0	0.0	0.0	0.0
173	2020-08-19	67.216129	0.0	1.0	0.0	0.0	0.0	1.0	0.0	0.0	0.0	0.0	0.0
174	2020-08-20	67.106452	0.0	1.0	0.0	0.0	0.0	1.0	0.0	0.0	0.0	0.0	0.0
175	2020-08-21	66.996774	0.0	0.0	1.0	0.0	0.0	0.0	1.0	0.0	0.0	0.0	0.0
176	2020-08-22	66.887097	0.0	0.0	1.0	0.0	0.0	0.0	1.0	0.0	0.0	0.0	0.0
177	2020-08-23	66.777419	0.0	0.0	1.0	0.0	0.0	0.0	1.0	0.0	0.0	0.0	0.0
178	2020-08-24	66.667742	0.0	0.0	1.0	0.0	0.0	0.0	1.0	0.0	0.0	0.0	0.0
179	2020-08-25	66.558065	0.0	0.0	1.0	0.0	0.0	0.0	1.0	0.0	0.0	0.0	0.0
180	2020-08-26	66.448387	0.0	0.0	1.0	0.0	0.0	0.0	1.0	0.0	0.0	0.0	0.0
181	2020-08-27	66.338710	0.0	0.0	1.0	0.0	0.0	0.0	1.0	0.0	0.0	0.0	0.0
182	2020-08-28	66.229032	0.0	0.0	1.0	0.0	0.0	0.0	1.0	0.0	0.0	0.0	0.0
183	2020-08-29	66.119355	0.0	0.0	1.0	0.0	0.0	0.0	1.0	0.0	0.0	0.0	0.0

이를 활용한 결과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coef	std err	t	P> t	[0.025	0.975]	
Dep. Variable:	BSI	R-squared:	0.734	Intercept	78.2068	1.161	67.344	0.000	75.923	80.490
Model:	OLS	Adj. R-squared:	0.729	C(x1)[T.1.0]	-0.7375	1.614	-0.457	0.648	-3.910	2.435
Method:	Least Squares	F-statistic:	146.9	C(x2)[T.1.0]	-8.2270	1.281	-6.421	0.000	-10.746	-5.708
Date:	Sun, 26 Sep 2021	Prob (F-statistic):	4.43e-103	C(x3)[T.1.0]	-7.2529	0.847	-8.564	0.000	-8.918	-5.588
Time:	21:49:12	Log-Likelihood:	-1314.4	C(x4)[T.1.0]	-23.8387	1.762	-13.529	0.000	-27.303	-20.374
No. Observations:	381	AIC:	2645.	C(x5)[T.1.0]	-0.7375	1.614	-0.457	0.648	-3.910	2.435
Df Residuals:	373	BIC:	2676.	C(x6)[T.1.0]	-8.2270	1.281	-6.421	0.000	-10.746	-5.708
Df Model:	7			C(x7)[T.1.0]	-7.2529	0.847	-8.564	0.000	-8.918	-5.588
Covariance Type:	nonrobust			C(x8)[T.1.0]	-2.4830	0.953	-2.606	0.010	-4.357	-0.609
				C(x9)[T.1.0]	-21.3557	1.198	-17.824	0.000	-23.712	-19.000
				C(x10)[T.1.0]	0.6776	2.374	0.285	0.775	-3.991	5.346
				C(x11)[T.1.0]	-11.0568	2.030	-5.446	0.000	-15.049	-7.065

사회적 거리두기 요소로 BSI를 설명하려고 하는 모델은 높은 결정계수와 매우 낮은 p-value를 보인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요소 각각이 BSI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예를 들자면, 실내 2인 집합 금지 조치(X9)는 평균적으로 BSI를 21정도 감소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위 자료를 통해 다수의 사회적 거리두기 요소가 BSI 감소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6절에서 시행할 시뮬레이션에서, 특정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에 소상공인 BSI 기댓값이 얼마일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4.3. 시뮬레이션에서의 활용 방안

본 연구의 목표는 6절의 시뮬레이션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보다 나은 가이드라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조합해보고 각 가이드라인 하에서의 ①소상공인의 생계권과 ②코로나 종식을 목표로 하는 공중보건권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4.2. 절에서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이 중에서 ①소상공인 생계권 보장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다. 시뮬레이션 속의 특정 상황 하에서 BSI가 어떤 값을 가질지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가이드라인 샘플이 ‘1단계에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2단계에서는 X2와 X6를, 3단계에서는 X3와 X7을, 4단계에서는 X4, X8, X10을 시행한다’라고 하자. 이 경우 이 샘플이 시뮬레이션 상에서 3단계 조치 200일, 2단계 조치 100일 후에 코로나가 종식된 샘플이라고 한다면, 이 샘플 가이드라인의 평균 BSI는 $\frac{2}{3}f(X3, X7) + \frac{1}{3}f(X2, X6)$ 으로 계산되는 식이다(여기서 f 는 3.2.3절에서 구한 로지스틱 회귀식이다).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에 등장하는 각 샘플들이 소상공인 생계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어지는 5절에서는 6절의 시뮬레이션을 완성하기 위한 또 한 축의 기둥인, 특정 가이드라인 하에서의 종식 시기 예측을 위한 모델을 구축할 것이다.

5.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감염병 확산에 미치는 영향

5.1. 감염병 확산 모델의 활용

앞서 4절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의해 소상공인 생계권이 침해되는 정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특정 가이드라인이 주어졌을 시, 코로나 종식 때까지의 평균 BSI 기댓값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표는 최적 가이드라인의 탐색인 만큼, 소상공인 생계권만을 고려해서는 서로 다른 가이드라인을 균형 있게 비교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소상공인의 평균 BSI를 높게 유지해주는 가이드라인은 코로나 종식 시기를 미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코로나 종식 시기를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공중보건권을 어느 정도로 보장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만 비로소, 6절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객관적 사실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이 주어졌을 경우 각 조치 하에서 감염률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감염병 확산 모델인 SIR 모델을 활용했다. SIR 모델은 감염병 확산의 본질을 다음 세 가지 미분 방정식을 통해 나타내는 모델이다.²⁸⁾

$$\frac{dS}{dt} = -\beta SI$$

$$\frac{dI}{dt} = \beta SI - \gamma I$$

$$\frac{dR}{dt} = \gamma I$$

이때, S는 질병 감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Susceptible), I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Infected), R은 질병으로부터 회복한 사람(Recovered)이다. S의 미분값(변화량)은 해당 시기의 S와 I의 값에 비례한다. 감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S)과 감염을 시킬 수 있는 환자(I)가 많을수록 비감염자(S)는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비례의 정도를 나타내는 β 가 바로 그 질병의 감염률이다. 비슷한 논리로 R의 미분값(변화량)은 해당 시기의 I에 비례한다. 질병에 걸린 사람(I)이 많을수록 완치자(R)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비례의 정도를 나타내는 γ 가 바로 회복률이다. 한 기의 새로 발생한 확진자수가 βSI 이고 새로 완치된 사람이 γI 이기 때문에 I의 미분값(변화량)은 자연스럽게 $\beta SI - \gamma I$ 가 된다.²⁹⁾

그러나 위와 같은 기존의 SIR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염률 β 를 고정된 상수로 본다. 질병별로 이미 확정된 β 값이 존재한다는 식이다.³⁰⁾ 그러나 감염률은 상식적으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는지에 따라 비록 같은 질병이더라도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절 시행되지 않을 때는 β 가 비교적 높을 것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하게 시행될 때는 β 가 낮을 것이다. 따라서 β 는 단순한 상수가 아닌, 그 시기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의해 결정되는 함수로 보는 게 적절하다.³¹⁾ 이에 서울시에서의 감염률 β 가 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하에서 어떤 값을 가지는지 알아보았다.

28) 차재혁·박건·송상현, “감염의 위험도를 고려한 COVID-19 확산 예측수확 모델 개선에 관한 연구”, 『과학영재교육』 12권 2호, 2020, p.168.

29) 도미진·김종태·최보승, “SEIR 모형을 이용한 전염병 모형 예측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8권 2호, 2017, p.298.

30) 김현지·이혁재, “Mathematical multi-city model for predicting the spread of infection”, 『새물리』 66권 4호, 2016, pp.495-496.

31) 최선화·기모란, “Estimating the reproductive number and the outbreak size of COVID-19 in Korea”, 『Epidemiology and Health』 42권 1호, 2020, p.4.

5.2. 감염률 β 의 산출

특정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β 가 어떤 값을 가졌었는지는, 사후에 주어진 자료를 역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n+1)$ 기의 신규확진자는 n 기의 S 와 I , 그리고 n 기의 감염률 β 의 곱으로 나타내지기 때문이다. β 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은 데이터로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각 일자별 β 값을 역산할 수 있다. 아래는 감염률 β 의 역산 과정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사용된 자료의 일부를 가지고 온 것이다.

날짜	N	S	R	I	Beta
2021-01-05	199	9755674	12299	8027	3.3585E-09
2021-01-06	263	9755411	12636	7953	3.82807E-09
2021-01-07	297	9755114	12756	8130	2.4083E-09
2021-01-08	191	9754923	12308	8769	2.19778E-09

2021년 1월 5일의 β 는 $\frac{263}{9755674 \times 8027}$ 로 계산될 수 있다. 신규확진자(N)는 개념상

$-\frac{dS}{dt}$ 이며 $\frac{dS}{dt} = -\beta SI$ 이기 때문이다. 또한

$$N_{(t+1)} = -\frac{dS}{dt} = -(-\beta_t S_t I_t) = \beta_t S_t I_t$$

$$\beta_t = \frac{N_{(t+1)}}{S_t I_t}$$

위와 같이 일자별로 그 일자의 β 를 역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낸 β 는 분명 사회적 거리두기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값이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β 사이의 관계를 알아낸다면, 특정 조건 하에서 다음 기의 신규확진자가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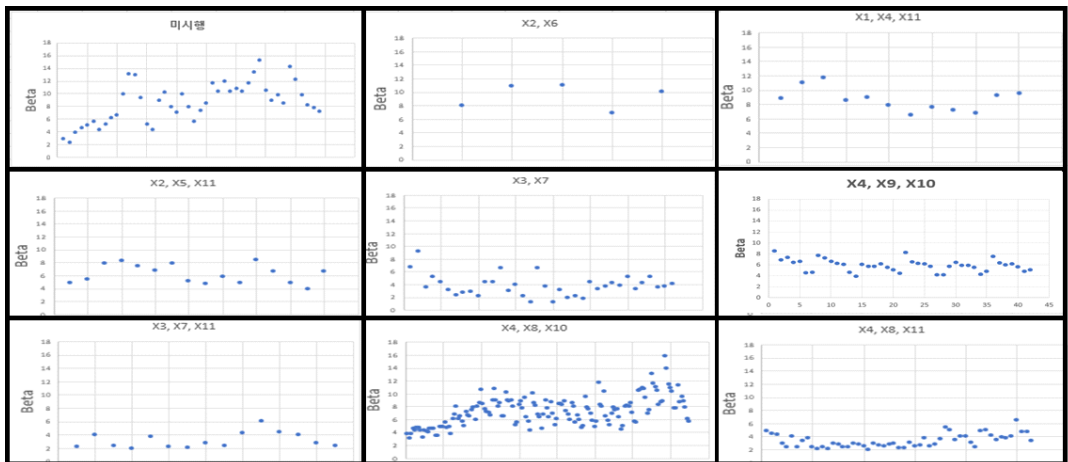
5.3.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감염률 β 사이의 관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β 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페어링이 필요하다. 당장 오늘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일의 신규확진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

문이다. 오늘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의 감염률 β 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해석할 경우 큰 오류가 발생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신규 확진자라는 결과를 내기까지 시간 지연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효과는 시행과 결과 사이에 일주일 정도의 간격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특정 날짜의 감염률 β 는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날짜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³²⁾ 4.2. 절에서 활용한 예시를 다시 참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날짜	N	S	R	I	Beta	날짜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2021-01-05	199	9755674	12299	8027	3.3585E-09	2021-12-29	0	0	0	1	0	0	0	1	0	0	1
2021-01-06	263	9755411	12636	7953	3.82807E-09	2020-12-30	0	0	0	1	0	0	0	1	0	0	1
2021-01-07	297	9755114	12756	8130	2.4083E-09	2020-12-31	0	0	0	1	0	0	0	1	0	0	1
2021-01-08	191	9754923	12308	8769	2.19778E-09	2020-01-01	0	0	0	1	0	0	0	1	0	0	1

2021년 1월 5일의 β 가 3.3585E-09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2021년 12월 29일 무렵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데이터와 '감염률 β ' 데이터는 일주일을 엇갈리게 해서 페어링해야 적절하다. 이렇게 페어링한 결과,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합이 β 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올라갈수록 β 가 억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32) *Ibid.*, pp.4-5.

‘실내외 4인 집합 제한’ 및 ‘21시 영업 제한’이 시행되었을 때의 β 는 그 값이 2.0E-09에서 4.0E-09 사이에 몰려 있다.

위의 산포도를 통해 특정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하에서 감염률 β 가 어떤 값을 가질지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가령 X4, X8, X11을 시행하겠다고 하면 그때의 β 는 위 9번째 산포도의 값 중 하나를 임의로 배정해주면 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시뮬레이션 한 샘플 가이드라인에 대해 날짜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게 될 신규 확진자수를 예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코로나 종식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의 한 가이드라인이 ‘1단계에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2단계에서는 X2와 X6를, 3단계에서는 X3와 X7을, 4단계에서는 X4, X8, X10을 시행한다’라고 하자. 이때 날짜가 진행됨에 따라 2단계였던 상황이 3단계로 바뀌었다면 이때부터는 ‘X2, X6 산포도’가 아닌 ‘X3, X7 산포도’에서 감염률 β 를 뽑아오게 된다.

6.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 탐색

6.1. 시뮬레이션 모델의 설계

오늘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의 소상공인 경기지수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일주일 후의 감염률 β 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정되면 ①소상공인 BSI와 ②감염률 β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각 날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에 의해 결정되며, 가이드라인이 지정한 확진자 기준을 넘길 때마다 그 단계가 격상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시뮬레이션에 이 체계를 설정해놓고,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인풋으로 투입할 경우, 코로나 종식 때까지의 소상공인 BSI의 동향과 종식까지 걸리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정확히 어떤 방식의 시뮬레이션인지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한 가지 예를 살펴보자. 9월 1일 기준 서울시의 실제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은, 2단계에서 X3, X7을 시행하고, 3단계에서 X4, X8, X10을 시행하며, 4단계에서는 X4, X9, X11을 시행한다. 그리고 각 단계별 격상 기준은 서울 내 100명, 200명, 400명이다. 이 가이드라인 하에서 9월 1일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9월 1일 기준 최근 일주일의 확진자수는 400명을 초과하므로 9월 1일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X4, X9, X11로 결정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정되었으므로 $f(X4, X9, X11)$ 을 계산하면 ①9월1일의 소상공인 BSI를 산출할 수 있다. 그리고 9월 1일의 신규 확진자는 8월 31일의 감염률 β 와 S, I의 곱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 8월 31일의 β 는 그보다 일주일 전인 8월 24일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X4, X9, X11)로 결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8월 31일의 β 는 5.3절의 6번째 산포도 상의 점 중

하나로 결정된다. 이 과정을 통해 ②9월 1일의 신규확진자 수까지 알아낼 수 있다. 이후 9월 2일부터도 이와 똑같은 논리를 거쳐 BSI와 신규 확진자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특정 가이드라인이 인풋으로 주어졌을 경우 그 가이드라인 하에서의 소상공인 BSI 기댓값과 코로나 종식까지의 기간 기댓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다른 가이드라인을 비교할 수 있고, 이때 소상공인 생계권과 공중보건권이 조화를 이루는 지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2. 가능한 가이드라인 후보 생성

가이드라인의 각 단계를 구성할 수 있는 조치의 조합은, 과거 자료가 존재하는 다음의 9가지로 한정된다. 이외의 조합에 대해서는 과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의로 β 를 추정해야 하기에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O	미시행
A	X2, X6
B	X3, X7
C	X1, X4, X11
D	X2, X5, X11
E	X3, X7, X11
F	X4, X8, X10
G	X4, X9, X10
H	X4, X8, X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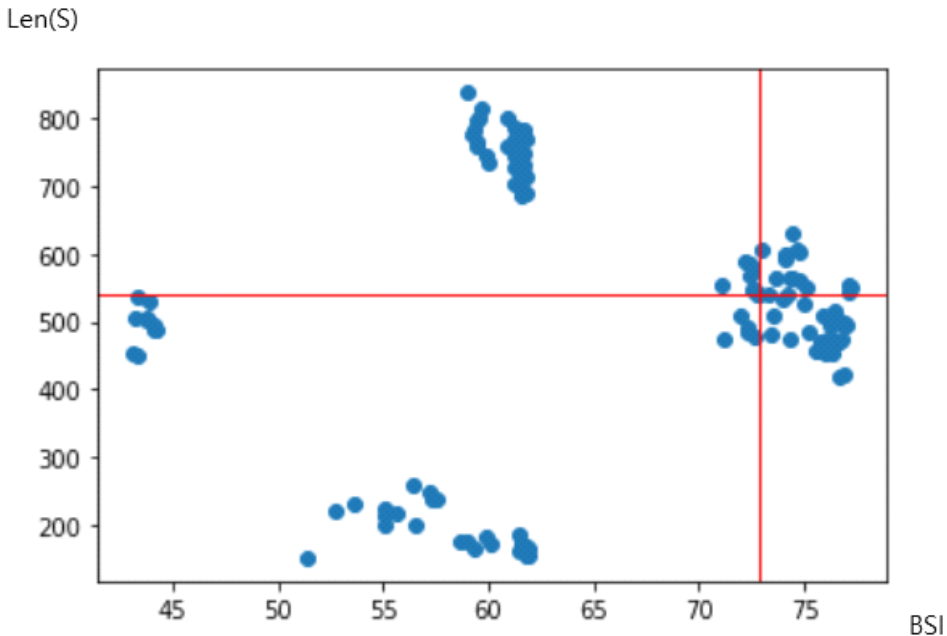
현행 가이드라인이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만큼 이 9개 중 4개를 조합한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후보들이다. 가령 O, A, C, F를 선택했다면, 1단계에서는 거리두기 미시행, 2단계에서는 X2, X6 시행, 3단계에서는 X1, X4, X11 시행, 4단계에서는 X4, X8, X10을 시행하는 식이다. 실제로 9월 1일 기준 서울시의 현행 가이드라인은 O, B, F, H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총 ${}_9C_4(126)$ 개의 가이드라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6.3.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126개 각각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코로나가 종식(일주일 평균 확진자수 1명 미만)될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100번씩 돌린다. 그리고 각 시뮬레이션에서 그 가이드라인의 종식

기간과 소상공인 BSI를 기록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값을 평균내서 그 가이드라인에 할당해주는 식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가이드라인(OABC)의 열 번의 시뮬레이션 결과 소상공인 평균 BSI가 72였고, 종식 기간의 평균값이 3500일이었다면, (72, 3500)이 OABC에 할당된다.

이런 식으로 각 가이드라인에 값을 할당해줄 경우, 이제 개별 가이드라인이 ①소상공인의 생계권과 ②공중보건권을 각각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장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중보건권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소상공인의 생계권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결과는 막을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증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현행 가이드라인보다 더 나은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익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소상공인의 생계권을 최대한도로 보장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실제로 126개 가이드라인의 기대 BSI와 기대 종식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인 O, B, F, H의 위치가 두 개의 빨간 수직선의 교점이다. 세로축이 기대 종식시기를 나타내고 가로축이 BSI를 나타냄을 고려할 때, 두 수직선 기준 제4사분면에 위치하는 후보들은 현행 가이드라인보다 객관적으로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코로나 종식까지 걸리는 기대 기간도 짧을뿐더러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도 더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가이드라인은 파레토 최적점이 아니며 좌하향에 위치하는 가이드라인들로 옮겨가야 한다. 이를 통해 공중보건권과의 충돌은 최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의 소상공인 BSI는 극대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계권을 보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상 최적의 가이드라인은 예상 종식기간 약 424일에, 기간 평균 소상공인 BSI를 76.93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O, B, D, E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1단계에서는 미시행, 2단계에서는 X3와 X7 시행, 3단계에서는 X2, X5, X11 시행, 4단계에서는 X3, X7, X11을 시행한다. 즉, 현행 가이드라인(O, B, F, H)에 대한 우월적 대안(O, B, D, E)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코로나 종식과 소상공인 BSI 유지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기존의 안을 통계적으로 압도하는 대안이다.

6.4. 백신 접종률의 고려

앞서 6.3 절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기에 앞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코로나 치사율 감소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률은 9월 26일 기준, 1차 접종 74.1%, 2차 접종 45.2%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역시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를 풀어주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9월 1일 기준 가이드라인의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식당과 카페에서는 2명까지밖에 같이 있을 수 없지만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 그 인원제한을 4인까지 풀어주는 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백신 접종자에 한해 그 제한을 완화해주는 만큼, 이전과 동일한 수준만큼 BSI 감소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두 축 중에서 상대적으로 BSI 축의 중요도가 조금 더 낮아지게 된다. 위 그래프 상에 찍힌 것보다 BSI가 실제로는 조금 더 오른쪽에 찍힐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신 접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자(접종자)들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코로나 자체의 치사율을 낮춘다. 이는 나머지 하나의 축인 코로나 종식 기간의 기댓값의 상대적 중요도를 낮춘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치사율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짧은 종식 기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익의 증가분은 작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보건전문 연구단체 KFF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평균적인 돌파 감염률은 1%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사망률은 사실상 0.00%라고 밝힌 바 있다.³³⁾ 따라서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종식 기대 기간 감소로 인한 공익의 증가분보다 BSI 증가분의 영향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백신의 접종은 본 논문에서 시뮬레이션 결과의 해석 수단으로 활용한 두 축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로 인해 BSI 충격 정도를 완화해 주며 접종자에 한해 치사율을 감소시켜 빠른 종식 시점으로 인한 기대 이익도 줄이기 때

33) 박현영, “백신 맞아도 걸린다? 美 돌파감염 확진 0.5%...사망은 사실상 0%”, 『중앙일보』, 2021년 8월 3일.

문이다. 두 축의 상대적 중요도를 동시에 떨어뜨리는 용도로 작용하므로 이를 선분리 현재의 시뮬레이션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한 축의 상대적 중요도를 올리고 나머지 한 축의 중요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한다면, 다소의 가중치를 설정함으로써 해석을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두 축의 중요도가 동시에 낮아지는 상황에서의 해당 요소 반영은 임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변화는 추후 정책 입안자가 사후 데이터를 활용해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달라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본질적으로 그들의 생계권이 공중보건권과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와 같은 공익적 가치와의 충돌이 일어나는 논쟁의 장에서는 객관적 사실증거가 필수적이다. 객관적 사실증거 없이 각자의 이익만을 소리치는 논쟁의 장이 도달 가능한 합의점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지점뿐이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소상공인들이 완화해달라고 하는 형태의 규제가 왜 그러한 형태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정책이 코로나의 감염률을 낮출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다만 본 논문에서 초점을 둔 부분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에 그러한 정책이 침해 최소화 원칙 등을 만족하는 정책인지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활용해 자신들의 생계권을 더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이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소상공인들의 생계권과 공중 보건권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탐색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요소가 생계권 및 공중보건권 모두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했다. ①사회적 거리두기와 소상공인 BSI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했고, SIR 모델에 기반해 ②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률 사이의 관계를 확인했다. 이 두 정보를 기반으로 126개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그 결과 현행 가이드라인을 두 측면 모두에서 압도하는 대안이 존재함을 6절에서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와 방법론은 서로 다른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침해되는 소상공인 생계권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그들의 생계권과 공중보건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이 있음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권리 침해 양상에 관해 더 건

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6절의 시뮬레이션 모델 설계에 있어 ①사회적 거리두기와 BSI의 관계, ②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률의 관계는 고려했지만, 이런 모델에 백신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2021년 9월 26일 기준으로 서울시 백신 접종률 데이터는 4개월 정도의 데이터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신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려면,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요소가 고정되어 있고 백신 접종률이 변화할 때 BSI와 감염률의 양상을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간이 짧고, 또 그 기간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요소가 고정적이지 않아 이를 모델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기계적으로 포함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통계적 편의(bias)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백신 접종률이라는 요소를 시뮬레이션 모델에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6.4절에서, ‘실제로 정책 토론의 장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백신 접종률 정보의 사후적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현재는 일별 데이터 자료가 부족해 통계적 분석이 불가능하지만, 접종률 데이터도 축적된다면 충분히 통계 분석의 한 요소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 분석이 불가능한 데이터로 인한 한계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여전히 개인의 권리와 공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유의미한 사실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BSI가 갖는 관계를 계량적으로 밝혔으며 이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6절에서의 시뮬레이션은 실제로 현행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공익 감소가 존재하지 않는 선에서 소상공인 생계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접근은 힘의 크기가 다른 두 권리 주체가 충돌할 때 어떤 식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비교적 힘이 약한 소상공인의 생계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 논저

김경재, 1969, “복지국가의 개념과 본질”, 『법제월보』 11권 1호, pp.10-21.

김대환, 2005, “우리나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공법학연구』 6권 3호, pp.191-223.

김도균, 2006, “법원리로서의 공익: 자유공화주의 공익관의 시각에서”, 『서울대학교법학』 47권 3호, pp.155-215.

김현지·이혁재, 2016, “Mathematical multi-city model for predicting the spread of

- infection”, 『새물리』 66권 4호, pp.494-501.
- 도미진 · 김종태 · 최보승, 2017, “SEIR 모형을 이용한 전염병 모형 예측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8권 2호, pp.297-307.
- 백범석, 2020, “COVID-19와 국제 인권법의 역할”, 『서울국제법연구』 27권 1호, pp.29 - 63.
- 양건, 1990, “법률의 위헌심사의 기준”, 『헌법재판연구』 제1권, 헌법재판소.
- 조정훈, 2013, “개인을 위한 국가인가? 국가를 위한 개인인가?”, 『월간 복지동향』 14호 4권, pp.21-26.
- 차재혁 · 박진 · 송상현, 2020, “감염의 위험도를 고려한 COVID-19 확산 예측수학 모델 개선에 관한 연구”, 『과학영재교육』 12권 2호, pp.164-174.
- 최규환, 201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심사기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최선화 · 기모란, 2020, “Estimating the reproductive number and the outbreak size of COVID-19 in Korea”, *Epidemiology and Health* 42권 1호, pp.1-10.
- 표명환, 2013, “독일기본법상의 기본권제한의 구조와 체계에 관한 고찰 - 우리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4권 4호, pp.31-58.
- 홍완식 외, 2010, “미국의 법령체계와 입법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법제처 정책연구』.
- 황경환, 2014, “미국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리(strict scrutiny를 중심으로)의 연구”, 『법학연구』 제22권 4호, pp.276-296.

2. 해외 논저

- Flathman, R, 1966, *The Public Interes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1984, *The Siracusa Principles on the Limitation and Derogation Provision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0,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icle 12 of the Covenant)*.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이 경험하는
페미니즘 운동과 백래시에 대한
생애사 연구**

김세연, 박채연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이 경험하는 페미니즘 운동과 백래시에 대한 생애사 연구

김세연, 박채연*

[목 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페미니즘 리부트와 그 후
 - 2. 안티 페미니즘(반페미니즘)과 백래시
 - 3.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대학 내 페미니즘
 - III.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 1. 연구 방법
 - 2. 연구 대상
 - 3. 자료 수집
 - 4. 자료 분석
 - IV. 연구 결과
 - 1. 여대에 재학 중인 18학번 여성 A
 - 2. 남녀공학 대학교에 재학 중인 19학번 남성 B
 - 3. 남녀공학 대학교에 재학 중인 19학번 여성 C
 - V.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

I. 서론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가는 것은 혼란의 연속이다. 자신의 정체성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 보며 어떤 대상을 타자화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여성의 파이를 지키자’는 말이나 ‘페미니즘을 지지하지만 남혐(남성 혐오)은 안 되지’라는 말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매번 고민한다. 20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젠더 이슈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받을 때는 부담스럽지만(김민정, 2020), 동시에 페미니즘으로 바라본 세상을 설명해주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두 연구자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대학에 입학했고 대학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페미니즘을 배웠다. 김세연은 친언니와의 대화, 대학 교양 및 전공 강의와 피해

* 김세연(인류학과 19) 박채연(사회교육과 18)

자다움을 주제로 한 전시 기획, 지인과의 독서 모임을 통해 페미니즘을 배우고 고민했다. 박채연은 대학 교양 및 전공 강의와 지인과의 독서 모임, 친구들과의 일상적 대화, 일본 군 ‘위안부’ 문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페미니즘을 습득하고 확장해나갔다. 두 연구자 각자의 삶의 굴곡에 따라 여성혐오 및 성차별적 구조를 경험해왔으며, 대학 생활 중에 페미니스트로서 단단한 연대 의식도, 직간접적인 백래시도 경험했다. 연구자들의 지난 3, 4년 대학 생활을 돌아봤을 때, 페미니즘 의제는 굉장히 다양했고 그 속에서 연구자들의 페미니즘도 단선적이지 않았다. 이 속고를 통해 연구자들은 최근의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이 경험하는 페미니즘의 특수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다. 특히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시간이 지나며 등장한 최근의 거센 백래시 속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게 연구가 시작됐다.

2015년 메갈리아에 의해 촉발된 페미니즘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크게 성장해왔다.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안희정 사건, N번방 사건과 같이 성범죄가 공론화되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 낙태죄 폐지 등 중요한 법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흥대 불법촬영 사건 및 불편한 용기 시위(혜화역 시위), 버닝썬 사건, 손정우 사건 등 손꼽기 힘들 정도로 많은 여성혐오 사건이 공론화 됐고 이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일련의 과정에서 주요한 주체로 등장한 것이 바로 20대 여성 페미니스트들이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선행연구들은 이들에게 주목했다. 메갈리아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의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게 된 사회적 맥락을 바라보거나, 디지털 환경의 활성화와 신자유주의 시대 등의 키워드를 통해 20대 여성 페미니스트들을 설명했다.

페미니즘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페미니즘을 둘러싼 담론도 다양해졌다. 『시사인』은 웹 조사를 통해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물었고, 20대 여성은 “페미니즘은 남녀의 동등한 지위와 기회 부여를 이루려는 운동”이라는 말에 67%가, “페미니즘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에 37.6%가 동의했다(『시사인』, 2021. 8. 30.).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배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는 페미니스트를 터프(Trans Exclusionary Radical Feminism/st)라 칭한다. 터프는 ‘여성만 안고 간다’는 기조를 가지고 페미니즘에 생물학적 여성만을 포용한다(나영, 2017). 메갈리아에서 파생된 위마드를 중심으로, 터프의 MTF(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 및 생물학적 남성 소수자에 대한 배제가 활성화됐다. 일부 페미니즘 시위의 참여 조건이 생물학적 여성으로 제한되거나(『여성신문』, 2020.2.27.),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많은 선행연구는 이러한 터프의 페미니즘을 연구했다.(김리나; 2017, 나영; 2017, 이현재; 2017, 고병진; 2018, 정승화; 2018b, 고은해; 2019, 윤지영; 2019, 이효민; 2019).

한편, 안티 페미니즘 진영에서 가하는 백래시의 영향력 역시 강해졌다. 일반적으로 백래시는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 심리 및 행동을 이른다(『네이버 지식백과』, 2021. 9. 22.).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를 논한 대표적 인물은 수전 팔루디(2017)

로, 그는 1970년대 미국에서 페미니즘이 확장된 후 다시 사회가 보수화되는 과정에서 백래시가 ‘페미니즘으로 인해 여성과 사회가 불행해졌다’는 담론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페미니즘적 반격은 여성들이 완전한 평등을 달성했을 때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커졌을 때 터져나왔다”(수전 팔루디, 2017: 45)며, 페미니즘 운동의 기세를 꺾는 데 기여한다고 봤다. 페미니즘 운동의 과정에 백래시는 항상 존재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아직 여성 차별적 구조가 타파되지 않았음에도 과격한 백래시가 등장하고 있다. 2021년만 돌아보더라도 지난 9개월 동안, 다양한 백래시가 이루어졌다.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서 반페미니즘적 성향을 가진 ‘이대남(20대 남성)’¹⁾이 존재감을 드러냈고, 오조오역, 웅앵웅, 허버허버 등이 ‘남성 혐오’ 표현들로 비난받기도 했다. 또한 메갈리아 손가락 논란 및 안산 선수에 대한 사이버 불링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러 양상으로 나타난 백래시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수전 팔루디, 2017; 신경아, 2017; 강준만, 2018; 김보명, 2018; 김성윤, 2018; 마경희 외, 2018; 김선해, 2019; 김보명, 2019; 박정훈, 2019; 엄혜진, 2019; 최성용, 2019; 허성학, 2020). 한편, 이러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연구 조류 중 하나로 20대 여성 페미니스트가 경험하는 페미니즘의 다양한 양상에 주목하는 연구 역시 이어졌다(강예원, 2019; 박영민·이나영, 2019; 오혜진, 2019; 추지현, 2019). 이는 20대 여성 페미니스트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들이 경험하는 페미니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백래시에 대한 논의도 함께 다뤄졌다.

페미니즘을 둘러싼 격론이 일어나는 대표적 장소는 대학이다. 대학 사회 내에서도 페미니즘 논쟁과 여성혐오 사건이 늘 등장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페미니즘의 조류를 반영하거나 만들어간다. 대학 사회는 여성혐오를 체감하는 공간이자, 페미니즘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동시에 작용한다. 이와 같이 대학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그러한 대학 사회는 대학생들의 주된 활동 반경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선행연구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20대 여성 페미니스트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 디지털 세대가 익숙히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을 주되게 바라봤으나, 모든 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페미니즘을 접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페미니즘을 접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요한 공간으로 물리적 공간인 ‘대학’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페미니즘을 둘러싼 다양한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학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페미니스트로서 하는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학내 페미니즘 운동 자체에 초점 맞춘 선행연구들과는 결을

1) 20대 남성(이대남) 현상은 문제인 정부에 대한 20대 남성 지지율이 특히 낮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면서 대두됐다(최성용, 2019; 허성학, 2020). 20대 남자 현상을 밝히고자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사인』은 20대 남성 현상이 강한 정치적 보수화나 폭넓은 여성혐오 성향은 아니며, “유일하게 일관되고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젠더와 권력이 만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시사인』, 2019.4.15.).

달리해, 현재의 페미니즘 격동을 대학생 페미니스트가 어떻게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의 페미니즘을 구성해나가는지 직접 청취하고자 했다.

서울 내 대학에 재학 중인 17~19학번의 대학생 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페미니즘 리부트가 일어난 2015년 이후에 대학에 입학했으며,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인지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20대 여성 페미니스트들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주요한 운동 주체로 삼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 정체성을 여성에 국한하지 않았다. 이들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대학생이 대학 사회 내에서 페미니즘을 어떻게 경험하고, 특히 최근 격렬해진 백래시를 어떤 방식으로 체감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생애사 연구를 통해 대학생 페미니스트의 경험을 생애 전반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특정 체험은 이전 경험과 연관되고 이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개인사에서 고유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이희영, 2005)에서, 이는 페미니스트로서의 경험을 연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이희영의 생애사 재구성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선택 가능한 삶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고 현재 삶의 구성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어떤 생애사적 체험을 배경으로 페미니즘을 추구하게 됐는가?
2. 페미니즘의 구체적인 체험 내용은 무엇인가?
 - 2-1. 백래시의 구체적인 경험 내용은 무엇인가?
3. 백래시가 각자의 페미니즘에서 차지하는 생애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4. 페미니즘과 백래시 경험이 개인의 전체 삶의 과정에서 차지하는 생애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페미니즘 리부트와 그 후

페미니즘 리부트는 2015년 이후 페미니즘의 특수성을 표현하는 용어다(손희정, 2017). 손희정(2017)은 2015년 이후의 페미니즘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영페미니스트의 운동과는 또 다른 새로운 운동이며, 새롭게 대두된 사회적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봤다. 포스트페미니즘²⁾의 논의를 대체하며 메갈리아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2) 손희정(2017)은 포스트페미니즘을 일반적으로 두 층위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스트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목표가 이미 성취됐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보수적인 흐름을 가리키는 용어이자, 본질적이라고 규정된 정체성과 주체의 경계를 해체하려는 이론적 용어다.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로서 사용한다.

리부트가 일어났고, 2016년 강남역 사건을 겪으며 여성 차별적 사회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를 수행하는 영영페미니스트³⁾가 등장한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페미니즘 운동 및 담론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페미니즘 리부트를 가능하게 했던 메갈리아의 등장 배경과 미러링 등의 전략 및 활동 양상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있다(류진희, 2015; 김은주, 2016; 박무늬, 2016; 양경언, 2016; 장민지, 2016; 조혜영, 2016; 김리나, 2017; 손희정, 2017). 메갈리아는 한국 사회의 만연한 여성혐오에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디지털 세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여성의 목소리로 온라인 공간에 개입해나간 것으로 평가받는다. 유사한 맥락에서 페미니즘 리부트와 대중화의 배경에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의 특성과 신자유주의로 인해 강화된 청년 세대의 생존 감각이 있다고 분석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한우리, 2017; 김보명, 2018; 강예원, 2019). 한우리(2017)는 영영페미니스트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페미니즘 활동에 있어 대학보다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다고 보고, 그 양상에 주목했다. 김보명(2018)은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후기자본주의와 젠더지형의 변화가 청년세대의 삶을 취약하게 만들고 여성들의 이중부담을 초래했다며, 이 과정에서 청년세대 여성들의 저항이 등장했다고 봤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페미니즘 확장 과정에서 등장한 터프에 대해서도 선행연구는 주목하고 있다(김리나, 2017; 나영, 2017; 이현재, 2017; 고병진, 2018; 이효민, 2018; 정승화, 2018b; 고은해, 2019; 윤지영, 2019; 이효민, 2019). 이들은 ‘워마드’, ‘래디컬 페미니스트’ 등 여러 방식으로 불리며, 다른 정체성보다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오혜진(2019)은 선행연구들이 터프에 대해 단순히 본질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규정하는 담론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와 같이 페미니즘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개개인의 페미니즘 자체에 집중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다(강예원, 2019; 박영민·이나영, 2019; 오혜진, 2019; 추지현, 2019).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이들을 하나의 세대로, 하나의 경향성을 띤 이들로 묶어버리는 순간 페미니즘 내부의 차이가 삭제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추지현(2019)은 페미니스트들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이 특정한 방식으로 실천되는 이유와 그 변이 요인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페미니즘을 범주화시켜 비교적 단일한 관점에서 보는 것을 경계하고 페미니즘과 그 실천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주시했다.

3)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새롭게 대두된 페미니스트들을 일컫는 말로, 이들을 90년대 중반 이후 활동한 영페미니스트와 구분하면서 등장한 용어다. 이들은 메갈리안(메갈), 넷 페미니스트, 디지털 페미니스트, 강남역 세대, 요즘 페미 등 다양하게 불린다(오혜진, 2019).

2. 안티 페미니즘(반페미니즘)과 백래시

사회운동은 흔히 나선형의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표현된다. 운동 진행 과정에서는 항의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이 역시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운동 역시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안티 페미니즘(반페미니즘) 담론은 끊이지 않았으며, 그와 함께 발생한 백래시의 양상은 다양하다.

백래시는 일시적 반동이 아니라 권력투쟁의 경험이 쌓이는 과정에서 발생한다(엄혜진, 2019). 이는 페미니즘 자체에 대한 조직적이고 강력한 반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의 문제 제기과 언어를 가볍게 여기는 형태로도 드러난다. 페미니즘의 대의에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를 부차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다. 최성용(2019)은 이를 “연성화된 반페미니즘”이라고 부른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백래시임을 모른 채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팔루디(2017)는 대부분의 백래시는 개인들의 내면화된 행동으로 나타나며, 이는 페미니즘에 역행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이러한 백래시는 자생적으로 논리를 구축해나가고 조직적인 안티 페미니즘 세력을 결집했다. 이것은 여성을 타자화하는 여성혐오 사고와는 다르다. 페미니즘 자체에 문제 제기하며, 페미니즘의 주장을 “해악”으로 여기고, 자신이 그 주장을 “정화하는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변기찬, 2004:78). 백래시를 자행하는 조직에는 2008년 남성연대, 2010년 안티페미협회(안페협), 2018년 한국성평화연대(한성연), 2018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당당위), 2021년 신남성연대 등이 있다.

1) 백래시의 흐름

한국 사회의 백래시 양상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논할 수 있다(김선해, 2019).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기까지, 그리고 2015년 이후다. 1990년대 영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페미니즘 운동에, 백래시가 잇따랐다. 1998년 군가산점제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페미니스트들은 거센 백래시를 겪었고 이후 페미니스트는 남성의 적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됐다(김선해, 2019). 2000년대 중반부터 여성운동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05년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바꿨고, 2007년 숙명여대에서는 협동 과정 여성학과가 여성학이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철거 선고를 받았다(강준만, 2018). 동시에 1998년 남녀차별금지법 제정, 2001년 여성부 신설, 2005년 호주제 폐지와 같은 큼직한 사건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성의 차별적인 현실은 과거의 문제로 취급됐으며, 신자유주의의 강화로 성차별적 현실이 개인의 몫으로 귀결됐다(권김현영, 2019).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백래시로 포스트 페미니즘이 대두됐다(박영민·이나영, 2019). 여성들조차 페미니즘

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며, 개인의 노력을 통해 충분히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독립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이다혜, 2012).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안티 페미니즘 담론은 과거와 다른 특징이 있다. 우선, 안티 페미니즘적 사고는 20대 남성 다수에게 퍼져있다. 2019년 실시한 『시사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페미니즘은 남녀의 동등한 지위를 이루려는 운동이다”라는 문항에 62.3%가 동의하지 않았으며, “페미니즘은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해왔다”라는 문항에 64.8%가 동의하지 않았다(『시사인』, 2019.4.15.). 또한, 이러한 양상을 무사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일례로 정치권과 언론은 2021년 4·7재보궐 선거에서 20대 남성의 민주당 투표율이 부진한 원인을 페미니즘과 역차별에서 찾았다(『여성신문』, 2021.4.14.). 뿐만 아니라 김선해(2019)는 페미니즘에 맞서는 안티 페미니즘 조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많은 이들의 지지 하에 대응사회운동으로서 백래시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 젊은 세대 내에서는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는 평이 대세적이다. 실제로 2018년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갈등요소로 ‘성/젠더 갈등’을 꼽았다(오재호·박원익, 2020) 그러나 ‘젠더 갈등’은 현상을 충분히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젠더 갈등’ 프레임은 불평등한 젠더 위계의 변화를 간과하고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정서에 과도하게 집중하기 때문이다(마경희 외, 2018).

2) 백래시의 문법

하나의 운동으로 자리 잡게 된 안티 페미니즘은 자신만의 논리를 구축해 가고 있다.(김보명, 2019; 김선해, 2019; 김성운, 2018; 최성용, 2019.; 허성학, 2020). 이때 이들은 페미니즘에 적대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이 사용하는 언어를 전유하며, ‘평등’, ‘우리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 등을 말한다(김성운, 2018). 백래시의 언어를 분석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에 대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안티 페미니즘이 확산된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지닌다.

백래시의 대표적인 논리는 ‘남성 마이너리티 정체성’이라 불리는 남성 피해자/약자 서사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청년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했고, 이에 ‘이대남’이라 불리는 20대 남성들은 “집단적인 정치적 주체화”를 통한 대응보다는 페미니즘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선택했다는 것이다(최성용, 2018: 110). 이들은 예민한 공정성의 감각을 키워 왔으며 여성이 약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로 해석한다(허성학, 2020). 이때 공정성 담론은 여성혐오와 얽혀 강화되는데, 그 논리는 여성경찰무용론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생물학적 여성을 경찰에 적합하지 않은 무능력한 범주로 상정하고 그럼에도 여성이

정책을 통해 경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외침으로써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반복하는 것이다(김보명, 2019).

공정성과 유사한 맥락에 있는 백래시의 문법은 ‘역차별’이다. 최성용(2019)은 “공정성은 사실상 역차별론의 세련된 변형”(109)이라고 평한다. 일상화된 여성혐오는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반면 시정을 위한 실천은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역차별의 감각이 커지고 이는 안티 페미니즘으로 이어진다(김보명, 2019). 역차별 담론의 강화에는 정부의 여성정책 운영 실패 역시 영향을 미친다. 신경아(2017)는 지난 여성 정책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성에 가해지는 차별보다는 우대가 강조됐고, 이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시혜’ 프레임이 작동돼 역차별 논의가 생겼다고 말한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는 내각 30% 여성할당제를 주장했지만 여성 차별의 구조는 논의하지 않았다(신경아, 2017). 역차별 문법은 일상에서도 사용된다. 여성들이 남성을 향한 외모, 몸매 평가 등 ‘남혐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를 역차별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명은 현실을 단순화시키는데, 박정훈(2019)은 이것은 여성이 더욱 일상적으로 접하는 문제임을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현재의 페미니즘은 잘못됐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현재의 페미니즘은 ‘위마드식’이라며 여성우월주의자의 논의로 왜곡하거나(『여성신문』, 2021.1.7.), 이들이 ‘남혐’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경향신문』, 2021.5.4.) 이렇게 현재 한국의 페미니즘이 잘못됐다는 논리는 젠더 이퀄리즘(성평등주의)⁴⁾이라는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젠더 이퀄리즘은 남녀를 동등하게 보는 사상이며, 페미니즘은 남성을 차별해야 한다고 말하기에 틀렸다고 주장한다(김성윤, 2018). 김성윤(2018)은 안티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행동을 정당화할만한 적당한 논리가 없었기에 젠더 이퀄리즘을 보편적인 담론으로 둔갑해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젠더 이퀄리즘이 “단순한 귀변”으로 인지되는 과정에서 대중적 진화를 이뤄냈고, 결과적으로 페미니즘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평했다. 한편, 엄혜진(2019)은 안티 페미니즘의 기저에 있는 반지성주의가 안정화되고 있으며 젠더 이퀄리즘의 확산은 “탈진실 정치”를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임을 지적했다. 젠더 이퀄리즘 논의를 설파한 대표적 인물로는 오세라비가 있는데, 그는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2018),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됐나』(2020) 등을 통해 한국 페미니즘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며, 과거와 달리 여권 신장이 이뤄진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이 잘못된 페미니즘이 아닌 성평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오세라비, 2020). 이와 같이 젠더 이퀄리즘은 페미니즘의 언어를 임의적으로 취사선택하며 페미니즘이 비판하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김보명(2019)은 젠더 이퀄리즘이 생물학적 본질주의와 온정적 가부장제를 재생산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4) 젠더 이퀄리즘(성 평등주의)은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에서 젠더 이퀄리즘(Gender Equalism)이 페미니즘을 대체하는 새로운 학문이라고 주장하며 나왔던 논의다. 이는 나무위키를 통해 날조한 것으로 판명났으나 이후에도 온오프라인으로 논의는 퍼져나갔다.

백래시는 페미니즘의 문법을 차용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혐오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대중적 지지를 획득해나가는 것이다. 정승화(2018a)는 백래시에 대해 “보수주의나 근본주의의 이름으로만 전개된 것이 아니다”(185)라며 “페미니즘의 얼굴로도 진행될 수 있다”(185)고 설명했다.

3.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대학 내 페미니즘

대학은 페미니즘의 역동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장소다. 우선, 대학은 페미니즘을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많은 선행연구는 대학 내 여성학 강의가 양적으로 부족하며 질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이성숙, 2008; 김혜경 외, 2009; 김미덕, 2014; 김소라, 2018; 엄혜진, 2019), 그럼에도 대학 내 페미니즘 교양 강의는 여전히 지식 습득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한국대학신문』, 2016.6.6.). 또한 대학의 동아리, 학회, 소모임 등은 대학생들이 페미니즘을 학습하는 주요한 통로이다(김민정, 2020). 이와 같이 디지털 세대의 온라인 페미니즘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SNS 등 온라인을 통하지 않고 페미니즘 지식과 담론을 접하는 이들 역시 증가했다. 이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이 페미니즘을 학습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인데, 온라인에서는 강력한 백래시로 인해 페미니즘 담론장이 파편화돼 존재하기도 하며 익명성으로 인해 소수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거나 내부의 다양성이 쉽게 지워지기도 한 것이다(김수아, 2012). 한편, 학생들은 대학 공간을 활용해 각자의 페미니즘 활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수업 내 토론이나 활동,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고, 학생 자치활동이나 학생회,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페미니즘 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동시에 대학 내 백래시 역시 강화됐다. 대학 내 백래시는 익명성에 기반한 학내 커뮤니티, 특히 에브리타임(에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에타는 혐오표현이 만연하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유숙(2019)은 2019년 6개월 간 C대학 에타 핫게시물 160건이 혐오표현으로 분류됐고, 그중 72%가 여성혐오였다고 분석했다. 에타에서는 페미니즘을 장애인나 정신장애인에 비유하며 다른 혐오를 함께 양산하거나 남성 역할 차별 논의를 전개하는 백래시의 양산이 이루어진다(최유숙, 2019). 이러한 에타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은데, 전국 400여 개 대학교의 454만 대학생이 이용하며 정보 습득을 위해 학생들이 자주 활용하기 때문이다(청년참여연대, 2020). 물론, 에타에서의 백래시는 온라인 공간에 한정되지 않는다. 미현(2020)은 남성중심적 커뮤니티를 통해 강화된 온라인의 안티 페미니즘적 감각과 문법이 현실 세계의 정치적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 대학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그곳에서 파생된 온라인 공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혜진

(2019)은 “디지털 공간과 광장의 정치학에 주목된 관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현실 공간에서의 일상적 체험이 분석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9). 대학생의 페미니즘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는 대학 내 존재하는 다양한 페미니스트 양상보다는 대학 내 페미니즘 운동에 초점 맞춘 경향이 있다(김보명, 2008; 진주, 2012; 김미현, 2020; 미현, 2020; 정다울, 202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대학생 페미니스트 각각의 페미니즘을 탐구하고자 했다.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여성은 10명 중 4~5명, 남성은 10명 중 1명 이상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응답할 만큼 많은 20대 페미니스트가 존재하며(『연합뉴스』, 2019.1.15.) 그들에게서 “이질적인 페미니즘의 실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추지현, 2019: 60)에 주목했다.

Ⅲ.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생애사 연구를 수행했다. 생애사는 개인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사회적 실재에 대해 각자의 행위를 통해 해석하고 대응하며 만들어가는 삶의 이력을 말한다(이희영, 2005a). 이때 생애사는 개인의 행위와 경험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정의되고 동시에 주체적인 의미부여로 구성된 경험조직과 행위지향의 형식들”(이희영, 2005a: 130)이다. 따라서 생애사 구술 행위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생애에 구체적인 질서를 부여하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여기서’ 경험을 하고 새로운 지향과 가치연관을 만들어나간다(이희영, 2005a). 최종적으로 생애사 연구는 생애사에서 드러나는 경험의 특별한 유형들을 통해 특정 사회에서 포착되는 “구체적 일반성”(das konkrete Allgemeine)(Fischer-Rosenthal, 1990; 이희영, 2005a에서 재인용)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단순히 현재의 규칙성만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발생 기원과 변화를 이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생애사 연구의 의의가 있다(이희영, 2005a).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에게 페미니즘 운동과 백래시는 삶의 한 시점에 국한돼 경험되지 않으며, 이들의 경험은 한국 사회의 특정한 시기와 공간의 맥락 속에서 구성됐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사 연구를 통해 이들이 경험하는 페미니즘 운동과 백래시를 전체 생애 지평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 대학생 페미니스트의 구체적 일반성을 구성해내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눈덩이 굴리기 표집법을 사용해, 서울 내 대학에 재학하며 최근의 페미니즘 운동과 백래시를 경험한 17~19학번 대학생 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대학생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해, 연구 주제를 간략히 설명한 뒤 관련 경험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이들로부터 다른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을 소개받아 위의 과정을 동일하게 거쳤다. 이후 연구자 간의 상의를 거쳐 재학 중인 대학의 특성, 주제와 관련된 경험이 구분되는 연구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발했다. 이는 생애사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 나이, 학력,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형적 조건보다는 경험의 내용에 집중하여 다양한 사례유형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 기반했다(이희영, 2005a). 따라서 본 연구가 다룬 사례는 구체적인 개인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다른 대학생 페미니스트의 생애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는 유형화된 사례이다(이희영, 2005a). 다만 연구자의 접근성 문제로 선정된 연구 대상자는 모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다. 결과적으로 구술 면접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이름	성별	출생 연도	학번	대학교	출생지	가족관계	비고
A	여	1999	18	여자대학교	경남 Y시	부, 모, 오빠 1명	
B	남	1998	(17) 19	남녀공학대학교	Z광역시	부, 모	첫 번째 대학(17학번) 자퇴 후 다시 수능을 응시해 현재의 대학교(19학번)에 입학
C	여	2000	19	남녀공학대학교	서울특별시	부, 모, 오빠 1명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위해 구술 면접을 시행했다. 구술 면접의 형식은 서사적 인터뷰를 따랐다. 서사적 인터뷰의 원칙을 따라, 연구자의 연구 관심과 주제에 기반해 작성된 질문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대한 열린 질문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애사적 서술공간을 보장하고자 노력했다(이희영, 2005a). 1차 인터뷰에서는 먼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초기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초기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는 초기 이야기에 등장한 내용 중 특정한 시기, 인물, 혹은 사건에 대해 질문했다. 필요한 경우 이야기되지 않은 주제를 질문하기도 했다. 2차 인터뷰에서는 1차 인터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연

구 주제와 관련해 필요한 질문을 했다. 모든 질문은 가능한 한 열린 질문으로 구성하고자 했으며, 연구 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 연구자의 삶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인터뷰는 2021년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됐다. 연구 대상자당 2번의 인터뷰를 수행했으며, 1, 2차 인터뷰 모두 2시간 정도씩 소요됐다. 모든 인터뷰는 연구 대상자가 원하는 곳에서 대면으로 실시했다. 사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서와 연구 참여 동의서를 안내했으며, 이에 동의한 참여자에 한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핸드폰을 활용해 녹취했다. 연구자는 인터뷰 도중에는 종이와 연필을 이용해 인터뷰 내용을 간략하게 적었고, 인터뷰 종료 후 녹취를 들으며 인터뷰 내용을 전사했다. 이는 보다 편안한 인터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선택이었다. 전사할 때 인터뷰 현장의 분위기를 최대한 담아내고자 중간중간 말이 끊긴 시간, 구술자가 말을 늘린 부분 등을 기호를 활용해 표시했으며, 웃음소리와 같은 비언어적인 표지 역시 기술했다. 다만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터뷰를 녹화하진 않았기 때문에, 표정과 손짓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못했다. 2번의 인터뷰 이후의 질문거리는 문자나 전화를 활용해 질문했다.

4. 자료 분석

전사한 구술 생애사 텍스트는 객관적 해석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발전한 생애사 연구 방법론의 텍스트 분석 방법을 리코르의 ‘설명이 중재하는 해석’ 관점에서 재구성한 이희영의 분석 방법을 활용해 분석했다.⁵⁾ 내러티브 생애사 분석을 위해 살았던 생애사, 이야기된 생애사, 체험된 생애사 순으로 자료의 재구성을 수행했으며, 전 과정은 가설추론적 원리에 기반했다. 가설추론적 원리란 텍스트에 여러 가설을 제기한 후 텍스트의 전개와 해석 과정 중 설득력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석을 진행하는 것이다(이희영, 2011). 이를 통해 “연구자의 선이해가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세계에 대한 심층 이해로 나아가”(이희영, 2011: 105)도록 했다.

이희영(2005a; 2011)의 분석 방법을 참조해 자료 분석을 다음과 같이 수행했다. 우선, 살았던 생애사를 바탕으로 이야기된 생애사를 재구성했다. 생애사의 서사적 순차성을 염두에 두며 ‘왜 이런 주제가, 이런 서술 형태로, 이 자리에 등장하는지’를 고려해 가설 세우기를 했고, ‘구술자가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해석하는가’라는 생애사적 관점을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이야기된 생애사에 섞여 있는 사후적인 의미부여를 구별해냈다. 이후 체험된 생애사의 재구성을 수행했는데, 이는 생애 전반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된 생애사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특정한 과거의 사건을 ‘구술자가 어떻게 체험했는

5) 자세한 내용은 이희영(2005a; 2011)의 연구를 참고하라.

지'를 읽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때 '과거 체험과의 동일성'이 아닌 '과거 사실에 기초한 구술자의 주관적인 체험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최종적으로는 사례 간 비교를 통해 유형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사회구조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일반성을 도출해냈다. 작성한 연구 결과물은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준 뒤 피드백을 받아 수정을 거쳤으며, 이로써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했다.

IV. 연구 결과

1. 여대에 재학 중인 18학번 여성 A

(1) 페미니즘은 내가 살던 곳의 외부에 존재하던 것

당신이 살아온 생애를 이야기해달라는 질문에 A는 가장 먼저 “고등학교 때까지는 경남이라는 한정적 지역에 갇혀 살았다”고 표현하며 고등학교 시절과 그 이후의 시기를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은 A가 구술에서 자주 Y시와 서울을 대조적인 것으로 배치시킨 것과 대응한다. A는 경남 Y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까지 해당 지역에서 살았다. 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을 당연시했던 A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위한 논술 수업에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A는 서울에서 온 논술 선생님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이 Y시를 벗어나 서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게 됐다. 또한 A는 논술 수업에서 페미니즘, 노인, 이주민 등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접하며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저 자신의 가정 내 문제라고만 생각하며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경남과 W 지역의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

그래서 나는 경남의 W이라는 곳이 좀 보수적인 성향이 좀 덜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가부장적인 관습과 이런 여성 차별적인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I, 1)⁶⁾

A에게 Y시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고향'이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심각한 부부싸움과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가정폭력을 목격하던 곳이자 중학생 때 다니던

6) 이는 본 글에서 사용하는 구술녹취 텍스트 인용방식으로, 이희영(2005b)의 연구를 참고했다. 괄호 안의 표기는 차례대로 면접의 회차, 녹취문의 쪽을 뜻한다. 인용된 텍스트에 존댓말과 반말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두 명의 연구자가 구술자와 각기 맺고 있는 관계가 달랐기에 누가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답변의 형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두 차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연구자와 구술자 사이에 라포가 형성되었다는 점도 이에 영향을 미쳤다.

수학학원에서 성추행을 경험했던 곳이었다. 고등학생일 때는 버스 정류장에서 자신에게 번호를 요구한 성인 남성을 거절했다가 그 남성이 길거리 시설물을 걷어 차고 욕설하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또, 늦은 시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남성이 자신의 집 바로 밑층을 누른 뒤 계단으로 따라왔던 기억도 있었다.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여성혐오적 발언도 들었는데, 그들은 밤길에 한 여성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했다며 일부러 여성에 겁을 준 얘기를 재미로 하거나 여성의 가슴 사이즈를 비유로 들어 학습 내용을 설명했다. 여성혐오 학생들 사이에서도 페미니즘 논의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수능 후 누군가 화장실 칸에 붙인 페미니즘 문구를 보고 A의 같은 반 친구들은 반감을 표했고 A 역시 그 문구가 “이상하다”라고 느꼈다.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획득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페미니즘과 그 언어를 받아들이기 전이었기에 해당 문구가 “센 워딩”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경상남도, 그리고 Y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이지만, A의 삶의 궤적에서는 Y시와 서울시가 거주해본 유일한 공간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공간은 페미니즘에 있어 상반된 의미를 A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서울은 A에게 Y시와는 대비되는, ‘페미니즘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A는 서울의 여대대학교에 진학을 하며 페미니즘을 접했다. 특히 여대라는 환경은 자연스럽게 페미니즘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었으며, A는 이것이 자신에게 “행운”이었다고 구술했다. 한편 여대라는 페미니즘 친화적인 공간을 벗어난 곳에서 A는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느끼기도 했다. 대학교 1학년 가을, 동아리 합숙 활동에서 A는 여대생들을 “여자들이라서 기다렸다”라는 발언을 듣고, 술자리에서 남녀가 섞여 앉아 분위기 맞추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경험했다. 하지만 이때 A는 Y시에서와는 달리 이러한 경험을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었다. 이처럼 A가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은 페미니즘에 보다 친밀한 것이었고 이는 Y시에서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대조된다.

대학 입학 후 가족들과 페미니즘과 관련해 대립했던 것은 Y시와 서울의 괴리를 강화했다. A는 2018년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여한 경험을 계기로 숏컷을 하게 됐는데, 이후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남자같다.”, “속상하다”와 같은 반응을 들었다. A는 계속 해서 설득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일보 후퇴해 숏컷을 포기했다.

(2) 많은 여성의 삶을 설명해준 페미니즘

A에게 페미니즘은 Y시에서 있었던 많은 경험들을 한꺼번에 설명해주는 탁월한 학문이었다. A에게 학원에서 경험했던 성추행 사건은 “너무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기에 고등학생 때는 이를 잊고 살았다. A가 이 경험을 다시 떠올린 것은 대학교 입학 이후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였다. A는 자신과 유사한 기억을 가진 페미니스트 친구들과 대화하며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수 차례 곱씹었다. 인터뷰에서 A는 학원에서의 성추행

경험과 버스 정류장, 아파트에서의 일을 덩덤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술했는데, 이는 A가 이미 날개의 사건들을 페미니즘 관점에서 연결하고 성찰해보았기 때문이었다. 구술에서 A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설명의 끝에 과거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 설명했다.

그러니까 밤길도 하나도 가볍게 다니지 못하고 누가 갑자기 뭔가 욕을 해도 그게 그 상황에 혹시 내가 해를 입을까 아니면 같이 있는 사람이 해를 입을까 봐 미안할 일이 아닌데도 미안하다고 대답해야 하고. 뭔가 내가 당연히 잘못된 게 아닌데도 내가 잘못했나부터 생각을 해서 수치심을 갖게 만드는. 그게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의 잘못이 당연히 아니고. 뭔가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그 사회 분위기가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I, 5)

이와 같이 A에게 페미니즘은 과거 자신이 느꼈던 아픔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언어와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학문이었다. 동시에 A에게 페미니즘은 여성을 연대로 연결하는 매개체이기도 했다. A는 고향 친구에게 자신의 성추행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친구 역시 학창시절 경험했던 성범죄를 떠올렸던 적이 있다며, 많은 여성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지. 여기서 느낀 거지 나는. 나는 그 페미니즘에. 페미니즘에 연대하는 특히 여성들 당사자들에서 발생하는 연대가 더 유대감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이런 것들인데, 정말 일반적이지 않지만 얘기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느끼거나? 범죄, 자기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압감? 그래서 뭔가 이런 개인의 얘기가 흘러 흘러 같이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이게 행동으로 나와서. (II, 25)

대학교 운동 동아리 내 친구들과 성범죄 피해 경험을 공유하고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 역시 A가 페미니즘을 연대의 기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3) 페미니즘은 해결할 고민거리를 계속해서 던지는 학문

A는 페미니즘을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다. A는 여대라는 환경을 통해 쉽게 페미니즘을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페미니즘 진영 간의 의견충돌과 갈등을 경험하며 내적 갈등을 겪기도 했다. A는 초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페미니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가장 먼저 설명했는데, 그만큼 페미니즘을 습득하고 이후의 혼란을 해소하는 과정은 현재의 A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였다.

A가 처음 페미니즘을 접한 것은 운동 동아리에서 래디컬 페미니스트⁷⁾ 친구들을 사귀

면서였다. A는 19년 동안 살던 Y시를 벗어나 서울로 대학을 진학한 후 외로움과 우울감 느꼈는데, “학교에 정을 붙이고 싶다”라는 마음과 “우울할 때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운동 동아리를 시작했다. 동아리에서 A는 래디컬 페미니스트 친구들을 통해 래디컬 페미니즘을 접하고 적극적으로 페미니즘의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했다. A는 이를 계기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석을 하기도 했다. 비록 그는 다른 일정과 시간이 겹쳐 시위 현장에서 일찍 나왔지만, 이후 이 경험의 영향을 받아 탈코르셋의 일환으로 숏컷을 하고 꾸밈노동을 지양했다.

그러나 A는 초기 이야기에서 운동 동아리에서의 페미니즘을 칭찬하지만은 않았다. 그는 당시의 ‘래디컬 페미니즘’을 떠올릴 때 탈코르셋과 미러링 언어의 사용을 함께 떠올렸으며 이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어, 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접하다 보니까 어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야. 브레이크가 걸린 거야. 이게 이게 맞나? 그래서 그래서 좀 더 혼자서 고민을 해보다가 혼자 고민하니까 답이 안 나오길래, 어, (1)⁸⁾ (I, 1)

특히 A는 탈코르셋에 대해 고민을 했다. A는 구술에서 “탈코를 하는 것이 나한테 당장 영향을 끼치는 게 많은 요소다 보니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다”라며, 가족의 부정적인 반응과 짧은 머리를 관리하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후 A는 외모가 그 사람의 페미니즘을 대변할 수 있는지 고민했고, 머리카락 길이가 페미니스트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A는 다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으나, 자신이 숏컷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는 페미니즘의 다양한 양상을 접하며 겪은 내적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 답을 찾으려 애쓰며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A가 선택한 방법은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또 다른 동아리를 찾아 들어간 것이었다. 인권 담론을 다루는 동아리에 들어가 그는 교차 페미니즘을 배웠다. 또한 A는 철학 서적을 읽으며 생각을 확장시키고자 했고 인권 친화적인 수업을 찾아 들으며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했다.

그러나 A는 교차 페미니스트로서 경험했던 혼란에 대해서는 초기 이야기에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의 질문을 통해 교차 페미니스트로서의 혼란이 만들어 낸 감정적 어

7) A는 운동 동아리에서 래디컬 페미니스트 친구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구술하며, 그 당시의 래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와 현재의 정의를 비교했다. 당시 A는 래디컬 페미니즘이 미러링, 시위 등 가시적으로 보이는 페미니즘 운동을 주도하는 “선봉장”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이에 반해 현재 A는 래디컬 페미니즘이 단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성의 인권에만 관심을 가지며 다른 약자를 배제하는 터프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것 같으며 터프와의 대비를 통해 래디컬 페미니즘을 규정하고 있었다.

8) 괄호 안의 숫자는 이야기가 잠깐 중단된 초 수를 나타낸다.

려움과 인간관계에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질문과 A의 자세한 구술이 진행됐으나, A가 해당 내용의 공개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기에 구체적 내용은 서술하지 않는다. 다만, 간단히 정리해 해당 갈등은 성소수자에 대한 터프와의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이었다. A는 이것이 자신의 페미니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고 구술했는데, 그 과정에서 A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페미니즘을 경계하며 자신의 페미니즘을 정립해갔다. 교차 페미니스트로서 경험했던 일련의 과정은 현재에도 후회와 자책을 느끼도록 하는 사건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하면 터프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기회이기도 했다.

조금 더 내 페미니즘의 개념이 확장되는? 그냥 그전까지의 페미니즘의 학문은 정말 나한테 많은 사람이 비슷한 영향으로 끼쳤기 때문에 뭔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지금 변화의 시작이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는데 이 사건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미친 영향도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미친 영향도 내가 눈으로 봤었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 뭐 가볍게는.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이 페미니즘 논의가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I, 28)

이를 바탕으로 A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A에게 페미니즘 진영 내의 의견충돌과 갈등은 감정적인 소모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페미니즘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촉발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A는 다른 입장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이해를 위한 시도를 계속해나갔다.

(4) 백래시는 신호탄, 그러나 어이가 없어 웃긴 것

A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변의 여자 지인만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백래시⁹⁾를 경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A에게 백래시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A가 본 백래시의 대표적인 사례는 “옹앵옹”, “손가락 모양에 대한 기업들의 사과”, “안산 선수 숏컷”과 같은 간접적인 것들이었는데, A는 이에 대해 “좀 웃겼어요”라고 표현했다.

어, 사실 이제 정말 말이 이렇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들은. 근데 그거를 맞춰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트루먼 쇼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과해!!! 이러면 사과 다 해 주고 (I, 9)

9) A는 가족들이 자신에게 한 발언과 행동들은 백래시로 정의내리지 않았다. 가령 A의 친오빠는 A에게 “그럼 나도 한남이야?”, “너도 페미 그런 거 해?”와 같은 발언들을 한 적이 있다.

A는 이처럼 백래시를 자신과 동떨어진 인터넷 공간의 일이라고 여기면서도, 동시에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백래시를 행하는 이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념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추후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남성 지인을 만날 때 자신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있다고 구술한 것이다.

A에게 페미니즘이 현재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질문하자, A는 “지치지 않고 계속 공부해야 하는 학문”이자 “일상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후 바로 백래시를 언급했다. 이를 통해 현재 A의 페미니즘에서 백래시가 중요한 생각의 지점을 제공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A는 백래시를 “신호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게 백래시가 일어난 이유는 뭔가 지금 되게 논의가 엄청나게 활발해져서 나온 사회적 반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많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졌구나.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단. 뭔가 이 의견이 과대 대 표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도록. (I, 25)

현재보다 더욱 심각한 백래시와 이로 인한 여성혐오 범죄를 우려하면서도, A는 이 문제를 타개해나가는 데 있어 “지금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백래시 이후 A는 백래시의 문법에 대응하기 위해, 논문이나 서적을 읽으며 공부하고 있다.

A의 페미니즘에 있어 백래시에 대한 대응보다는 터프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시급한 과제였다. A가 여대 내에서 페미니즘의 활동 반경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A가 한 수업에서 이퀄리스트를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이퀄리스트 학우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이퀄리즘이 여대 내에서 주류적 의견이 아니었기에 큰 위협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입장을 접하는 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같들어라기보다는 사실 나는 이것도 되게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과도기... 과도기?라는 시점에서는 다른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페미니즘이야 하나만 보더라도 페미니즘만 얘기하는 사람만 모여 있다면, 이렇게까지 의견이 발전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와 다른 시선에서 볼 때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보이는 차이점들이 좀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게 한계로 다가온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다른 논제의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중략) 그분들도 이 수업에서 그런 자기 입장에서는 다른 의견이 페미니즘이겠지만 그런 걸 접하면서 자기 의견에 허술한 부분이나 이런 걸 스스로 되짚어 볼 수 있어서 더 오래 갈 수 있는 의견으로 남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도 그런 의견을 보면서 한 번씩 짚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치지 않는 선에서. (II, 39)

A가 경험했던 터프와의 의견 충돌은 백래시와는 달리 자신의 주변에 만연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A는 인터넷과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백래시의 양상을 계속 접하고 있었으며 스스로가 백래시로 정의 내리지는 않았지만 가족으로부터 직접적인 백래시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로 인해 A는 터프를 이해하는 것과 백래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었다.

2. 남녀공학 대학교에 재학 중인 19학번 남성 B

(1) 페미니즘 입문 배경이 된 학창시절의 경험

B의 어린 시절 경험은 가난과 폭력으로 특징지어진다. B는 “자신이 살아온 길은 계층 이동의 길”이라는 말로 초기 이야기를 시작한 뒤, 가정의 지속적인 계층 상승과 그 속에서의 자신의 체험을 구술했다. IMF의 여파로 자영업이 망하고 빚을 진 부모 슬하에서 태어난 B는 조부모와 함께 시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부모가 짐차 빚을 갚으며 집안 형편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 집안 사정은 보다 나아졌다. 어린 시절, 특히 초등학교 입학 이전 가난에 대한 경험은 B로 하여금 “권력관계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소수자와 약자에게 감정적인 이입”을 하도록 했다. “체계적인 학습”을 하기 이전부터 본능적으로 권력관계와 소수자성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 이는 B로 하여금 학창 시절 또래 남학생들의 문화에 편입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B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경험했다. B는 초기 이야기에서 이에 대해 “또래 남학생들의 서열문화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지 못했다”, “괴롭힘을 좀 당했다”라고만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후 페미니즘에 감정적인 공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폭력”에 대한 경험으로 이를 다시 언급했다. B는 “오래 안 떠올리다 보니 이제는 정말 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며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이 기억이 B에게 잊고 싶은 것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초, 중학교 때 또래 남학생들에 동화되지 못하며 이들로부터 경험했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폭력”은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B의 감정적 이입을 강화했다. 학창 시절, 또래 남학생들은 괴롭힘, 욕설, 비하 발언, 폭력을 통해 권력적 우월함을 과시했는데, B는 가난을 경험하며 소수자와 약자에 동질감을 느껴왔기에 이에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이후에 또래 남성 문화에 편입을 해보고자 했으나 불쾌함만 느낄 뿐이었다. 따라서 중학생 때부터는 또래 남성 문화에 “적응하는 척”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신이 또래 남학생들에게 완전히 동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유지한 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선택을 했음을 의미했다.

B는 고등학교 때 다시금 남학생들과의 갈등을 경험했다. B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다녔

는데, B에 따르면 그곳의 학생들은 초, 중학교 때와는 달리 “최소한의 교양”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남학생들은 자기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여학생에 대한 폄평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B는 이에 반발했고 학교폭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남학생들과의 갈등을 지속했다. 이때까지 B는 또래 남학생들의 여성혐오 발언에 “기분이 나쁘다” 정도의 감정과 “양성평등 정도의 문제의식”만을 가지고 있었다.

B가 페미니즘을 본격적으로 추구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강남역 사건을 접하면서였다. 가난과 폭력을 경험하며 페미니즘에 “언제라도 들었다면 동의했을” 감정적인 지반을 가지고 있었던 B는, 사건을 둘러싼 담론을 통해 여성혐오와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다. 특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폭력”에 대한 경험적인 공감은 B로 하여금 신체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페미니즘 의제로 받아들이도록 했다. 그 즈음 록산 게이의 『나쁜 페미니스트』에서 성폭력 피해 사례를 읽었던 것 역시 이에 영향을 주었다. B는 이를 “한 번에 다 읽지도 못하고 책을 덮은 후 구역질을 할 정도”로 여성의 안전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2) 페미니즘 운동은 “성과”내고 싶은 것

B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도서관에서 『공산당 선언』을 읽고 맑시즘에 입문한 뒤 사회운동을 꿈꾸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강남역 사건을 둘러싸고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담론을 보며 사회운동에 대한 열망을 키웠고 페미니즘에 입문했다. 대학 입학 이후 B는 고등학교 때 계획했던 대로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B의 “양대 과제”는 노동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이었다. 대학교 입학 이후 B는 동아리에서 맑시즘을 공부하고 노동운동을 경험하는 한편, 본인의 페미니즘 입장을 찾아갔다. 특히 B는 독서를 통해 페미니즘 지식을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B는 맑스주의 페미니즘 담론을 접했지만, “계급 환원론적인 성격, 특히 성폭력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해결책의 미비함에 실망”했다. 이후 B는 “페미니즘과 사회주의의 절충안인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B에게 페미니즘 운동은 학습 역시 필요로 하는 것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사회운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었다. B는 대학 내 소속 집단에서 대표직을 수차례 맡으며 학내 사회운동을 수행하고자 했는데, 이때마다 집단 내 페미니즘 의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고자 했다. 하지만 B의 시도가 항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B는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있는 술을 은근히 강제하는 문화가 젠더, 나이와 연관된다고 판단해 개선하고자 시도했고, 집단 내 행사에서 반성폭력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번번이 무관심 혹은 반발에 부딪혔다. 이때 집단 내 존재했던 페미니즘 학회에서의 활동은 B에게 일종의 피난처 역할을 해주었다. B에게 이 페미니즘 학회는 이론적 학습을 하는 공간보다는 뉴스와 일상을 통해 “매일매일 마주하는 날 것의 백래

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해방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성토대회”의 장이었다. B는 페미니즘 학회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이 얼마나 보수적인 공간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B의 페미니즘 운동은 대학 밖의 사회운동 현장으로도 확장되었다. B는 2019년 낙태죄 폐지 집회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에 참여했으며 노동운동에서 페미니스트들을 만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는 다른 페미니즘 진영과의 갈등을 경험했다. 페미니즘 운동의 주체는 매우 다양하지만, B가 “운동 사회”에서 접하는 사람들은 “자리 잡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도권 페미니즘”과 주로 갈등했다. B는 “학계에 이미 자리를 잡은 리버럴 페미니스트들”을 “제도권 페미니즘”이라고 칭하며, 2019년 서울퀴어문화축제 대리모 중개 산업체 스폰서 논란, 2021년 윤지선 교수 ‘남성혐오’ 논문 논란에서 이들과의 입장차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체적 사건을 짚어내며 B는 제도권 페미니즘에게 실망한 감정을 설명했는데, 기성 집단으로 페미니스트로서 기본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과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와 공유할 수 있는 이론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B는 이를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논의를 활용해 학술적인 용어로 설명해갔다.

그러니까 이미 사회가 성기환원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분류를 해놓고 그에 따라서 위계를 형성해 놓았는데 그 그 위계를 인정하고 그 위계 분절된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만 그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냐라는 그런 거죠. 가령 그러니까 성별 표기를 안 하는 방식을 통해서 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냥 오히려 성차별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요구 조건조차 없어지는 게 아닌가. 우리의 무기와 프리즘 마저 잃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II, 33)

현재 “남녀 간의 위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타파하고자 노력”하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 “그 차별적 구조와 위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권 페미니즘”을 B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나아가 B는 자신의 입장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대표할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처럼 B는 페미니즘 내부의 진영들과 진영 내부에서의 차이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3) 페미니즘은 성찰의 지점을 제공해주는 학문

페미니즘 학회에서의 대화는 B가 여성혐오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B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에 의해 “욕도 많이 듣고 많이 맞으면서” 컸다. 당시 B는 가정 내 불화와 폭력이 가난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B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있어 가

난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부정적인 경험들과 “한 덩어리”로 얽혀 있는 것이었다고 구술했다.

그런...(5) 저한테는 그게 전부 다 묶여 있거든요. 그 가족이라는 인물들과 가난과 가난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기 마련인 어떤 불협화음들? 또는 교양의 부재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 한 덩어리로 엮여 있어요. 어릴 때, 어릴 때의 기억이? (II, 16)

따라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도 권위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B는 여성혐오를 하층 계급이 경험하는 경제적 고난과 불가분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이 바뀐 것은 페미니즘 학회에서의 학습을 통해서였다. B는 페미니즘 학회에서의 학습을 통해 여성혐오가 그저 재미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처럼 페미니즘 학회는 B에게 “한 덩어리”로 얽혀 있던 가난의 경험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페미니즘은 B로 하여금 남성으로서 자신이 했던 과거의 발언과 행동을 성찰하고 현재에도 그 성찰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B는 자신이 남성 페미니스트라는 점이 다른 지향점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고 말했지만, 전통적 남성성¹⁰⁾을 둘러싼 이중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 B가 과거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던 전통적 남성성은 B로 하여금 오히려 안티페미니즘과 거리를 두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으로도 많이 봤는데, 어: 별로 부정적인 인상이 없었던 게 그니까 보통 남성 혐오 표현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그렇게 그런다고 하는데, 글썄요~ 그게 남자가 그런 걸로 화내는 게 좀 짜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니까 남아 있던 어떤 가부장제의 습성이라 해야 되나 남성성이라 해야 되나? 오히려 전통적인 남성성은 그런 거 가지고 혐오표현이다 그러는 남자는 되게 못났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남성이잖아요. 식민지 남성성이 아니라. 그런 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전통적인 남성성을 추구하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페미니스트를 추구하는 형태로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II, 41)¹¹⁾

또 자신을 “시스젠더 헤테로 남성”이라고 소개한 B는,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가 겪을 수 있는 일”을 다루는 것으로서 페미니즘에 대한 동의도가 높아졌다고 구술했다. 이 역시 전통적 남성성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았다. 즉 B는 자신이 연애 상대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 역시 전통적 남성성의 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전통적 남성성은 B로 하여금 안티페미니즘을 거부하는 긍정적 요인이었지만,

10) 전통적 남성성은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갖추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상적 성향과 기질”을 말한다(마경희 외, 2018: 30).

11) 쌍점은 구술자가 해당 부분에서 말을 늘이고 있음을 표지한다.

페미니즘 입문 후에는 지속적으로 반성해야 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여겨졌다. B는 페미니즘을 알게 된 후 자신이 과거 연애를 하며 했던 여성혐오적 발언과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 됐으며, 상대를 과도하게 챙겨주고자 하는 자신의 태도 역시 전통적 남성성임을 깨닫게 됐다. 현재에도 B는 자신이 전통적 남성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고 느끼며 이를 자각할 때마다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4) 백래시는 운동을 쉬고 있는 주된 원인

B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모든 반발적인 반응을 백래시라고 정의했으며, 직간접적인 백래시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B는 2019년 낙태죄 폐지 집회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에 참여했을 때 “면전에서 욕을 먹었으며” 성폭력 처벌 관련 성명을 작성하고 토론을 진행할 때 공격적인 질문들을 받기도 했다. 특히 B는 집단의 대표직을 맡을 때마다 페미니즘 의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자 했기에 그 과정에서 오프라인과 에브리타임 등 학내 온라인 공간에서 수많은 비난을 받았다. 또한 B는 ‘메갈 손가락’ 논란을 필두로 한 최근의 백래시 역시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B에게 페미니즘 운동은 “성과”를 내고 싶은 사회운동이었기에, 백래시는 향후의 사회운동을 위해 분석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지금까지의 사회운동을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었다.

백래시를 마주한 B는 이성적인 반응이 앞섰다고 말했다.

일단 제일 처음 그런 것들을 마주하고 들었던 생각이... 한참 분위기 좋았잖아요. 페미니즘이 리부트 되고 전략적으로 되게, 유효한 선택들을 잘 선택해서 불편한 용기 집회 같은 걸로 했어서 그래서 잘 풀려나가고 있었는데 딱 이제 그런 거 마치니까 이제 호시절 끝났구나. 이제 좀 운동이 빠져지겠다. 어떻게 해야 대응을 할까 하는 그런 이성적인 반응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I, 5)

특히 혐오 발언이 적힌 안티페미니즘 집단의 학내 게시글을 보고 대응을 했다가 고소를 당했던 직접적인 백래시 경험은 B로 하여금 “백래시가 물적 기반을 갖춘 채 생활반경 내 바로 옆에 와 있다”는 자각을 하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겠다라는 다짐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에 B는 백래시가 왜 나타났으며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분석했다. 이와 같은 이성적인 반응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B가 노동운동을 하며 사회운동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에 익숙해졌고 특히 정당 활동을 통해 전략적 사고를 배웠기 때문이었다. B는 익명 유지를 위해 정당 활동에 대한 구체적 말하기는 꺼려했다.

하지만 B는 백래시를 통해 이성적인 분석을 수행한 것 못지않게, 감정적인 타격을 경험했다. 특히 최근의 ‘메갈 손가락’ 사건과 재보궐 선거 결과는 기존까지 B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느껴왔던 백래시를 사회 전반의 분위기로 느끼도록 하며 보며 “졌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운동에 있어서 “졌다”라는 패배감은 지금까지의 운동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졌다. 이는 B로 하여금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 하고 드러내는 데에 있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들었으며, 무력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B의 페미니즘 운동은 노동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기에, 이러한 무력감은 맑시즘의 세계관과 사회 전반에 대한 태도를 수정하도록 했다. B에게 백래시는 그저 페미니즘 운동 내부의 흐름이 아니라 자신이 좇는 사회운동 전반에서의 보수화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B는 이 과정에서 큰 우울감을 느꼈고 기존의 우울증 증세가 악화됐다.

원래는 진짜 구조적이고 정통적 정통 마스주의를 신봉하는 타입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많이 그런 믿음들을 버리게 된 편인 거죠. 수정을 하게 되고 생각을, 성장한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대한 태도를 고치게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또 저의 인생에 대해서도 내가 평생을 걸쳐서 한 일이 이제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그걸 각오까지도 하게 해준 것 같아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 다른 건 그러니까 제 인생의 상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련 붕괴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의 백래시라는 건 원래 상수였는데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는 일어나는 걸 실시간으로 봤으니까.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내 인생이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하고 받아들여지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 과정이. (I, 33)

백래시가 “인생을 갈아서” 하고 있다고 구술할 정도로 B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사회운동 전반에 대해 무력감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백래시에 대한 이성적 분석을 시도했던 B는 감정적으로 이에 맞서기 어려워했으며 매우 큰 좌절감을 느꼈다. 심지어 이는 B의 진로를 수정하게 만들었다. B는 고등학교 시절 촛불 정국과 강남역 사건에서의 담론을 접하며 대중운동 실무자를 꿈꿨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대중운동에 회의를 느끼고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현재 B는 비주류 맑스 경제학, 여성주의 경제학을 다루는 미국 대학원으로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백래시로 인한 일련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며 B는 잠시 사회운동을 쉬기로 결정했다. 인터뷰 시점 운동을 쉬고 있던 그는 쉬는 동안 자신의 일상과 사회운동을 어느 정도 분리해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백래시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인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운동과 잠시 거리를 둬으로써 B는 백래시를 마주하며 느꼈던 무력감을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보였다.

3. 남녀공학 대학교에 재학 중인 19학번 여성 C

(1) 페미니즘 진영에 들어가기까지의 혼란들

C가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친한 언니들과의 모임을 통해서였다. 언니들 중 한 명이 페미니즘 동아리를 만든 것을 들으며, C는 처음으로 페미니즘이란 개념을 접했다. 또한, 언니들과 여성으로서 안전을 위협받은 경험들을 공유하며, C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확실히 사회적인 문제”라고 느꼈다. 이날 C는 집에 가서 일기에 “나도 뭔가 눈을 떴다”라고 적었다.

바로 뒤이어 C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남녀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시절 C는 자신이 엄마 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 남학생들은 파란색 찰흙 판을 쓰고 여학생들은 분홍색을 쓰는 것이 당연시됐던 점, 여학생들의 출석 번호는 항상 남학생들보다 뒤였다는 점에 자연스럽게 의문을 느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는 지체장애인 남자 동급생이 자신의 여성인 친구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는 것을 보며 의사와 무관한 시선과 접촉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중학교 3학년 때 지하철에서 건너편에 앉은 아저씨가 C의 옆자리 교복 입을 여성의 치마 속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심화됐다.

하지만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 것이 즉시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않았다. C는 이전부터 페미니즘과 관련된 일련의 혼란을 겪었다. 혼란의 시작은 “메갈반”에 소속됐던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다. C의 반에는 “한남” 등의 단어를 쓰거나, 남자 선생님들을 특히 예의주시하고 “이상한 발언”이 나올 경우 “선생님에게 눈치를 주는” 등 “예의 없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었다. 실제 커뮤니티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C의 반 친구들은 남성에게 공격적인 사람을 과장하여 장난삼아 메갈이라고 부르곤 했다. 또한 다른 반 친구가 자신의 반을 “메갈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자신의 반을 “메갈반”이라고 인식하게 됐다. C는 선생님들이 간혹 “이상한 발언”을 한 건 맞으나 친구들이 필요 이상의 “과격”한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했다. 당시 C는 아직 페미니즘의 개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페미니스트로 인식하고 페미니즘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형성하진 않았다. 하지만 C는 이들을 가까이서 접하면서 이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고민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친한 언니들과 나눴던 대화는 이러한 고민을 구체화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메갈”이라 불리던 친구들이 페미니즘을 지향함을 알게 되고 동시에 인터넷 뉴스 댓글을 통해 백래시를 접하며, C는 “양 극단 사이에서 입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당시 C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C는 페미니즘을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인식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혼란을 해소했다. 어린 시절 C는 남녀평등과 여성의 안전과 관련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알지는 못했다. 친한 언니를 통해 페미니즘의 개념을 습득하며 C는 이를 사회구조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음을 어렵פות이 알게 됐다. C가 페미니즘을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 또 다른 계기는 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공부하고 대학 입시 준비 과정에서 논술 학원을 다닌 것이었다. 학교와 학원에서 “개인적 문제 vs 사회적 문제”라는 주제를 다루며, C는 문제를 해석하는 서로 다른 관점을 배웠다. 이를 통해 C는 페미니즘을 둘러싼 모호했던 문제의식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구체화했다.

대학 입학 후 C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페미니즘을 추구하게 됐다. 여자고등학교에 다니다가 남녀공학대학교에 진학한 C는 “이상한 남자들”을 보게 됐다. 술 자리에서 심부름갈 때 자신과 친하지 않은 여성 학우를 굳이 지목해 데리고 나가는 남자 학우를 보거나 자신의 학과에서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접하며, C는 페미니즘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실제로 현실 가까이 있는 것임을 인지하게 됐다. 이때는 이전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해석해냈다. 결과적으로 C는 대학교에 입학한 후 “보다 페미니즘에 가까운 진영으로 들어”오게 됐다.

다만 C는 여전히 과거 “메갈” 친구들의 발언과 행동에 “과격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C가 페미니즘을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받아들이며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저 ‘이상한 친구들’이 아니라 ‘사회문제에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게 됐지만, 그 구체적인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2) “생활 속 존재방식”으로서 페미니즘을 추구하기

C의 초기 이야기에서 고등학교 이전을 언급하지 않았다. 연구자가 고등학교 이전 시기를 질문하자 C는 ‘열등감’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학교와 초등학교 이야기를 시작했다. C가 자존감이 낮아지기 시작했다고 기억하는 시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였다. 이때부터 C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종종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고 열등감을 느꼈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는 키가 크면서 자연스레 살이 찌고 직접 옷을 사 입고 여성 연예인을 좋아하게 되면서, 스스로의 몸을 부정하고 살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특히 C는 중학교 때 기억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C는 이에 대해 당시 자존감이 높지 않아서 그 시기가 “굳이 떠올릴 필요가 없는 흑역사”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구술했다. 이러던 C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부터 자존감이 높아졌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해 좋은 성적을 받고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위를 구술할 때 C는 “열등감”, “자존감”, “무시 받는 느낌”이라는 표현을 불분명하게 섞어서 사용했으며, 이를 둘러싼 이야기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렴됐다. 따라서 C에게 고등학교 시절은 무엇보다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내 정체성을 찾아간 계기”였다. 대학 입학 후 C는 계속해서 자

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페미니즘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었다.

C는 대학에 가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해오던 화장을, 대학교 1학년 말부터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 그만둔 경험을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쨌든 꾸미는 거는 사람마다 의미가 다르겠지만 나한테는 어떤 내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완하기 위한 거잖아 꾸민다는 거는.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점점 그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걸 나도 느끼게 된 거지. 그냥 지금 이 모습도 괜찮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데 그 느낌 자체가 페미니즘에 많이 기반을 하고 있는 것 같아. (II, 30)

또한, 2020년 하반기에 C는 항상 묶고 다니던 자신의 머리가 “별로 땃땃하지 않게” 느껴지고 자신이 거기에 “묶여 있는 느낌”, 그 머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계속 달고 다니는 느낌”을 받고 샷컷을 했다. C는 샷컷 이후 부모님의 부정적인 반응을 접하며 일련의 혼란을 겪었으나,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C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 자체가 페미니즘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C가 페미니즘을 “사회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과 “생활에 밀접한 것으로서의 페미니즘”으로 구분해서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다. 아래 구술에서 C가 페미니즘을 두 차원으로 나누어 대조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난 뭔가 그게 좀 사회운동이긴 하지만 그런 차원보다는 좀 더 생활에 밀접해 있을 때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 (I, 21)

C는 샷컷을 하고 화장을 하지 않은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다양한 여성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C에게 페미니즘은 이론적 공부를 하거나 사회운동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활 속 자신의 존재방식”이었다. C에게 페미니즘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기반이었고, C는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페미니즘에 다시금 기여하고자 했다. 즉 C에게 “생활 속 존재방식”으로서의 페미니즘은 “사회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C는 남녀공학대학교에서 만난 남성인 친구들과 있을 때 사회에서 기대되는 전형적인 여성성을 향유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구술했다.

근데 저는 막 시위하고 이런 건 아닌데 뭔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남들을 어떻게 대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중략) 남자

들이랑 같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를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그 자리에서 좀 수동적이거나 좀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안 보이려고 하고 좀 더 그 사람들이랑 동등한 위치에 계속 설려고 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I, 17)

따라서 페미니즘을 “생활 속 존재방식”으로서 추구하는 것은 C가 페미니즘을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았다.

(3)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것에 대한 머뭇거림

C는 비거니즘 역시 실천하고 있었다. 환경 문제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 있었다고 구술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입시에 집중해야 한다며 외면했고 대학에 와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땡땡하지 않다”라고 느꼈다. C는 비거니즘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다. 아버지와 오빠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고집쟁이 막내” 취급을 받는다고 느꼈으며, 가족 외 사람들에게 비거니즘 지향을 알릴 때에는 “확신이 없는” 가치관을 공개하는 점에 부담감을 느꼈다. 2021년 1학기에 휴학한 것은 이러한 혼란을 타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휴학 때 C는 여유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서적을 찾아 읽거나 환경 친화적인 물품을 사용했고, 약속이 있을 때 비건 식당을 찾아서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시작하게 된 비건 식당 아르바이트는 자신과 같은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만난다는 점에서 C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내가 우리가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막 참여할 수가 없잖아.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좀 환경 문제에 좀 내가 관심 많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나는 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나는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거고 뭔가 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또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고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II, 14)

이와 같이 현재 C에게는 페미니즘보다 비거니즘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C는 환경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생활에 밀접한 것으로서의 페미니즘”은 C에게 중요한 두 가지 가치관 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기도 했다.

C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하며 인터뷰를 시작했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을 “생활 속 존재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과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다시금 체감하며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데 있어 머뭇거렸다. C는 자신이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것은 맞으나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C에게 페미니즘 실천은 “생활에 밀접한 것으로서의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충족되는 것이었지만, 페미니스트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더해 “사회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을 실천해야 한다고 C는 생각하고 있었다.

뭔가 저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느낀 거는 지금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서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 뭔가 나를 내가 뭔가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중략) 그런데 그런 이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는 확실한데 뭔가 그걸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나라고 묻는다면은 글썄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 (II, 14)

이와 같이 자신의 페미니스트 정체성에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앞으로 페미니스트로서의 문제의식을 능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역량이 있음에 자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숏컷과 비거니즘 지향에 있어 혼란을 겪고 나름의 답을 찾은 경험 덕분이었다.

(4) 백래시는 내가 조심스러워진 계기

C는 백래시를 “페미니즘에 반발하는 행동 혹은 발언”이라고 넓게 정의했다. C는 직접적인 백래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1학년 때 수업에서 광고 속 여성의 위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 뒤 질의응답 시간에 “왜 남성에 대한 차별과 성 고정관념은 다루지 않느냐”, “확대해석을 한 것 아니냐”라는 학우들의 문제 제기를 받은 것이다. 또, 수업이 끝난 후 C는 우연히 같은 수업을 들은 학우와 그 학우의 지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학우의 지인이 같은 수업 학우에게 “야 오늘 진짜가 나타났다며”라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 같은 수업 학우가 C 자신을 쳐다보며 지인에게 그만 말하라고 말렸기 때문에 C는 그 발언이 자신을 지칭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어감상 “진짜”가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느끼기도 했다. 이에 C는 억울함과 두려움의 감정을 느꼈다.

이러한 백래시 경험은 C로 하여금 페미니즘 의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는 데에 있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게 만들었다. 페미니즘을 지향한 이후, C는 페미니즘을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관으로 인식했는데, 백래시를 통해 페미니즘으로 인해 현실에서 다른 사람과 같등할 수 있음을 절감했다. 이 사건 후 남성과 함께 있는 사적인 자리에서 페미니즘 관련 사안을 언급하거나 성별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됐다.

그게 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는 이런 그런 뭔가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현실에도 있을 거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었어. 그래서 뭔가 그런 상황이 있을

저라고 생각을 그니까 설마 그냥 설마 그러겠어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그때 했었던 거고. 지금은 뭔가 현실에서도 그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으니까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 그니까 그때는 좀 더 좀 젊은이의 패기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좀 더 세상을 좀 더 밝게 바라봤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지. 더 뭔가 세상에 더 나에게 우호적인 곳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II, 21)

백래시는 C가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데 머뭇거리게 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너 페미야?’라는 질문이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함의하는 백래시 국면 속에서, C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것과 자신이 페미니즘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수준의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C는 최근의 ‘매갈 손가락’ 논란을 백래시로 인식하며 무력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C는 페미니즘에 “매여있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었다. C에게 페미니즘에 “매여있지” 않는다는 것은 페미니즘을 추구하지만 페미니즘과 관련한 특정한 의제나 현실의 사안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었다. 연구자가 C에게 최근에 제일 관심 있는 페미니즘 관련 문제가 무엇인지 묻자, C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문제로부터 많이 뭔가 벗어나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올해, 예전에도 그랬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항상 1학기 때 그 정도 때까지만 해도 항상 뭔가 그런 그런 문제에 매여 있었다 해야 하나? 막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런 갈등 상황에 내가 놓였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런 갈등? 그런 걸 내가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하나 너무 내가 매여 있다 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냥 지금 지금 이렇게 생활 속에서 행동하고 있다면 그걸로 됐으니까 너무 그런 문제에 매여 있지 않으려고 오히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 없으면 더 공부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무 막 고통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I, 42)

이처럼 C는 직간접적 백래시를 직접 경험하며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것이 곧 백래시를 맞는 것과도 연결된다고 느꼈다. 직간접적 백래시를 통해 자신의 지향에 대한 타인의 시선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감정적으로 소모됨을 느끼며, C에게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일상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C는 페미니즘을 지향하면서도 페미니즘 관련 특정 사건과 자신의 일상 사이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이는 C가 “상처 입는 것을 꺼리며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의식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V. 논의 및 결론

세 사례에서 페미니즘을 지향하게 된 동기와 체험 내용을 파악했다.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백래시를 어떻게 겪었으며 그것이 개인의 페미니즘 경험 전반에서 차지하는 생애사적 의미 역시 살폈다. 더 나아가 백래시와 페미니즘 운동 경험이 한 개인의 전체 생애 지평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유형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 사람은 모두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페미니즘을 접하고 자신의 입장을 확립했다. 그러나 모두 대학 입학 이전부터 페미니즘 입문의 기반이 되는 문제의식과 감정적 기반을 형성해나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대학이라는 공간은 페미니즘을 둘러싼 구체적 담론을 경험하고, 학습과 의견 교류를 통해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됐다. 나아가, 대학 공간과 학내 커뮤니티를 주된 페미니즘 활동지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서 주로 주목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온라인 바탕의 페미니즘과는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페미니즘은 세 사람에게 과거를 성찰할 수 있는 논리와 언어를 제공해줬다. 세 사람은 모두 잊어버린 과거 경험이 있었다. A의 성추행 경험, B의 학교폭력 경험, C의 열등감 경험이 이에 해당했다. 다만 A와 B의 기억상실은 실질적인 피해 경험을 동반하는 것으로서 C의 기억상실과는 맥락이 조금 달랐다. A와 B의 기억상실은 유쾌하지 않고 감당하기 힘든 표상이나 감정에 대한 반사적인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Freud, 1984; Terr, 1997; Herman, 1998: 이희영, 2005에서 재인용). 결국, 그 방식과 내용은 모두 달랐지만 페미니즘은 세 사람 모두에게 과거의 불쾌한 경험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 사례 모두 페미니즘 내 다른 진영과 갈등을 겪는 양상이 나타난다. A에게 그것은 대학 공간 내 래디컬 페미니스트, 터프와의 갈등이었고, B에게 그것은 대학 바깥에서의 제도권 페미니즘과의 갈등이었다. 한편 C는 페미니즘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기 이전 래디컬 페미니스트(로 불리는 이들)를 보며 불편함을 느꼈다. 특징적인 것은 A와 C 모두 주변의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사용하는 언어의 적절성에 대해 고민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메갈이 온라인 공간에서 수행한 미러링의 언어는 분명한 의의와 유효성을 가졌지만, 동시에 페미니스트들에게 그 전략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세 사례 모두에서 차이가 나는 지점은 백래시를 정의하고 받아들인 방식이었다. 공통적으로 백래시는 세 사람 모두에게 어떠한 대응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각자가 페미니즘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혹은 백래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따라 백래시에 대응하는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A는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백래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

에 이에 대해 감정적인 타격을 입기보다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인식했다. B에게 페미니즘 운동은 “성과”를 내고 싶은 사회운동이었기에 백래시를 계기로 전략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열패감과 무력감을 경험했다. 직접적인 백래시를 경험한 C에게 페미니즘은 백래시의 가능성을 항상 동반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C는 백래시를 계기로 페미니즘과 자신의 일상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였다. A와 B에게 백래시는 더 많은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백래시는 B와 C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대학 공간에서 본격적으로 습득하게 된 페미니즘은 세 사람으로 하여금 잊었던 과거의 기억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내부의 다양성을 드러내며 각자의 입장에 대해 고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백래시는 페미니즘에 대한 이들의 고민을 멈출 수 없도록 만들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의 다양한 페미니즘 관련 경험과 백래시 경험에 대해 생애사적 관점에서 주목했다. 페미니스트마다 정의하는 페미니즘의 개념과 내용, 실천 방식은 각기 달랐다. 모두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했지만, ‘페미니스트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다르게 생각했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이질적인 페미니즘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던 강예원(2019), 박영민·이나영(2019), 오혜진(2019), 추지현(2019)의 논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 지점도 있었는데, 우선 페미니스트들의 다양한 페미니즘과 백래시 경험을 생애사적 관점에서 조망했다는 것이다. 이희영(2005a)에 따르면, 개인의 경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와 연관되며 개인사에서 고유한 위치를 차지한다. 세 사례에서 페미니스트들의 페미니즘 관련 경험과 백래시는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과거의 체험과 미래의 행위지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를 생애사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의미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대학생 페미니스트의 구체적 일반성을 재구성하고, 최근의 페미니즘과 백래시의 지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역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이다.

대학생 페미니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것 역시 유용성을 가진다. 이들은 대학이라는 물리적 공간 속에서 생활의 대부분을 보냈고 이를 기반으로 페미니즘과 연관된 경험을 했다. 특히 세 사례 모두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페미니즘 활동 및 백래시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대학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을 바탕으로 형성된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백래시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 속에서 페미니즘을 주되게 학습하거나 경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서 추동된 온라인 페미니즘의 양상과는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페미니스트의 성별 정체성을 여성에 한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남성으로 정체화하는 페미니스트 역시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연구를 통해, 또래 남성 집단 문화에서의 경험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위치를 성찰하는 모습 등 시스젠더 헤테로 남성이라는 정체성에서 비롯된 페미니즘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백래시를 하나의 주요한 연구문제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백래시를 마주하는 것은 필연적이기에,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백래시에 대한 논의를 페미니즘 경험의 일부로만 다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하나의 연구문제로 상정하고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뿐 아니라 생애 전반에서 백래시가 가지는 의미를 주목해보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의 페미니즘 역시 페미니즘 ‘들’(추지현, 2019)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대 초반의 세 페미니스트들은 몇 년 뒤 또 달라진 자신의 페미니즘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지도, 한 시점에 완결되지도 않는 페미니즘은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개인의 판단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해나갈 것이다. 생애사적 관점을 통해 그러한 다양성에 접근함으로써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페미니즘과 백래시를 경험한 대학생 페미니스트들의 구체적 일반성을 발견해내고자 했다. 다양한 페미니즘이 만들어내는 역동과 페미니스트의 다양한 면모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페미니즘의 방향을 고민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보고서

- 강예원(2019). 디지털 시대 페미니즘 대중화와 십대 페미니스트 ‘되기(becoming)’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준만(2018).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인물과사상사.
- 고병진(2018). 연대 거부를 통한 ‘여성’ 경계의 획정.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은해(2019). 웹사이트 워마드의 ‘홍자’ 담론 분석: 굴절된 자기혐오라는 성공예의 동력. 미디어, 『젠더&문화』 34(4), 53-97.
- 권김현영(2019).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휴머니스트.
- 김리나(2017). 온라인 액티비즘으로 재/구성되는 ‘여성’ 범주와 연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덕(2014). 대학의 여성주의 교육과 남학생들의 저항. 『담론201』 17(1), 141-175.
- 김미현(2020). 총여학생회 폐지 과정을 통해 본 대학 내 주체들의 분열과 경합의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20).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대학 내 ‘성(性)’ 강의 지형 탐색. 『한국여성철학』 33, 143-181.
- 김보명(2008). 1990년대 대학 반성폭력 운동의 여성주의 정치학. 『페미니즘 연구』 8(1), 191-217.

- _____ (2018). 페미니즘의 재부상, 그 경로와 특징들. 『경제와사회』 118, 99-138.
- _____ (2019). 젠더 갈등과 반페미니즘의 문법. 『비교문화연구』 56, 1-25.
- 김선해(2019). 안티 페미니즘 운동의 정당성 획득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15-527.
- 김성윤(2018). 우리는 차별을 하지 않아요. 『문화과학』 93, 93-119.
- 김소라(2018).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페미니즘 연구』 18(2), 235-244.
- 김수아(2012).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새로운 여성 정치 주체의 가능성. 『페미니즘 연구』 12(1), 193-217.
- 김수아(2018). 젠더정치의 미디어 프레임, ‘그 페미니즘’. 『황해문화』 101, 18-34.
- 김은주(2016). 여성혐오(misogyny) 이후의 여성주의(feminism)의 주체화 전략: 혐오의 모방과 혼종적(hybrid) 주체성. 『한국여성철학』 26, 103-130.
- 김혜경·남궁명희·이순미(2009). 지역에서의 여성학 교육의 현재와 역사적 특성: 전북지역 및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3), 151-193.
- 나영(2017). 모순과 혐오를 넘어 페미니즘 정치를 향하여. 『황해문화』 97, 98-116.
- 류진희(2015). ‘촛불 소녀’에서 ‘메갈리안’까지, 2000년대 여성혐오와 인종화를 둘러싸고. 『사이』 19, 41-66.
- 마경희·조영주·문희영·이은아·이순미(2018).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미현(2020). 참여학생회 폐지와 디지털 시대의 반격(backlash)의 역동. 『여/성이론』 42, 79-92.
- 박영민·이나영(2019). 새로운 페미니스트 운동의 등장?: <불편한 용기>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시민과세계』 34, 135-191.
- 박정훈(2019).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 내인생의책.
- 변기찬(2004). 프랑스의 근대화와 안티페미니즘(Antife minisme). 『지중해지역연구』 6(2), 69-87.
- 손희정(2017).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 수전 팔루디(2017). 『백래시』. arte.
- 신경아(2017). 젠더 갈등의 사회학. 『황해문화』 97, 16-35.
- 오세라비(2020).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됐나』. 글통.
- 오재호·박원익(2020). 젠더갈등을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이슈&진단』 441, 1-25.
- 오혜진(2019).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지영(2019). 페미니즘 지각변동. 『문화와 사회』 27(1), 7-75.
- 이다혜(2012). 대학 내 여성주의 운동과 정체성 형성 -2010년대 대학생 활동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숙(2008). 여성사 강의와 페미니스트 교수법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여성사 강의 전략-. 『여성과역사』 8, 169-195.

- 이현재(2017). 페미니즘 트리플: 도시 상상계와 편집증적 주체의 탄생. 『여/성이론』 37, 102-126.
- 이효민(2019). 페미니즘 정치학의 급진적 재구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영(2005a).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39(3), 120-148.
- _____(2005b). 체험된 폭력과 세대간의 소통. 『경제와사회』 107-132.
- _____(2011). 텍스트의 세계 해석과 비판사회과학적 함의. 『경제와사회』 103-142.
- 정다울(2020). 총여학생회 폐지와 민주주의의 역설: '민주주의'와 페미니즘의 긴장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승화(2018a). 누가 페미니즘을 모함했나?-백래시에서 시장 페미니즘까지. 『한국여성학』 34(2), 179-187.
- _____(2018b). 급진 페미니즘을 퀴어혐오로부터 구해내기. 『문화과학』 95, 50-73.
- 조혜영(2016). 상호대개적 페미니즘-메갈리아에서 강남역 10번 출구까지. 『문학동네』 23(3), 1-12.
- 진주(2012). 고려대 반성폭력 운동 소개와 학내 페미니즘 운동의 과제. 『여성이론』 27, 324-335.
- 청년참여연대(2020). '에브리타임' 내 혐오표현 관련 이용자 설문과 대학 정보공개청구 결과. 청년참여연대 캠페인 보고서.
- 최성용(2019). '20대 남성' 담론을 질문한다. 『황해문화』 103, 93-113.
- 최유숙(2019). 대학생 커뮤니티의 혐오표현 양상: C대학 에브리타임 핫게시물을 중심으로. 『교양학연구』 10, 33-53.
- 추지현(2019). 페미니즘 '들': 변화, 위해, 소통의 경험들. 『여성학논집』 36(1), 59-91.
- 한우리(2017). '이생명' '헬조선' 여성청년들의 페미니스트 되기. 『여/성이론』 37, 58-78.
- 허성학(2020). '20대 남자 현상'이 던지는 질문 -청년세대의 계급적 조건을 담론화하지 못하는 정체성 정치에 대하여-. 『진보평론』 85, 244-275.

2. 인터넷 자료 및 기사

- 경향신문(2021년 5월 4일). '집게손 모양'은 다 남성 혐오?...누구를 위한 논쟁인가.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5041757011>. (검색일: 2021. 9. 26.)
- 네이버 지식백과. 백래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70649&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21. 9. 22.)
- 시사인(2019년 4월 15일).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44>. (검색일: 2021. 9. 21.)
- 시사인(2021년 8월 30일). [20대 여자 현상] "약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차별받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20>. (검색일: 2021. 9. 23.)
- 여성신문(2021년 1월 7일). [92년생 김지영⑥] 젠더갈등은 'K형 백래시'. <http://www.wome>

- 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45. (검색일: 2021. 9. 22.)
- 여성신문(2020년 2월 27일). 여성의 ‘생물학적 근본주의’ 외치는 터프.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504>. (검색일: 2021. 9. 27.)
- 여성신문(2021년 4월 14일). 페미니즘 탓에 민주당 졌다?... 그렇다면 20대 여성은 왜 다른 선택했나?.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38>. (검색일: 2021. 9. 27.)
- 연합뉴스(2019년 1월 15일). 20대 여성 2명 중 1명 “나는 페미니스트”.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5065800005>. (검색일: 2021. 9. 26.)
- 한국대학신문(2016년 6월 6일). [젠더이슈, 대학이 나서자] 대학 여성학 교육의 어제와 오늘.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9979>. (검색일: 2021. 9. 24.)

코로나19와 고립된 병사들

— 감염병 시기 병사 휴가 통제 규정 개선
방안 연구

이 경 훈

코로나19와 고립된 병사들

— 감염병 시기 병사 휴가 통제 규정 개선 방안 연구

이경훈*

[목 차]

- I. 서론
 - 1. 연구의 주제 및 필요성
 - 2. 연구 목표
 - 3. 연구대상 및 방법
 - II. 이론적 배경
 - 1. 병사의 권리 보장 및 제한의 법적 근거
 - 2. 휴가·외박의 개념
 - 3. 휴가 통제 조치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
 - III. 휴가 통제 조치와 기본권 제한
 - 1. 휴가 통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 2. 휴가 통제 조치의 실태
 - 3. 과도한 휴가 통제의 원인
 - IV. 휴가 통제 개선안 제안
 - V. 결론
 - 1. 연구 요약
 - 2. 연구의 한계 및 의의
-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의 주제 및 필요성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국가는 전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각종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는 방역 단계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사적 모임, 행사, 집회가 금지되고 식당, 카페, 유흥 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의 경우 운영형태나 운영시간에 제약이 가해진다. 코로나19

* 이경훈(경제학부 16)

상황의 심각성과 방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방역 대책 시행으로 각종 기본권이 제한되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특히 기본권을 많이 제한받고 있는 이들이 바로 국군 병사들이다. 병사들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휴가가 통제되는 등 높은 수준의 기본권 제한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전파 상황이 심각해질 때마다 병사들의 전역 전 휴가와 청원휴가를 제외한 휴가·외출·외박을 전면 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각 기간별 자세한 휴가 통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국방부의 기간별 휴가 통제 조치 정리

날짜	기간	통제 내용
2020. 2. 22. ¹⁾ ~ 5. 7. ²⁾	76일	전면 통제(전역 전 휴가, 청원휴가 제외)
2020. 8. 19. ³⁾ ~ 10. 11. ⁴⁾	54일	전면 통제(전역 전 휴가, 청원휴가 제외)
2020. 11. 27. ⁵⁾ ~ 2021. 2. 14. ⁶⁾	80일	전면 통제(전역 전 휴가, 청원휴가 제외)
2021. 7. 12. ⁷⁾ ~ 9. 5. ⁸⁾	56일	부대 병력의 10% 이내 휴가 허용 (부대 사정에 따라 15%까지 가능)

그러나 병사들이 실제로 바깥세상과 만나지 못한 기간은 공식적인 휴가 통제 기간보다 더 긴 경우도 많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병력이 부대에 남아 있어야 하고, 병사의 소속 부대 또는 부서의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휴가 통제가 해제되더라도 바로 휴가를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국방부는 2020년 10월 12일에 휴가 통제를 해제한

- 1) 국방부, 「국방부 장관 주재, 국방부 확대 방역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0. 2. 20., https://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newsId=I_669&newsSeq=I_11985&page=1&parent= (접속일: 2021년 9월 17일)
- 2) 국방부, 「장병 휴가 정상 시행」, 2020. 5. 4., https://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newsId=I_669&newsSeq=I_12059&page=1&parent= (접속일: 2021년 9월 17일)
- 3) 맹수열, 「코로나19 확산에...2주간 전 장병 휴가 잠정 중지」, 국방일보, 2020. 8. 18.,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00819/7/BBSMSTR_00000010021/view.do (접속일: 2021년 9월 9일)
- 4) 맹수열, 「장병 휴가 54일만에 정상 시행」, 국방일보, 2020. 10. 12.,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01013/5/BBSMSTR_00000010021/view.do (접속일: 2021년 9월 9일)
- 5) 국방부,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전 장병 휴가 잠정 중지」, 2020. 11. 26., https://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newsId=I_669&newsSeq=I_12324&page=1&parent= (접속일: 2021년 9월 17일)
- 6) 맹수열, 「장병 휴가 80일 만에 재개」, 국방일보, 2021. 2. 14.,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10215/16/BBSMSTR_00000010021/view.do (접속일: 2021년 9월 9일)
- 7) 임채무, 「전 부대 거리 두기 4단계 격상...휴가 10% 이내 시행」, 국방일보, 2021. 7. 11.,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10712/1/BBSMSTR_00000010028/view.do (접속일: 2021년 9월 9일)
- 8) 김철환, 「군 장병 휴가 정상화...복귀 PCR 검사는 강화」, 국방일보, 2021. 9. 6.,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10907/9/BBSMSTR_00000010021/view.do (접속일: 2021년 9월 9일)

뒤 7주도 채 지나지 않은 11월 27일에 다시 휴가를 통제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휴가를 나가지 못한 병사는 이듬해 2월 15일까지 또다시 80일 동안 휴가를 나가지 못한 채 부대에서 생활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입대 후 7~8개월 동안 휴가를 나가지 못해 고충을 겪고 있는 장병들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⁹⁾ 이런 현상은 특정 군이나 부대에 한정되지 않고 대부분의 병사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병사들의 기본권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까지 약 5년 주기로 전세계적 감염병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휴가 통제는 비단 코로나19 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감염병 사태 하에서 국군 병사들에 대한 휴가 통제 지침을 연구하는 것은,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 속에서도 군 장병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 목표

군인의 권리 가운데 휴가의 권리는 장기간 제한된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휴가의 권리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실무에서도 휴가 규정은 미비한 상태로, 코로나19로 인한 휴가 통제 상황에서도 세부적인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오랜 기간 휴가를 나가지 못한 경우가 연구자의 주변에 존재했으며,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부분의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인해 그 제한이 과도한 경우가 있었다면 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각군별·각 부대별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있었던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조사하고,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장병 기본권 보장 모두를 달성할 수 있도록 휴가 통제 지침에 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그리고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병사의 휴가를 보장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9) 박용규, ““입대 후 7개월 넘게 휴가 0번” 길어지는 통제에 지친 군인”, 대구신문, 2021. 1. 24.,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503> (접속일: 2021년 9월 7일)
송영찬, ““8달간 부대 밖 못 나갔어요”...국방부, 장병 휴가 제한적 허용”, 한국경제, 2021. 2. 1.,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2013182i> (접속일: 2021년 9월 7일)

보고, 병사의 휴가를 통제하는 것이 어떤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국방부의 공식적인 휴가 통제 조치만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았다.

그 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휴가 통제에 관한 실제 사례를 조사하였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휴가 통제 시기에 육·해·공군 및 국방부 직속 부대에 병사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휴가 통제 이후 얼마나 오랫동안 휴가를 나가지 못했는지, 공식적인 휴가 통제 기간보다 오랫동안 휴가를 나가지 못했다면 그 원인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조사하였다. 이후 설문조사 참여자들 가운데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휴가를 나가지 못하게 된 부대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때 조사 대상자들이 근무했던 부대의 위치와 규모, 동료 병사의 수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다양한 부대들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감염병 시기 휴가 통제 지침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병사의 권리 보장 및 제한의 법적 근거

1)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¹⁰⁾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들이 열거되어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군 병사 역시 행복추구

10)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p. 976.

권을 보장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경우에도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을 창설하는 것이 가능하다.¹¹⁾

한편 대한민국헌법에는 기본권제한의 근거도 제시되어 있는데, 제37조 제2항이 그것이다. 다만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됨과 동시에 기본권제한의 한계 또한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그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함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여기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먼저 기본권제한에 있어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목적의 정당성). 또한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때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방법의 적절성). 또 입법목적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피해의 최소화). 마지막으로,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¹²⁾

2) 특별권력관계론

한편, 이전부터 군인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이른바 ‘특별권력관계론’이 빠지지 않고 제시되어 왔다.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공법상 원인에 기하여 성립되고, 공법상 행정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특별권력주체에게는 포괄적 지배권이 인정되고, 그 상대방인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공무원·군인·학생 등)가 이에 복종하는 관계를 말한다.¹³⁾ 이에 따라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는 그 설정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범위 한계 내에서 그에 복종하는 자의 기본권을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특별권력관계론은 반법치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를 부인하거나 재구성하려는 다양한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특별권력관계론은 19세기 후반 독일 입헌군주제하에서 정립된 것으로, 관리의 근무관계와 같은 행정조직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즉 이는 군주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여 주기 위한 이론으로서 형성된 것으로, 현대 헌법하에서는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은 그 성립기반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¹⁴⁾ 따라서 특별권력관

11) 위의 책, p. 979.

12) 위의 책, p. 1033~1043.

13) 김동희, 行政法 1, 박영사, 2016, p. 110.

14) 위의 책, p. 112~115.

계에 있어서도 기본권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날 군인의 권리도 일반 국민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하고 이는 병사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를 통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군인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함을 직접적인 존재의 목적으로 하는 군 조직의 구성원이므로, 그 존립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인 또는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본권제한이 가중될 수 있다. …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 기본권제한에 대한 사법적 통제 등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은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군인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함을 직접적인 존재의 목적으로 하는 군 조직의 구성원이므로, 그 존립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인 또는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본권제한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다른 관계에 비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커질 수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¹⁵⁾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제1항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는다.”

제2항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인의 휴가가 보장되는 법적 근거와 휴가 통제 조치가 가능한 법적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다. 이 법의 제3장 ‘군인의 기본권’은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를 포괄하는데, 제18조 제1항을 보면 군인의 휴가·외박이 법률에 따라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휴가의 종류와 휴가권자·기간·시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¹⁶⁾

그러나 동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인의 휴가·외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코로나19라는 재난이 발생한 현재 휴가 통제 조치가 가능한 것이다. 한편 이 조항은 과거에는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에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1998. 12. 31.

15) 헌재결 2010. 10. 28. 2008헌마638.

16) 이상철 외, 군사법원론, 박영사, 2018, p. 549.

자 개정에서 군인사법이 군인복무규율의 상위법률임을 명시했지만, 이때도 헌법상 포괄 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었다.¹⁷⁾ 그러나 2016. 6. 30.자로 '군인복무규율'이 폐지되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군인의 권리 제한은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휴가·외박의 개념

출타에 관한 각종 규정에서는 휴가와 외박을 구분하고 있다. 육군 병사들의 경우 휴가와 외박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외박의 경우 과거에는 이른바 '위수지역'이라 불린 외박 가능지역 제한이 있었고, 최근 지역제한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부대에서 자동차로 2시간 이내 거리까지만 이동이 가능하다.¹⁸⁾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병사들은 외박 기간에는 집을 방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반면 해·공군 병사들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어 휴가와 외박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취급된다. 본 연구는 병사들의 출타가 통제된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휴가와 외박을 구분해서 분석하지는 않기로 한다.

3. 휴가 통제 조치로 인하여 제한되는 권리

국방부의 휴가 통제 조치로 인해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병사들이 제한당하는 기본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1) 행복추구권

먼저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들 수 있다. 병사는 영내 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인간이 자유를 기본적으로 박탈당하고 폐쇄된 사회·공간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경우 사람은 본질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를 받고, 속박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해로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¹⁹⁾ 휴가는 폐쇄된 공간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이것이 제한되는 경우 병사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행복추구권으로부터 개별적인 기본권들을 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17) 황창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관한 입법평론, 입법학연구, 제14집 1호, 2017, p. 37~39.

18) 맹수열,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안에서... 병사들 자유 더 부여”, 국방일보, 2018. 12. 27.,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81228/2/BBSMSTR_00000010022/view.do (접속일: 2021년 9월 11일)

19) 김희수·송문호, (병사들을 위한) 군 인권법, 진원사, 2009, p. 77.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개별적 기본권들을 제외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들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하여 이를 긍정한 바 있다.²⁰⁾ 판례에 의해 인정된 구체적 기본권으로는 후술할 휴식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2) 휴식권

헌법재판소는 휴식권에 대하여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결정하여, 휴식권을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다.²¹⁾

병사가 휴가·외박을 오랜 기간 사용하지 못한다면 휴식권의 제한이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 병사는 군 간부와 달리 주말 및 공휴일에도 영내생활을 한다. 군 간부와 병사에 대해 모두 휴가 통제 조치를 내리는 경우에도, 간부는 주말 및 공휴일에 자택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반면 병사는 그렇지 못하다. 이에 병사가 휴가를 장기간 나가지 못할 경우 심각한 휴식권의 제한이 일어날 수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의 하위 행정규칙인 부대관리훈령 제56조는 “외출·외박 및 휴가의 목적은 병영을 일시적으로 떠나 영외에서 각종 용무를 보거나 집안일을 돕고,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높여 병영생활의 명랑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군복무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는 데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병사에게 휴가·외박이 갖는 휴식으로서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최장 7개월간 정기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것은 병사들의 휴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도하게 정기 외출 외박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휴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²²⁾

3)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권리

병사가 자신의 가족, 친구, 애인 등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권리 또한 제한되고 있다. 대법원은 수형자의 접견권에 관한 판례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로서,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여,

20) 헌재결 2005. 4. 28. 2004헌바65.

21) 헌재결 2001. 9. 27. 2000헌마159.

22)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결정례집 제2집, 2019, p. 108.

접견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²³⁾ 헌법재판소도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아닌 타인과의 접견교통권도 인정하였다.²⁴⁾ 이렇듯 접견권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에 게도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병사에게도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병사가 타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는 휴가·외박 외에 면회를 통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면회 역시 코로나19에 따라 부대 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통제되었다. 면회는 2020년 2월 휴가와 함께 통제된 이후 2021년 6월 23일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전면 통제되었으며, 이후에도 제한적 허용과 통제가 반복되고 있다.²⁵⁾ 이렇게 휴가·외박과 면회가 동시에 장기간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병사들의 접견권은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로 인하여 병사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 가족, 친구, 애인 등의 자유로운 접근권 역시 제한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휴가 통제 조치와 기본권 제한

1. 휴가 통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먼저 국방부의 공식적인 휴가 통제 조치만을 놓고, 이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고자 한다. 먼저 휴가 통제 조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조치이므로 기본권제한은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기본권제한의 목적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결국 휴가 통제 조치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문제가 된다.

과잉금지의 원칙의 네 가지 요소 가운데 목적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휴가 통제 조치는 앞서 언급했듯이 전염병의 전파를 차단해 공공복리를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방법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일 때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될 수 있다.²⁶⁾ 이때 병사들은

23) 대판 1992. 5. 8. 91부8.

24) 헌재결 2003. 11. 27. 2002헌마193.

25) “ ‘군에 간 아들 만난다’...접종완료자 면회 허용”, ktv, 2021. 6. 23., https://www.ktv.go.kr/news/sphere/T000021/view?content_id=627744&unit=269 (접속일: 2021년 9월 8일)

26) 헌재결 1989. 12. 22. 88헌가13.

집단생활을 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병사 중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부대 내부로 순식간에 퍼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일반 국민보다 강한 정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집단생활을 하는 다른 경우인 교정시설과 요양원의 경우에도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강한 조치를 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방문접견이 전면 제한된 바 있고,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문접견의 횟수가 단축되거나 전면 제한되고 있다.²⁷⁾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2020년 2월 17일부터 면회가 제한되었고,²⁸⁾ 2021년 3월 5일 접촉면회를 제한적으로 재개²⁹⁾ 하기 전까지는 특정 기간(2020. 7. 5. ~ 8. 23.)에 비접촉 방식의 면회만 허용되었을 정도로 외부와의 접촉을 강하게 통제했다.³⁰⁾ 따라서 군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휴가의 전면 통제라는 수단은 적절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피해의 최소성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의 선택이 아니라면 반드시 피해최소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³¹⁾ 휴가 통제의 세부적인 기간이나 방법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을지라도, 실제로 행해진 조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피해최소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피해의 최소성 역시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에 관해서는,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³²⁾ 휴가 통제 조치로 보호하려는 공익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에는 코로나19 발병의 기전, 증상, 전염 방법, 치사율,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었고,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매우 컸으며, 아직 온전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가 급증할 경우 치료를 담당할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게다가 발병 초기에는 코로나19의 치사율이 비교적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

27)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bbs/corrections/38/artclList.do>

28) 신성식, ““방호복 입고 뵈고싶다”...요양병원 면회금지에 애타는 효심”, 중앙일보, 2020. 5. 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80906#home> (접속일: 2021년 9월 10일)

29)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 비접촉 방문면회 적극 실시·제한적 접촉면회 실시」, 2021. 3. 5.,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5&CONT_SEQ=363946 (접속일: 2021년 9월 17일)

30) 박순기, “코로나19로 요양원 면회 금지...애끓는 효심”, 연합뉴스, 2020. 8. 26.,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6104300053> (접속일: 2021년 9월 10일)

31) 헌재결 1996. 12. 26. 96헌가18.

32) 헌재결 1990. 9. 3. 89헌가95.

나19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얻은 공익이 결코 작지 않다. 또한 병사의 휴가권은 통제되고 있기는 하나 휴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류되는 것이라는 점, 코로나19 상황이 심화 되는 경우 병사들의 기본권 제한이 더 강한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가 통제 조치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보호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심했던 기간에 병사의 휴가를 전면 통제한 것은 위법한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휴가 통제 조치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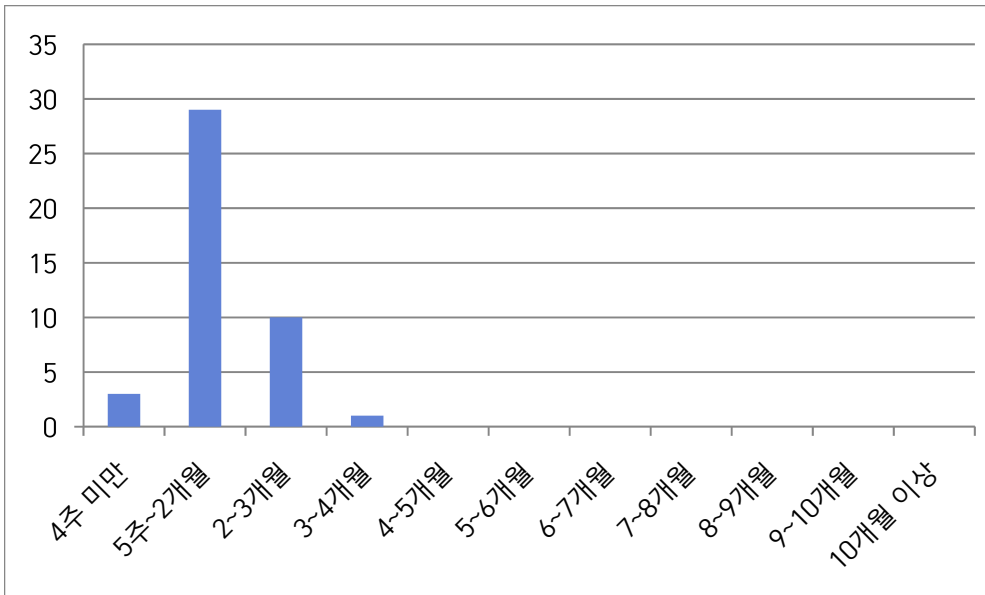
앞서 국방부의 공식적인 휴가 통제 기간보다 오랫동안 휴가를 나가지 못한 병사들이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그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코로나19 이후에 병사로 군 복무를 한 경험이 있는 남성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의 특성을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하여 국군 병사라는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참가자 가운데 육군에 복무한 비율이 60.3%, 공군이 27%, 해군이 9.5%로 구성했다. 복무한 부대의 위치는 수도권이 42.9%, 강원도가 25.4%, 대전/충청권이 19% 순이었다. 휴가에 관련된 설문조사인 만큼 같은 업무를 한 병사의 숫자가 몇 명인지도 조사했다. 이 역시 2~5명이라는 응답이 31.7%, 6~10명이 15.9%, 11~30명이 22.2%, 30명 이상이 17.5%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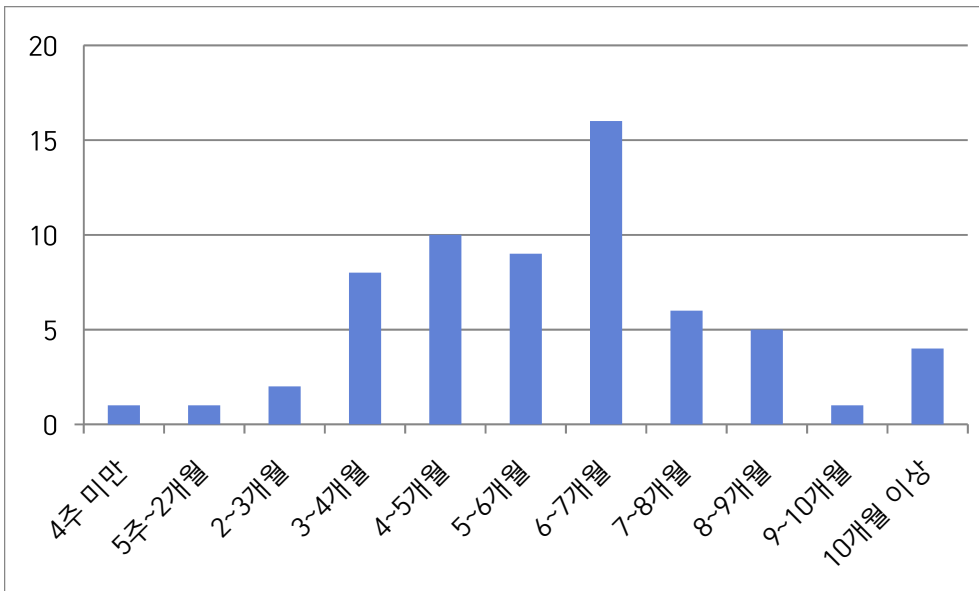
다만 충분히 많은 수의 참가자를 모집하지 못해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점과, 참가자들이 정확한 부대 명칭을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대의 대략적인 위치까지밖에 조사할 수 없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1) 휴가 주기의 변화

〈그림 1〉 응답자들의 코로나19 이전 휴가 주기



〈그림 2〉 응답자들의 코로나19 이후 최대 휴가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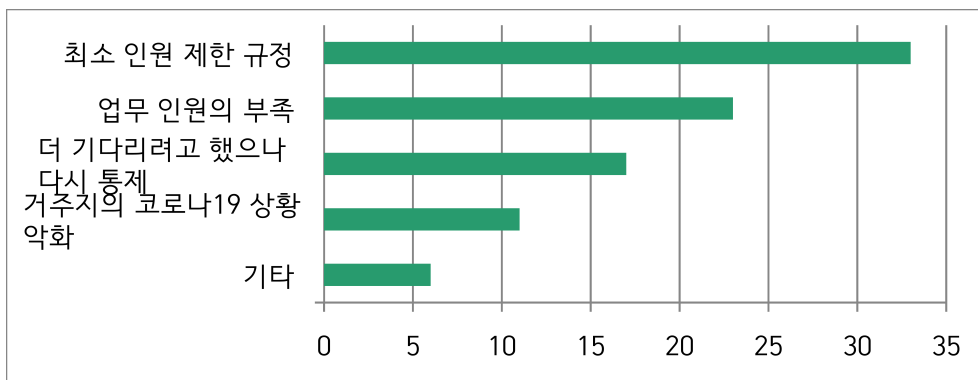
먼저 휴가 주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았다. 설문조사 참여자들 가운데 휴가 통계 이전에도 복무하며 휴가를 나간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총 43명이었다. 이 중 평균 5

주~2개월 주기로 휴가를 나갔다는 응답이 29명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2~3개월 주기로 휴가를 나갔다는 응답이 10명(23.3%)으로 뒤를 이었다. 휴가 주기가 3개월 이상이었던 응답은 1명뿐이었다.

반면 휴가 통제 이후로는 6개월 이상 휴가를 나가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2명으로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했다. 설문 참여자들 가운데 코로나19 발병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역한 응답자들과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응답자들이 포함됨을 감안하면 실제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8개월 이상 휴가를 나가지 못했다는 응답도 10명이었으며, 참여자들 중 가장 오랫동안 휴가를 나가지 못한 응답자는 무려 340일 동안 휴가를 나가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의 공식적인 휴가 전면 통제 기간 중 가장 긴 것은 80일(20. 11. 27. ~ 21. 2. 14.)이었는데, 실제로 병사들 사이에서는 6개월 이상 휴가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는 각 부대에 휴가를 내보내지 못하는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2) 휴가 통제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휴가를 나가지 못한 이유

〈그림 3〉 휴가 통제 기간이 아니었는데도 휴가·외박을 나가지 못한 이유 (복수응답 가능)



설문조사 참가자들 가운데 ‘휴가/외박이 전면 통제되지 않았던 기간에, 휴가/외박을 나가고 싶었으나 나가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50명을 대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는, ‘규정상 부대에 최소 인원이 남아 있어야 해서’라는 응답이 66%로 가장 많았다. ‘업무를 할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46%로 뒤를 이었다.

각 부대의 사정과 휴가를 나가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대상 가운데 6명을 선정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참가자들에 대한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인터뷰 참가자 주요 정보

참가자	부대	위치	복무기간 ³³⁾	최장 휴가 주기
A	육군	강원	21. 1. 18. ~	약 150일
B	육군(국방부 직속)	경기	19. 7. 8. ~ 21. 1. 31.	약 150일
C	육군	강원	19. 2. 18. ~ 20. 9. 22.	약 90일
D	육군	강원	19. 12. 17. ~ 21. 6. 30.	281일
E	육군	강원	21. 2. 1. ~	휴가 경험 없음
F	해군(국방부 직속)	경기	20. 10. 12. ~	약 180일

설문조사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종합한 결과, 과도한 휴가 통제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을 세 가지 발견하였다. 이를 다음 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3. 과도한 휴가 통제의 원인

1) 최소 인원 제한 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휴가의 승인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하되, 그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휴가·외박을 나가지 못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규정상 부대에 최소 인원이 남아 있어야 해서'는 각종 규정에 명시된 부대별 휴가 인원 제한을 의미한다. 대통령령으로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인터뷰 참가자들은 세부 사항은 각군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비상 상황에 빠르게 전투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인원이 휴가를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휴가·외박을 나가는 인원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병사들의 휴가·외박은 보류되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휴가 통제 기간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병사들이 전역을 앞둔 시점에서 이른바 '전역 전 휴가'를 오랜 기간 나가게 되었다. 휴가를 나갈 수 있는 인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전역 전 휴가자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다른 병사들의 휴가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병사들은 다시 전역 전 휴가를 길게 나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희 보직이 30명 정도 인원을 차지했습니다. 그중에서 출동대기 같은 것 때문에 15명 정도는 부대에 남아 있어야 해서, 나머지 15명 중에서 나가고 싶은 인원 조절

33) 전역일을 표시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현역 복무 중

해서 하는 건데, 휴가 TO를 다른 일반 헌병과 인원수 비례해서 나가다 보니까, 저희도 나갈 수 있는 인원이 6~7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휴가를 꼭 나가야 하는 인원, 신병 인원 하면 자리가 거의 없다 보니까, 휴가가 계속 쌓이는 경우가 많았죠.” (인터뷰 참가자 C)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 이후 2021년 7월 12일부터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부대별 인원의 10% 또는 15% 이내의 범위에서만 휴가가 허용되고 있다. 기존보다 휴가를 나갈 수 있는 인원이 더 줄어들면서, 전역 전 휴가자를 제외한 병사들이 사실상 휴가를 전혀 나갈 수 없는 부대들이 많아진 상태였다.

“코로나 4단계여서 지침상 부대 인원의 15%까지 휴가를 나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15%에 전역 전 휴가자도 포함이 돼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중대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2~3명이예요. 2명이 나갔다가 복귀해야 다른 2명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가기 좀 어렵죠.” (인터뷰 참가자 E)

“전역 전 휴가를 출타율에 포함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휴가를 나가고 싶은 사람은, 전역 전 휴가 때문에 출타율이 꼭 찻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많 습니다. 저희 부대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4단계 된 이후에 출타율이 10%로 줄었어요. 사실상 일반 인원들은 나갈 수가 없는 상황 이죠.” (인터뷰 참가자 F)

전역 전 휴가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휴가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은 사실상 휴가 전면 통제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전면 통제 조치가 이루어진 때에도 전역 전 휴가와 청원휴가는 예외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휴가자 비율을 10%~15% 이내로 제한한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의 통제인 만큼 이를 무조건 완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전면 통제나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2) 업무 인원의 부족

설문조사에서 두 번째로 많았던 응답은 ‘업무를 할 사람이 없어서’였다. 이 문제는 다시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었다. 먼저 병사가 부족하면 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이다. 주로 전방부대에 복무하는 경계병이나 군사경찰 등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직책에서 이런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병휴가도 못 나갈 친구도 4~5명 이런데 한 번에 2명밖에 못 나가니까. 2명 넘 게 나가면 근무 될 사람이 부족해져요. 특히 밖에 외부에 일 나갈 때 사람이 없어서.

3명이 나가도 다른 분대가 덜 나가면 규정상 문제는 없었지만, 8명 중 3명이 나가 버리면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할 수는 있지만 피로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인터뷰 참가자 B)

“GOP가 24시간 경계를 하잖아요? 최소한의 인력을 남겨둔 상태에서 휴가를 나가기 때문에, 한번 나갈 때 별로 못 나가요. (총원 20명 중에) 16명 정도 남겨 놔야 해서, 한 번에 나갈 때 4명? 그리고 GOP가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총원이 18명 이렇게 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인원은 16명이 필요해서, 한 번에 2명밖에 못 나가기도 하고. … 그 인원이 저희 부대로 아직 소속이 돼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갔으니까 신병이 와서 인원을 대신해 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우리 부대에 있다고 판단해서 신병을 보내주질 않는 거죠.” (인터뷰 참가자 D)

참가자 B 씨는 군사경찰로 복무했고, D 씨는 전방의 GOP에서 복무한 참가자였다. 이들은 모두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가 이루어지는 직책이므로 최소한의 인원이 부대 안에 남아 있지 않으면 근무의 부담이 과중해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들 역시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병사들이 전역 전 휴가를 오랫동안 나가면서 문제가 심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방부는 장병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역 전 휴가를 나간 병사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전역하라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료 병사들의 입장에서 전역 전 휴가를 나간 병사들은 전역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이는 인터뷰에 참가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조기 전역’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통계상으로는 휴가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를 대체할 후임 병사가 빠르게 충원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두 번째 경우는, 병사가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도 관행적으로 휴가를 내보내지 않는 경우였다. 행정병 등의 직책은 병사가 잠시 휴가를 나가더라도 간부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데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병사가 적어도 한 명은 부대에 남아 있는 것이 관행이 되어 휴가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행정병은 업무를 간부님들이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간부님들의 생각은 본인들이 그런 업무를 떠맡는 걸 기피하는 면이 있고, 행정병들은 특히 소수직이 많다 보니까, 2인 TO인 경우가 많아서, 출타율이 풀려 있더라도 내 사수/부사수가 휴가를 갔다 올 때까지 휴가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간부들이 보충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병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윗분들도 이 상황을 모른다가보다는, 그래도 병사 한 명은 있어야 한다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참가자 F)

F 씨는 행정보급병 보직으로 복무하고 있다. 행정병의 업무는 경계 업무 등과는 달리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직책이 아니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가 있을 경우 간부와 병사가 서로의 업무를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가 사무실에 최소한 한 명은 남아 있는 것이 관행이 되어 버린 경우가 있었다. 이에, 선임 병사가 오랫동안 휴가를 나가거나 전역 전 휴가를 나가게 되면 후임 병사는 휴가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요소 외의 휴가 통제 요소가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크지 않으나, 이렇게 휴가를 미룬 뒤 코로나19가 확산돼 휴가가 다시 통제되는 경우 휴가를 지나치게 오랫동안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 격리 시설의 문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는 격리 시설의 한계로 휴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였다. 병사들은 국방부의 격리 지침이 확립된 뒤부터, 휴가를 다녀온 뒤 1주~2주간 격리 생활관에서 격리를 마친 뒤 일반 생활관으로 복귀했다. 그런데 부대 사정상 격리 생활관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격리 생활관은 일반 생활관과 생활의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런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격리할 수 있는 공간에 제한이 있어서, 그 공간에 맞춰서 내보내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병사가 300여 명 있는데, 2주 단위로 24명 정도 나가고 있어요.” (인터뷰 참가자 A)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전에는) 비율은 높긴 했는데, 격리 시설 자리가 있어야 나갈 수 있었어요. ... 인원 적은 중대가 쓰던 공간을 좀 떼서 격리실을 만든 거여서, 제한돼 있었어요.” (인터뷰 참가자 E)

참가자 A 씨의 부대에서는 격리 생활관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이 부대 전체 병사의 10% 미만이었다. 이에 한 번에 휴가를 나갈 수 있는 최대 인원은 격리 생활관 수용 인원으로 제한되었다. 참가자 E 씨의 경우 부대의 인원 등의 정보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격리 시설이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못해 휴가를 나갈 수 있는 인원의 제한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IV. 휴가 통제 개선안 제안

병사들이 휴가를 나가지 못한 기간이 공식적 통제 기간보다 길어지게 만든 세 가지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들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려 한다.

1) 전역 전 휴가자를 고려한 휴가 인원 제한 설정

먼저 휴가자 비율을 제한할 때는 전역 전 휴가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는 휴가 인원을 부대 총원의 5분의 1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다소 논란이 있다.³⁴⁾ 다만 이는 최소한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므로 본 연구에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염병 차단을 위해 휴가 인원 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전역 전 휴가자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전역 전 휴가자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휴가를 나가는 것과 군 내부로 코로나19가 침투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군 내부로의 감염 차단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것은 전역 전 휴가자를 제외한 병사들의 휴가 비율이다. 국방부의 지침 역시 이에 맞춰 전역 전 휴가자를 제외한 휴가 비율을 중심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휴가 인원을 부대 총원의 15% 이하로 제한’하라는 지침이 아니라, ‘전역 전 휴가자를 제외한 휴가 인원을 부대 총원의 10% 이하로 제한’하라는 지침이 전염병 관리에 더 적절하면서도 병사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속한 인원 충원

두 번째 원인인 ‘업무 인원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인원 충원이 필요할 것이다. 전역 전 휴가를 나가 더 이상 부대에 복귀하지 않을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상급 부대에서 빠르게 파악하고, 병사가 꼭 필요한 보직에 대해서는 즉시 신병을 배속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인터뷰 참가자 D 씨는 휴가 통제가 시작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이런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 후로는 상급 부대에서 알게 됐나 봐요. 이야기가 전달이 잘 됐는지. 그래서 안 들어온 시즌 1~2달 쯤다가, 이후로는 상급 부대에서도 조기전역(전역 전 휴가) 일찍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그 부분은 해결됐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참가자 D)

D 씨는 전방부대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보직에 있었는데, 1~2개월 정도는 전역 전 휴가를 나간 인원이 있는데도 신병이 배속되지 않아 다른 인원들은 휴가를 거의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전역 전 휴가를 나가는 인원이 발생하면 곧바로 신병이 배속되어 상황이 완화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근무 인원이 꼭 필요한 부대와 보직에는 빠른 인원 충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

34) 김희수·송문호, 앞의 책, p. 78.

대적으로 병사의 필요성이 덜한 보직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인원을 줄이는 등의 유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3) 불필요한 관행 타파

코로나19로 인한 휴가 통제만으로도 병사의 기본권이 상당한 수준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병사의 휴가에 관련된 다른 관행들은 타파할 수 있도록 지침 하달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휴가 인원 제한 규정도 고려해야 하는 데다 언제든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출타 통제가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진 상황에서는 피로가 누적된 병사들의 휴가를 최대한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꼭 필요한 보직에 빠르게 인원을 배속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면, 다른 보직의 인원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도 관행대로 신병이 배속될 때까지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휴가권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휴가를 오랫동안 나가지 못하는 보직이나 부대가 바뀌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병사 인원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관행의 타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상급 부대 차원에서 격리 공간 마련

병사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단기간에 확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격리 공간이 부족해 휴가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부대 내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일부 병사가 상급 부대에서 격리를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당시에 일주일 나갔다가 일주일 격리해라, 이렇게 (지침이) 나왔어요. 일주일 휴가 나갔다가 대대급에서 혹은 그 이상급에서 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휴가 나갔다가 일주일 격리하는 식으로... (진행했어요)” (인터뷰 참가자 D)

참가자 D 씨는 부대 생활관의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위 부대인 대대 또는 그 이상의 부대에서 격리를 진행하도록 지침이 하달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상급 부대에 공간적 여유가 있고 상급 부대와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상급 부대에서 일부 인원이 격리 기간을 보내고, 이후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통해 원소속 부대로 이동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군 병사들의 휴가가 통제된 상황에서 병사들이 실제로 휴가를 나가지 못하는 기간이 공식적인 휴가 통제 기간보다 훨씬 길다는 것에 주목하여 시작되었다. 이에 기본권제한의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병사들의 휴가 실태를 조사한 뒤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국군 병사들의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만, 동시에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전에는 특별권력관계론에 의해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제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구체적으로 휴가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군인의 복무 및 지위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병사들이 휴가를 나갈 수 없게 됨으로써 제한받는 기본권들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었다. 판례를 통해 인정된 바 있는 구체적인 기본권으로는 휴식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권리 등을 들 수 있었다.

국방부의 공식적인 휴가 통제 조치만 놓고 보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기본권제한은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졌고, 그 목적도 전염병의 차단을 통한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군부대와 비슷하게 집단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이나 요양원 등에서도 외부와의 접촉을 오랜 기간 전면 통제할 바 있고, 병사들의 휴가가 보류되는 것일 뿐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다른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실제로 병사들이 휴가를 나가지 못하는 기간은 공식적 휴가 통제 기간보다 길었다.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해 휴가 주기의 변화와 휴가를 오랫동안 나가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였다. 휴가 주기의 경우 휴가 통제 이전에는 2~3개월 주기가 일반적이었지만, 휴가 통제 이후에는 6개월 이상 휴가를 나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일 정도로 장기간의 휴가 통제가 보편화돼 있었다. 휴가를 오랫동안 나가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최소 인원 제한 규정’이었다. 부대별로 총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휴가를 나갈 수는 없는데, 길어진 휴가 통제로 인해 전역 전 휴가를 오랫동안 나가는 병사들이 많아지면서 나머지 병사들은 휴가를 나가기 어려워진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21년 7월 12일부터 부대 인원의 10% 또는 15% 이하만 휴가를 나갈 수 있도록 통제 지침이 강화되면서, 전역 전 휴가자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거의 나가기 어려워진 부대들이 많았다.

두 번째는 ‘업무 인원 부족’이었다.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직책 등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인원이 부대 내에 있어야 근무가 가능한데, 역시 전역 전 휴가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인원이 휴가를 더 나갈 경우 근무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병사의 업무를 간부가 대체할 수 있는 보직에서도, 병사가 한 명 이상은 부대에 남아있는 것이 관행이 되어 휴가를 나가기 어려워진 경우도 있었다.

세 번째는 ‘격리 시설의 문제’였다. 부대 사정상 격리 생활관을 충분히 크게 만들지 못해, 격리 생활관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 이상으로 휴가를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휴가 인원 제한을 강화할 때는 전역 전 휴가자의 비율을 파악한 뒤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병사가 꼭 필요한 보직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인원을 충원해야 하고, 병사와 간부 간에 서로 업무 대체가 가능한 보직의 경우 병사를 부대에 남겨 놓는 관행을 깰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격리 생활관이 부족한 부대의 경우 상급 부대 차원에서 격리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설문조사 대상의 확보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응답자의 수를 충분히 많이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이 복무한 부대의 정확한 명칭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표본이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웠다. 향후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크기의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통해 병사들의 휴가 통제 실상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휴가권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선 지금의 코로나 19 사태 이전까지는 국군 병사의 휴가가 장기간 통제된 적은 거의 없었다. 또한 병사들이 가혹행위나 폭력을 당해 신체의 자유를 위협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오늘날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병사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는 주로 폭력이나 사고 예방, 스트레스 관리 등의 분야에 치중되어 있었다. 이에 병사의 휴가권에 관해서는 선행연구가 많이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셋째, 군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웠다. 휴가에 관한 각군 규정, 휴가 통제 조치에 대한 부대별 세부 지침 등은 주로 군 내부 문서로 공유되었고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에 휴가 통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데 있어 인터뷰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단계에서도 기존의 규정들과 충돌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병사들의 휴가 실태에 관한 현황조사의 의미를 가진다. 병사들이 오랜 기간 휴가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병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둘째, 또 다른 전염병 사태 때 참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미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신종플루),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의 전염병이 유행한 바 있고, 향후 코로나26이나 코로나32가 등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³⁵⁾ 또다시 범세계적 전염병이 창궐하기 전에 규정과 지침을 개선하여, 병사들의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병사의 휴가권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군 병사에게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휴가권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향후 병사의 휴가권에 관한 논의가 확대되는 데 본 연구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

김동희, 『行政法 1』, 박영사, 2016.

김희수·송문호, 『(병사들을 위한) 군 인권법』, 진원사, 200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이상철 외, 『군사법원론』, 박영사, 2018.

황창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관한 입법평론」, 입법학연구, 제14집 1호, 2017.

<홈페이지>

국방부, 「국방부 장관 주재, 국방부 확대 방역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0. 2. 20., https://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newsId=I_669&newsSeq=I_11985&page=1&parent= (접속일: 2021년 9월 17일)

국방부, 「장병 휴가 정상 시행」, 2020. 5. 4., https://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newsId=I_669&newsSeq=I_12059&page=1&parent= (접속일: 2021년 9월 17일)

국방부,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전 장병 휴가 잠정 중지」, 2020. 11. 26., https://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siteId=mnd&newsId=I_

35) 신진호, “‘기원 규명 못하면 코로나26·32도 발생’...美학계서도 재조사 목소리“, 서울신문, 2021. 5. 3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31500029> (접속일: 2021년 9월 15일)

669&newsSeq=L_12324&page=1&parent= (접속일: 2021년 9월 17일)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bbs/corrections/38/artclList.do>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 비접촉 방문면회 적극 실시·제한적 접촉면회 실시」, 2021. 3. 5.,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5&CONT_SEQ=363946 (접속일: 2021년 9월 17일)

<기사(날짜순)>

맹수열,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안에서… 병사들 자유 더 부여”, 국방일보, 2018. 12. 27.,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181228/2/BBSMSTR_000000010022/view.do (접속일: 2021년 9월 11일)

신성식, “방호복 입고 뵙고싶다”…요양병원 면회금지에 애타는 효심, 중앙일보, 2020. 5. 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80906#home> (접속일: 2021년 9월 10일)

맹수열, 코로나19 확산에…2주간 전 장병 휴가 잠정 중지”, 국방일보, 2020. 8. 18.,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00819/7/BBSMSTR_000000010021/view.do (접속일: 2021년 9월 9일)

박순기, “코로나19로 요양원 면회 금지…애끓는 효심”, 연합뉴스, 2020. 8. 26.,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6104300053> (접속일: 2021년 9월 10일)

맹수열, “장병 휴가 54일만에 정상 시행”, 국방일보, 2020. 10. 12.,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01013/5/BBSMSTR_000000010021/view.do (접속일: 2021년 9월 9일)

박용규, “입대 후 7개월 넘게 휴가 0번” 길어지는 통제에 지친 군인”, 대구신문, 2021. 1. 24.,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503> (접속일: 2021년 9월 7일)

송영찬, “8달간 부대 밖 못 나갔어요”…국방부, 장병 휴가 제한적 허용”, 한국경제, 2021. 2. 1.,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2013182i> (접속일: 2021년 9월 7일)

맹수열, “장병 휴가 80일 만에 재개”, 국방일보, 2021. 2. 14.,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10215/16/BBSMSTR_000000010021/view.do (접속일: 2021년 9월 9일)

신진호, “기원 규명 못하면 코로나26·32도 발생”…美학계서도 재조사 목소리”, 서울신문, 2021. 5. 3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31500029> (접속일: 2021년 9월 15일)

“‘군에 간 아들 만나다’…접종완료자 면회 허용”, ktv, 2021. 6. 23., https://www.ktv.go.kr/news/sphere/T000021/view?content_id=627744&unit=269 (접속일: 2021년 9월 8일)

임채무, “전 부대 거리 두기 4단계 격상…휴가 10% 이내 시행”, 국방일보, 2021. 7. 11.,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10712/1/BBSMSTR_000000010028/view.do (접속일: 2021년 9월 9일)

김철환, “군 장병 휴가 정상화…복귀 PCR 검사는 강화”, 국방일보, 2021. 9. 6.,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10907/9/BBSMSTR_000000010021/view.do (접속일: 2021년 9월 9일)

<판결>

대판 1992. 5. 8. 91부8.

헌재결 1989. 12. 22. 88헌가13.

헌재결 1990. 9. 3. 89헌가95.

헌재결 1996. 12. 26. 96헌가18.

헌재결 2001. 9. 27. 2000헌마159.

헌재결 2003. 11. 27. 2002헌마193.

헌재결 2005. 4. 28. 2004헌바65.

헌재결 2010. 10. 28. 2008헌마638.

<기타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결정례집 제2집』, 2019.

청년 소외와 '청년 인권'

— 청년 인권의 향상을 위한 청년 정치대표성
제고 방안 모색

고서영, 류동오

청년 소외와 '청년 인권'

— 청년 인권의 향상을 위한 청년 정치대표성 제고 방안 모색

고서영, 류동오*

[목 차]

I. 서론

1. '청년'
2. '청년의 문제'

II. 본론

1. 행정부 검토
 - A. 대한민국 '청년 정책' 검토
 - B. 행정부 '청년 정책' 검토
 - C. 행정부 주도 청년 정책 체제의 한계
2. 입법부 검토
3. 입법부 내 청년 대표성 제고를 위한 선행 연구 검토
 - A. 기술적 대표성의 부족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 B. "청년의 정당 활동 활성화" 주장에 대한 검토
 - C. 본론 2장의 종합 및 제언
4. 청년 대표성 제고를 위한 대안적 방안의 모색

II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대입, 진로 고민, 학자금 대출, 자취, 취업 준비, 내집마련, 결혼, 새로운 가정 꾸리기. 이 일련의 키워드들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사건들이다. 많은 경우 별도의 비판 없이 위 '과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 그리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이루어진다. 심지어 자아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 각 단계의 실현이 우선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 만큼 개인에게 있어 위 과제를 수행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임무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공동체에 상정된 공동의 아젠다인 셈이다. 동시에 위 키워드들은 제2의 공통분모를 가지

* 고서영(동양사학과 20) 류동오(동양사학과 20)

고 있는데, 바로 생애 주기 중 특정 단계, 소위 ‘청년’ 단계에 집중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청년’은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청년 문제와 그 해결책 고찰’이라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을 짚어보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우선 ‘청년’ 집단에 대한 무의식적 프레임을 걷어내기 위해 연령, 생애주기, 사회적 환경, 거버넌스의 네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여 최대한 다양한 지평에서 청년 집단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청년’

첫 번째는 연령 측면이다. 2020년 1월에 제정된 「청년기본법」 제3조 1항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조 2항에서는 “청년발전”에 대해서 “청년의 ... 정책결정과정 참여 기회 확대 ...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에 가장 부합하는 정의인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에 대한 연령 범위와도 합치된다. 배정희와 김기현의 연구(2020)에 따르면,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청년 연령을 물어본 결과, 하한 연령은 19.5세였고 상한연령은 32.5세였다고 한다.¹⁾ 이 연령 정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청년인구는 108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한다.

두 번째는 생애주기 측면이다. 청년은 주로 아동, 청소년에서 중·장년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의 특성을 보여준다. 청년 시기에 직면하는 이행기는 취업, 결혼, 분가, 출산 등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역할을 갖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 또한 본 연구진이

청년문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청년 집단은 “단순히 하나의 대표적인 계층이 아니라 그 사회가 지속하고 미래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중심이 되는 계층”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세대” “사회발전의 동반자”로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는 사회적 환경 측면이다. 청년 집단은 어떤 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는가? 어떤 군상들이 있는가? 국무조정실에서 2020년 발간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정책 대상 분석에 따르면, ‘청년’은 크게 ‘일반 청년’과 ‘취약계층 청년’으로 구분된다. ‘일반 청년’ 범주에는 청년 취업자, 청년 창업자 및 소상공인, 대학생이 있다. 그리고 ‘취약계층 청년’으로는 미취업 청년,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및 고립청년, 단독가구

1) 배정희, 김기현 (2020).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p. 9-10.

2) 위의 논문, p. 10.

및 주거 취약 청년, 저소득 청년, 이주배경 및 북한이탈 청년, 미혼모·미혼부·한부모 청년, 장애를 가진 청년으로 구분된다. 또한 청년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변화로는 인구(저출산고령화), 경제(포스트 코로나 19), 사회(불평등), 국제(글로벌화), 기술(4차 산업혁명)이 지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거버넌스, 정치적 지위 측면이다. 사실 청년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근래의 일만은 아니며, 지난 십수년 간 청년 문제가 의제화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청년 정책의 의미에 대한 입안자들의 진지한 고찰이 부재하였을뿐더러 정책 당사자인 청년과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 일부 청년들이 타자화되었고, ‘청년’ 자체와 청년문제 발생 배경의 몰이해에 따른 정책의 ‘비포괄성’ 문제가 청년 당사자 집단에서 제기되었다.³⁾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이례적으로 ‘거버넌스’ 항목을 따로 두어 다루고 있는 것도, 현재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또한 2030세대는 스윙보터(Swing-Voter) 성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눈여겨 볼만한데, 그만큼 특정 정치적 색깔에 경도되지 않고 객관적인 정치적·경제적 현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청년들은 피선거권을 제도적·사회적으로 침해받고 있다. 본문에서 지적하겠지만, ‘청년’은 법률에 규정된 연령 제한과 기탁금제도로 인하여 애초부터 선거경쟁의 장에 설 수 없는 데다가, 대한민국 정치 토양에 깊게 뿌리박힌 공천제로 인하여 미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청년 집단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 또 그만큼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2. ‘청년의 문제’

청년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다. 사회시스템의 오류는 청년으로 하여금 소위 ‘정상적인’ 루트, 즉 20살 초중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적어도 30대에는 직장을 구해 늦어도 40대 안으로는 내 집을 장만하는 ‘전형적인’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든다. 더군다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주거권까지 점점 요원해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명 청년 문제로 불리는 것들은 청년 개인에게 일임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인생 자립기반의 형성이라는 일생일대의 과업을 짊어지고 있는 청년 개인에게 오로지 ‘노력’을 통해 헤쳐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다. 청년 문제는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빈부격차 문제 등 우리 사회 안에서 끓어가고 있는 각종 병폐들이 아직 아무 방패막도 갖지 못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이다.⁴⁾ 지금의 청년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3) 김지경·변금석,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19).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p. 6.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퍼진 구조적 문제를 생애주기에서 좀 더 빠른 시기인 청년기에 교정해나가는 것이다. 모든 세대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문제에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 그것이 청년 문제라는 이름에 가려진 본래 목표이다.⁵⁾ 더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만약 당장 출산율이 급증한다고 하여도 상당한 시간 동안 청년세대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급감할 것이고, 지금처럼 청년세대가 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며 유랑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청년이 요구하는 정책은 수렴단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 불가피하다. 일종의 연쇄 고리인 셈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인식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현행 체제 속 ‘청년 정책’의 시행 양상과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행정부 검토

청년 문제가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인정한다면, 그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의 건강·주거·돌봄을 위해 “노인정책”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여 사회의 공감을 얻듯, 청년 또한 하나의 복지 대상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흔히 우리는 청년(靑年)을 ‘성장통을 겪지만 동시에 여전히 미래에 대한 가능성으로 빛나는 존재’⁶⁾로 상정한다. 그러나 그 실체를 뜯어보면 사회적으로 형성된 프레임인 동시에 ‘이상적인 청년상’에 가깝다. 청년 문제의 해결은,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제공하는 진통제와 같은 프레임, 즉 ‘청년시절은 누구나 다 그렇다’, ‘취직난과 주거난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전혀 당연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 사회의 ‘청년’은 누구이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청년 집단이 당면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이 이러한 고민을 나누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정책입안자들만큼은 이 일련의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구조 특성상 청년 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여부는 입안자들의 고민 수준과 깊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⁷⁾ 청년문제 해결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4) 위의 논문, p. 5.

5) 민선영. “청년, 불평등 사회와 마주하다.” 월간 복지동향. 231 (2018): p. 18.

6) 홍혜은. “청년 주거권 문제의 본질: 정상성, 가족주의, 공동체.” 월간 복지동향. 257 (2020): p. 14.

7) 뒤에서도 지적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청년 집단은 정치적 효능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며, 피선거권에 서 많은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청년 거버넌스가 보장되고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

것이다. 청년의 특수성은 전통적인 소수자집단으로 인식되어온 ‘여성’, ‘장애인’ 집단과는 다소 다르다. 또한 여전히 ‘청년’이라는 정치적 상징기호에 대해 기성세대와 의미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⁸⁾ 정치 영역과 구분되는 현실 영역에서의 ‘청년 문제’는 공익의 담당자들, 즉 입법부와 행정부에 의해 고민되고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사실이다.

A. 대한민국 ‘청년 정책’ 검토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 정책의 양상은 다소 기형적이다. 입법부는 일견 청년 문제의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행정부는 입법부의 시선 공백을 단순히 메꾸는 것을 넘어서 청년 정책 전반을 독점하다시피 수행하고 있다. 자세한 불균형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중앙부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32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수는 총 308개, 예산으로는 약 23.8조원이 책정되었다. 이는 전년 예산액 대비 19.6%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21년 당해 공공질서·안전 예산이 22.3조,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22.7조로 책정된 것을 볼 때, 일반적인 기능 정책과는 구별되는 대상 정책임을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⁹⁾ 심지어 매년 과다책정으로 논란이 되는 SOC 예산(26.7조)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¹⁰⁾ 반면 같은 시기의 21대 국회에서 2020년 발의된 법안 6,96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2030세대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은 법안은 1.3%(9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 한국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10대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만 176건으로 청년 관련 발의안건의 두 배에 육박한다. 심지어 발의된 91건 중 실제로 통과된 법안은 단 2건에 불과했는데, 그 두 안건이란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학습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 시정 업무를 추가하는 것,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 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 문구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이었다. 통과된 단 두 개 안건마저도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로는 당사자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행정부는 국회든, 입안자 집단은 청년 당사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 청년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 8) 박이대승 외, ‘청년 담론’ 분석에 기초한 청년 활동 전망 연구, 청년담론연구보고서, 2015, p. 21.
- 9) “청년정책은 대상 정책으로 다른 기능 정책들과 차이가 존재한다. 기능 정책은 노동, 복지, 문화 등과 같이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 대한 정책을 기능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룬다. 그러나 대상 정책은 대상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정책 대상의 여러 가지 욕구나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능 정책을 하위 영역으로 두며, 다양한 기능 중심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문제가 주요한 쟁점이 된다. ...” (배정희, 김기현 (2020). p. 7.)
- 10) 2021 나라살림예산개요, p. 126.
- 11) 신지후·우태경·최다원, “50대가 장악한 국회·기업... 청년·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한국일보, 2021.01.07.

B. 행정부 '청년 정책' 검토

안타깝게도 입법 업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 중 행정부만이 청년 아젠다를 독점하고 있는 까닭에, 정책입안자들의 '청년'에 대한 인식, 현 정책 방향성의 적절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유일한 창구는 행정부의 청년 정책을 짚어보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현재 행정부의 '청년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우선 행정부가 마련하는 청년 정책의 법적 근거는 2020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이다. 정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지향점으로 “자신의 역량을 쌓고 [교육·학자금지원], 적성에 맞고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일자리 지원] 목돈을 마련하고[소득지원], 살 집을 마련하는[주거지원] 단계별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¹²⁾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효용성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청년 정책 전반의 큰 틀만을 살펴본 것일 때, 첫째로 일자리 위주에서 ‘청년의 삶 전반’으로 보장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 둘째로 정책의 범위가 주거·생활·참여 등 보다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양상을 띠는 점, 셋째로 장기적인 기본계획 하에서 매년 기관별로 구체적인 과제를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4월 발간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서에서도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 ④복지·문화, ⑤참여·권리의 5대 분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체계적인 정책 추진체계가 구축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높이 평가할만한 지점이다.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청년 정책’이라고 부를 만한 실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도약이다.¹³⁾ 그러나 이런 평가는 2020년에는 큰 의미가 있었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제시되는 2021년 올해에는 그다지 새로운 논의도 아닐뿐더러 별다른 쓸모도 없다. 달리 말하자면 정책의 체계나 의의를 논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의 실효성과 방향성, 타당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데, 본 연구진이 꽤 오랜 시간동안 적지 않은 논문들을 훑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의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지적을 찾을 수 없었다. 전반적 검토는 고사하고 특정 행정기관의 특정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보완의견도 없었으니, 감히 ‘전무하였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학계의 고요함과는 별개로 현실의 청년 문제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최근 불거진 청와대 청년비서실장 논란, 청년임대주택 논란 등은 아직 학술적인 지평에서 비판되고 설명된 적은 없으나, 사건의 발생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시사하고도

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지원정책”, 최종수정일 2021.09.03.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193>.)

13) 조진우(2020)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정책은 2017년 76개 사업의 9.7조원 예산규모에서 2020년에는 182개 사업의 22.3조원의 규모로 그 범위와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한다.

남는다. 그렇다면 가장 원론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 청년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C. 행정부 주도 청년 정책 체제의 한계

본 연구진이 주목한 지점은, 앞선 문단에서 지적한 바 있는 입법부·행정부 간 청년정책 담론의 기형적인 분담 양상이었다. 행정부만 특정 아젠다를 독점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일차적으로 대통령제 하의 행정부 집단은 일반적으로 대선에서 제시되었던 대통령의 공약과 결음을 같이하는 데다, 개별 조직의 자율성이 거의 무시되므로 비판력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런 까닭에 국민 여론이 정책에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정책 당사자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아주 핵심적인 맹점 또한 안고 있다.

행정부의 ‘청년 정책’ 실행과정에서도 이 맹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씩 일일이 짚고 넘어가자면 한정된 지면에 다 담을 수 없겠지만, 크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 두 가지만 짚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올해 6월, 온 청년층의 공분을 샀던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 문제가 그러하다. 청와대는 박성민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하며, 이전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였던 청년비서관직을 정무수석실 산하로 이동시켰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를 두고 “청년 소통 및 협력 강화와 청년 정책 조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¹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행정부의 대표기관이자 얼굴 격인 청와대의 청년에 대한 저조한 이해 수준을 보여준 셈이었다. 현재 청년층, 소위 MZ세대가 공정성에 민감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청년층에서 민감한 이슈가 무엇인지, 청년 집단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입안자 집단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다.

청년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례가 바로 ‘청년주택 공급’의 문제다. 2021년 청년정책 자료집을 뜯어보면, 주거 분야에서는 크게 네 가지 시행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①청년 주택 공급 확대, ②전월세 비용 경감, ③주거 취약청년 지원, ④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아주 본질적이고도, 치명적인 오점이 숨어있다. 도대체 ①에서 제시하는 ‘청년주택(행복주택·매입·전세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이 무슨 차이인지 애매하다는 문제를 차치하고, 여기서의 ‘본질적인’ 문제란 바로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 지원이란 임대주택, 행복주택같은 임시적인 주거 형태가 아닌 내집마련”이라는 점이다. 주거 지원계획이 제시하는 ①에서부터 ④까지의 세부과제 중 그 어떤 것도 내집마련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올해 7월

14) 이도형, “靑, 청년비서관에 ‘만 24세 최연소’ 박성민 임명”, 세계일보, 2021.06.21.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이라고 하는데, 내집 마련은 어떻게 도대체 언제 할 수 있을까? '결혼은 코앞인데 집은 무슨 수로 구하지?'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간단히 입을 닫음으로써 사실상 근본적 대책이 없음을 내비친 셈이다. 이처럼 당사자성 없이 독자적으로 고안된 법률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법률은 그것이 제정됨으로써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므로, 입법과정에서 국민과 그 대표자가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마땅하다. 나아가 이해의 대립과 모순을 인정하면서 가능한 한 바른 법에 의한 사회규율이 행해질 수 있는 계기로서 진행되어야 한다.¹⁵⁾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입법권'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부여되는 것인데,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이를 국가의 통일적 규율로 전환하는 기능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¹⁶⁾ 아무리 행정부가 국회와 입법의 기능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행정부는 태생적으로 입법부가 갖는 의견수렴기능, 당사자성을 따라잡기 어렵다. 앞서 줄곧 지적해온 현 청년 정책의 한계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논의는 결국 입법부, 즉 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청년문제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데로 수렴한다.

2. 입법부 검토

앞서 행정부가 청년 관련 아젠다를 독점했을 때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입법부의 역할은 무엇이며 현재 입법부가 청년 문제에 대해 취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입법부가 가지는 순기능은 '대표성'에 있다. 지역구 의원들은 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신이 대변하는 특정 아젠다를 공론화시킴으로써, 관련된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즉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하고, 제도로 만드는 frontier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의회의 본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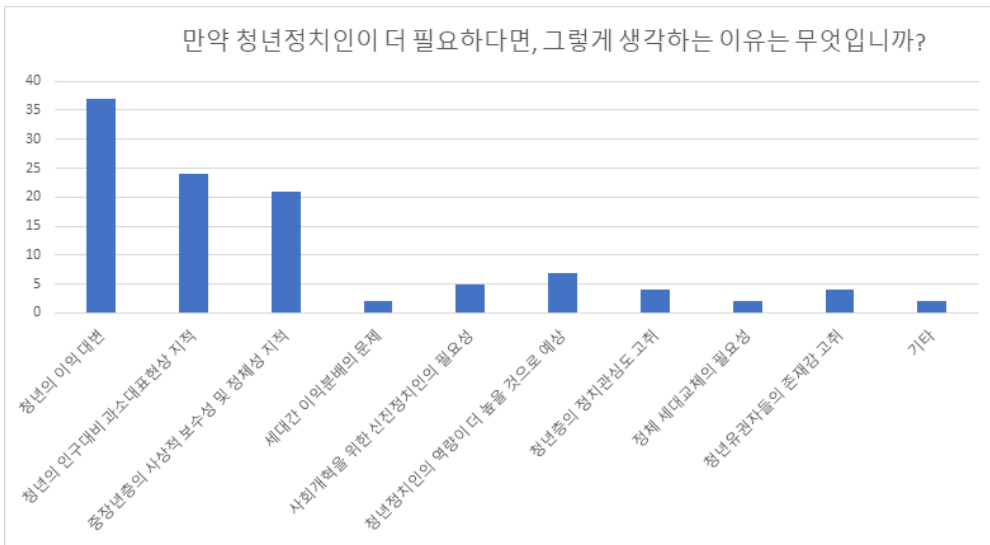
하지만, '청년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입법부는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 상황으로 인해 청년들이 과거와는 달리 복지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청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청년' 아젠다가 행정부에 비해 크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선 「행정부 검토」 부분에서, 21대 국회의 청년 관련 발의 법안과 가결 비율을 검토해봄으로써 증명할 바 있다.

15) 우병규, 입법과정론, p. 8-17 ; Galloway, p. 9 -15에서 재인용.

16) 김승조, 입법절차에 있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관계, 법제논단, 2000년, p. 37.

위와 같이 입법부에서 청년 관련 아젠다가 소외되는 현상에는 두 가지의 지적이 있다. 첫 번째로, 청년 국회의원 수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있다. 두 번째로, 앞의 지적에 대한 보완으로써, 기술적 대표성은 실질적 대표성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두 번째 지적에서는 현재 청년의 정치 대표성이 부족한 문제가 기술적 대표성의 문제가 아니라, '반영' 절차의 부재 그 자체가 문제임을 지적한다.

위와 같은 지적은 선행연구 검토뿐만 아니라 본 연구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진은 만 19세 - 만 34세 청년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152명(약 86%)이 '청년정치인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여, 현재 청년층들은 대의 기관에서 청년 정치인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108명이 답변하였는데, 본 연구진이 서술형 답변을 유형화하여 분석한 결과, '청년의 이익 대변'(37명), '청년의 인구대비 과소대표현상 지적'(24명), '중장년층의 사상적 보수성 및 정체성 지적'(21명)이 가장 우세하였다.



즉, 설문조사 결과 현 청년층은 청년 정치인이 더욱 많이 선출되기를 바라고 있으며(기술적 대표성의 한계 지적), 그 이유로 청년층의 이익이 현재 충분히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요하게 제시하였다(청년 아젠다 반영 절차의 부재).

다음 장에서는, 학계에서 논의된 위의 두 지적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해 제시된 학계 내 해결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다.

3. 입법부 내 청년 대표성 제고를 위한 선행 연구 검토

이번 장에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청년의 정치 대표성 확대 방안’들을 검토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는 청년의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해결책을 기존의 국회·정당 시스템 개혁 및 선거제도 개혁에서 찾으려 하였다. 이러한 해결책들이 공유하고 있는 현 상황 - 입법부 내 청년층의 낮은 정치 대표성 -의 원인은 정치제도적으로, “비례성이 낮은 한국식 혼합형 선거제도, 거대 정당 중심의 정당체제, 정당차원의 청년조직화 및 대표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의 결여”를 지적하고, 정치문화적 요인으로는 “중앙과 지방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 민주주의제도 정치에 대한 정치 신뢰도와 정치효능감이 낮은 청년세대의 정치적 무관심(political apathy)”을 지적한다.¹⁷⁾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년 비례대표 확대’, ‘청년의 정당 활동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기술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대표성’이란, “선출되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피대표자들의 이익과 목소리를 얼마나 잘 대의, 대표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¹⁸⁾ 이러한 대표성을 설명하는 관점 중 ‘기술적 대표성’은 “의회가 사회의 구성을 얼마나 비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표성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본다.¹⁹⁾ 반면에 ‘실질적 대표성’은 “단순한 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기술적 대표성을 넘어, 실제적으로 입법과 정책심의 과정 속에서 대표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의원이 시민들의 이익과 요구,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의 내려지는 것”이다.²⁰⁾

A. 기술적 대표성의 부족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입법부 내 청년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의회 내 기술적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청년층이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의회 의석 구성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²¹⁾ 따라서 이 논의

17) 장선화 and 김윤철. (2021). 한국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제도, 문화, 정당을 중심으로. NGO연구, 16(1), 77-119, p. 93.

18) 정다빈 and 이재묵. (2019). 청년세대의 의회 진출 확대를 위한 정치제도적 과제. 동서연구, 31(1), 33-62, p. 36 (Williams, M. S. 1998. *Voice, Trust, and Memory: Marginalized Groups and the Failings of Liberal Representati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에서 재인용)

19) 위의 논문, p. 36 (Raymond, p. 1991. *The Plant Report: A Working Party on Electoral Reform(vol.3)*. The Guardian Studies.에서 재인용)

20) 위의 논문, p. 36 (Pitkin, H, F. 1967.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에서 재인용)

에서는, 위의 ‘기술적 대표성’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청년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서 청년의 정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때에 기술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은 실질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 조건이다.²²⁾ 특히, “사회적인 소수자가 어떠한 문화나 조직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전체 구성의 15%를 최소한으로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Kanter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정치적 소수자’인 청년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대표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²³⁾

위의 논의에서는 청년의 기술적 대표성을 확보하기에 현 제도에는 청년들에게 큰 장벽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단순다수제’이다.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는 혼합형(단순다수제 지역구 의원 +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비례의석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단순다수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²⁴⁾ 단순다수제 하에서 청년 정치인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단순다수 선거제 하 선거 경쟁은 “당내 후보 경선평정에 서부터 인지도가 높고 경력자이며 물적, 조직적 자원이 풍부한 중견 정치인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²⁵⁾ 그 반면에 상대적으로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정당명부 상에서 소수 집단을 대표하는 명부 구성을 통해 대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²⁶⁾ 또한 소수 정당이 의회 내로 진입하기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그들이 대표하는 아젠다가 의회 내에서 발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용의 측면에서도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는 것이 청년들에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 56조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천 500만원의 기탁금을,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그 부담이 3분의 1 수준이다.²⁷⁾ 또한, 지역구 선거에 출마했을 때에는 선거 운동을 하는 데에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반면 비례대표는 상대적으로 비용 지출이 적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부분 높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위와 같은 근거로, 청년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비례성을 늘이는 방

21) 신지후, 우태경 and 최다원. 50대가 장악한 국회·기업... 청년·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10510410005648>, 2021.01.07.

22) 정다빈 and 이재목, (2019), 앞의 글, p. 38.

23) 정다빈 and 이재목. (2019), 앞의 논문, p. 37.

24) 장선화 and 김윤철. (2021), 앞의 논문, p. 94.

25) 장선화 and 김윤철. (2021), 앞의 논문, p. 94.

26) 장선화 and 김윤철. (2021), 앞의 논문, p. 94.

27) 공직선거법 제 56조(기탁금) 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향으로 선거제를 개편하거나, 청년 할당제를 실시하여 청년 비례대표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각 정당에서는 일정한 비율로, 총선에서 청년을 필수적으로 비례대표에 공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위의 제안 사항이 실질적으로 청년의 정치 대표성을 얼마나 제고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검토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위의 ‘기술적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는 청년층의 ‘기술적 대표성’마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의 정치 대표성이 얼마나 제고되었는지는 측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위의 주장을 검토하자면 두 가지의 의문점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기술적 대표성’이 언제나 ‘실질적 대표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 내에 실제로 청년들이 얼마나 진출해 있는지와는 별개로, 의원들이 청년층의 아젠다를 얼마나 공론화시키는지, 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치 대표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청년 의원들이 ‘청년 정치인’이어서, 청년이라는 정체성만 지나치게 강요받는 것은 아닐지, 청년 의원들은 꼭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의 프레임이 아닐지 의심해 볼 수 있다. 현대의 청년들이 마주하는 ‘청년 문제’란 결코 청년 세대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 전반에 퍼진 구조적 문제를 생애주기에서 좀 더 빠른 시기인 청년기에 교정해나가자는 이야기”이며, “모든 세대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문제에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이다.²⁸⁾ 따라서, 청년 문제를 청년이 아닌 다른 세대가 다루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필요도 없고, 반대로 청년 정치인이 ‘청년 문제’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B. “청년의 정당 활동 활성화” 주장에 대한 검토

위의 ‘기술적 대표성’ 확보가 ‘실질적 대표성’ 확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년의 정당 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청년들이 정치 아젠다를 학습하고, 정책을 추진해 볼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제도의 도입은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증진을 위한 기초를 놓는 데 불과”하며, “정당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청년의 정치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당들의 의지와 노력”임을 밝혔다.²⁹⁾

위와 같은 청년의 정당 활동 활성화의 근거는 해외사례에서 도출된다. 특히 세계 각국의 청년지도자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정당 활동에 참여하며 정치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년 의원으로서 활동했다는 점이 주요 근거이다. 즉, “청년 정치인들은 모두 정당

28) 민선영. (2018). 청년, 불평등 사회와 마주하다. 월간 복지동향, 231, 17-21. p. 18.

29) 장선화 and 김윤철. (2021), 앞의 논문, p. 95.

에서부터 성장”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³⁰⁾

대표적인 사례로는 핀란드의 정치인 사례를 들 수 있다. 2019년 12월 핀란드에서는 34세인 산나 마린이 총리로 임명되었다. 산나 마린 총리의 경우 대학생 때 사회 민주당에 입당하여, 23세였던 2008년에 처음으로 시의원에 출마하였다. 이후 중앙 의회에 진출하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당직에도 임명되었으며, 34세의 나이에 총리로 임명될 수 있었다. 핀란드에서 젊은 총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핀란드의 특수한 정당 활동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핀란드 정당의 경우, 의회 정당 그룹 모두 독자적인 정당 청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³¹⁾ 이러한 정당 청년 조직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 교육 기관으로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기도 한다. 나아가 ‘당내 야당’으로서 모정당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역시 수행하고 있다.³²⁾ 2019년 산나 마린 총리가 임명되었을 당시, 산나 마린 정부에 참여한 5개 정당(사민당, 중앙당, 녹색당, 좌파동맹, 스웨덴인민당) 대표들 중 4명이 모두 30대 초반의 여성들이라는 점은, 핀란드 청년의 활발한 정당 활동과도 무관하지 않다. 현 산나 마린 총리와 주요 장관 직책을 수행하는 연정 참여 정당 대표들은 “대체로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부터 정당 청년조직이나 지역 정당 조직에 가입하고, …(중략)…이른 시기부터 정치 활동을 경험”했다.³³⁾ 이로 인해 현재 이들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이것이 이들의 정치적 역량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때에 이들이 속한 정당의 청년조직은 “청년정치인들에게 정치에 입문하여 비슷한 가치관과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 속에서 풍부한 정치적 경험과 교육훈련을 쌓고 한 명의 좋은 정치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준제도적 채널 기능을 제공”했다고 평가받는다.³⁴⁾

위의 핀란드 사례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당내 청년조직에서 활동하며 정치 역량을 쌓아가는 과정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진은 위의 핀란드 사례가 한국에 완벽히 이식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핀란드 사례처럼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공간으로서의 정당’이 늘어나고, 그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한국의 청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 본 연구진이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위의 방안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다는, 위와 같은 모범적인 정당 문화를 조성함에 있어, 한국 사회와 정당에는 어떠한

30) 정다빈 and 이재묵 (2018), 앞의 논문, p. 20.

31) 윤광일 외. (2020). 청년의 대표성 향상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p. 14.

32) 윤광일 외. (2020), 앞의 논문, p. 15.

33) 윤광일 외. (2020), 앞의 논문, p. 23.

34) 윤광일 외. (2020), 앞의 논문, p. 25.

걸림돌들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에서 위의 사례를 도입하는 것의 ‘한계’이자 앞으로 우리의 정치 문화가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진이 지적하고자 하는 한국 청년의 정당 활동 활성화의 방해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데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에 따르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의 1위가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34.8%)’였다.³⁵⁾ 하지만, 이러한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청년들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현 청년 세대는 “심각한 고용문제와 빈곤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도 열악한 상황”으로,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불평등 속에 청년들은 “주변화된 ‘아웃사이드’ 시민”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³⁶⁾ 또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들로 ‘정치 문제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23.0%)’, ‘정부 및 국회,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하지 않아서(15.9%)’가 지목된다는 것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 부재의 원인이 청년들이 느끼는 정치 효능감의 부재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 부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³⁷⁾

둘째로, 정당 내에서 청년당원들이 부적절하게 ‘소비’되고 있다. 한국 정당에서 ‘청년’이란, 기존의 정당이 ‘청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외치는 구호에 불과하다.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청년 후보 공천을 늘리겠다고 약속하지만, 거대 정당에서 청년당원들이 공천을 받는 경우는 극소하다. 실제로 2018년 10월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중 46%, 바른미래당의 16%, 정의당의 약 14%가 청년당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출직에서 청년당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소했다.³⁸⁾³⁹⁾ 더욱이 “대중적 인지도가 높거나 이미 외적인 성공을 이룬 청년 몇 명을 외부에서 영입함으로써 청년 시절부터 당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청년당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어, 여전히 인물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⁴⁰⁾ 또한, 거대 정당 내에서 청년 당원은 당의 행사를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의 핀란드의 정당과는 다르게 ‘당내 야당’으로서의 기능 역시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힘들다. 실제로, 위 연구의 심층면접

35) 김형주 외. (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www.nypi.re.kr/contents/site.do> 에서 검색. p. 370.

36) 위의 글, p. 340.

37) 위의 글, p. 370.

38) 윤지소 and 권수현 (2020). 청년의 정치참여와 대표성: 청년당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3(3), 51-84. p. 58-59.

39) 물론, 이때에 ‘청년당원’이라는 기준이 당별로 상이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만 45세 이하, 바른미래당의 경우 만 39세 이하, 정의당의 경우 만 35세 이하를 청년당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앞에서 정의한 ‘만 34세 이하’로 규정지어지는 청년들의 비율은 이보다 실제로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40) 위의 논문, p. 53

자들은 ‘청년을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정당문화’를 정당정치 참여를 막는 방해요인으로 지목하고, 공통적으로 “청년당원이 정당에서 ‘동원’, ‘이용’, ‘소비·소모’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정당에서 청년당원을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현실을 매우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⁴¹⁾

C. 본론 2장의 종합 및 제언

이번 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청년 정치대표성 제고 방안’을 검토했다. 그 방안이란, 제도 개혁을 통한 청년 비례대표 확대, 그리고 청년의 정당 활동 활성화를 통한 청년 정치인 육성이었다. 본 연구진은 이 방안들에 대하여 각각 비판 및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물론 본 연구진이 제시한 비판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청년 정치인들의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얼마나 신장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앞서 기술했듯, 유의미한 기술적 대표성을 확보해 본 경험이 없으므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관념적으로는 누구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년층이 과대대표되는 국회 및 정부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표족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는 그 관념이 다소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청년정치인이 의회나 정부 기관 등 공적 영역에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아님은 자명하다. 그보다는 광범위한 집단으로서의 청년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이를 정책으로 옮기는 지가 청년들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진이 보건대 청년 문제의 요체는, 단언컨대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기한다.

첫째, 청년 문제가 꼭 기존의 국회, 정당, 및 정부 체제 내에서 ‘청년 정치인’이 발탁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특히 여론이 국회 및 정부 내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꼭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 같은’ 대표가 있어야만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여론이 국회와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시대에, ‘대표’가 속한 연령대와 무관하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공적인 영역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외에 민간의 영역에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볼 수 있는 않을까? 이는 첫 번째 의문점과도 문제 의식이 닿아 있다. 여론을 정책으로 옮기는 역할은 정부와 국회가 담당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여론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꼭 공적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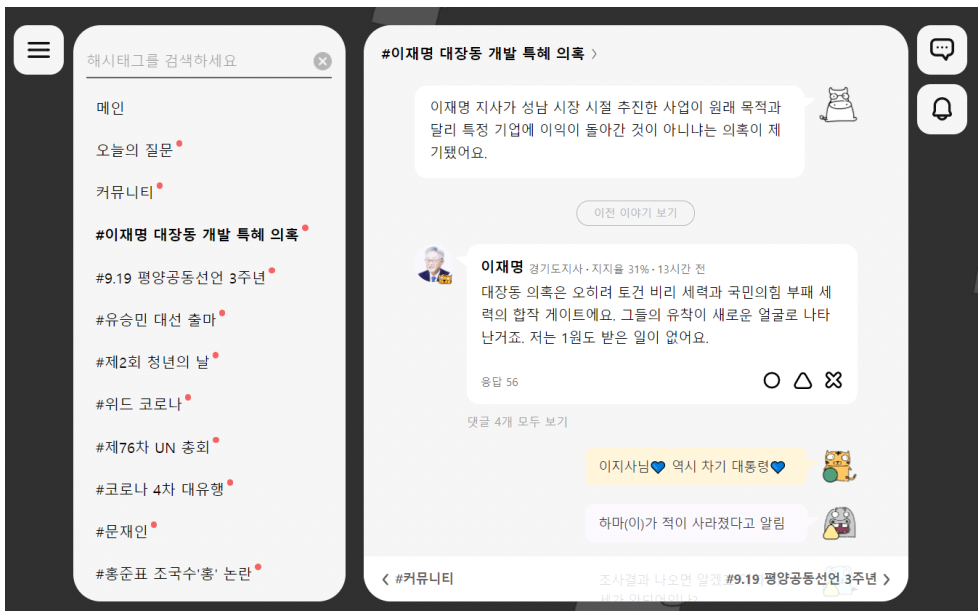
41) 위의 논문, p. 68-69.

에서만 논의될 필요는 없다. 실제로도 많은 시민 단체,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청년들이 마주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민간의 영역에서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본 연구진의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4. 청년 대표성 제고를 위한 대안적 방안의 모색

앞에서 제시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진은 현재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진은 POLLitics.라는 사이트 기획을 통해서, 청년들이 청년 정책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민간에서 대안적 정치를 모색하고 있는 OXOpolitics라는 사이트를 살펴보고, 본 연구진이 제시한 대안인 POLLitics.를 살펴보기로 한다.

OXOpolitics는 국내 최초 정치 스타트업으로, 정치 뉴스 기반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각 뉴스에 대해서 O, X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정치 성향에 따라 다섯 가지의 동물 부족으로 나누어, 해당 부족에 속한 사람은 해당 부족의 게시판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어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집단 공격을 막으려 했다. 이 밖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도 진행 중이다.



출처: <https://oxopolitics.com/#/>

OXOpolitics는 직접적으로 청년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자

제작된 서비스는 아니지만, ‘집단’의 목소리가 아닌 사회 구성원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청년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대안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진이 개발한 POLLitics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만들어졌다. 첫째, 정부에서 제정되는 정책이 거대 담론의 일부로 다루어지는 반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둘째, 그러나 투표는 4년 혹은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인물이나 정당에 대해 투표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임기 중에 어떤 정책에 찬/반의사를 밝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제어하는 수단이 불분명하다. 셋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청와대 국민 청원’이나, ‘국민동의청원’은 개인적인 이슈가 공론화되는 장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고, 국민들이 ‘동의’하는지의 여부만 물을 수 있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는 부족하다. 또한, 청원 서비스의 경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으로서, 국민들을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만드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POLLitics.

Home 소개 이슈 & 투표 로그인

투표결과 모아보기



서울 전면 등교
투표 기간: 21.08.24 - 21.09.07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2021년 하반기! 중고등학생들, 등교하는게 맞을까?

투표 결과
찬성 우세 결과 보기



급식 바우처
투표 기간: 21.08.19 - 21.09.23

아이들을 배려한 똑똑한 정책? 또는 괜한 부작용만 낳은 교육복지 실패?

투표 결과
반대 우세 결과 보기



언론 중재법
투표 기간: 21.08.26 - 21.09.30

진보, 보수 언론을 막론하고 부정적인 의견 일색인 언론중재법! 무엇이 사실인가? 당신의 의견은?

투표 결과
반대 우세 결과 보기

▼ 최신 투표결과 보기 ▼

출처: <https://www.pollitics1.com/>

따라서, POLLitics는 정치인의 ‘말’이나 ‘정치권의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이슈 및 정책 중에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선별해서 전달하고, 그것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정치가 거대

담론으로 남지 않고, 보다 폭넓은 정의로서, ‘우리 삶의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기제’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그러한 여론을 직접적으로 정부나 국회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본 서비스 역시 직접적으로 ‘청년’을 그 참여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다만, 인터넷과 모바일 친화력이 높은 MZ세대가 많이 이용할 예정인 만큼, 자연스레 다른 국가 기관들보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 대표성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공론화’시킴으로써, 그 문제의식이 청년과 정치권만이 공유하는 것이 아닌, 다른 세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 역시도 SNS라는, 소수 자신의 지지자들, 혹은 반대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폭넓은 계층의 이야기를 여과없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핵심은 청년층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이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정치인’이 더욱 당선되기를 바라는 것 역시 그 핵심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가적 아젠다에 정확히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가 4-5년마다 한 번씩 치루어지는 선거, 혹은 ‘청원’뿐인데, 수많은 아젠다들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 요구를 제한적인 통로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니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원하다. 그러한 점에서 앞서 제시한 OXOPolitics, POLLitics와 같은 시도는 청년들, 나아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전달하는 통로라는 점, 그리고 그것을 민간에서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였던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청년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다. 사회시스템의 오류는 청년으로 하여금 소위 ‘정상적인’ 루트, 해당 연령대에 마땅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형적인’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든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인생 자립기반의 형성이라는 일생일대의 과업을 짊어지고 있는 청년 개인에게 오로지 노력을 통해 헤쳐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다. 청년 문제는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빈부격차 문제 등 우리 사회 안에서 끓어가고 있는 각종 병폐들이 아직 아무 방패막도 갖지 못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므로, 지금의 청년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청년 문제가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인정한다면, 그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 차원의 전격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 정책의 양상은

다소 기형적이다. 행정부는 SOC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인 약 23.8조원의 예산을 책정하며 주요 과제로 삼은 반면, 입법부 국회에서는 2020년 발의된 법안 중 단 1.3%만이 청년 세대를 직·간접적으로 타겟팅하고 있었다. 이같은 아젠다 불균형 현상으로 인하여 청년 정책이라고 할만한 것은 행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마저도 우리 사회 청년이 가진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진은 그 원인으로 행정부 집단이 본질적으로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 하의 행정부 집단은 대선에서 제시된 공약과 걸음을 같이할 당위를 가지는 데다, 개별 조직의 자율성이 거의 무시되므로 비탄력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의 연장 선상에서 정책 당사자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아주 핵심적인 맹점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행정부의 역량 공백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문화할 수 있는 의회, 즉 입법부가 메꿀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입법부에서 청년 관련 아젠다가 소외되고 있는 것일까?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 현상에는 두 가지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번째로, 청년 국회의원 수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있다. 두 번째로, 앞의 지적에 대한 보완으로써, 기술적 대표성은 실질적 대표성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두 번째 지적에서는 현재 청년의 정치 대표성이 부족한 문제가 기술적 대표성의 문제가 아니라, ‘반영’ 절차의 부재 그 자체가 문제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청년정치인이 의회나 정부 기관 등 공적 영역에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아님은 자명하다. 그보다는 광범위한 집단으로서의 청년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이를 정책으로 옮기는지가 청년들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진이 보건대 청년 문제의 요체는, 단언컨대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청년 정치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적 영역의 제도적 지원에 의존하기보다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 주목해 민간의 영역에서 청년 대표성 제고를 도모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진은 민간 영역의 바람직한 예시로서 기존의 정치뉴스 기반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Oxopolitics를 소개하였으며, 본 연구진이 구상하는 ‘청년층의 의견이 집약적·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플랫폼’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직접 “POLLitics.” 웹사이트를 구현, 실행해보았다. POLLitics.는 Oxopolitics의 장점을 기반으로 단점을 보완하여 구상한 서비스로, 기성 정치인의 ‘말’이나 ‘정치권의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이슈 및 정책 중에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선별해서 전달하고, 그것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민간의 영역에서 청년 대표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사이트를 통해 형성된 ‘여론’을 정부나 국회에서 알 수 있도록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결국,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핵심은 청년층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가 4-5년마다 한번씩 치루어지는 선거나 국민청원뿐으로, 수많은 아젠다들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 요구를 제한적인 통로로만 받아들여려고 하니 정확한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원하다. 실제로 다른 소통 창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소통' 효과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앞서 제시한 OXOpolitics, POLLitics.와 같은 시도는 청년들, 나아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하는 통로라는 점, 그리고 그것을 민간에서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였던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정치가 거대담론으로 남지 않고, 보다 폭넓은 정의로서 '우리 삶의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기제'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본 연구진의 문제의식과 닿아 있기도 하다.

참고문헌

[단행본]

우병규. (1970). 입법과정론. 서울: 일조각.

[논문]

김승조 (2000). 입법절차에 있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관계. 법제논단.

김지경 and 변금석,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19).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민선영. (2018). 청년, 불평등 사회와 마주하다. 월간 복지동향 231, 17-21.

박이대승 외 (2015). '청년 담론' 분석에 기초한 청년 활동 전망 연구, 청년담론연구보고서.

배정희 and 김기현 (2020). 청년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윤광일 외. (2020). 청년의 대표성 향상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윤지소 and 권수현 (2020). 청년의 정치참여와 대표성: 청년당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3(3), 51-84.

장선화 and 김윤철. (2021). 한국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제도, 문화, 정당을 중심으로. NGO 연구, 16(1), 77-119.

정다빈 and 이재묵 (2018). 지방선거에서 청년 세대의 대표성 제고 방안연구. 사회과학연구, 25(1), 7-26.

정다빈 and 이재묵. (2019). 청년세대의 의회 진출 확대를 위한 정치제도적 과제. 동서연구, 31(1), 33-62.

홍혜은 (2020). “청년 주거권 문제의 본질: 정상성, 가족주의, 공동체.” 월간 복지동향 257, 12-18.

[인터넷기사]

신지후·우태경·최다원, “50대가 장악한 국회·기업... 청년·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한국일보, 2021.01.07.

이도형, “靑, 청년비서관에 ‘만 24세 최연소’ 박성민 임명”, 세계일보, 2021.06.21.

[인터넷자료]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최종수정일 2021.02.09.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313>)

공직선거법 제 56조(기탁금) 1항.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김형주 외. (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s://www.nypi.re.kr/contents/site.do> 에서 검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지원정책”, 최종수정일 2021.09.03.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193>)

군인의 종교 자유 보장과 개선 방향 제언

원종빈, 조윤재

군인의 종교 자유 보장과 개선 방향 제언

원종빈, 조운재*

[목 차]

- I. 서론
 -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검토
 - 2.1. 선행연구의 한계
 - 2.2. 군종 제도 검토
 - 2.3. 종교의 자유 근거와 개념 검토
 - III. 연구방법
 - IV. 군대 내 종교의 자유 현황 파악 및 분석
 - 4.1.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침해
 - 4.2. 신앙고백의 자유 침해
 - 4.3. 종교의식의 자유 침해
 - 4.4. 소수종교 문제 - 무슬림 장병의 사례를 중심으로
 - V. 군대 내 종교의 자유 보장 방안 제언
 - 5.1. 군종 제도의 정체성과 목적 재정립 -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보장
 - 5.2. 운용상 해결방안
 - 5.3. 운용상 해결방안 - 소수종교 유입
 - VI. 결론
- 참고문헌
-

I. 서론

2010년대 들어 군인, 특히 장병 개개인의 처우 개선과 기본권 보장에 대한 담론 형성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한국군 역시 여러 개선안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이른바 ‘선진병영’이라는 모토 아래 월급 인상, 복무 기간 단축과 핸드폰 사용 허가, 동기 생활관 등의 제도를 시행해 구타와 같은 악습을 개선하고자 노력 중인 것이 대표적이다. 채식주의자와 무슬림 장병 등을 위한 채식 및 할랄푸드 식단 시행에 나선 것이나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자 대체 제도 마련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다채로운 변화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이슈화되었던 군인의 종교의 자유 이

* 원종빈(종교학과 16), 조운재(국사학과 17)

슈는 여전히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군중 제도의 대비가 사실상 전무한 것도 비판대상이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한국 사회는 점진적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2020년대 후반에는 이주민 2세대 장병이 약 만 명가량 입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달리 말해 미래에 종교로 인한 갈등은 최근 촉발된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사태처럼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다종교사회인 한국 사회에서 문화와 생활 전반적인 특성을 포괄하는 종교적 차이는 종교단체와 종교인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비종교인 간의 갈등과 비종교적 요인으로 인한 갈등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사실 그간 군대 내에서 종교활동은 군의 전투력 상승과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여겨져 왔다. 그렇기에 군중 제도를 운용하면서 도구적 관심 외에 더욱 면밀한 주의나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종교가 개인의 삶과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차원적 인식과 이에 기반한 군중 제도의 운용은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현재 청년 세대에게 종교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를 견디게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¹⁾

또한 군대가 여타 사회 조직과 동일 선상에 놓일 수 없는 만큼 군중 제도에 관해서는 더욱 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군대에서는 분명하고 강력한 상명하복 관계로 인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가 일정 수준 제한되며, 종교의 자유 역시 그 과정에서 침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²⁾ 따라서 군이라는 집단의 차원이 아니라 장병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군인의 종교 자유 실현과 보장에 관한 연구는 사회의 변화상에 적응하고 새로운 미래를 대비할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종교현상학적 접근법과 행정학적 접근법을 토대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군중 제도에 관해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짧게 되짚어 보려고 한다. 그 후 특히 설문조사법과 면접법에 근거하여 군중 제도의 운영 현황을 세분된 종교의 자유와 권리의 측면에서 분석, 파악하려 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는 한국 군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방안을 제언할 것이고, 이때 방안은 군중 제도의 본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보완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다른 하나다.

1) 임효재(무상), “군중교 활동이 장병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2008), pp. 94-95.

2) 정종섭, *국내외 종교차별 사례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9), p. 46.

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검토

2.1. 선행연구의 한계

그간 한국의 군종 제도에 관한 연구는 신학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중에서도 특히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군종 활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³⁾⁴⁾, 뒤이어 불교 등 다른 종교계도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⁵⁾ 신학계가 주도한 군종 제도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한계를 지닌다. 한국 군종 제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점과 선교 전략을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신학계의 연구가 군종 제도의 정당성을 전제한 후 종교활동의 의의를 도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특정 종교를 옹호하고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로 해당 연구들은 군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선교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군종 제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주로 탐구했다.⁶⁾ 그렇기에 자연히 특정 종교의 시각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고, 군종 제도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비판적 성찰이 모자랐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군종 장교 비율이나 종교시설의 숫자와 위치와 같은 운영상 문제, 군종 제도가 지닌 본질적 한계와 불합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한 것이다. 또한, 선교 전략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앙을 믿지 않을 자유, 소수종교 신자들이 지니는 신앙 행위의 자유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신학계 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정책 방향은 주로 선교의 측면에 집중해 기존 군종 제도를 강화하였을 뿐, 종교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군인과 군종에 포함되지 않은 소수종교의 신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방안은 거의 모색되지 않았다.

한편 신학계 이외의 학문 분야에서 군종 문제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과 한국의 군종 제도를 비교하거나⁷⁾, 군종 제도의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고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뤄졌지만⁸⁾, 절대적인 수가 많지는 않았다. 군종 제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현황에 대한 파악 시도조차 미흡했다. 그나마 최근에는 군대의 종교 문제에 관해 군사학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⁹⁾¹⁰⁾ 국

3) 김기태, “한국 전쟁과 군선교”, *선교와 신학* 26 (2010): pp. 41-70.

4) 박응규, “한국의 군종제도와 기독교”, *성경과 신학* 66 (2013): pp. 227-260.

5) 불교군종사편찬위원회, *불교군종사: 군승 40년사*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2008), pp. 1-751.

6) 강인철, “한국의 군종 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 *종교연구* 75 no. 4 (2015): pp. 181-187.

7) 김성경, “군대와 종교 - 한국과 미국의 경우”, *한국문화인류학* 16 (1984): pp. 47-61.

8) 강인철, “한국 군종 제도와 활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 *종교연구* 76 no. 4 (2016): pp.65-95.

9) 김종효 외, “신세대 초임병사의 종교성향이 군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군사회복지학* 11 no. 2 (2018), pp.107-138.

내 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져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의 입대에 대비한 군사학적, 정책학적 접근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연구들은 종교 문제를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포함되는 부분적 요소로 언급할 뿐, 향후 발생 가능한 종교 갈등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주자 2세대 군인의 숫자가 증가하리라 전망하면서도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전시되는 가장 강력한 기표인 소수종교가 군종 제도 내에 어떻게 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단지 그들을 어떻게 군대에 통합하고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할 것인지를 측면에만 집중할 뿐이다.

2.2. 군종 제도 검토

군종은 군에서 종사하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모든 종교단체를 총칭하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군종 사목 내지는 군목회 등으로 불린다. 국방부는 「병역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등을 기반으로 군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 등을 토대로 군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려고 노력 중이다. 현재 국방부의 인가를 받고 군종활동을 수행하는 종파로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총 4개의 종교가 있다. 각 종교단체는 군종장교와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시 소속 성직자를 국방부에 추천하고, 군 종교시설을 위한 기부채납, 군 장병 신앙심 함양 및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종교활동 보장 등의 역할을 맡는다.¹¹⁾

2019년 군 지휘관용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군종 제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종단이 많지 않고 군대 내 군인의 종교인 수나 종교활동 수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일부 종교만 군종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²⁾ 군인이 많은 지역 위주로 종교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군종장교가 군인의 신분과 성직자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명시된 대목¹³⁾은 군종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할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소수종교를 가진 사람과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국방부가 배치한 군종장교에 속한 종교만을 강요하는 문제, 종교시설이 부족해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 군

10) 차용환, “다문화 군대대비 국방정책 발전방안(1) - 사회통합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76 no.3 (2020): pp. 285-313.

11) 최병규, “한국 천주교회의 효율적인 군종 사목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 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9), p. 5.

12) 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 p. 16.

13) *Ibid.*, p.16.

인의 신분을 내세우며 특정 종교를 강제하는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한국 군종 제도 아래에서 종교의 자유 침해는 개인의 사상적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문제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객관적 연구와 적절한 보완 및 개선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종교의 자유에 포괄되는 다양한 하위 기본권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침해되었는지를 분석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종교의 자유 개념을 검토한 후에야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3. 종교의 자유 근거와 개념 검토

국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헌법에는 종교와 관련해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선언되어 있다. 종교로 인한 차별 금지(제11조 1항), 종교의 자유(제20조 1항), 그리고 국교의 불인정 및 종교와 정치의 분리(제20조 2항)가 그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또한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보호하거나 우대하는 조치도 무종교의 자유를 고려하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원칙에 어긋난다’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판례¹⁴⁾에 근거하여 무종교 및 무신론도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freedom to believe)와 종교행위의 자유(freedom to act)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앙의 자유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신앙을 갖거나 갖지 않을 자유, 종교를 선택하거나 변경 혹은 포기할 자유, 신앙을 고백하거나 고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등을 포함한다. 특히 국가 등 외부의 영향력에 의한 강제가 금지되며, 개인의 신앙이나 불신앙으로 인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신앙의 자유는 내면적 믿음과 확신에 관한 자유이며, 본질적으로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핵이 되는 본질적 권리로서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로 간주한다.¹⁵⁾

종교행위의 자유는 내면의 신앙을 다양한 방식으로 밖으로 표출하며 신앙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종교행위의 자유는 신앙고백의 자유, 종교의식의 자유, 선교와 종교교육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등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

14) 헌법재판소 2010. 2. 25. 2007헌바131, 2008헌바37·71, 2009헌가1, 2009헌바18·239·283(병합) 판결.

15) 최윤진,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7 no. 2 (2007): pp. 167-193.

분할 수 있다.¹⁶⁾ 또한 ‘종교의 고유사항에 관한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신앙에 기초한 행위의 자유’로 구분되기도 한다. 전자에는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교육의 자유, 선교(포교)의 자유,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후자는 종교적 교리에 따른 국기 경례 거부 문제라든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 등과 같이 종교적 관심이 종교 고유의 사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삶의 전반적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종교적 신앙에 기초한 행위의 내용을 의미한다.¹⁷⁾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이 종교의 자유라는 넓은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자유가 어떻게 침해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 조사법, 면접법, 문헌 조사라는 세 가지 연구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설문 조사법과 면접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군필자를 대상으로 군대 생활 중 종교활동 경험과 그 인식에 관해 직접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군인 중 소수종교 신자, 군 환경으로 인해 종교활동의 제약을 겪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더욱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현직으로 활동 중인 군 장교들의 의견을 들어야 군종 제도의 운용 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를 위한 설문 조사는 종교인 28명, 비종교인 33명 총 61명을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24일에 걸쳐 시행되었다. 설문 조사 문항은 여러 기준에 맞춰 세분화하여 정밀한 답변을 얻고자 했다. 해당 기준은 종교의 유무, 군 생활 전체에 걸쳐 종교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였는지 여부, 훈련소와 자대 생활 환경의 차이 등이 있다. 또한 객관식 문항 외에도 서술형 문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응답을 유도했다.

인터뷰는 면접지침 접근법을 활용하여 인터뷰에서 다뤄야 하는 주제와 쟁점을 질문의 형태로 정리한 다음,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연구 질문을 하고 응답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 전, 연구자는 모두 인간 대상 연구 윤리 교육을 이수하였고, 인터뷰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참여 대상, 연구 진행방식, 연구 활용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였으며,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군 생활을 경험했거나 경험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육군과 공군, 일반부대와 격오지,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 무교 등 다양한 군 생활 경험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입대 전부터 제대 후까지의 통시적 종교활동 경험과 군종 제도에 대한 인상 및 비판적 의

16) 송기춘, “종교관련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학교 종교 자유 신장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세미나 자료집*(종교자유정책연구원, 2001), pp. 30-31.

17) 계희열, “헌법상 종교의 자유.” *헌법논총* 8 (1997): pp. 65-68.

견을 들었다. 인터뷰 대상자의 종교와 군종 계급 및 인터뷰 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 1〉

	나이	군종	계급	종교	보직	인터뷰
대상자 1	24	육군	병사	개신교	탄약관리병	대면
대상자 2	24	육군	병사	개신교	행정병	대면
대상자 3	25	카투사	병사	무교	상황병	대면
대상자 4	24	공군	병사	무교	운전병	화상
대상자 5	22	육군	병사	이슬람	취사병	화상
대상자 6	24	육군	장교	무교	정훈장교	서면
대상자 7	25	육군	장교	천주교	지휘자	서면

IV. 군대 내 종교의 자유 현황 파악 및 분석

4.1.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침해

4.1.1. 훈련소 내에서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침해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군이 종교가 없는 장병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종교행사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에 대해 특히 무감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역자와 현역병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입대 이전에 무교였던 응답자 33명 중 28명(84.8%)은 훈련소 생활 중 종교활동에 참여했다. 이 중 24명(85.7%)은 훈련소에서 종교활동에 참가한 이유로 종교활동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나머지 인원들도 종교활동 불참 시에 따르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함이라는 내적 동기보다는 이익 또는 불이익을 고려한 외적 동기가 무종교인 장병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다수의 인터뷰 대상자 역시 훈련소 종교활동에 참여할 경우 간식 또는 생필품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훈련소에서 종교활동 시간 외에 개인 정비 시간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답했다. 대상자 4는 “훈련소에서는 대부분 주어지는 보상에 따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신교 종교행사에서 치킨과 과자를 준다는 소문이 돌아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실제로 개신교 종교행사에 다녀온 훈련병이 몽셀 3개와 음료수 1개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답변했다. 대상자 2는 “종교활동을 안 가는 인원들은 생활관 청소나 훈련소 건물 복도 청소 등을 했”다면서 “다른 인원들이 다 뭔가를 하는데 너희만 놀게 할 수는 없지” 혹은 ‘쉬더라도 정비는 하고 쉬자’ 같은 군대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대상자 3 역시 “군대라는 특성상, 또 경제적인 유인이 불

가능한 상황에서 인원들을 통제하고 자유를 다소 억압하는 거는 필요악”이라면서도 분명 과도할 정도로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자대 배치 이후 비종교인의 종교활동 참여율 감소는 훈련소 내에서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지 않음을 방증한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무종교인 중 84.8%(33명 중 28명)가 훈련소 생활 중 종교활동에 참여했던 것과 달리, 자대 배치 이후에는 오직 33.3%(33명 중 11명)만이 종교활동에 참여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훈련소와 비교해 자대 배치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개인 정비 시간을 더 많이 보장받아 개인 공부를 하는 등 본인이 희망하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반면에 훈련소 내에서는 개인 활동이 제지되는 일도 있고,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개인 정비 시간에도 다른 업무를 부여해 해당 시간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

결국, 훈련소에서는 주말 등에 자유롭게 개인 정비 시간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는 무종교인 훈련병들이 주말에 종교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며 자연스럽게 자대에서는 반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뷰 대상자 1은 “자대에서는 개인 정비가 온전한 개인 정비죠. 그러니깐 종교활동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온전히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죠.”라고 증언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하면 훈련소 내에서 비종교인들은 1) 종교활동을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2) 부가적인 일을 부과하여 종교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4.1.2. 자대 내에서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침해

자대에서도 종교활동에 대한 강요가 이뤄지는 경우는 빈번했다. 이 문제는 제도적 측면과 간부, 상관에 의한 직접적 강요에 의한 측면으로 구분 가능하다. 제도적 문제의 대표 사례로는 종교활동의 참여 횟수에 따라 군인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종교 마일리지’ 제도의 시행을 꼽을 수 있다. 위 제도가 모든 부대에서 시행되지는 않지만, 상당수의 부대가 종교활동에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할 경우 휴가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터뷰 대상자2는 “종교활동에 참여하면 명단을 적고, 그 명단대로 종교 마일리를 쌓아서 12번에 휴가 하나로 바꿔주는 혜택이 있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제도는 병사들의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군인들의 사기 진작과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결과물로 보인다. 실제로 설문 조사에서 자대 배치 이후에 종교활동에 참여한 비종교인 11명에게 종교활동 참여 동기를 묻자, 그중 8명이 종교활동 참여의 혜택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휴가 또는 외박을 대표적 혜택으로 꼽았다.

이때 주목할 점은 ‘군 생활 중 종교 또는 종교활동을 제도(참여 시 이익/불이익 제공 등)에 의해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포상 휴가를 주어서 어쩔 수 없

이 참여했다.’라고 답변한 무종교인 응답자가 있을 정도로 휴가가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강제적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설문 조사에서 종교행사가 강요된 사례가 있었는지를 묻자 “제가 속했던 예하 부대 대대장님(대령)께서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휴가를 안 주셨습니다.”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장병의 휴가 부여와 사용이 전적으로 대대장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교 마일리지 제도 외에도 휴가와 종교활동 참여를 결부시키는 것이 얼마나 강압적으로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무종교인 병사는 휴가를 얻기 위해 원치 않은 종교행사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만약 특정 종교를 믿거나 종교행사에 참여할 때에만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될 경우에는 역으로 이외의 종교 신자들에게 역차별로 적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또한 휴가 외의 제도적 문제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군종 제도는 교단이 군대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체화, 동일시되었다는 점에서 ‘군대화 유형(militarization type)’ 내지는 ‘완전한 통합유형(full integration type)’으로 분류된다.¹⁸⁾ 그러다보니 군중에 계급을 부여하지 않는 뉴질랜드, 오스트리아에서 군종의 책임이 민간인에게 부여된 것과 달리 한국 군종은 군 계급의 영향력이 유달리 강한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군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종교의 자유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한 군종병은 “교회 목사님의 지나친 간섭.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님께서 법당에서 일하는 군종병들이 교인들인데 내가 별을 주기 위해서 법당을 보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설교 시간에 하셨더군요...(중략)...군사령부부터 예하 대대. 수도권과 지방까지도 교회 목사님, 군종 문화는 지나칠 정도로 폐악질이 많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 사례는 군종 담당 군인이 타 종교 신자인 군인을 간섭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으면서 병사들의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군대 내 본인의 역할을 군종병이었다고 한 응답자의 신분을 고려할 때 군목은 상관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답자가 군인 신분 당시 군종의 발언이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간부 및 상관의 직접적인 강요로 인한 문제도 파악된다. 군대는 조직 특성상 상명하복의 관계가 분명하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을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명시한다. 문제는 상관의 명령이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상관에 의한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분간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중요한 것은 특정 종교행사에 참여하라는 형태로 이러한 간섭이나 지시가 이뤄지는 경

18) 강인철, “압축성장과 무성찰성 - 비교의 맥락에서 본 한국 군종의 특성”, *종교문화연구* 25 (2015): pp. 232-234.

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시는 해당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군 행정의 일환이라는 이유 혹은 군 정신전력 강화와 종교의 역할을 이유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설문한 응답자는 “부대 내에서 간부들과 교회에 다녀야만 했고, 내무실조차 교인들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기이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다른 종교 신자가 들어오면 찬송가부터 억지로 배우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렇다네요.”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특정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 받은 경험을 묻는 말에 대하여 67명의 병사(총응답자 중 6.7%)가 ‘약간 있거나 자주 있다’라고 응답했다.¹⁹⁾ 부사관과 장교 중에서도 20명(총응답자 중 10.1%)이 ‘약간 있거나 자주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인권 침해를 받거나 침해 사례를 보고 들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종교 강요’가 있었다는 응답이 나왔다.²⁰⁾ 따라서 군대 내 종교 강요에 대한 여러 판례가 존재하며 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종교활동 강요 금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²¹⁾, 최근까지 종교행사 참여를 강조하는 등의 종교의 자유 침해는 근절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4.2. 신앙고백의 자유 침해

심지어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입대한 수많은 무종교인 병사들을 반강제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바로 신앙고백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 갤럽이 2021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20대 중 종교인의 비율은 22%에 불과하다.²²⁾ 이처럼 비종교인의 규모가 종교인의 규모를 상회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인원을 종교활동에 참여시키다 보니, 훈련소에서의 종교활동은 비종교인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종교활동의 본질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만 했다. 현행 군대 내 종교활동은 종교 신자들에게 종교활동을 제공하기보다는 군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비종교인을 포괄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초점으로 두고 진행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훈련소에서 진행된 종교활동에서는 간식이나 생필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단체 안무 진행, 아이돌 영상 시청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례로 진주 공군 훈

19) 나달숙,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9), p. 182.

20) *Ibid.*, p. 312.

21) 인권위 2010. 7. 23. 10진정0049700

22)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 *한국 갤럽*, 2021년 4월 7일 작성, 2021년 9월 27일 접속,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던 대상자 4는 “훈련소 불교 행사에는 여자 아이들 영상을 보여줬다”고 응답했으며,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대상자 2는 “불교 (행사)에서는 로터스라는 백 댄스 그룹을 부르기도 했는데, 굳이 종교활동 시간에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거부감이 느껴져서 (불교 행사에)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무교이지만 훈련소 내의 여러 종교활동에 참여한 대상자 3은 “원불교의 경우에는 법회 전에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진행하는데, 장기자랑을 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서 몽셀 등의 간식을 차등으로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회고했다. 이러한 응답들은 군인의 사기진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현행 군종 제도의 방향성과 무종교 병사들을 반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유인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바탕이 된 군대 내 종교활동의 현실을 적절히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 소수자인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함양하고 재확인할 기회는 박탈되었다. 종교활동에 참여해 신자로서의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도 종교활동이 본질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그들은 괴리를 느낀다.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활동이 주를 이루는 것과 종교활동에 관심이 없는 훈련병들이 다수 참여해 진지하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된 점에 불만을 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무종교 군인의 경우 과반수인 33명 중 22명이 군대 내 종교활동이 개선될 필요가 없다고 답한 것과 달리, 입대 이전 종교를 믿는 사람의 경우 대다수(85.7%, 28명 중 24명)가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 중 8명(28.6%)이 군대에서의 종교활동의 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한 사실 역시 중요하다. 비종교인 중 군대에서의 종교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보다도 높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군대에서 종교활동에 꾸준히 참가한 응답자 28명 중 18명(7명: 매우 높여야 한다, 11명: 높여야 한다)도 종교활동의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인터뷰 대상자 1 역시 종교인으로서 훈련소 생활 당시의 종교활동을 접하고서 매우 낮설었고, 1~2주 동안에는 적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입대 이전부터 꾸준히 개신교 예배와 종교활동에 참여해왔던 사람으로서 군대 안과 밖에서 진행되는 종교활동의 분위기가 상반되었고 예상과는 매우 달랐다고 언급했다. 그는 훈련소 교회에서의 종교활동 경험에 대해 “‘One way JESUS Christ’라는 기본적 교리를 훈련병 다 같이 반복해서 큰소리로 외치게 하고, 그때 다 같이 안무를 하거나 파도타기를 하였다”라고 하며, “예배 자체의 순서가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위기가 훨씬 가볍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자는 목적이 매우 강하고, 설교도 10분이면 끝나요.”라고 답변했다.

무교이지만 군 입대 이전 당시 친구를 따라 개신교 종교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힌 대상자 4는 “훈련소의 교회, 예배의 느낌은 어떠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배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다. 훈련소 내에서 진행된 종교행사에서 목사님의 말씀 시간 자체가 매우 짧았고, 종교활동보다는 레크리에이션 느낌이 강했다. 목사님의 말씀 시간보다 롤챔스

영상을 보여주는 시간이 더욱 길었다.”라고 답변하였다. 역시 무교의 입장에서 훈련소 내 종교활동에 참여한 대상자 3은 “아무리 군인 장병들을 위한 자리라고 해도, 진짜 종교를 믿게 하고 전파하게 하려는 사람들의 자세인지 의문이 남았다”, “종교활동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보다 대다수가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는 데 치중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무교 신자임에도 훈련소 내 종교활동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훈련소 안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대상자 2는 “자대 배치 이후 불교 종교 활동에는 백댄서가 오는 식의 위문 공연이 진행되었다.”라고 하였으며, “특정 종교행사에서 더 재밌는 활동을 하고, 더 맛있는 간식을 준다는 이유로 전체 인원의 80~90%가 그 종교활동에 참여했다.”라고 응답했다. 무교이지만 군대 내 개신교 종교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힌 대상자 4는 교회에서 맛있는 제육볶음 제공과 근처 카페 이용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많은 인원이 종교활동에 참석했다고 밝혔으며,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이전과 같이 음식 제공이 어려워지자 참석 인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전역 후 “(종교 생활에 대한) 열정이 조금 식은 거 같아요. (자대에서) 군중병을 맡았지만 ‘왜 하고 있지?’라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기도 했고, 피곤하기도 했”다고 밝힌 대상자 1은 군중 제도가 상술한 문제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도움이 될지 몰라도 종교인으로서의 저, 개인적인 저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따져보면 본래 믿음이나 신앙심이 약해지게 만드는 건 분명 문제”라면서 지금은 후자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도 후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라고 답했다. 응답자 2 역시 “지금 종교가 담당하는 일 중 일부는, 또 가능한 것들은 분리해서 군인들과 종교인들을 위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거 같아요. 훈련소와 자대를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그렇죠”라며 문제 의식을 표출했다.

물론 비종교인 사이에서 종교활동의 유희적 측면을 선호하는 의견이 존재한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군중 제도의 운용은 현재 종교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서적 측면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없음으로 군의 효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도 종교 신자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확인할 자유를 침해하는 심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3. 종교의식의 자유 침해

한국군 군중 제도가 보장하지 못하는 종교의 자유 중에는 종교활동에 참여할 자유인 종교의식의 자유도 있다. 2014년 기준, GOP(일반전초) 종교 인원 6,182명 가운데 9.7%인 599명만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GP(경계초소)는 1,486명 중 4.3%인 6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²³⁾ 또 22개 GOP 연대 평균 투입 기간인 23주 동안 15주는 아예

종교활동을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FEBA(Forward Edge of Battle Area) 주둔지 및 후방사단 부대와 비교해 GOP와 GP는 소대별로 인원이 분산되어 있고, 경계 근무 특성상 24시간 계속되는 교대근무로 인해 종교시설까지 이동하는 데 제한이 있어 종교활동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격오지 부대 인원의 종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방부의 시도는 없었다. 그저 군 종교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격오지 장병을 위해 종교행사 대응으로 활용 가능한 소재자를 발간해 배포하는 등의 시도를 할 뿐이었다.²³⁾

그 결과 지금도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여전히 종교활동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군 생활을 경험하거나 경험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현행 군 생활 중 이뤄지는 종교활동의 접근성(시설 확충 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약 40%가 종교시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해안 경계 부대에서 근무했던 설문 조사 응답자는 군대 내 종교활동의 어려움에 대해서 해안 소초에 있는 동안은 종교활동이 불가능하였다고 답변하며, 격오지 근무지에서의 고충을 언급했다. 이처럼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GP에서 근무한 다른 설문 응답자는 “교회 건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도 군 종병을 파견하는 등 종교 생활을 더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개선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는 비단 격오지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 일반부대에도 같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여러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대상자 1은 “우리 대대가 총 400명가량 있었는데 그중 20%인 80명 정도는 개신교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언급하며, “다른 종교시설은 부대 밖에 있어서 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짙은 연대에 있고 성당은 사단에 있어서요. 연대까지는 왕복 30분 정도 걸리고, 사단은 1시간씩 걸렸고요. 그래서 불교 천주교는 10~20명 정도 나갔던 거 같아요”라고 덧붙였다. 대상자 2는 교회와 천주교의 경우에는 부대 안에 없었다며 “천주교의 경우에는 주말마다 국군양주병원에 있는 성당으로 버스를 타고 왕복 40분가량 이동해야 했습니다”고 기억했다.

이러한 종교활동의 접근성 문제는 부대 운용상의 행정적 문제와 겹치면서 더 큰 불편함을 안겨주기도 했다. 종교활동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묻자 한 설문 조사 응답자는 “주둔지에서 주말에 성당을 가려 하면 간부 동행이 필요한데, 주말에 간부들이 출근하는 것을 원치 않아 대대장과 성당 사무장과의 합의를 통해 혼자서 성당을 갈 수 있었다.

23) 배상은, “GOP·GP 근무 병사 9.7%만이 종교활동 참여”, 뉴스원, 2014년 10월 14일 작성, 2021년 9월 27일 접속, <https://www.news1.kr/articles/?1903422>

24) 권혁주, “격오지 장병을 위한 마음의 양식 ‘군중누리 2집’ 발간”, 노컷뉴스, 2017년 5월 18일 작성, 2021년 9월 27일 접속, <https://www.nocutnews.co.kr/news/4786321>

그런데 이는 자대배치 막 받은 이등병에게 있어 너무 가혹한 일이었다. 성당 차원에서 근처 주둔지에는 먼저 부대에는 이등병이 찾기 전에 먼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 2는 “군대다 보니깐 사실 교회에 가는 게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위병소 밖을 나가야 하다 보니 인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 대대와 중대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회에 가는 병사들끼리 시간 약속을 못 맞추는 일들이 있었죠.”라고 답했다.

그 외에 업무로 인해 종교 생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설문 조사에서는 군 생활 중 종교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었던 경험으로 “근무와 겹치게 되었을 때 종교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 5 역시 “주변에 보면 꼭 소수종교 신자가 아니라, 종교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에서 종교활동을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취사병이라는 보직 특성상 일이 바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토론했다. 위 사례들은 근무지 근처에 종교시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행정적 차원의 문제로 인하여 종교활동의 참여가 제약된 상황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병사들이 원하는 시기에 종교활동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제도의 정비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4.4. 소수종교 문제 - 무슬림 장병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국내 한국인 무슬림은 6만 명으로 5년 동안 5천 명가량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추세는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추정된다.²⁵⁾ 한국인 무슬림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한국군 내 무슬림 장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시행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한국군 내에도 다문화가정 출신 입영자를 중심으로 무슬림 병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20년 기준으로 군 복무 중인 병사 가운데 본인이 무슬림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병사가 1명에 불과하다.²⁶⁾ 군 복무 중에 차별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자신의 종교를 밝히지 않는 것이다. 2019년 9월에 입대해 군 생활을 경험한 인터뷰 대상자 5 역시 군 생활 중 이슬람교 신자라는 사실을 군 간부 또는 주변 병사들에게 밝힌 적은 없었다고 이야기했으며, 본인 주변에 있는 무슬림의 경우에도 종교에 대해서 간부 또는 주변 병사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군 생활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명백히 종교적 신앙에 기초한 행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5) 권선미, “한국의 이슬람교① ‘토종 무슬림’ 6만 시대 맞았다”, *연합뉴스*, 2020년 10월 20일 작성, 2021년 9월 27일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9082900501>

26) 윤상호, “軍, 채식-무슬림 장병에 내년부터 ‘맞춤형 식단’”, *동아일보*, 2020년 12월 28일 작성, 2021년 9월 27일 접속,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27/104655690/1>

현재 국방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 또는 무슬림 군인 현황을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²⁷⁾ 다문화 장병에 대해 그 어떠한 특수,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에 관리의 초점을 두고, 소수종교 신자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는 장병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방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이 사상적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접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방부의 무슬림 군인들에 대한 정책 방향은 이들이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환경 속에서 그들의 관습이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개개인인 신앙을 가지고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인 범위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그친다. 특히 무슬림 군인이 여타 종교 신자 군인들과는 상이한 관습,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 군대에서 이슬람교 신자들은 종교적 신앙에 기초한 행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한국 군대의 구조 속에서는 군인으로서의 생활과 무슬림으로서의 생활이 상충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무슬림 장병이 생활하기에는 여러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상자 5도 군 생활 동안 기존에 준수하던 교리를 지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가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제시한 것은 식단 문제였다. 그는 국방부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힌 할랄 식단을 특별히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국방부는 2020년 “부대 지휘관은 채식, 종교 등으로 인한 급식 제한 병사가 급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급식방침을 개정한 바 있다.²⁸⁾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와 병무청은 채식주의자와 무슬림 병사를 위해 고기와 햄 등 육류가 들어가지 않고, 밥, 김, 야채, 과일, 두부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정책을 내놓았다.²⁹⁾ 이 정책은 2021년부터 병역판정 검사 때 신상명세서에 채식주의자, 무슬림 여부를 기재하면 이를 해당 부대에 알려 자대 배치 후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군 행정상의 이유로 인해 위 정책이 온전히 시행되지 못한 결과, 대상자 5는 직접 교리에 적합한 음식 재료를 분류하여야 했다. 특히 육류가 많이 나오는 식단이 제공되면 PX(Post eXchange)에서 개인 비용으로 참치 캔을 사 식사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소수종교 신자를 위한 별도의 제도가 존재하지

27) 박성진, “다문화 시대의 ‘개인 맞춤형’ 군대”, *경향신문*, 2020년 12월 30일 작성, 2021년 9월 27일 접속,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012300300065#c2b>

28) 국방부, *2021년도 급식방침*.

29) 박병수, “군, 내년부터 ‘채식주의자 식단’도 제공”, *한겨레*, 2020년 12월 27일 작성, 2021년 9월 27일 접속,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76025.html#csidx4789207284bd5a3a21597688bc33979>

않다 보니 “이슬람 신자 중에 라마단, 돼지고기 금식 등을 엄격히 지키는 유형의 인원이 있다면 교육 훈련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 간부로서 이슬람 신자 군인을 만난 경험이 있는 인터뷰 대상자 6은 “돼지고기 메뉴가 있는 날에는 대체 메뉴를 조리하여 급식하고, 혼자 샤워할 수 있도록 여건 보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줬다. 종교행사는 각자 진행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군대에서는 소수종교 신자가 입영하는 경우에 정해진 절차나 제도 없이, 주어진 상황을 각 부대의 상황에 맞게 해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신자로서의 생활과 군인으로서의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무슬림 장병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면 설령 제도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또다른 문제로는 소수종교 신자의 경우 개개인에게 종교활동을 수행하도록 책임이 전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종교의식의 자유에 제약이 걸려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군대 내에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와 같이 군종 제도가 마련된 종교 외의 소수종교도 종교의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군대에서는 이러한 종교 신자 군인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상자 5는 무슬림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없었으며, 군대 내에서는 개인적으로 종교활동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다른 무슬림 병사의 경우에도 자신과 유사하게 본인의 개인 정비 시간을 활용하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다. 심지어 인터뷰 대상자 5는 “훈련병 생활 당시 별도로 이슬람 종교활동이 훈련소 내에서 진행되지 않아서 다른 종교의 종교활동에 참여했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상술했듯 개인적으로 종교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차원의 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수종교 신자들이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데는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종교활동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슬람교는 금요일을 ‘주무야’라고 부르며 합동 예배를 진행한다. 그러나 군종활동을 수행 중인 네 종교의 종교의식은 모두 일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소수종교 신자들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는 대상자 5의 경우처럼 매주 금요일마다 개인 정비 시간을 할애하여 종교의식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며, 이조차도 훈련 또는 근무 일정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시스템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병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는 특히 소수종교 신자들의 종교의 자유는 여러 측면에서 침해당하고 있다.

V. 군대 내 종교의 자유 보장 방안 제언

특정 행정 정책을 수립하거나 재정립할 때에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이다.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이고, 정책수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하는 각종 의도적 수단이다.³⁰⁾ 이때 정책목표에는 종적인 차원에서 상/하위목표의 계층(ends-means chain hierarchy) 구조가 존재하며, 하위목표는 내용상 상위목표의 수단이 된다. 즉, 하위목표는 상위목표의 수단이 되는 방식으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은 일종의 연쇄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대 내 종교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수단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는 군중 제도 자체에 본질적 문제가 내재하여 있다고 보며, 이러한 군중 제도의 본질이 변할 때 비로소 군대 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책적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군중 제도의 본질적 개선방안을 상위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군중 제도의 운영적 개선방안을 하위 정책목표이자 상위 정책수단으로 삼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군중 제도의 본질적 개선방안은 곧 정체성과 목적의 재정립을 뜻한다. 이는 특히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된다. 운용상 개선방안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구체적으로 보완하거나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의식의 자유와 신앙고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군중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안, 그리고 소수종교 신자들의 전반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5.1. 군중 제도의 정체성과 목적 재정립 -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보장

앞에서 살펴본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한국의 군중 제도가 근본적으로 ‘사기증진자’라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군중은 창립 이래 ‘정신전력’이나 ‘무형(無形) 전력’ 등의 용어들을 즐겨 사용하고 ‘신앙전력화’라는 모토를 정식화하면서 군중 활동을 군인들의 전투력 향상과 긴밀하게 결부시켜왔다.³¹⁾ 단적으로 훈련소 내에서 무종교 군인들에 대하여 종교활동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유도는 종교를 통해 군의 정신전력 함양을 키우기 위함이라는 군중 활동 목적 설정에 기인한 것이다.

30) 전영환,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유형분류의 쟁점과 평가”, *정부학연구* 13 no.4 (2007): pp. 261-263.

31) 강인철, “압축성장과 무성찰성 - 비교의 맥락에서 본 한국 군중의 특성”, *종교문화연구* 25 (2015): pp. 225-226.

또한, 전군신자화운동, 종교시설에서 위문 공연 진행, 식사 전후 기도문 암송 등 병사들에게 종교활동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사례를 보면 한국군에게 종교는 “신앙심을 통한 정신전력의 극대화”의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고, 비종교인들의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이다.³²⁾ 종교인은 군중 제도에 부정적이고 비종교인은 종교활동에 아예 참석하지 않는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특히 한국 군중은 군대의 온전한 구성원에 해당하므로 군대조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군중 제도의 특성에서 비롯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군중 제도 성격의 교정을 필요로 하는데, 그 실마리는 해외 군중 제도의 변화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사례는 미국과 캐나다의 군중 제도다. 구체적으로 미국 군중의 변화 사례를 한국군 군중과 비교하여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파악하고,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서는 현재 한국의 종교지형인 다종교사회에 적합한 군중 제도의 모델을 살펴보려 한다.

5.1.1 미국 - 정체성 변화의 근거

상술하였듯이 한국 군중은 창립 이래 미국 군중을 모델 삼아 기틀을 마련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군은 미군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서 미국의 군중 제도와 활동을 동질화하는 방식으로 군중 제도를 정립해 나갔다. 미군은 한국에 군중의 제도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문과 조력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였고, 한국 측은 미군 제도를 모방, 학습하면서 양자 간에는 급속한 동질화가 이뤄졌다. 예를 들어 한국 군중은 미국 군중장교 교범의 번역본을 사용했고, 프로그램과 교재를 직수입해 시행하면서 군중 업무, 기능, 조직 등의 기틀을 잡았다.³³⁾ 한국 군중이 ‘사기증진자’로서의 성격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 역시 설립 모델인 미국 군중의 전통적 역할을 있는 그대로 이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과 미국의 군중 제도는 다른 목표를 지향하면서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당시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 군중은 전통적인 ‘사기증진자(moral builder)’에서 ‘도덕 지도 역할(moral guidance-role)로 역할을 전환했다.³⁴⁾ 이는 군인들에게 전투 의지를 고취함으로써 전투력 상승을 목표했던 군중이 전쟁의 정당성 그 자체가 문제시되던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군중은 인간화, 자유화, 참여, 소통 등의 군인 공동체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주는

32) *Ibid.*, pp. 236-237.

33) *Ibid.*, pp. 221-222.

34) *Ibid.*, p.225

방식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군의 전유물이 아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에서는 인본주의(Humanist) 군종장교가 비종교인 군인들을 위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³⁵⁾ 즉, 종교를 군인의 전투력 상승과 사기 진작의 도구로만 여기며 모든 병사에게 일괄적으로 종교활동을 적용하는 대신 병사들이 군 생활 중 바람직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개개인별로 세분화하고 구체화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반면에 한국 군종은 역할, 행동의 패턴을 유지하고, 기존의 지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모든 장병이 종교를 가짐으로써 반공 사상 무장과 군내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믿음 속에서 군종 활동을 전투력 향상과 결부시켰다. 미국식 모델의 한계를 고려하는 등의 비판적 성찰 과정 없이 조건 없이 동일시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동질화 이후에도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것이다.³⁶⁾ 따라서 군인들에 대한 인권과 자유의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정작 이상적이고 선진적 제도로 여겨진 미국 군종마저도 일찍이 변화한 만큼 한국 군종 제도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는 분명해 보인다.

5.1.2. 캐나다 - 다종교 군종의 형성

캐나다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음에도 이로 인한 충돌과 갈등이 적게 일어나는 국가로, 다문화주의가 사회 내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그 이유로 꼽힌다. 1971년 당시 수상 피에르 트뤼도(Pierre Trudeau)는 “비록 두 개의 공식 언어가 있다 해도 공식문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느 인종도 다른 인종에 대해 우월하지 않다.”라고 하며, 세계 최초로 대외적으로 모든 민족과 문화의 평등한 공존과 조화를 지지하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표방, 시행하였다.³⁷⁾ 다양한 문화의 조화로운 상호공존을 이상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의 시행과 그에 따라 조성된 사회 분위기는 많은 소수자가 캐나다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다원화된 캐나다 사회는 종교 영역에서도 다양한 종교 신자들이 상호 존중하며 공존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캐나다에서는 사회 구성원 중 유색인종의 증가, 동남아시아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신자의 인구가 1990년대부터 2000년

35) C. M. Schuhmann, “Humanist chaplaincy according to Northwestern European humanist chaplains: towards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aplaincy in secular societies”, *Journal of Health Care Chaplaincy* 2020 (2020): pp. 2-4

36) 강인철, “암축성장과 무성찰성 - 비교의 맥락에서 본 한국 군종의 특성”, *종교문화연구* 25 (2015): p. 235.

37) 문은현,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인권 - 캐나다 다문화주의와 비교”, *인권법평론* 12 (2014): pp. 150-152.

대를 걸쳐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다원화된 종교지형 속에서 캐나다는 기존 학교와 사회에서 크리스천 문화에서 파생된 상징, 용어, 의례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 의식을 느끼고 ‘제한하고자 했다’. 캐나다에서 종교는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속하며 특정 종교의 사회적 독점은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캐나다 사회는 특정 종교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한 용어와 의례로 대체하여 다원화된 사회를 유지했다. 캐나다 군중도 다르지 않다. 캐나다군은 각종 행사 진행 시 특정 종교의 의례나 예식을 따르지 않으며, 서로 다른 종교의 군중 장교에게 활발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며, 일반 장병들에게도 다원주의적 맥락에서 종교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5.1.3. 사기증진자에서 제한적 성직자로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로부터는 각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미군은 과거와 같은 주입식 종교활동, 개개인의 만족도와 정체성보다는 집단적 차원의 사기 진작만을 고려하는 군중 활동이 무용함을 보여준다. 캐나다는 소수종교의 군중 유입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와 같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지닌 기독교의 영향을 제한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 군중이 더는 “사기증진자”가 아니라, “제한적 성직자”로 정체성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미국과 달리 한국은 종교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국가이기에, 군중에게 신앙생활 이외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이제는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갤럽에 따르면 한국인의 종교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은 1980년대 약 70%, 2014년 47%에서 2021년 18%로 급락했다.³⁸⁾ ‘감소하고 있다’는 응답은 1980년대 약 10%에서 2021년 28%로 증가했다. 즉, 한국인이 느끼는 종교의 영향력은 2021년 현재 답보·축소 쪽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을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인 역시 2014년 59%에서 2021년 26%로, 불교도와 천주교인도 약 50%에서 20% 내외, 비종교인은 40%에서 15%로 줄었다. 종교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 준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에서도 ‘(매우+어느 정도) 도움 준다’는 응답은 2014년 63%에서 2021년 38%로 하락했고, ‘(별로+전혀) 도움 주지 않는다’라는 38%에서 62%로 늘어 7년 사이 종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긍·부정 인식이 반전됐다. 특히 비종교인의 경우 82%가 종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군 군중의 변화를 그대로 따라하여 인권 문제 상담 및 자유화, 참여, 소통 등의 군인 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군중에게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역할은 전

38)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 *한국 갤럽*, 2021년 4월 7일 작성, 2021년 9월 27일 접속,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문 상담가에게 맡기고 군종은 군대 내부에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돌보는 ‘성직자’의 역할에 전념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군종 내에서도 압도적이었던 캐나다와 달리, 비록 2018년 기준 492명의 군종장교 중 절반 이상인 258명이 군종 목사이기는 하나 이미 4개의 종교가 포함된 한국 군종에서 특정 종교의 영향력이 사회문화적으로 지배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캐나다의 사례처럼 기독교 문화의 흔적을 집중적으로 지우기보다는 이미 군종 내에 속해 있는 각 종교의 역할을 ‘제한’하면서 다원주의적 맥락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종교지형에 적합해 보인다. 이에 더해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인식하는 종교의 중요성이 다르다는 점도 군종의 영향력을 가능한 종교인에게만 ‘제한’시킬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2021년 현재 비종교인의 89%는 종교인과 달리 개인 생활에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³⁹⁾ 즉 한국 사회에서도 캐나다 사회의 암묵적 규칙처럼 종교의 영역을 철저히 사적 영역에 국한하는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두 개의 근거를 종합하면 한국 군종의 새로운 상위 정책 목표는 “제한적 성직자”로의 재탄생이 되어야 한다.

5.2. 운용상 해결방안

5.2.1.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와 신앙고백의 자유 보장 방안 제언

한국 군종이 “사기증진자”에서 “제한적 성직자”로 거듭날 세부적인 대안으로는 우선 이른바 종교 마일리지라고 부르는 제도의 폐지를 꼽을 수 있다. 위의 여러 설문 조사 응답과 인터뷰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 마일리지 제도는 비종교인들이 보장받아야 할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며, 몇몇 사례에서는 상관이 특정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어 종교인들의 신앙고백의 자유를 침해한다. 현재 군대에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지휘관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모범이 되는 공적’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하위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군부대 상황에 따라 ‘모범이 되는 공적’에 해당하는 사례는 달라질 수 있기에 해당 공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포상 휴가 부여는 지휘관, 즉 상관의 재량과 판단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교활동에 일정 횟수 이상을 참여하는 것이 모범이 되는 공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에 적시하여 종교 마일리지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그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39)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 *한국 갤럽*, 2021년 4월 7일 작성, 2021년 9월 27일 접속,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또한 훈련소에서는 종교활동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개인 정비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훈련소에서는 종교활동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들이 개인 정비 시간을 받기보다는 생활관 청소 등의 잔업을 맡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다수의 무종교인 훈련병들은 설령 원치 않더라도 주말에 종교활동에 참여했고, 그들의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무종교 훈련병들이 반강제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훈련소 내 종교활동이 본질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종교인 훈련병들의 신앙을 고백할 자유 또한 침해받았다. 그러므로 훈련소에서는 종교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훈련병들에 대해서 개인 정비 시간을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처럼 비종교인들의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은 자연히 신앙고백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을 열어준다. 다수의 비종교인 장병들이 훈련소나 자대에서 종교활동에 굳이 참가할 이유가 없어진다면, 그간 비종교인 장병들을 위해 진행되었던 여러 위문 공연이나 레크리에이션 활동, 선물과 생필품 제공 등의 관습 역시 굳이 종교시설에서 시행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술한 여러 혜택 제공을 군종이 아닌 공보정훈과 같은 타 병과에 맡기면 이는 종교인 장병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했던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종교활동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군종은 군대 내부에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에 전념하며 ‘사기증진자’가 아닌 ‘제한적 성직자’가 될 수 있다.

5.2.2. 종교의식의 자유 보장 방안 제언

이때 종교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종교의식의 자유를 행사할 대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부대에 없는 종교시설이 부대와 인접한 민간인 지역에 위치할 경우, 종교활동에 한해서는 주말 외출을 확대 적용하고 무조건적인 간부 동행을 폐지하여 병사들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미 군은 2019년 2월부터 군인들의 평일 외출을 전면 시행한 바 있고,⁴⁰⁾ 2020년부터는 간부 인솔 없이도 외출해서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 개편을 추진했다.⁴¹⁾ 같은 맥락에서는 위의 대안 역시 충분히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 7 또한 간부의 입장에서조차 출타율만 적절히 고려한다면 병사를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둘째, 예산 제약 및 부대 환경으로 인해 종교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종

40) 이주원, “평일 외출에 핸드폰 까지...군대가 확 달라졌어요” 서울신문, 2019년 2월 2일 작성, 2021년 9월 27일 접속,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01500267&wlog_tag3=naver

41) 최평천, “병사, 혼자 외출해 민간병원 진료받는다...단체보험도 가입 추진”, 연합뉴스, 2020년 1월 22일 작성, 2021년 9월 27일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2044900504>

교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전례 양식을 각 군종에서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군종 활동을 수행 중인 네 종교 중 천주교와 원불교의 시설이 개신교와 불교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그 수가 부족하므로 미사나 법회를 대체할 전례 양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GP나 GOP, 해안 초소에서 군 생활 중인 천주교 신자는 미사를 드릴 수 없다면 대체 양식인 공소예절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인터뷰 대상자 7은 육군사관학교 훈련 당시에 경험한 바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기존 종교활동을 대체한 줌(Zoom)과 같은 화상회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군 간부인 대상자 6과 7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확인한 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 시기에 국방부는 부대 내 모든 종교시설을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했다. 그 대안으로는 장병들에게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을 제공하고, 각자 생활관에서 종교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네이버 밴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식을 마련했다. 격오지 등 부대에서는 여건에 따라 소규모 모임을 허용되었다. 이와 같은 종교활동의 진행은 코로나바이러스 종식 이후에도 일부 유지될 수 있으며, 특히 종교시설이 부대 주위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종교 행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례를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

5.3. 운용상 해결방안 - 소수종교 유입

5.3.1. 구체적 해외 사례 검토 - 이스라엘 군종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군을 한국군 군종에 소수종교를 유입시키기 위한 모델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군의 특수성이 첫 번째 이유다. 한국군은 징병제를 채택한 군대이자 동시에 아직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다. 따라서 모병제 국가 혹은 직접적인 군사 분쟁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군종을 한국군 군종의 모델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두 번째는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자 선진국이라는 사실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거나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국가는 징병제를 시행하더라도 장병 개개인에 대한 권리 인식, 권리 보장에 대한 감각과 감수성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유의미한 통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다종교 사회라는 점을 고려했다. 대한민국은 2018년 기준 927개의 교단 혹은 교파가 존재하면서도 특정 종교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주도권을 잡지 않는 종교 다원주의 사회다.⁴²⁾ 따라서 특정 종교가 국교로 지정되었거나 유달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군종은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데 제한이 따른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은 이스라엘군이 한국군에게 가장 적합한 롤모델인 이유로 볼 수

42) 고병철,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8), p. 98.

있다. 이스라엘은 주변국인 팔레스타인과 여타 아랍국가와의 잦은 분쟁 등 군사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징병제를 채택했다.⁴³⁾ 또한 징병제 국가 중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으며 인권 보장 수준과 민주주의 수준이 한국과 유사한 유일한 국가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2020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바로 아래 단계이자 프랑스, 미국 등과 같은 ‘결합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된 받은 바 있다.⁴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군은 유대교 신자인 군인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드루즈교 신자, 이슬람교 신자, 기독교 신자 등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의 입대가 증가하는 추세다.⁴⁵⁾ 특히 이스라엘군은 다양한 종교 신자 군인들의 유입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고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이들을 효과적으로 융화하고 향후 갈등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징병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종교가 다원화된 군대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우선 이스라엘군은 소수종교 신자 군인의 유입에 대비하여 지휘관과 장병을 위한 군대 내 제도를 정비하고 시행하였다.⁴⁶⁾ 이스라엘은 지휘관을 대상으로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소수종교 신자 병사들에 대한 상급자로부터의 차별을 방지하였다. 또한, 군 생활 중 이민자와 소수종교 신자인 장병들을 대상으로 문화, 애도관습, 종교 생활, 매장의식 등에 대해서 선택권을 폭넓게 부여함으로써 입대자가 자신의 문화 또는 종교로 인해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였다. 대표적으로 병영 내 소수 채식주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식사비를 지급하고, 양털을 사용하지 않은 베레모를 보급하는 등의 맞춤형 정책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소수 그룹 장병들의 군 복무 이전이나 전역 직전에 교육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을 적절히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인력개발부의 교육/청년처가 이스라엘군의 정신전력 교육을 담당하면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장병들의 정서적 일체감 조성 and 군인들의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담당과가 교육/청년처 내부에 별도의 과 조직으로 구분되어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⁴⁷⁾ 이처럼 다양한 계층이 입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소수 그룹을 배려한 맞춤형 병영정책을 시행한 결과 이스라엘군은 성공적인 다종교 군대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43) 김민호, “이스라엘 군대의 다문화 수용성이 한국군 다문화 병영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군사* 9 (2021): p.138

44) 현윤경,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 세계 23위...북한은 꼴찌 수도”, *매일경제*, 2020년 1월 22일 작성, 2021년 9월 27일 접속.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1/75044/>

45) 김민호, “이스라엘 군대의 다문화 수용성이 한국군 다문화 병영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군사* 9 (2021): p.138

46) *Ibid.*, pp. 140-143

47) 조우찬, “이스라엘 군대의 정신전력 연구: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정신전력연구* 59 (2019): pp. 95-98.

한편 이스라엘 이외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다종교사회를 이루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20개 이상의 기독교 교파를 비롯해 이슬람교와 유대교 등 다양한 종교로 군종을 구성하고 있다.⁴⁸⁾ 특히 캐나다 인구 중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한 개신교와 천주교는 1995년 군종을 통합하면서 협력을 시도했으며, 유대교 역시 2003년에 군대 내 첫 이맘을 임명하며 다종교 군종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영국군 역시 무슬림 인구 증가에 발맞추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⁴⁹⁾ 다만 이슬람 성직자인 이맘을 군종장교로 고정하는 대신, 민간인 신분이자 이주민 2세 출신인 이맘이 군대와 군대 밖의 민간 지역을 모두 관할하도록 하여 종교의 자유 보장과 사회통합을 함께 지향하고 있다.

5.3.2. 해외 사례 적용 방안 제언

이스라엘 사례를 한국 군종에 적용할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부 대상의 다종교 이해 교육 도입이다. 다문화 접촉과 다문화 수용성이 상호 영향을 주는 만큼 간부들의 다문화 접촉과 교육이 다문화 장병을 적절히 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한국군 간부 중 29.4%만이 군대에서 다문화 교육을 경험하였고, 70%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⁵⁰⁾ 인터뷰 대상자 6 역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교육 외에는 다종교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심지어 진행되는 교육 내용마저 부정적 시각에 의해 사고 예방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징병제 군대이고 생활관에서 24시간 부대껴야 하는 한국군 환경을 고려하면, 다종교로 인한 분쟁, 갈등 혹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연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지 의문이 남긴다. 따라서 소수종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충분한 교육콘텐츠를 마련하고 전문화된 교육 방법을 개발하여 소수종교 장병들이 간부에게 신앙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장병 대상의 다종교 이해 교육 도입이다.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 7에 따르면 “군대 내 종교의 자유에 관련된 교육은 군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군법 교육과 연계해 진행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7조가 ‘국방부 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제 군 현장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⁵¹⁾ 따라서 훈련소 입소 후 첫 주 동안 이루어지는 정훈 교육 시간이 일부를 할애하거

48) Guy Chapdelaine, “Working Towards Greater Diversity: A Blessing or a Curse? The Experience of the Canadian Military Chaplaincy”, *Canadian Military Journal* 15 no. 1 (2014): pp. 38-40.

49) Asim Hafiz, “Muslim chaplaincy in the UK: the chaplaincy approach as a way to a modern imamate Religion”, *State & Society* 43 no. 1, (2015): pp. 89-94.

50) 김정희, “군 간부의 다문화교육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4 no. 2 (2020): pp. 63-64.

나,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자살 예방 교육에 추가하는 형태로 다종교 및 다문화 이해에 관한 더욱 심도 있는 교육이 어우러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터뷰 대상자 5가 문제로 지적한 채식 식단 도입을 두고 ‘취사병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책’이라는 등의 부정적 반응⁵²⁾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군과 같은 소수종교 신자 맞춤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소수종교 신자들의 종교의식을 위한 성직자들을 모집해야 하며, 이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총인구 대비 2% 이상, 군인 총수 대비 1% 이상’인 교단에 군종 제도 참여 자격을 부여한다’는 현행 기준상 당장 군종 제도 내에 포함될 수 없는 종교의 경우 직접적으로 군종장교를 임명할 수 없기에, 민간 성직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앞서 언급했던 줌과 같은 화상회의 기술의 도입이 동반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례로 무슬림은 교리상 일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종교 활동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일과 이후 개인 정비 시간에 여유 공간만 마련하면 외부 성직자(이맘)와 온라인으로 교류하며 교리상으로나 부대 운용상으로도 문제없이 소수종교 신자의 신앙 활동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한국 군종 고유의 성격과 세분된 종교의 자유 개념을 토대로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국군의 현실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언했다. 현재 많은 비종교인 장병은 훈련소와 자대 내에서 장병들의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가 있는 장병의 신앙고백의 자유와 종교의식의 자유 역시 빈번히 침해받고 있다. 특히 무슬림과 같은 소수종교 신자는 여러 면에서 신앙의 자유와 신앙 행위의 자유를 모두 행사하는 데 제약을 느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군대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더욱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존 군종 제도의 본질적 개선방안과 운용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군종 제도의 본질적 개선 방안을 상위 정책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군종 제도의 운영적 개선방안을 하위 정책목표 겸 상위 정책수단으로 삼아 제언한 대안들의 목표로 개별 문제 해결은 물론 전반적인 군종 제도의 체질 개선까지도 염두에 두었다. 우선 사기증진자에서 제한적 성직자로 군종 제도의 정체성과 목적을 재정립할 경우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인 종교의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종교의 영역이 사적 영역에 국

51) 이윤수, “다문화 군인에 대한 장교들의 인식과 군 정책 방향”, *국방정책연구* 34 no. 2 (2018): pp. 62-63.

52) 전형주, “‘채식 식단’ 따로 만들어야 해 참도 못 자고 노예처럼 일하는 취사병들”, *인사이트* 2021년 1월 5일 작성, 2021년 9월 27일 접속, <https://www.insight.co.kr/news/319496>

한되는 흐름이 가속화되며, 특정 종교의 영향력이 사회문화적으로 지배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한국 사회의 종교 인식을 고려할 때 신앙생활 이외의 역할을 군중에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이러한 군중 정체성의 재정립은 종교를 주입하고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행 제도와 관습에 변화를 일으킬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 토대 위에서 휴가 제도 개편, 개인 정비 시간 보장, 비대면 종교활동 확대 등이 이루어지면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신앙 고백의 자유, 종교의식의 자유 등도 더 폭넓게 보장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간부와 장병 모두를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심층적인 다종교 및 다문화 교육이 시행되고, 소수종교 성직자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군중 제도 내에 포괄할 수 있다면 소수종교 신자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여러 방면에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본 연구 역시 한계가 있다. 우선 설문 조사법 활용 시에 충분치 않은 표본 수로 인해 더 객관적인 통계치를 얻을 수 없었던 문제가 있다. 또 면접법을 활용해 한국 군대에서의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를 파악하다 보니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서도 여러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육군 외에 해군 및 공군으로 군 생활을 한 장병 혹은 간부의 의견을 들었다면 더욱 구체화한 맞춤형 대안을 구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불교나 원불교 신자의 군 경험, 그리고 추가적인 무슬림 장병은 물론 그 외의 소수종교 신자와 대화할 수 있었다면 더 폭넓게 군중 제도 현황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위 이상의 간부들을 인터뷰하고 군중 장교와의 인터뷰가 진행된다면 장병들 개개인의 애로사항에 더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체감하는 군중 제도의 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도 본 연구는 향후 군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미력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선교 전략에 초점을 맞춘 신학계의 군중 제도 연구나 병사들을 집단으로 파악하여 관리의 대상으로만 상정한 군사학 분야의 연구, 이미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종교 갈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선행 연구들과 달리 장병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군인의 종교 자유 실현과 보장에 관한 연구이기에 사회 변화와 새로운 미래에 비교적 유용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 강인철, “압축성장과 무성찰성 - 비교의 맥락에서 본 한국 군종의 특성.” *종교문화연구* 25. 2015.
- _____. “한국의 군종 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 *종교연구* 75 no. 4. 2015.
- _____. “한국 군종 제도와 활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 *종교연구* 76 no. 4. 2016.
- 계희열, “헌법상 종교의 자유.” *헌법논총* 8. 1997.
- 김기태, “한국 전쟁과 군선교.” *선교와 신학* 26. 2010.
- 김민호, “이스라엘 군대의 다문화 수용성이 한국군 다문화 병영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군사* 9. 2021.
- 김성경, “군대와 종교 - 한국과 미국의 경우.” *한국문화인류학* 16. 1984.
- 김정희, “군 간부의 다문화교육 경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4 no. 2. 2020.
- 김종효 외, “신세대 초임병사의 종교성향이 군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군사회복지학* 11 no. 2. 2018.
- 문은현,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인권 - 캐나다 다문화주의와 비교.” *인권법평론* 12. 2014.
- 박응규, “한국의 군종제도와 기독교.” *성경과 신학* 66. 2013.
- 불교군종사편찬위원회, *불교군종사: 군승 40년사*. 서울: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2008.
- 송기춘, “종교관련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학교 종교 자유 신장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세미나 자료집*. 2001.
- 이윤수, “다문화 군인에 대한 장교들의 인식과 군 정책 방향.” *국방정책연구* 34 no. 2. 2018.
- 임효재, “군종교 활동이 장병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2008.
- 전영한, “정책도구의 다양성: 도구유형분류의 쟁점과 평가.” *정부학연구* 13 no. 4. 2007.
- 조우찬, “이스라엘 군대의 정신전력 연구: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 *정신전력연구* 59. 2019.
- 차용환, “다문화 군대대비 국방정책 발전방안(1) - 사회통합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 76 no. 3. 2020.
- 최병규, “한국 천주교회의 효율적인 군종 사목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 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9.
- 최운진,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7 no. 2. 2007.
- Asim Hafiz, “Muslim chaplaincy in the UK: the chaplaincy approach as a way to a modern imamate Religion.” *State & Society* 43 no. 1, 2015.
- C. M. Schuhmann, “Humanist chaplaincy according to Northwestern European humanist chaplains: towards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aplaincy in secular societies.” *Journal of Health Care Chaplaincy* 2020. 2020.

Guy Chapdelaine. "Working Towards Greater Diversity: A Blessing or a Curse? The Experience of the Canadian Military Chaplaincy." *Canadian Military Journal* 15 no. 1. 2014.

[정부 자료, 보고서]

국방부, 2021년도 급식방침.

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

고병철.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8.

나달숙.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9.

정종섭. 국내외 종교차별 사례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09.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 *한국 갤럽*, 2021년 4월 7일 작성,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권선미. "한국의 이슬람교① '토종 무슬림' 6만 시대 맞았다", *연합뉴스*, 2020년 10월 20일 작성.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9082900501>.

권혁주. "격오지 장병을 위한 마음의 양식 '군중누리 2집' 발간", *노컷뉴스*, 2017년 5월 18일 작성, <https://www.nocutnews.co.kr/news/4786321>.

박병수. "군, 내년부터 '채식주의자 식단'도 제공", *한겨레*, 2020년 12월 27일 작성,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76025.html#csidx4789207284bd5a3a21597688bc33979>.

박성진. "다문화 시대의 '개인 맞춤형' 군대", *경향신문*, 2020년 12월 30일 작성,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012300300065#c2b>.

배상은. "GOP·GP 근무 병사 9.7%만이 종교활동 참여", *뉴스원*, 2014년 10월 14일 작성, <https://www.news1.kr/articles/?1903422>.

전형주. "'채식 식단' 따로 만들어야 해 잠도 못 자고 노예처럼 일하는 취사병들", *인사이트*, 2021년 1월 5일 작성, <https://www.insight.co.kr/news/319496>.

윤상호. "軍, 채식-무슬림 장병에 내년부터 '맞춤형 식단'", *동아일보*, 2020년 12월 28일 작성,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27/104655690/1>.

이주원. "평일 외출에 핸드폰 까지...군대가 확 달라졌어요" *서울신문*, 2019년 2월 2일 작성,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201500267&wlog_tag3=naver.

최평천. "병사, 혼자 외출해 민간병원 진료받는다...단체보험도 가입 추진", *연합뉴스*, 2020년 1월 22일 작성,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2044900504>.

현윤경.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 세계 23위...북한은 끌지 수모", *매일경제*, 2020년 1월 22일 작성,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1/75044/>.

대학 내 '포괄적 학습 장애' 지원 제도 마련의 필요성 연구

— ADHD 대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권소원, 이정환

대학 내 '포괄적 학습 장애' 지원 제도 마련의 필요성 연구

— ADHD 대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권소원, 이정환*

[목 차]

1. 서론
 2. 본론1: 심층면접 기반 연구
 - 2.1. 연구 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과정
 - 2.2. 자료 분석 방법 및 절차
 - 2.3. 연구의 타당성과 윤리성
 - 2.4. 연구 결과
 - 2.5. 요약 및 논의
 3. 본론2: 문헌 기반 연구
 - 3.1. '누가 '장애인'인가?': '포괄적 학습 장애' 관련 법령 및 지원 현황 검토
 - 3.2. '나는 아픈데도...': 권리의 관점에서의 고찰
 - 3.3. 논의
 4. 결론
 - 4.1. 요약 및 결론
 - 4.2. 제언
- 별첨 <1> 심층면접 동의 안내서
참고문헌

[요약] 본고의 목적은 ADHD 대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포괄적 학습 장애'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대학 차원에서의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ADHD가 대학생의 학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생애적 문제임에도 초중등교육과정뿐 아니라 고등교육에서도 학습 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생 ADHD 환자의 문제를 다루는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이 역시 여전히 ADHD를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등 질병과 장애를 경험하는 '아픈 몸'이 아닌, 행정적 분류가 관련 담론의 중심에 놓여있다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설정된 목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진단명으로서 제도 안으로 포괄되지 못하나 진단명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아픈 몸'의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대학생 ADHD 환자 6명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어려움은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 어려움'이었으며, 대학이 이들의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한편 이들은 자신의 아픔을 다른 아픔으로 연결해서 사고하기도 했으며, 이들의 어려움은 하나의 질병에 묶인 어려움이 아니었다. 이러한 내용에 기반해 본고는 '포괄적 학습 장애'를 정의하였다.

* 권소원(경제학부 19) 이정환(소비자아동학부 19)

대학의 지원 필요성을 규명하기 위한 문헌 연구 결과, 현행법과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생지원책으로는 '포괄적 학습 장애'의 어려움을 포괄할 수 없었다. 한편 본고는 '포괄적 학습 장애'를 위한 지원이 어떠한 권리의 관점에서 보장될 수 있는지도 살폈다. 이 과정에서 '통합'에서 '포용'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권리 담론을 벗어나, 질병권을 중심으로 '문턱'을 해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추가로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포괄적 학습 장애'를 위한 지원의 방향성을 제언으로 남길 수 있었다.

1. 서론

정신질환을 지닌 '대학생'들은 적절한 학습 환경에 대한 접근권으로부터 한층 더 유리되어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적용 범위는 초중등교육까지의 시기에 제한된다.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겪으면 원인과는 무관하게 학습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된 '기초학력보장법안'에서도 대학생들은 제외된다. 현재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장애등록제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에, ADHD와 기타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은 수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학교 측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정신질환으로 인해 시험 방식이나 수업의 참여 등에서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이 있어도 교수자의 재량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¹⁾

그러나 이들이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 친구가 있으면 정신장애인으로 판정받지 못하는 등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장애인복지법상 분류되는 정신장애의 범주와 정신의학에서 분류하는 정신장애의 범주가 달라(서인환, 2013), 당사자의 경험과 행정적 등록 기준은 상당한 괴리를 지니기 때문이다. 학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생애적 문제로 분류되는 ADHD를 지닌 환자가 중등교육까지의 범주에 적용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항' 상의 '장애인 등'의 범주로 분류되지 못한다는 점 역시 그 괴리의 일례다(정선미, 서미아, 2019). 현재 ADHD 대학생들이 겪는 학습상의 문제가 코로나 상황의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인해 커지고 있다는 점(최진오, 오새내, 조명실, 2020)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본고가 그중에서도 대학생 ADHD 환자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들의 아픔은 국내 사회와 제도 내에서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왔으며, ADHD로 인한 이차적 고통, 그리고 그 외의 장애들 또한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적인 아픈 몸'의 경험을 포괄하는 열린 개념인 '포괄적 학습 장애'를 정의하기 위해 연구될 필요가 있는 대표적 인물군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호전되는 장애로 인식되던 ADHD는 상당수의 소아 ADHD 환자가

1) 장애인복지법상 이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질환이 장애인복지법상 분류되는 정신장애의 범주에 해당하고, 정신적 능력장애 등에 대한 판단과정을 거쳐 정신장애인으로 공인되어야 한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증상을 보였다는 점이 드러난 후에야²⁾ 만성적인 장애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인기의 ADHD 증상은 아동기의 증상과 다를 수 있다. 전반적인 성인 ADHD 환자는 과잉활동성보다는 “정서적 불안정성, 충동성, 업무 기술의 부족, 조직화하는 능력의 결여” 등으로부터 문제를 겪는다. 이에 더해, 성장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ADHD 증상 발현으로 인한 “낮은 성취 수준, 대인관계 상의 어려움, 주변이 반복적인 부정적 피드백 등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자기개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Bakley, 1995; Klein & Manuzza, 1991; Weiss & Hechman, 1993; 김호영, 이주영 외 3인, 2005에서 직접인용)뿐만 아니라, ADHD는 “적대적 반항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학습장애, 물질남용, 성격장애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권해수, 이성직, 2017). 이에 개별 ADHD 환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개별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한편, 같은 성인 ADHD 환자라 하더라도 그 증상은 개인의 경험이나 현재 개인이 마주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 환자가 경험하는 불편함이나 장애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대학생 ADHD 환자, 대학 교육 이외의 교육을 받고 있는 ADHD 환자, 직장인 ADHD 환자의 증상과 고통은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 ADHD 환자는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고유의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 대학생은 아동보다 부모나 교수자에 의한, 학업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통제와 지원을 받지 않는다. 동시에 대학생은 스스로 수강 과목과 일정을 선택해야 하며, 그 계획에 맞춰 스스로 수업에 참석하고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조된다(송귀숙, 이수정, 2021).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시간 관리 능력도 요구되며”, ‘사회생활’에 적응함과 동시에 소속 대학 및 학우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형성해야 한다.”(송귀숙, 이수정, 2021) 대학생 ADHD 환자들 역시 ADHD와 그것과 동반되는 다른 정신질환, 그리고 그 만성적 정신질환을 평생동안 경험하며 형성된 이차적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³⁾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는 주로 특수교육학적 맥락에서 수행되었다. 하지만 특수교육학적 맥락에서의 연구는 중등교육까지의 과정에 한정되며, 특수교육 대상자의 성취도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최근 상담학과 리터러시 분야의 권해수, 이성직의 연구(2017)와 최진오, 오새내,

2) 아동·청소년기에 ADHD 진단을 받은 이들의 60-80%는 성인기에도 증상을 호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가 있다(Bakley, 1995; Klein & Manuzza, 1991; Weiss & Hechman, 1993; 권해수, 이성직, 2017에서 재인용)

3) 본고는 앞서 언급한 이차적 문제들이 ADHD 자체의 진단과는 분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그것을 ‘포괄적 학습 장애’를 정의하는 데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이는 곧 진단명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아픈 몸’의 맥락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사고는 질적연구 전반의 전제가 된다.

조명실의 연구(2020)는 ADHD를 겪는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주목하기는 했으나 이를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더구나 ADHD 대학생의 삶의 어려움 극복과정을 다룬 연구(정선미, 서미아, 2019)에서는 ADHD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에서의 어려움을 대학에서 ‘어떻게 잘 이겨냈는지’를 연구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아픔을 ‘극복’해내야 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러한 관점에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아픔’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며 그 감당의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하는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의 한계들을 보완하고자 본고에서는 질병권의 관점을 탐색하였다. 질병권이란 ‘잘 아플 권리’를 의미하며, 아픈 사람들이 아픈 채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조한진희, 2019). 이는 아픔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아픔을 안고도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는 권리로 해석된다.

연구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본고가 질적연구를 통해 답하고자 한 것은 ‘ADHD 대학생들은 대학 생활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가?’였다. 물론 이들의 어려움을 다룬 연구는 이미 존재하지만, 극복해야 될 어려움이 아닌, 경험되고 있는 어려움을 다룬 국내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본고는 근거 이론에 기반해 ‘포괄적 학습 장애’를 개념화하였다. 이후로는 관련 현행법을 검토해 대학 내 학습 지원 현황을 제시했다. 또 본고는 ‘질병권’에 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고 질적연구의 결과물과 교차해 결론을 맺었다.

2. 본론1: 심층면접 기반 연구

2.1. 연구 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과정

본고는 ADHD와 유관한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다. 본고는 ADHD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과 대학 생활 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정신질환을 경험한 이들로 연구 대상을 확장했고, 그 결과 의학적 진단명이 ADHD에 해당하지 않아도 ADHD와 관련된 ‘증상’을 보이고 이에 해당하는 약물 혹은 상담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을 연구에 포괄할 수 있었다.⁴⁾

본고는 <표 1>과 같이 참여자의 학년, (지정)성별, 재학 중인 대학교와 전공 등의 변수를 달리하여 ADHD와 유관한 증상, 즉, 학습에의 장애가 참여자에게 끼치는 공통적인 영

4) 연구 초반에는 ADHD라는 명확한 진단명을 가진 참여자를 섭외했으나, 면접 과정에서 ADHD를 지닌 이들이 대학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성인 ADHD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질환과 환경으로 인해 초래되고 악화되는 어려움이라는 점이 밝혀져 ADHD의 유관 증상을 경험한 자를 연구 대상에 포괄하였다.

향력을 포착하고자 했다.

가명	입학 시기	(지정) 성별	대학 소재	전공 계열	진단 관련 정보
여름	2018년도 이후	여성	서울	예술 계열	성인 ADHD 진단 후 약물-인지행동치료 병행
파도	2018년도 이전	여성	전북	사회과 학계열	ADHD 증상 진단 이후 약물-상담치료 병행
가연	2018년도 이전	여성	서울	인문학 계열	성인 ADHD 진단 후 약물-상담치료 병행
조이	2018년도 이후	여성	서울	예술 계열	성인 ADHD 진단 후 약물-상담치료 병행
만두	2018년도 이전	여성	서울	상경 계열	성인 ADHD 진단 후 약물-상담치료 병행
승오	2018년도 이후	남성	대전	공학 계열	아동 ADHD 진단 후 대학 입학 후 치료 중단

〈표 1〉 심층 면접 참여자 정보 요약

2.2. 자료 분석 방법 및 절차

본고는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적 접근 방법을 통해 심층 면접 자료의 해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상호작용 행동을 개념화 및 범주화하여 특정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근거이론의 방법론적 특성이 ADHD 대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하는 데 적격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 역시 ADHD 대학생들의 경험을 근거이론으로 해석하여 변화하는 극복과정을 분석한 바가 있으며(정선미, 서미아, 2019), 본고 역시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안고 생활해나가는 과정을 분석의 중심에 두었다는 점에서 근거이론적 접근 방법을 채택하였다.

해석 절차는 질병 경험을 근거이론적 방법론으로 이해하고자 한 선행연구와 서적을 참고하여 설계되었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한 방법론 교육을 수강한 연구자의 경험 또한 해석 절차에 반영되었다. 특히 ADHD 대학생을 근거이론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정선미, 서미아, 2019), 천식 환자의 질병관리 경험을 근거이론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김보혜, 김옥수, 2020), 『근거이론적 방법』(변기용, 2020)을 주로 참고하였다.

구체적인 해석 절차는 일반적인 근거이론의 코딩 과정인 개방적 코딩 - 중추적 코딩 - 선택적 코딩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개방적 코딩 과정에서는 전사된 심층 면접

자료와 현장 노트를 종합하여 참여자별 키워드를 도출하고, 이를 범주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증추적 코딩 단계에서는 핵심 범주를 찾고, 중심현상과 인과 조건, 맥락적 조건, 증재적 조건, 전략과 결과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택적 코딩 단계에서는 핵심 범주들을 원활히 연결하고 하나의 체계로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3. 연구의 타당성과 윤리성

본고는 질적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환 과정, 자료수집원의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쳤다. 먼저, 모든 코딩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념의 도출이 어려운 ‘이론적 포화’ 상태로의 도달을 위하여 자료의 수집과 해석 과정을 반복했다. 일례로, 본고는 전공 계열 간 경험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인문 계열 면접자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예체능 계열의 5번째 면접자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또한, 전공 계열 간, 성별 간 경험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여성 면접자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이공계열이며 남성인 6번째 면접자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한편, 본고는 참여자들에게 간접 인용 및 직접 인용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전자 자료와 참여자의 확인, 면담 시 작성한 현장 일지가 서로 일치된 진술을 담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었다. 이는 곧 참여자의 경험을 연구 속에 보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담아내기 위함이기도 했다.

또한, 참여자가 경험하고 있는 질환 및 증상의 진단 시기, 치료 경험, 구체적인 증상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참여자 모집 시기부터 면접 및 논문 작성의 과정 전반에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정보와 이에 대한 참여자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고지하였고, 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단계에서는 배포한 사전 질문지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서술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각 개인정보의 익명화 수준과 활용 목적, 보관 시기 등을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였다(별첨 <1>). 개별 심층 면접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전 질문지에 고지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정보를 다시 설명하였으며, 참여자에게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였다. 덧붙여, 참여자마다 시간당 일 만 원, 도합 이 만 원씩의 간단한 보상이 주어졌다. 논문 작성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인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며 인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한편, 본고는 이 모든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위험 요소 및 대비 방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참여자가 심층 면접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때, 연구에 실린 참여자의 경험을 통해 개인이 식별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설명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의

익명화 절차를 소개했으며, 결과물의 예시를 보여줌으로써 최대한 자세한 설명을 시도했다. 또 심층 면접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시, 연구 참여를 중단 또는 휴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자들이 면접 이후에도 언제든지 발언의 활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연구자들은 심층 면접 참여자들을 구하기 위해 앞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전문 연구윤리 교육을 모두 수강하였으며, 교육의 내용에 따라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4. 연구 결과

근거 이론에 기반해 심층 면접 자료를 해석한 결과, 47개의 개념에서 총 1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자세한 범주와 개념은 아래 <표 2>로 제시하였다.

내용	파일	횟수	축코딩
1. 요구되는 역량과 성취 사이의 괴리			인과 조건
(1) 전공학습역량			
선택권이 주어지다/넓어지다	5	8	
관심이 없는 것은 '머리가 거부하는'	5	6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한 성과를 판단받는다	2	3	
결과물로 인해 고통이 부정되는	2	2	
(2) 정보탐색역량			
좋아하던/자신있던 것을 잘 하지 못하게 된	2	5	
스스로 내용을 체계화하지 못하는	3	5	
한 학기 전체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는	3	4	
방대한 자료를 읽지 못하는	2	2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집중을 하지 못하는	3	5	
(3-1) 시간 관리 역량(학습)			
시간을 맞춰 학교에 가지 못하는	2	3	
제출기한까지 과업을 미루는	5	8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5	6	
협업 과제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3	6	
학기의 흐름을 조절하지 못하는(번아웃)	1	1	
(3-2) 코로나 시기의 시간 관리 역량(학습)			

실시간 강의에 참석/집중하지 못하는	4	4	
(3-3) 시간 관리 역량(생활)			
감당/실현할 수 있는 일정을 계획하지 못하는	2	7	
학업 외 일상적인 스케줄을 관리하지 못하는	4	5	
(4) 다중수행역량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는	3	5	
(5) 관계유지역량			
'충동성'을 제어하기 힘든	2	5	
눈치가 없다는 평판	2	5	
극복 서사의 요구	4	2	
2. 자신에 대한 인식			
(1) 자기인식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 내가 피해를 끼칠 것 같다는 생각	3	9	
장애판정으로 인한 부정적 자기인식	4	6	
꼼꼼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통한 자기 인식	3	6	
(2) 전공 특성 및 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	4	8	
(3) 어려움에 대한 외부의 피드백			
교수의 재량	4	5	
동기/조원들의 조력	3	3	
(4) 대인관계			
친구들의 위로와 지지	4	7	
표현 방식으로 인한 갈등	2	2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업무 방식 조율	1	1	
3. 지원과 시선			
(1) 대학에서의 학생지원 환경			
'지원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2	2	
(2) ADHD를 비롯한, 학습장애에 대한 편견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시선	3	9	
시혜와 동정	2	5	
ADHD 등 학습장애에 대한 편견(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3	3	
부적절한 상담의 영향	3	8	
			맥락 조건
			중재 조건

4. 오롯이 '나의 몫'			전략 및 결과
(1)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진단을 통한 수용	4	6	
본인을 이방인으로 만들기	1	5	
(2) 컨트롤 타워가 되기			
정기적인/반복되는 루틴을 만들기	3	4	
외부 환경을 조성하기(주변인과 함께 작업하기 등)	3	5	
다양한 전략(메모, 플래너 작성 등)	4	4	
상담/병원/약물을 활용하기	3	5	
약에 '의존'하지 않기	1	2	
자신의 정체성과 질환을 분리하기	1	4	
명확한 결과물이 나오는 활동을 하여 성취감을 느끼기	3	3	
(3) 타인과 아픔을 나누기			
함께 과제하거나 일화를 공유하며 위로받기	5	6	
5. 요구하기			요구하기
(1) 학생에 대한 지원 전반			
학생의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 지원받고 있다는 느낌	2	3	
(2) 학습장애에 대한 대학의 지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름	3	3	
진단의 기회 제공 등, 질환 자체에 대한 대학의 관심	3	4	
'스케줄 짜기'의 가이드라인	1	1	
현존하는 지원의 형식적 부담	1	1	

〈표 2〉 근거이론 기반 개념과 범주 도출 결과

2.4.1. 중심현상과 인과 조건

연구의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타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파악되었던 중심현상인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재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됐다는 점이다. Strauss와 Corbin의 정의에 따르면, 중심현상이란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행하고 있는 상호작용에 의해 다루어지는 중심적인 사건을 의미한다(변기용, 2020). 정선미와 서미아(2019)는 ADHD 대학생들이 마주한 중심현상을 ADHD로 인해 남과 다르다는 감각을 느끼면서 경험한 차별로 정의하였고, 이를 '미운오리새끼의 시련'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파악한 ADHD를 비롯해 '학습장애'적 증상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의 어려움은 '시련'이라는 사건 혹은 결과 중심적인 어휘로 정의될 수 없었다. 이들의 어려움은 '어

떻게든 해내야 하는’, 과점상의 어려움에 해당했다. 이러한 어려움은 ‘미운 오리새끼의 시련’을 겪기까지의 과정에서도 포착될 수 있으나, ‘시련’이 없는 과정에서도 포착되었다. 즉,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특정한 성취의 실패나 차별이라는 결과와 무관하게 존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근데, 글을 썼을 때 결과 자체는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면 남들은 믿어주지 않죠. 저희는 죽고 싶은 그 고통을... (중략) 그리고 학점 자체가 완전 쓰레기 같지는 않았어요. 좋지도 않지만 평범한데, 그 정도를 달성하는 데 너무 힘이 드는 게 문제였는데,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참여자 가연)

(위경련은) 고등학교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시험 기간에만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 생활 때는 시험 기간 아닐 때도 일어나는 거죠. 시험 기간이 아닐 때도 계속 내가 뭔가 관리를 해야 하나까. 근데 거기서 자꾸 미끄러지고, 네. 그런 데서 자책감이 좀 생겨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는데, (중략)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게 어려울까.

(참여자 만두)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데 있어 결과보다는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 과정에 대한 부담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학습이라는 과정이 주는 우울, 불안, 좌절, 압박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이를 통해 이들이 경험하는 학습 과정은 또 다른 심리적 어려움을 파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참여자는 공통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이 실제 일상생활과 학업의 수행 과정에 영향을 끼치며 실제 성취 결과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언급했고, 이러한 현상은 과점상의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요인으로 다시 작용하기도 했다. 즉, 이들이 겪고 있는 중심현상은 중심현상 내부에서 튀어나오는 어려움이 다시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소용돌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어려움의 핵심은 중심현상의 발현, 혹은 전개를 촉발한 조건들이다. 이러한 조건은 Strauss와 Corbin에 의해 ‘인과 조건’으로 명명되었고(변기용, 2020), 본고 역시 해당 표현을 채택하였다. 이때 주목할 만한 점은 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중심현상의 인과 조건이 ‘질병’ 자체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마치 전공 하나만 듣는 것처럼 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할 때도 우선순위를 못 매겼어요. 예를 들면,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되는 숙제가 테스트가 100장이고 내일 해야 되는 게 텍스트가 세 장이라고 하면은 당장 내일 해야 하는 걸 고르는 식으로 뭔가 순서를 자기만의 순서를 정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패닉에 빠져서 그냥 울고 보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다. 내가 손 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울고 갑자기 100장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압도감 때문에 순서가

안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그게 힘들죠.

(참여자 파도)

전공 수업을 들을 때, 되게 **꼼꼼함을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계속 실수를 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랑 저의 예상으로는 그때 되게 질환이 심했는데 치료를 받지 않는 상태였고, 이제 입시 끝나고 굉장히 번아웃이 심한 상태여서 정보를 입력하기 되게 어려워했던 거죠. 특히 꼼꼼함을 요구하는 것이나 좀 **오랜 시간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면 더 좋은 그런 개념들.** 한 번에 직관적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것들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 학교도 받고 심지어는 학교에 나가기도 좀 어려워했어요.

(참여자 만두)

이들은 학습이라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설명할 때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량들을 함께 이야기했다. 특히 집중력의 부족이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가 힘든 점, 그리고 자신을 조절하기 힘든 증상을 이야기하면서도 증상 자체나 실제의 성취보다는 요구되는 역량과 과정상의 ‘괴리’를 자신이 겪은 어려움의 중심에 두었다.

이들이 요구받다고 느꼈던 역량은 다섯 가지의 범주, 이중 시간 관리 역량에 관한 범주를 구체화했을 경우 7개의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먼저, 그중에는 전공학습 역량이 있었다. 참여자들은 중등교육과정과 대학 교육의 가장 큰 차이로 전공의 선택과 교과목의 선택 등에 있어 ‘선택권이 주어지는/넓어지는’ 점을 꼽았다. 이는 관심이 없는 분야를 학습할 때 ‘머리가 거부하는 느낌’을 받던 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이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한 학습의 성과를 필연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인 만큼 이들에게 또 다른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과정상의 어려움을 핵심적인 어려움으로 호소하던 참여자들은 평가의 결과물로 인해 자신의 어려움이 부정되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호소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정보탐색 역량이었다. 참여자들은 대학 수업의 특징으로 한 학기 전체의 흐름을 이어가고, 많은 자료와 정보의 내용을 스스로 체계화하길 요구받는 대학 수업의 특성이 ‘카테고라이징’을 어렵게 하는 ADHD의 증상과 상충하여 어려움을 불러일으켰다고 언급했다. 한편, 참여자들은 머릿속으로 개념을 범주화하지 못하는 증상이 ADHD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양극성장애 등의 우울 삽화 기간에 더욱 심해졌던 경험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는 시간 관리 역량이다. 이 역량은 학습과 코로나19 시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학습, 그리고 학습 외의 일상생활에 대한 범주로 세분화되기도 하였으나, 참여자들은 세 범주 모두에서 주어진 기간에 맞춰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계획을 구성하는 단계와 이를 실행하는 단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중 전자는 정보탐색 역량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던 ‘체계화’의 요구와 연결되며, 후자는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결과상

의 어려움보다도 과정상의 어려움으로 표현되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네 번째는 다중수행역량이었다. 참여자들은 여러 과목을 수강함과 동시에 일상생활과 대외활동, 노동을 학업과 병행해야 하는 일상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여러 과목을 수강’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은 각 과목에서 요구하는 과업이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만큼 스스로 그것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비롯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참여자들은 학업 외의 활동들을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수행하면 되는 일정으로 고정해둠으로써 자신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다양한 성취를 요구받는 상황에 대한 압박감 역시 호소하였다.

마지막은 관계유지 역량이었다. 이는 입학 초를 제외한다면, 대학에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동아리나 학회, 그리고 ‘과 생활’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이에 참여자들은 ‘충동성’을 제어하는 것이나 비언어적 표현을 파악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음에도 대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때로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요구하는 주위의 시선으로부터 재차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역량들을 대학의 제도, 수업방식, 교수들의 태도 혹은 요구 등에서 인지하였고, 요구받는 수준에 비해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은 중심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중심현상이 과정으로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과 조건 또한 성취보다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결과적인 성취가 좋았든, 나빴든 간에 요구되는 역량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까먹는” 듯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역량이 결과물로서 평가받는다는 것은 이들에게 또다른 ‘압박’이었다.

2.4.2. 맥락 조건과 중재 조건

맥락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쳐 중심 현상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조건들이다. 본고에서 발견한 맥락 조건은 자신에 대한 인식, 전공 특성 및 만족도, 과거의 경험, 대인 관계였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잘 까먹어’. 그리고 ‘왜 이렇게 손이 여물지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긴 했었는데, 이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나는 되게 느리고, 꼼꼼하지 못하고 손도 여물지 못하고, 뭔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왜 그럴까, 이러면서 좀 자책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만두)

저 혼자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혼자서 괜히, 이게 ‘장애’라고 판정되니까

그러니까 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괜히 문제 일으킬까 봐, 내가 피해가 될까 봐. 그런 게 되게 안 좋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계속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참여자 승오)

참여자들은 다소 상이한 ‘자신에 대한 인식’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받는 역량에 못 미치는 나’에 대한 불안 혹은 자책감을 언급했다. 동시에, 과반수의 참여자는 그 ‘불안’의 근거로 의학적 ‘장애’ 판정으로 인한 부정적 자기 인식을 언급했으며, ‘자책’의 근거로는 자신의 성과에 대한 외부의 기대에서 비롯한 주변의 평가를 들었다.

소속감을 잃었다는 생각이 너무 컸어요. 일단 전공 과목을 안 듣는 때기도 했고. 내가 여기 왜 있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전공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 ‘계속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학문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소중한요.

(참여자 파도)

한편, 참여자들 간 차이가 컸던 분야는 전공 특성과 만족도라는 조건이었다. 참여자들은 공통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만큼은 학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든다고 언급했다. 이는 전공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해당 전공에 만족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저는 도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교수님이 좀 딱딱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어쨌든 수업을 들어야 돼서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실시간 온라인 수업 때 시험을 못 봤거든요. 일정 관리로 인해서 약간 맨붕(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서) 약간 공황 상태가 되었고 아예 수업을 못 들어갔는데, 그때 시험 끝나고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때 교수님 ‘잠깐 남아라’ 하더니 ‘왜 수업 못 하나’ 물어셔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점수는 좀 깎을 텐데, 재시험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이야기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딱딱한 분이니까 안 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에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교수님이 밀져야 본전이니까 이런 거 꼭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주셔서.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참여자 만두)

제가 회의 날짜에 자꾸 회의 날짜를 시간을 착각한다든지, 회의 시간까지 약속한 만큼 작업을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자꾸 생기니까 팀원들이 불평을 하긴 그렇지 않은 간에 저는 되게 막 ‘내가 또 민폐를 끼치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참여자 조이)

어려움을 마주했던 과거의 피드백 경험 또한 현재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은 참여자가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은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의 어떤 그런 위로 덕분에 미래 일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칭얼거리면 이렇게 어깨라도 한 번 토닥여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되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되고 너무 고맙죠.

(참여자 만두)

고등학생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한테도 몇 년간 제가 아픈 거와 상관없이 상대방한테 되게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 친구들도 쌓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제가 과거에 아팠던 것도 아팠던 거지만 아무도 모르니까. 그게 되게 나중에는 약간 공격의 발미가 되기도 하고, 대학에서는 이제 치료도 시작했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갈등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를 좀 터득했어요. 물론 지금도 실수 되게 많이 하지만, 전에는 그 친구들이 저를 놀려도 저도 제가 아픈 걸 모르니까 ‘나는 진짜 이상한가 봐’,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아픈 걸 알고고 그러면 그런 관계는 좀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여름)

참여자들이 대학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역량 또한 요구받는다고 느낀다는 점에서, 실제 이들의 대인관계는 중심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참여자들이 대인관계를 대하는 방식이나 대인관계에서 겪었던 사건들은 어려움을 배가시키기도, 절감시키기도 했다.

맥락 조건이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친 조건이었다면, 증재 조건은 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다(변기용, 2020). 연구에서 파악된 증재 조건은 대학에서의 학생지원 환경과 ADHD에 대한 주변 시선이었다.

근데, 딱 봐도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해줄 것 같다는 약간 그런, 약간 무기력이 있는 게, 뭔가 학교라도 받은 기록이라도 있으면 있어줄까 싶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참여자 가연)

(상담에서) 어떤 인지적인 지지를 받거나, 정서적인 지지를 받거나, 행동 치료에 대한 조언을 받거나 그런 건 전혀 기대를 할 수가 없었고요. (상담 선생님이) 약간 감수성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저라도 안 하면 제가 저를 챙기는 느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포기하게 될까 봐 억지로 나왔어요.

(참여자 파도)

이들은 대학에서 ‘지원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지원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자 하는 것이 자신이 어려움을 대하는 하나의 전략이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는 대학에서의 학생지원 환경이라는 조건이 중심현상을 다루는 데도 작용함을 보여준다. 이들이 지각한 학생지원 ‘환경’은 구체적인 지원 방향뿐 아니라 학생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분위기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진단을 받고) 조금 홀가분했어요. 내가,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아픈 거구나. 근데 이걸 한 달을 못 갔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가니까 어디에 가서 설명을 해도 ‘네가 무슨 ADHD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중략) 사람들이 ‘네가 무슨 ADHD야’ 그런 식으로 ‘나도 그런 거 있는데?’ (하는 거예요)

(참여자 여름)

한편, ADHD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요구받는 역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안과 함께 작용했다. 자신을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으로 볼 것 같다는 감각은 직접적인 차별 경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참여자에게 공통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 ‘여름’은 자신의 어려움을 주변과 학교에 알리려는 과정에서 이러한 감각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또 그는 ADHD에 대한 극복과 성취의 서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유명인의 사례를 들어 ‘ADHD도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주었다고 말했다.

ADHD를 인터넷에 검색하잖아요? 그럼 ADHD를 극복한 유명한 스타라며 마이클 펠프스가 나와요. 스티븐 잡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의심되는 사람으로 빌게이츠, 그리고 부자 누구죠, 패리스 힐튼. 반고호도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저는 근데 저한테는 위로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실리콘 벨리에 입성하지 않는 이상 제가 ADHD가 있다고 스티븐 잡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략) 이것 봐. ADHD를 잘 이용하면 저렇게 마이클 펠프스처럼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저는 되게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처럼 느껴져요. ADHD 환자의 인생은 모 아니면 도,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약간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그리고 그 서사까지 자본이 되는. 근데 그걸 제가 성공해야만 가능한 일이지.

(참여자 여름)

학생들은 학습의 과정에서 ‘어떻게든’ 해나가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학교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다는 감각과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은 감각을 동시에 느꼈다. 때로는 성공해야만 할 것 같은 감각도 함께였고, 상담을 다녀도 자신의 질환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존재하기도 했다. 이런 조건들은 참여자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의 상호작용 전략으로 귀결된다.

2.4.3. 전략, 그리고 결과를 넘어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전략에서의 자주 나타난 키워드는 ‘오롯이 나의 몫’이다. 세부적인 전략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참여자들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작용조차 본인의 몫으로 두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글 쓰는 것도, 보통 사람들은 구조를 짰대요.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쓸지 생각하고 글을 쓴다는데, 저는 그냥 써요. 그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쓰면서... 과제도 구조를 못 잡아서 그냥 냅다 쓰고 거기서 맞추고,,

(참여자 여름)

대부분의 참여자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했다. 이들은 “그냥”이라는 말을 자신의 학습 과정에 붙여 표현하였으며, 어떻게든 해나가는 어려움 자체를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뭔가 플래너를 써보려고도 했었고, 회의를 하면서 어디까지 얼마큼 해오기, 자기 역할 같은 거 메모도 하고 그랬었는데. 플래너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어서 썼다가 안 썼다가 하고, 그거를 제대로 뭔가 지키는 것도 되게 어렵고, 해야 할 부분을 막 모르는 경우는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 제대로 해결이 되지는 않았죠. 메모를 해서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파악을 했어도 그걸 또 미루다가 못하기도 하고, 뭔가 시도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제대로 효과를 봤다’, 이렇게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조이)

수업 진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간 적도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고 있으면 집중이 될까 봐. 그 정도로 되게 성적을 잘 받고 싶어서, 성적을 유지해야 장학금이 나오니까. 그렇게 오만 가지 시도를 다 해봤어요. 녹음하는 건 기본이고, 타이핑은 기본이고, 예습은 기본이고 뭔가를 정말 많이 시도를 했어요, 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근데, 글썩요. 딱히 성공했던 느낌은 없어요. (중략) 한심했어요. 제가 한심하다는 느낌이 제일 많았어요. 이렇게까지 해도 못 하네.

(참여자 파도)

본인이 자신감을 갖는 게 우선이겠죠. 우선인 것 같아요. ‘내가 문제가 없구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알아. 아 알아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갖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구나’ 라고. 스스로 ‘괜찮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참여자 승오)

이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려 노력하기도 했다. 이 극복하려 하기의 방법은 물리적 차원의 노력과 정신적 차원의 노력으로 나뉘볼 수 있다. 몇몇은 ‘플래너를 사용하기’,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기’ 등 구체적인 노력을 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방법들이 실제로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회의하고 있었다.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체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던 참여자 승오는 자신이 겪는 문제를 ‘자기인식의 문제로 치환’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가 활용한 전략은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며, 이 과정은 받아들이기 전략에서와 같이 어떻게든 ‘해보는’ 시도의 과정을 필요로 했다.

일단은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는 계속 학교 상담실을 활용했는데 썩 좋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되게 다정하신 분이었는데, 일단 한 명의 상담사가 관리하는 학생의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한 번 신청을 하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세 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내몰려 있어요. 이게 ‘상담센터가 잘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라고 하기엔, 글썄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바라는데?’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참여자 파도)

이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오롯이 나의 몫으로 돌리고 있었으나 그 원인이 사회에 있다는 점을 강력히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ADHD 혹은 유관 증상을 자신의 아픔만으로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타인의 아픔과 자신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정신질환의 진단 및 상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 그 예시라 할 수 있다. 같은 증상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주변인과 학습 혹은 활동을 함께 수행해 자신에 대한 통제감을 서로 보조하며 어려움에 대응하고자 한 참여자도 있었다.

위와 같은 상호작용 전략의 결과는 대개 긍정적, 부정적 결과로 요약된다. 다만 본고는 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증심현상이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음을 고려하여 특정 상황에서 취한 전략의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다만 각 상호작용 전략에서 참여자들에게 가해진 부담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다른 사람들은 레포트를 쓸 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울고 시작하거든요. 눈물을 한바탕 쏟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 때, 극단적으로 미룬 상태에서 한번 울고 시작을 해요. 한 번 울고 자책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시작하는데, (중략) 이거는 극한의 압박에서, 타임어택에서 오는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손을 놀리는 거지.

(참여자 파도)

참여자들은 각 전략을 통한 결과가 좋을 수도, 나쁜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어려움을 재차 느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로 경험한 감정은 억울함과 안타까움이었다.

2.5. 요약 및 논의

심층면접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증심현상의 인과 조건은 이들의 ‘질병’ 자체만이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표현하는 데 있어 질병이나 질환의 증상보다도 그 증상을 지닌 채 대학생이라면 ‘당연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역량을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주는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러한 어려움은 성취의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었고, 참여자들은 ‘요구되는 역량과의 괴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본고는 이런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증상이나 삽화 등의, ‘아픔’을 중심에 두는 기존의 연구 모델만으로는 규명할 수 없는 ‘과정상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순환에 집중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조건에는 요구받는 역량에 못 미치는 자신과 그에 대한 주변의 평판에 대한 부정적 자기 인식이나 전공의 특성과 전공의 만족도, 표출되는 어려움에 대한 과거의 피드백이나 대인관계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맥락 조건은 참여자들의 어려움을 강화하기도, 희석하기도 하였다.

한편, 어려움에 대한 참여자들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 조건으로는 ADHD를 비롯한, 질환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존재했다. 또 대학에서의 학생지원 환경은 직접적 지원보다도 ‘지원받고 있으며, 지원받을 수 있다는 느낌’에 의해 지각되었으며, 참여자들은 모두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때, ‘지원받고 있으며, 지원받을 수 있다는 느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단순히 대학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넘어 이들이 대학이 요구하는 역량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남기며, 대학이 그러한 맥락에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사실상의 주체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지점은 국가뿐만 아니라 대학이 주체적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고 제가 반드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치료를 굳이 안 해도 괜찮죠. 제 일상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가 제 삶을 꾸릴 돈을 벌어서 꾸려야 되고, 제가 취직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ADHD 치료의 어떤 면에는 굉장히 자본주의의 기능적인 부분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에서의 학습이 그거에 전조처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취직의 전조처럼. 저희 학과 수업에서도 되게 취직을 되게 강조하시는 교수님들이 되게 아 실제 사회생활에서는 이렇게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대학이라는 공

간은 학습 공간인데, 학습의 속도랑 학습의 질은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 되게 속도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여름)

돈, 금전적인 거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이런저런 지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학습 관련해서는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다', '학교는 이걸 이해를 잘 대로 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좀 깔려 있긴 해요. 00대라 그런 것도 좀 큰 것 같고.

하여튼 그 수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서 되게 중간 기말 그런 때마다 고민을 했어요. 학습 장애 관련해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적어둔 것 같은데, 이걸 해볼까 했는데 결국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도 주위에서 그걸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나도 해본 적 없고. 솔직히 학습 장애라고 하면 진짜 경계선지능, 이런 거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사실 00대에 오기는 쉽지 않죠. 근데 주위에 00대 다니는 ADHD도 꽤 있잖아요. 근데 ADHD를 사람들이 그렇게 진지한 질병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우리 주위에는 그래도 좀 있지만, 그래도 너 ADHD냐?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약간 어려워지는 게 있죠. 아직도 뭔가 학습 장애 지원을 요청하면 어떤 것들을 해주는지 아직 잘 몰라요.

(참여자 가연)

위의 인용에서 볼 수 있듯, 참여자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대학이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어려움을 야기하는 대학이 자신의 어려움에 지원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대학이 학생의 생애와 서사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지원받고 있다는 느낌' 전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이 존재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지원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은 대학이 자본주의 사회를 운영하는 '생산성의 논리'를 충실히 좇고 있다는 인식으로도 이어졌다. 이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아픈 몸'을 '건강한 몸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생산성만을 추구하는 사회' 속의 다른 '아픈 몸'들과 연결해 사고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지점이 질병권에 대한 담론이나, 생산성을 넘어서는 가치 추구하고 같은 더욱 거시적인 담론과 맞닿는 지점이다.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하자면 '포괄적 학습 장애'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포괄적 학습 장애'란 곧 '개념을 체계화하거나 수업 및 업무에 집중하는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대학에서 요구되는 다섯 가지 역량과의 괴리를 느끼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이들의 의학적 진단명은 ADHD와 우울증, 조울증, 만성질환 등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들의 어려움이 단순한 증상뿐 아니라, 증상을 지니고도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사실은 '포괄적 학습 장애' 환자들의 권리를 논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학습 장애'의 '회복'이 아닌, 포괄적 학습 장애를 지니고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논해야 하며, 이는 건강권을 넘은, 질병권 담론에의 고찰을 요구로 한다. 주로 노동의 영역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성의 리듬에서 벗어난 시간에 대해,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만성질환자의 ‘잘 아플 권리’를 논하는 질병권 담론은 학생들이 ‘요구되는 역량’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하던 ‘시간’적 여유와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히 논한다.

3. 본론2: 문헌 기반 연구

3.1. ‘누가 ‘장애인’인가?': ‘포괄적 학습 장애’ 관련 법령 및 지원 현황 검토

본 절에서는 앞서 정의한 ‘포괄적 학습 장애’에 포괄될 수 있는 ADHD,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학습 장애’, 경증 우울증, 만성 질환 등 기타 구체적인 학습지원을 필요로 하는 질병 및 장애와 관련된 법령을 검토하였다. 먼저 장애인을 위한 복지 및 지원의 기본이 되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포괄적 학습 장애’를 법률상 ‘장애’로 포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기 보다는, 법령에서 규정된 복지의 이념과 그에 따른 구체적 조치의 방향성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등에서 학습지원과 관련된 조문을 검토하였다. 이때 법령에 따라 설치된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 문헌들도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학습지원이 어떠한 이념 아래 시행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 방향성은 어떠한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3.1.1. 법령을 통해 본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방향성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여타 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복지조치나 복지 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공공복지의 이념과 실재를 모두 담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뜻하며, 해당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으로 두고, 이에 따라 구체적 사업과 “장애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 해당 법의 목적이다.

장애인복지법은 국민의 기초적인 기본권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리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실제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여러 법 또한 해당 법과 그 이념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은 법령상 규정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위한 복지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포괄적 학습 장애’ 중에서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로 분류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양극성 정동장애나 만성질환 중 장기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때 과연 그 장애가 ‘지속적’인지, 장애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는지가 그 분류 기준으로서 고려된다. 해당 분류 기준은 동법 제32조에 의거해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장애 진단 의료기관을 거쳐 판정되며,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이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법이다.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상 정의와 유사하게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이다. 해당 법의 입법 당시, 정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관계로 보았고, ‘장애인’ 판단의 용이성을 위해 이와 같은 정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하고자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정영선, 2011; 조임영, 2016에서 재인용).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념상 그 대상이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도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행령 등으로 장애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조임영, 2016).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차별 행위와 시정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 제2절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금지되는 차별 행위와 교육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3조 제3항에서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되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요구를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때 정당한 편의제공이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학습참여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보조 도구와 공간 확보,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제14조 제2항에서는 교육기관에 장애학생 지원부서 혹은 관련 업무 담당자를 두어야 함을 규정해두기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기반하여 분야별로 금지되는 행위와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는 의의가 존재한다. 다만, 본고에서 규정한 ‘포괄적 학습 장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장기간’,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장애임을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규정은 그 성격상 장애인복지법의 규정보다 포괄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제14조 제1항은 ‘포괄적 학습

장애'에 대한 교육기관이 학습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는 법령으로서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법을 통해 본 국내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이 '장애'를 이유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입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행위의 특징에 따라 두 법의 세부적인 목표와 '장애인' 규정에는 차이가 있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복지를 규정해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특정한 급부를 제공하여야 하는 목표상 '장애인'의 범주를 제한했으며,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또한 '장애인'의 범주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금지법과 달리 특정 급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라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국내에서 급부를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은 명확히 제한하고, 급부의 제공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영역 밖의 장애는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 대상으로 두는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법령상 '장애'는 일정한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두 법령상 '장애'의 정의에서는 '중대한', '상당한', '장기간' 등의 수식어가 있다. 이러한 수식어는 특정 장애가 법령상 '장애'로 인정될 수 있는 경계이자, 조건 바깥의 장애를 법령이 보호하는 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킬 위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본고에서 규정한 '포괄적 학습장애'는 이 불분명한 경계이자 위험에 놓여 있으며, 이들을 위한 복지는 단순히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라 '아픔과 함께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낼' 권리, 즉 질병권의 틀에서 가능할 것이다.

3.1.2. 법령을 통해 본 학습지원의 방향성

특수교육법은 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 및 학습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난독증 등이 포함된다. 앞선 법령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으나,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난독증 등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 범주 바깥의 장애 또한 포괄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본고에서 규정한 '포괄적 학습장애'가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으로 포괄되는지는 모호하다.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고 있는 ADHD는 법령상 지원대상으로는 포괄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제정한 "경기도 난독증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에서는 특수교육법상 지원대상인 "난독증 등"을 '난독증, ADHD, 우울 등에 의한 학습장애 증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국립특수교

육원, 2019). 이는 ADHD가 특수교육법상 지원대상의 경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학습에 어려움을 주는 아픔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존재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편 특수교육법상 지원 대상인 ‘학습 장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법상 ‘학습 장애’를 겪는 자는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 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규정한 ‘포괄적 학습 장애’가 특수교육법상 ‘학습 장애’를 포괄할 수는 있겠으나, 특수교육법상 인정되는 ‘학습 장애’는 학업의 성취도로 판정되는 경향이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9). 이는 학습 과정에서 느끼는 학습기능상 어려움과 ‘낮은 성취도’를 연결하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성취도와 무관하게 보다 학습자가 학습기능상 문제로 인해 느끼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한 규정인 ‘포괄적 학습 장애’는 특수교육법상 ‘학습 장애’로 포괄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앞선 기준은 초중등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다.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고등교육 분야의 학생지원은 초중등교육에서의 기준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특수교육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대학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 ‘장애학생’의 정의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대학마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따른 입학생,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학생 등으로 자체적으로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있다. 제31조에 따르면 대학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기기 지원, 교육보조인력 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중 학습지원에 관련된 것은 기기 지원, 교육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규정이다.

정리하자면, 법령에 규정된 학습지원은 고등교육에서보다 초중등교육에서 포괄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초중등교육에서 제공하는 학습지원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보다 더 넓은 범주의 장애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 또한 본고에서 규정한 ‘포괄적 학습 장애’를 완전히 포괄하지는 못했다. 그마저도 고등교육에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범위로 한정되었고, 구체적 지원을 위한 사항들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3.1.3. 국내 대학의 학생지원 현황

앞서 검토한 법령상,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은 대학의 의무이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대부분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대학별로 특정 장애에 대한 지원 여부와 방법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대학별로 상이한 장애학생지원 현황, 특히 본고에서 ‘포괄적 학습 장애’로 규정한 질병과 장애에 대한 지원 현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절에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3년마다 진행되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39개 캠퍼스, 29개교의 장애학생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29개교는 모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기관은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편의 지원 사항인 기기 지원, 교육보조인력(도우미) 지원 등 학습지원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지정좌석제(21개교), 대체평가 제공 및 시험지원(23개교), 성적관리를 위한 센터내부인력을 통한 상담(17개교), 별도 장학금제도(20개교), 교수들에게 개별 공문 발송(22개교)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6개교에서는 장애학생이 수강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추어 수강신청을 했을 경우, 신청한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을 산출하는 학점등록제를 운영하고 있기도 했다. 서울 소재 학교 1개교에서는 졸업시험을 면제 혹은 대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또다른 서울 소재 학교에서는 출석인정시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을 거친 학생에게만 제공되는 경향이 강했다. 7개교를 제외한 22개교는 모두 장애인등록을 거친 학생에게만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고, 나머지 7개교 중 6개교는 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입학한 자 또한 장애학생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6개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입학한 자는 장애인등록을 거쳤는지 여부와 크게 관련 없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 소재 학교 1개교에서만 장애인등록을 거친 학생, 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등록증 미소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고등교육에서의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이 초중등교육에서보다 좁은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고에서 규정한 ‘포괄적 학습 장애’, 즉 ADHD, 만성질환, 경증 우울증 등 법령상 ‘중대’하거나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못하는 질환 및 장애에 대한 지원은 최우수 대학에서조차 전혀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

3.2. ‘나는 아픈데도...’: 권리의 관점에서의 고찰

앞서 살펴본 장애인복지법은 본고에서 제시한 ‘포괄적 학습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분명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에 입각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포괄적 학습 장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과 정책의 기초에서 살피지 못하는 권리의 측면을 파악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현행 정책이 근간을 두고 있는 권리의 개념이 변천하는 과정을 살폈고, 그 과정에 포함된 ‘장애’의 정의를 제시했다. 결론적으로는 ‘질병권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2.1. 국내 장애인 정책의 기초와 장애인 인권 담론

먼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정책의 기초를 돌아보자.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1998년부터 각 정부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해왔고,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담론이 발전해옴에 따라 종합계획의 기초는 다음과 같이 변화해왔다.

- 제1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보장
- 제2차 :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통합적 사회실현
- 제3차 :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실현
- 제4차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
- 제5차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위의 비전 중 제1차부터 제4차까지의 기초에서 언급되는 ‘통합’과 ‘평등’, ‘더불어’ 등의 표현들은 종합계획이 근간을 두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장 제1조)”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시기 장애인 정책은 ‘평등’의 이념하에 수립되었으며, 이때의 평등은 장애인들이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5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이 눈에 띈다. 본고에서는 더 최근의 논의를 반영하기 위해 제4차 종합계획과 제5차 종합계획 사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4차 종합계획의 장애인 교육/문화 정책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내는 것보다 기존의 정책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제4차 종합계획은 기존 장애인정책의 한 계로 “장애성인의 개인별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부족”을 지적했고, 이전의 종합계획에서도 꾸준히 제기된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 역시 언급했다(보건복지부, 2013). 이 시기 장애인의 고등교육 지원 강화와 장애성인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의 확대에 그쳤다. 한편, 제5차 종합계획은 탈시설에 대한 담론에 초점을 맞추며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자립생활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고, 이에 장애인 교육/문화 정책 부문에서도 “교육·복지·고용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또 제5차 종합계획에서는 장애등급제의 부분적 폐지가 도입되었고, 탈시설과 ‘커뮤니티 케어’ 등에 대한 시도가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서비스 대상자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꾸준한 비판(보건복지부, 2013)을 어느 정도 수용

한 결과로 파악된다. 정신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관점 변화 역시 제5차 종합계획의 특징이다. 제5차 종합계획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을 전제로 시설에서의 폭력을 방지하는 데 주안을 뒀던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했고,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의 목표를 ‘사회복귀’에서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 전환했다(보건복지부, 2018).

두 회차의 종합계획 모두 중등교육과정상 특수교육 대상자와 교사 등을 확대하고자 했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5년 사이 기초의 변화이다. 제4차 종합계획의 기초에서 눈에 띄는 ‘더불어’라는 표현은 장애인의 ‘통합’이라는 목표를 암시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 범주와 프로그램의 ‘확대’라는 구체적 정책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제5차 종합계획에서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때에 사용된 용어는 ‘포용’이다. 이러한 기초는 복지 측면뿐 아니라 교육, 고용과의 협업을 통한 시스템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불러왔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 내 장애 학생지원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물질적 지원에 머물며 학습장애를 지닌 이들을 포괄하지 못했고, 평생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노동시장에의 포괄로 설정되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가 노동에의 준비과정으로 취급되는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문제는 곧 교육매체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권 문제로 환원되기 쉬우며, 이 과정에서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습장애를 지닌 대학생들의 문제가 배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모두 넘어, 현 장애인 복지 체계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지점은 실제의 ‘아픔’과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정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한다. 사회적 층위에서의 장애 개념은 의학적 차원의 장애 개념 이상의 의미를 함축한다. UN은 「세계 장애인의 해 행동 계획」에서 장애를 규정하며 여러 종류의 ‘아픔’을 크게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가 있다. 개인의 신체적 특질인 ‘손상’과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제한인 ‘능력장애’, 그리고 그 사회적 결과인 ‘사회적 불리’⁵⁾가 바로 그것이다(염동문, 김교정, 정현태 외 3인, 2014).

그러나 현재 장애인 등록제는 특정 유형의 의학적 진단서상의 ‘00장애’ 개념에 기반해 장애의 여부를 판정한다. 정신장애의 의학적 진단의 경우 환자의 기능 척도를 판단하는 GAF척도가 사용됨으로써 장애의 판정 자체에는 사회적 층위의 장애 개념 역시 어느 정도 포괄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등록제 상의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특수교육법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즉, ‘00장애’로 판정받은 이들 중 추가의 자격을 갖추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정한다(김진용, 강시현, 김수정 외 2인, 2007). 또한, 법령상 정신장애의 등급이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 중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나 ‘능력장애의 상태’는 기능 ‘수행’ 가능 여부에

5) ‘Handicaps’의 번역어인 사회적 불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으로서, 장애가 사회적 차원상의 개념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의해 측정된다는 점은 법적인 장애 개념이 환자들이 경험하는 ‘아픔’의 정도와 괴리하는 계기가 된다. 동시에, ‘기능 수행 가능 여부’로 장애의 정도를 판정하는 것은 복지와 지원의 목적을 기능할 수 있는 상태로의 ‘회복’에 뒤편으로써 ‘건강중심사회’의 문제적 상황을 초래한다.

정리하자면, 국내의 정책 기조는 분명히 장애인 인권에 대한 담론을 적절히 흡수하여 ‘통합’으로부터 ‘포용’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구체적인 법제의 개편이나 정책의 시도로서 구현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기존 법제와 정책 내부이 근간하고 있는 인권의 개념으로도 ‘포괄적 학습 장애’에 대한 지원을 포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포용’의 개념이 담지하고 있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의 이미지이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의 목표는 건강한 사람들의 노동 시장으로의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또한 ‘기능’과 ‘회복’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접근 방식을 질병권의 개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3.2.2. ‘아픈 몸’의 서사, ‘질병권’ 담론으로 본 ‘포괄적 학습 장애’

“만성적으로 아픈 몸,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몸을 의미”하는 ‘아픈 몸’ 개념은 이러한 치료중심 담론에 의의를 제기하는 ‘질병권 담론’의 주된 개념이다(조한진희, 2020). 질병권은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이 회복되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치료담론”에 저항하며 아픈 몸을 살아가고, 살아가게 될 주체가 지니는 현재형의 권리의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성격을 띠는 권리이다(조한진희, 2020).

질병권의 관점에서 ‘장애’의 개념을 바라볼 때 중요한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대표된다. 첫 번째는 장애는 사회적인 개념이라는 점이며, 두 번째는 장애는 단순히 기능상의 결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중 후자는 장애가 곧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살아내야 한다는, 진행형의 상태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장애가 ‘상황’이자 ‘진행형의 상태’인 이상, 장애에 대한 담론은 장애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그 상황에서의 불편함을 경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역으로 확장된다. 이는 곧 논의의 중심을 ‘건강한 몸’에서 ‘아픈 몸’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아픔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건강권이 아닌, 아픔을 지니고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로서의 ‘질병권’을 보장하는 것은 현존하는 ‘아픈 몸’들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며, 그 중요성은 일생에 걸쳐 장애를 경험하는 만성질환의 경우에 더욱 부각된다.

한편, 장애라는 개념이 사회적 층위의 개념이 오독될 경우, ‘아픈 몸’이 사회에의 인정 투쟁을 경험해야만 그것의 장애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의학으로는 병명이 특정되지 않고 이로 인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다시 의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통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조한진희, 2020). 장애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사회가 어떤 것이 장애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가 공인하는 몸들만이 장애로 이해되는 사회는 곧 ‘정상적인 몸’을 규정하고 그 상태로의 회복을, 다시 말해 장애의 ‘극복’을 과제로 삼는 기존의 ‘치료담론’의 결과물이며, 그것이 필연적으로 귀결하는 문제상황이다.

정신질환은 이러한 문제상황에 더욱 취약하다. 가시적인 신체의 결손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질환은 쉽게 기능상의 문제로, 즉,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는, 생산성의 결손 상태로 치부되고는 한다. 이에 특정한 기능을 어떻게든 수행할 수만 있다면 그 과정상의 어려움은 경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본고의 참여자들 역시 심층 면접 결과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바가 있다.

진정으로 ‘아픈 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담론의 중심에 ‘아픈 몸’을 위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픈 몸’의 경험이 행정상의 편리를 위해 규정된 장애의 세부적 항목들보다 우선시될 필요가 있으며, ‘아픈 몸’은 ‘열린 개념’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3. 논의

앞서 ‘포괄적 학습 장애’ 관련 법령과 대학의 지원 현황을 검토한 결과, 국가의 정책과 실제 대학의 지원 체제 내부 모두에서 ‘장애인 등록’은 법령이 말하는 ‘장애인’과 대학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었다. 이는 지원의 대상이 되기까지의 ‘문턱’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특히 본고에서 제시한 포괄적 학습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앞선 심층 면접 결과와 겹쳐 봤을 때, 대학은 아픈 몸들의 어려움을 키우기도 하고, 이들이 어려움을 다루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결국 그들이 대학이 제시하는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대학이 이들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음으로 살펴본 장애인 정책의 기초와 그것이 안고 있는 장애인 인권 담론에서는 분명히 이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특히 종합계획의 기초에서 포착된 ‘통합’에서 ‘포용’으로의 변화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새로운 기획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포용’의 개념 또한 권리의 종착지를 노동시장에의 편입으로 구체화시킨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는 존재했다. 결국 ‘포용’을 중심에 두면 ‘포괄적 학습 장애’를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 질병권으로의 전환이다. ‘아픈 몸’을 중심에 두는 질병권은 ‘통합’이나 ‘포용’이라는 목표를 ‘아픈 그대로 잘 사는 삶의 보장’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앞서 살펴본 심층 면접의 결과와 결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질병권의 개

넘은 아픈 몸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긍정적 방향을 제시해준다.

기존의 법제나 정책이 근거하는 권리가 ‘평등’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포괄적 학습 장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되기 어렵다. 하지만 기존의 권리 개념으로 ‘포괄적 학습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어느 범위까지의 아픔을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도는 결코 ‘문턱’을 없앨 수 없다. ‘통합’과 ‘포용’은 결국 ‘문턱’을 상징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턱’을 해체하는 질병권으로의 전환이 ‘포괄적 학습 장애’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4.1. 요약 및 결론

본고는 대학생의 ADHD 경험을 중심으로 ‘포괄적 학습 장애’를 정의하고, 그에 대한 대학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포괄적 학습 장애’라는 생소한 개념을 명명한 것은 학습에 어려움을 주는 몸의 아픔이 특정한 질병이나 장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걸쳐 있기’ 때문이었으며,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전 과정에서 학습을 위한 지원의 경계인 ‘문턱’에 놓인 ADHD를 연구의 핵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포괄적 학습 장애’를 정의하고, 대학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파악해야 했다. 이를 위해 6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수행했고, 기존에 수행됐던 연구의 시각으로는 포착되지 못했던 개념들을 발견하였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미운 오리 새끼의 시련’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 어려움이었으며, 이 어려움은 질병 자체에서 오는 ‘결핍’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자신에게 특정한 역량이 요구된다는 것을 체화하고 있었고 체화된 요구와 학습 과정이 괴리되어 있음을 지속적으로 느꼈다. 이는 성취의 여부와도 크게 관련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요구받는다 고 느낀 역량이 대학이라는 공간 전반에서 느끼는 감각으로서 경험되는 것이었고, 어려움을 다루기 위한 전략에도 이 감각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학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지 못하다’는 감각을 느끼고 있었고 실제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이 이들의 어려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자신의 아픔을 주변의 아픈 몸들의 경험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기도 했다. 이는 개별 아픔을 지원 대상에 하나하나 포함하는 방식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포괄적 학습 장애’를 명명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이에 본고는 ‘포

괄적 학습 장애'를 '대학에서 요구되는 다섯 가지 역량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요구되는 역량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정의하고 대학의 지원 필요성을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장애 및 질병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연구자들이 명명한 '포괄적 학습 장애'는 과연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에도 주목하였다. 관련 법령과 국내 대학의 지원 현황을 폭넓게 검토한 결과, 아픈 몸들에 대한 지원은 일정한 '문턱' 너머에서만 제공되었다. '포괄적 학습 장애'를 경험하는 이들은 당연히도 이 문턱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턱에 포함되지 못하는 아픈 몸들은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대학은 이들의 어려움을 키웠으며, 어려움을 다루는 과정에 무기력함을 남겼다. 대학은 문턱을 넘어온 이들에게만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그것이 아픈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이것으로 대학이 이들을 위해 무언가 행해야만 한다는 것은 확실히 증명된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지원'이 과연 어떤 권리에 근거해 보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권리가 '포괄적 학습 장애'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이를 위해 모든 지원의 기반인 국내 장애인 정책의 기초를 검토했다. 장애인 정책의 기초가 기반하는 권리의 개념은 정적이지 않았다. 그 근본에는 평등권이 있었으나, 궁극적인 지향은 '통합'에서 '포용'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포용' 또한 '문턱'을 상정하기 때문에 '포괄적 학습 장애'를 포용할 수는 없었다.

이에 보고는 '질병권'을 탐색하며 '문턱'을 없애는 시도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픈 몸을 상정하고 논의를 전개할 것을 주장하는 질병권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포괄적 학습 장애'에 대한 지원은 문턱을 정하지 않은 채 가능하다. 즉, 질병권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문턱이 해체될 수 있다.

보고는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대학이 이들에게 제시하는 문턱, 이를 해체해야 할 필요성을 보였으며, 그 해체 방법에 대한 단서로서 질병권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아래 제언에서는 과연 문턱을 해체하는 시도를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간단한 청사진을 그렸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논의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시할 수 있는 지향점에 대한 논의를 모두 제시하였다.

4.2. 제언

'포괄적 학습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의 핵심은 '문턱'을 해체하는 일일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장애인 등록제 중심의 지원대상선정 방식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개별적 어려움에 맞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결코 급진적인 방식이 아니다. 이미 국내 인천 소재 대학교 1개교에서는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었다. 또 영미권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대학의 사례보다 폭넓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 초점을 맞춘 ADHD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영미권에서는 이미 ADHD가 ‘문서화할 수 있는 장애’이기 때문에 명백히 학교 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Susan, 2020). 나아가 커리대학교, 애리조나대학교 등에서는 본고에서 정의한 ‘포괄적 학습 장애’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 ADHD, 학습장애 등을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Ruth Lee, 2021).

특히 영미권 대학 중에는 ADHD나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는 별도의 과정을 개설해두고 있는 대학교도 있었다. 이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 바깥에서 진행되거나, 전공 과정으로서 인정되기도 했다(Ruth Lee, 2021). 상담 또한 질환에 초점을 맞춰 증상을 완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라이프 코칭’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애리조나대학교의 경우 전략적 학습 상담사를 학생에게 매칭해 학생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SALT Center, 2021). 이러한 지원은 심층 면접의 참여자가 언급하기도 했던 ‘스케줄 짜기’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어서 심층 면접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기반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추가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진단과 상담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 질환 자체에 대해 대학이 관심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실제로 진단과 상담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질환 자체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진행하는 노력은 학생들에게 ‘지원받고 있다는 감각’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 또 학생들은 현존하는 지원이 형식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지원의 형식적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은 심층 면접에서 연구자들이 장애 학생지원 최우수 대학 중 소수가 진행하고 있는 학점 등록제의 사례를 소개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수강료에 대한 압박 없이 여건에 따라 학업 부담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질병권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구체적 사례들은 아픔을 겪는 학생들에게 지원받고 있다는 감각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이는 질병권의 시각과 결합하여 살펴볼 때, 건강한 몸이 수행할 수 있는 성취를 역량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픈 몸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층 면접 결과 참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인과 조건이 요구되는 역량과의 괴리감이었음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아픈 몸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에까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을지 면밀히 검토하고 재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미권 대학의 사례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ADHD 또는 학습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영미권 대학의 프로그램이 아카이빙된 자료가 매우 다양했다는 점이다. CHADD(Children and Adults with ADHD)와 같은 자선단체에서는 ADHD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지침이나 대학 추천을 제공하고 있었으며(CHADD, 2021), 『Colleges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or AD/HD』와 같은 서적도 출판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대학의 자체적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학계를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 차원에서도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례를 발굴하고 알릴 때,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별첨 <1> 심층면접 동의 안내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권소원, 소비자학 전공 이정환입니다. 저희는 “질병권 관점에서의 대학 내 ‘포괄적 학습 장애’ 지원 제도 마련의 필요성 연구-ADHD 대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자료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에 앞서 인터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인터뷰 대상: ADHD를 진단받았거나, ADHD 유관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 경험이 있고, 현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 여부, 휴학여부, 대학구분, 학년, 성별은 관계없음 / 기졸업자는 참여 불가능)

- 소요시간: 2시간 내외 인터뷰 1~2회

- 사례비용: 인터뷰 시간당 10,000원 지급 (교통비, 다과비 지출 시 연구자 부담)

- 인터뷰 내용: 저희 연구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나 대학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ADHD, 만성질환, 중증 이하 우울증 등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대학 내 지원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터뷰에서는 대학생분들의 학교생활 경험이나 일상에 대해 여쭙 예정입니다.

- 인터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참여자들은 인터뷰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언어화해볼 수 있고, 원한다면 연구를 경유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고와 후속 연구들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해 어떤 지원이 어떻게 필요할지가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인터뷰의 위험 요소 및 대비 방안:

1) 연구에 실린 인터뷰 내용 및 개인정보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수준일 경우, 개인이 식별됨에 따른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와 직접인용을 개인이 식별 불가능한 수준으로 익명화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익명화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해 언제든지 연구자와 협의가 가능함을 알립니다.

2) 인터뷰 과정에서 개인의 경험을 언어화 할 때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참여자들은 연구자들에게 인터뷰를 중단 또는 휴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자들은 참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터뷰 이후에도 참여자들은 언제든지 인터뷰 내용의 활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연구 윤리 관련 사항:

1) 인터뷰이의 신상은 철저히 비공개되며,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연구에 실릴 예정입니다. (예: ‘소다’(인터뷰이가 선택한 가명), 경기 소재 일반대학교, 3학년)

2) 연구에 인터뷰 내용이 직접 인용될 수 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을 시 직접 인용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3) 직접 인용 및 간접 인용된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뷰이 분들께 내용을 공유하고, 재차 인용에 대한 확인을 구할 예정입니다.

- 연구에 활용되는 개인정보

1) 참가자의 성명, 연령, 성별(지정성별), 재학 중인 대학, 거주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집됩니다. 이중 성명, 연령, 재학 중인 대학, 거주지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익명화됩니다. 연락처, 계좌번호는 인터뷰를 위한 일정 조정 및 사례비 입금 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2) 질환의 진단 시기, 치료 경험, 증상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됩니다. 해당 정보는 연구 외의 목적으로 절대 활용되지 않고, 해당 정보가 연구자 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예정입니다.

3) 이외에도 인터뷰 과정에서 공유되는 경험에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들을 연구에 간접 인용 혹은 직접 인용할 경우, 참여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보관 시기: 연구가 진행되는 3개월간 가공되지 않은 인터뷰 내용과 개인정보가 보관됩니다. 연구 기간 종료 시, 가공되지 않은 인터뷰 내용과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됩니다. 연구에 활용된 인터뷰 내용과 익명화된 개인정보는 연구의 결과로서 기록된 형태로 남아 있게 됨을 알립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박동숙. (2019). 『질적 인터뷰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변기용. (2020). 『근거이론적 방법』. 학지사.
- 염동문, 김교정, 정현태 외 3인. (2014). 『사회복지개론』. 청목출판사.
- 정지음. (2021). 『젊은 ADHD의 슬픔』. 민음사.
- 조한진희. (2019).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동녘.

2. 연구논문

- 국립특수교육원. (2019). 학습장애학생 교육지원방안.
- 권해수, 이성직. (2017). ADHD 성향과 대학 생활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18(2), 297-313.
- 김보혜, 김옥수. (2020). 천식 환자의 질병관리 경험: 근거이론접근.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0(5), 714-726.
- 김진용, 강시현, 김수정, 외 2인. (2007). 정신증 환자의 증상과 기능에 대한 간략형 평가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신경정신의학, 46(5), 492-498.
- 박건우. (2016).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의 진단과 처방 양상: 의료화 관점의 해석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송귀숙, 이수정. (2021). 대학생의 ADHD 성향과 대학적응, 전공만족 및 학습동기의 관련성 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1(3), 311-318.
- 양은경 (2016). 위험에 처한 몸. 언론과 사회, 24(2), 47-88
- 이대식. (2019). 학습 어려움,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 것인가?: 국내 학습장애 교육 발전을 위한 과제와 방향. 학습장애연구, 16, 1-32.
- 이아름, 연석정. (2021). 토픽모델링과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학습장애 연구동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27(1), 507-530.
- 정대영, 김애화, 김의정, 김자경. (2019). 학습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 국립특수교육원.
- 정선미, 서미아. (2019). ADHD 대학생의 삶의 어려움 극복과정. 상담학연구, 20(3), 395-421.
- 정영선. (2011). 장애 차별 및 장애인 권리구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22(1), 131-180.
- 조임영. (20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 '장애'의 정의에 대한 해석론 연구: 비교법적 분석·검토를 통한 논증적 접근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37, 351-418.
- 최진오, 오새내, 조명실. (2020). 컴퓨터 리터러시가 대학생의 학습행동에 미치는 영향- ADHD 성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리터러시연구, 11(6), 79-100.
- Lefler, E. K., Sacchetti, G. M., & Del Carlo, D. I. (2016). ADHD in college: A

qualitative analysis. ADHD 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ity Disorders, 8(2), 79-93.

Weyandt, L. L., & DuPaul, G. (2006). ADHD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10(1), 9-19.

3. 정책 및 법안

보건복지부. (2013).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건복지부. (2018).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인터넷 자료

서인환. (2013). “중증이 아니면 비장애인 되는 정신장애인”. 비마이너.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30826025229605435>

안희재. (2020). “질병권, 현재를 살아내기 위한 권리”.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8>

조한진희. (2021). “아프다 외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시대”.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1081.html

Susan Yellin. (2020). “Yes, You Can Get ADHD Accommodations In College”. ADDITUDE. <https://www.additudemag.com/yes-you-can-get-adhd-accommodations-in-college/>

CHADD, (2021). “Selecting and Applying to Colleges for Students with ADHD”. <https://chadd.org/for-parents/finding-the-right-college/>

Ruth Lee, (2021). “Are there any colleges with good services for kids with ADHD?” <https://childmind.org/article/are-there-any-colleges-with-good-services-for-kids-with-adhd/>

Curry College, (2021), “PROGRAM FOR ADVANCEMENT OF LEARNING (PAL)” <https://www.curry.edu/academics/program-for-advancement-of-learning>

SALT Center, (2021), “How The SALT Center Helps Me”, Arizona University, <https://www.salt.arizona.edu/video/how-salt-center-helps-me>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가은, 이종민, 김은서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가은, 이종민, 김은서*

[목 차]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목적
 4. 연구대상 및 방법
 - 4.1. 연구대상
 - 4.2. 연구 도구
 - 4.3. 자료 수집
 - 4.4. 분석 방법
 5. 연구 결과
 - 5.1.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정
 - 5.2. 노동강도, 직무 스트레스, 삶의 질 수준
 - 5.3. 삶의 질에 대한 회귀분석
 6. 결론 및 의의
 - 6.1. 노동강도, 직무 스트레스, 삶의 질 수준 해석
 - 6.2. 회귀분석 결과 해석
 - 6.3. 의의 및 제언
 7. 한계
- 참고문헌
부록: 연구 설문지

1. 연구 배경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 생활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구성원의 복지향상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된다. 학내 식당 및 카페, 기념품점, 문구점, 편의점 및 복사실 등을 운영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대학 공동체 구성원들의 원활한 학내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강의 방식이 비대면으로

* 이가은(경제학 17) 이종민(지리교육 18) 김은서(자유전공학부 19)

전환됨에 따라 생활협동조합 운영이 어려워졌다. 대표적으로 식당의 경우 2019년에 비해 매출액이 34.2%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적자였다. 생활협동조합 2021 대의원총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생협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급감에 대응해 식당 배식구 수를 조정했고, 운영시간 단축 및 임시 휴점으로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유·무급 휴직을 단행하고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건비 지출을 절감했다. 2021년도 사업계획 또한 매장 통폐합 및 운영시간 조정, 휴점 상태였던 다향만당의 운영 종료를 비롯해 대학과 생협의 관계 재정립, 인력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식당 운영방식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생협 이사회는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나, 인건비 절감 등의 방안은 생협 노동자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9년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지적하며 높은 노동강도 및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도 임금체계 개선, 식대 지급 및 식사 질 개선, 명절휴가비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 연구 필요성

생활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은 전통적인 대학의 사회적 의무인 교육, 연구, 봉사의 3요소(김기석, 2008)를 실현하는 수단 중 하나다. 집단의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목표를 함께 추구한다는 협동조합의 정의(Laidlaw, 2000)에 부합하게 대학생생활협동조합은 교직원, 학생 등 조합원 모두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서울대학교 생협의 경우 서울대학교의 관악캠퍼스 이전에 따라 1975년 소비조합으로 결성되었다. 이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2001년 7월 대학법인과 별도 법인인 생활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법인화 및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인한 국유재산사용료 부담 등으로 생협의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생협의 재정적 어려움은 생협 노동자들의 처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교직원 및 학생 모두 평등한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자치조직으로서의 생협의 기능과 달리 생협 노동자들의 처우는 공동체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 생협의 운영은 학내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후생복지 및 교육 활성화 제고에 기여하기에 서울대와 밀접한 연관을 맺지만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서울대학교가 아닌 생활협동조합 이사회이다. 학생들 또한 조합비를 납부하고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생협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렵기에 서울대학교 내 경제적, 문화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은 부각 되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은 노동권에 관해 제23조 제3항에서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

죽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할 것을, 그리고 제24조에서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또한 제7조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제12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이때 알마-아타 선언에 따르면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은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 건강이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구성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권의 개념은 후기 산업 사회에서 산업재해, 위해환경만이 아닌 고용불안정, 감정노동 등도 건강의 위협요소로 간주한다(김왕배, 김종우, 2012). 또한, 근로관계는 생계를 위해 필수적이기에 노동자의 건강권은 국민의 건강권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노동조건 및 내용, 노동환경의 위해성이 피로 및 스트레스의 축적, 만성 질병 등으로 건강의 잠재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김교숙, 2010). 그리고 이러한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과 관련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을 통해 규명된다. ISO 26000은 모든 종류의 조직에게 해당하는 7 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인권과 노동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ISO 26000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의 보호,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행복의 보장과 근로환경으로 인한 건강침해의 억제 등을 위한 이행사항을 제시하며 조직이 고용자로서 완전하고 안정한 고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신동윤, 2014). 이를 바탕으로 생협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이해한다면 근골격계 질환이나 신체적 통증 이외에도 변형근로 및 고용불안정의 문제도 건강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현재 서울대 생협 노동자들은 일명 ‘뼈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매달 맞아야 할 정도로 고강도의 노동을 감당하고 있다. 생협 노동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당 조리종사자의 경우 뜨거운 불 앞에서 조리기구를 계속 다루야하기에 고온다습한 환경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 생협의 상황은 노동자의 노동권, 그리고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다.

서울대학교 생협은 코로나-19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이전부터 재정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생협 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처우는 지속적인 해결 과제로 여겨져 왔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감정노동 등으로 노동자 건강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노동권 및 건강권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의 삶의 질적 차원으로 확대해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노동권 및 건강권의 측면에서 노동자가 산업재해, 건강장해 및 고용불안 등의 위해요소가 없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의 공동체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생협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은 더욱 중

요한 과제로 인식된다. 이에 본 연구는 생협 노동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노동강도 및 삶의 질을 측정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노동권 및 건강권의 보장, 나아가 노동자를 비롯한 대학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권이 동등하게 보장되는 서울대학교를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 직무 스트레스는 노동환경 및 작업과정이 노동자의 능력, 자원, 기대와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유해 영향을 측정하며, 노동강도는 노동시간 및 작업 내용과 밀도 등 노동자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와 부담을 포착한다. 직무 스트레스와 노동강도는 모두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 건강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직무 스트레스 및 노동강도가 근골격계질환, 우울감, 피로도 등 건강과 맺는 연관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노동강도와 직무 스트레스의 삶의 질과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한 직무 스트레스 및 노동강도의 측정은 생협 노동자들의 처우를 알리고 서울대학교의 노동환경을 재고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대학 내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및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노동환경의 문제가 건강권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노동권에서 나아가 건강권의 측면에서도 생협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생협의 공동체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생협 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대학 공동체의 과제임을 환기하고자 한다.

3.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며, 이를 위한 세부 사항은 목표는 같다.

- 1)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의 노동강도, 직무 스트레스, 삶의 질을 양적으로 측정한다.
- 2)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의 노동강도 및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으로 분석한다.
- 3) 1), 2)에서 도출된 결과의 배경과 원인을 파악한다.

4. 연구대상 및 방법

4.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 모집단은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이며, 2021년 현재 생활협동조합에서 근로하는 노동자가 몇 명인지, 조리, 카페, 판매 등 직무별 인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대부분 근무처의 휴식시간이 짧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모두 같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표본은 임의(편의)표집 하였다.

성별	인원	나이	인원	근속기간	인원
남	7명	30대	3명	5년 미만	3명
		40대	6명	5년 이상, 10년 미만	18명
여	26명	50대	21명		
		무응답	3명		
계	33명	계	33명	계	33명

수입 ¹⁾	인원	직종	인원	근무처	인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13명	조리직	32명	3식당(농생대)	10명
				학생회관 식당	15명
				자하연 식당	1명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20명	카페 근무	1명	기숙사(919동) 식당	1명
				공학관(302동) 식당	4명
				동원관 식당	1명
				음대 느티나무 ²⁾	1명
계	33명	계	33명	계	33명

표1. 응답자 특성

실제 설문 과정은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학교 지부의 도움을 받았기에 해당 노조에 가입한 생협 노동자 내에서 임의표집이 이뤄졌다. 가입한 생협 노동자 중 현재 80여 명이 교내 생협 소속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직 노동자이며, 15명이 교내 생협 소속 카페 근무자이고, 3명이 교내 기념품점, 매점 등에서 근무하는 판매직 근로자이다. 이 중 41명

1) 세전 수입 기준.

2) 생협 운영 카페.

이 설문에 응답했고, 불성실 응답 등 활용할 수 없는 응답을 제외하고 33개 응답을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응답자 33명의 특성은 표1과 같다.

4.2. 연구 도구

연구 도구인 설문지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유사 연구에서 널리 쓰이는 척도 및 설문지 원본을 토대로 1차 수정 후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학교 지부와의 면담과 인권센터의 검토를 통해 최종 수정하여 확정하였다. 노조와의 면담은 2021년 8월 13일에 진행하였고, 인권센터의 검토는 2021년 8월 26일에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배포된 설문은 노동강도 15문항, 직무 스트레스 24문항, 삶의 질 25문항,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노동강도

노동강도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 시간 동안 지출한 노동량의 크기이다. 하지만 이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노동량을 정확히 규정하고 측정하기 어려울뿐더러, 만약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체 노동량을 같게 가정했을 때, 근로시간이 길수록 노동강도가 감소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길게 일할수록, 근로 중 휴식이 적을수록 노동강도가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증가한다. 즉, 사전적 정의는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한편, 일정 기간을 지정해 근로시간, 휴식시간, 작업 밀도 등 노동강도를 대변하는 구성요소들의 절댓값을 측정하여 노동강도를 구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업종 간 차이나 업종의 특성, 근무지의 특성 등의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수치적인 값만으로 직접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높거나 낮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식적으로 노동강도를 측정하지 않고,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강도의 증감을 파악하는 설문을 사용했다. 김인아(2007)가 고안한 해당 설문에서는 노동강도를 절대적 노동강도, 상대적 노동강도, 유연화의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 절대적 노동강도는 노동시간 변화에 따른 노동강도 변화로, 사전적 정의에서 도출된 노동강도 개념이다. 구성 문항 역시 특근, 휴식 등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변화를 묻는다. 상대적 노동강도는 노동시간 외에 노동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예컨대 작업 밀도, 작업속도, 업무 종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연화는 조금은 독특한 카테고리, 법제제적인 신자유주의 경향을 반영하고자, 고용 유연성, 임금 유연성 등 경영 차원의 변화들을 포함하고 있다.

원본 설문지는 절대적 노동강도 문항 6개, 상대적 노동강도 문항 6개, 유연화 문항 7개의 총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 생협의 특성을 고려해 절대

적 노동강도 5문항, 상대적 노동강도 5문항, 유연화 5문항, 총 15문항으로 줄이고 몇 문항은 수정하였다. 이 과정에는 서울대 생협 내에 특근과 잔업이라는 말이 구분 없이 통용되고 있다는 점, 하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일반적인 의미의 교대작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더불어 문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휘를 일부 수정 및 삭제하고 설명을 추가하였다.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높은 점수가 높은 노동강도를 의미하게끔 문항을 개조하였다. 점수는 단순 합산 방식이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0.64$ 이다.

나. 직무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위탁연구를 통해 제작한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KOSS-SF)에 변형을 가해 직무 스트레스 문항을 구성하였다. 해당 공단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란, 직무요건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바람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정신적 반응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KOSS)는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축형은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축형은 직무요구, 직무 자율, 관계갈등,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의 총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의 근로환경에 대한 많은 비판이 물리적 환경과 연관되어 있어 KOSS에는 있으나, KOSS-SF에는 빠져 있는 물리 환경 영역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선택지는 원본 설문지와 동일하게 4점 척도로 구성했다.

이 밖에도 서울대 생협의 상황을 고려해 문항에 수정을 가했다. 관계갈등 영역에 상사의 도움에 관한 문항이 있는데, 전국대학노조 서울대 지부와의 면담에서 이에 대해 생협 근로자들이 상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조리직의 경우, 영양사가 메뉴를 정하고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기에 상사라고 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다른 일을 맡는 것일 뿐, 공식적으로 직책상 상하 관계가 아니며 카페나 매점, 기념품점 등은 직원 간 완전히 수평적이기에 해당 문항에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반영해 응답자가 생각하기에 상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해당 문항에만 부여하였고, 해당 선택지를 고른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수치를 다른 응답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응답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독해 하였을 때, 그 차이를 알기 어려운 문항들은 한 문항만 남기고 삭제하였고 노동강도 문항에서 유사한 내용을 이미 물은 문항도 삭제하였다. 서울대 생협에는 사실상의 회식이 없다고 하여 직장문화의 회식 관련 문항도 삭제하였다. 완성된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alpha=0.81$ 이며, 점수 계산 방식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 방법은 그림1에 표현되어 있다.

$$\text{영역별 환산점수} = \{(\text{실제 점수}) - (\text{문항 수})\} \times 100 / \{(\text{예상 가능한 최고점수}) - (\text{문항 수})\}$$

$$\text{직무 스트레스 총 점수} = (\text{각 8개 영역의 환산점수의 총합}) / 8$$

그림1. 직무 스트레스 척도 계산 방법

다. 삶의 질

WHO에서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민성길 외, 2002) 이러한 정의에 따라 WHO에서는 24개 하부 척도로 구성된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HOQOL-100)를 제작하여 삶의 질을 수치로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에 더해 여러 현실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축형(WHOQOL-BREF)도 제시하고 있다. 단축형은 WHOQOL-100의 24개 하부 척도 각각의 평균과 가장 연관성이 깊은 24개 문항을 포함해 총 26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하부 척도 문항 외에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묻는 2개 문항이 들어간 결과이다. 하부 척도에서 파생된 24개 문항은 단축형에서 다시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관계, 환경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채점된다. 전체 삶의 질은 각 문항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단축형을 기반으로 다소의 변형을 가해 설문문을 구성하였다. 마찬가지로 전국대학노조 서울대 지부와 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서울대 생협인 상황을 반영하였다. 우선 성생활과 외모 만족도를 묻는 문항은 지나치게 개인적 영역에 관한 것이라 응답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제거하였다. 몇 문항은 해설을 위해 설명을 덧붙였고, 생협 노동자 대다수가 가족 부양과 관련된 이유로 근로를 지속하고 있는 정황을 고려해 원래 단축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족관계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총 25개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채점 방식은 WHOQOL-BREF 방식에서 20점 기준의 계산법을 그대로 따르고, 전체 삶의 질 점수는 삶의 질 4개의 영역과 전반적인 삶의 질 점수의 합계로 계산하였다.

4.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현장에서 수거하는 방식과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학교 지부 내부 네이버 밴드에 Google docs 링크를 올려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직접 배부 및 수거는 2021년 9월 6일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식당과 3식당(농업생명과학대학 식당)을 방문하여 진행하였고, 총 32개의 응답을 수거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2021년 9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진행했으며 총 9개의

응답을 수거하였다. 직접 배부 및 수거의 경우, 원래 배부 및 설명만 6일에 진행하고 1주일 뒤에 수거할 예정이었으나, 설문에 답하면서 생기는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계획을 수정하였다.

대학노조 서울대 지부 소속 생협 노동자의 약 40%인 41명의 노동자가 설문에 참여했으며, 39명의 조리직, 1명의 카페 근무자, 1명의 판매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응답 8개를 제외하여 총 33개의 답변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이는 32명의 조리직과 1명의 카페 근무자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외된 문항 중 6개는 불성실 응답으로, 노동강도, 직무 스트레스, 삶의 질 각 영역 중 한 영역에서라도 20%를 초과하여 응답이 없는 경우 해당 설문의 응답 전체를 제외하였다. 나머지 2개의 제외 응답은 4.2. 연구 도구에서 언급한 상사와의 관계에 관한 문항의 '상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체크'를 선택함에 따라 제외되었다.

전체 생활협동조합 노동자가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학교 지부에 가입한 것이 아니며, 분석에 사용한 답변 중 판매직의 답변이 없고, 1개를 제외한 모든 답변이 조리직의 답변이라는 사실은 본 연구의 대표성에 있어서 제한점이다.

4.4. 분석 방법

설문지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측정항목들의 정확성이나 정밀성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에 사용하는 크론바흐-알파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흐-알파계수 값이 0.6 이상이면 측정항목들에 대한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신뢰성이 낮은 항목을 제거하여 알파 계수의 향상으로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생활협동조합 노동자의 노동강도, 직무 스트레스,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삶의 질에 대해 노동강도와 직무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은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s, 분산팽창계수) 값을 통해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모델에서 VIF 값이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통제변수로 성별, 나이, 소득을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성별은 여성을 0, 남성을 1로, 소득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을 1로,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을 2로 하였다.

5. 연구 결과

5.1.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정

노동강도 설문 3개 하부영역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크론바흐-알파 계수를 구하였다. 노동강도 변수에 대한 15개 문항 중 5개의 문항(부록 기준 2번, 6번, 11번, 12번, 15번)은 설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절대적 노동강도는 0.73, 상대적 노동강도는 0.77, 유연화는 0.25의 값을 보였다. 유연화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낮으나, 작업방식, 인력 운영, 임금의 유연화 등 작업조직의 변화를 통한 유연화는 노동강도 강화의 중요요소이므로 이를 사용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설문은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측정 도구 단축형(KOSS-SF)이 제시한 8개 하부영역에 대해서 각각 크론바흐-알파 값을 구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변수에 대한 24개 문항 중 2개의 문항(20번, 31번)은 신뢰성이 낮아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직장 문화가 0.49로 가장 낮았고 직무 불안정이 0.76으로 가장 높았다.

삶의 질 설문은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단축형(WHOQOL-BREF)이 제시한 4개의 하부영역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서 항목별 크론바흐-알파 값을 구하였으며 0.59~0.79로 높은 신뢰도가 나타났다.

변수	하부범주	문항수	Cronbach's α
노동강도	절대적 노동강도	4	0.74
	상대적 노동강도	4	0.77
	유연화	2	0.25
직무 스트레스	물리환경	3	0.66
	직무요구	2	0.62
	직무자율	4	0.59
	관계갈등	3	0.53
	직무불안정	2	0.76
	조직체계	2	0.75
	보상부적절	3	0.63
	직장문화	3	0.49
	직무스트레스	24	0.71
삶의 질	신체적 건강	7	0.79
	심리적 건강	5	0.72
	사회적 관계	8	0.59
	환경	8	0.77
	전반적 삶의 질	2	0.63

표2.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정

5.2 노동강도, 직무 스트레스, 삶의 질 수준

가. 노동강도와 삶의 질 수준

생활협동조합 노동자의 노동강도 수준은 표3과 같다. 절대적 노동강도와 상대적 노동강도는 20점 만점이며 유연화는 10점 만점, 총 노동강도는 48점이다. 전체 노동강도 점수의 평균(표준편차)은 34.15(3.73)이고, 노동강도 중 상대적 노동강도의 평균(표준편차) 수준이 16(2.12)으로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높다.

노동강도 분류	평균	표준 편차	지역별 노동강도 비교치(근사치)
			숙박/음식 지역
절대적 노동강도	11.42	2.31	$18.8 \times 2/3 \approx 12.5$
상대적 노동강도	16	2.12	$13 \times 2/3 \approx 8.7$
유연화	6.73	1.13	$19 \times 2/7 \approx 5.4$
총 노동강도	34.15	3.73	26.6

표3. 노동강도 수준

국내 노동자 집단 내에서 해당 노동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해 김인아(2007)의 지역별 노동강도 분포 값에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지역이 겹치는 숙박/음식(조리, 카페 연관) 지역의 값을 첨부하였다. 해당 연구는 12,077명 근로자의 노동강도를 측정해 지역별, 분류별 평균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10년이 넘는 측정치이고, 그 값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그래프로 나타내어 표3의 비교치는 어디까지나 근사치에 기반 하였음을 고려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해당 근사치는 절대적 노동강도와 상대적 노동강도 30점 만점, 유연화 35점 만점 기준이라 전자를 20점 만점, 유연화를 10점 만점으로 단순 환산하였고, 식을 기재하였다. 또한, 유연화는 크론바흐-알파 계수 값이 작으며 7문항 중 5문항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해석이 제한적이다. 비교치와 비교해보면 서울대 생협의 절대적 노동강도는 다소 낮은 모습이다. 반면 상대적 노동강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며, 유연화 정도는 비교치보다 다소 높다. 단순 합산을 통해 산출한 총 노동강도는 비교치보다 높는데, 이는 상대적 노동강도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나. 직무 스트레스 수준

생활협동조합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표4와 같다. 직무 스트레스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KOSS-SF)에서 제공하는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평가표를 활용

하여 생활협동조합 노동자와 전국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비교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평가표는 대상 근로자의 실제점수와 회사(또는 부서) 평균점수 및 전국 근로자의 4분위 경계선 값을 제시한 것으로 대상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가 어떤 범위에 포함되는가를 비교할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직무 스트레스 총점수는 60.7, 68.3으로 전국 참고치와 비교할 때 상위 25% 집단 안에 속해 있다. 직무 스트레스 하부영역별로 여자에서는 보상 부적절의 평균 점수가 71.4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직무요구 67.9점, 직무 자율이 67.3점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보상 부적절을 제외한 모든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서 전국 참고치의 상위 25% 안에 속하고 보상 부적절 요인도 상위 50% 안에 속해 직무 스트레스가 아주 높은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자에서는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부상 부적절의 평균점수가 81점으로 가장 높았다. 남자의 경우 모든 직무 스트레스 하부영역에서의 직무 스트레스 평균점수가 전국 참고치의 상위 25% 안에 속해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직무 스트레스 요인	평균	표준 편차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참고치			
				하위 25%	하위50%	상위 50%	상위 25%
여자	물리적 환경	60.7	16.1	33.3이하	33.4~44.4	44.5~55.5	55.6이상
	직무요구	67.9	18.2	41.6이하	41.7~54.1	54.2~62.5	62.6이상
	직무 자율	67.3	13.5	53.3이하	53.4~60.0	60.1~66.6	66.7이상
	관계갈등	41.9	15.5	-	33.3이하	33.4~41.6	41.7이상
	직무 불안정	56.4	20.0	38.8이하	38.9~50.0	50.1~55.5	55.6이상
	조직체계	65.4	19.4	42.8이하	42.9~52.3	52.4~61.9	62.0이상
	보상 부적절	71.4	15.5	55.5이하	55.6~66.6	66.7~77.7	77.8이상
	직장문화	52.6	15.3	33.3이하	33.4~41.6	41.7~50.0	50.1이상
	총 직무 스트레스	60.4	8.61	49.5이하	49.6~51.1	51.2~56.6	56.7이상
남자	물리적 환경	71.4	18.0	33.3이하	33.4~44.4	44.5~66.6	66.7이상
	직무요구	61.9	12.6	41.6이하	41.7~50.0	50.1~58.3	58.4이상
	직무 자율	66.7	18.6	46.6이하	46.7~53.3	53.4~60.0	60.1이상
	관계갈등	50.8	10.8	-	33.3이하	33.4~50.0	50.1이상
	직무불안정	81.0	11.5	44.4이하	44.5~50.0	50.1~61.1	61.2이상
	조직체계	81.0	20.2	42.8이하	42.9~52.3	52.4~61.9	62.0이상
	보상부적절	81.0	21.0	55.5이하	55.6~66.6	66.7~77.7	77.8이상
	직장문화	52.4	16.6	33.3이하	33.4~41.6	41.7~50.0	50.1이상
	총 직무 스트레스	68.3	9.61	45.0이하	45.1~50.7	50.8~56.5	56.6이상

표4. 직무 스트레스 수준

다. 삶의 질 수준

삶의 질의 경우 표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영역은 WHOQOL-BREF의 환산식에 따라 20점 만점이며 총 삶의 질은 100점 만점이다. 전체 삶의 질 점수의 평균(표준편차)은 58.57(7.36)이고, 삶의 질 영역 중 사회적 관계 영역의 평균이 14.69로 높고 정신적 건강 영역이 10.06으로 가장 낮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
삶의 질	신체적 건강	12.06	1.89
	정신적 건강	10.06	1.90
	사회적 관계	14.69	1.81
	환경	10.84	1.95
	전반적 삶의 질	10.91	2.40
	총 삶의 질	58.57	7.36

표5. 삶의 질 수준

5.3. 삶의 질에 대한 회귀분석

이하 모든 회귀분석은 표본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90% 신뢰수준에서 분석했다. 생활협동조합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수에 총 삶의 질을, 독립변수에는 총 노동강도와 총 직무 스트레스를 두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6과 같다.

노동강도의 경우 삶의 질과 음(-)의 관계를, 직무 스트레스의 경우 삶의 질과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두 변수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이 모형의 p-value가 0.757로 유의하지 않았다. 노동강도 총점과 직무 스트레스 총점을 변수로 둘 경우, 유의하지 않은 모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뒤이어 노동강도와 직무 스트레스 각각의 하위영역 요소들을 모두 독립변수로 둔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추정 계수	SE	t-value	Pr(> t)
노동강도	-0.55488	0.41743	-1.329	0.1963
직무 스트레스	0.20307	0.19103	1.063	0.2983
나이	0.01369	0.42692	0.032	0.974
성별	2.47644	7.70481	0.321	0.7507
소득	-2.37147	3.33683	-0.711	0.4841
Adjusted R2	-0.08981			

F-statistic	0.522
p-value	0.7572

표6. 노동강도 및 직무 스트레스 각각의 점수 총합과 삶의 질 회귀분석 결과

생활협동조합 노동자의 노동강도, 직무 스트레스와 삶의 질 사이의 관련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총 삶의 질, 삶의 질의 4개 하위영역(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관계, 환경),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 평가를 각각 종속 변수로 두고, 독립변수로 노동강도 하위영역 3개와 직무 스트레스 하위영역 8개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총 6가지 모형에 대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7과 같다.

분석대상	총 삶의 질 모형	신체적 건강 모형	정신적 건강 모형	사회적 관계 모형	환경 모형	전반적인 삶의 질 모형
절대적 노동강도	-1.075 (-1.511)	-0.095 (-0.386)	-0.473 * (-2.526)	0.023 (0.125)	-0.329 * (-2.410)	-0.201 (-0.661)
상대적 노동강도	0.449 (0.567)	0.016 (0.060)	0.151 (0.723)	0.277 (1.337)	-0.06204	0.067 (0.198)
유연화	0.355 (0.275)	-0.342 (-0.770)	0.031 (0.092)	0.250 (0.740)	0.41484	0.002 (0.003)
물리적 환경	-0.287** (-3.030)	-0.053 (-0.053)	-0.065* (-2.601)	-0.029 (-1.174)	-0.066 ** (-3.653)	-0.074 . (-1.811)
직무요구	0.114 (0.851)	0.034 (1.352)	0.045* (2.281)	0.025 (1.316)	0.032 (1.388)	0.049 (1.539)
직무 자율	0.240 (1.637)	0.042 (0.927)	0.060 (1.716)	0.049 (1.428)	0.095** (3.847)	0.051 (0.892)
관계갈등	-0.374* (-1.262)	-0.052 (-0.958)	-0.062 (-1.496)	-0.078 . (-1.889)	-0.10677** (-3.508)	-0.074 (-1.087)
직무불안정	-0.130 (-1.262)	-0.002 (-0.052)	-0.037 (-1.374)	-0.024 (-0.889)	-0.018 (-0.905)	-0.049 (-1.111)
조직체계	0.206 * (2.310)	0.035 (1.139)	0.038 (1.592)	0.085 ** (3.609)	0.051 ** (3.015)	-0.002 (-0.062)
부상부적절	-0.077 (-0.690)	-0.022 (-0.579)	-0.021 (-0.750)	-0.007 (-0.238)	-0.025 (-1.176)	-0.001 (-0.011)
직장문화	0.142 (1.202)	0.027 (0.663)	0.04525 (1.452)	-0.025 (-0.806)	0.021 (0.946)	0.074 (1.450)
나이	0.0004	-0.044	0.086	0.005	0.102	-0.147

분석대상	총 삶의 질 모형	신체적 건강 모형	정신적 건강 모형	사회적 관계 모형	환경 모형	전반적인 삶의 질 모형
	(0.001)	(-0.324)	(0.818)	(0.049)	(1.335)	(-0.867)
성별	14.105 (1.720)	1.159 (0.410)	4.875* (2.259)	0.081 (0.038)	6.422 *** (4.083)	1.568 (0.446)
소득	-5.046 (-1.448)	-0.414 (-0.344)	-1.227 (-1.338)	-0.413 (-0.452)	-1.339 . (0.063)	-1.652 (-1.107)
Adjusted R2	0.400	-0.1035	0.356	0.2728	0.6567	-0.040
F-statistic	2.367	0.8057	2.143	1.777	4.963	0.919
p-value	0.054	0.6544	0.0776	0.1406	0.001	0.561
()안의 값은 t-statistic이며, . p<.1 *p<.05, **p<.01, ***p<.001						

표7. 회귀분석 결과

6가지 모형에서 삶의 질의 영역 중 신체적 건강, 사회적 관계,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경우, 모형의 p-value가 0.1 이상으로 유의하지 않은 모형으로 드러났다.

총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 물리적 환경, 관계갈등이 총 삶의 질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즉 물리적 환경, 관계갈등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총 삶의 질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 조직체계의 경우 총 삶의 질에 대해 유의한 양(+)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 절대적 노동강도, 상대적 노동강도, 유연화는 총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삶의 질 영역 중 정신적 건강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의 경우 절대적 노동강도가 정신적 건강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에서는 물리적 환경이 정신적 건강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직무요구의 경우 정신적 건강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지만 그 크기가 작은 편이다.

삶의 질 영역 중 환경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는, 절대적 노동강도가 환경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고 그 정도가 다른 유의한 독립변수들에 비해 큰 편이다.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 중 물리적 환경과 관계갈등은 환경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으나, 직무 자율, 조직체계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6. 결론 및 의의

6.1. 노동강도, 직무 스트레스, 삶의 질 수준 해석

가. 노동강도

국내 노동자 일반과 비교하였을 때, 서울대 생협 노동자의 절대적 노동강도는 다소 낮은 편이었으나 유사했으며, 상대적 노동강도는 높은 편이었다. 유연화는 많은 문항을 삭제하여 낮은 크론바흐-알파 계수를 도출하였으므로 의미 있는 비교가 어렵다. 직무 스트레스는 모든 영역에서 국내 노동자 일반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삶의 질은 국내외의 일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준거 수치를 찾지 못하여 그 수준이 어떠한지 논할 수 없었기에 순서에서 생략하였다.

절대적 노동강도는 4.2. 연구 도구에서도 언급하였듯, 근무 시간의 변화에 따른 노동강도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일반적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근무 시간의 변화가 적었다는 의미를 띤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리직은 식사시간과 맞물려 근무 시간이 운영되기 때문에 초과근무 등 정규 근로시간 외 노동이 거의 없고, 근무 시간이 고정적인 실정이다. 절대적 노동강도 값은 이러한 요소의 결과로 보인다.

상대적 노동강도는 근로 밀도의 변화에 따른 노동강도 변화를 나타낸다. 같은 시간에 더욱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면 상대적 노동강도는 증가한다. 생협의 상대적 노동강도는 일반적 수준과 비교해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기존 비정규직 인원이 계약종료 이후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직장을 나갔으며, 인원 충원도 없는 상황이라 인력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비대면 강의로 인하여 식당이나 카페의 이용객이 줄긴 했으나, 전체 요구 작업량 감소보다 인력 감소가 더 컸던 결과로 볼 수 있다.

나. 직무 스트레스

국내 노동자 일반과 비교하였을 때, 서울대 생협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전 영역에서 높았다. 즉, 생협 노동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일터의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며, 일의 양이 많고 작업이 요구하는 역량이 과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일에 대해 노동자 본인이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작으며, 직장 내 인간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고용이 불안정하다고도 느끼고 있다. 조직체계는 경직되어 사측과의 소통이 불만족스러우며, 일하는 것에 비해 보상이 적다는 점도 불만이다. 직장문화 역시 민주적이지 못하고 수직적이다.

6.2. 회귀분석 결과 해석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의 노동강도와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 생활협동조합 노동자의 총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진행한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우선 삶의 질이 직무 스트레스 중 물리적 환경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 영역은 직무 스트레스의 환경적 요인 중 공기 오염, 작업방식의 위험성, 신체 부담 등을 포함하여, 조리 과정 중 고열이나 소음과 같은 물리적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무거운 물건 들기, 오래 서서 작업하기, 미끄러운 바닥에서 작업하기 등 신체 부담이 많은 조리 종사자의 경우 주요한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새롬 외, 2014). 특히 생활협동조합의 조리노동자의 경우 코로나 이후 인력 부족 및 담당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잦은 사고와 근골격계질환 등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물리적 환경에 의한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 수준이 떨어진다고 본다. 직무 스트레스 영역 중 관계갈등 영역 또한 총 삶의 질과 부적 관계를 가진다. 관계갈등 영역은 상사의 지지, 동료의 지지, 전반적 지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바쁜 작업 상황 속에서 상사 및 동료의 도움을 바라기 어려운 점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

두 번째, 삶의 질 영역 중 정신적 건강 영역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절대적 노동강도와 정신적 건강 사이 상당한 부적 영향 관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하루 작업 및 특근 시간이 증가하고 여유 및 휴식시간이 줄어들어 절대적 노동강도가 증가하면 삶에 대한 의미, 자아존중감, 집중력, 긍정적·부정적 감정 등을 포괄하는 삶의 질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물리적 환경 영역의 직무 스트레스 또한 총 삶의 질에 서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건강 영역의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영역 중 환경 영역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절대적 노동강도, 직무스트레스 영역 중 물리적 환경과 관계갈등이 환경 영역의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 영역의 경우 주거 환경, 경제 상황, 교통수단, 정보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여가활동 등을 포함한다. 생활협동조합 노동자 자신이 사는 환경에 대한 만족이 절대적 노동강도가 증가할수록, 물리적 환경 및 관계갈등 영역에서의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다만 총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둔 모형에서 나타나는 조직체제 영역의 직무 스트레스가 정적 영향, 정신적 건강 측면의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둔 모형에서 나타나는 직무요구의 정적 영향, 그리고 환경 측면의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둔 모형에서 나타나는 직무 자율과 조직체제의 정적 영향은, 삶의 질과 직무 스트레스 사이의 부적 관계를 제시하는 기

존 연구들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조경서, 김은주 2014; 이영성, 2017; 양미경, 2019).

6.3. 의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생협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절대적 노동강도는 높은 편이 아니었으나, 생협 내에서 절대적 노동강도가 높을수록 삶에서 정신적 건강과 환경요소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즉, 근로시간이 장기적으로 비교적 일정한 상태이지만, 몇몇 구성원들에게 근로시간의 변화가 체감되었고, 삶의 질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줬다. 또한, 상대적 노동강도가 일반적 수준보다 높게 나왔으므로, 이를 종합하였을 때, 코로나-19에 의한 인력 감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에 계약직으로 충당하다가 사라진 인력을 일부라도 추가 고용하여 일의 밀도를 낮추고 근로시간 증가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직무 스트레스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므로, 직무 스트레스 하위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상황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였던 물리적 환경, 관계갈등은 특히 그러할 필요성이 크다. 생협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은 최근 일련의 비극들로 세간에 널리 알려진 만큼,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휴게 시설과 식당의 경우 조리 시설과 조리 공간의 냉방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생협 사측, 즉 서울대 학측과 생협 노동자 간 의사소통이 더 민주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현실을 노동강도와 직무 스트레스의 측면에서 양적 분석을 통해 드러내고 이를 노동자의 삶의 질과 연결한다. 코로나 상황 이후 인력 부족, 인당 업무의 증가 등으로 심각해진 생협 노동자의 상대적 노동강도와 전국 참고치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직무 스트레스라는 위험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면서 학교 공동체가 학내 현실을 성찰적으로 들여다보고 고민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노동강도 요인 및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생협 노동자가 합리적이고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더 나아가, 공공선으로써의 노동권 신장에 이바지하였다.

7. 한계

본 연구는 모든 분석과 해석에서 신뢰수준을 90%로 잡고 서술하였으며, 이는 33개의 적은 표본 수에서 기인하였다. 이것이 이 연구의 첫 번째 한계이다. 두 번째는 분석 과정에서 내적 신뢰도를 위해 삭제된 문항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 해석의 여지를 좁혔으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충분한 내적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한 부문도 존재한

다. 셋째는 앞의 두 한계점으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에 대해서도 일부 설득력 있는 해석을 하지 못했고,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겨두게 되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강경희 외 (2018). 2018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조리노동자 근골격계질환 및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김교숙 (2010). 근로자의 건강권, 노동법논총, 19, pp. 171-197.
- 김기석 (2008). 『한국고등교육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왕배, 김중우 (2012).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에 대한 탐색과 전망. 보건과 사회과학, 32, pp. 1-18.
- 김인아 (2007). 인지된 노동강도 및 직무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간의 관련성,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철홍 외 (2014).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건강권 실태와 작업환경 개선연구-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김형수, 이종근 (2021). 119 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가 직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3), 44-50.
- 노상재 (2002). 대학 내 생활협동조합의 효율화 방안, 산업경제연구, 15(6), pp. 59-76.
- 민성길, 김광일, 박일호 (2002).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지침서』, 서울: 하나의학사.
- 박준성, 이은수, 신철호 (2009). 조직변화를 위한 신인사전략. Korea Business Review, 13(2), pp. 47-82.
- 신동윤 (2014). 기업의 사회적 책임: ISO 26000의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노동법논총, 30, pp.101-133.
- 신원성, 김희기 (2012). 호텔 조리종사자의 인지된 노동강도, 직무스트레스가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6(6), pp.221-239.
- 양미경(2019). 헤어 미용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미용예술경영연구. 13(1). pp. 01-15.
- 유광호, 이영면 (2017). 대학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산업관계연구, 27(4), pp. 57-86.
- 이새롬, 김규상, 김은아, 김지해 김도형(2014). 서울시 학교급식시설 조리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근골격계질환.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3(4). pp. 245-253.
- 이영성 (2017). 병원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남대학교대학원.
- 장세진, 고상백, 강동묵, 김성아, 강명근, 이철갑, 정진주, 조정진, 손미이, 채창호, 김정원, 김정

- 일, 김형수, 노상철, 박재범, 우종민, 김수영, 김정연, 하미나, 박정선, 이경용, 김형렬, 공정옥, 김인아, 김정수, 박준호, 현숙정,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2021). 2021년 대의원총회 회의 자료.
- 손동국 (2005).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대한산업의학회지, 17(4), pp. 297-317.
- 정최경희 외. (2004). 초등학교 급식 조리노동자의 근골격계증상 위험요인에 대한 다수준분석 연구. 대한산업의학회지. 16(4). pp. 436-449.
- 조경서, 김은주(2014). 유아교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결정성,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검증. 열린유아교육연구. 19(1). pp. 269-288.
- 조영하 (2010).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찰.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8, pp. 1-30.
- 한국보건개발연구원 (1978). 알마아타 선언 및 세계보건기구권장사항.
- Laidlaw, A.F. (2000).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 김동희 역, 협동조합 연구소.
- United Nations (1966).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부록

연구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근로자의 노동강도와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제학과 이가은, 지리교육과 이종민, 자유전공학부 김은서입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노동자 여러분의 노동강도,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설문지는 총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5번은 여러분의 노동강도에 대하여 묻는 문항입니다. 16~39번은 여러분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하여 묻는 문항입니다. 40~64번은 여러분의 삶의 질에 대하여 묻는 문항입니다.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답변내용은 오로지 이번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로서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어 절대 외부로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해 본 설문지의 답변 정보는 적절한 보안 아래 연구 종료 이후 최대 1년간 보관 후 폐기될 것이며 연구자 이외의 그 어떤 외부인의 열람도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해당 설문에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설문을 토대로 생활협동조합 노동자분들이 겪는 노동강도, 직무 스트레스 정도를 밝히고, 생활협동조합 노동자가 공정하고 건강한 노동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름과 전화번호는 응답자 중복 방지 차원에서 수집하는 것이며, 해당 정보는 중복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기할 예정입니다.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나이(만)	세
근속기간				년 개월
귀하의 소득을 골라주세요.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③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④ 300만 원 이상		
귀하의 직군을 골라주세요.				
① 조리직(식당)		② 카페직	③ 판매직	④ 기타 ()
귀하의 구체적 근무처를 적어주세요.				
(예: 자하연 식당, 도서관 느티나무 등)				

1번부터 17번까지는 최근 1년간의 귀하의 직장생활 변화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빠뜨리는 문항 없이 모든 문항에 답변해주시고, 만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확실하다고 생각될 경우, 가장 적절해 보이는 답변을 하나 고르십시오.

1	나의 하루 작업시간이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늘었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늘었다.
2	나의 작업 중 공식적, 비공식적 휴식시간이 줄어들었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줄었다.

3	나의 작업 중 대기시간을 포함한 여유시간이 줄어들었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줄었다.
4	하루 중 잠자는 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이 줄어들었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줄었다.
5	나의 특근 시간이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늘어났다.
6	내가 일하는 근무처의 작업속도가 빨라졌다. <input type="checkbox"/> 크게 느려졌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느려졌다.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빨라졌다. <input type="checkbox"/> 크게 빨라졌다.
7	내 업무 중 같은 시간에 해야 하는 일의 양이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늘어났다.
8	내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의 양이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늘어났다.
9	내가 해야 하는 업무의 종류가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늘어났다.
10	일하는 근무처나 팀의 인력이 줄어들었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줄었다.
11	내가 일하는 근무처의 자동화(기계, 기구)가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늘어났다.
12	내가 일하는 근무처에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늘어났다.
13	다른 근무처로 이동하거나 파견되는 일이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늘어났다.
14	월급 중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각종 보험, 퇴직금, 연금, 유급휴가의 급여, 식대, 교통비 등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비)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줄었다.
15	월급 중 성과급의 비율이 늘어났다. (성과급이 있다가 없어진 경우 '많이 줄었다.' 선택) <input type="checkbox"/> 많이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변화 없다. <input type="checkbox"/> 조금 늘어났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늘어났다.

16번부터 39번까지는 현재 혹은 근래의 상황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빠뜨리는 문항 없이 모든 문항에 답변해주십시오. 만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확실할 경우, 가장 적절해 보이는 답변을 하나 고르십시오.

[16~39번 도움말]

귀하가 귀하의 직장에 대해 느끼는 바를 묻는 부분입니다. 귀하가 귀하의 직장에 대해 느끼기에 질문에 완전히 동의한다면, '매우 그렇다.'를, 조금 동의한다면 '그렇다.'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다.'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를 골라주세요.

이를 수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0% 정도로 동의
- ② 그렇지 않다: 33% 정도로 동의
- ③ 그렇다: 66% 정도로 동의
- ④ 매우 그렇다: 100% 정도로 동의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근무 장소가 깨끗하고 쾌적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내 일은 위험하며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업무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과 짬(흡연, 화장실, 잠깐의 티타임 등의 모든 여유시간 포함)이 주어진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작업시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에게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나의 업무량과 작업 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 (<input type="checkbox"/> ← 상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체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7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8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 해주는 사람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9	직장 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0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예,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1	우리 직장은 근무 평가, 인사제도(승진, 부서배치 등)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3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4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내 봉급/수입은 적절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5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6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7	나는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8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9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0번부터 64번까지는 당신의 삶의 질, 건강 및 인생의 여러 영역에 대해 최근 2주간(오늘을 포함하여)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묻는 것입니다. 빠뜨리는 문항 없이 모든 문항에 답하시오. 만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확실할 경우, 가장 적절해 보이는 답변을 하나 고르십시오.

40	귀하는 귀하의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나쁨 <input type="checkbox"/> 나쁨 <input type="checkbox"/> 나쁘지도 좋지도 않음. <input type="checkbox"/> 좋음 <input type="checkbox"/> 매우 좋음
----	--

41	귀하는 귀하의 건강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42	귀하는 (신체적) 통증으로 인해 귀하가 해야 할 일들을 방해받는다고 느낍니까? <input type="checkbox"/> 전혀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많이 그렇다.
43	귀하는 일상생활을 잘하기 위해 치료가 필요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전혀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많이 그렇다.
44	귀하는 귀하의 인생을 즐기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전혀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많이 그렇다.
45	귀하는 귀하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낍니까? <input type="checkbox"/> 전혀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많이 그렇다.
46	귀하는 정신을 잘 집중할 수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전혀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많이 그렇다.
47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input type="checkbox"/> 전혀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많이 그렇다.
48	귀하는 건강에 좋은 주거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전혀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많이 그렇다.
49	귀하는 일상생활을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전혀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많이 그렇다.
50	귀하는 귀하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전혀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많이 그렇다.
51	귀하는 매일 매일의 삶에서 귀하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전혀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많이 그렇다.
52	귀하는 레저(여가)활동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전혀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많이 그렇다.
53	귀하는 잘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도움말: 여기서 '돌아다닌다.'라는 것은, 귀하가 행하는 모든 종류의 '물리적 이동'을 말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약간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많이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많이 그렇다.
54	귀하는 귀하의 수면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55	귀하는 일상생활의 활동을 수행하는 귀하의 능력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56	귀하는 귀하의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57	귀하는 귀하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58	귀하는 귀하의 개인적 대인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59	귀하는 귀하의 친구들로부터 받고 있는 도움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60	귀하는 귀하의 가족으로부터 받고 있는 도움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61	귀하는 귀하가 살고 있는 장소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62	귀하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63	귀하는 귀하가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input type="checkbox"/>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음 <input type="checkbox"/> 만족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64	귀하는 침울한 기분, 절망, 불안,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전혀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드물게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제법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자주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항상 그렇다.

설문이 끝났습니다. 설문지는 1주일 내로 수거할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택트 시대 노인의 디지털 소외 경험을 통한 정보기본권 개념적 검토 및 제언

김종원, 전서은, 이윤서, 탁서영

언택트 시대 노인의 디지털 소외 경험을 통한 정보기본권 개념적 검토 및 제언

김종원, 전서은, 이윤서, 탁서영*

[목 차]

1. 서론
 - 1.1. 연구배경
 - 1.2. 용어 정리
 - 1.3. 선행 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 1.4. 연구 목표
 2. 본론1: 정보기본권
 - 2.1. 정의 및 개념
 - 2.2. 법제적 검토
 3. 본론2: 인터뷰 및 분석
 - 3.1. 연구 진행 개괄
 - 3.2. 연구 결과 분석
 4. 결론
- 참고문헌
-

I. 서론

1.1. 연구 배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국민 일상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켰다. 감염병의 예방을 줄이기 위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무인화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자리잡았다. 전자상거래를 주로 이용하고, 비대면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회의나 강의를 주최하며, 은행 업무도 인터넷·폰뱅킹을 이용한다. 재난상황에 대한 주요대비책도 그러했다. 외출 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증하고,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되었을 당시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근처 약국의 마스크 재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에게,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은 디지털

* 김종원(경영학과 17) 전서은(사회교육과 18) 이윤서(아시아언어문명학부 19) 탁서영(경영학과 17)

격차(digital divide)를 더욱 심화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일례로, 대표적인 정보취약계층인 고령층은 비대면 기조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 ‘마스크 디지털 격차’ 를 겪었다. 스마트폰 앱을 몰라 매진된 약국을 전전하다 허탕을 치고, 정확한 마스크 사용 방법을 알지 못 하여 마스크를 삶으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믿는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다. 디지털 격차가 방역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이다. 김영선(2020)은 이러한 ‘마스크 디지털 격차’가 노인의 사회적 소외감을 심각하게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노인이 비대면 기조의 사회에서 과연 차별 없이 응당한 권리를 누리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현격히 극심해진 노인의 디지털 격차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소외 경험¹⁾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할 필요를 느끼게 한다.

특히나 코로나19와 같은 전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 디지털 격차’ 와 같은 사건은 디지털 격차로 인한 정보취약계층의 재난정보접근권을 현격히 침해한 것으로, 이는 전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 상의 권리인 생존권과도 긴밀히 연결된 개념이기에 결론적으로 헌법 상에 보장된 보편 인권의 심각한 침해 사례라 볼 수 있다. 노인과 같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그대로 사회적 격차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소외 현상이 일상적·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전개되는 양상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더 이상 디지털 격차로 인한 인권 침해가 없도록 국가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수적인 시점이다. 또한 이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서 벗어나 디지털 격차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실질적 차원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여러 대안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 중 특히 노인의 디지털 격차 문제에 집중하였다. 현재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전세계의 공통된 사회 문제이며, 국가정책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슈이다.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인간은 고령층에 속하게 되며, 이미 인구 중 상당수를 차지할만큼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수요자로서 자리매김했다. 유엔세계인권위원회에서도 노인인권을 이전부터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존재했고, 한국에서도 노인인권을 위한 여러 노인인권기관들이 설립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노인인권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되는 등 현재 노인인권은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체계화되어야 할 핵심의제가 되었다.

또한, 디지털 격차 현상은 정보취약계층 중에서도 노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년 디지털디지털 격차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4대 정보취약계층 중 그 중 2020년 고령층의 종합적인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과 비교하였을 때 68.6%에 그쳐 정보

1) 경기연구원의 ‘비대면 시대의 그림자, 디지털 소외’ 보고서는 일상적 영역인 인터넷 쇼핑과 인터넷 뱅킹에서 노인의 이용률이 각각 15.4%, 6.3%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낸 적이 있다.

취약계층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4대 정보취약계층 전체 평균 72.7%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특히 70대 이상의 경우 38.8%의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의 모든 분야에서 평균 대비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서비스의 인지율 및 경험률에서도 일반 국민은 물론, 정보취약계층 중에서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정보화사회에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가 가장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현상 해소를 위한 본질적 고찰 및 고령층의 정보기본권의 실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용어 정리

1.2.1. 노인 인권

인권(Human Rights, 人權)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기본적 권리로서 시대나 상황에 무관하게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즉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계층, 성별, 연령을 포함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노인 인권도 넓게는 이러한 인권의 개념 하에서 다루어지는 권리라 볼 수 있다.²⁾ 노인 인권은 좁은 의미로는 노인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부터 넓은 의미로는 연령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³⁾ 따라서, 노인 인권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이자 노인이라는 이유로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전반을 포괄하게 된다.⁴⁾⁵⁾

1.2.2. 디지털 격차

미 상무부는 디지털 격차 실태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신기술에 접근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하는 집단 간의 격차, 정보접근능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분할”로 정의한 바 있다. OECD보고서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는 개인, 가구,

2)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 종합보고서>, 2018, 18면.

3) 권중돈, 《인권과 노인복지실천》. 학지사, 2016.

4)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알기쉬운 노인인권 길라잡이>, 2019.

5) 노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권리와 능력에 따른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참여 권리를 지님과 동시에 심신의 건강유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의무로 규정하고도 있다.

기업, 지역들 간에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에서의 차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2001년 1월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디지털 격차를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6) 정보화기능이 강화되어 디지털 격차가 사회적 구분과 배제를 만들어내면서 디지털 격차는 점차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1.2.3. 재난정보접근권

각종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및 행동 수칙 등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중인 전염병인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 속 확진자, 백신 및 치료제, 방역 수칙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획득하여 실질적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 단체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1.3.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노인층에 미친 사회적 사태의 영향력에 관하여, 코로나 사태 이후 최근까지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재까지의 유수의 연구들은 복지관, 경로당 등 주요 커뮤니티 시설의 폐쇄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우선적이고 중요한 영향 변인으로 상정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로 그러한 변인으로 인한 노인의 정서적 변화를 탐색적, 혹은 현상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춰 왔다.

이나윤과 강진호(2020)은 코로나19 사회적 사태를 경험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정서적 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노인들의 정서적 변화 경험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가 소식에 대한 두려움’, ‘외출 자제로 인한 우울함’, ‘종식에 대한 기대’ 라는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해 냄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불안함과 두려움, 우울감이라는 정서 변화를 도출해 내었다. 이를 통해 신종 감염병의 방역에 있어 노인들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심리적 방역’ 역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혜리 외 3인(2020)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기술 사용 및 노인복지관 참여 제한을 중심으로 고령자 일상생활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일상의 변화, 마스크 구매와 기술 이용에의 어려움, 노인 복지관 참여의 제한을

6) 서형준, <디지털 격차 연구에 대한 비판적 논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658면.

경험하였음을 규명하였다. 해당 연구는 이러한 장기간의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심리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들의 기술 활용 양상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노인들이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동선 파악이나 공적 마스크 수령 알림 등의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데 있어 기술활용수준이 낮은 것이 가장 큰 원인임을 도출해내었고, 따라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선행 연구를 문헌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노인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 우울감을 비롯한 노인의 일상생활 변화에 대해서는 일찍이 문제 제기 및 현상 규명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심리적 변화 경험, 혹은 사회적인 고립감을 규명한 연구의 수 자체가 부족하기에, 노인층이 겪는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질적 연구를 벗어나 사회구조적 해결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한계로 보인다. 또한, 신혜리 외 3인(2020)의 연구와 술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전국가적 재난 상황에 있어 스마트폰을 비롯한 ICT 기술 활용도가 높지 않으며 사용 자체를 어려워하는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 상황이 드러났음에도 노인층의 재난정보접근권의 실태, 혹은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 정도와 이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사태와 연결지어 규명하고자 한 학술 연구는 전무하였다는 것 역시 현 연구 동향의 주요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가 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음을 밝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권리가 인권의 차원에서 제대로 규명되고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원조 차원에서의 접근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4. 연구목표

본 연구는 먼저 정보불평등의 쟁점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정보기본권’중 특히 사회적 기본권적 성격을 가진 ‘정보의 평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현재 디지털 격차 현상의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한 『지능정보화기본법』 등의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다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국면을 살아가고 계신 노인들의 디지털 격차와 이에 관련된 경험을 당사자들에게 직접 묻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재조명한 뒤 이를 콜라이찌의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현재 디지털 격차로 인해 노인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현상과 국가 및 공공기관이 마련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 그 실질적인 효과성을 파악하고, 디지털 격차의 실질적 해소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의 정보 접근권을 바라보는 본질적 접근 방법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노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정보소외를 위

한 각종 정책적 지원이 국가적 원조나 선행의 관점을 넘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디지털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노인들 스스로 권리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고령층이 직접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설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야 디지털 격차의 실질적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본론1: 정보기본권

2.1. 정의 및 개념

2.1.1. 정보기본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있어 정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사회의 출현에 따라 정보의 생산, 유통, 이용과 같은 전 과정에 있어 정보와 관련된 권리를 기본권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운 영역의 인권 개념인 정보기본권이 등장하였다.

정보라는 용어의 다의성으로 인해 정보기본권을 바라보는 관점과 학계의 견해는 매우 다양하다.⁷⁾ 일반적으로 정보기본권이라는 범주 안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공개청구권, 정보프라이버시권, 정보보안권, 퍼블리시티권 등이 있고, 이외에도 정보기본권의 다양한 기본권적 성격에 따라 새로운 권리들에 대한 담론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본권의 이러한 다면적 개념 중 특히 사회권적 정보기본권을 논하고자 한다.

2.1.2. 사회권적 정보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규정된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받아 광범위한 내용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그 목적은 사회권적 성격보다 ‘알 권리’로 대변되고 있는 정보의 자유에 맞닿아 있었다.

7) <정보기본권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2017)>에 따르면 정보기본권은 정보라는 용어 자체가 다의적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기본권으로 명문화하여 보장하기는 어려우며, 우선적으로 정보의 자유를 보호하는 권리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의 자유와 보호를 정보기본권의 규범영역이라 보는 견해는 정보의 자유를 위한 권리로 정보공개청구권, 정보의 보호를 위한 권리로 정보프라이버시권과 정보보안권을 정보기본권이 포함하는 권리의 영역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의 디지털 격차 현상을 계기로 사회적 기본권의 관점에서 정보기본권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정보기본권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권적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의 평등이 정보기본권 안에서 기본권적 성격의 권리로 상정되는 것, 즉 정보기본권의 사회적 확장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 기회를 보장하여 정보의 평등을 이루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기존의 불평등과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데, 정보의 소유와 활용 정도, 정보화 교육의 수혜 여부 등에 따라 계층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격차는 기존의 경제적 요인과 결합되어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수신자의 보편성이 보장되는 방송매체와 다르게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사회경제적 혜택이 소외계층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⁸⁾ 대표적으로 <정보화사회의 인권과 사회복지(2005)> 보고서는 이러한 정보의 평등이 개별법령의 규율에 따른 규범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개별법령이 근거할 수 있는 헌법적 규범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의를 다룬 바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에 걸림돌이 있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큼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 기회 보장은 평등의 관점과 맞물려 헌법 제34조의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의무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논의로서 정보기본권의 사회적 성격으로 규범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⁹⁾ 이어 <정보기본권 -독일 및 EU를 중심으로(2018)> 역시 정보기본권의 헌법적 명문화와 관련한 국내에서의 논의 배경을 논하면서, 정보 매체의 접근에 있어서 빈곤자나 노인 및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차별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정보혁명 시대에서 정보접근에 대한 차별은 그대로 차별적인 사회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지므로 차별 없는 정보접근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정보기본권의 역할 확장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2.2. 법제적 검토

2.2.1. 법제 검토 개괄

현재 보편적 서비스가 접근권 차원에서 선언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법안에 명시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에는

8) 정호순, <정보화 사회의 기본권>, 『언론과 법』, 2002, 86면.

9) 김현철, 정보기본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11, 24면.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고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으나, 적용되는 보편적 서비스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요금 감면인 상황이다.¹⁰⁾ 정보통신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 단순히 매체를 제공하고 설치하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보이용 기술 습득 등 보다 깊은 층위에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이후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해 2001년 『디지털 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2009년 5월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이후에도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도서관 법』 등에서 웹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한 국가의 디지털 격차 해소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¹¹⁾

2009년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에서도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된 적이 있었다. 결과보고서에서는 디지털 격차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했다.¹²⁾ 2018년 3월 2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의 규정이 포함되는 등 그 헌법적 명문화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정보접근권은 일반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가로막는 제도나 조치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정보방해제거청구권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정보공개청구권,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디지털 격차해소청구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권리는 이 중에서 특히 디지털 격차해소청구권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의 내용 이상의 적극적 성격을 보이는 권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³⁾

2.2.2. 지능정보화기본법

앞서 법제 검토의 개괄에서 살펴보았듯, 지난 2001년 『디지털 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정보 소외 현상 해결을 목적으로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 법률이 2009년 5월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정보화 사회의 격변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이 새롭게 등장하며, 지능정보사회의 도래가 일찍이 예견되었던 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도 정보화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 논의

10) 정호순, <정보화 사회의 기본권>, 『언론과 법1』, 2002, 75면.

11)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보고서, 휴먼컬처아리랑, 2015, 103면.

12)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2009, 111-112면.

13) 권건보, <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공법학연구 12(4)』, 2011, 13면.

가 이루어진 끝에 2020년 5월 21일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기존 6장 52개조의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7장 71개조의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개편되었는데, 현대 지능정보사회를 국가적이고 법제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정의하였을 뿐 아니라 범국가적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확산에 대한 시책 등이 구체화되었다. 이를 통해 여타 법률이나 정책들의 내용을 축소, 재정리에 불과하여 체계성이 없다는 기존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대한 비판 지점들이 대거 보완되었다.¹⁴⁾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해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로, 동법의 2조 5호에서 그러한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과 관련한 전반의 효율화 및 고도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전의 국가정보화기본법은 단순 히 정보화 개념만을 정의하고 있었는데, 더욱 고도화된 기술 발전을 통한 정보화를 뜻하는 지능정보화로 논의가 진전된 것이다. 또한 지능정보화기본법은 2조 12호에서 ‘지능정보사회윤리’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는데, 이를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사회의 격변에 따른 법제적 요구를 수용하여 기존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을 정의한 것이다.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의 이행을 통해,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6조에 따라 시행되었던 기존 국가정보화기본계획 또한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제 6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에 기존 5년 단위로 수립되었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수립 및 추진체계가 개편되었다. 가장 최근 제정된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인 ‘제 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지능화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가장 큰 비전으로 하여, 4차산업혁명 대비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세부 목표와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14) 김형준,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의의와 한계>, KISO저널 제42호, 2021.03.08., <https://journal.kiso.or.kr/?p=10801>



〈그림1〉 지능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비전과 주요 추진전략¹⁵⁾

디지털 격차를 규정하는 측면에서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보았을 때, 지능정보화기본법은 2조 13항에서 디지털 격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정보통신서비스’라는 용어가 보다 고도화되어 ‘지능정보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되었을 뿐 기본적인 골격에서 기존의 정의와 유의미한 차이는 크게 없으며, 사회적·경제적·지역적·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디지털 격차로 규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수립한다는 법 전면개정 주요내용을 보았을 때, 지능정보화기본법이 디지털 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기존의 법을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의 전부개정 이유 주요내용에 따르면,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제 6장의 제 44조부터 제 56조까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및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국가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 31조에서 제 33조에 걸쳐 소극적으로 그 권리를 규정한 데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15) 이소라 <정부, 지능정보사회 위한 ‘제 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발표>, 아주경제, 2018.12.30., <https://www.ajunews.com/view/20181230104023414>

국가정보화기본법 제 6조 제 3항 6호 ‘정보문화의 창달 및 디지털 격차의 해소’ 를 반영하고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제 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포함되었는데,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2만명 육성, 노인·장애인 대상 디지털 기술교육 강화,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 마련 등이 그것이다. 다만 정보화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의 해소, 즉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우체국·도서관 등을 정보화 교육의 장(場)으로 활용한 취약계층 정보역량 교육 실시만이 주된 대책으로 제시되었고, 그러한 대책 마련의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 단위의 검토는 없었다는 점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정보 소외 문제 해결에 관하여서는 기본 계획의 미비함 및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기반한 마지막 국가정보화계획의 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행 법안 및 정책의 한계점을 정보소외계층 당사자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고 그들의 권리 실질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본론2: 인터뷰 및 분석

3.1. 연구 진행 개괄

3.1.1. 연구 진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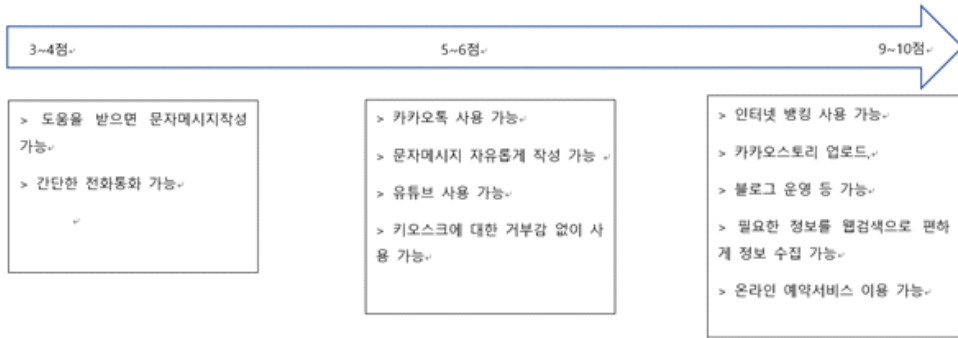
인터뷰 및 연구 진행은 모두 콜라이저 인터뷰 형식을 차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서울숲 인근 시니어 배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어르신 6분을 대상으로 2차에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후 디지털 격차에 노출된 정도가 더 심한 어르신 4분을 추가로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2021년 7월 17일, 2021년 7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숲 인근 시니어 배달 업무를 하시는 어르신 6분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어르신분들과 래포(rapport)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후 참여자 1,2,3,4,5,6)

(2) 2021년 8월 7일, 앞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던 6분의 어르신 중 인터뷰가 가능하신 5분의 어르신께 지능정보화교육과 공공서비스 접근 정책에 대한 제언을 듣고자 2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 그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던 어르신들의 정보 사용 수준 정도가 모두 평균 이상이었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 추가 섭외의 필요성을 느끼고 신림에 거주하시는 4분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불편함과 디지털 격차

로 인해 겪으신 일상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 참여자 7,8,9,10)



〈그림2〉 인터뷰 대상자의 정보 활용 능력 파악을 위해 사용한 설문지

3.1.2. 연구참여자 정보

참여자 목록	성별	연령	거주형태	질병여부	직업여부	정보활용능력
참여자1	남성	만 79세	1인가구	없음	시니어 인턴 근무중	7~8점
참여자2	남성	만 71세	2인가구	없음	시니어 인턴 근무 중	9점
참여자3	남성	만 76세	2인가구	암 내력 존재 현재 완치	시니어 인턴 근무 중	다시 수합
참여자4	남성	만 70세	2인가구	없음	시니어 인턴 근무 중	9~10점
참여자5	남성	만 75세	2인가구	없음	시니어 인턴 근무 중	5~6점
참여자6	남성	만 71세	2인가구	없음	시니어 인턴 근무 중	5~6점
참여자7	남성	만 76세	2인가구(아내)/며느리와 자주 왕래	파킨슨병(15년 병력)	무직	1~2점
참여자8	여성	만 68세	2인가구(남편)/참여자7과 부부관계	없음	무직	1~2점
참여자9	여성	만 77세	2인가구(남편분과 거주)	지속적 병원 내원 진료 받고 있음	무직	
참여자10	여성	만 75세	1인가구	없음	무직(72세까지 근무)	

전술한 대로 총 10명의 연구참여자를 섭외하였으며, 위 도표는 이후 인터뷰 진행 및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참여자의 정보들을 수합 후 정리한 것이다. 참여자1~6의 경우 모두 동일한 회사에서 시니어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각 연구참여자의 거주지는 모두 다르도록 구성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정보활용능력이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정보활용능력이 낮은 어르신들을 연구참여자로 섭외하여 표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3.2. 연구 결과 분석

3.2.1. 연구 분석 프레임.

주제목음	주제	의미의 재진술
디지털격차와 삶의 질	일반 정보화기기 사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오스크 이용 자체가 생소함 - 인터넷, 모바일 뱅킹의 어려움 - 이용 방법 문의 과정에서의 꺾그러움 - 정보 습득 경로의 획일성 - 공공서비스 이용 어려움 - 복지관 수강 신청의 어려움.
	코로나시대 디지털불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재고 어플 사용이 어려움. - QR코드 안 하고 수기 작성. -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지 못 함. - 온라인 소통이 어려워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움
	노인간 정보활용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가 익숙지 않은 계층은 디지털 기기 이용에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음.
	심리적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 학습된 무기력
정보화교육의 현황	정보화교육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진행에서의 한계 - 일상 적용의 어려움 (내용)
	참여자 다양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신청의 실질적 제약 - 초기 접근의 어려움 - 온라인 신청, 접수 - 실질적 제약 - 시공간적 장벽
디지털격차 해소의 방향성	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뉴스 활용(대중적 온라인 매체)

		- 계획서 팸플렛 보급(오프라인 매체)
	동기부여	- 필요성 계몽, 분위기 조성 - 어르신 선도자 정책 활성화
	(노인 이외) 인식의 변화	- 고객으로서의 노인 - 심리적 장벽 해결책 - 노인 입장의 이해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강화

3.2.2. 인터뷰 분석

3.2.2.1. 일반 정보화기기 사용 경험

(1) 키오스크 이용에서의 불편함

- 참여자8: 아니 나는 그거(키오스크)는 한번도 안 해봤어요. 할 줄도 모르고. 괜히 그거 못 하면 부끄럽잖아요. 할 줄도 모르고 불안하고.
- 참여자3: 주문받을 줄 알았더니 이 것(키오스크)만 있어. 근데 모르고 했더니 그 종류가 많잖아요 내 뭘 좋아하는지 몰라. 한참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했네 하긴. 근데 참 그래요. 요새는 그거 못 하면 안 되잖아.
- 참여자4: (키오스크 주문을)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뒤줄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신경 쓰여서.
- 참여자5: (배우는 데 시간이) 늦죠. 거리낌 없이 물어보고 그런 거 없이 그래야 하는데 피해주는 거 같고 그래서 못 물어보고. 웬만하면 저 사람들 편하게 현금 주려면 카운터로 오라고 하니까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
- 참여자6: (키오스크 활용에 대해 묻는 것에 대해)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종업원에게 어지간해서 시키고 그러니까. 배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남한테 의지하고 그러고. 키오스크 있을 때 남을 의지해서 이용을 하지.

참여자8과 참여자3의 진술을 보면, 이들은 모두 키오스크가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동시에 사용에서의 불편감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기의 생소함에 사용 자체를 못 하는 상황이 있었으며 노인층에게 있어서 키오스크 사용의 생소함과 어려움이 존재함을 진술을 통해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 생소함, 두려움, 불안감 등을 공통적으로 진술했는데, 이는 새로운 것을 익히는 과정 자체의 거부감과 동시에 모르는 사람에게 사용 방법을 물어보는 과정에서의 껄끄러움에서 기인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2) 인터넷, 모바일 banking 등 이용의 어려움

- 참여자5: 많이 불편해. 은행을 가도 그전에 종이로 써서 하던게 (낫지). 요새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없어. 큰 돈 뵈으려고 했을 때 두리번거리면 청원경찰이 어르신 뭐 찾으세요? 그러면 아 아닙니다. 라고 가. 직원이 앞으면 알

려주세요. 뭘 찍어라. 첫번에 가서 기웃기웃 거리기가 멋쩍어.

참여자5: (스마트 banking은) 아예 안 해요. 한 번 제가 잘못해서 혼난 적이 있어. 지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줘서 그렇지 애를 먹을 뻔했네. 친구가 돈을 달라고 해서 알아서. 하고 보냈는데 그게 엉뚱한 데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지워버렸어.

참여자5는 모바일 banking 자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며 그 이유로 이전의 온라인 금융 경험에서 디지털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를 언급하였다. 다소 민감할 수 있는 금전 거래와 관련되어서는 온라인 진행을 꺼리는 진술을 통해서 디지털 소외가 디지털 신용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으며 결국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한 금융 거래로 진행되며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3) 정보 습득 경로의 획일성

참여자2: 애들한테 이제. 내가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야 이리 와 봐.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 해서 애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하기 어려워.

참여자7: 유튜브 좀 듣고 싶는데 할 줄을 몰라. (뉴스만으로 좀 답답한 게 있어) 유튜브는 그래도 다양하게 다루고 하니까. 그것 좀 구경하고 싶는데...

참여자8: 우리는 텔레비 보고 하지 전화(스마트폰)은 안 봐요. 전화, 카톡이나 뭐신가 오면 그거 보고 말지. 텔레비 보고 연속극 보고 노래자랑 보고.

참여자2, 7, 8의 진술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수단이 주로 자녀와 지인과 같은 주변 인물과 TV임을 알 수 있어 정보 습득이 수동적인 경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참여자7은 정보 습득 경로의 다양화를 위해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매체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대체로는 익숙한 매체를 넘어선 새로운 정보 습득 경로에 대해서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공공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참여자1: 그것도 휴대전화에 그걸(앱)을 깔아야 되더라고. 보니까는. 그걸 깔고 또 그걸 또 가서 찍고 그렇게 해야 한다하더라고. 그게 귀찮으니까는. 그거 깔아가지고 하면 타겠지.

참여자1: 자전거를 탈 수는 있는데 그거 번거로우니까 이제 못 하는 거야. 그거 깔아놓고서는 그걸 하면은 어디 급할 적에 그거(따릉이앱 서비스) 해가지고 갔다가 오면 훨씬 빠른데, 그걸 사용을 안해봤거든.

참여자4: 우선 제일 큰 문제가 결제 방법일거라고요. 이걸 온라인 선상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면 (서비스 이용을) 영 못하는 거죠.

참여자1과 참여자4 모두 서울특별시의 공공서비스인 ‘따릉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에 온라인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편리함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여자1의 경우 고령임에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강 상태였으며 사용할 의향 또한 있었으나 공공서비스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이 과정에서의 번거로움과 생소함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또한, 참여자4는 이렇게 디지털 기기로 제공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결제 시스템이라 지적하였다. 참여자4의 진술을 통해서 카드를 서비스 상에 등록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의 온라인 상 결제 진행 절차의 복잡성은 노인의 공공서비스 접근에의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었다.

3.2.2.2. 코로나시대 디지털 불평등

(1) 마스크 수급 관련 어려움

참여자8: 어느 약국을 갔는데, 그걸(마스크) 사러 갔는데 다 팔리고 없다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약국을 갔어요. 갔더니만은 한 사람당 두 개만 판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만 약국도 줄을 주욱. 겨우 세 개를 샀어요.

참여자8: 오후에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후에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진짜 주더라고. 그래서 사고 오고 그랬어요.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죠. 사람들이 이 줄을 새벽부터 엄청 길게 섰어요. 시간은 없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런 마스크가 없으니까 천으로 댔는 거 그걸 그냥 쓰고 그랬지요. 마스크도 천으로 된 거 안 좋다 하니까 또 겁나서 위생마스크 쓰고 그랬지요. 교회에서 마스크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걸 교인들이 나눠줘서 그것도 쓰고.

참여자10: 동사무소에서 지원해주는 걸 계속 쓰고. 부족해서 약국 가서 샀어요. 번혔나. 나이가 있다. 거기에 맞춰서 사 오고 그랬었어요. 부족하니까 기다려서 이쪽 약국 갔다 저쪽 약국 갔다가 하다가 그랬었어요.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인터넷을 통해 공적마스크배부제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터넷을 사용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참여자8은 초기 공적마스크 제도가 실시되었을 당시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제공하는 재고 알림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못해 직접 이곳저곳 약국을 돌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었음을 진술했는데, 이는 디지털 격차로 인한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 접근에서 더 심화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2) 재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지 못함.

참여자2: 지인 중에는 방한 마스크나 코로나랑 무관한 마스크 쓴 경우도 많아요.

하나에 1500원씩 했으니까. 어른들이 사기에도 부담스러우니까. 하루 쓰는데. 그래서 주변엔 방한 마스크 빨아 쓰는 애들도 있었고 그랬죠.

참여자9: (확진자 및 동선 정보) 이웃집에서 말로서 말로 전해 들어서 알지.

참여자10: 최근에 롯데 마트에 (코로나-19)감염자 왔다 갔다고 메세지가 왔었어요. 그런 걸로 아는 거지.

참여자10: 빨아도 써봤는데요. 이게 빠니까 막 이렇게 막 솜털 같은 게 일어나고 부드러워지고. 못 쓰겠더라고. 할머니들이 알뜰하셔서가지고 빨아서도 쓰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참여자2의 지인들은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방한 마스크 등 감염병 차단 효과가 부족한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마스크를 빨아서 쓰는 등 올바른 마스크 착용 수칙 또한 제공받지 못하셨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확진자의 이동 동선 정보를 제 때 파악하지 못하여 불안함을 느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참여자10의 사례를 통해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다른 경로로 도움을 받는 데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접근성에 훨씬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3)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

참여자8: 처음에는 막 또 교회도 딱 막혀있으니까. 아우.... 막 이거는 불안해 죽겠을 거예요. 불안해서 교회를 못 가니까 막 불안하고 막 미치겠더라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몇 명까지 오라하니까 가슴이 부웅 튀는 것 같아. 눈물도 나고 막 안절부절할 수가 없어요. 확진되면 어떻게 하려나. 그래가지고 막 불안해서 내가 우리 아저씨랑 막 싸우고. 나는 교회 안 가니까 막 갑갑해 죽겠고 막 여기가 다 터져 나가는 거야.

참여자5: 사실은 sns에 올렸다가는. 우리가 이 일하다가도도 편할 때 이제 한 번 해보면 욕지거리가 막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한 번 시도했다가 척 없애 버렸어. 괜히 이렇게 주책맞은 소리 올렸다가 괜히 (욕먹을까봐)

참여자6: 그거(sns)는 남들한테 이제 소식 전하는 거. 그런 거나 이제 좀 이렇게 전하고 싶지 뭐 그렇게 막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남한테 소식 전하고 잘 있었나 이런 거 보는구나. 전하고 싶지.

코로나-19로 대표적인 사회적 연결망인 교회, 복지관, 경로당 등이 폐쇄되었을 때 연구참여자들이 느낀 심리적 불안감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참여자8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연결망 단절에 대해 ‘가슴이 답답하다’, ‘불안하다’, ‘갑갑하다’ 등의 진술을 반복하며 큰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sns 및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소통 경로를 다양화하고 소속되는 사회집단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욕구는 있었으나, 사용 능력이 없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온라인 사회적 관계망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참여자6은 스마트폰을 통해 타인과 소식을 전하고 소통하고 싶다는 의사를 진술하였으나, 문자 입력 등을 하지 못하는 상태의 낮은 디지털활용능력을 지니고

있어 그렇게 할 수 없으며, 본인의 앞으로 온 메신저 등은 읽기만 하고 대부분 전화를 통해 소통한다고 밝혔다.

(4) 도움 요청의 어려움

참여자2: 지하철 타고 가면서 젊은 분 옆에 앉아 계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거나 물어보려고 해도 불편해 한다고. 그니까 그냥 얘기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남의 기기를 만지는 것조차 싫어해요.

참여자9: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더라고요. 무시하고, 노인이 금방 전염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 이전 주로 길을 묻거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가며 도움을 얻곤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이후 신체적 접촉을 꺼리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로 인해 대면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참여자9는 도움을 청하고 거절당하는 과정에서 겪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3.2.2.3. 노인간 정보활용능력 격차

(1) 삶의 배경과 환경이 다름

참여자3: 나도 xx부터 했고 얼라이즈 뭐 하여튼 뭐 엑셀이니 포토샵이니 뭐 그런 걸 많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PC라든가 은행,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뭐 그런 건 다 해요.

참여자4: 직장 다닐 때 컴퓨터를 접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그걸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워.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이걸 맨 처음에 하기는 아무래도 좀 힘들죠.

노인층 내부에서 정보활용능력의 수준 자체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활용 능력 수준의 차이는 직무 경험 등 직접적인 경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참여자 3과 참여자4는 직장 근무 시 컴퓨터 사용 직무를 맡았기에 이후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도 스마트폰의 기술을 익히는 데 거부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직무 경험이 없는 참여자4의 주변지인들의 경우 전화, 메시지 등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만을 사용할 뿐 추가적인 정보 활용을 능동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못함을 진술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3.2.2.4. 심리적 격차

(1) 새롭고 낯선 것을 학습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

참여자3: 그게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문을 달아요. 오히려 안 오려 하고. 이걸 모르는 걸 새로 하려면 두려운 거야. 떨리고 또 어려워. 우리는 1 + 1은 2인 걸 알지만 처음 아는 사람이 1 + 1은 2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참여자3: (배움의) 장은 거의 뭐 마련됐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힘드니까. pc만 해도 벌써 떨리는데. 뭐 떨려가지고 뭐 그냥 그러는데. 참 어려운 이야기.

참여자6: 나이 잡순 양반들이 금방 들어도 있어 먹고 이런 게 있어요. ... (중략) 지금 어른이 되어 갖고 다 늘어갔고 세상 그 다 머릿속에 다 넣어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걸 배우라고 하면 어렵죠. 다시 새로운 거를 이제 나이 먹어 갖고 그걸 머리에 넣으려고 하니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자꾸 있어 먹는다니까요. 그게 문제지요.

참여자7: 문자를 (치는 걸) 이렇게 좀 배우긴 배웠는데도 잘 못 놀리면 다른 게 막 나오고 다른 글씨가 좀 잘못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틀렸구나. 내가 이라 그래서 아이고 안 해야지. 아이고 괜히 이거 실수다. 내가 이래갖고 부끄러워서 남한테 그거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 좀 배워야지 그림.

연구참여자들은 노인층이 정보활용능력을 습득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새롭고 낯선 기술에 대한 생소함과 두려움을 언급했다. 신체적으로도 노쇠하여 기억력 및 학습력이 감퇴한 상황에서, 정보활용 학습 과정에서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참여자7은 면담 중 지속적으로 부끄러움과 염려, 걱정 등의 감정들을 피력했다. 이는 디지털 기기 사용 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염려와 자신의 미숙한 정보 기기 사용 경험을 타인에게 보이게 되는 상황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2) 학습된 무기력¹⁶⁾

참여자2: 우리 애엄마도 이게 스마트폰이 아니라 전화기야. 알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참여자6: 그냥 이렇게 (현재 상태로도) 불편함이 별로 없으니까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안 한다). 나이 먹으니까.

참여자9: (스마트폰) 없고 전화 주고 받는 용도로만 가지고 다니지. 배우면 되기는 되겠지만 늙은 이가 하지도 못할 거 뭐하러 해.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자신의 의지대로 온전히 사용할 수 없었고,

16) 학습된 무기력은 심리학 용어로,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연히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것을 배우는 과정 또한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일종의 학습된 무기력이 디지털 기기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려는 능동적인 시도 또한 포기하게 만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점일 것이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기력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일상에서 노인이 자신의 의견과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 큰 심리적 장애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3.2.3. 정보화교육의 현황

3.2.3.1. 정보화교육의 구성

(1) 강의 진행상 한계

참여자8: 복지관에서 (정보화교육)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달도 제대로 못 했나 봐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그래 돼 갖고는 이제 다 안 된다고 하니까는 영상으로 하는데 이걸 할 줄 모르니까 영상도 보지도 못하고 내가 그래갖고 서는 이제 손자들한테 야 이거 강의인데 좀 해놔달라고.

참여자8: 스마트폰 이걸 가르쳐준다고 그걸 하더라고. 하는데 한 달 해도, 배운다고 배워도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못 가고 하니까. 몇 달을 가야 이것도 배우지 한꺼번에 다 배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 (기간)도 한 달도 못돼.

심리적 장벽과 미숙함에 비해 부족한 강의 시간 편제, 비대면 매체를 통한 수업 수강 자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 없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정작 정보 취약계층에 속한 노인들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기회가 더 사라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2) 강의 내용의 아쉬움

참여자1: 지금 이거(정보화기기) 보급은 다 돼 있어도 이거. 이걸 저 어떤 교육을 받고서 이걸 실질적으로다가 습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그 아직까지 시스템이 없어. 자치센터 같은 데 보면은 구민회관이 이런 데에 그런 거 뭐야 요일별로다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또 관심이 있어야지.

참여자5: 손자들한테 이렇게 가서 배우면 조금 손자들은 상세해.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들은 가르켜요. 이렇게 직접 이제 거기 가서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손자들한테 배우면 손자들이 할머니 이걸 이렇게 해 저건 이렇게 해. 그래서 손자들한테 조금 배워갖고 그래. 조금은 했는데 잘하지 못하고 또 또 있어 먹어요.

참여자1은 기존의 정보화교육이 단순히 정보화기기를 손에 익히는 차원을 넘어서는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한 참여자5의 진

술을 통해 정보화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대다의 강의형 방식보다는 손주 등의 친지가 직접 아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이용 절차를 반복하여 알려주는 교수 방식이 적절하다는 것을 추론해볼 수 있었다.

3.2.3.2. 참여자 다양성 부족

(1) 온라인 신청, 접수의 실질적 제약 (초기 접근의 어려움)

참여자10: 등록하기가 어려워서 그만됐죠. 빨리 해야 해요. 금방 마감돼서. 직접 가서 해야 해요.

참여자4: (복지관 교육 프로그램을) 몇월 며칠날 신청 하라고 여기로 떠요. 그러면 이제 그날 아침에 기다렸다가 9시부터 몇 월 며칠 9시부터 그걸 이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럼 여덟시 50분쯤 쳐가지고 해놓고 광 클릭해야돼고. (자녀가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한 건데. 그게 좀 문제는 있더라고요.

참여자10과 참여자4의 진술에서, 여러 공공 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 역시 정보 활용 수준에 따라 차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복지관 및 공공 기관 등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여가·문화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보 활용 수준이 낮은 노인들은 신청 절차 자체에 대한 실질적 제약을 다시금 겪는 것이다.

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 등이 거점이 되어 진행되는 평생교육은 노인 삶의 질을 올리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진술을 통해 디지털 격차가 노년 삶의 질과 직결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기회에서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참여자4의 경우, 지능정보화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화교육마저도 정말 소외된 노인들은 받을 수 없으며, 자녀 등 디지털 기기에 능통한 외부인의 도움에 의존하여서만 신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실제적 수요자에게 정보화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교육 참여 및 배움의 기회 편차 심화

참여자2: 제가 컴퓨터 교육을 신청해서 받아보기도 하고 여러 번 해봤는데, 동사무실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하는데 가만 보면은 교육 받는 사람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계속. 안 되는 사람은 안 오고.

참여자2: 그런데 이런 교육이 있다고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지. 그래서 그걸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뭔가 그 자꾸 뭐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안내를 누

가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죠.

노년 삶의 질의 보장을 위해 모두에게 보편 보장되어야 할 평생교육의 기회가 정보활용도에 따라 차등이 존재한다는 문제 의식이 드러났다. 이러한 접근 기회 편차는 곧 교육 참여 기회 편차 심화로 이어진다. 교육 접근 기회를 얻은 노인은 정보화교육을 수료하면서 정보활용능력을 함양할 뿐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정보활용능력 및 정보접근수준을 더욱 향상하여야겠다는 모종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여러 수단들을 통해 더욱 자신의 정보활용능력을 계발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된다.

반면, 교육 접근 기회를 얻기 힘든 정보소외계층 노인의 경우, 직접적으로 아는 지인이거나 교육 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안내받는 상황 정도가 아니라면 정보화교육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게되더라도 배움의 기회를 먼저 포기하게 된다는 문제 상황이 부가적으로 포착되었다.

(3) 시공간적 장벽

참여자1: 해놓는다고 해도 보편적 시간이 많이 열려야 가서 그걸(교육 수강)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마냥 일주일 갔다가 쪽 해놓고 시간을 맞춰 가야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런 교육이) 있어도 활용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집에 소일거리 없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할 수가 없죠.

코로나-19의 발발 직후, 대면 모임 및 교육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공간적 제약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ZOOM,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정보화교육이 일부 대체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비대면 방식의 경우 교육 접근 자체에 제한이 있다는 점과, 대면으로 1:1 교습하는 것만큼의 교육 효과를 발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 한계점이 여럿 존재한다. 한정된 교육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된 공간적 제약이 정보화교육의 실질적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3.2.4. 디지털격차 해소의 방향성

3.2.4.1. 접근성 개선

(1)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와 사회적 분위기 형성

참여자4: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시간에 그런 에티켓,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방송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정보가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자꾸 이제 워낙 저기(엔터테인먼트)로 다 되다보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이라도 자꾸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위한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

다 라고 하는 거는 계속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참여자4: 그리고 노인들이 특히 즐겨 듣는 방송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종교 방송이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노인 분들이 스마트폰 기능 얼마나 쓰세요, 모르는 거 어디 어디 가면 이런 거 이런 거 해줍니다. 이런 거 교육해줍니다. 이렇게 그런 쪽에서 캠페인을 해줘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정보 탐색 경로로 뉴스와 매스컴 등의 특정 매체만을 고정적으로 사용한다고 응답한 대부분의 참여자 진술을 확인했다. 또한 노인의 정보 활용 현황 및 정책 개선 방안에 관해 가장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참여자 4의 진술을 통해, 방송 매체 및 매스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캠페인 전개가 정보화 교육과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노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노인으로 하여금 정보 활용 능력을 스스로 개선하게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장려할 수 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었다.

(2) 정형화·체계화된 교육 커리큘럼의 필요

지능정보화기본계획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정부는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특히 디지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전국민 디지털 배움터사업’ 등 직접 찾아가는 스마트·인터넷 활용 현장 교육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전국의 구청 및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거점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위주의 교육 방식이 중단되었던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이를 포함해 실제 정보화교육을 경험하였던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노인을 위한 국내 디지털 교육의 미흡 지점이 상당 부분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같은 고령층 내에서도 디지털활용능력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과정의 설계가 대부분 일방향의 강의식 클래스로 계획되어 이러한 수준별 편차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보화교육을 수강하였던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 교육의 내용과 진행 방식에 관해 상당 부분 아쉬움을 진술하였던 바 있다.

이처럼, 고령자 대상 디지털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들이 계속해서 계획 및 실행되고 있으나, 교육의 직접적 수요자인 고령층이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과, 통계적으로도 고령층 디지털 정보화역량 수준에 정체가 있다는 사실은 노인을 위한 디지털교육의 실효성과 적극성에 하여금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조진실 외 3인(2021)은 국내 노인 세대를 위한 디지털 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로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¹⁷⁾. 그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노인디지털교육에 배정된 예산 자체

17) 조진실, 송상현, 김은정, 이주영 (2021) 노년층의 디지털기술교육의 과제: 노인수강자, 교육자, 정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5:1, 115-123

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가 배정한 고령층 관련 정보화 교육 예산은 6억 원에 불과했고,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예산의 경우 당초 계획이었던 600억 원 보다 100억 원 감축되어 편성되었다. 근본적인 예산 부족의 문제는 곧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실 교육 진행 과정에서의 미흡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해당 연구보고서는 노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 인터뷰의 분석을 통해 노인 대상 디지털교육의 교육 과정이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교육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교육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노인 수준에 맞는 교재의 개발 및 적용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3.2.4.2. 어르신 ICT 선도자 정책의 실질적 활성화

참여자4: 그게 사실은 그런 교육을 노인의 교육을 나 같은 노인이 해야 돼 사실은. 근데 나 같은 놈이 뭐. 그거 누가 누가 시켜줘. 재능기부 내지는 자원봉사 이런거 까다로워 자격이 있냐 없냐 따지는데.. 하다가 손 든거 많아요.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너무 많은 자료와 절차가 필요하니까.

참여자 4는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의 교육을 같은 노인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나, 노인 강사직이 요구하는 자격과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워 디지털 활용 수준이 높음에도 강사직에 지원하지 못했다는 경험을 진술하였다. 참여자4가 언급한 ‘어르신 ICT 선도자 정책’의 경우 고령층 ICT 사회참여활동사업의 일환으로 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 진행되었던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현재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는 사업으로, 참여자 4의 진술에서 노인 강사를 뽑는 행정적 절차에서 정작 교육의 실질적 당사자인 노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 노인 복지 및 노인일자리 정책에서는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일명 ‘노-노 케어’가, 고령층 대상 디지털정보화교육에서는 크게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기존의 어르신 ICT 선도자 사업이 1회성 공모 사업으로 종료된 이유에 대한 내부 분석과 참여자4의 진술 등에서 미루어보아 알 수 있는 행정 절차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강사의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1:1 대면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자로서의 노인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실질적 활성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3.2.4.3.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

(1) 정보 활용에 대한 노인 인식 개선

참여자6: 새롭게 배운다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좀 부담스러워. 그냥 이렇게 이거 가지고도 불편함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배우려고 노력

을 많이. 나이 먹으니까 그렇더라고.

참여자9: 하고는 싶은데.. 하고야 싶지. 내가 꼭 돈 주고 사야 될 그런 거는 아니니까. 내가 무슨 회장이 되나. 사장이 되나. 뭐 얼마나 전화 받는다고 하루한 통화 두 통화 받으면 다 받는데 굳이 그냥 굳이 그 저런 거(스마트폰)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참여자10: 못 하나까 안 해보지. 배우면 되기는 하는데 별로..(배우고 싶지 않다.)

디지털활용수준이 중급 이상으로 공공서비스 이용 및 스마트폰 기본 기능을 활용 가능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대부분 정보화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교육을 받고 싶지 않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제시된 이유로는, 첫 번째로 정보화교육이라는 교육의 목적 자체를 떠나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는 행위 자체가 부담되고 불편하다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특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교육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있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이 생활 정보 활용 및 공공서비스 이용 등의 정보서비스 처리를 도울 수 있는 경우, 특히 디지털활용능력의 향상 욕구 및 필요성을 낮게 느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심층 인터뷰 진행 결과, 결국 노년기의 디지털활용능력 고취는 그 필요성에 대한 노인의 인식과 자각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보 활용에 대한 인식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고, 노인이 자발적으로 정보 활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되며,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화 교육 인프라 역시 발맞추어 발전해야 할 것이다.

(2)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참여자1: 배워야지 알지. 그냥 깔아놓고 그냥 안하면 또 잊어먹어.

참여자3: (TV프로그램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몇십 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야 너 어렸을 때 내가 이거 몇 백 번 가르쳐줬다'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하기 어렵고 또 필요성이 문제고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해주는 거. 좀 필요하게끔 사회가 (인식변화 등이 형성) 되고 또 본인들도 이제 배우려고 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참여자1 어르신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스마트폰 기능의 경우 주로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사용하며, 기능 활용을 통해 편리함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한번 서비스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를 주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억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쉽게 잊어버린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자3 어르신은 학습의 어려움이 본질적으로 노인에게 더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노인의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기다려주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어린이들이 처음 무언가를 배울 때 반복적인 강습으로 어린이의 학습을 점진적으로 돕듯, 노년층 대상의 정보활용교육 역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반복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행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노년층의 정보화 학습 과정을 기다려주는 사회 분위기 및 인식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자9: 모든 게 다 불편해요. 모든 게, 마스크 써야 되지, 사람들도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지 뭐. 모든 게다 불편해. 글썸(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도있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더라고요. 무시하고, 노인네가 금방 전염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QR 코드로 방문 등록은) 해본 적 없어요.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늙어서 가르쳐 주거나 하겠어? 안 알려줘요. 병 옮을 줄 알고 안 해줘.

전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에서 접촉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조차 어려워졌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를 통해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서 노인은 정보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소외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좀더 체계적인 도움을 받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정보화 사회에서 노인의 권리가 새롭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는 권리주체로서 노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의견을 공유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 정보소외계층에 해당하는 노인의 디지털 소외 현황에 대한 질적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서울권에 거주하는 1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가속이 붙은 비대면·디지털화 속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와 관련한 노인의 권리를 인권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를 정보기본권의 사회권적 성격의 검토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들의 실효성을 해당 정책의 직접적 수요자인 노인의 진술 분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재난정보접근권의 보장 상황에 대한 분석 결과, 같은 고령층 사이에서도 디지털 활용 능력 간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

접근 및 활용 능력의 편차가 재난정보 접근 상황에도 영향을 미침이 드러났다. 또한 노인의 일상생활 속 정보화기기 활용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 낮은 디지털 역량을 지닌 연구 참여자의 경우 일상생활 및 공적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거의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디지털 기기의 활용을 도울 주변인이 부재한 재가 독거 노인층의 경우 디지털 격차로 인한 공공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인권 침해의 층위에서 보아 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사회의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노인은 스마트폰과 같은 ICT기기의 직접활용보다는 신문, 매스컴, 뉴스 등의 일방향 매체가 훨씬 심적으로 편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ICT 기기의 이용 자체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인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보다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교육 대책의 실효성을 권리 실질에 맞게 재검토해볼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살펴본 결과 정보화교육은 인지도 자체가 아닌 교육을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 접근 제한, 그리고 심리적 장벽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ICT 기기 및 인터넷 활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정보화교육에서 프로그램 신청이 인터넷을 통한 선착순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교육을 받던 사람만 계속 교육을 받는 등 디지털 격차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정보활용능력이 낮은 노인은 정보 수집의 매체를 기존의 TV 뉴스 등에 의존하고 있었고,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노인 또한 스마트폰보다는 신문, 매스컴, 뉴스 등의 일방향 매체가 훨씬 심적으로 편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교육 신청 및 교육 정보획득 등에 있어 큰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정보화교육의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사회참여 및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보화교육을 받겠다는 실질적 의지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정작 이 교육이 필요한 이들은 정보화 교육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활용능력이 사회참여에 필수가 된 현재 지능정보사회에서 이는 노인의 사회적 소외가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장벽을 반드시 해소하여야 한다. 특히 ICT 기기의 이용 자체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인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리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보다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능정보화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근본적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디지털 격차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노인이 사회참여를 위한 정보기본권을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더 큰 사회적 소외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은 이 문제를 정부대책만이 아닌 사회 전체에서의 인식개선이 될 것이며 디지털 격차해소에 대한 필요성을 그들의 권리로서 일깨울 수 있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러한 인식 개선이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

론도 도출할 수 있었다. 시장에서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노인 집단 자체를 ‘고객’으로서 인식하며 적극적 권리주체로 인식하는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노인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의 디지털 기기 제공이 아니라 더 나아가 노인을 동등한 권리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권리주체로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노인층의 인식개선 또한 이뤄질 필요도 있음을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통해 도출해볼 수 있었다. 이는 노인층 본인이 디지털 활용 능력의 향상 욕구 및 필요성을 낮게 느끼고 있음에서 기인하는데, 디지털 격차해소가 본인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기회임을 노인층 안에서도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노인층 안에서의 총체적 인식개선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책 및 실질적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키워드로 ‘인권’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를 재접근해야 함을 제시한다. 기존의 정책과 법안이 디지털 격차 해소의 그 중심에 정부를 두었다면 (디지털 격차해소를 국가가 주체로서 시행하는 여러 정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수혜 대상 중 하나로 노인을 두는 등), 본 연구는 그에 앞서 정보기본권의 주체로서 노인을 이 문제의 중심에 두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로써 인권존엄권에 해당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그리고 자유권에 해당하는 정보접근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사회권에 해당하는 사회참여권 및 소통권, 청구권에 해당하는 법 절차적 권리 등 따라서 노인 인권의 측면에서도 노인의 정보 격차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해소가 요구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 앞에서 논의된 정보기본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의 관점에서의 정보기본권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에서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더 이상 노인을 자선 등 원조만 주는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사회 참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기존 노인인권의 중심 논지와 맥락을 같이 한다.

더 명확한 결론 제시를 위해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국가의 의무로만 디지털 격차를 바라봤을 때의 문제점과 권리차원에서의 재접근의 기대효과를 나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 문제 전체에 이 관점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보이고자 한다.

1) ICT 선도자에 대한 자격 요건 형식 절차 등 간소화

국가의 의무가 아닌 권리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를 바라볼 때 가장 큰 장점은 공무원, 관공서 등 국가 인력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네스코 등 여러 국제 기구에서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의 국민들을 돕고 자발적으로 함께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 기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노인들의 실질적 디지털 격차, 그리고 정보화 교육에 대한 장벽을 사회 구성원들이 인권 차원에서 보완해줄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정보화교육을 국가가 제공해야 할 의무적 매뉴얼이 아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대책으로 바라본다면 국가 기관 인력 및 공간 등의 한계로 인해 교육 제공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다른 방법을 간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한 노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끼리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ICT 선도자 제도는 노인 당사자 안에서 연대적 권리 주장 및 보완이라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다만 인터뷰(3.2.4.2(2))에서도 확인하였듯이, 현재 국가의 의무에서 비롯된 ICT 교육 선도자는 그 자격요건이 노인이 감당하기에 매우 까다롭고, 당장의 실생활과 정보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수준 이상의 고도화된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요건과 형식 절차를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준으로만 간소화하는 것이 노인의 실질적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며, 다만 이는 국가 구성원 모두가 이를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로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독거노인을 위한 ICT 도우미 마련

특히 디지털 격차 문제에서 본 연구에서 발견한 시사점은 노인 간 디지털 격차이며, 이는 교육 참여 및 배움의 기회 편차 심화 양상에서 기인한다. 지인이나 가족 및 직접 안내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이 정보기본권에 대한 중요성 및 교육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근 기회와 교육 신청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을 위해 식사 제공처럼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알리고 일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인터넷 신청 외에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신청 간소화 및 균등한 기회 제공

재난정보 및 디지털 교육 수강 기회에 대해 기존 매체를 통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인터뷰와 정보화교육기관 신청 매뉴얼을 종합한 결과, 디지털 교육 신청 또한 인터넷, 선착순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 TV 매체에 정보 수집을 의존하는 노인 연령층에게 접근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도 처음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신청 안내,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 실시간 재고 정보 등을 모바일 앱 외에도 기존 매체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TV 방송 편성이 필요하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정보기본권이 모두 보장받는 순간까지 인터넷으로 인해 기존 TV의 정보제공 역할이 사라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 해결방안을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은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격차에 대한 여러 접근을 국가의 의무이기 전에 고연령 사회구성원의 권리로서 그 실질을 재검토해보자는 것

이다. 사회적 정보기본권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사회 인식 개선 없이 국가기관 내 형식과 필요 매뉴얼만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인식 개선,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정보화 사업의 일환이 아닌 기본권 보장을 위한 모두의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정보기본권의 합의 및 인권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정보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었으나 정보사회의 발달 속에서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그것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과 삶의 질로 직결되는 현 사회에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수준의 보장이 법적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인권의 개념을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망했을 때 노인 인권은 ‘노인이 존엄을 지키고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권리 전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¹⁸⁾ 노인 또한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를 함께 보장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인인권 역시 인간존엄권과 자유권, 사회권 그리고 청구권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인인권의 각각의 영역과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연결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 중 사회권의 관점에서 정보기본권을 인권의 한 분야로 집중 조명하여 노인인권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밝혀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노인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을 직접 현실에서 활용해보고, 이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보면서 실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 연구가 더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의 주장이 디지털 격차 해소에 좋은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를 인권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사회참여를 위한 정보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하더라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시공간 등의 자원은 일부 한정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 인권 차원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 효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복지관이나 여러 전문가의 현실적 시선에서도 재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 어떤 것이 더 필요할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의미의 정보기본권의 관점에서 디지털 격차의 실효성을 재조명 하였던 것을 시작점으로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연구 또한 인권적 차원의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 종합보고서>, 2018, 17~18면.

참고문헌

- 강월석, & 양해술 (2012). 스마트융합시대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10(1), 29-38.
- 국가인권위원회 (2018). 노인인권종합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2015). 정보인권 보고서, 서울: 휴먼컬처아리랑.
- 권건보 (2011). 정보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 공법학연구, 12(4), 3-33.
- 권중돈 (2016). 《인권과 노인복지실천》. 학지사, 2016.
- 김상겸 (2017). 정보기본권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법무부 정책용역연구.
- 김현철 (2011). 정보기본권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준 (2021).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의의와 한계. KISO JOURNAL, 42, 25-28.
- 배영임, & 신혜리 (2021). 비대면 시대의 그림자, 디지털 소외. 이슈&진단, 1-25.
- 이나윤, & 강진호 (2020). 코로나-19 사회적 사태를 경험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정서적 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6), 171-179.
- 이상훈 (2005). 정보화사회의 인권과 사회복지. IT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2005.67 (2005), 1-108.
- 서형준 (2014). 디지털 격차 연구에 대한 비판적 논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657-666.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9). <알기쉬운 노인인권 길라잡이>.
- 신혜리, 윤태영, 김수경, & 김영선 (2020).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고령자 일상생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술 사용과 노인복지관 참여 제한을 중심으로 -. 노인복지연구, 75(4), 207-232.
- 장호순 (2002). 정보화 사회의 기본권. 언론과법, 1, 73-94.
- 조진실, 송상현, 김은정, 이주영 (2021). 노년층의 디지털기술교육의 과제: 노인수강자, 교육자, 정부관계자를 중심으로,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5:1, 115-123.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020 디지털디지털 격차 실태조사.
- 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09).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결과 보고서.
- 홍선기 (2018). 정보기본권 - 독일 및 EU를 중심으로-. 헌정제도연구사업.

기사

- 김영선. [한국노년학회칼럼] 코로나 시대 노인의 디지털 격차. 실버아이뉴스, 2020년 7월 17일,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9> (접속일: 2021년 9월 24일)
- 이소라. 정부, 지능정보사회 위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발표. 아주경제, 2018년 12월 30일, <https://www.ajunews.com/view/20181230104023414> (접속일: 2021년 9월 20일)

관련 법령

〈국가정보화기본법〉

〈노인복지법〉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 6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18~2022)〉

〈지능정보화기본법〉

온라인 성폭력 논의 속 여성혐오표현과 성적 시민권

최진실

온라인 성폭력 논의 속 여성혐오표현과 성적 시민권

최진실*

※ 저자의 동의가 없어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pp. 291~309)

* 최진실(아시아언어문명학부 15)

폐지수집노인의 안전권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이승민, 안유빈, 김건운, 박나은

폐지수집노인의 안전권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이승민, 안유빈, 김건운, 박나은*

[목 차]

- I. 서론
- II. 폐지수집노인의 안전권
 - 1.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 2. 안전취약계층인 폐지수집노인
 - 3. 소결
- III. 폐지수집노인의 현황과 실태
 - 1. 폐지수집노인 현황
 - 2. 폐지수집노인의 교통사고 위험
 - 3. 폐지수집노인의 도로교통법적 성격
- IV. 선행 연구 및 입법 동향
 - 1. 선행 연구 분석
 - 2. 입법 동향: 이채익 의원 발의안 및 검토보고서
 - 3. 소결
- V. 연구방법
 - 1. 폐지수집노인 손수레 운행환경 분석
 - 2. 설문조사
 - 3. 위험성 분석
- VI. 연구결과
 - 1. 폐지수집노인 손수레 운행환경 분석 결과
 -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 3. 위험성 분석 결과
- VII. 법제 정비안 및 기대 효과
 - 1. 고려 사항
 - 2. 개정안
 - 3. 기대효과
- VIII. 결론
 - 1. 연구의의
 - 2. 연구한계
- 참고문헌
- 부록

* 이승민(경영학 18) 안유빈(자유전공학부 17) 김건운(중어중문학 19) 박나은(사회복지학 19)

[요약] 안전권이 기본권의 범위에서 논의됨에 따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입법 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안전권의 보장이 다른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한 섬세한 입법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안전의 상대적 특성으로 인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필수적이게 되었다.

본고는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폐지수집노인의 현실을 조명한다. 특히 도로교통법 상 손수레가 ‘차’로 정의됨에 따라 차도에서의 운행을 강요받고 있는 그들의 현실을 주목한다. 본고는 폐지수집노인의 운행 경로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이 처한 위험 상황을 분석하며, 안전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밝힌다. 이와 함께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권과 다른 기본권들 사이의 균형 잡힌 법제 개선안을 제안한다.

I. 서론

울리히 벡(Ulrich Bech)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에서 위험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평등하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음을 말했다.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Ulrich Bech, 1992).”라는 구절은 그의 저서를 관통하는 요약적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위험을 방지함에 있어 구성원 모두를 평등하게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2017년 기준 약 66,000명으로 추정(변금선·윤기연·송명호, 2018)되는 폐지수집노인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폐지수집노인들은 폐지를 수집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통사고가 날 위험을 꼽고 있다(김춘남 외 4인, 2020). 지난 5년간(2015-2019년) 폐지수집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폐지수집노인이 서울에서만 32명이 발생¹⁾한 사실은 폐지수집노인이 겪고 있는 교통안전 문제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직면한 현실임을 증명한다.

본 연구는 폐지수집 노동 행위와 교통법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현재로서는 폐지수집노인의 교통안전권을 보장할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일부 법령은 폐지수집노인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폐지수집에 사용하는 손수레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도로 주행만이 가능한 차로 분류되고 있다. 폐지수집노인이 보도에서 손수레를 끌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령에 따라 폐지수집노인은 차도 운행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손수레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고 이를 폐지수집노인의 노동 경험과 대조해봄으로써 해당 법령이 폐지수집노인의 실제 노동환경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손수레의 도로 운행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현행 도로교통법상 손수레의 법적 지위 설정 기준과 손수레에 대한 일반 시민의 보행 및 운전 경험

1)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국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

이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손수레의 법적 지위가 새롭게 정의됨에 따라 수반되는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검토한다. 분석 및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폐지수집노인의 교통안전권 보장을 위해서 현행 도로교통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논의한다.

II. 폐지수집노인의 안전권

1.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안전과 관련하여 국가에 대해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헌법으로부터 그 근거를 찾아 국가의 의무를 분명하게 확정함으로써 가능한데, 이와 관련하여 안전을 기본권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백수원, 2016). 이러한 경향은 공법학계의 안전권 연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홍완식(2013)은 ‘적극 국가’ 또는 ‘복지국가’적 맥락에서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안전확보가 국가의 중대한 과제임에 틀림없다고 말하면서, 대량의 재난이 상시화된 현대적 상황에서 안전권의 기본적인 내용은 각종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안전권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김용훈(2019)은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규정의 중요한 의의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요구되는 국가의 행위의무의 수준을 보다 선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함과 동시에, 이러한 안전권의 헌법상 명시가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기관의 보호 수준이 다소나마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가기관의 국민안전보호의무를 도출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안전권의 헌법적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공통점이 있다.

안전권의 기본권적 성격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에 대한 논의 역시 동반되었다. 홍종현(2021)은 헌법재판소가 안전과 관련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실시하면서도 그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의 헌법불합치 판결²⁾을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안전과 관련하여 국가의 보호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였다. 김대환(2014)은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의 도출이 국가에 대한 안전의무 부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어떤 내용의 의무가 국가에게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국가에 명시적으로 국민안전보장의무를 부과하는 헌법적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 결정.

한편, 추상적인 개념인 안전의 특성상, 안전의 의미에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법 중 가장 기본을 이루는 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의 정의에 사회재난으로서 교통사고를 명시함으로써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교통사고가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다. 재난의 법적 개념이 교통사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재난과 사실상 반의적 관계인 안전의 범위에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이 포함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³⁾에서,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와 관련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는 점을 통해,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포함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

그러나 안전권을 긍정하는 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2018년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안전권의 헌법상 명시적 신설을 제안하기는 했음에도, 그 회의록을 보면 관련 논의과정에 반대의견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안전권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그것이다.⁵⁾ 특히 안전과 자유의 관계 측면에서, 안전의 지나친 강조는 자유를 축소시킬 수 있다(Mackenroth, 2011, 홍완식(2013)에서 재인용). 그러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안전권의 기본권적 성격을 부인하기보다는 안전권과 다른 기본권과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섬세한 입법을 통해 안전권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안전권의 보장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의 심각성’, ‘안전권 행사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안전과 자유의 비례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소연, 2017).

한편, 국민의 안전권 및 국가의 안전보호의무가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헌법에서 안전권 침해 상황을 모두 열거하거나, 관련 조치들을 직접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권과 국가의 안전보호의무는 객관적 원칙규범으로 기능하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세부목표는 입법과정을 통한 구체적인 법률관계 형성과 이를 근거로 한 행정적 결정 및 집행을 통하여 실현(윤수정, 2019)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국민의 안전권 실현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적극적인 입법작용이 필요하며(전광석, 2015), 그 입법작용이 앞서

3) 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 결정.

4) 그러나 이러한 경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권으로서의 주관적 보호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이부하, 2019). 따라서 본 관례가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했다고 보기보다는, 안전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범위에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을 포함시켰다는 정도의 의의를 찾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별 기본권 주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일 텐데 이게 기본권 제한의 어떤 만능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국회사무처, 2017).

말한 안전과 자유의 비례성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완전한 안전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2. 안전취약계층인 폐지수집노인

안전권이 기본권의 범위에서 논의됨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논의 역시 활발해지게 되었다. 안전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그 표현과 더불어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⁶⁾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폐지수집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가 92.2%라는 연구결과(변금선·윤기연·송명호, 2018)에 따라 그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이미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들이 노인에 해당한다는 점으로 말미암아, 폐지수집노인이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됨은 자명하다.

안전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인에게는 위험으로 인지되지 않은 요인들이 안전취약계층에게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법제도의 파급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전문가의 신중한 검토 없이 법제도가 추진될 경우, 그 활용과 적용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은 파급력이 막대할 수 있다(김명엽, 2016). 이는 본고에서 지적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문제와 그 궤를 같이 한다. 도로교통법의 여러 조항이 자동차 운전자를 주요 고려 대상으로 함에 따라, 폐지수집노인이 마주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가 계속해서 존속하게 되고 폐지수집노인을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따라서 폐지수집노인이라는 안전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법제를 다시 바라보아, 보다 현실과 적합하도록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소결

교통연구가 Dinesh Mohan(2019)은 현대사회의 상호의존적 체계에서 개개인이 자신의 안전을 자유로이 통제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법·환경 등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전이 지역사회의 기본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고는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권에 대한 논의가 단순한 위험 회피의 영역을 넘어 기본적인 인권 향유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한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가 학계 뿐만 아니라 헌법 기관에서도 인정되기 시작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안전이 기본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9호의3.

권리로 인식됨을 밝힘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설계의 토대를 마련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법령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안전의 범위에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이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권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비례성 원칙에 따른 섬세한 입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실질적 안전권 보장을 위해서는 입법부의 작용이 절실함을 밝힘으로써, 본고가 안전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고안함에 있어 따르고자 하는 원칙과 입법적 개선안을 제언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한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기본권적 특성과 더불어 개개인마다 안전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안전의 상대적 특성으로 인해, 각 사회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세밀한 고려는 모두가 안전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었다.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폐지수집노인을 운전자로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도로교통법의 맹점은, 폐지수집노인과 같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입법부의 세밀한 고려가 부족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에 본고는 폐지수집노인의 입장에서 현행 교통법체계를 검토하여,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교통안전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III. 폐지수집노인의 현황과 실태

1. 폐지수집노인 현황

주로 특정 회사 혹은 조직에 가입된 형태가 아닌 자율적으로 노동을 수행하는 폐지수집노인의 노동 특성상 폐지수집노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찾아보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그 인구마저 제대로 된 통계자료를 찾아보기란 어렵다. 한편, 표본집단의 폐지수집노인 비율을 전체 노인 인구에 곱하는 방법으로 전국의 폐지수집노인 인구를 추정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의 폐지수집노인 인구는 66,205명으로 추정되었다(변금선·윤기연·송명호, 2018).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9년 서울시 맞춤형복지상황지도에서 폐지수집노인 인구 현황을 공개하였고, 서울시에만 2,935명의 폐지수집노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2019). 두 자료 모두 폐지수집노인의 인구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서울시 자료의 경우 직접 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보다 현실과 가까운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의 자료를 활용하여, 당해의 총 노인 인구 및 노인 경제활동 인구와 비교하여 폐지수집노인의 인구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계산해보았다.

(연도: 2019)

(단위: 명)

서울시 노인 인구	서울시 노인 경제활동인구	서울시 폐지수집노인 인구
1,478,664	409,900*	2,935

출처: 통계청, 2019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2019

* 근사치.

〈표1〉 서울시 노인 유형별 인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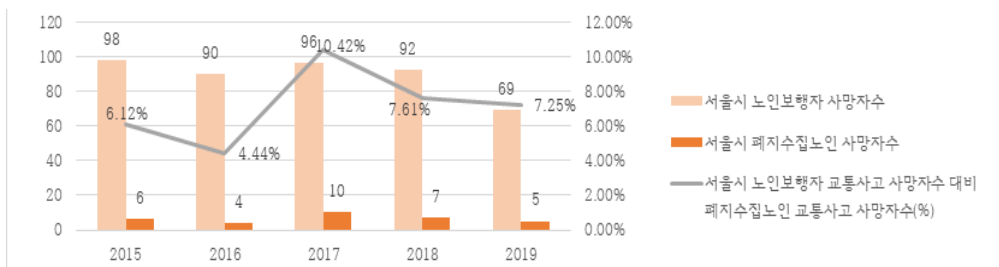
총 노인 인구 대비	노인 경제활동인구 대비
0.20	0.72

〈표2〉 서울시 폐지수집노인 인구비

우선 〈표1〉은 서울시의 노인 인구와 노인 경제활동인구, 폐지수집노인 인구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의 폐지수집노인 자료가 2019년 기준인 것을 고려하여, 서울시 노인 인구와 노인 경제활동인구의 자료 모두 2019년 당시의 수치로 계산하였다. 서울시 노인 인구는 1,478,664명, 노인 경제활동인구는 약 409,900명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총 노인 인구 대비 폐지수집노인 인구와 노인 경제활동인구 대비 폐지수집노인 인구를 구한 값을 나타낸 것이 〈표2〉다. 2019년 기준, 서울시의 폐지수집노인은 서울시의 총 노인의 0.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 경제활동인구의 0.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폐지수집노인의 교통사고 위험

폐지수집노인에 대한 통계자료 부족의 현실은 교통사고통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손수레는 차량의 기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이로 인해 폐지수집노인의 사고 데이터는 모두 기타 유형의 사고로 분류되어 정확한 수치를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서울지방경찰청은 매년 자체적으로 폐지수집 중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른 노인의 수를 파악해 오고 있었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하여 서울시 폐지수집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1〉 서울시 노인보행자 및 폐지수집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

〈그림1〉은 5년(2015-2019)동안의 서울시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폐지수집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추세선으로 나타난 것은 서울시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비 폐지수집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이다. 평균적으로 폐지수집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약 7.17%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도출한 서울시 총 노인 인구나 폐지수집노인의 인구비(0.20%)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를 제외하고자 보수적으로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도출한 노인 경제활동인구와 폐지수집노인의 인구비(0.72%)와 비교해도, 교통사고사망자비가 확연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비에 비해 교통사고사망자비가 더 크다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 폐지수집노인이 노인보행자보다 사망에 더 쉽게 이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폐지수집노인이 처한 교통사고 위험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3. 폐지수집노인의 도로교통법적 성격

「도로교통법」의 각 규정이 정의하고 있는 바와 관련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폐지수집노인의 법적 성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법령을 살펴봄에 앞서, 본고에서 도로교통법의 범위 내에서 서술하는 폐지수집노인은, 손수레를 운행하여 폐지를 수집하는 폐지수집노인으로 한정한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에서 손수레가 “차”로 분류됨으로 인해 손수레 운행 여부에 따라 폐지수집노인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며, 본고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 연구의 출발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해 논의의 모호성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의 범위 내에서 말하는 폐지수집노인이란 손수레를 운행하는 상태의 폐지수집노인으로 한정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의 용어 정의에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포함하여, 손수레를 차로 규정하고 있다.⁷⁾ 손수레가 “차”로 분류됨에 따라, 손수레를 운행하는 폐지수집노인은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운전자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보도통행금지’와 ‘길가장자리구역통행금지’이다. 한편 “차”에 속하는 손수레를 운행함에도, 폐지수집노인이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는데, 횡단보도를 통행 중일 때가 그렇다. 이렇듯 도로 유형에 따라 폐지수집노인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현상을 관련 법령 및 판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7)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1) 보도 통행 금지

「도로교통법」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차마의 보도 보행을 금지하고 있다.⁸⁾ 앞서 서술했듯이 손수레는 “차”에 속하므로, 손수레 역시 다른 차마처럼 보도로 보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만약 손수레가 법령을 위반하여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 해당 법의 시행령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⁹⁾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라는 포괄적인 표현 속에 손수레를 정의하였던 도로교통법과 달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손수레”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손수레를 차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길가장자리구역 통행금지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구역¹⁰⁾으로, 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에서는 보행자의 길가장자리구역 통행방법¹¹⁾을, 제13조제6항에서는 운전자의 길가장자리구역 통행금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보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손수레는 차에 해당하므로, 길가장자리구역에서의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편 보도에서와는 달리 길가장자리구역 통행금지 위반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범칙금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상황에 따라 보도 침범으로 간주하거나 안전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이 가능하다.¹²⁾

(3) 횡단보도 통행 시 보행자로 간주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도로횡단을 위해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¹³⁾로,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자로부터 보호받고 있다.¹⁴⁾ 앞서 다루었던 보도 및 길가장자리구역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에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범칙금을 통해 규제가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8)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9)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 “범칙행위 5.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10)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

11) 「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

12) 서울관악경찰서 교통관리계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를 통해 확인한 사항.

13)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

14)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수 있다.¹⁵⁾ 즉, 손수레 운전자는 횡단보호 위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이렇게 차로 분류되었던 손수레가 정작 횡단보호 위를 주행할 때에는 “보행자”로 간주되는데, 이는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횡단보호 통행 시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한다. 해당 상고심에서는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호를 건너는 사람을 운전자로 해석한 원심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호를 건너는 사람이 횡단보호 위를 걸어서 건너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의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며,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¹⁶⁾ 이 판결로 인해 횡단보호 위를 통행하는 손수레 운전자를 보행자로 간주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통행하는 도로의 종류에 따른 폐지수집노인의 법적 성격과 통행 허용여부, 범칙금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3 참조)

	차도	보도	횡단보호	길가장자리구역
법적 성격	운전자	운전자	보행자	운전자
통행 허용 여부	○	X	○	X
범칙금	X	3만원	X	△
근거 법률 및 판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761 판결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 시행령 상 별도의 처벌 규정 X. 상황에 따라 보도 침범 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 가능

〈표3〉 도로교통법에서의 폐지수집노인

정리하자면, 손수레를 운행하는 폐지수집노인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성격을 지니며, 이에 따라 운전자에 해당하는 여러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통행 금지에 관한 규제는 보도와 길가장자리구역의 통행 금지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의 제13조의 각항에 근거한다. 손수레가 보도와 길가장자리구역에서의 통행이 금지되고, 차도로만 운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손수레가 “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위반 시 같은 법의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횡단보호 위를 통행하는 손수레는 “보행자”로 간주되는데,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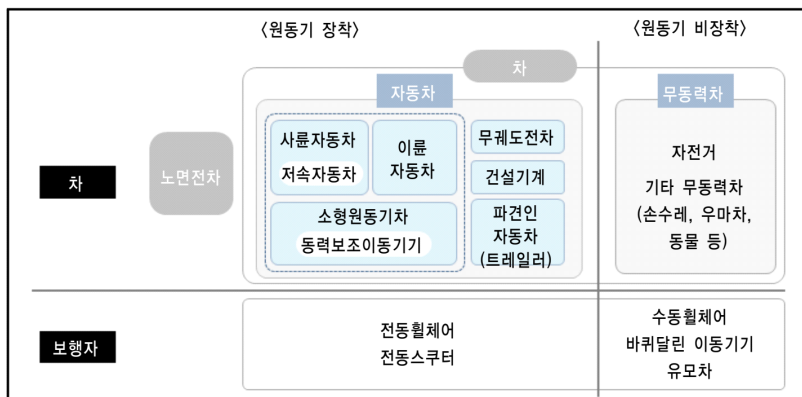
15)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11호.

16)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761 판결.

IV. 선행 연구 및 입법 동향

1. 선행 연구 분석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를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구분한다. 이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에서 제외한다.¹⁷⁾ 이러한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수단 구분은 점진적인 개정에 따라 구체화된 것으로, 1984년에는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차에서 제외되었고, 1991년에는 자동차와 구분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위가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로 확대되었으며, 1992년에는 건설기계가 차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차의 범위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조정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교통수단의 구분과 정의는 1962년 제정 도로교통법에 그 맥락을 두고 있으며, 지난 50여년간 그 근간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오래전에 형성되었고 오랫동안 바뀌지 않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수단의 구분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명묘희·정미경·최미선, 2013).” 이에 명묘희(2013)는 다음 <그림2>와 같이 도로이용 주체를 원동기장치의 탑재 여부와 도로 이용방법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림2〉 도로교통법 개선방안(명묘희, 2013)

명묘희(2013)의 개정방안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수단에 대한 정의가 조정되어 온 것과 같이,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좁히고 규제의 단위를 세분화(명묘희, 2013)”하여 각 이동수단의 특징을 고려한 법제하에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17) 도로교통법 제2조17항가목.

에 그 목적이 있다. 명모희(2013)는 원동기를 장착하지 않은 자전거, 손수레, 우마차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법적 규제의 단위를 세분화하여 무동력차라는 규제단위를 신설하였다. 이는 실정에 맞는 법제 정착을 제안하여 비전형교통수단 이용자의 기본권 확대를 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입법 동향: 이채익 의원 발의안 및 검토위원회 보고서

현 국회의원인 이채익은 2019년 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안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던 바 있다. 해당 발의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제안한다.

… 현행법은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을 제외하고는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차로 규정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밀거나 당겨 이동하는 야쿠르트 수레 등 손수레의 경우에도 차로 분류되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손수레의 보도 통행을 허용할 경우 보행자의 불편을 유발하거나 경미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인 데 반해, 현재와 같이 원칙적으로 손수레를 차도로 통행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가 많은 도로에서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손수레 사용자와 자동차 운전자 모두에게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손수레는 이 법에 따른 “차”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그리고 이에 검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응답으로 개정안을 상임위에 계류시킨다.

… 속도가 느린 손수레가 차도를 통행할 경우 원활한 교통 확보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손수레 운전자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노년층의 경우 폐자원 수집 등을 위해 손수레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노년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손수레는 이 법에 따른 “차”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다만, 손수레가 보도를 통행할 경우 손수레의 형태 또는 보도의 폭 등에 따라 보행자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후 개정안의 위임에 따른 행정안전부령 제정 시 보행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에서 제외되는 손수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개정안의 취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손수레를 “차”에서 제외하여 보도를 통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개정안 제2조제17호기목의 “차”에서 제외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손수레”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의 “보행자”에 포함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해당 발의안은 손수레가 보행자의 규정을 따라야 함을 주장했는데, 이는 검토위원회에

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수레의 속도가 느리므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폐지수집노인의 안전권이 위협받고 있긴 하지만, 손수레의 규모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이에 덧붙여, ‘차’에서 제외되는 손수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손수레를 보행자에 포함되게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3. 소결

법적으로 규제단위를 세분화하면, 각 이동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큰 범주로 묶어 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실정에 맞지 않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에서는 최저속도, 보도로의 통행 금지 등 손수레 운행의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정을 명시하며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차량의 범주에 손수레를 포함시키지만, 그 실질적 세부규정은 보편적인 사륜 혹은 이륜 자동차 중심으로 설정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의 모순으로 발생한다. 사람의 힘으로 운행되는 손수레가 도로상에서 원동기차량을 기준으로 설정된 최저속도를 준수할 수 있을리 만무하고, 손수레가 보도로 통행할 수 없다면, 느린 속도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생명과 신체의 안전권을 위협받게 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명묘희(2013)가 설정한 무동력차와 비슷하게 손수레에 대한 규제단위가 신설된다면,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손수레를 끌어야만 하는 폐지수집노인의 최소한의 생명, 신체의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규제단위의 세분화를 추진했던 이채익 의원의 대표발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된 채 실현되지 못했다. 검토위원회는 그 이유를 보행자의 불편함을 유발에 대한 우려로 밝히며, 규제 세분화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검토위원회는 그 기준에 대한 예시로 손수레의 형태, 보도의 폭 등을 제시하였다. 즉, 손수레 자체의 특성에 더하여 손수레의 운행 환경까지도 규제 세분화의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밝혔다. 따라서 후행하는 글에서는 손수레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검토해야 할 손수레의 특성 및 손수레 운행 환경의 특성들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도로상 주체들의 특성을 함께 조사하여, 손수레의 법적 성격을 재정립한다.

V. 연구방법

1. 폐지수집노인 손수레 운행환경 분석

실제 폐지수집노인의 이동 형태에 부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고안해내기 위해, 폐

지수집노인의 손수레 운행 경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폐지수집노인의 손수레 운행환경을 분석하였다. <표4>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과 함께,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폐지수집노인의 손수레에 소형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7일간의 이동 경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폐지수집노인의 손수레 운행환경을 파악하였다. 조사 대상인 폐지수집노인은 서울시 강동구 7명, 관악구 11명, 광진구 6인, 동대문구 9인, 마포구 10인, 송파구 4인 영등포구 9인 총 56인이었다. 이들 중 조사 기간 동안 운행이 기록된 수는 총 38명이었다. 그 후 각 표본별로 총 운행일 중 위치 추적 횟수가 최댓값을 가지는 일자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해당 일자의 손수레 운행환경을 분석하였다. 먼저 네이버 지도 내 기능을 통해 운행 거리, 운행 속도를 도출하였으며, 네이버 지도가 제공하는 로드뷰 기능을 통해 운행한 도로의 차선 수, 경로 내 이면도로 비율, 횡단 비율, 노인보호구역 비율을 계산하였다. 또한 QGIS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 폭원을 계산하였다.

구분	내용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폐지수집노인			
규모	56명			
유효 규모	38명			
항목	이동 경로 수집	이동 거리 측정	도로 환경 분석 1	도로 환경 분석 2
수집/분석 방법	손수레에 소형 위치추적기 부착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 로드뷰	QGIS
내용	시간대별 위치	운행 거리, 운행 속도	차선 수, 이면도로 비율, 횡단보도 비율	보도 폭원
수집 기간	7/13~9/10			

<표4> 폐지수집노인 손수레 운행환경 분석

2. 설문조사

1) 폐지수집노인 대상 설문조사

소형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손수레를 운행했던 폐지수집노인을 포함하여 총 65명의 폐지수집노인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문제를 바라보는 폐지수집노인의 시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폐지수집노인
표본 규모	65명
조사 방법	대면 설문조사
조사 내용	운행 행태, 교통사고 위험 인식, 주 이용 도로 유형, 사고 경험, 손수레 보도 운행 찬반, 보도 운행 시 교통사고 위험 인식
표본 추출 방법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조사 기간	7/14~9/10

〈표5〉 폐지수집노인 대상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폐지수집노인 각각을 직접 만나 진행하는 대면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손수레 운행 행태, 교통사고 위험 인식, 주 이용 도로 유형, 사고 경험, 손수레 보도 운행에 대한 찬반 의견, 보도 운행 시 교통사고 위험 인식 등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진이 폐지수집노인에게 직접 묻고 답을 받는 인터뷰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은 앞서 소형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였던 폐지수집노인을 포함한 65인의 폐지수집노인이며, 2021년 7월 14일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표5 참조)

2) 시민 대상 설문조사

시민들이 도로 위 교통수단으로부터 느끼는 위험도, 방해 정도, 폐지수집노인의 인도 보행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함으로써, 도로교통법 개정 시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남녀 324명을 대상으로 시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6〉은 시민 대상 설문조사의 설계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남녀
표본집단 규모	324명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내용	이동 수단별 위험/불편 인식, 운전자/보행자의 사고 및 불편 경험, 손수레의 보도 통행에 대한 인식, 손수레와 도로 환경에 대한 전반적 인식
표본 추출 방법	층별 표본추출법(stratified sampling) 군집분석(K-means 법)을 통해 서울시 25개 구를 총 6개의 군집으로 분류 각 군집별로 집락 중심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구를 선택 6개 구에서 54명씩 총 324명 추출
조사 기간	9/13~9/17
신뢰수준 및 표본오차	95%, ±5.45%

〈표6〉 시민 대상 설문조사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구를 총 6개의 집락으로 군집화(clustering)한 후, 각 군집 내에서 군집의 중심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구를 선택하여 해당 구에서 54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군집화 방법으로는 비계층적 군집방법 중 널리 쓰이는 K-means 법을 선택하였다. 생활인구밀도, 폐지수집노인인구밀도, 평균보도폭원, 소로(폭 12m 미만의 도로)비율 각각의 표준화(scaled)된 수치를 4개의 피쳐(feature)로 하였으며, 총 6개 군집으로 군집화하였다. 〈표7〉은 6개 군집의 군집중심을 나타낸 표이며, 〈표8〉은 각 군집에 속하는 자치구 및 군집 중심과 가장 가까운 자치구를 표기한 것이다. 〈표8〉에서 나타나 있듯이 군집 중심과 가장 가까운 자치구인 강남구, 강서구, 동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중구에서 각각 54명씩을 추출하여 총 표본 324인을 구성하였다.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군집 5	군집 6
폐지수집노인인구밀도_표준화 점수	-0.88588	-0.36727	0.11188	-1.38666	-0.05848	1.49051
생활인구밀도_표준화 점수	-1.09685	1.39122	-0.89418	-0.51729	0.42482	0.87729
소로비율_표준화 점수	-1.26710	-1.69457	0.36576	-0.48365	0.78775	-0.08470
보도폭원_표준화점수	-0.64227	1.63018	-0.27167	1.91776	-0.34039	-0.20399

〈표7〉 군집 중심

군집	자치구
1	강서구*, 노원구, 용산구
2	송파구, 중구*
3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종로구
4	강남구*, 서초구
5	광진구, 구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6	강동구, 동대문구*, 동작구, 중랑구

*군집 중심과 가장 가까운 자치구

〈표8〉 각 군집 소속 자치구 및 군집 중심과 가장 가까운 자치구

설문조사는 2021년 9월 13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이지서베이의 대행 아래 이메일 송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 오차 범위는 $\pm 5.45\%$ 였다.

3. 위험성 분석

앞에서 운행환경 분석을 통해 얻은 자료와 폐지수집노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한 보도 보행률을 바탕으로 폐지수집노인의 손수레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시 증상률(FSI, fatal and serious injury)을 추정하였다. 증상률 추정 모델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은 〈표9〉와 같다. d_i 는 폐지수집노인 i 의 이동거리이며, $w_{i,j}$ 는 폐지수집노인 i 가 j 에 해당하는 도로를 운행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보도운행률의 경우, 보도/차도 공존 도로 운행률에, 앞선 설문조사에서 주이용도로로 보도를 답한 경우 0.75를, 차도를 답한 경우 0.25를, 둘다를 답한 경우 혹은 그 외의 경우는 0.5를 곱하여 구하였다. k_i 는 보도 운행 허용 시 폐지수집노인의 보도운행률이다. 보도/차도 공존 도로 운행률에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보도 운행에 찬성한다고 답한 경우 0.75를, 반대한다고 답한 경우 0.25를, 응답하지 않은 경우 0.5를 곱하여 k_i 를 구하였다. f 는 도로유형에 따른 노인보행자의 증상률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도출하였다. (표10 참조) $FSI_{present}$ 는 현재 교통사고 발생시 폐지수집노인의 증상률을 추정한 값이며, $FSI_{revision}$ 은 보도 운행 허용 시의 증상률을 추정한 값이다.

변수	설명
d_i	폐지수집노인 i 의 일평균 이동거리 (이면도로는 제외, 이동이 없는 날은 제외)
$w_{i,sw}$	폐지수집노인 i 의 보도운행률 (if the main road is a sidewalk: $w = 0.75$ *보도/차도 공존 도로 운행률, driveway: $w = 0.25$ *보도/차도 공존 운행률, both or etc: $w = 0.5$ *보도/차도 공존 운행률)
$w_{i,cr}$	폐지수집노인 i 의 횡단보도운행률
$w_{i,ss}$	폐지수집노인 i 의 이면도로운행률
$w_{i,car}$	폐지수집노인 i 의 자동차전용도로운행률
$w_{i,ped}$	폐지수집노인 i 의 보도만 있는 도로 운행률
k_i	보도 운행 허용 시 보도운행률 (agree: $k_i = 0.75$ *보도/차도 공존 도로 운행률, disagree: $k_i = 0.25$ *보도/차도 공존 도로 운행률, 응답x: $k_i = 0.5$ *보도/차도 공존 도로 운행률)
f	도로유형별 노인보행자 증상률 ($f_{sidewalk} = \alpha$, $f_{cross} = \beta$, $f_{driveway} = \gamma$) α 와 β , γ 는 TAAS 데이터를 통해 구한 도로종류별 노인보행자 증상률
$FSI_{present}$	현재 추정증상률
$FSI_{revision}$	보도 운행 허용 시 추정증상률

〈표9〉 변수 및 설명

(연도: 2016-2020)

상해정도 사고유형	부상신고	경상	중상	사망	증상률
보도통행중	18	230	289	22	55.64%
차도통행중	58	429	707	75	61.62%
횡단중	151	1288	2742	229	67.37%

〈표10〉 사고유형별 상해정도

이러한 변수들로 각 도로유형별 운행률과 도로유형별 증상률을 곱한 값을 표본의 이동 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FSI를 도출한다. (수식1 참조) 이때 $FSI_{revision}$ 의 경우, $w_{i,sw}$ 에 해당하는 값을 k_i 값으로 바꾸어 〈수식1〉에 대입하였다.

$$FSI = \sum \frac{d_i \times [w_{i,sw} f_{sidewalk} + (1 - w_{i,sw}) f_{driveway} + w_{i,ss} f_{driveway} + w_{i,cr} f_{crosswalk} + w_{car} f_{driveway} + w_{ped} \times f_{sidewalk}]}{\sum d_i}$$

〈수식1〉 FSI 추정 모형

이렇게 구해진 FSI를 비교하여 보도 통행 허용의 위험도 감소 효과를 수치적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다음 절에서 후술한다.

VI. 연구결과

1. 폐지수집노인 손수레 운행환경 분석 결과

소형 위치추적기를 통해 파악한 폐지수집노인들의 이동데이터 분석 결과, 폐지수집노인들은 손수레를 운행하며 하루 평균 약 3032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1 참조) 도로유형별로 분류하였을 때, 가장 많이 운행한 도로는 이면도로(47.54%)였으며, 보도와 차도가 공존하는 도로가 그 뒤를 이었다(44.70%).

(n=38)

	이동 거리	보도/차도 공존 도로	이면도로	횡단보도	자동차 전용도로	보도만 있는 도로
합계(m)	115233.30	51514.40	54780.60	7280.00	46.00	1414.80
평균(m)	3032.46	1355.64	1441.59	191.58	1.21	37.23
비율(%)	100.00%	44.70%	47.54%	6.32%	0.04%	1.23%

〈표11〉 도로유형별 이동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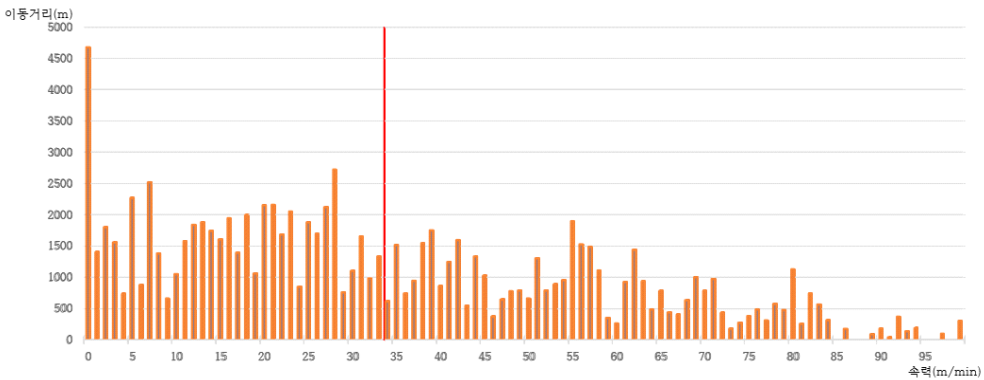
보도와 차도가 공존하는 도로의 경우, 그 보도폭원별 이동거리 총합은 〈표12〉와 같았다. 폐지수집노인들은 3미터 이상 3.5m이하인 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가장 많이(29.71%)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로수 보호틀의 규격이 최소폭 1.5m(산림청, 2020)이고, 손수레 폭이 약 1m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양방향에서 오는 손수레가 무난히 교행이 가능한 폭은 4m 정도일 것이다. 폐지수집노인들의 운행경로 중 보도와 차도가 공존하는 도로에서, 폭원이 4m 이상인 보도가 있는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42.39%였다.

(n=38)

보도폭 (m)	~1.5	1.5~2	2~2.5	2.5~3	3~3.5	3.5~4	4~4.5	4.5~5	5~5.5	5.5~6	6~
이동 거리	1799.60	325.00	2183.40	5246.90	14581.40	5942.20	4021.20	6519.40	3856.40	2472.60	3938.20
비율 (%)	3.67	0.66	4.45	10.69	29.71	12.11	8.19	13.28	7.86	5.04	8.02

〈표12〉 보도폭원별 이동거리 합계 (n=38)

〈그림3〉은 폐지수집노인들의 속력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1m/min단위로 구간을 설정하였으며, 각 구간에 해당하는 속력으로 이동한 거리들을 더하여 나타내었다. 붉은색 선은 폐지수집노인들의 속력을 가중평균한 수치를 나타내는 선이다. 폐지수집노인들은 평균 33.98m/min의 속력으로 손수레를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중표준편차 = 23.96). 이는 약 2.03km/h의 속력으로, 성인의 평균적인 보행속력인 약 4km/h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빠르기이다. 한편, 폐지수집노인들은 약 88%의 비율로 성인평균 보행속력보다 느리게 손수레를 운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3〉 폐지수집노인 속력 분포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폐지수집노인 대상 설문조사

〈표13〉은 폐지수집노인 65명을 대상으로 주운행도로, 사고경험, 주관적 교통사고 위험도, 손수레의 보도 운행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낸 표이다. 우선 “보도와 차도 중 어디에서 주로 손수레를 운행하십니까?”라고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

63명 중 31명(49.21%)이 '보도'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폐지수집노인이 주로 보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도'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13명(20.63%), '둘다'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10명(15.87%)이었다.

보도에서 손수레를 운행하는 이유로는 '차도가 위험해서'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으며(73.33%), '보도가 더 편해서'(10%), '운전자가 욕을 해서'(6.67%)가 그 뒤를 이었다. 차도에서 손수레를 운행하는 이유로는 '차도가 더 편해서'(25%), '보도가 좁아서'(25%)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으며, '보도의 노면상태가 불량해서', '보도가 올라가기 힘들어서', '짐이 많아서'(이상 12.5%)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보도에서 주로 손수레를 운행하는 폐지수집노인은 차도의 위험 때문에, 차도에서 주로 손수레를 운행하는 폐지수집노인은 보도의 불편 때문에 해당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65, 응답자 수는 각 문항별로 상이)

변수	빈도/값	비율	
주운행도로	보도	31	49.21%
	차도	13	20.63%
	둘다	10	15.87%
	기타	9	14.29%
보도 운행이유	차도가 위험해서	22	73.33%
	보도가 더 편해서	3	10.00%
	운전자가 욕을 해서	2	6.67%
	기타	3	10.00%
차도 운행이유	차도가 더 편해서	4	25.00%
	보도가 좁아서	4	25.00%
	보도의 노면상태가 불량해서	2	12.50%
	보도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2	12.50%
	짐이 많아서	2	12.50%
	행인이 욕을 해서	1	6.25%
	기타	1	6.25%
보도 내 보행자와의 사고 경험 (아차사고 포함)	예	11	16.92%
	아니오	54	83.08%
차도 내 차량과의 사고 경험 (아차사고 포함)	예	16	24.62%
	아니오	49	75.38%
주관적 교통사고 위험도	보도	2.75	-
	차도	6.53	-
손수레 보도 운행 찬반	찬성	55	84.62%
	반대	10	15.38%

〈표13〉 폐지수집노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도 내 손수레 운행 중 보행자와의 사고 경험(아차사고 포함)을 묻는 문항에서는 “예”라고 답한 응답자 수는 11명으로, 전체 응답자 16.92%가 보도 운행 중 보행자와 사고를 경험하거나 경험할 뻔 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차도 내 손수레 운행 중 차량과의 사고 경험(아차사고 포함)을 묻는 문항에서는 “예”라고 답한 응답자 수가 16명으로, 응답자 중 약 24.62%가 차도 운행 중 차량과의 사고를 경험하거나 경험할 뻔 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도와 차도 운행 시 폐지수집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교통사고 위험도는 각각 평균 2.75와 6.53으로 나타났다(10점 만점). 점수가 높을수록 더 큰 위험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폐지수집노인들이 차도 운행 시보다 보도 운행 시 덜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손수레의 보도 운행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55명(84.62%)이 찬성이라 한 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폐지수집노인이 손수레의 보도 운행을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손수레의 보도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달리 실제로는 많은 수의 폐지수집노인이 보도 위에서 손수레를 운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손수레의 보도 운행 이유로 차도 운행의 위험성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도로교통법과 현실의 괴리는 폐지수집노인이 차량으로부터 느끼는 위험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차도 내 차량과의 사고경험비율이 보도 내 보행자와의 사고경험비율보다 높다는 사실은, 손수레 차도 운행의 위험성을 사고확률적 측면에서 증명한다. 또한 주관적인 교통사고 위험도의 경우, 차도에서 느끼는 위험도가 보도에서 느끼는 위험도의 2배 이상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수집노인이 차도 내 운행 시 느끼는 위험 스트레스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도로교통법은 폐지수집노인의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은 실정이며, 그 원인으로는 폐지수집노인이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보다 차량과의 교통사고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차도에서 손수레 운행 시 느끼는 위험 스트레스가 보도에서보다 높다는 사실이 주요하다.

2) 시민 대상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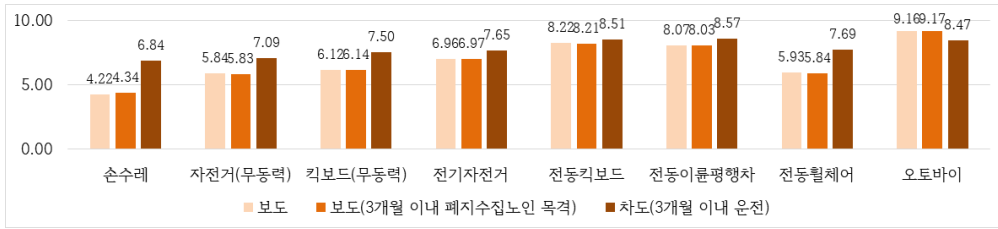
〈표14〉는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 참여한 324명의 기본 인적 사항을 요약한 표이다. 앞에서 설명했듯 강서구, 강서구, 동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중구에서 각각 54명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피설문자의 연령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만30-39세, 만40-49세, 만20-29세 순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다.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280명(86.42%)이었으며 3개월 내 운전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01명(71.29%)이었다. 한편 3개월 내 폐지수집노인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61명(80.56%)이었다.

(n=324)			
변수		빈도	비율
거주지	강남구	54	16.67%
	강서구	54	16.67%
	동대문구	54	16.67%
	마포구	54	16.67%
	은평구	54	16.67%
	중구	54	16.67%
연령	만15-19세	2	0.62%
	만20-29세	70	21.60%
	만30-39세	96	29.63%
	만40-49세	94	29.01%
	만50-59세	48	14.81%
	만60-69세	14	4.32%
면허 소지 여부	예	280	86.42%
	아니오	44	13.58%
3개월 내 운전 경험 여부	예	201	71.79%
	아니오	79	28.21%
3개월 내 폐지수집노인 목적 여부	예	261	80.56%
	아니오	63	19.44%

〈표14〉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기본 인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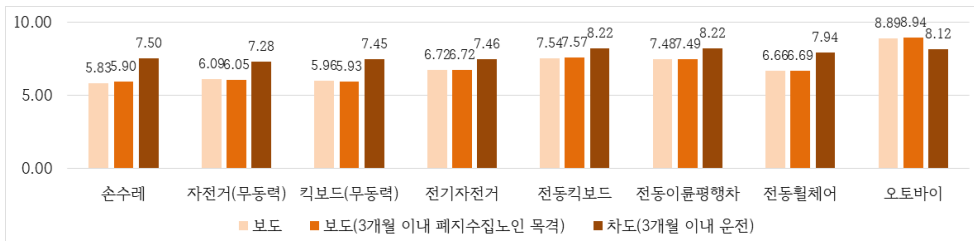
〈그림4〉과 〈그림5〉은 보도와 차도에서 각 교통수단이 유발하는 위험도와 방해 정도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평가를 정리한 것이다. 10점 만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높은 위험과 높은 방해를 유발하는 교통수단임을 의미한다. 각 교통수단은 보도와 차도 위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보도에서의 위험도 및 방해 정도의 경우 폐지수집노인의 목적 경험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따로 분류하여 표시하였다. 또한 차도에서의 위험도 및 방해 정도의 경우 실제 운전자들이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근 3개월 이내에 운전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평가 점수로 측정하였다.

우선 위험도 측면에서, 손수레는 보도와 차도에서 모두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가장 낮은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손수레가 차도보다 보도에서 더 적게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4〉 이동수단별 주관적 위험도

방해 정도의 측면에서는, 손수레가 보도 위에서 가장 적게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도에서는 자전거(무동력), 키펴보드(무동력)에 비해 운전자에게 더 방해할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수레가 차도보다는 보도에서 더 적게 방해할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5〉 이동수단별 주관적 방해 정도

아래의 <표15>는 피설문자들이 폐지수집노인이 운행하는 손수레로 인해 경험한 사고 경험(아차사고 포함)과 불편 경험을 요약한 표이다. 앞서 <그림4>과 <그림5>에서의 수치는 피설문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위험 및 방해 정도라면, <표15>의 수치는 피설문자들의 실제 경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폐지수집 손수레와의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43명(15.36%)으로, 보행 중 사고를 경험한 수 20명(6.17%)보다 약 두 배 가량 많았다. 한편 운전 중 폐지수집 손수레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156명(55.71%)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한 수(124명)보다 많았던 반면, 보행 중 폐지수집 손수레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138명(42.59%)으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한 수(186명)보다 적었다. 폐지수집 손수레가 운전자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교통 흐름 방해'(61.90%)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충돌 위험'(9.52%)이 그 뒤를 이었다. 폐지수집 손수레가 보행자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통행 방해'가 90.78%의 비율로 가장 많이 꼽혔다.

변수		빈도	비율
운전자 사고 경험 여부(아차사고 포함) (면허 소지자의 응답만 기록)	예	43	15.36%
	아니오	237	84.64%
운전자 불편 경험 여부 (면허 소지자의 응답만 기록)	예	156	55.71%
	아니오	124	44.29%
운전자 불편 경험	교통 흐름 방해	104	61.90%
	충돌 위험	16	9.52%
	무단횡단	8	4.76%
	차선 침범	8	4.76%
	신호 위반	5	2.98%
	시야 방해	3	1.79%
	역주행	2	1.19%
	불법 정차	1	0.60%
	중앙선 침범	1	0.60%
	기타	20	11.90%
보행자 사고 경험 여부(아차사고 포함)	예	20	6.17%
	아니오	304	93.83%
보행자 불편 경험 여부	예	138	42.59%
	아니오	186	57.41%
보행자 불편 경험 여부	통행 방해	128	90.78%
	시야 방해	4	2.84%
	충돌 위험	4	2.84%
	낙하물	3	2.13%
	기타	2	1.42%

〈표15〉 폐지수집 손수레와의 사고 경험 및 불편 경험

한편, 폐지수집 손수레의 보도 운행과 관련하여 대다수(63.27%)의 응답자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손수레의 보도 운행에 찬성하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차도로 다니면 위험해서’(36.07%)와 ‘보도가 더 안전해서’(28.42%)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손수레 운전자인 폐지수집노인의 위험 및 안전이 손수레 보도 운영을 찬성하는 데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손수레의 보도 운영을 반대하는 원인으로서는 ‘보행에 방해가 되어서’(35.42%)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으며, 손수레가 유발하는 위험과 손수레의 부피 등을 지적하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변수		빈도	비율
손수레의 보도 운행 찬성/반대	찬성	205	63.27%
	반대	119	36.73%
찬성 이유	차도로 다니면 위험해서	66	36.07%
	보도가 더 안전해서	52	28.42%
	속도가 느려서	11	6.01%
	차도가 덜 불편해서	4	2.19%
	차도 운행시 교통체증 유발해서	3	1.64%
	폐지수집노인은 사회적 약자여서	3	1.64%
	기타	44	24.04%
	반대 이유	보행에 방해가 되어서	34
보도는 보행자만 다니는 곳이라서 위험해서		13	13.54%
부피가 커서		8	8.33%
보행자가 다닐 공간이 없어서		7	7.29%
보행자가 다닐 공간이 없어서		4	4.17%
아이들에게 위험해서		4	4.17%
기타		26	27.08%

〈표16〉 폐지수집 손수레의 보도 운행 찬성/반대

정리하자면, 우선 시민들은 손수레가 타 이동수단에 비해 보도와 차도 모두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적게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보도 위에서는 시민들에게 가장 적게 방해가 되지만, 차도 위에서는 다른 이동수단의 중간 정도 수준의 방해를 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은 위험과 방해 정도 모두 차도보다는 보도에서 더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제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운전 중 폐지수집 손수레와의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보행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보다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아, 폐지수집 손수레의 운행이 실제로도 운전자에게 더욱 위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관적 인식 측면과 실제 경험 측면 모두에서 폐지수집 손수레는 보도보다는 차도에서 운행할 때 더 위험함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폐지수집 손수레의 보도 통행을 찬성하고, 그 주요한 원인으로 차도 운행 시 위험과 보도 운행 시 안전이 꼽힌 사실은, 차도 내 폐지수집노인의 위험과 관련한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 및 실제 경험이 보도 통행의 찬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위험성 분석 결과

앞에서 운행환경 분석을 통해 얻은 자료와 폐지수집노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한 보도 보행률을 바탕으로 폐지수집노인의 손수레 운행시 교통사고 위험도를 추정하였다(부록 <표17> 참조). <표18>는 이렇게 도출된 현재의 추정중상률($FSI_{present}$)과 보도 통행 허용시 추정중상률($FSI_{revision}$)을 정리한 것이다. 평균 보도보행률이 각각 0, 0.25, 0.5, 0.75, 1 일 때의 추정중상률(FSI_i , $i=0, 0.25, 0.5, 0.75, 1$)도 추가로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현재의 FSI는 60.50%이며, 보도 통행이 허용될 시 60.26%까지 FSI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앞서 폐지수집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폐지수집노인이 보도를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현재의 FSI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규제가 강력히 적용되었을 시보다는 낮게 도출된 수치일 것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 의도하는 대로 행정 작용이 이루어졌을 때의 FSI를 계산하고자, 표본 각각의 보도운행률을 0.25로 가정하여 $FSI_{0.25}$ 를 구한 결과, 강력한 행정 집행이 이루어질 시의 FSI는 61.28%로, 보도 통행이 허용될 시의 FSI인 $FSI_{revision}$ 과 1.02%p만큼의 차이를 보였다.

구분	$FSI_{present}$	$FSI_{revision}$	FSI_0	$FSI_{0.25}$	$FSI_{0.5}$	$FSI_{0.75}$	FSI_1
값	60.50%	60.26%	61.91%	61.28%	60.65%	60.02%	59.39%

<표18> 추정중상률 FSI

한편, 현재와 보도 통행 허용 시의 중상률에 대한 paired t-test(대응표본 t-검정)를 시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표19 참조)

	중상위험률	T-statistic	P-value
$FSI_{present}$	$60.50 \pm 0.20 \%$	2.04	0.024
$FSI_{revision}$	$60.26 \pm 0.20\%$		

<표19> paired t-test ($FSI_{present}$, $FSI_{revision}$)

또한, 강력한 행정 집행으로 인해 보도 운행률이 0.25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와 보도 통행 허용 시의 중상률에 대한 paired t-test(대응표본 t-검정)를 시행한 결과, 이 역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0 참조)

	증상위험률	T-statistic	P-value
FSI _{0.25}	61.28 ± 0.24%	7.18	〈0.0001
FSI _{revision}	60.26 ± 0.24%		

〈표20〉 paired t-test (FSI_{0.25}, FSI_{revision})

VII. 법제 정비안 및 기대효과

1. 고려 사항

1) 차도 내 손수레 운행 시 위험 및 방해 발생

위험은 수치적으로 증명되는 객관적인 위험과,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객관적인 위험은 다시 사고빈도에 근거한 사고확률 측면의 위험과 사고 피해 정도에 근거한 사고심각성 측면의 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차도에서 교통사고를 경험한 폐지수집노인이(16명, 24.62%)이 보도에서 교통사고를 경험한 폐지수집노인(11명, 16.92%)의 약 1.46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고확률 측면에서 차도 운행이 보도 운행보다 더 위험함이 분명하다. 또한 FSI 분석 결과, 손수레의 보도 통행 허용 시 FSI가 더 낮아진다고 예측되었다는 점에서, 사고심각성 측면에서도 손수레의 차도 운행이 더 위험함이 분명하다. 이와 더불어 보도에서 폐지수집노인이 손수레를 운행할 때보다 차도에서 손수레를 운행할 시 더 많은 위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현실은 도로교통법이 폐지수집노인에게 유발하는 극심한 주관적인 위험을 보여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객관적 측면으로나 주관적인 인식 측면으로나 현행 도로교통법이 폐지수집노인에게 위험을 유발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이러한 위험 현실은, 폐지수집노인의 84.62%가 손수레의 보도 운행을 찬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연구결과와 더불어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2) 차량 운전자의 불편

시민 대상 설문조사의 연구결과, 시민들은 타 이동수단에 비해 손수레를 마주쳤을 때 위험도는 가장 적게 느꼈으며, 보도에서의 방해 정도 역시 가장 적게 느낀 반면, 차도에서 손수레를 마주쳤을 때에는 자전거(무동력), 킥보드(무동력), 전기자전거보다 더 높은 방해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보도에서보다 차도에서 손수레를 마주쳤을 때 더 높은 방해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설문조사의 다른 문항에서 응답자 중 절반 이상(55.71%)이 차도에서 손수레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현재의 도로교통법이 폐지수집노인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시민의 63.27%가 폐지수집노인의 차도 운행만을 강제하는 현재 도로교통법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3) 폐지수집노인의 작업권

그러나 단순히 폐지수집 손수레를 ‘차’에서 제외하고, 손수레를 운전하는 폐지수집노인의 법적 지위를 ‘보행자’로 설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 차도를 주로 이용하는 폐지수집노인의 작업권 침해와 보도 이용자의 생활권 침해가 그것이다. 우선 폐지수집 손수레의 지위를 ‘차’에서 탈락시키는 경우, 기존에 차도를 주로 이용하던 폐지수집노인은 하루 아침에 작업 방식을 바꿔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합법이었던 노동 행위가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간주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실제로 주로 차도를 이용한다고 답한 폐지수집노인 13명 중 4명(30.77%)은 손수레의 보도 운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폐지수집노인 표본 전체의 보도 운행 반대율이 15.38%임을 고려할 때, 주이용도로가 차도인 경우 보도 운행에 더욱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도 운행에 찬성하는 다수의 목소리로 인해 주로 차도를 이용하는 폐지수집노인의 작업권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손수레를 ‘차’에서 제외하는 것 외의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4) 보도 이용자의 생활권

한편, 손수레가 보도에서 운행됨에 따라 보도 이용자의 쾌적한 보행 환경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보도 이용자의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다. 실제로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보도 이용 시 폐지수집 손수레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불편의 원인으로 ‘통행 방해’를 가장 많이 꼽았다(90.78%). 폐지수집노인의 운행환경분석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에서처럼, 폐지수집노인은 성인의 보행속력의 절반 정도 수준(2.03km/h)으로 손수레를 운행하고 있었으며, 손수레의 교행이 원활할 것이라 예상되는 폭인 4m 이상의 폭을 보이는 보도가 폐지수집노인 운행경로 중 보도와 차도가 공존하는 도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39%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폭이 넓은 손수레가 폭이 좁은 보도를 느린 속도로 통행함에 따라 시민들의 보행이 방해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현재의 보도 최소유효폭이 마주오는 휠체어의 교행이 무난히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m로 설정되었다는 점과 휠체어의 규격 제한이 폭 70cm 이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폭이 70cm인 손수레의 경우 현재의 도로 구조에서 보행자들에게 추가적인 불편을 초래하

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 100cm에 달하는 일반적인 손수레의 폭을 생각해보건데, 손수레 폭의 규격 제한을 70cm로 한다면, 이로 인해 다수의 폐지수집노인이 보도 운행 합법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렇다고 폐지수집 손수레의 지위를 보행자로 변경하여, 손수레가 보도로만 다니게 강제한다면, 양방향에서 손수레가 마주하며 교행할 시, 보행자의 도로 이용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폐지수집 노인의 안전과 보도 이용자의 생활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이유들을 바탕으로, 본고는 <표21>과 같이 손수레의 통행방법의 특례를 담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3의 신설을 제안한다.

2. 개정안

본고는 손수레가 가지는 ‘차’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손수레의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를 고안해내었다. 제13조의3의 제1항과 제2항은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를 명시하였던 같은 법 제13조의2의 제1항과 제4항을 각각 차용하였다. 제1항에서 손수레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도록 함에 따라, 차도와 보도 모두에서 교통 흐름의 방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고자 하였다. 또한 제2항에서 노인이 손수레를 운전하는 경우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하여 차도 운행만을 강제되던 기존과 달리 보도 운행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자전거의 길가장자리구역의 통행을 허용하는 제13조의2의 제3항은 차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손수레가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하게 되더라도, 손수레의 넓은 폭으로 인해 차선을 침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길가장자리구역의 통행 허용의 의미가 퇴색되기에 해당 조항은 차용하지 않았다.

개정안
<p>제13조의3(손수레의 통행방법의 특례)</p> <p>① 손수레의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p> <p>② 손수레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수레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p> <p>1. 65세 이상 노인이 손수레를 운전하는 경우</p> <p>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p> <p>③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손수레의 규격은 폭 100cm 이내로 한정하며, 적재물의 폭은 150cm 이내로 한정한다.</p> <p>④ 손수레의 운전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경우에는 보도 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p>

〈표21〉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3항에서는 보도 통행이 가능한 손수레의 규격을 제한하여 보도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폐지수집 손수레의 경우 휠체어와 달리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방향에서 오는 손수레 두 대가 보도 위에서 서로 마주치는 경우, 한 대가 차도를 이용하여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즉 차도 통행과 보도 통행을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폐지수집 손수레의 특례로 인해, 폐지수집노인의 위험 문제와 보행자의 불편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다. 다만 보통의 손수레와 달리 규모가 큰 손수레나 과도한 적재물을 쌓은 손수레의 경우, 한 대만으로도 보행자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도 통행이 가능한 손수레의 규격 제한을 폭 100cm 이내로 함과 동시에 적재물의 폭을 150cm 이내로 제한하였다.

한편 보도에서의 위험 유발을 이유로 손수레의 보도 운영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손수레 운영의 특례 제정에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폐지수집노인의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은 같은 위상으로, 경중을 가려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100kg 안팎의 무게에 달하는 폐지를 적재할 수 있는 손수레의 특성상, 성인과 충돌 시에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지는 않을지라도, 영유아 또는 어린이와 충돌하게 될 시 그들에게 미치는 상해 정도가 클 수 있다. 이에 손수레의 통행방법의 특례에서 제13조의3 제3항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손수레의 운전자는 보도 통행을 할 수 없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3. 기대효과

1) 사고 위험성 감소

앞서 손수레의 차도 운영 시 사고확률이 보도 운영 시보다 높다는 점에서, 손수레의 보도 통행이 허용되면 사고 건수가 감소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FSI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개정안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시 중상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앞서 진행한 위험성 분석에서의 연구 결과와 같이 FSI가 현재에 비해 0.24%p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인해 보도 운행률이 0.25에 그칠 것이라 추정했을 시 예상되는 FSI보다는 1.02%p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두 경우 모두 paired t-test(대응표본 t-검정)를 시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개정안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유의하게 감소할 것이라 기대된다.

2) 위험 스트레스의 감소

현행 도로교통법이 손수레를 ‘차’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응답자 수의 절반에 가까운 (49.21%) 폐지수집노인들이 보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보도 운행 이유로 응답자의 73.11%가 차도의 위험성을 꼽았다는 점에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폐지수집노인이 느끼는 위험 스트레스를 면밀하게 고려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범칙금 부과 등의 행정 집행이 수반 된다면, 폐지수집노인이 느끼는 위험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폐지수집노인이 차도에서 느끼는 주관적 위험도(6.53)보다 보도에서 느끼는 주관적 위험도(2.75)가 훨씬 낮다는 본고의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본 개정안을 통해 법령이 보다 폐지수집노인의 현실과 적합하게 되어 차도 운행 강제로 인한 위험 스트레스가 감소될 것이라 기대된다.

3) 차량 운전자의 불편 감소

폐지수집 손수레가 이전보다 보도를 많이 이용하게 됨에 따라 손수레의 차도운행률이 줄어들어, 차도에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사례 역시 감소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손수레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함에 따라 차량과의 충돌 위험과 차선 침범으로 인한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 기대된다. 시민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 차도 운행시 손수레로 인해 불편을 경험하는 원인으로 교통 흐름 방해, 충돌 위험, 무단 횡단, 차선 침범 등이 주로 꼽혔다는 점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차량 운전자의 불편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4) 폐지수집노인의 작업권 및 보도 이용자의 생활권 보호

‘차’와 ‘보행자’로서의 지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차’로서의 지위를 유지 하되, 노인이 손수레를 운행하는 경우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특례 신설의 방식으로 도로 교통법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에 차도를 주로 이용하던 폐지수집노인의 작업권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보도 위에서 손수레끼리 마주칠 경우 차도와 보도를 융통성 있게 운행함을 통해 보도 이용자에게 유발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그들의 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VIII. 결론

1. 연구의의

1) 폐지수집노인의 현실 조명을 통한 법제 개선안 도출

본 연구는 폐지수집노인의 현실과 괴리된 법률이 안전취약계층인 폐지수집노인의 안전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에 폐지수집노인의 손수레에 소형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폐지수집노인의 실제 경험과 인식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의 관점에서 현재의 법제를 바라보았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시민의 관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연구결과 폐지수집노인이 보도에서보다 차도에서 교통사고를 경험할 확률이 높음을 밝혀내었으며, 시민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폐지수집노인이 보도에서보다 차도에서 사고를 더 높은 비율로 경험하였음을 파악해 내었다. 이를 통해 손수레 차도 운행의 위험성을 사고확률 측면에서 증명하였다. 한편 FSI 분석을 통해 손수레 차도 운행의 위험성을 사고심각성 측면에서 나타내었으며, 개정안 도입 시의 FSI 감소 효과가 유효함을 증명하였다. 또한 폐지수집노인이 차도 통행 시 느끼는 과도한 위험 스트레스를 보도 통행 시 느끼는 위험 스트레스와 비교하여 수치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정안이 폐지수집노인의 위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증명하였다. 이렇듯 폐지수집노인의 위험을 사고확률, 사고심각성, 주관적 위험 스트레스의 세가지 측면에서 수치적으로 증명하여, 현행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침해되는 폐지수집노인의 안전권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폐지수집노인의 위험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안전취약계층인 폐지수집노인의 현실을 조명하고,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피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2) 안전권과 다른 인권의 균형점 모색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권의 보장이 다른 개인의 기본권 및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안전권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는 안전권뿐만 아니라, 안전권의 보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기본권 혹은 인권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폐지수집노인의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하여 손수레를 ‘차’에서 제외하고, 손수레 운전자를 보행자로 바라보려 했던 기존 국회의 움직임과는 달리, 폐지수집노인이 겪는 고초를 위험과 불편함의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아, 보도 통행의 특례를 마련

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폐지수집노인의 손수레 운행과 관련한 운전자, 보행자 각각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여 안전권과 관련된 다양한 인권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특히 손수레의 ‘차’로서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차도에서 주로 손수레를 운행하는 폐지수집노인들의 작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폐지수집노인의 보도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운전자가 보다 쾌적한 주행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폐지수집 손수레가 ‘차’와 ‘보행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게 함으로써, 손수레의 보도 통행 허용 시 보행자가 경험할 수 있는 불편에 융통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보행자가 쾌적한 보도 이용을 경험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폐지수집노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다수가 손수레의 보도 통행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다수의 의견 속에 가려진 소수의 권리를 함께 고려하여 안전권과 다른 권리 간의 균형을 이룩하고자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2. 연구한계

1) 표본의 대표성 한계

추출된 표본의 분석을 통해 모집단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는 통계적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표본집단(폐지수집노인 38인(경로조사)/65인(설문조사), 서울시민 324인)의 모집단을 서울시의 폐지수집노인 전체와 서울시민 전부로 설정하였다. 서울 시민 설문조사의 경우, 4개의 인자들을 기준으로 K-means 군집분석을 진행하여 서울시의 25개구를 6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고, 각 군집을 대표하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표본을 각각 50명씩 추출하는 방식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즉, 서울시의 각 자치구 간에 존재하는 지역적인 특성 차이를 고루 고려한 것이다. 또한 표본의 크기를 324명으로 설정하여 95%의 신뢰 수준에서 최대오차한계가 $\pm 5.45\%$ 를 보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폐지수집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동경로조사와 설문조사의 경우, 표본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편의표본추출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그 표본 수가 각각 38인과 65인으로 충분치 않았다. 따라서 폐지수집노인의 경로분석 및 설문조사가 서울시의 폐지수집노인이라는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굳건히 신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앞서 말했듯이 기존의 동향과 달리 폐지수집노인의 입장에서 법제 정비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경로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현실을 조명하고자 하였다는 의의는 여전하다. 따라서 향후 표본집단을 확대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충분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면,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가 더욱 공

고해질 것이다.

2) 연구 범위의 한계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모집단의 지역적 범위를 서울시로 특정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접근성 측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특히 올해 델타 바이러스의 광폭적 확산으로 인해 지역 간 이동이 사회적으로 지양되는 바, 연구 범위를 전국적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랐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법제 정비안이 주로 도로교통법에 집중되어 있고,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률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가 서울시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따라서 추후 전국적 범위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가 제안하는 개정안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 김명엽, 2016, “생활안전을 위한 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6(2).
- 김소연, 2017,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인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공법연구』 45(3).
- 김대환, 2014,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공법학연구』 15(3).
- 김용훈, 2019,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조항의 헌법적 의의 - 미국에서의 관련 논의를 참고하여”, 『동아법학』 84.
- 김춘남·남일성·박지환·장백산, 2020, “폐지 좁는 노인의 생활실태와 정책대안 연구”, 『GGWF REPORT』 2020(15).
- 명묘희, 2013, “교통수단의 구분 및 관리에 대한 도로교통 관계 법령 개정방안 연구”, 『경찰학연구』 13(1).
- 백수원, 2016, “헌법상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 『미국헌법연구』 27(3).
- 윤수정, 2019,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안전권의 공법적 논의구조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3).
- 이부하, 2019, “생명·신체의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과정책』 25(2).
- 전광석, 2015, “국민의 안전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법과인권교육연구』 8(3).
- 홍완식, 2013,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유럽헌법연구』 14.
- 홍종현, 2021, “안전권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29(2).
- Denish Mohan, 2019, “Traffic safety: Rights and obligation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128.

Mackenroth, 2011, “Der Rechtsstaat in der Zwickmühle?” 『Zur Balance von Freiheit und Sicherheit』. 홍완식, 2013,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유럽헌법연구』 14, p.231에서 재인용

[단행본]

명묘희 · 정미경 · 최미선, 2013, “도로이용자지향적 도로교통법제 구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방안 연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변금선 · 윤기연 · 송명호, 2018, 『폐지수집 노인 실태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Ulrich Bech,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translated by Mark Ritter, SAGE Publications.

[판례 및 결정례]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761 판결.

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 결정.

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 결정.

[기타 문헌]

국회사무처, 2017, 제20대 국회 제348회 제6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산림청, 2020,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2019, 서울시 맞춤형 복지상황지도.

부록

〈표17〉 표본별 FSI

(단위: m, %)

No.	보도 운행 률	보도 통행 허용 시 보도 운행률	총 이동 거리	보/차도 공존도 로운행 률	이면 도로 운행 률	횡단 보도 운행 률	자동 차전 용도 로운 행률	보도 만있 는도 로운 행률	FSI_p resen t	FSI_r evisi on	FSI_0	FSI_0 .25	FSI_0 .5	FSI_0 .75	FSI_1
1	50%	50	0	707.4	0.00	94.29	5.71	0.00	0.00	61.95	61.95	61.95	61.95	61.95	61.95
2	75	75	1	1677.1	32.16	65.45	2.39	0.00	0.00	60.31	60.31	61.76	61.28	60.80	60.31
3	75	75	1	4944.2	24.57	66.69	8.74	0.00	0.00	61.02	61.02	62.12	61.76	61.39	61.02
5	50	25	0	4237.8	25.30	68.95	5.76	0.00	0.00	61.19	61.57	61.95	61.57	61.19	60.82
6	75	75	1	456	79.82	20.18	0.00	0.00	0.00	58.04	58.04	61.62	60.43	59.23	58.04
7	75	75	1	3646.6	9.43	81.29	9.28	0.00	0.00	61.73	61.73	62.15	62.01	61.87	61.73
8	50	75	1	3519	0.00	96.76	3.24	0.00	0.00	61.81	61.81	61.81	61.81	61.81	61.81
9	50	50	0.5	5380.5	63.04	29.41	7.55	0.00	0.00	60.17	60.17	62.05	61.11	60.17	59.23
10	75	75	1	10688.9	36.13	59.12	4.43	0.00	0.00	60.06	60.06	61.68	61.14	60.60	60.06
11	50	25	0	608.9	19.53	80.47	0.00	7.55	0.00	65.69	65.98	66.28	65.98	65.69	65.40
13	50	75	1	5232	5.52	91.97	2.50	0.00	0.00	61.60	61.52	61.76	61.68	61.60	61.52
14	50	25	0	1145	4.37	93.89	1.75	0.00	0.00	61.59	61.66	61.72	61.66	61.59	61.52
16	50	75	1	2372.9	23.78	71.50	4.72	0.00	0.00	61.18	60.82	61.89	61.54	61.18	60.82
19	75	75	1	150	0.00	100.00	0.00	0.00	0.00	61.62	61.62	61.62	61.62	61.62	61.62
20	75	25	0	4451	49.11	43.43	6.61	0.00	0.00	59.27	60.74	61.47	60.74	60.01	59.27
21	50	50	0.5	1797.8	41.89	49.54	6.84	0.00	0.00	59.69	59.69	60.95	60.32	59.69	59.07
22	50	25	0	6016.9	44.87	51.30	3.82	0.00	0.00	60.50	61.17	61.84	61.17	60.50	59.83
23	50	50	0.5	9149	61.07	23.67	5.45	0.00	9.64	59.43	59.43	61.26	60.34	59.43	58.52
24	25	25	0	2606.7	77.04	16.00	6.96	0.00	0.00	60.87	60.87	62.02	60.87	59.72	58.57
25	50	75	1	2341.4	47.09	47.04	5.87	0.00	0.00	60.55	59.85	61.96	61.25	60.55	59.85
26	75	75	1	5208.1	41.14	56.22	2.64	0.00	0.00	59.93	59.93	61.77	61.16	60.54	59.93
29	50	75	1	1073.8	13.13	86.87	0.00	0.00	0.00	61.23	61.03	61.62	61.42	61.23	61.03
30	50	75	1	1009.1	49.15	23.56	3.37	0.00	23.92	58.91	58.18	60.38	59.65	58.91	58.18
31	75	75	1	2913	44.63	50.02	5.36	0.00	0.00	59.93	59.93	61.93	61.26	60.59	59.93
32	75	75	1	3833	67.41	22.98	7.51	0.00	0.00	57.74	57.74	60.77	59.76	58.75	57.74
33	75	75	1	2711	51.01	37.85	4.65	0.00	6.49	59.21	59.21	61.50	60.74	59.97	59.21
34	25	75	1	2130	69.72	23.52	4.88	0.00	1.88	60.75	58.66	61.79	60.75	59.70	58.66
36	75	75	1	3146.4	80.52	11.30	5.78	0.00	2.40	58.20	58.20	61.81	60.61	59.40	58.20
37	75	75	1	292.1	54.71	27.15	18.14	0.00	0.00	60.21	60.21	62.66	61.85	61.03	60.21

38	25	75	1	2413.4	61.85	30.98	7.17	0.00	0.00	61.11	59.26	62.03	61.11	60.18	59.26
39	75	75	1	4783	71.11	20.59	7.33	0.00	0.00	58.26	58.26	61.45	60.39	59.32	58.26
41	75	75	1	1309	77.46	21.08	1.45	0.00	0.00	58.23	58.23	61.70	60.55	59.39	58.23
44	50	75	1	5580	61.55	17.62	20.83	0.00	0.00	60.98	60.06	62.82	61.90	60.98	60.06
45	50	75	1	1415.4	71.25	4.63	24.12	0.00	0.00	60.88	59.81	63.01	61.94	60.88	59.81
47	25	75	1	2643.8	72.66	16.94	10.40	0.00	0.00	61.13	58.96	62.22	61.13	60.05	58.96
52	50	50	0.5	478	0.00	100.00	0.00	0.00	0.00	61.62	61.62	61.62	61.62	61.62	61.62
53	25	75	1	1263	68.88	26.29	4.83	0.00	0.00	60.87	58.81	61.90	60.87	59.84	58.81
55	50	75	1	1902.1	0.00	100.00	0.00	0.00	0.00	61.62	61.62	61.62	61.62	61.62	61.62

폐지수집노인과 교통안전에 대한 폐지수집노인 인식조사

안녕하세요.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팀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생 인권연구 프로젝트 공모전’에서 ‘폐지수집노인의 안전권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폐지수집노인과 교통안전에 대한 폐지수집노인인식”을 조사하고자 하며, 이에 본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본 설문조사의 데이터는 연구가 종료된 후 전량 폐기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상 소요시간은 5~10분입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질문 내용을 읽고, 해당하는 응답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어르신께서는 “차도에서” 손수레를 끄실 때 차량과의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0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안전												매우 위험

2. 손수레는 주로 어느 시간대에 끄시나요? ()

(예시. 9시~12시, 오후 6시~7시)

2-1. (이른 새벽, 야간에 끄시는 경우) 다니시는 길은 충분히 밝은가요?

① 예 ② 아니오 ③ 기타 ()

3. 차도와 보도 중 주로 어디에서 손수레를 끄시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③ 기타 ()

3-1. (3번 질문에 '차도'라고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2. (3번 질문에 '보도'라고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손수레 운행 중 차량과 교통사고를 경험하거나 경험할 뻔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4-1. (4번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 횟수는 몇 번인가요? (번)

5. 손수레 운행 중 행인과 부딪히거나 부딪힐 뻔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5-1. (5번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 횟수는 몇 번인가요? (번)

6. 손수레를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끌기 위해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7. 손수레 보도 운행에 찬성하시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 질문 내용을 읽고, 해당하는 응답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8. 만약 손수레를 주로 보도에서 운행한다면, 차량과의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위험할 것 같나요?

	0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안전												매우 위험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다음 문항은 귀하가 느끼는 '이동수단별 위험도'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입니다.
 상황은 '보도 보행시'와 '차도 주행시' 2가지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별로 귀하가 마주쳤을 때 느끼시는 위험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보행 중 "보도 위에서" 아래의 각 이동수단을 "마주칠" 경우, 귀하가 느낄 "위험도"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각 이동수단은 모두 운행중인 상태를 가정)

			
① 손수레	② 자전거(무동력)	③ 킥보드(무동력)	④ 전기자전거
			
⑤ 전동킥보드	⑥ 전동이륜평행차	⑦ 전동휠체어	⑧ 오토바이

	매우 안전 0	1	2	3	4	5	6	7	8	9	매우 위험 10
① 손수레											
② 자전거(무동력)											
③ 킥보드(무동력)											
④ 전기자전거											
⑤ 전동킥보드											
⑥ 전동이륜평행차											
⑦ 전동휠체어											
⑧ 오토바이											

6. 운전 중 “차도 위에서” 아래의 각 이동수단을 “마주칠” 경우, 귀하가 느낄 “위험도”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각 이동수단은 모두 운행중인 상태를 가정)

			
① 손수레	② 자전거(무동력)	③ 키크보드(무동력)	④ 전기자전거
			
⑤ 전동키크보드	⑥ 전동이륜평행차	⑦ 전동휠체어	⑧ 오토바이

	매우 안전 0	1	2	3	4	5	6	7	8	9	매우 위험 10
① 손수레											
② 자전거(무동력)											
③ 키크보드(무동력)											
④ 전기자전거											
⑤ 전동키크보드											
⑥ 전동이륜평행차											
⑦ 전동휠체어											
⑧ 오토바이											

7. 보행 중 “보도 위에서” 아래의 각 이동수단을 “마주칠” 경우, 귀하가 통행하는 데에 “방해되는 정도”를 평가해주세요. (각 이동수단은 모두 운행중인 상태를 가정)

			
① 손수레	② 자전거(무동력)	③ 키크보드(무동력)	④ 전기자전거
			
⑤ 전동키크보드	⑥ 전동이륜평행차	⑦ 전동휠체어	⑧ 오토바이

	전혀 방해 안됨 0	1	2	3	4	5	6	7	8	9	매우 방해 됨 10
① 손수레											
② 자전거(무동력)											
③ 키크보드(무동력)											
④ 전기자전거											
⑤ 전동키크보드											
⑥ 전동이륜평행차											
⑦ 전동휠체어											
⑧ 오토바이											

8. 운전 중 “차도 위에서” 아래의 각 이동수단을 “마주칠” 경우, 귀하가 주행하는 데에 “방해되는 정도”를 평가해주세요. (각 이동수단은 모두 운행중인 상태를 가정)

			
① 손수레	② 자전거(무동력)	③ 키크보드(무동력)	④ 전기자전거
			
⑤ 전동키크보드	⑥ 전동이륜평행차	⑦ 전동휠체어	⑧ 오토바이

	전혀 방해 안됨 0	1	2	3	4	5	6	7	8	9	매우 방해 됨 10
① 손수레											
② 자전거(무동력)											
③ 키크보드(무동력)											
④ 전기자전거											
⑤ 전동키크보드											
⑥ 전동이륜평행차											
⑦ 전동휠체어											
⑧ 오토바이											

9. 귀하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상태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18번으로 이동)

[9에서 “예”라고 답한 경우, 아래의 질문(10번~17번)에 응답]

10. 귀하는 최근 3개월간 차량을 직접 운전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 귀하가 주로 운전하시는 차량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승용자동차(10인 이하)
- ② 승합자동차(11인 이상)
- ③ 화물자동차

- ④ 특수자동차
- ⑤ 이륜자동차
- ⑥ 건설기계
- ⑦ 오토바이
- ⑧ 기타

12. 귀하는 일주일에 며칠 운전하십니까? [1개 선택]

- ① 주 1일 미만
- ② 1일
- ③ 2일
- ④ 3일
- ⑤ 4일
- ⑥ 5일
- ⑦ 6일
- ⑧ 7일

13. 귀하의 운전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입니까? [1개 선택]

- ① 30분 미만
- ②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③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
- ④ 1시간 30분 이상 2시간 미만
- ⑤ 2시간 이상 2시간 30분 미만
- ⑥ 2시간 30분 이상 3시간 미만
- ⑦ 3시간 이상

14. 귀하는 차량 운전 중 손수레를 운행중인 폐지수집노인으로 인해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개 선택]

- ① 예 ② 아니오(16번으로 이동)

15. 어떠한 불편함을 경험하셨습니까?

16. 귀하는 차량 운전 중 폐지수집노인이 운행하는 손수레와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 혹은 경험할 뻔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18번으로 이동)

17. 사고 당시 어떠한 피해를 입었습니까?

파트4. 보행자 경험 조사

18. 귀하의 보행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입니까? [1개 선택]

- ① 30분 미만
- ②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③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미만
- ④ 1시간 30분 이상 2시간 미만
- ⑤ 2시간 이상 2시간 30분 미만
- ⑥ 2시간 30분 이상 3시간 미만
- ⑦ 3시간 이상

19. 귀하가 주로 보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중복 선택]

- ①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
- ② 왕복 2차선 미만의 차도 주변의 보도
- ③ 왕복 2차선 이상 4차선 미만의 차도 주변의 보도
- ④ 왕복 4차선 이상 6차선 미만의 차도 주변의 보도
- ⑤ 왕복 6차선 이상 8차선 미만의 차도 주변의 보도
- ⑥ 왕복 8차선 이상의 차도 주변의 보도
- ⑦ 산책로
- ⑧ 기타

20. 귀하는 “보도 위를 보행” 중 손수레를 운행중인 폐지수집노인으로 인해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22번으로 이동)

21. 어떠한 불편함을 경험하셨습니까?

22. 귀하는 “보도 위를 보행” 중 폐지수집노인이 운행하는 손수레와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 혹은 경험할 뻔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24번으로 이동)

23. 사고 당시 어떠한 피해를 경험하셨습니까?

파트5. 폐지수집 손수레에 대한 인식 조사

24. 귀하는 손수레가 보도로 통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① 예(찬성한다) ② 아니오(반대한다)

25. 위의 질문에서 그렇게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6. 귀하는 폐지수집노인이 손수레 운행 중 차량과의 교통사고를 경험할 위험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매우 안전												매우 위험

27. 귀하는 폐지수집 손수레의 폭이 얼마(몇 cm)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CM

28.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귀하가 평소 다니시는 ‘보도(보도)’의 폭이 얼마(몇 cm)라고 느껴지십니까?

_____CM

모두가 존엄한 노인 돌봄을 위한 제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권적 성찰을 중심으로

홍승희, 이주희

모두가 존엄한 노인 돌봄을 위한 제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권적 성찰을 중심으로

홍승희, 이주희*

[목 차]

I. 들어가며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목표
4. 연구 방법

II.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성찰

1. 정밀한 노인 인권 보장 미비
2.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 요양보호사의 노동 인권 침해 백태

III. 더 나은 돌봄체계를 위한 제언

1. 노인의 요양시설 입·퇴소 및 생활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반영 절차 마련
2. 노인-요양보호사 간 맞춤형 매칭 절차 마련
3. 장기요양기관 관리 및 개선
4. 요양보호사 관리체제 개편
5. 지역사회 기반 돌봄 형태 개발 및 지원

IV. 나가며

참고문헌

I. 들어가며

1. 연구 배경

한국은 2018년에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2026년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에 2060년경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40%를 초과하고 초고령층으로 분류되는 85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13%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통계청, 2019)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2018(1))는 한국 사회 내 노인은 다른 연령층 혹은 국가와 비교할 경우, 인간다운 삶의 영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으며 이에 노인 인권

* 홍승희(서어서문학과 16) 이주희(사회학과 18)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개중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는 이른바 ‘돌봄권’은 노인의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한다. 또한 이러한 건강한 삶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돌봄 보장 주체로서 국가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에 주로 가족이 사적인 영역에서 담당하던 노인 돌봄은 2000년대에 들어 점차 사회화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대표적인 공적 돌봄 서비스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마련돼 시행중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노인 돌봄 체제로서, 2000년 1월경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이 설치된 후, 2005년 7월 시범 사업을 거쳐 2008년 법안 시행과 함께 시작되었다(정성출 외, 2011: 3). 현재 가입자이자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의 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5,288만명에 이르고, 보험급여를 수급하는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1%에 해당하는 8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김용하, 2020: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900년대 중반부터 비롯된 노인 인권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증대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권고와 노인 학대가 조명되기 시작하던 우리 사회의 필요에 부응(이연순·우국희, 2013: 88)하는 흐름 속에서 제정 및 시행되었다. 이연순·우국희(2013)는 이를 노인 인권 보장에 있어 핵심적인 변화로 평가한 바 있는데, 이는 해당 제도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목적을 지니고, 시행 결과 이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노인 돌봄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민주적 정책 결정 구조가 미비한 상태하에 재정 지출 억제와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허은, 2019: 195)한 나머지, 해당 제도의 미흡한 돌봄권 보장에 관한 문제가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지금, 노인 돌봄 이슈와 돌봄권 보장과 관련하여 돌봄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 이외에도 돌봄과 얽혀있는 노인의 다양한 형태의 권리 보호 및 신장을 위한 논의가 절실하다. 이에 인권적 관점을 토대로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구체적인 돌봄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돌봄이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논의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권 침해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요양보호사는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들의 일상생활 지원과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을 돕는 역할을 한다(김정희·김태동, 2018: 260).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인권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노동 인권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성격을 가지므로 자신의 권리 보장 보다는 노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됨에 따라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

려운 상황에 있다(전찬희, 2013: 236).

돌봄의 관계적 속성을 고려하면, 노인과 요양보호사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이 이뤄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석재은 외(2015)는 좋은 돌봄의 필요조건으로 서로 존중하는 좋은 관계 맺기를 강조한 바 있는데, 이는 나아가 서로의 인권이 존중될 때 양질의 노인 돌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공적 돌봄 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는 수급자로서의 노인과 돌봄노동자로서의 요양보호사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노인 돌봄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는 다음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주체 시각 중심의 연구로, 요양보호사가 과도한 노동강도, 저임금 등에 시달린다는 노동 이슈를 제기(최혜인, 2016)하거나 직무 소진으로 인한 정서적 고갈 감소를 위한 방안을 제안(강대훈·홍석자, 2013)하는 등 요양보호사의 돌봄 경험을 조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둘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다양성 부족, 대상자 선정 기준의 모호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도출(이옥자·김금환, 2019)하는 등 정책 및 제도 차원에서 현행 노인 돌봄 체제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연구, 셋째로는 적용범위 확대, 지속가능성 확대, 서비스 질 제고 등의 차원에서 독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분석(장효진·이채정, 2021)하는 등 노인 돌봄 체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거나 해외 사례를 탐색하는 연구다.

이같은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돌봄 제도를 관장하는 정부, 돌봄 서비스의 제공자인 요양보호사 및 수혜자인 노인을 둘러싼 논의를 별개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와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들에 관한 문제제기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이들의 경우 노인 돌봄 서비스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요양보호사, 노인의 관점에서 문제점 지적 및 해결방안 도출이 이루어지지 못해 관련 논의의 현장성을 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귀적과는 달리 노인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 구체적인 과정 속 인권 쟁점을 정리하고, 그와 같은 돌봄 과정에서 돌봄 제공자인 요양보호사의 권리, 개중에서도 특히 노동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지적한 뒤, 돌봄이라는 사안 속에는 개별 주체들의 권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돌봄권의 보장이 곧 양자 내지 다자의 권리 신장으로 이어짐을 밝히는 데 방점을 두고자 한다.

3. 연구 목표

본 연구는 현직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적 노인 돌봄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돌봄 서비스의 구체적인 양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해당 제도가 표면적으로는 노인 인권 보장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미비한 실태를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돌봄의 속성을 고려할 때, 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주요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돌봄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실태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책을 강구하고 노인 돌봄 체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관해 제언할 것이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돌봄 서비스에 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문헌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였다. 질적연구의 일환으로, 노인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현직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요양보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네이버 카페, 밴드 등을 통해 면접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면접에 참여한 6인의 요양보호사의 특성 및 면접 일시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	연령대	성별	종사 서비스	민간/국공립	면접 일시
A	50대	여성	재가	민간시설	2021.08.23.
B	60대	여성	재가	민간시설	2021.08.27.
C	40대	여성	재가	민간시설	2021.08.27.
D	60대	남성	시설	민간시설	2021.08.30.
E	60대	남성	시설 및 재가 병행	민간시설	2021.08.30.
F	50대	여성	재가	민간시설	2021.08.30.

심층 면접은 2021년 8월 23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통화로 진행하였으며, 각각 40분 내외로 소요되었다.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연구 목적과 절차, 녹취에 관한 안내 후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하였다. 자료 정리 과정에서는 녹취 자료를 전사한 뒤, 녹취록을 반복해 읽으며 주요 쟁점을 구성하였다.

Ⅱ.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성찰

1. 정밀한 노인 인권 보장 미비

모든 노인은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전문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자로서의 노인이 직면한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0)의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학대(양로시설, 요양시설 및 병원 등에서 발생한 학대)의 경우 2007년 전체 신고 학대 중 5.3%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2019년 12.7%로 증가했고, 이는 일정 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 많아짐에 따른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행위자 중 요양원 등의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에서 2019년 18.5%까지 증가하기도 했으며(KBS, 2020.10.11.), 여전히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학대 소식은 종종 들려오고 있다.

특히나 노인의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과 관련한 문제는 학대로 인한 인간 존엄성의 훼손뿐만 아니라 주거권, 이동권, 행복추구권, 프라이버시 등 여러 기본권 이슈들을 포함한다(안경진, 2020: 307).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돌봄 과정에 얽혀있는 다층적인 노인의 권리는 촘촘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1) 시설 입소 및 퇴소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사적 사항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10조¹⁾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서, 인생 최후의 단계까지 개인의 존엄은 존중받아야 하며 스스로의 생명,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김준표, 2020: 156). 그러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특히 시설 입소를 결정함에 있어 자기결정권의 보장은 요원한 일이다. 고진경 외(2009), 전성남(2014), 김준표(2020)는 많은 노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나 가족 간의 논의를 거치기보다는 가족, 보호자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입소를 경험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노인을 돌봄 의사결정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안경진, 2020)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을 보여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가정 내 돌봄이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되는 과정,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가족이 일반적으로 노인의 의사를 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21.07.08.). 심층 면접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다.

심한 경우는 요양원에 보내는데 가족의 의사든, 환자 의사든, **환자 의사는 열이면 아홉은 안 갈라 그러겠죠.**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요양원은 사람도 부족하대요. 요양보호사 한 명이 몇 명씩 보는 모양이에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씻기지도 못하고 환자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데, 정신질환이 있거나 치매가 있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면 사형선고 받는 기분이라든가.** 요양원이 완벽하진 않으니까. (면접 참여자 E)

노인들이 요양시설 입소와 관련해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민간 요양원이 이익을 추구하는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요양시설의 주된 수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와 입소자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의 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보험급여는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들 가운데 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공단을 거쳐 시설입소 비용의 80%를 부담해주는 것이다. 입소 비용은 요양등급에 따라 1인당 한 달에 120만~150만원 정도이다(한겨레, 2013.04.21.). 입소 노인의 수는 곧 요양원의 수입과 비례하므로, 요양원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 할 노인들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시설의 이윤구조를 고려했을 때 어려운 일이 되는 셈이다. 나아가 이는 퇴소 역시 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이뤄지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가 2018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노인 중 퇴소 결정 주체가 ‘가족(보호자)’인 경우가 66.3%로 가장 많았고, ‘본인’인 경우는 30.7%에 불과했다(국회뉴스ON, 2019.06.17.). 면접 참여자 D의 지적에서도 이것이 잘 드러난다.

당연히 가족... 어르신들 본인 스스로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걸 100프로 내가 단언컨대 다 가족들에 의해서 들어오고 원래는 노인 인권에 보편은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가게끔 해주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한 번 들어오면 죽어서 나가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어르신 임의대로 결정권이 전혀 없어요.

(연구자)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개선은 보호자들의 의식이 개선이 되어야지, 일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원장이 A라는 어르신이 집에 가고 싶어 하십니다, 하고 전화하는 원장은 없다는 거죠. 왜? 돈이랑 연결되니까 되도록 잡고 있으려고 그러죠. (면접 참여자 D)

한편, 재가요양서비스의 이용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시설 입소에 대한 ‘불가피함’

이 제기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면접 참여자 C의 응답에서 이것이 잘 드러난다.

근데 보호자하고는 충분히 그걸 거친 다음에 시설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아직까지. 본인의 의사보다도 등 떠밀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집에서 누가 케어가 안 되고 종일 요양보호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잠깐씩이나...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도 안타까운 경우도 많아요. 시간적인 게 이렇게 늘어났으면 하는데 거의가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는 혼자 그걸 다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가도 힘들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설은. (면접 참여자 C)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재가급여 이용자의 불만족 사유로 불충분한 이용 시간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가급여의 1일 평균 이용시간은 방문요양 2.6시간, 방문목욕 1.1시간, 방문간호 0.9시간 등 길어도 2시간 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에 따라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지 않는 동안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혹은 가족이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노인은 돌봄 공백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가족들이 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노인을 시설에 보내는 상황이 초래되곤 한다.

2) 기계적 돌봄과 존엄의 훼손: 정서적·정신적 돌봄의 부재와 사생활 보장권 침해

요양시설에서는 돌봄이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노인 개인의 정서나 특성이 고려되기도는, 빠르고 관리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경진(2020: 316)은 이와 같은 돌봄 방식이 노인의 몸이 처한 환경과 다양한 관계 안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의 돌봄 경험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의 존엄은 훼손되기 십상이다.

요양시설에서 기계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근본 원인에는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을 담당하는 노인의 수가 많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입소자 대비 요양보호사의 비율로 상시 돌봄 인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시설에서 인건비를 아끼고자 주말, 야간, 연휴 등에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를 평소보다 줄이므로(한겨레, 2019.09.09. (1))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노동하는 과정에서 1인당 2.5명의 노인을 맡는 경우는 드물다.

한편, 이러한 기계적 돌봄 방식은 진정한 의미의 돌봄이 이뤄지는 것을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특히 노년기의 경우 사회적 역할의 상실,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등으로 고립감, 고독감이 심화되는 특성으로 인해 정신적, 정서적 돌봄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1991년 UN이 발표한 「노인을 위한 원칙」에서 돌봄에 관해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전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된 것을 통해서도 양질의 노인 돌봄을 위해서는 신체적 돌봄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돌봄 역시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시설 거주 노인이나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독거노인에게 요양보호사는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존재로서, 이들의 정서적 돌봄은 노인의 존엄한 삶과 죽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계적 돌봄 방식에 정서적 돌봄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경우에도 돌봄은 보통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집중되어 정서 지원에 할애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면접 참여자 C의 말에서 드러났다.

(연구자)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과정에 혹은 요양보호사가 된 이후 받는 교육에서 정서적인 교감이나 의사소통 등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이 있나요?

(중략) 의사소통 이런 것도 (교육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일상업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하기 바쁜 것 같아요. (중략) 2-3시간 만에 그거 하기도 바쁜 것 같아요. (면접 참여자 C)

한편, 기계적 돌봄 방식은 노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곤 한다.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돌봄을 추구하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사생활 보장에 대한 요구는 실현되기 어렵다. 안경진(2020: 317)은 노인에게 프라이버시 확보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시 노인의 수치심과 우울감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서로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하게 될 때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미흡한 사생활 보호는 노인 인권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3) 노인의 이동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2014)는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인권 영역과 세부적 권리에서 외출 및 이동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안전과 보호라는 미명하에 시설 거주 노인들은 침대에 손발이 묶이기도 하고, 산책과 같은 가벼운 이동도 제한되는 등의 권리 침해를 겪곤 한다. 유아름(2014)은 요양시설에서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노인이 전체 응답자의 79.8%로 나타났음을, 박미옥(2019)은 요양시설 거주 노인 중 94.5%가 신체 억제대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했음을 밝힌 바 있다.

본래 보건복지부의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 지침」(2015)에서는 시설 거주 노인에 대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희숙(2020: 9)은 실제적으로 노인의 신체 구속은 ‘긴급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쇠퇴 등 노화로 인한 변화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안경진(2020: 317) 역시 영유아기 아이들의 경우 타인에 대한 의존도 측면에서 노인과 유사한 특성을 갖지만, 이들의 경우 세상을 자유롭게 탐색하게끔 하는 돌봄 방식을 취하는 데 반해 노인의 경우 외출, 산책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권이 제한되는 아이러니를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즉, 노인에 대한 신체 구속이 노인의 ‘약자성’, ‘취약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에 의해 지속됨을 보여준다.

노인의 안전을 위해 신체를 구속한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신체를 구속함으로써 노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14년 5월 장성요양병원 화재 당시 신체 억제대에 묶여 있던 일부 환자들이 그것을 제거하지 못해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이는 신체 구속 및 이동의 제약이 곧 노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의 ‘묶이지 않을 권리’는 실제적 권리로 논의(강희숙, 2020)되고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공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속에서 돌봄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대표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가 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3호)에 따르면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 항목은 ①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②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③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와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④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이때,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지표에 노인의 권리 옹호와 관련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충 처리, 노인학대 방지, 노인학대 신고,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신체구속에 대

한 지침마련, 신체구속 시 이용자 동의 등과 같은 항목을 평가하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항목은 급여제공과정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소분류 중 신체구속 및 학대의 평가요소로 상기의 항목들을 확인하는 명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 노인에 대한 권리옹호시스템이 정비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불충분하다(모선희 외, 2011: 106).

더군다나 이와 같은 서비스 질 정기평가에 따라 평가등급 하위 기관에 대한 페널티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결과의 활용에 있어서는 미온적(석재은, 2017: 434)이다. 또한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지정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되었지만, 이 역시 즉각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2019년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6년을 맞춰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한겨레, 2019.09.09. (2)). 이는 무엇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바에 대한 심층적, 적극적인 성찰과 서비스 질의 즉각적 개선을 막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보장하고자 했던 노인 인권을 피상적인 노인 인권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노인을 행위능력이 없는 돌봄의 '대상'만으로 간주하는 시선이 만연한 사회에서 구체적인 돌봄 과정에서 노인이 겪을 수 있는 다층적인 인권 침해적 상황에 대한 세밀한 고려 없이 제도가 시행되고, 돌봄 서비스의 시장화와 더불어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돌봄의 질 저하에 대해 정부가 규제자로서의 역할(석재은, 2017)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2.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 요양보호사의 노동 인권 침해 백태

돌봄 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인권은 요양보호사의 인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요양보호사가 겪는 인권의 침해는 결국 그 급부를 받는 노인의 처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전찬희, 2013: 235). 요양보호사의 인권 문제는 특히 노동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노동 인권은 일, 노동과 관련한 인권 또는 노동자의 인권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18(2)),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노동에 내재된 인격의 가치 실현과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라는 의미를 함축한다(김정희·김태동, 2018: 262).

1) 요양보호사의 불안정노동과 인권 침해

요양보호사의 노동은 그 특성상 '불안정노동'이라 할 수 있다. Rodgers(1989: 3)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① 고용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일; ② 노동자의 근로조건, 업무속도에 대한 통제가 떨어지는 일; ③ 해고, 차별, 사회보장수급에 관한 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

지 않는 일; ④ 저임금과 임금의 편차가 심한 일의 4가지 차원으로 설명한 바 있다(김수영 외, 2020: 92). 불안정노동은 노동자의 소외를 촉진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복지타임즈, 2020.06.19.), 무엇보다 노동자의 삶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1) 고착된 저임금 및 미흡한 수당 지급

요양보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는데, 문제의 중심에는 낮은 임금이 있다. 2018년 기준 서울시의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전체 평균 급여는 136만원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였다(한겨레, 2019.08.08.).

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2017년 5월 말부터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비율 준수가 의무화되면서 2019년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로 요양시설은 1년치의 60.2%, 방문요양 서비스 기관은 86.4%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시설 요양보호사는 근무 시간 및 시급 기반 기본급(대체로 최저임금)에 더하여 개별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주휴수당, 심야수당, 기타수당, 장기근속장려금 등을 받게 된다(문용필·이호용, 2021: 6). 그러나 인건비 비율 관련 법 준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인건비 지출 비율을 어긴 기관은 7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 2019.11.03.). 심층 면접 결과 기관마다 임금 수준이 상이하며, 상기한 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노동을 통해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이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임을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의 생존권은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센터마다 비리 아닌 비리도 있지만 월급 같은 경우도 몇 퍼센트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일괄적으로 해서 하면 좋죠. (면접 참여자 A)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주는 수당이. (중략) 원래는 국가에서 돈 주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80%를 주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일당으로 해서 쳐서 줘요. 다 센터마다 조금씩 달라요. (면접 참여자 B)

한편, 호봉제 기반의 임금 구조를 갖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달리 시설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 시급 기반 임금 구조를 갖고 있다(문용필·이호용, 2021: 6). 이는 10년을 일한 요양보호사와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요양보호사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장기근속과 관련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근무경력이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3~5년)이면 5만원,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5~7년)이면 6만원, 84개월(7년) 이상이면 7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는 요양보호사들에게 한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했을 때만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은 문제적이며, 아래의 심층 면접 내용에서 면접 참여자들의 불만이 잘 나타난다.

(중략) 제가 가서 일을 했을 때 다른 처음 본 센터장님들이 오래 하셔서 수월하게 잘 하신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일을 했을 때보다는 어르신들과의 관계나 그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하신다고. 근데 특별히 인센티브 이런 건 없죠. (면접 참여자 F)

시설에서 일하다가 어르신이 돌아가셨거나 하면 이게 센터 장기 수당 이런 게 문제가 다른 센터로 옮기면 끊어져 버리니 웬만한 선생님들이 처음에 들어간 센터에 싫든 좋든 그렇게 그냥 있는 거죠. (면접 참여자 A)

이윤 추구의 성격을 지닌 민간 요양기관의 특성²⁾과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근본적으로 돌봄노동이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장지연(2020)은 그 이유로 다양한 설명을 제시한다. 첫째로, 송다영(2014)에 따르면 다른 업종의 일자리들이 기술발달을 통해 업무속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안 돌봄노동은 본질적으로 대인서비스이므로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돌봄노동이 중장년층 여성이 집중적으로 찾는 일자리가 되면서 노동력의 공급 과잉이 이루어짐에 따라 임금향상이 어려워진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셋째로, 여성주의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돌봄노동이 여성이 가정 내에서 하던 일의 연장선으로 여겨지고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편견이 작용하여 돌봄노동의 저평가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돌봄노동 자체가 사회적으로 저평가된다면 요양보호사의 노동 강도나 전문성 등은 임금이 결정되는 맥락에서 소거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돌봄노동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해소되어야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2) 불안정한 고용의 지속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1년의 계약직인 경우가 많으며(한국일보, 2021.02.13.), 특히 재가 서비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돌보고 있던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소하게 되거나 사망할 때, 혹은 단순히 노인 및 노인의 가족이 요양보호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때 갑작스런 해고를 통보받는 경우도 빈번하다.

2) 장지연(2020)은 간병인이나 베이비시터와 같이 시장화된 돌봄노동에 비해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와 같이 공공서비스화된 돌봄노동은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다고 말한 바 있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가 재원을 제공하더라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요양시설의 운영에 의존해서 이루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2018(2): 265)는 이러한 시장의존적 돌봄서비스 전달체계가 돌봄노동의 사회적 저평가를 지속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

일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이 일이 불안정해요, 진짜.** (면접 참여자 A)

(연구자) 혹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다른 분으로 바꾸겠다든지 그만뒀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경우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 따로 없나요?

없어요. 대상자가 싫으면 다른 센터로 옮기는 거예요, 절차 없이. (면접 참여자 B)

한편, 노인과 요양보호사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에 문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경우, 기관에서는 이를 시정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해당 요양보호사를 다른 요양보호사로 대체해버리곤 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재취업이 어려운 요양보호사가 적극적인 문제 시정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아래의 심층 면접 내용에서 그 구체적인 실태를 엿볼 수 있다.

(연구자) 그러시는 거(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으세요?

불만은 있지만 어떡한대요. 그러면 (센터에서) 그만두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랑 바꾸는데. (면접 참여자 B)

(연구자) 업무랑 무관한 일들을 요구받으실 때 보통 거절을 하시는 편이신 거예요?

네, 거절하죠. 그걸 해서 이렇게 제대로 해서 **그분이 이해를 못하면 관둬야죠 뭐, 제가.** 그거를 중재를 보통은 제가 센터에 시정 요구를 하잖아요? 센터에서 그걸 중재를 해서 그거를 대신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싫으면 관둬라.** 다른 사람도... 다른 보호자든 뭐... (면접 참여자 C)

요양보호사는 사실상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로 자리매김했다. 2016년에서 2020년 6월 사이 50대 요양보호사는 15%, 60대 요양보호사는 84%, 70세 이상 요양보호사는 149% 급증했다(매일경제, 2020.10.06.)는 점에서도 이를 짐작해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우리나라의 이중 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남성에 비해 더욱 차별을 받는 집단인데, 윤수린(2016)은 연령 및 성에 의한 차별의 교차, 여성 중·고령자의 일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 등이 중·고령 여성이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요양보호사는 불안정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삶의 안정성을 위협받으면서도 그것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돌봄노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인권 침해

(1) 휴식시간 부재와 ‘공짜노동’

요양보호사들은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2020년 622명의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해진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응답이 68.1%에 이르렀다(한겨레, 2021.04.30.).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시설 서비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휴게시간 문제가 두드러진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독립적 휴게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 차원에서 제각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24시간 근무에 6시간부터 11시간까지 휴게시간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시아경제, 2020.10.26.). 늘어난 휴게시간에 요양보호사들은 일을 하지만, 시설은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무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것이다.

지난 1월 요양원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을 지정한 일에 대해 대법원이 요양보호사들이 심야에 환자와 분리되지 않은 채 비상상황에 대비하며 보낸 시간은 엄연한 ‘근로시간’이므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며 처음으로 심야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바 있다(경향신문, 2021.02.22.), 그러나 현장과 법의 괴리는 여전하며, “‘공짜’ 노동시간이 ‘숨은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횡행하고 있다”(한겨레, 2021.04.30.). 요양보호사의 ‘휴식권’³⁾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2) 돌봄노동자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불인정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는 돌봄노동에 대한 무시와 인권 훼손을 의미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정희·김광병, 2019: 65). 즉,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가 요양보호사를 ‘하찮은 일자리’로 전락시킴에 따라 돌봄노동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인권 훼손을 경험하기 쉽다는 것이다. 권영숙(2020)은 모든 존중은 ‘존재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하는데, 많은 이들이 요양보호사라는 존재를 전문적인 돌봄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심층 면접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3) ‘휴식권’이라 함은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휴식이 노동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인간의 본질적 시간이며 ‘근로 외’의 시간이 인격을 형성함을 강조하며 휴식권을 인격과 인권의 한 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한겨레, 2021.08.18)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은 그냥 센터는 돈벌이수단으로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센터가 저 자세로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그냥 돈벌이수단으로밖에 치부를 안 하니까 저희는 완전히 대상자들이 더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중략) 가족도 도움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요양보호사들. 근데 제가 갔을 때 어떤 보호자분이 그랬어요. 나 같으면 못한다, 이렇게. 11,000원 받고는 나는 안 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보호자님이? 그런 걸 저희가 하면 대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좋게는 봐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엔. (면접 참여자 C)

돌봄 노동에 대한 무시와 돌봄 노동자로서의 전문성 인정의 부재는 요양보호사와 노인을 연결할 때 요양보호사의 이전 경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특정 등급의 노인 돌봄을 지속하다 보면 경험의 누적으로 해당 등급 노인의 돌봄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인정과 고려 없이 기관에서는 대부분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빨리 연결되는 것을 중시한다. 석재은 외(2015)는 ‘좋은 돌봄’에 대해 논하며 노인과 가족의 욕구 등을 총체적으로 사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연결하는 것이 관리자의 역량으로서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신속히 구해야 하고, 기관에서는 한 명의 수급자라도 더 빨리, 많이 확보하기를 원한다는 현실 속에서 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아래의 심층 면접 내용에서 이와 관련한 면접 참여자의 의견이 잘 드러난다.

(연구자) 요양보호사님과 케어 받으시는 어르신 연결이 이루어질 때 환자의 특성들,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이전 이력 등이 감안이 되나요?

아뇨, 그게 전혀 안 이뤄지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만 따지지 크게 경력은 여쭙보는 데가 없었어요. (중략) 그니까 그런 거에 대해 자세하게 해서 이 사람이 그걸 그 분한테 맞는 대상자인지 대상자도 맞아야 하고 요양보호사님도 그 분하고 어느정도 그게 맞는 사람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바뀌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해서 잘 연결해주는 게 의무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이 아니라 무조건 그거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빨리 연결해주고 빨리 수급금 받는 것, 시작을 하는 것? (면접 참여자 C)

한편, 요양보호사들은 업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이 요양보호서비스 외의 노무 제공을 강요받은 경우를 업무상 애로사항으로 꼽은 경우가 44%로 나타났다(전찬희, 2013: 239). 아래의 심층 면접 내용에서 구체적인 실태가 잘 드러난다.

만약에 아들이나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드님 반찬 같은 것도 해줘야 하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반찬 해주면 좀 거북하잖아요. 반찬 같은 것 못한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기 따님들 김치 해줘야 한다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

면 이런 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죠. (면접 참여자 A)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할머니잖아요? 할머니면 할아버지도 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러면 같이 케어를 해야 해요. 따지고 보면 지금 그렇다고 할머니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케어를 하는 거지. (면접 참여자 B)

(중략) 근데 하여튼 간에 화장실 변기 고장나면 변기 고치고 문짝 고장나면 문짝 고치고, 주방 청소, 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다 그런진 모르겠으나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주방에서 밥하는 분들이 보통 9시 출근을 해요. 6시 퇴근을 해요. 근데 요양원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아침을 6시 반부터 준비해 갖고 나가는데, 그러면 아침은 저희가 주방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면접 참여자 D)

이러한 내용을 통해 재가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돌봄 서비스 이용자인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의 가족에 대한 돌봄까지 같이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시설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돌봄 서비스 외에 시설 차원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요양보호사를 전문성을 갖춘 돌봄노동자라기 보다는 어떤 일이든 맡겨도 되는 사람 정도로 간주하는 인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기관과 돌보는 노인, 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노동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인격은 쉽게 훼손되고 만다.

(3)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

요양보호사들은 주로 중·고령 여성이다. 2020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59.6세였으며, 여성이 94.9%, 남성이 5.1%를 차지하고 있었다(매일경제, 2020.10.06.). 많은 요양보호사가 재가 서비스에 종사함에 따라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노인과 요양보호사 둘만 남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 노인과 (여성) 요양보호사 간의 위계관계가 작동한다는 점은 요양보호사를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중 42.4%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머니투데이, 2020.10.20.).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성희롱은 직장 내 위계 및 권력 관계로 인한 고용상 차별이며 노동권 침해의 문제이자 안전한 근로 환경을 침해하는 것으로 건강권의 문제이다(최윤정, 2004; 안정은, 2016).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국미애, 2003), 이는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와도 연결되므로 사용자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하는 주요한 의무와 책임의 주체가 된다(안정은, 2016: 3).

그러나 장기요양기관과 기관의 장은 상기한 의무와 책임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규정들을 적용받는다. 가해자가 주로 ‘고객’의 지위에 있더라도 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장이 유급휴가 부여 등의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의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급하므로 유급휴가라는 것은 실현되기 어렵다(법률신문, 2021.01.08.).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피해를 기관에 토로해도 기관 입장에서는 서비스 이용객을 잃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요양보호사를 탓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Jtbc 뉴스, 2020.11.28.). 요양보호사가 경험하는 성희롱, 성폭력은 그 자체로 노동권 침해를 야기하는데, 문제제기를 해도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렵고 고용 관계가 종료되기 십상이라는 점에서 이는 곧 요양보호사의 생존권 박탈로도 이어진다(안정은, 2016).

3) 요양보호사의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적 창구의 부재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노인 및 그 가족이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상상하지 않은 채로 만들어졌다고 지적된다(오마이뉴스, 2021.02.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4항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역시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업무 외의 노무 제공 등을 강요받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인권 침해 상황들이 세밀히 고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기준에 ‘종사자의 전문성’은 언급되어 있지만 그들의 권리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드러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요양보호사가 열악한 노동 환경, 권리 침해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창구가 없다는 점이다.

(연구자)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토로할 수 있는 창구가 있나요?

없죠. 센터에서도 요양보호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중략) 요양사들이 같이 모임을 가져서 무슨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게 뭐 월급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뭐 그런 소통은 잘 못하고 있어요. (면접 참여자 A)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이나 이런 걸 어디다가 할 데가 없어요. (중략) 공부할 땐 그거 배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느 업체를 해서, 전화번호를 해서 그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여기 있네. 장기요양보호지원센터라는 게 있대요. 요양보호사들 인권 보호하는 곳이라는데, 이거가 지방자치단체라는데, 상담 및 지원, 건강관리부터 해서 사업지원을 한대요. 근데 전화번호도 없고 하나의 그걸로만 인식을 했지 저는 고충을 얘기할

때도 없고 센터에서도 그 역할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면접 참여자 C)

면접 참여자 C가 언급했듯이, 장기요양요원지원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고충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요원 고충상담 이용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유병선, 2020: 14). 또한 2016년에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가 법제화되기도 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상담, 교육, 건강관리 등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20년 8월 기준 전국에 설치 및 설치 예정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서울시, 경북, 경남 등 3개 시도를 중심으로 총 7곳이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설치된 기초자치단체는 총 4곳(강원도의회사무처, 2020: 131)에 불과하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립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투자비용이 적지 않아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이 논해진다(인천일보, 2021.05.14.). 이에 대해 유병선(2020)은 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권한이 없는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의 100%를 부담하면 실제 현장에서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의 전국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에 대해 높은 접근성을 가지는 것,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표면적인 노인 인권을 강조하며 설계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돌봄의 주된 주체로서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정의 부재, 연령과 젠더의 교차가 만들어내는 차별 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 속에서 노동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협의의 노동 인권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 후 제반 노동(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국가인권위원회, 2018(2): 108)로 정의되는데, 과연 요양보호사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노동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국가인권위원회, 2018(2))을 보장받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실은 요양보호사가 노동자로서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 상황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

Ⅲ. 더 나은 돌봄체계를 위한 제언

앞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구체적인 돌봄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제기한 문제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위시한 노인 돌봄체계의 개선점에 관해 인권적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개선안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노인의 요양시설 입·퇴소와 생활 전반에서의 의사결정권 보장 절차 마련, 노인과 요양보호사 간 맞춤형 매칭 시스템 구축, 요양 보호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요양보호사 관리 제도 개편,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돌봄 형태의 개발 및 지원을 포함한다.

1. 노인의 요양시설 입·퇴소 및 생활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반영 절차 마련

1) 요양시설 입소 및 퇴소 절차에서 의사결정권 반영 절차 구축

노인의 요양시설 입소 절차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⁴⁾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상 시설 입소에 대한 노인의 의사결정권 반영 여부가 제도적으로 강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은 자발성에 기한 선택으로 입소를 결정하기보다는, 보호자 내지 가족 구성원의 의사에 입각해 입소를 결정한다. 본 연구자들이 수행한 심층 면접에서도 노인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에 입소하는 어르신들에 관한 언급이 다수 있었다.

김준표(2020)는 노인의 자기결정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시설 거주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어려움과 관련해 통제와 자율성의 보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역설한다. 이에 더해 시설 입소 및 퇴소 과정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향후 노인의 정서적 건강,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가령,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았다고 응답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낮은 우울 수준, 높은 삶의 만족감 및 시설 내 생활의 만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의사결정권 보장의 미비한 실태와 중요성을 감안해, 노인의 인지·신체 능력 등에 따라 입소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의사 결정 절차에 강제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김준표(2020)에 따르면 입소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이 지켜지지 못하는 사유로 노인

4)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 등)

② 제18조 제1항 제1호 목록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10., 2008. 1. 28., 2015. 12. 29., 2016. 12. 30.>

1. 건강진단서 1부

2.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의 인지능력 부족과 가족의 의사결정이라는 다소 상이한 이유가 존재했다. 따라서 시설 입소 절차에 대해서는 노인 본인과 시설 간의 직접 계약에 의하되, 인지능력 등의 이유로 직접 계약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만 후견인 및 부양의무자, 지자체 장이 지정한 자에 의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퇴소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일 기간 이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히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떤 불이익이나 차별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의사신문, 2019.06.14)할 것이다.

한편, 노인과 노인 가족 구성원의 돌봄에 관한 논의가 노년기 이전인 중장년기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로써 당사자인 노인이 자신이 제공받고자 하는 돌봄의 형태에 관해 숙고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고, 이를 통한 의사 반영이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상 노인에 대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방식, 돌봄의 장소 등은 삶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이라는 영역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바, 돌봄에 관해 자기 자신을 포함해 주변인들과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과정은 삶과 죽음에 관한 결정이라고 일컬어도 무방할 정도로 필수적인 절차이다.

2) 시설 내 생활에서의 자기결정권 반영을 위한 매뉴얼 확립

앞서 본고에서 지적한 ‘기계적 돌봄’은 노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시기에 필수불가결한 정신적, 정서적 돌봄의 부재를 야기한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 대소변 처리, 목욕 등 프라이버시와 직결된 영역에서도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 이처럼 대상자 노인의 개인 공간인 자택에서 1:1케어 로 이루어지는 재가 요양서비스와는 달리, 시설 내 생활은 단체생활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더욱이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의 돌봄 형태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유사한 맥락에서 권금주(2015)는 「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환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즉, 환자들에게 요구되는 의료와 요양에 관한 요구 충족은 노인의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중요하며,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노인 환자의 자기결정권 기회 보장의 노력이 요구됨을 피력한다. 이에 병원에서 환자가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제한 사항,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 권리 침해 시 구제 방안 장치 등에 대한 안내 등 알 권리의 보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입소 이후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케어 행위, 실시 프로그램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주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인이 받

는 서비스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노인-요양보호사 간 맞춤형 매칭 절차 마련

현행 제도에 의거, 노인 대상자가 특정 요양보호사와 연결되는 과정에는 별도의 매뉴얼이나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임의적이고 기계적인 노인과 요양보호사 간의 연결 방식은 노인의 상태, 개인 특성 등에 관한 몰이해를 수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발휘에 제약을 가한다. 따라서 노인 개인의 질병의 특성 및 선호하는 돌봄 형태, 돌봄 요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요양보호사 또한 기존에 전담한 노인의 유형에 따른 경력 기반 매칭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이같은 매칭의 수행자로서 석재은 외(2015)는 돌봄 기관의 관리자를 꼽는다. 기관 관리자들은 돌봄 대상자인 노인이 가진 욕구를 적합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돌봄 현장에서의 발생한 갈등을 감소시키기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상자의 욕구 사정, 적절한 매칭, 그리고 양자 간 중재에 더하여 좋은 돌봄의 지속을 위해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요양보호사에게 대한 적절한 수퍼비전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이러한 매칭 절차는 연결이 이루어진 시점뿐 아니라 돌봄 개개의 과정과 돌봄 종료 시점까지 돌봄의 전 과정에 대한 기록을 포괄해야 한다. 이같은 돌봄에 관한 기록 시스템은 노인 개인의 특성과 요구의 추이 등의 파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노인이 보다 개인화된 맞춤형 돌봄을 제공받도록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닐 것이며, 노인 가족의 일방적 해고와 그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대 등 서비스 과정에서의 노인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장기요양기관 관리 및 개선

장기요양기관, 개중에서도 특히 요양원이 ‘수용소’와 같이 인식되는 데서 벗어나 노인이 생애의 한 시기를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적인 차원의 관리와 개선이 필수적이다.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요양원이 ‘피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노인이 ‘자신을 위해 마땅히 선택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할 수 있다면, 이는 곧 노인의 시설 입소에 관한 자기결정권 보장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1) 기관의 기본 인프라 등 보편적 규정 마련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구조상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 및 정책과 서비스 이용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기관의 존폐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요양서비스라는 공공의 사명이 충돌할 시에, 요양서비스 기관은 자신의 존립을 우선시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정책규제 레일의 경로를 수정하거나 이탈하는 경우(석재은, 2014: 425)가 발생한다.

이에 기관이 제공하는 돌봄 질을 일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서 요양기관의 돌봄 환경, 요양보호사 처우 등 기관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 개중에서도 기관 운영 과정에서 수가 구조의 투명화와 시설 간 급여 체계의 통일이 필요하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많은 응답자들은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급여가 천차만별인 점을 들며, 이와 관련해 기관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의 미비함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현행법상 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자 2.5명까지 담당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요양시설에서 인건비 절약 등의 이유로 이러한 인력 배치 미준수가 잇달아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돌봄의 질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 위반 단속을 통해 최소한의 돌봄의 질을 보장하며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의 질 격차를 좁히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요양시설의 실내 건축 설계 및 디자인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신체의 구속이나 이동의 제한 없는 노인 돌봄은 불가하지 않다. 특히 요양시설이 노인의 신체 및 행태적 특성에 맞게 노인 중심으로 설계된다면 그것의 실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남경은·최상현(2009)은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요양시설 거주공간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 요양 시설 현장 조사 결과, 거주 공간 구성 측면에서 공간 위치, 크기, 프라이버시 등의 항목에서 문제가 있으며, 조명, 안전성, 길찾기, 수납공간, 색채 등의 항목에서 문제가 발견됐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4인실의 적용, 소그룹 배치, 개인공간의 영역성 확립, 공동목욕실을 없애고 기계목욕실의 신설, 집중적인 조도 설계, 미끄럼방지 기능의 바닥재 사용, 모서리를 고려한 가구 사용, 글자 크기의 확대와 명시성 높은 글씨체의 사용, 수납공간 디자인의 변경, 채도를 높이고 요양실 별로 다른 색채를 사용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같은 실내 건축과 디자인 분야의 제언을 수용해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마련하고, 향후 신축 및 리모델링 과정에 이를 반영토록 해, 노인들의 안전한 이동, 이동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등 여러 권리의 보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요양시설 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기계적인 돌봄에서 탈피해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타인과의 교류를 통

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전성남(2014)은 노인요양 시설에 대해 입소경험을 바탕으로 한 입소 노인과 가족, 동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입소 초기에 경험할 수 있는 괴로움의 단계에서 노인 스스로가 배신, 증오, 상실감, 소외감, 고독감 등의 감정에 휩싸여 삶의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시설 생활에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입소 노인 가족을 위해서는 입소 후 지속적으로 시설에 방문할 수 있도록 시설 생활 상황, 긍정적인 사건 등을 전달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며, 입소 동료 노인들의 경우 서로를 존중능력을 고려한 활동을 지원하는 좋은 친구로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시설들은 사회, 문화, 종교 등의 영역에서 노인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한 상호 교류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돌봄의 부재 역시 완화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3) 기관 특성화 및 전문화 노력

정부의 현행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책 기조는 기관이 최소의 자격 조건을 구비하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석재은(2014)은 서비스 공급자 간 무한 시장경쟁을 통한 자연스러운 생존과 퇴출을 유도하며 정부는 관망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같은 기관 간의 무분별한 경쟁은 서비스 제공 실적에 정비례하는 지불 방식으로 인해 서비스 기관의 수입 불안정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금 서비스 제공 주체인 요양보호사들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경쟁적이고 맹목적인 기관 간 각축전에서 탈피해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특화 분야를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권금주(2015)는 노인요양병원에 적합한 적절한 진료 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을 보완하고 이를 준수하는 병원에 인증을 해줌으로써 ‘선도적 노인요양병원’ 발굴을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옥자·김금환(2019)은 치매전문기관과 관련 전문인력의 부족을 지적하며, 치매국가책임제 4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다방면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제기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덧붙여 치매 질환 전문 기관을 지정 및 육성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 육성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민간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기피대상, 기피서비스)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염려(석재은, 2017: 434)가 있기에, 국공립 요양기관의 경우 민간 기관에서 수익 구조로 인하여 이루어지기 어려운 돌봄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는 특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 관리체제 개편

노인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는 돌봄 제공자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역량 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이 돌봄 제공자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업무 설계, 권한과 책임 배분, 보상체계, 경력개발체계 등을 마련해 업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끌 필요성이 지적(김진·이서영, 2013: 266) 되어 왔다.

1)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과정 및 승급 제도 마련

존재에 대한 인정이 인권 존중과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의 경력을 인정하고 그와 관련한 공식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승급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석재는 외(2015)는 좋은 돌봄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꼽았는데, 전문성이라 함은 대상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종합 판단력 등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현장에서 체득하는 경험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다양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돌봄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경력 인정은 좋은 돌봄을 위한 선결조건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유일한 방식으로서 규정된 근무경력에 따른 장기 근속수당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도, 한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했을 때만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의 소속 기관이 달라지더라도, 해당 노동을 지속해온 기록이 입증된다면 기존 경력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다음으로, 직무교육을 통한 요양보호사의 전문 분야 양성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욕구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고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요구받기에,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고 환자의 질병이나 돌봄 유형에 요구되는 각 역량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돌봄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요양보호사 수행 업무 매뉴얼 제작 및 개편

앞서 요양보호사들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받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특히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재가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타 가족 구성원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경우와 본래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일을 요구받는 경우가 허다하였고 시설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도 소속 요양 시설에서 요구하는 부당한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여전히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같은 양상은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절하와 선입견을 재차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돌봄

종사자들의 업무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한 점은,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가 낭비되는 결과를 낳는다(석재은, 2015: 216).

이에 요양보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관한 매뉴얼을 구체화하여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시설 관계자, 대상자 노인, 그리고 가족 구성원 등 노인 돌봄에 관여하는 주체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3) 요양보호사 의견 창구의 실효성 제고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업무 환경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같은 업무 환경 개선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의 전국적 확대, 요양보호사 등 직접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기능 강화 및 경력인정구조 마련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에 기반해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실버뉴스, 2020.04.07)해왔다. 이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고충상담팀 등의 기존 시설의 홍보 및 실효성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지역사회 기반 돌봄 형태 개발 및 지원

앞서 본 연구자들은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관련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제공 형태상으로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가 요양서비스의 이용시간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노인이 돌봄 서비스를 유형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해, 반강제적으로 시설 입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이에 재가요양서비스의 확대뿐 아니라 다양한 돌봄 서비스 유형을 개발하여 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입각해 제공받고자 하는 돌봄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며, 이는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에도 핵심적인 사안이다.

1) '커뮤니티 케어' 체계의 안정화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사회 구성원이 자신이 거주하던 장소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돌봄 대상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이진국·김주희, 2020: 150)이다. 본 개념은 수용시설 또는 주거 케어(residential care)의 대안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 일체를 포괄하는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체계는 노인이

삶의 터전이자 자율성과 통제성을 부여했던 거주지역을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상실감, 문화적 충격 등을 경험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기존에 형성한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이선영·하석철, 2021: 281)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 돌봄과 차이가 있다.

이에 이진국·김주희(2020)는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운영체계를 재확립하고 정책 수행 권한을 조율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 대상 병상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재량에 따라 정책 구상, 재정상태에 따른 돌봄의 양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돌봄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노-노 케어'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

커뮤니티 케어 외에도 대안적 돌봄 체계로서 지역 노-노 케어가 존재한다. 노노(老老) 케어란 노인과 노인 간의 돌봄 제공 및 수혜 형태를 띠며,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보다 불편한 노인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형태로 정의된다. 이러한 소규모의 돌봄 형태는 여타 대규모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과는 달리, 가정적인 환경, 자율성의 보장, 사회적 관계의 유지 등(이선영·하석철, 2021: 296) 질적 측면에서 우수한 형태의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엄지혜(2016)는 노-노 케어의 대상자 범위와 서비스 유형이 확대된 점을 조명하였고, 노-노 케어 체제가 노인이 자신의 의지로 돌봄을 선택하고 구현하는 독립적 주체임을 확인하고 제공자와 수혜자들이 상호호혜적 돌봄 관계를 실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수혜자가 먼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경우에 대비해 제공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노-노 공동체'는 노인 역시 돌봄을 위시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임으로써, 그동안 경시되어왔던 노인의 행위능력을 드러내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일례로 김윤영·윤희영(2018)에 따르면 일본의 '지역주민조직'은 주민으로 구성된 돌봄 공동체로서 돌봄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조직 내에서 노인은 돌봄 수혜자뿐 아니라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노인 간의 상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주체적 역할을 도맡는다. 이러한 돌봄 형태는 돌봄의 역할과 이를 수행하는 노인의 주체성을 부각하고, 노인들의 존재가 보다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사회와 국가적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경증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시설(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진행해야 할 필요(이옥자·김금환, 2019: 36)가 있다. 또한 일본, 영국 등

의 해외 사례에서 착안한 돌봄 모델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관련 서비스 운영체계를 도입해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커뮤니티 케어, 노-노 케어 등 다양한 노인 돌봄 형태를 개발 및 지원하고 해외 돌봄 모델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기존의 시설 기반 요양서비스 제공이라는 일률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돌봄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선택권과 자발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IV. 나가며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돌봄 과정에 대한 인권적 성찰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관련 문헌을 검토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노인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요양보호사 6인과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현재 산적해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모두가 존엄한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로, 노인 인권의 관점에서는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 기계적 돌봄으로 야기되는 정서적·정신적 돌봄의 부재와 사생활 보장권의 침해로 인한 존엄의 훼손, 이동권 제한의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그 근본 원인으로는 노인의 약자성, 취약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노인 인권에 대한 평면적인 해석에 기반하여 제도가 도입된 점, 돌봄서비스의 무분별한 시장화와 그에 적합한 규제자로서의 정부 역할의 미흡을 지적한 바 있다.

둘째로, 요양보호사의 노동 인권의 관점에서는 노동의 불안정성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노동 과정에서 겪는 인권 침해 실태를 드러내었다. 이들은 각각 저임금 및 수당 관련 문제와 지속되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 미흡한 휴식권 보장과 전문적인 돌봄노동자로서의 인정의 부재 및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창구가 없음을 지적하고, 인권 침해 백태의 근본에 요양보호사의 입장이 간과된 채 설계된 제도와 서비스의 시장화와 연결되어 있는 노동자의 소외, 돌봄노동의 저평가와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정의 부재, 연령과 젠더의 교차가 만들어내는 차별 등이 자리하고 있음을 밝혔다.

셋째로, 상호간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돌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과 요양보호사 모두를 고려하는 보다 세밀한 돌봄 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는 노인의 시설 입·퇴소와 생활 전반에서 의사결정권 보장 절차 마련, 노인과 요양보호사 간 맞춤형 매칭 시스템 구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개선, 요양보호사 관리 제도 개편,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돌봄 형태의 개발 및 지원을

아우른다.

한편,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계된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첫째로, 노인 인권을 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 요양보호사들의 경험에 기반하여 노인의 입장을 간접적으로나마 고려하고자 했으나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로, 노인의 가족, 장기요양기관장의 입장 역시 제도의 운용과 밀접히 얽혀있음에도 이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셋째로, 면접 참여자에 대한 표본 수집의 한계로 국공립 기관의 실태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 없이 민간 기관에 문제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보완하여 노인 돌봄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풍부하게 반영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받고 돌보는 존재로 살아간다. 특히 타인으로부터의 돌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노년기까지도 존엄한 돌봄은 가능해야 하며, 이는 돌봄의 관계적 속성에 기반하여 돌봄을 이루는 모든 주체에게 더 나은 돌봄에 대한 상상의 폭을 넓히는 데서 시작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노인과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밀접히 연결된 것으로 보고, 인권 관점에서 문제들을 훑아보며 모두가 존엄한 돌봄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모색하는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본고가 노인에게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돌봄’과 관련한 촘촘한 권리가 있음을 내보인 것은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주로 중·고령임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노인의 그것을 보장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노인의 인권에 관한 폭넓은 탐구라는 의의를 지닌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가 존엄한 노인 돌봄에 관한 논의의 폭을 넓히고 공백을 메꾸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논문〉

- 강원도의회사무처. (2020). 좋은 돌봄을 위한 도·시군 장기요양지원 운영모형 연구.
- 강대훈·홍석사. (2013).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사회복지연구, 14, 171-191.
- 강희숙. (2020). 시설 생활노인의 ‘뭉이지 앓을 권리’ 옹호 방안: 사회복지사의 “공중옹호(public advocacy)”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19(1). 3-17.
- 국가인권위원회. (2014). 노인 인권 길라잡이.
- 국가인권위원회. (2018(1)). 노인인권종합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1-158.

- 국가인권위원회. (2018(2)). 노동인권 교재 개발 연구.
- 권금주. (2015). 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1-336.
- 고진경·황인옥·오희영. (2009).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입소초기 경험. 한국노년학, 29(2), 477-488.
- 국미애. (2003). 직장 내 성희롱 규제의 필요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책임 강화 방안,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151.
-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1), 217-269.
- 김수영·하은솔·김영. (2020).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다차원적 고찰: 자발적 비정형 노동자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사회정책, 27(1), 89-127.
- 김용하.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보험연구원. 1-74.
- 김윤영·윤혜영. (2018). 커뮤니티케어 해외사례와 합의 그리고 구상. 비판사회정책. 60. 135-168.
- 김정희·김광병. (2019).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저평가와 인권 훼손-Axel Honneth의 인정이론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12(1), 63-80.
- 김정희·김태동. (2018).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과 법적지위 검토. 사회복지법제연구, 9(1), 257-279.
- 김준표. (2020). 노인의료복지시설 거주노인 입소과정의 자기결정권과 생활요인에 관한 혼합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4(1), 153-179.
- 김진·이서영. (2013). 노인요양시설 케어인력의 역할 및 역량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3(2), 243-273.
- 남경은·최상현 (2009). 노인의 신체 및 행태적 특성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거주공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1(1), 188-191.
- 모선희·이서영·최은희. (2011). 장기요양보호노인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권리옹호시스템 연구. 보건사회연구, 31(1), 98-126.
- 문용필·이효용. (2021).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임금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인구사회학적 요인, 근무형태 요인, 근무기관 요인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2(2), 3-23.
- 박미옥. (2019). 노인요양시설 신체 억제대 사용 감소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논문. 1-75.
- 보건복지부. (2015).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 지침.
- 보건복지부. (2020).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0).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 석재은. (2014).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념 정립과 향상 방안. 한국사회복지학 66(1), 221-249.
- 석재은·노혜진·임정기. (2015). 좋은 돌봄의 필요조건과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7(3). 203-225.

- 석재은. (2017).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규제의 합리화 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 37(2). 423-451.
- 송다영. (2014). 사회복지부문 돌봄 관련 일자리의 질 저하에 관한 연구. 젠더와 문화, 7(1), 7-42.
- 안경진. (2020).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의사결정과 노인인권. 법과인권교육연구, 13(3), 305-340.
- 안정은. (2016).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115.
- 염지혜. (2016). 노노(老老)케어의 빛과 그늘: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2, 269-297.
- 유병선. (2014).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장기요양연구, 8(2), 5-34.
- 유아름. (2014). 장기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노인의 신체적 억제 사용 관련 요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학위논문. 1-77.
- 윤수린. (2016). 한국 여성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와 일자리 선호 요인, 한국노동연구원, 1-18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
- 이선영·하석철. (2021). 지역 내 의료 및 돌봄 자원이 노인의 돌봄 유형 선호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소규모 돌봄에 대한 소고. GRI 연구논총, 23(2), 275-302.
- 이연순·우국희. (2013). 요양보호사가 경험한 노인학대와 노인인권 인식 연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3(1). 85-103.
- 이옥자·김금환.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향상방안. 한국복지실천학회지, 11(2): 28-43.
- 이진국·김주희. (2020). 한·일 노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비교분석 -Gilbert & Terrell의 분석모형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1(3), 149-162.
- 장지연. (2020). 돌봄노동의 임금 수준은 향상되었는가?. 월간 노동리뷰, 2020(11). 7-22.
- 장효진·이채정.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관계 분석 - 한국·독일·일본 사례 비교. 사회과학연구, 37(1), 27-53.
- 전성남. (2014).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입소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8(1), 67-91.
- 전찬희. (2013).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5), 234-242.
- 정성출·이은주·권혁범.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따른 성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59.
- 최윤정. (2004). '산업재해'로서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120.
- 최혜인. (2016). 보호받지 못하는 요양보호사. 비정규 노동(월간), 1(116), 36-44.
- 허은. (2019). 사회서비스 정책결정의 트릴레마와 노인돌봄노동의 저임금. 산업노동연구, 25(3), 195-238.

Rodgers, G. (1989). Precarious work in Western Europe: The state of the debate. In Rodgers, G. & Rodgers, J. (eds.) Precarious jobs in labour market regulation: The growth of atypical employment in Western Europe. 1-16.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기사 및 인터넷 자료〉

경향신문, 2021.02.22. “요양보호사 심야 대기는 ‘휴게’ 아닌 근로 시간”. (2021.09.14. 접속).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2220600025#csidx543b933f028aa00828868a870a384d6>.

국회뉴스ON, 2019.06.17. “노인의료복지시설 국회 토론회…“입·퇴소 선택가능토록 자기결정권 보호 필요””. (2021.09.21. 접속). <https://www.naon.go.kr/content/html/2019/06/14/c40b9864-43fb-4a6a-af14-937356d68681.html>.

매일경제, 2020.10.06. “고령 여성이 돌보는 대한민국…요양보호사 평균 연령 59.6세”. (2021.09.13. 접속). <https://www.mk.co.kr/news/it/view/2020/10/1022081/>.

머니투데이, 2020.10.20. “[단독]요양보호사 42%가 성희롱 당했다…급전 미끼 성관계 제안도”. (2021.09.14. 접속).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2013495983876>.

법률신문, 2021.01.08. “[칼럼] 성희롱의 사각지대, 요양보호사”. (2021.09.15. 접속).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4630>.

복지타임즈, 2020.06.19. “불안정 노동을 통해 본 노동자로서 고령자의 현실과 문제”. (2021.09.12. 접속). <https://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74>

실버뉴스, 2020.04.07. “노인인권 보장,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필요”. (2021.09.17. 접속). <http://www.silv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5>.

아시아경제, 2020.10.26. “시설 요양보호사, 휴게시간에 ‘공짜노동’…필수노동자 포함돼야”. (2021.09.13. 접속).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02617534811732>.

오마이뉴스, 2021.02.18. “ “성폭력 당해도 말 못해요”, 가로막힌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들”. (2021.09.15. 접속).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0351.

의사신문, 2019.06.14.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나가야 할 방향성은?”, (2021.09.25. 접속).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93>

인천일보, 2021.05.14. “장기요양지원센터 경기도내 3곳뿐…예산부족에 설립 꺼려”.(2021.09.15. 접속).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496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21.07.08. “[토론회] 2021년 주목해야 할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의료, 돌봄 통합서비스 해법 모색 토론회”. (2021.09.10. 접속).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803888>.

통계청, 2019. “인구통계로 본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 (2021.04.14. 접속). http://sti.kostat.go.kr/window/2019a/main/2019_sum_8.html.

한겨레, 2013.04.21. ““환자 9명이면 매달 5백만원 떨어진다”…돈벌이된 요양시설”. (2021.09.

10.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583876.html#csidxfa7bf31b435ea9d9ca4e3916f7f71ad>
- 한겨레, 2019.08.08. “장기요양 수요 9년새 5배 늘었지만…요양보호사 월급은 136만원”. (2021.09.12. 접속).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05040.html#csidxe364231e9ed3316bcaa034a1188a256>.
- 한겨레, 2019.09.09. (1) “요양보호사 1명이 어르신 9명 돌봐도 불법 아닌 까닭은?”.(2021.09.10.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8967.html#csidx52bb7f592591a4b9031bd3fa94b43fd
- 한겨레, 2019.09.09. (2) “‘연속 최하등급’ 노인요양기관, 6년 뒤에나 퇴출가능”. (2021.09.11.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8966.html.
- 한겨레, 2019.11.03. “노인장기요양기관 77%, 인건비 제대로 안줬다”. (2021.09.12.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5602.html#csidx8147359dd2660f98f47eae9d649f5c3.
- 한겨레, 2021.04.30. “내 노동은 1+1도 공짜도 아닙니다”. (2021.09.13. 접속).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93287.html#csidx16e7e790ebf822785df7e5879bcf96d>.
- 한겨레, 2021.08.18. “[왜냐면] 휴식권과 새로운 시대정신”. (2021.09.14. 접속).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08203.html>.
- 한국일보, 2021.02.13. “요양보호사 김씨는 올해도 ‘무직자’로 설을 맞았다”. (2021.09.13. 접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1223090002075>.
- Jtbc 뉴스, 2020.11.28. “성폭력 시달리는 요양보호사… “피해 알려도 돌아오는 건 핀잔””. (2021.09.15. 접속).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81260.
- KBS. 2020.10.11. “[취재후] 요양원서 죽 먹다 숨진 할머니…요양원 노인학대 늘어나는 이유는”. (2021.09.08. 접속).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22569>.

가정외보호청소년의 자립지원제도 속 인권사각지대

— 그룹홈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재영

가정외보호청소년의 자립지원제도 속 인권사각지대

— 그룹홈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재영*

※ 저자의 동의가 없어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pp.395-429)

* 신재영(종교학과 16)

프라이버시권 친화적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제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학생들의 학생다움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이 창 수

프라이버시권 친화적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제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학생들의
학생다움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이창수*

[목 차]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 II. 연구 수행
 - 1. 연구 문제
 - 2. 연구 방법
 - 3. 연구 참여자 선정
 - 4. 윤리적 고려 및 기타사항
 - III. 연구 내용 및 결과
 - 1. 학교생활규정
 - 2. 면담 결과
 - 3. 연구 문제에 관한 결론
 - I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몇몇 지역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통과되고 교육부에서 두발과 복장 등의 규제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를 삭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¹⁾ 구체적으로 한 쪽에서는 학생들의 개성 존중을 이유로 이를 찬성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생활 지도 상의 문제와 지나친 외모 꾸밈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반

* 이창수(사회교육과 15)

1) 김수연, 조유라(2019). “파마-화장 어디까지, 학교 현장 혼란”.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90422/95158748/1>(검색일자:2019.04.28.).

대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이면에는 ‘학생다움’이라는 모습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인식이 있다. 즉,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모습을 학생답다고 보는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용모가 단정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학생답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의 속에서 정작 규정의 당사자인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다움’에 대한 인식은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기사가 나오더라도 교사나 학부모 등 학생 이외의 주체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기사가 주를 이룬다. ‘학생다움’이란 무엇인가로 대표되는 학생 본질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생활규정이 도출될 수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할 학교생활규정이 오히려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난다.

한편 공간으로서의 학교는 인권교육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정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서 학업성취의 목적 이외에도 또래·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심리적·사회적·신체적 발달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원미순·박미현, 2015). 이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체성을 정립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의 가치관도 함께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개인을 넘어 결국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인권공동체로서의 학교란 인간존엄성을 깊이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더불어 복된 삶을 창출하고 체험하며 학습해 가는 학교 공동체를 의미한다(유병열, 2012). 따라서 학교가 인권 공동체로서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인권친화적이 되어야 한다.

학교 환경에 관련하여 물리적인 공간, 인적 자원 학교 분위기 등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 되는데, 보통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하여 학교환경을 논의할 때는 교육을 위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학교의 분위기나 문화 등의 사회적 여건에 초점을 둔다(구정화, 2016). 그리고 인권친화적 학교환경의 조성은 많은 학교 인권교육에서 강조되는데, 이는 인지적으로 청소년들이 인권을 이해하게 하더라도 학교환경 자체가 인권친화적이지 않으면 인권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²⁾

이런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학교생활규정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생활규정은 말 그대로 ‘학생’이라는 신분 속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나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학교 공동체가 생각하는 학생다움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학교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규범이기에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방향을 조정하는 틀이 된다. 따라서 학교 생활규정의 내용이나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이 학생 입장에서 억압적이라 느껴진다면 이는 학교 환경이 곧 인권 친화적이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2) 앞의 논문, p.4.

또한, 학교생활규정은 단순한 학교 안에서의 생활을 넘어 학생들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과 옳고 그름의 가치를 은연중에 가르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성격을 지닌다(송애리, 2019). 따라서 친인권적 학교생활규정이 적용된 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은 친인권적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 비해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남영(2010)은 학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 기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2016)에서는 학교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이 둘 역시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다움이나 학교생활규정에 대하여 논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실제 학교생활규정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학생다움이란 무엇인지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고 학교생활규정의 심층적 연구와 실제 적용되는 모습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학생, 학부모, 교사를 교육의 3주체라고 이야기한다면, 학교 생활규정이 학교 공동체가 생각하는 학생다움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이를 제·개정함에 있어 이 셋의 적절한 의견 통합이 필수적일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의견보다는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규정이 제·개정되고 실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 용모와 복장 등 학생들의 프라이버시권과 연관된 학교생활규정의 기저에는 학생다움이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다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부족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소모적인 논쟁이 자주 일어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학생다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프라이버시권 친화적인 학교생활규정을 만들 수 있을지 탐구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2.1. 학생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례이며, <UN 아동권리협약>과 우리나라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등을 법적 근거로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며,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공포하게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가 시행된다(조금주, 2016). 학생 인권 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에서 각각 제정되었다. 아직 조례가 도입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런 조례와 유사한 조례나 현장이 도입되었고 경상남도도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이 도의회의 결정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학생인권조례의 핵심구조는 총칙, 학생인권, 학생인권의 진흥,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네 가지로 되어있다(조금주, 2016). 학생 인권 부분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배한진, 진미경(2017)에 따르면 야간 자율학습 선택권의 보장과 과도한 학습시간 제한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지역이 미 제정 지역에 비해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하루 25분(일주일에 2시간 5분) 더 감소했다고 한다. 이렇듯, 학생인권조례는 실제 학교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례가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학교 자치에 맡김으로써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발 길이 자유에 관하여는 2017년 말 기준 서울 전체 중고교가 84.3%로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³⁾, 이는 약 16%의 학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도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복이나 두발의 형태는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보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2. 인권 및 학생인권

학생인권, 나아가 프라이버시권 친화적이란 무엇인지 정의내리기 위해 인권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인권의 하위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인권에 대한 정의는 〈세계인권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써의 인권은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되며,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 준거로 일반적으로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갖는 고유한 권리며 그것이 없으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권리’로 정의된다. 이외에도 인권에 대해 구정화(1997)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자연적 권리로, 문용린 외(2003)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지는,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연히 향유하게 되는 권리라 말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인권이란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해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정의될 수 있다.

한편, 학생인권은 전통적으로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학생이라는 신분이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왔다. 즉, 청소년은 일반 성인과 다르게 특수한 환경과 지위에 놓여있어 일정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지지하는 논의는 크게 친권이양설과 특별권력관계설로 나뉜다(구정화, 2014). 친권이양론은 말 그대로 학부모의 친권을 교사가 대신한다는 것으로 학생을 미성숙한 보호의 객체로 인식하여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표시열, 2008). 특별권력관계설은 군대나 경찰처럼 학교 또한 행정의 주체로서 행정의 대상인 학생에게 특별한 권력을 표출하여 포괄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 질서유지나 행정적 편의를 위해 학생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인식된다. 두 이론을 정리하자면,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이며 학교라는 특수한 환경

3) 박용광(2018), “조희연 “중고생 두발자유화 선언”...현장 “이미 대부분 시행, 자율성 옥죄나”, 에듀인뉴스,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48>(검색일자: 2019.04.28.).

과 학생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으므로 성인 혹은 학교에 의해 적절히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존재이다. 이에 학생의 동의 없이 그들의 프라이버시권 등은 정당히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후 청소년 권리선언 등이 이어지며 기존의 친권이양설이나 특별권력관계설보다는 청소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주장이 힘을 더 얻고 있다(구정화, 2014). 이러한 논의 속에서 나타난 것이 학생 인권 조례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 12조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이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며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한다”라고 규정하며 학교 교육에서의 학생 인권의 핵심 내용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은 동시에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기본권이 제한될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윤정빈(2009)에서 제시한 ‘학생이 학교에서 인격적 존재로 존중받으며 자신의 요구와 이익을 고려하여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학생인권의 정의는 타당해 보인다. 한편, 이렇게 학생 인권에 대해 정의를 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 요소로는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자유권, 복지권, 평등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학생의 경우 자유권에는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학생자치와 참여권,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접근권이 포함된다. 복지권에는 교육에 대한 권리, 건강권, 안전권,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적법 절차를 누릴 권리,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권리를 지킬 권리 등이며 평등권은 학생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존엄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표시열, 2008).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제1조	아동의 정의	제22조	난민아동의 보호
제2조	차별의 금지	제23조	장애아동의 보호
제3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고려	제24조	건강 및 의료지원
제4조	당사국의 협약 이행 노력	제25조	양육지정 아동에 대한 권리
제5조	부모 등의 책임 존중	제26조	사회보장권
제6조	생명권	제27조	적정생활수준 향유권
제7조	성명 및 국적권	제28조	피교육권
제8조	신분조존권	제29조	교육의 목표
제9조	부모로부터의 분리제한	제30조	소수자, 원주민 아동의 보호

조항	내용	조항	내용
제10조	가족 재결합을 위한 출입국 보장	제31조	휴식, 여가 문화활동의 참여
제11조	아동의 국외 불법 이송퇴치	제32조	노동보호
제12조	아동의 의사표현권	제33조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로부터의 보호
제13조	의사표현의 자유	제34조	성적착취와 학대로부터의 보호
제14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제35조	아동의 약취유인, 매매, 거래금지
제15조	결사, 집회의 자유	제36조	기타형태의 착취 금지
제16조	사생활 보호의 자유	제37조	아동에 대한 고문, 사형금지
제17조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	제38조	무력분쟁시의 아동 보호
제18조	부모의 양육책임	제39조	피해아동의 사회복지 지원
제19조	폭력, 학대, 착취 등으로부터의 자유	제40조	소년법의 보호
제20조	결손, 아동의 특별 보호	제41조	협약과 상치되지 않는 국내, 국제법의 존중
제21조	입양제도		

〈표 1〉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권리의 내용, 조태원(2002, p.22).

또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말하고 있다.

2.2.1. 프라이버시권

프라이버시권은 전통적으로 소극적 의미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초기의 프라이버시권은 ‘혼자 있게 할 권리’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을 능력 또는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라는 소극적 의미의 권리로 이해되었다(홍성찬·황인호, 1999). 하지만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컴퓨터와 첨단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없기에 ‘개인 정보의 통제’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으로 발전되어갔다(박길자, 2009).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프라이버시권은 단순히 사생활의 평온을 유지하는 소극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보는 자기의 것으로 이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모든 영역이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속에 포함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공법상의 권리로 인식하게 되었다(박길선, 2003). 따라서 프라이버시권은 인격권의 범주에 속하는 권리로서 ‘인간답게 살 권리’인 인권의 핵심을 이루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박길자, 2009).

한편,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학설은 나뉘고 있다. 제1설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로 이해(좁은 의미)하지만 제2설

은 프라이버시권을 소극적으로는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보장으로 이해(넓은 의미)하나 적극적으로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법적 능력으로 이해한다. 이에 대하여 제3설은 프라이버시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뿐만 아니라 주택의 불가침, 통신의 불가침 등도 포괄하는 개념(가장 넓은 의미)으로 파악한다. 프라이버시권을 제2설의 입장에서 이해할 경우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⁴⁾는 곧 프라이버시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권영성, 2003: 423-424).

2.2.2 학생 프라이버시권

여러 학생의 권리 혹은 학생의 인권 중 최근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영역은 두발 및 복장 등의 용모, 소지품과 같은 자유권의 한 부분인 프라이버시권이다. 왜냐하면 복지권, 평등권 그리고 자유권 중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학생자치와 참여권,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과정에서 학교 공동체 모두가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면학 분위기의 조성이라는 점에서 용모와 소지품에 대하여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소지품도 쇠파이프, 성냥, 도박, 불법물 등 타인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거나 사회 상규 상 허용되기 힘든 것들만 제한하여 학생들의 수용성이 높기에⁵⁾ 학생 프라이버시권은 주로 두발과 복장을 규정하는 용모로 한정하여 논의된다. 본 연구 역시 학생다움이 바탕이 되고 사회적으로 논쟁이 많은 프라이버시권 영역이 두발 및 복장 등의 용모에 관한 것이므로⁶⁾ 학생 프라이버시권을 이에 한정하여 논의할 것이다.

-
- 4)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여자중학교의 소지품에 대한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4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①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 등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 ② 제24조 제1항의 물품을 찾기 위해 학생의 동의가 없거나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압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 6) 한태식 외(2012)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중에서 학생의 관심이 가장 많은 조항이 두발과 복장을 자유롭게 허용하는가 여부에 쏠려있다.”고 말하였다.

2.2.3. 프라이버시권 친화적 학교생활규정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이 학생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다 할지라도 학교는 이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학교 역시 헌법상 가치로 인정되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영숙, 2005). 교육기본법 제 12조 3항은 이를 뒷받침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 프라이버시권 규정은 결국 학생의 헌법상 권리와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역할 사이 적절한 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결국 두발 및 복장 등이 제한되더라도 그것이 구성원의 동의를 얻은 합리적 제한이라면 침해라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가 말하는 프라이버시권 친화적 학교생활규정이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해주거나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합리적으로 제한되는 학교생활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3. 학교생활규정의 법적성질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를 포함한 많은 학교들이 '학칙'과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 규정인 '학교생활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학칙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거나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칙이라 볼 수 있고⁷⁾ 본 연구도 이와 같이 학교생활규정을 학칙과 동일한 범주로 이해할 것이다.

학칙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비중 있게 제시되는 것은 행정규칙론, 약관론, 자치법규론이라 할 수 있다(유남영, 2010). 우선 행정규칙론은 학생과 학교의 관계를 특별권력관계로 바라보아 학칙을 일종의 행정규칙으로서 이해한다. 하지만 앞서 논의되었듯 특별권력관계는 학생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며 법률유보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입장이라 오늘날 청소년을 독자적으로 바라보는 추세에서 그 주장이 유지되기 힘들다. 무엇보다 행정규칙은 내부의 사무 처리를 위한 규칙으로 법규성을 지니기 힘들데, 학칙은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체계와 모순된다.

다음으로 약관론은 학교와 학생을 계약관계로 바라보아 학칙은 이 둘 사이의 계약이라는 이론이다. 하지만 이는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그 자신이 학내규정의 모든 것을 승인 또는 합의한다고 의제하기에 현실과 매우 거리가 멀다는 약점을 지닌다(유남영, 2010). 그렇지만 학칙을 약관론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학생은 입학할 때 학칙 등을 고지 받고 이에 관해 승인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므로 학칙의 민주적 제·개정 절차에 도움을

7) 유남영, 「학칙에 의한 학생인권의 제한에 관한 고찰」, 『人權과正義: 大韓辯護士協會誌』, 2010, (402), p.85.

준다는 장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론은 학칙을 개개의 학교가 그 사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정하는 규범이라고 이해한다(김영숙, 2005; 유남영, 2010). 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장점을 지닌다. 학교의 장이 학칙을 비롯한 학내규정을 제정 내지 개정하기 위해 학생회, 교수회, 학교운영협의회 등의 심사와 참여를 거쳐 규정안의 사전 예고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기에 적법절차의 원칙이 충실히 수행되기 때문이다(유남영, 2010). 이러한 장점 덕분에 이는 최근에 자주 거론되는 입장이다.

생각건대, 교육3법⁸⁾이 국가 중심의 교육을 벗어나 학교의 운영 주체로서 학생, 학부모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학교를 자치 조직으로 보는 자치법규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약관론이 현실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학생에게 학교의 규정을 충실히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매년 학생과 학부모의 구성이 변화할 때 규정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도 무척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칙을 비롯한 학교생활규정을 '약관적 성격을 지닌 자치법규'로 이해할 것이다. 또한,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칙에 의하여 학생 인권이 제약되는 부분은 1)학칙 규정에 의한 제한과 2)학칙의 적용과 해석에 의한 제한으로 구분될 수 있다.

II. 연구 수행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생다움에 관한 의견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프라이버시권 친화적인 학교생활규정을 만들 수 있을지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1: 학생다움에 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2: 프라이버시권 친화적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2. 연구방법: 심층면접법

본 연구의 학교생활규정 분석에 있어서는 문헌조사를 통한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주된 연구 방법은 질적연구방법 중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심층면접법은 연구 참여자

8)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중심의 면접 형태로 주로 비구조화된 면접에 해당한다. 또한, 연구 참여시 연구자들은 주로 듣는 역할을 하며 연구자가 되묻는 역할을 하는 것도 결국 연구 참여자의 생각이나 말을 보다 심층적으로 듣고 싶은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신옥순, 2005). 그리고 Johnson(2002)에 의하면 이러한 심층면접법은 동일한 활동 속에서 개개인마다 다층적 관점을 갖고 있거나 개인적인 문제이면서 깊은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주로 사용된다. 그렇기에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이끌어내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을 탐구하는 데 적합하다 사료되었다. 또한, 학생다움이라는 개념에 대해 학생들의 상충된 의견이 있을 때 접근하기 유용한 연구 방법이라 생각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중학교 학생인 점을 감안할 때, 학생이 연구의 큰 줄기를 더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접에 임하였다. 또한, 학생과 인터뷰를 하면 주제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로 흘러들어가기 쉬운데,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이를 방지하였다. 따라서 좋은 대화보다는 좋은 자료를 수집하는 면접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연구 주제에 대해 비동조적 태도를 가짐으로써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 학생에게 영향이 큰 교육 실습생의 지위에 있어 조금의 주관이 개입되어도 면접 방향이 오도될 수 있기에 더 엄격히 중립성을 지키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면접법의 핵심은 라포 형성시기에 면접을 교육실습이 시작하자마자 아니라 중반이 지난 이후 진행하였다. 그 사이 동안 연구 참여자인 학생과 많은 대화를 하며 라포를 형성하였고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심층면접법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만나는 상황적 요인들에 의해 면접의 내용이나 방향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한 만큼 면접의 과정이나 단계에 대해 미리 예견하긴 어려우나 네 가지 일반적인 단계가 제시되며(신옥순, 2005), 본 연구는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1. **사전 준비 단계:** 면접이 시작되기 전 면접의 목적과 과정이 다시 한 번 설명되고 명료화되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문서화된 내용을 가지고 연구 참여자에게 보다 세밀하고 자세하게 연구의 목적과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알려준다. 이 때 참여자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 동의서나 다른 허락을 받도록 하고 서로 본격적인 면접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 다음 단계로 전환한다.

2. **전환 단계:** 전환 단계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 서서히 면접의 단계로 이행되는 단계이다. 연구자

와 연구 참여자가 서로를 탐색하는 단계로 면접의 주제는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가 적절하다. 그러므로 다소 민감하고 사적인 주제의 경우 이 단계에서 피하도록 한다.

3. 몰입 단계: 면접이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어 연구 참여자 간의 대화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깊이와 폭을 더해 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은 사소한 갈등과 가식적인 답변과 같은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윤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면접을 통해 발생한 갈등을 배려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4. 종료 단계: 면접이 서서히 종결되어 가는 단계이다. 연구 문제와 관련된 의미 주제들이 표면에 떠오르기 시작한다. 연구자는 이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거나 다른 대안의 가능성 등을 타진하기도 하고, 이론적 관련성도 찾아본다. 면접을 종결할 때에도 연구자는 자료의 미진함이나 타당성 확인 때문에 언제라도 면접을 다시 요청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표 2〉 심층면접의 단계 예시, 신옥순(2005, pp.131-133)

3.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학생들의 학생다움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기에 연구 참여자는 해당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심층면접의 특성 상 라포 형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당시 담임으로 맡았던 반의 학생들 중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해당 학교에서 가장 오래 지낸 학년이므로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을 것이라 사료되었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할 때 다른 고려 사항은 학생회 가입 여부이다. 여기서 학생회란 전교 단위의 학생회뿐 아니라 학급 회장단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를 고려한 이유는 보통 학생회에 가입한 학생들은 학업에 열의가 높으며 프라이버시권의 제한에 관하여 학교의 입장과 비슷할 수도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회에 가입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를 인터뷰하면 학생다움에 관하여 보다 풍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참여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대상	성별	학년	소속 학교	학생회 가입 여부
A	여	3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가입
B	여	3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가입
C	여	3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미가입
D	여	3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미가입
E	여	3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미가입

〈표 3〉 참여자 정보

4. 윤리적 고려 및 기타 사항

본 연구는 질적연구에서 보통 사용되는 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면담 진행 시 면담 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전사하였고, 면담 내용을 유목화하여 정리하였다. 면담 시간은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기에 진행 상황에 따라 중간에 질문 순서를 바꾸거나 추가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 주는 비대면 수업 주간이었기에 3명의 학생은 대면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지만 2명의 학생은 Zoom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두 상황 모두 지도담임 선생님의 입회 하에 진행하여 연구 참여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진행되는 인간대상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교육을 이수했으며,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사전에 학교 측과 상의하여 허락을 구하였고 교생 실습 전과 중 두 번에 걸쳐 연구 계획을 설명한 후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또한, 학생이 미성년자인 하지만 중학교 3학년생인 만큼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지도 담임교사의 입회 하에 심층 면접 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학생과 지도 담임교사 모두에게 받았다.

사전 동의를 받을 시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연구 도중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에서 예상되는 부작용과 이익에 관하여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수집되는 정보 및 사용 기간에 관하여 고지하였고 이러한 정보는 오직 연구를 위해 사용되며 녹취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는 연구자뿐이라는 것과 모든 자료는 연구 종료 뒤 폐기될 것임을 약속하였다.

Ⅲ. 연구 내용 및 결과

1. 학교생활규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에서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3조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① 이 규정은 교복을 바르게 착용하고 단정한 용의를 갖추어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생들로 하여금 단정한 용의 복장과 교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바른 예절을 갖추도록 한다.

③ 학생의 교복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④ 교표의 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복의 교표는 감색 바탕에 노란색 수로 한다.

2. 하복의 교표는 흰색 바탕에 감색 수로 한다.

⑤ 교복 착용의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내·외의 모든 학습장을 이용할 때에는 교복을 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복은 항상 정결하고 단정하게 입는다.

3. 규정된 교복을 임의로 변형해서 입지 못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시에 따른다.

⑥ 두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교복 뒷깃에 닿지 않는 짧은 머리인 경우에는 단정한 수평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커트인 경우에는 학생 커트만을 허용하므로 지나치게 짧게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층이 심하게 커트를 해서는 안 된다.

3. 머리 길이가 교복 뒷깃 아래로 내려올 경우에는 끈, 핀 등을 이용하여 단정히 묶는다. 단, 바나나 핀, 집게 핀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파마나 염색, 탈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염색을 했을 경우에는 검은 색으로 재염색을 해야 한다.

⑦ 신발 및 양말은 검소하고 단정한 것을 신고 다닌다. 아래 내용을 준수한다.

1. 신발은 굽이 3cm 이내인 검정색 학생용 구두 또는 단정한 학생용 운동화를 신고, 실내에서는 흰색 실내화를 신는다.

2. 교복 규정에 맞는 스타킹과 양말을 신는다.

3. 숙녀화, 슬리퍼, 샌들, 부츠, 장식물이 부착된 운동화는 신지 않는다. 단, 비가 많이 오는 날이나 많이 추운 날에는 장화나 방한용 부츠를 허용할 수 있다. 단, 장화와 방한용 부츠는 모두 목이 짧은 것이어야 하며, 날씨에 맞지 않게 신을 경우 별점을 부여한다.

⑧ 가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혐오감을 주는 외래어 표기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가방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등하교시에는 항상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
 3. 서류 가방이나 자루 가방 등의 사용은 금한다.
- ⑨ 명찰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교내에서는 왼쪽 가슴에 명찰을 부착한다.
 2. 명찰은 학년별로 색깔(분홍색, 파란색, 노란색)을 달리한다.
 3. 그 외에 학교에서 허가하지 않은 배지나 휘장, 목걸이, 반지, 브로치 등의 장신구는 달지 않는다.

〈표 4〉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학교 생활규정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정 속 학교 공동체가 생각하는 학생다움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제 23조는 ‘단정한 용의’를 갖추어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약 학생다운 모습을 갖추어 생활하는 것을 바람직한 학교생활이라 한다면, 이 조항에서 나타나는 학교 공동체의 학생다움이란 복장을 바르게 착용하고 단정한 용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학생 프라이버시권 관한 많은 사항은 규정에 의해 직접 제한되며 그 제한의 정도가 무척 세세함을 알 수 있다. 구두에 대하여 ‘굽이 3cm 이하인 검정색’이라고 규정하거나 가방의 종류에서 ‘서류가방이나 자루가방’을 허용하지 않는 것들이 그 예이다. 이렇듯 두발, 복장, 신발, 가방 등에 관하여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학생의 동의가 충분히 전제되지 않는다면 자칫 프라이버시권의 과도한 제한 혹은 침해라고 여겨질 소지가 크다.

마지막으로, 애매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규정의 적용과 해석에 의해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될 여지를 많이 남겨두었다. 교복과 두발이 ‘단정’해야 한다거나 서류 가방이나 자루 가방 ‘등’이라고 표현하여 다른 가방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무엇보다, 제23조 2항 4호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시에 따른다’라는 규정은 학교의 재량의 여지를 폭넓게 인정하여 학교 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학교 생활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까지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얼핏 보기에 이러한 규정은 학생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고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하였듯, 만약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학교 구성원, 특히 학생의 동의 아래 합리적으로 제정되었다면 이러한 규정 역시 프라이버시권 친화적 학교생활규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실제 어떠한 모습으로 시행되는지, 학생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면담 결과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면담 결과

인터뷰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유형으로 유목화할 수 있다.

유형1	현재 학교생활규정은 잘 시행되고 있는가?
유형2	학생다음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형3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형4	학교생활규정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표 5〉 면담 결과

2.1. 유형1에 관한 대답

너무 잘 실현되고 있는데요, 저희학교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등교 학교를 할 때 특히 등교 때 앞에서 계시면서 생활반 친구들과 교칙을 어긴 친구들을 잡아서 별점을 주기도 하고요 수업시간에 교칙을 어긴 학생을 보시면 주의를 주시기도 하시고, 너무 심할 경우에는 안생부에도 데려가서 별점을 주시기도 하시고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례A)

그렇다고 생각해요. 만약 작년에 대답을 했으면 보통이다라고 답을 했을 것 같거든요?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약간 학생생활규정을 그렇게 엄격하게 학생들에게 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전 규정들을 다시 실현을 시키고 있거든요. ... 머리가 수평상태 이런 것 까진 하지 않지만 치마나 양말 색깔이나 바지 틀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충분히 많이 시행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사례B)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교복을 입는거나 이런거요. 이런거는 잘 되고 있는데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치마 길이나 그런 것들은 별로 잘 안되어 있죠. ... 선생님들이 두발 길이나 치마길이 관련해서 하지 말라곤 하는데 별점 같은건 잘 안줘요. 몰래몰래 하는 거죠. (사례C)

일단 그렇다고 생각해요. 생활반 학생들과 안생부 선생님들께서 아침에 지나갈 때 지도를 해주시는데, 선생님마다 말씀하시는 규칙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언제 느꼈냐면 요새 춘추복 하복 혼용기간인데, 제가 하복 위에다 외투를 입었어요. 근데 첫 번째 날에는 안에다 동복을 입고 외투를 입으면 지나갈 수 있다 하셔서 다음날 그렇게 입고 갔는데 다른 선생님이 외투를 금한다, 입지 마라 그래서 이름이 이를 연속 적힌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들마다 말이 다르셔서 매우 그렇다보다는 그렇다라고 답했어요. (사례D)

보통이다라고 생각해요. 아침 등교 전에 중앙현관에서 선도부와 선생님들이 규정에 어긋난다면 바로바로 잡아주시긴 한다만 딱 그 순간 뿐 인 것 같아요. ... 아침 등교 때 빼고는 잡으시는 선생님들도 거의 없고 혹여나 선생님들께서 규정에 어긋나게 행동한 학생을 본다면 주의를 주시는 게 끝이에요. (사례E)

학생마다 학교생활규정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통' 내지 '매우 그렇다'로 답 해주었다. 다들 아침 등교 시간에는 이러한 생활 규정이 실질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해주었고 단지 별점 부여 여부에 따라 규정이 잘 시행되는지 주관적 느낌이 다를 뿐이었다. 즉, 사례 C와 E같은 경우는 별점을 잘 부여하지 않기에 규정이 보통 정도로 시행된다고 말한 것이고 나머지 사례 A, B, D는 그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렇다라고 답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해당 학교의 프라이버시권 제한 규정은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교육실습 기간 중 바지를 롤업하여 입지 말라는 안전생활부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이는 본 학교생활규정 제23조 2항 4호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시에 따른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시행되었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사례B와 D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에 따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란과 불만을 가져옴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교 당국에 '단정한 교복' 등처럼 해석할 여지가 많이 담긴 조항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시에 따른다'라는 포괄적 재량 규정은 학생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로 이어지기 쉽다.

2.2. 유형2에 관한 대답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학생다움에 대하여 학생은 단정하고 공부만 해야한다와 같이 생각하실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찬성하고 어느 정도는 반대해요. 사실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학생 때는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화장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화장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더 몸에 좋은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른들께서 너희는 화장 안 해도 예뻐라고 말씀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른이 되면 화장을 안 하면 오히려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생각하시고 학생 때는 화장을 안 해도 학생들만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화장을 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거고, 아닌 친구들은 그냥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 할 게 없는 것 같고 ... 저는 학생은 일단 순수하다고 봐요. 물론 소수의 친구들은 이미 상처도 받고 마음도 많이 다친 친구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사회에 나와서 상처를 덜 받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는데,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학생 때는 현실을 잘 모르니까 원하는 대로 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 하지만 학생들이 무한한 꿈을 꿀 수 있지만 학생들이 다 큰 게 아니니까 적정선을 못 지킬 때가 많거든요. 무한한 자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좋은 어른들의 제한 속에서, 너무 제한하는 어른들이 아니라 적정선을 지킬 수 있게,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줄 수 있는 어른을 만나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왔으면 좋겠어요. (사례 A)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가 사회적 규범을 한 번 체험해보고 거쳐 가는 과정이라 생각 하거든요. ... 개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 공 부가 국수사과영 이런 공부 말고도 진로를 탐색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게 학생의 도리라 생각하는데, 제 주변 친구들은 또 개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해서 이것도 공감은 못해도 이해는 돼요. ... 진짜 너무 보수적이긴 한데, 저는 학생다운 게 공부와 학교생활에 충실한 게 학생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사례B)

학생일 때는 개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사회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는데 그 쪽이 무리일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지금 우리가 미성년자일 때 개 성이 억압되면 저는 더 우리들이 위축되고 그럴 거 같다고 생각해요. 학생 때는 화장을 안 하는 게 규정이고 예의잖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면 화장을 하는 게 예의래요. 너무 우리들한테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하라는 건 이상하지 않나 생각 해요. ... 저는 학생답다라는 건 없다고 봐요. 모든 사람은 똑같지 않잖아요. 학생들도 개개인의 개성이 있는데, 그것을 학생답다는 틀 안에 자꾸 저희를 끼워 넣는 거는 아 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학생다운 게 없고 개개인다움만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례 C)

어른들이 말하는 '학생이 학생다워야지'와 같은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요. 공부에 관한 것이나 단정하게 하고 다녀야된다 등등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각 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온 삶도 다른데 왜 어른들이 정해놓은 학생다움이라는 것에 맞추어야 하는 지 잘 모르겠고요. ... 어른들이 말하는 학생다움을 따르고 싶은 사람은 따르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사람은 안 따르게 자유로 맡기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학생다움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현재 최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학생다움에서는 머리색이나 화장이나 옷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 그런데 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 학생마다 분야가 다 다르니까 결국 학생다움에 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학생다울 수 있겠죠. (사례D)

사실 아직까지 학생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에 애매한 것 같아요. 학생이라는 이유로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묶고 다 녀야 하고 화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옷도 단정하게만 입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어른들이 말하는 '학생다움'이라는 말 때문에 가려지 는 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꼭 단정하기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 념은 없어졌으면 해요. 그냥 모두가 학생다움이라는 말 대신에 저 학생은 저렇구나, 이 학생은 이렇구나 그 학생의 개성을 나타내는 모든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사 례E)

학생다움이라는 단어에 관하여 학생들 사이에서의 의견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사례 A나B는 학생의 자유는 무한하지 않아 제한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 공부에 충실하고 규정을 따르는 것이 학생다운 것이라 이해한 유형이다. 이는 기존의 논 의에서 두발 및 용모에 대한 제한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생다움과 유사하다

고 볼 수 있다.

반면 사례 B, D, E는 학생다움은 학생의 개성을 나타낼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례D는 학생다움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이 개성을 요하는 직업을 원한다면 개성 있게 사는 것도 학생답다고 인식한다. 나아가 사례 D와E는 학생다움이라는 말 대신 ‘개개인다움’이 더 알맞은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각자의 다양한 삶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기존의 논의에서 두발 및 용모에 대한 제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생다움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학생 개개인의 다름을 존중한다는 측면은 사례 A와B에서도 나타나긴 한다. 사례 A에서는 ‘화장을 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거고, 아닌 친구들은 그냥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 할 게 없는 것 같고’ 라는 부분에서 사례B는 ‘제 주변 친구들은 또 개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해서 이것도 공감은 못해도 이해는 돼요’ 라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생다움이란 제각각이며 학생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런 학생들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된다면 학생들은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됐다고 느낄 여지가 크다.

2.3. 유형3에 관한 대담

저희는 다른 학교에 비해 세세하게 교칙이 정해져 있어서 안 지키려 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안 지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세세하게 두발과 화장을 규제하는 게 같이 다니는 친구들 어느 하나 튀지 않게 해서 분위기 조성에 좋다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이거 때문에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도 가끔가다 억울하게 걸리는 친구가 있는 게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 저는 어느 정도 두발이나 화장에 대해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학교 정도면 합리적이라 봐요. ... 지금은 코로나라 체육복을 입고 등교할 수 있는데, 교칙 상으로는 코로나가 아닐 경우 체육복 등교가 허용이 안 돼요. 저는 교복만 입고 등교해야하는 것을 반대해요. 사람마다 공부할 때 편한 복장이 다른 데 등교할 때 교복만 강요하는 건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 교복 동복을 입을 때 추울 때 사복을 걸쳐 입는데, 그 때 입을 수 있는 복장이 한정적이라 불편한 것 같아요. ... 저는 저희 학교 규정이 제가 생각하는 학생다움과 어느 정도는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일률적이라 불편한 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 때만 이려고 나중에 자유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해보지 않으면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학생다움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A)

저는 저희 학교 두발 규정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길고 풀고 있으면 저는 잠이 좀 더 잠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면학 분위기를 해칠 것이라고 생

각하고요 ... 화장은 화장 용품을 사기 위해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친구들 사이의 빈부 격차를 드러나게 하는 것 같아요. 또, 화장을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화장을 할 생각이 없던 학생들도 화장을 따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 복장에 대한 규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 복장 자율화를 허용해주면 다른 것들도 허용하게 될 거고 이렇게 다른 것들을 허용해준다 보면 앞에서 말한 빈부격차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 복장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교복을 입고 수업을 들으면 수업에 좀 더 바른 자세로 참여하게 되는 것 처럼요, ... 저희 학교 규정에서 머리를 묶는다는 것과 같은 큰 가이드라인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머리를 수평으로 해야한다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좀 바뀌어야하지 않나 생각해요. (사례B)

저희학교 용모 규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선생님들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규칙의 대상은 저희들인데,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단정하다, 학생답다 이런 거를 저희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 제 개인적으로 자유가 빼앗기고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느낌? 염색이나 사복, 피어싱, 머리길이 등 그런 것들이 뺏기는 기본이죠. ... 교복을 안 입겠다는 게 아닌데.. 동복에는 사복이 되는데 하복이나 춘추복에는 안 된대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저희 규정 보면 양말 같은 것도 규정돼있는데 거기까지 남이 터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 용모에 관한 규정을 만든다는 거 자체가 학생다운 것을 밀어붙인다고 생각해요. 학생은 학생다운 것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만약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규정을 바꾸잖아요. 선생님, 학부모에서 회의하고 바꾸는 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교복을 입고 화장에 제약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 저희도 회의도 하긴 하는데 그거를 약간 허락받다는 느낌으로? 결국에는 결정은 선생님들이고 학부모들이잖아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사례C)

머리를 묶어라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거는 선생님들이 납득을 시켜주지도 않아요. 양말이나 신발, 가방을 왜 잡는지 모르겠어요. ... 선생님마다 말씀하시는 규정이 다르고 여름에 에어컨 세게 틀 때도 춥다고 말해도 외투를 못 입게 해요. 규정상 하복을 입을 때는 가디건도 못 입는데 추우면 입게 해줘야하지 않나 싶어요. 규정 자체보다 오히려 선생님이 막 적용하시는 게 더 문제예요. ... 학교 규정은 제가 생각하는 학생다움과 전혀 관련 되어 있지 않아요. 용모와 같은 거는 자유롭게 풀면 좋겠어요. 교복도 선택으로 하면 더 좋고요. (사례D)

저 같은 경우는 화장이나 파마 같은 것도 잘 하지 않아서 이걸 왜 금지시키는 지 가끔 의문이 들긴해요. 조금만 둘러봐도 염색하고 화장 좀 한다고 다 노는 애는 아닌데,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있어서 학생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화장이나 염색은 본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건데 학교에서 이걸 막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 두발 자율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례E)

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관하여 학생회에 참여한 학생(A,B)와 그렇지 않은 학생(C,D,E) 간에 견해가 나뉘었으며 이는 학생다움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눈 범

주와 똑같이 나뉘었다. 학교 규정을 충실히 잘 따르고 이에 동조하는 모범적인 학생이 주로 학생회의 가입 대상이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추후 연구가 된다면 충분히 흥미로운 부분이라 느꼈다.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되는 데 동의하는 학생의 주요 논지는 면학 분위기였다. 즉,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고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사람인데, 프라이버시권을 너무 보장한다면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학생은 원한다면 개성을 실현할 자유가 있으며 프라이버시권의 제한은 학생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특히 사례C에서 학교생활규정의 수범자인 학생이 학교생활규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침해라고까지 생각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본교의 프라이버시권 제한 규정은 너무 세세한 것까지 규정한다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학생이 발생하거나(사례A) 동복엔 사복이 되나 하복엔 사복이 되지 않는 규정 간 납득이 가지 않는 일(사례C)이 벌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사례D에서와 같이 오히려 학생이 추위도 외투를 못 입게 하는 규정을 위한 규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된다.

정리하자면, 학생회의 참여나 학생다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프라이버시권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프라이버시권을 너무 세세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관하여는 모두가 반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4. 유형4에 관한 대담

용의·복장 규정에 관하여는 선생님이 안내해주는 규정집이 있어서 봤었는데 다른 규정은 못 봤어요. ... 학생의 두발에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게 어느 정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학생에게 자유를 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두발에 완전한 자유를 주게 되면 너무 심한 색깔들로 염색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로 인해서 학교 분위기가 망쳐진다면 두발 자율화를 저는 반대합니다. ... 현재 저희 학교 규정을 빗대어 이야기 하자면 교복을 입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사복 걸음의 종류나 머리 묶는 방법, 체육복 규정이 따로 있는 것처럼 너무 세세하게 정하는 건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헌법처럼 커다란 규정만 있게요. ...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때 대부분 학급 회장 부회장이나 학생회 같은 대표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아서 그런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이것에 대한 참여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 친구들은 학칙이 바뀌더라도 관심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학급회의를 거쳐 학교생활규정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반영이 되었고 학부모와 선생님 사이에서 의견도 교환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지키고 싶을 것 같아요. (사례A)

이렇게 글로만 적혀 있는 규정은 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 두발이나 복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는 것만 봤어요. ... 교육청 자체에서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자율화로 시작하지 말고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중학생들은 학교를 원하는 데로 갈 수 없고 근거리 배치로 가야 해요. 근데 자율화로 시작해버리면 저처럼 교칙이 강화된 학교를 원하는 사람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그 이후 세부적인 것은 학교 자치로 가면 너무 지나친 자율화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염색이나 화장을 금지로 시작하는데, 만약 학생들이 원하면 풀어준다던지 이런 식으로요. ... 교복을 입거나 염색은 하지 말라와 같은 큰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세세한 건 학생 자치에 맡기면 이상적인 규정이 될 것 같아요. ... 그런데 전교 학생회장이 낸 공약도 교감선생님이나 선생님이 반대하면 제안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소한 제안만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학생 자치인가라는 의문도 들었어요. ... 만약 저희가 참여한 규정이면 '우리가 만든 거니까 우리가 지켜야지'라는 생각으로 규칙을 지킬 것이고 설령 반대하는 입장이었더라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찬성했다는 거니까 싫더라도 받아들일 것 같아요. (사례B)

원래 두발이나 복장을 자유롭게 하는 거는 원래 우리의 인권이었잖아요. 원래 우리 인권이었는데 어른들이 뺏어놓고 저희가 되찾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너무 풀어 주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머리카락 사복 같은 거는 터치 하지 말고 수업 중에 핸드폰을 하거나 소리 지르고 이런 거는 규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니까 남한테 피해를 안주는 것은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누구 한 명이라도 규정이 정말 아닌거 같다고 발표를 하면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가 너무 다수결만 지향하고 소수는 무시한다고 느껴요.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면 당연히 잘 따르겠죠. 근데 선생님이 말한 건 그냥 통보잖아요. 왜 치마를 줄이고 화장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설득 될 만한 이유라도 제대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례C)

이 정도로 자세한 규정은 본 적 없고 용의·복장·소지품 정도 4장짜리? 정도를 입학할 때 봤었던 것 같아요. 개정되면 프린트로 배포하면 좋을 것 같아요. ...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다는 지가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모를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 학교가 걸모습을 잡는거 보다는 담배를 들고 다니다던가 이런 법에 걸리는 것들, 학교와 학생과의 관계와 같은 것들을 규정하면 충분할 거 같아요. 너무 세세하게 규정하지 말고. ...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건 저희데, 위에서 선배들이 했던 것들을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의견을 정해서 수정하면 저희가 만든거니까 더 잘 지키고 싶을 것 같아요. (사례D)

그때그때 학교 생활규정에 대해 공지할 사항이 공지되긴 하는데, 대부분 복장, 두발, 화장 이런 것들 이에요. ... 학교 생활규정에 관한 소책자를 배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대 청소년들 대부분 꾸미는 거에 관심도 많고 각자의 개성 존중도 필요하니까요. ...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하지 말아야 할 술, 담배 이런거는 금지시키되 나머지 것들은 좀 널널하게 풀어주면 좋겠어요. ... 학급 회의나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의견이 전달돼서 이게 충분히 반영되면 존중받았다는 느낌도 들고, 저희가 직접 정한 규정이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사례E)

학교생활규정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 모두 어느 정도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우선, 학교생활규정은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사례 A,B,D,E는 학교생활규정 전문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되는 규정만 학기 초나 가끔씩 공지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렇게 학생들이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면 학교생활규정이 보장하는 제·개정 절차 등도 알지 못하기에 학교생활규정이 자칫 프라이버시권 침해적으로 여겨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학교생활규정은 헌법과 같이 최대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세한 사항은 학생 자치에 맡기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 중 사례B는 학생회의 의견 제안이 교사에게 묵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약 정말 학교생활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학생에게 실질적인 자치권을 부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참여하여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는 학교생활규정이라면 이에 대한 존중 및 준수 의지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특히 사례C와 같은 경우는 현재 학교생활규정 및 생활지도가 통보 위주로 시행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 설득과 납득이 필수임을 역설하였다. 사례B는 설령 자신이 소수의 의견이 되어 최종적으로 학교생활규정이 자신의 의사와 반하게 결정되었더라도 이를 합리적인 제한이라 느낀다고 말하였다.

3. 연구 문제에 관한 결론

3.1. 연구문제1에 관한 결론

연구문제 1은 “학생다움에 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이다. 이에 면접 대상자는 크게 보면 용모가 단정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학생다움이라고 인식한 그룹과 학생의 개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학생다움은 없고 ‘개개인다움’만 있거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등 각자가 생각하는 학생다움의 구체적인 모습은 상이했다. 따라서 학생다움에 대하여 큰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진 몰라도 세부적으로는 모두 다를 것이기에 학생 사회에서 이러한 논의는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고 사료된다. 추후에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때가 오면 학생의 입장도 분명히 전달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자는 학생다움이란 개성을 실현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학생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서 조금 자유롭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1세기 이후 개성 있고 창의적인 시민이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용모가 단정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학생다움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청소년기에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다움의 모습에 관하여 의

견을 나누어 개성 있는 모습으로 인식이 변화한다면 학생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시민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3.2. 연구문제2에 관한 결론

연구문제 2는 “프라이버시권 친화적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이다. 면담 대상 학생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그들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생활규정을 원하였고 그에 따른 규칙을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답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해 제정될 학교생활에 관하여 납득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이는 설령 그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되더라도 합리적인 제한으로 받아들여 침해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애매한 단어나 재량규정을 넣어 교사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이 다르게 제한되는 것도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애매한 규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재량규정을 넣더라도 그 재량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그 수행의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제한 과정의 명료성을 높여줄 수 있다. 그리고 학교생활규정의 적극적인 알림을 통해 학생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알려주어 학교생활규정이 일방적이고 억압적이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본 연구자는 학생들의 의견에 일견 동의한다. 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회의 주인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듯이, 학교의 주인은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의 규칙과 구성원 중 하나인 학생을 통제하는 생활규정을 학생의 의견과 무관하게 정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재량의 범위가 넓어 ‘생활지도’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학생들의 반발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결국 프라이버시권 친화적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학교 당국은 프라이버시권 제한과 관련하여 재량의 범위를 축소하고 규범의 수범자인 학생과의 의견 교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주의는 권력 제한이라는 전제하에 기본권 보장이라는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전윤경, 2016). 나아가 법률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입법 기관에서 정해지므로 법률은 국민의 뜻과 같고, 법의 지배는 곧 국민 자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민주적인 학교라면 학교 생활규정은 필연적으로 학생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하며 그 규정은 구성원들의 뜻을 반영한, 구성원들에 의한 자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생활규정은 민주 사회의 법치주의가 요구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IV.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본 연구는 학생다움이란 학생들이마다 의견이 다양함을 확인하였고 프라이버시권 친화적 학교생활규정이 되기 위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가 추후 프라이버시권 친화적인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논의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당국은 학교생활규정이 약관의 성격을 지닌 자치법규라는 점을 이해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적극적인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이 요구된다. 오히려 시대는 변하고 규범의 수범자가 일정 주기로 계속 변화한다는 점에서 바뀌지 않고 경직적이라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다. 설령 이 과정에서 혼란이 유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권 친화적 학교생활규정이 제·개정되어 학교 현장의 소모적 갈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⁹⁾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혼란은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프라이버시권 친화적 학교생활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지 보다 학교생활규정이 학생들에게 납득이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는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학교생활규정에 접근함에 있어 내용적 측면보다는 절차적 측면에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프라이버시권 친화적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학생자치의 실질적 실현 방법, 의견 수렴 과정의 활성화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제한된 인원만을 심층면접 형식으로 진행하여 더 많은 학교 구성원을 포괄하기 힘들었다는 점, 양적 조사가 실시되지 못하여 객관화된 통계 데이터를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학생회 참여 여부에 따라 학생다움에 대한 인식의 큰 분류가 구분된다는 점은 이러한 대규모 연구로 밝혀볼 흥미로운 주제라 사료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점들을 더 보완하여 프라이버시권 친화적인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한다.

9) 민주사회일수록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표출되므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갈등의 해소는 다양성의 종식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못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갈등이 폭발하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갈등의 관리라 표현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 Johnson, J.M., 2002, In-depth interviewing. in J.F..Gubrium &J.A. Holstein(des.).
Handbook of interview research,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103-119.
- John W.Creswell,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접근」, 조흥식 외 3인, 학지사.
- 권영성, 2003,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철수, 1998, 「헌법학개론」, 박영사.
- 조영달, 2015, 「질적 연구방법론: 학교와 수업 연구의 새 지평」, 근사.
- 한태식 외 10인, 2012,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자료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논문 및 연구보고서]

- 구정화, 1997, 「사회과교육에서 '인권'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 pp.95-116.
- 구정화, 2014,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 인권 사오함에 대한 인식: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1), pp.1-26.
- 구정화, 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pp.1-87.
- 김영숙, 2005, 「학칙을 통해서 본 학생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보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현수·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6.
- 문용린 외 6인, 2003,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의 개발연구」,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 박길선, 2003, 「가상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길자, 2009, 「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중심의 인권교육 방안」, 『초등교육연구』 22(3), pp.89-111.
- 박진희·이상희, 2013,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자아정체감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성숙의 차이」, 『상담학연구』 14(2), pp.1015-1032.
- 배한진, 진미정, 2017,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고등학생 저녁시간 및 야간자율학습시간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28(2), pp.01-130.
- 송애리, 2019, 「한국 전학생의 눈에 비친 미국 초등학교 규칙에 관한 연구: 잠재적 교육과정에서의 함의」, 『윤리교육연구』 0(3), pp.121-153.
- 신옥순, 2005 「교육 연구를 위한 심층면접법의 의의와 활용」, 『교육논총』 25(1), pp.121-139.
- 원미순·박미현, 2015, 「학교환경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고등학생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7(1), pp.239-260.

- 유남영, 2010, 「학칙에 의한 학생인권의 제한에 관한 고찰」, 『人權과 正義: 大韓辯護士協會誌』, -(402), pp.73-95.
- 유병열, 2012, 「학교 인권교육 강화 및 교사의 인권교육 역량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23(2), pp.51-71.
- 윤정빈, 2009, 「초등학교에서 교실수업환경이 학생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조금주, 2016, 「학생인권조례 분석 및 학생인권 조사 개발 방향」, 『청소년학연구』 23(2), pp.299-320.
- 조석훈, 1996, 「학생 징계의 특성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조태원, 2002, 「초등학교 인권교육의 실태 분석 연구 - 초등학교의 교육현실 및 교사와 학생의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5, 「2015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 학습시간과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
- 표시열, 2008, 「한국 학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적용과 과제: 차별, 징계절차,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教育 法學 研究』 20(2), pp.151-172.
- 홍성찬 · 황인호, 1999,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보호권」, 『사회과학연구』 12, pp.21-38.

[기타]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박미소, 「서울교육청 ‘속옷·양말 색깔 단속’ 철지난 학칙 개정 공론화 추진」, 『뉴스시스』, 2021년04월11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09_0001401852&cID=10201&pID=10200”, (2021년4월28일 접속).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여자중학교 생활규정, 2020.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초·중등교육법

성소수자 간 관계성에 주목한 트랜스젠더 정체성 연구

— 소수자 내 다름과 다양성에 주목하여

이우진, 박성현, 이수연

성소수자 간 관계성에 주목한 트랜스젠더 정체성 연구

— 소수자 내 다름과 다양성에 주목하여

이우진, 박성현, 이수연*

[목 차]

1. 연구배경과 연구질문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4. 연구 내 개념 사용
 - 1) 성별(젠더) 정체성 관련 개념 의미
 - 2) 그 외 용어
 5. LGBT 속의 T: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두 범주의 차이
 - 1) 정체화 과정에서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 LGB의 경험적 차이
 - 2) 정체성과 사회적 현실 간 상호작용에서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 LGB의 경험적 차이
 - 3) 커밍아웃: 성소수자가 공유하는 듯한, 그러나 질적으로 다른 경험
 - 4) 경험과 정체성의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 LGB의 관계
 6. 트랜스젠더 속의 트랜스젠더: 내부의 차이와 구별짓기
 - 1) ‘찐’과 ‘짹’: 의료적 트랜지션을 둘러싼 구별짓기
 - 2) 취향과 정체성: 트랜지션 ‘의도’를 둘러싼 구별짓기
 - 3) 가시화 논쟁: 경험의 차이로 비롯된 의견 차이
 7. 결론 및 제언 - 단순해질 수 없는 다양성에 대하여
- 〈별첨1〉 심층면담 목록
참고문헌
-

1. 연구배경과 연구질문

故 변희수 전 하사는 23세의 나이로 숨졌다. 2017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¹⁾ 판정을 내렸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군복무를 지속하길 원했던 변 전 하사

* 이우진(자유전공학부 19) 박성현(자유전공학부 19) 이수연(자유전공학부 19)

1) 1975년부터 시행된 심신장애자전역등규정(국방부령 제259호)에서 정한 심신장애등급표 3급 심신장애의 내용 중 故 변 전 하사의 강제전역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3급) 34. 고환양측을 제거한 자”

는 전역심사 중지를 요청하였으며, 변 전 하사의 긴급구제 신청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에 심사위원회 연기를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 본부는 그대로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해 2020년 1월 변 전 하사를 강제전역시켰다. 그해 12월 인권위에서는 다시 육군참모총장에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권고했지만, 군은 여전히 강제전역은 적법했다는 입장뿐이었고, 변 전 하사는 결국 육군에 대해 제기한 소송²⁾의 결말을 보지 못하고 올해(2021년) 3월 죽음을 선택했다.

변 전 하사의 사망 열흘 전, 故 김기홍 씨는 38세에 삶을 끝맺었다. 김기홍 씨는 음악 교사이자, 스스로를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Nonbinary Transgender)’로 정체화한 사람이었다. 2018년 제주도의회 비례대표와 2020년 총선 비례대표에 출마하며 정치적으로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김 씨는 외면받는 존재였다. 총선 출마 당시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던 민주당 사무총장은 “성소수자 문제 같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과의 연합은 어렵다”며 김 씨가 속한 녹색당과의 연합을 거부했다(한겨레, 2021년02월26일). 계속해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려 노력하던 김 씨는 “너무 지쳤어요. 삶도, 겪는 혐오도, 나를 향한 미움도”라는 글을 남기며 세상을 등졌다.

두 고인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한국 미디어에서 ‘트랜스젠더’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었다. 이는 성소수자 관련 의제에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 청원에 대한 관심은 잠시나마 힘을 얻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 후 “고인의 죽음은 성소수자가 겪는 혐오와 차별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성소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발표했다(한겨레, 2021년03월03일).

하지만 그 와중에 트랜스젠더는 더욱 ‘생존에 대한 공포’에 떨어야 했다. 누군가는 변 전 하사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누군가는 성소수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이는 혐오를 드러내라는 신호탄처럼 작용했다. 변 전 하사나 김 씨는 살아 있을 때와 세상을 떠났을 때 모두 직접적인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다른 트랜스젠더들도 그들에 대해 말해지고 행해지는 여전히 억압과 차별을 목도해야 했다. 이미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시스젠더(Cisgender)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몇몇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라는 개념이 가시화되는 흐름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가 파헤쳐지진 않을까, 잠재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걱정하게 되었다. 변 전 하사 사망 후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SNS에는 더 많은 무지개³⁾가 떠돌아다녔으나, 정작 트랜스젠더들의 목소리는 혐오와 억압 속에서 더욱더 묻혀버렸다.

2)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2021년 10월 선고 예정이다. (대전일보, 2021년08월19일) http://www.daeje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84603

3) 성소수자(LGBT) 운동을 상징하는 ‘무지개기’를 말한다.

한쪽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특정한 편견을 가지고, 혹은 그런 편견 없이 그저 혐오를 낱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며, 무지개를 내걸고 화합과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양쪽 모두 트랜스젠더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결핍되어 있다. 트랜스젠더를 ‘여장변태’라 부르거나 성범죄와 연관시켜 혐오하는 이들은 트랜스젠더와 ‘시디⁴⁾’가 어떻게 다른지, 지정성별과 다른 성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성소수자 의제 속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방향도 포함되어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 이들은 성정체성 소수자와 성지향성 소수자가 어떤 다른 경험을 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다른 의제를 주장하게 되는지에 무지하다. 현실의 몇몇 트랜스젠더는 ‘LGBT’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부 게이나 레즈비언과 대립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트랜스젠더’라는 집단 역시 하나로 뭉뚱그려지기에는 너무도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누군가는 트랜스여성이고, 누군가는 트랜스남성이고, 누군가는 젠더퀴어(Genderqueer)로 스스로를 정체화한다. 누군가는 의로적 트랜지션을 거쳤고, 누군가는 호르몬 치료를 시작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호르몬 치료를 진행할 의향이 없다. 누군가는 성별정정을 목표로 하고, 누군가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트랜스젠더 내부의 경험의 ‘다름’들이 교차하여서, 한 트랜스젠더 개인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든 일반화하지 못하게 만든다. 트랜스젠더들은 이 다름을 기반으로 서로 차이를 인지하며, 본인과 다른 트랜스젠더와 같등하거나 그들을 구별짓기도 한다.

LGBT 내에서도 스스로를 ‘소수자 중 소수자’로 표현하고, ‘트랜스젠더’로 묶이는 외중에도 서로의 차이를 인지하는 트랜스젠더들의 경험은, 현재 어느 정치적 담론에서도 주목받고 있지 않다. 이에 연구자들은 그 두 가지 차원의 ‘다름’에 주목하여, 현실의 트랜스젠더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떤 의제를 말하고자 하는지를 ‘트랜스젠더의 시선’을 기반으로 구체화하려 한다. 이에 따라 제기되는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LGBT’라는 집단 내부에서 트랜스젠더는 어떤 위치를 점하고, 어떤 경험을 하며, 어떻게 스스로를 정체화하는가?

첫 번째 연구질문에 대한 세부 질문은 다음과 같다. LGBT 집단 내에서 트랜스젠더는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는가?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 LGB의 경험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이해되는가? 시스젠더 LGB와 트랜스젠더의 관계를 트랜스젠더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둘째. ‘트랜스젠더’라는 집단 내부에서 트랜스젠더는 어떤 공통의, 혹은 차이 나는 경험을 하며, 어떻게 스스로를 정체화하는가?

두 번째 연구질문에 대한 세부 질문은 다음과 같다. 트랜스젠더로 묶이는 집단 내에서

4) 크로스드레서(CD, Crossdresser)를 뜻한다. 용어 개념은 본 보고서 4장 ‘연구 내 개념 사용’에 기재되어 있다.

어떤 경험의 차이가 발견되는가? 그 차이는 어떻게 트랜스젠더에 의해 해석되는가? 이를 바탕으로 트랜스젠더 내에서는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어떤 연대/구별 짓기/갈등의 양상이 만들어지는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연구질문에 답하며, 그 과정에서 트랜스젠더의 삶과 의제를 구체화시켜 그 내부의 다양성을 보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그 자체로 트랜스젠더들의 목소리가 ‘성소수자’의 목소리 속에서 뭉뚱그려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혹은 ‘트랜스젠더’라는 집단 내부적으로도 뭉뚱그려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연구이기도 하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트랜스젠더가 처한 인권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려는 궁극적 목표를 지닌 연구로서, 트랜스젠더의 삶과 의제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주제의 선행연구를 탐구하였다.

첫째. 트랜스젠더의 개인적 삶과 경험. | 둘째. LGBT라는 범주의, 혹은 그 내부의 문제. | 셋째. ‘트랜스젠더’라는 범주 자체의 함의 혹은 영향. | 넷째.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내부 동학.

먼저, 트랜스젠더의 개인적 삶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과 함께 그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경험을 마주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수집한 국내외 연구가 존재한다. Seamont(2018)는 그의 트랜스남성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에서 트랜스남성은 여성으로서 양육되고 사회화되어, 그 후 남성으로 트랜지션하는 과정을 통해 시스젠더 남성과는 다른 규범적 차원을 구성하는 ‘남성성(masculinity)’을 형성하게 된다고 파악하였다. 이때 ‘별도의 남성성’을 구성하는 과정은 트랜스젠더로서의 정체성이 체화(embodiment)되는 과정, 트랜스섹슈얼로서의 신체를 가지게 되는 과정과 함께, 언제나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규범과 협상하거나 그에 저항, 그를 내면화하기도 하며 일어난다고 분석하였다. 장지은(2021)은 이분법적인 젠더 규범이 어떻게 다양한 신체와 젠더를 가진 트랜스젠더들을 억압하고 젠더화 폭력(Gendering Violence)을 양산하는지를 주제로, 한국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심층면담 기반 연구를 진행했다. 장지은은 미결정적인(undecided) 상태의 젠더가 한국 사회의 이원화된 젠더 규범에 영향받고, 주변의 관계가 변화하는 트랜지션 과정을 트랜스젠더 개인들이 거치며 각기 나름의 ‘젠더 간 경계’가 그어지게 된다고 해석하였다.

둘째, ‘LGBT’라는 범주에 주목하며 특히 LGB와 T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연구한 사례들이 있다. Morrison(2010)은 ‘All My Children(2006-2007)’이라는 드라마 속 ‘Zoe’라는 트랜스젠더 캐릭터에 대해 LGB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

하였다. Morrison은 비-LGB 시청자들보다 LGB 시청자가 Zoe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이는 LGBT 집단 내에 존재하는 긴장(intragroup tension)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당시 미국 내 ENDA(Employment Non-Discrimination Act)의 제정 운동과 맞물려서, LGB:T의 '어떤(혹은, 어디까지의) 성소수자가 ENDA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와 관련된 의제 간 갈등이 TV 쇼 캐릭터에 대한 반응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한다. Chong & Mohr(2020)는 LGB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정도가 LGB 외의 소수자 그룹인 트랜스젠더와 흑인에 대한 LGB의 연대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다. LGB에 대한 용인 정도(Affirmation Salience)가 강화될수록 여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연대 의식은 약화되었으며, 여전히 소수자인 트랜스젠더 집단에 대한 안티-트랜스젠더 의식은(Anti-transgender bias) 강화된다고 연구에서는 주장하였다.

셋째, '트랜스젠더'라는 범주 자체의 함의를 탐구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Towel & Morgan(2002)은 인류학 내에서 트랜스젠더 개념의 사용에 주목하여, 성별이분법적인 현대 산업 사회에 대조되는, 여러 젠더-유동적인(gender-fluid) 민족지적 사례가 재현(represent)하고 있는 '제3의 성(third gender)'이라는 낭만화된 관념을 트랜스젠더 개념에 덧붙여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Davidson(2007)은 그의 연구를 통해 '트랜스젠더'라는 범주는 전혀 단일하고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굉장히 유동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범주로 파악해야 함을 주장한다. Davidson이 관찰하기에 현재 트랜스젠더라는 범주의 사용은 일종의 우산(umbrella)처럼, 그 안에도 폭넓은 다양성을 가진 수많은 트랜스섹슈얼, 인터섹스, 젠더퀴어 정체성들을 한데 묶어서 부르는 개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Davidson은 이 같은 다양성을 내포한 트랜스젠더 범주를 둘러싸고 어떤 정체성을 이 범주에 포함시킬지에 관해 포함, 배제, 재구성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특히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동학(dynamics)에 대해 탐구한 사례가 존재한다. 손인서(2018)는 기존 연구에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가 트랜스젠더에게 일종의 정서적/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한다고 파악했던 것과는 달리, 커뮤니티 활동 자체가 트랜스젠더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인서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낙인과 제도적 압력으로, 커뮤니티 내부 담론에 젠더이분법의 내재화가 일어난다고 파악하며,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들은 젠더화된 성별 이미지에 의존하며 젠더이분법을 재생산하거나 의료적 트랜지션을 기반으로 본인의 '성'을 양성 중 하나로 결정지으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분석한다. 이에 더해 커뮤니티 내에서는 '100% 남성 혹은 여성을 지향하는' 이분법적 성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만 '진짜 트랜스젠더'로 인정하는 일종의 '순혈주의'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위계와 소외가 트랜스젠더 개인 간에 발생한다고 파악하였다. 손인서는 그런 기성 커뮤니티의 트랜스젠더 규범에서 벗어나 대안적 정체화

를 추구, 의료적 트랜지션을 거부하는 트랜스젠더 개인도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은 단지 ‘트랜스젠더’라는 하나의 범주로 단순화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름의 규범과 권력관계를 형성하며 커뮤니티에 일종의 역동성(동학)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성소수자’ 혹은 ‘LGBT’라는 범주에 트랜스젠더가 포함되어 오히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트랜스젠더를 단지 LGBT의 일부로 단순화하지 않고 그 내부적으로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주목한 연구가 존재한다. 한편 트랜스젠더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지속되어 왔으나, 그 연구 주제는 개인적 생애사와 차별 경험에 집중되거나 트랜스젠더를 ‘성별이분법에 대항하는 존재’로만 파악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그 경향에서 벗어나, 트랜스젠더들을 ‘사회 속의 존재’로 파악하며 그들의 젠더 역시 고정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 선행연구들의 관점을 차용한다. LGBT와 T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를 통해 LGBT라는 성소수자 범주를 뭉뚱그려 바라보지 않고 그 사이의 관계와 간극에 주목할 수 있었으며, 트랜스젠더라는 범주 내부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트랜스젠더’라는 집단 역시 일반화하여 바라보지 않는 관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연구로부터 커뮤니티 내부의 구별짓기 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 본 연구가 주목한 트랜스젠더 온라인 커뮤니티 내부의 동학에 대해 이해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GBT 속 트랜스젠더의 위치성에 주목함과 함께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내부의 동학에 관한 연구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단순 고정된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커뮤니티 내부 구조와 개인의 행위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때 어느 방향으로든, 한국이라는 특수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트랜스젠더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민족지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대한 민족지적 탐구를 기반으로, ‘LGBT’라는 범주에 대해, ‘트랜스젠더’라는 범주에 대해 커뮤니티 내외부에서 제기되는 담론들이 어떻게 트랜스젠더의 정체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류학 방법론을 차용한 민족지적 연구로서, 온라인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대한 문헌조사와 심층면담을 주 연구방법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문헌조사는 디시인사이드 트랜스젠더 갤러리⁵⁾와 LGBT 갤러리⁶⁾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온라인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중 디시인사이드 트랜스젠더 갤러리가 가장 활발하

5) 디시인사이드 트랜스젠더 갤러리.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lists/?id=lg74>

6) 디시인사이드 LGBT 갤러리. <https://gall.dcinside.com/board/lists/?id=lgbt>

게 글이 올라오면서도, LGBT /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내부 동학을 엿볼 수 있는 담론이 오간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디시인사이드를 이용하는 트랜스젠더는 LGBT 갤러리에 거의 글을 쓰지 않지만⁷⁾, 트랜스젠더에 대한 시스젠더 LGB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LGBT 갤러리 내에서 주변화된 트랜스젠더의 입지를 파악하기 위해 LGBT 갤러리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트랜스젠더 갤러리의 경우 갤러리가 만들어진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LGBT 갤러리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게시글과 댓글을 수집했다. 각 갤러리에는 게시글에 ‘추천’을 누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용자들에게 추천을 많이 받은 글은 ‘개념글’이 된다. 연구자들은 이 개념글과 함께 ‘트랜스젠더’, ‘게이’, ‘레즈비언’, ‘시디’, ‘끼순이’, ‘짹’ 등 연구질문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를 검색해가며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주로 수집의 대상이 된 게시글과 댓글은 1)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 LGB의 관계를 보여주는 글, 2)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내부 동학을 보여주는 글이었으며, 이외에 갤러리의 담론을 이끌거나(해당 게시글이 차후 많은 게시글에 다시 언급이 됨) 갤러리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글도 수집했다.

디시인사이드 트랜스젠더 갤러리와 LGBT 갤러리는 모두 반-익명화된 커뮤니티이다. 모든 사용자에는 ‘닉네임’이 부여되는데,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가 자신의 닉네임을 밝히고 싶지 않을 경우 게시글 작성자는 모두 ‘ㅇㅇ’으로 통일되어 표시된다. 두 갤러리 모두가 ‘ㅇㅇ’으로 익명화된 글쓴이들이 게시글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상 트랜스젠더 갤러리와 LGBT 갤러리에 글을 쓰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정말 트랜스젠더인지, 게이나 레즈비언인지, 혹은 그저 일반인인지는 연구자들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각 갤러리는 다른 갤러리 이용자들이 정말 ‘트랜스젠더’일 것이며, ‘LGBT’일 것이라는 갤러리 이용자들의 믿음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었고, 또한 심층면담에서 면담참여자들 역시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대개 실제로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전제를 당연시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들 역시 (다른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한) 트랜스젠더 갤러리 이용자는 ‘트랜스젠더’일 것이며, LGBT 갤러리 이용자는 ‘LGBT’일 것이라는 전제 아래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의 경우 총 19명을 대상으로 18회(1차/2차 면담을 별도로 셀 경우 20회) 실시되었으며, 주로 대면 면담을 실시하고 비대면 면담(zoom, 전화, 서면면담)도 병행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면담은 회당 1시간 ~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은 반구조적으

7) “(연구원: lgbt 갤러리도 하는지?) LGBT 갤러리를 보지는 않고요. (중략) 그게 딱히 뭐가 거기 T가 있거나. T에 대한 언급이 있거나 그런 갤러리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하게 보지는 않고. (연구원: 여장갤러리도 보시는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많던데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LGBT 갤러리에서 T가 배척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여장갤러리에서 크로스젠드레서랑 트랜스젠더가 같이 있는 상황이 됐다가... 지금은 트랜스젠더 갤러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 면담참여자 Q 심층면담 중 발췌.

로 진행되었으며, 1) 트랜스젠더로서 생애사에 대해, 2) LGBT 내에서 트랜스젠더의 위치성에 대해, 3) 트랜스젠더 내부의 담론과 구별짓기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골자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디시인사이드 트랜스젠더 갤러리에 공고글을 올려 면담참여자들을 모집하였으나, 면담참여자들 중에는 본인은 갤러리 활동을 자주 하지 않으며, 면담 참여 공고는 지인을 통해서 전달받았다고 서술한 면담참여자들도 많았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한 LGBT 내의 갈등이, 혹은 트랜스젠더 내의 구별짓기 등 담론이 실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 역시 심층면담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다. 또한, 본 보고서의 본론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담론과 심층면담에서 드러난 담론을 모두 담고 있으며, 그 차이를 드러내야 할 때는 이것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말’인지, 심층면담에서의 ‘말’인지 명기하였음을 밝힌다. 심층면담 목록은 <별첨1>과 같다.

4. 연구 내 개념 사용

본 연구 보고서 내 개념 사용은 주로 장지은(2021)의 논문에 실린 용어 정리에 기초한다. 장지은은 Mardell(Mardell 2017), Stryker(Stryker 2016), Goffman(Goffman 2009)과 성소수자부모모임(성소수자부모모임 2018)에서 만든 자료를 기반으로 관련 개념의 의미를 해설하고 있다. 단, 장지은의 용어 정리를 그대로 가져오진 않고, 본 보고서 내에 자주 언급되는 개념만 추려서 의미를 명확히 한다. 또한 장지은이 인용한 개념 외에도, 디시인사이드 LGBT갤러리와 트랜스젠더 갤러리 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추가하여 의미를 밝힌다. 이때 추가된 용어의 해설은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내부에서 통용되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1) 성별(젠더) 정체성 관련 개념 의미

트랜스젠더(Transgender): 트랜스젠더는 태어난 지정성별과 성별 정체성(젠더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Mardell, 2017: 24)을 말한다. 이때 본 보고서에서는 장지은의 연구와 같이, 의료적 트랜지션을 거친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거나 젠더 비순응적 표현을 하는 사람을 트랜스젠더로 지칭하고자 한다(장지은 2021).

시스젠더(Cisgender): 시스젠더는 지정성별을 젠더정체성으로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시스섹슈얼(Cissexual) 이나 비트랜스젠더(Nontransgender)나 비트랜스섹슈얼(Nontranssexual)이라고도 사용한다(Stryker 2016: 49-50).

지정성별(Assigned sex): 지정성별은 출생 시 성기의 모양이나 형태를 기준으로 나타나

는 출생증명서 등 문서에 기록된 성별로. 간성이나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 본인이 정체화하는 성별과 지정성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성소수자부모모임 2018: 367).

트랜스여성(Transwoman): 지정성별이 남성인데 성정체성이 여성일 경우를 지칭한다(Mardell 2017: 23). MTF(Male to Female)로 불리기도 한다.

트랜스남성(Transman): 지정성별이 여성인데 성정체성이 남성일 경우를 지칭한다(Mardell 2017: 23). FTM(Female to Male)로 불리기도 한다.

논바이너리(Nonbinary): 남성도 여성도 아니거나, 두 젠더가 부분적으로만 존재하거나 혼합되어 있는 등, 섹스/젠더 이분법 밖에 존재하거나 그 바깥에서 정체화하는 사람을 말한다(Mardell 2017: 11).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는 ‘젠더 퀴어(Genderqueer)’와 의미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 어휘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2) 그 외 용어

패싱(Passing):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종류의 낙인을 지닌 사람(성적소수자, 약물 중독자 등)은 불명예와 치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정보를 관리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이러한 전략을 ‘패싱’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적 자아 사이의 불화를 겪는다(고프만, 2009). 단, 본 보고서에서는 심층면담참여자들의 서술을 토대로, ‘특정 성으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당사자들의 경험에 초점을 둔 광의의 패싱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의 ‘패싱’되는 것은 본인의 젠더 정체성대로 받아들여지거나 지정성별대로 받아들여지는 두 경우를 모두 포괄한다.

의료적 트랜지션: 트랜지션 중 의료적 처치를 동반하는 과정을 말한다. 의료적 트랜지션은 호르몬 투여, 목소리 수술, 성형 수술(“남성적”, 혹은 “여성적”인 신체 부분을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가까워지게 수술하는 것), 성전환 수술(Sex Reassignment Surgery, 이하 SRS)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시다: Cross-Dresser(CD)를 뜻한다. 지정성별은 남성인데 여성의 옷이라고 여겨지는 옷을 입거나, 지정성별은 여성인데 남성의 옷이라고 여겨지는 옷을 입는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통칭한다.

5. LGBT 속의 T: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두 범주의 차이

본 장에서는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 LGB가 어떤 경험적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 차이에 따라 어떻게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자기 인식이 달라지는지 살펴봄으로써,⁸⁾ 흔히

8) 물론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가령 트랜스젠더이면서 동성애자인 사람처럼

LGBT로 포괄되는 ‘성소수자’라는 범주 속에서 트랜스젠더가 다른 시스젠더 LGB와 맺는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정체화 과정에서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 LGB의 경험적 차이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삶의 과정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지정 성별과 젠더 정체성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한다. 이러한 지속적 경험이 시스젠더 LGB들에게는 부재함을 고려할 때, 이는 트랜스젠더가 정체화 과정에서 겪는 고유한 경험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우선,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자신의 지정 성별로 대해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학교, 가정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의 지정성별로 대우 받는 경험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다고 진술한다. 가령, 지정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경우, 가족들로부터 ‘아들’ 혹은 ‘남자 형제’로 대해지고, 학교에서 ‘남자 번호’를 부여받는 상황에서 위화감과 거부감을 느꼈다고 언급한다. 지정성별이 여성인 트랜스젠더 당사자도 마찬가지로, 대학 과 모임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남자 테이블’과 ‘여자 테이블’ 중 ‘여자 테이블’에 소속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꼈다고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 바 있다.

대학 모임을 갔었는데, (중략) 남녀 테이블로 나누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과 남자애들이 저를 여자 애들 쪽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싫었어요. (중략) 그 순간 딱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해도 재네, 시스 여자애들이랑도 시스 남자애들이랑도 완전한 동성으로서 있을 수는 없겠구나, 어울릴 수 없겠구나, 섞여들 수 없겠구나.

- 면담참여자 F

위 사례의 면담참여자 F는 젠더 퀴어로 정체화하고 있다. 성별 이분법상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면담참여자 F는 성별에 따라 식사 테이블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느 쪽의 시스젠더와도 완전한 동성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거리감을 느꼈다. 이처럼,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지정 성별대로 분류되고 그에 기반하여 대우받는 경험이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젠더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두 차원 모두에서 소수자성을 지니는 당사자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두 범주의 교집합에 있는 인물들을 본 연구가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적 지향 차원에서의 소수자와 젠더 정체성 차원에서의 소수자가 겪는 경험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트랜스젠더는 그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다른 성소수자와 자신들을 구분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집단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트랜스젠더들은 대개 신체적 디스포리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디스포리아⁹⁾란 지정성별에 따른 신체에 대해 당사자가 느끼는 불쾌감을 의미한다. 특히 2차 성징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신체적 디스포리아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지정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경우 털이 나거나, 목소리가 굵어지고 목젓이 나오는 등의 변화, 지정성별이 여성인 경우 가슴이 커지는 등의 변화의 과정에서 디스포리아를 느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디스포리아는 2차 성징 이후에도 지속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호르몬 투여나 성전환수술 등의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한편, 앞서 언급된 경험의 정도나 양상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마다도 차이가 있다. 가령, 사회로부터 지정성별로 대해지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신체적 디스포리아보다 크게 다가왔던 당사자도 있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경험을 한 당사자도 있다. 위화감이나 거부감의 정도도 사람마다 다르다. 예컨대, 신체적 디스포리아를 심하게 경험하여 자기 성기에 자해 행위를 하는 당사자도 있는 한편, 신체적 디스포리아를 경험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경험의 양상이나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공통적으로 자신의 지정 성별로 대해지는 경험, 그리고 신체적 디스포리아가 트랜스젠더라는 젠더 정체성의 기반이 됨을 언급한다. 뿐만 아니라, 시스젠더 LGB 들은 애초에 위와 같은 경험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험은 트랜스젠더 고유의 것으로, 트랜스젠더와 다른 시스젠더 LGB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지점을 알 수 있다.

2) 정체성과 사회적 현실 간 상호작용에서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 LGB의 경험적 차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현실 사회에 드러내고, 젠더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면서 트랜스젠더가 겪는 고유의 경험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패싱’에 관련한 경험이다. 패싱이란, 어떤 사람의 외적 모습이 사회에서 남성이나 여성 중 하나의 성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즉,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시스젠더로 인식되어 다른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지나쳐갈 때 ‘패싱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많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은 패싱을 위해 옷차림, 머리카락, 화장, 성형수술, 호르몬 투여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사회로부터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트랜스젠더(특히 트랜스여성, 트랜스남

9)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디스포리아의 엄밀한 학술적 의미를 차용하기보다는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문헌 조사 및 트랜스젠더 당사자 심층 면담에서 사용한 신체적 디스포리아의 의미를 정리, 활용하였다.

성과 같은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게 패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실제로 면담참여자 중에서도, 처음 봤을 때 자신을 어떤 성별로 인식하였는지를 연구자에게 질문하며 자신의 패싱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패싱은 그저 사회로부터 젠더 정체성을 인정받는 인식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패싱이 건강과 생존의 문제와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고 진술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화장실 문제다. 남성과 여성 어느 쪽으로도 패싱이 안 되는 경우,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지 않은 이상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매우 어렵다. 남성과 여성 화장실 중 어디로 들어가든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스젠더로부터 차별적인 시선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 화장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외출하는 동안 배변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트랜스젠더는 매일의 일상적 상황에서 패싱의 문제에 직면하며, 패싱의 여부나 정도에 따라 사회적 인정 혹은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의료적 처치도 트랜스젠더가 겪는 고유의 경험이다. 의료적 처치에는 호르몬 투여, 성전환 수술, 성형 수술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이러한 의료적 처치는 신체적 디스포리아의 해소, 더 효과적인 패싱, 법적 성별정정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 지는데, 이러한 다양한 목적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하나의 의료적 처치를 받을 때에도 다양한 동기가 중첩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의료적 처치를 받기 위한 과정 자체는 매우 험난한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트랜스젠더가 호르몬 투여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증명’해줄 수 있는 정신과 진단 기록이 요구된다. 성전환 수술의 경우에도 수술 자체가 신체에 굉장한 무리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수술 후에는 생식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기 위해 태국 등 타지로 떠나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한다.¹⁰⁾

법적 성별정정에 관한 경험 또한 트랜스젠더 고유의 경험으로서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적 성별정정을 위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법원을 통해 개별 판단위로 성별정정을 할 수 있다. 성별정정을 허가받기 위한 관계적¹¹⁾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다. 가령 트랜스여성의 경우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으면 법적 성별정정은 불가능에 가깝다. 법적 성별정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도 여전히 지정 성별의 것으로 표시되는 등,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여전히 제도적으로 지정 성별로 규정된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 중 하나가 취업의 어려움이다. 가령, 여성 패싱이 되는, 즉 외적 모습이 주류 사회에서 여성으로 받아들여지는 트랜스여성이 주민등록번호상으로는 여전히 남성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이 트랜스여성은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들키게’ 된다. 이는 트랜스젠

10) 성전환 수술이 얼마나 큰 부담을 안기는 의료적 처치인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11) 성별정정에 관한 법적 조건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법적 성별정정의 사례를 통해 대다수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관계적 차원의 조건이 있다고 여겨진다.

더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혐오와 맞물려 심각한 취업상의 불리함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적 성별정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트랜스젠더들은 아예 체념하고 자신의 지정 성별로 패싱이 되는 상태에서 구직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처럼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자신의 젠더 정체성에 보다 부합하는 삶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법제도의 폐쇄성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이 장에서 언급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큰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목소리, 신체 골격 등은 성형 수술, 성전환 수술 등의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기에 디스포리아가 해결되지 않고 패싱이 잘 안 되어 우울을 겪는 경우가 많다. 건강상의 이유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의료적 처치를 받기 어려운 상황 또한 트랜스젠더의 우울감의 원인이 된다.

이와 더불어, 상당수의 트랜스젠더는 경제적 궁핍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성형 수술, 성전환 수술, 호르몬 투여와 같은 의료적 처치에 소모되는 경제적 비용이 크다. 또한 패싱이 되고 성별정정을 받는 등 트랜지션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주류 사회에 녹아들 수 있기에 시스젠더들이 일반적으로 세우는 학업, 취업 등과 관련한 삶의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 실천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트랜스젠더는 경제활동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같이 트랜스젠더가 경험하는 삶 속의 어려움은 어떤 한 요인의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요인들이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이 절에서 언급되는 경험이 모든 트랜스젠더에게 동일한 정도와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령, 각 의료적 처치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여부와 정도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마다 차이가 있다. 일부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호르몬 투여, 가슴 수술은 받아도 경제적 사정, 건강 상황, 디스포리아가 심한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거나,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도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법적 성별정정도 모든 트랜스젠더의 목표라고는 할 수 없고, 법적 성별정정을 할 수 없거나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트랜스젠더는 패싱, 의료적 처치, 법적 성별정정을 원한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거나, 트랜스젠더의 범주를 과도하게 축소시키는 문제를 낳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면담 참여자가 진술한 이상의 경험은 시스젠더 LGB는 겪을 필요가 없는 트랜스젠더 고유의 것이라 할 수 있다.

3) 커밍아웃: 성소수자가 공유하는 듯한, 그러나 질적으로 다른 경험

커밍아웃이란, 성소수자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솔직하고 거짓 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지하고 수용하여 타자에게 드러내고 알리는 사건이자 과정이다(정혜숙,

2020). 이는 성적 지향 차원에서의 성소수자도 가지고 있는, 즉 성소수자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시각에 따르면, 젠더 정체성에 대한 커밍아웃의 경험은 성적 지향에 대한 커밍아웃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나아가 젠더 정체성에 대한 커밍아웃이 성적 지향에 대한 커밍아웃에 비해 더 힘든 경험이다. 그 요인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우선, 트랜스젠더 당사자에 따르면 커밍아웃이 가져오는 충격의 정도 혹은 파장에서의 차이가 있다. 젠더 정체성에 대한 커밍아웃과 성적 지향에 대한 커밍아웃은 같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더라도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전자는 ‘내가 그들에게 어떤 성으로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변화인 반면, 후자는 단지 ‘내가 성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누구로 존재할 것인가’의 변화이므로, 커밍아웃에 따른 관계의 변화 폭이 완전히 다르다. 즉, 트랜스젠더로서의 커밍아웃이 훨씬 관계 변화의 폭이 크다는 점이 트랜스젠더 당사자로부터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 ‘어쩔 수 없는’ 커밍아웃의 문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패싱을 하는 과정 중에, 혹은 의료적 트랜지션을 감행하며 자금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법정에서 부모님 도장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트랜지션을 거치게 되면 외형이 변하게 되므로, 기존에 일하던 직장이나 학교를 포함한 어떤 공동체에서든 트랜스젠더 당사자 본인이 커밍아웃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인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 결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반면, 성적 지향에 대한 성소수자는 트랜스젠더의 경우처럼 자신의 성적 지향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밝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낮으며,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대상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커밍아웃의 경험이 얼마나 강제적인지에 따라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은 커밍아웃 경험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렇듯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 LGB의 커밍아웃에 관한 경험 간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음이 트랜스젠더 당사자들로부터 지적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는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성소수자 간 경험의 차이를 소개하는 것이며 LGB 시스젠더의 시각은 담아내고 있지 않다. 때문에 위의 내용이 LGB의 커밍아웃 경험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의 젠더 정체성에 대한 커밍아웃이 성적 지향에 대한 커밍아웃보다 실제로 더 어렵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위와 같은 시각으로 경험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트랜스젠더가 다른 시스젠더 LGB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해함에 있어 유의미한 지점이다.

4) 경험과 정체성의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 LGB의 관계

트랜스젠더는 시스젠더 LGB와의 경험적 차이를 바탕으로 이들과 어떻게 교류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 LGB 간 관계의 세 가지 양상을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양상은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다. 일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트랜스젠더 이외의 시스젠더 LGB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교류한 경험이 거의 없다. 이들은 특별히 다른 시스젠더 LGB와의 교류를 의도적으로 피한 것도 아니며, 그저 '교류할 일이 없었다'라고 진술한다. 이들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와 다른 시스젠더 LGB는 교집합이 많지 않고, 서로 다른 경험을 하며 생활영역도 무척 다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에 따라 교류도 거의 없는 경우가 생긴다.

두 번째 양상은 서로에 대한 거리감과 몰이해다. 면담참여자 중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 서로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시스젠더 LGB들과 교류한 트랜스젠더 당사자들도 다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갈등이 없었다고 해서 서로에 대해 유의미한 동질감을 느끼며 서로의 정체성과 경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많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지적한다.

시스 레즈비언이랑 만났을 때도 소속감이랄까, 동질감 같은 게 100% 느껴지진 않죠.

사례 1: 면담참여자 F

물론 그쪽(케이) 분들이 저를 보면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어떻게 남자만 좋아한다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략) 그냥 기본적으로 그분(오프라인에서 만났던 케이)들은 제가 제 성향 정체성을, 저는 트랜스젠더이고 누구고 이렇게 밝히면 그분들은 좀 많이 하셨던 생각이,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중략)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취향이 이렇게 남성적인 취향도 많고 그런데 트랜지션을 하냐는 것도 듣기도 했었고, (후략)

사례 2: 면담참여자 I

제가 게이라고 정체화했을 때에는 서로 친하게 놀던 사람이 막상 제가 이제 트랜스젠더 젠더 퀴어로 정체화하고 나서 한 번 만나고 나서 그 뒤로 약간 서먹해진 기분. 저는 평소와 같이 대화도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중략) (연구원: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는 느낌을 받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셈이 되겠죠. (연구원: 혹시 그분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지, 혹시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걸 잘 모르겠어

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정체성이 다르다 보니까, 공통분모가 남성을 좋아한다는 것 외에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남성을 좋아하는데 남성으로 좋아하는 것하고 남자인지 아닌지 속의 정체성이 여자, 아니면 젠더 퀴어로서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이 세부적으로는 다른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서로 거리가 멀어진 느낌은 확실히 들었어요.

사례 3: 면담참여자 R

사례 1에서 면담참여자 F는 시스 레즈비언과의 오프라인 교류 경험이 있었음에도 큰 동질감을 느끼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사례 2의 면담참여자 I는 지정 성별은 남성이나 호르몬 투여 등의 트랜지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젠더 정체성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으며, 성적 지향의 차원에서도 성애적 사랑에 있어 성별은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정체화하고 있다. 면담참여자 I는 온라인 어플을 통해 시스젠더 게이들과 친목 차원에서 만난 경험이 몇 차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정체성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면담참여자 I는 성별에 관계없이 성애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성적 지향을 지닌 사람으로서, 남자만 좋아한다고 '확신'하는 게이 당사자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 게이 당사자도 면담참여자 I의 성적 지향을 이성애자일 것으로 지레짐작하거나, 면담참여자 I가 사격, 게임과 같은 '남성적 취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랜지션을 거치는 것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였다. I는 상대방 게이 당사자의 성적 지향을, 상대방 게이 당사자는 I의 젠더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사례 3의 면담참여자 R은 지정 성별 남성으로 태어나 이전에는 게이로 정체화를 했다가, 트랜스젠더 젠더 퀴어로 재정체화하였다. 게이로 정체화했던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게이 지인을 만난 면담참여자 R은,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교류를 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젠더 퀴어로 재정체화한 이후로 상대방으로부터 거리감을 느꼈다고 진술한다. 젠더 정체성이 달라졌을 뿐인, 같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거리감을 느꼈고, 게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했던 때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이처럼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다른 시스젠더 LGB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소수자'로서 유사한 경험을 깊이 있게 공유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동질감, 일체감, 연대감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이의 교류의 양상이 갈등이나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양상을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이 성소수자로서 충분한 동질감과 친밀감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스젠더 LGB와의 갈등과 이들로부터의 혐오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도 있다. 이때 갈등이나 혐오의 구체적인 양상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일반 사회를 상대로 경험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스젠더 LGB로부터의 혐오를 경험한 면담 참여자의 진술에 따르면, 트

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를 행하는 시스젠더 LGB는 주로 트랜스젠더의 젠더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며, 이들은 자기 지정 성별대로밖에 살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의 젠더 정체성이 그저 ‘느낌’에 불과하기에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장애인’, ‘고양이’ 등으로 멋대로 정체화하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더불어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레즈비언 당사자로부터,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가 여성 혐오’라는, 흔히 TERF(Trans Exclusionary Radical Feminism)이라고 불리는 래디컬 페미니즘 진영에서의 담론을 접한 면담 참여자도 있다.¹²⁾ 일부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성소수자가 트랜스젠더에 대해 어설피게나마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어 그들이 행하는 혐오는 보다 구체적이고, 이 때문에 이들이 행하는 혐오가 더 아프게 다가온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한편 면담참여자 중 다수는 혐오를 행하는 자가 성소수자든 아니든, 시스젠더로부터의 혐오는 다 비슷한 종류의 혐오로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에 이 두 가지의 혐오를 크게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편하게 사람들이 (범주화)하기 위해서 그룹을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중략) 집단을 다루기 용이하려면 그룹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게 편하니까, (중략) 묶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좀 편의성을 위해서 묶었던 게 아닐까.

- 사례 1: 면담참여자 I

이게 다 달라가지고, 웬만하면은 L/G/B/T 다 따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은 이런 게 다르다는 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단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인식 같은 게 좀 더 높아진다면 이런 걸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말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 사례 2: 면담참여자 P

그냥 그쪽(시스젠더 LGB)에서 젠더퀴어나 트랜스젠더를 먼저 혐오하지 않으면은, 그냥 같은 키워드 내로 묶인다는 거는 저는 딱히 싫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퀴어나까, 같은 퀴어지. 그 정도.

- 사례 3: 면담참여자 F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시스젠더 LGB와의 교류 경험이 있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도 존재한다. 교류 경험이 있는 트랜스젠더 당사자

12) 이러한 주장은 모두 트랜스젠더의 경험이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채, 트랜스젠더가 오랜 시간에 걸쳐 디스포리아를 경험하며 자신의 지정 성별을 회피하고 그 결과로서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고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감당해 온 그 치열한 삶의 과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혐오 논리다.

중에서도 혐오보다는 인간적인 교류를 한 경우, 적극적인 혐오를 마주한 경우, 그리고 이 둘을 모두 경험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서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LGBT라는 집단 구분에 대한 유의미한 소속감이나 동질감을 느끼지는 못했다.

사례 1에서의 면담참여자 I는 ‘성소수자’라는 구분이 편의적이라고 지적한다. 성소수자라는 범주 안에 포괄되는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성소수자’라고 뭉뚱그리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차원에서 이들을 ‘다루기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종의 그룹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성소수자’라는 포괄적 범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점을 제기한 면담 참여자도 있다. 다양한 성소수자를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가 그 집단 속에 존재하는 ‘소수자 중의 소수자’의 존재를 지운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성소수자들(무성애자, 퀘스처너리, 인터섹스 등)이 ‘성소수자’라는 하나의 범주로 ‘통쳐지면서’, 성소수자라는 범주 안에서도 소수에 속하는 이들이 무시된다.

하지만,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이러한 범주화에 대해 비판점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례 2의 면담참여자 P처럼, ‘성소수자’ 속 다양한 정체성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아직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은 만큼 ‘성’이라는 분야에 대한 소수자로서 성소수자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도 있다. 마찬가지로 사례 3의 면담참여자 F도 성소수자를 ‘퀴어’라고 한데 묶는 것에 대해 특별히 거부감을 표현하기보다는, 추상적으로나마 ‘같은 퀴어’라는 동질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성소수자’라는 범주화에 대해 긍정적 입장, 부정적 입장, 혹은 그 둘을 모두 포함하는 중간적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입장차가 조금씩 존재하기는 하지만, 다수의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 LGB 사이에는 근본적 경험의 차이가 존재함을 인지하면서도, LGBT라는 구분 자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그 구분에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철하기보다는 일정 수준 이를 인정, 수용하는 태도를 취한다.

한편, 성소수자라는 범주 안에서도 다시 한 번 소수자성을 느끼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도 있었다.

시스젠더 LGB인 사람들이 무조건 성적 지향성으로 볼 때는 약자일 수 있지만, 시스젠더라는 점에서는 또 강자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혐오발언을 하거나...
(후략) - 사례 1: 면담참여자 N

LGB는 그래도 시스젠더다,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권력층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개네

(LGB)는 아무래도 이제 노출이 좀 돼 있다 보니까, 가시화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트랜스젠더는 이제 가시화도 잘 안 돼 있고 특히 저 같은 트랜스남성은 가시화도 더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례 2: 면담참여자 E*

면담 참여자의 N과 E의 진술에 따르면, 시스젠더 LGB는 성적 지향의 차원에서는 소수자일지라도, 젠더 정체성의 차원에서는 다수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를 이해하지 못하고 혐오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들이 저지르는 혐오는 트랜스젠더가 LGBT 내에서 자신의 소수자성을 다시금 자각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트랜스젠더가 LGB보다 가시화의 정도가 더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도 있다.¹³⁾ 특히 사례 2의 면담참여자 E는 트랜스젠더 중에서도 가시화가 덜 이루어진 트랜스남성으로서 한층 더 심화된 소수자성을 느끼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트랜스젠더 갤러리에 게재된 여러 글에서도, 많은 면담 참여자의 진술에서도 ‘소수자 중의 소수자’라는 표현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수의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자신이 성소수자, 혹은 LGBT라는 범주 하에서도 다른 시스젠더 LGB와 동등한 위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위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한다.

‘성’에 관한 소수자라는 점, 그리고 ‘퀴어’라는 큰 범주 안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다른 시스젠더 LGB들과의 공통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중요한 지점은, 이러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공통점이 이들이 얼마만큼 유의미한 동질감, 일체감, 연대감을 느끼는지의 문제다. LGBT 당사자들은 ‘성’이라는 같은 범주 하에서의 소수자성을 공유하지만,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은 별개의 독립적인 문제이다. 이 때문에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 LGB는 서로 현저하게 다른 종류의 경험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어느 한쪽으로부터 혐오를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는 과정을 통해, ‘성소수자’라는 범주 안에서도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 LGB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어떠한 형태의 관계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성소수자’라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느슨한 범주화로 말미암아 자신과 조금은 비슷하기도, 동시에 다르기도 한 존재자들과 동일한 키워드로 사회에서 표상되며, 성소수자라는 범주 내부에서도 ‘소수자 중의 소수자’의 위치성을 인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작금의 성소수자 담론을 성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 혹은 ‘LGBT’라는 범주 속에 얼마나 다양한 소수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인지하고, 이들 각각의 정체성과 경험이 성소수자 담론에 충

13) 가시화에 대한 문제는 트랜스젠더 당사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분히 반영되어 소외되는 이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본 절에서는 시스젠더 LGB와 트랜스젠더의 관계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트랜스젠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험과 생각들에 대해 논하였다. 그러나 앞 절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듯 트랜스젠더 집단 안에서도 상당한 경험의 차이가 있으므로, 트랜스젠더 집단의 특성을 무리하게 일반화한다면 결국 소외당하는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트랜스젠더 당사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트랜스젠더가 시스젠더 LGB와 맺는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트랜스젠더 내부에서 어떤 정체성, 경험, 가치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트랜스젠더 내부에서는 어떠한 경험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경험의 차이가 어떤 방식으로 트랜스젠더 당사자 간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6. 트랜스젠더 속의 트랜스젠더: 내부의 차이와 구별짓기

‘성소수자’로 뭉뚱그려지는 시스젠더 LGB와 T 사이에도 다름이 존재하지만, ‘트랜스젠더’라고 말해지는 집단 내에도 수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 앞서 연구자들은 보고서 내에 사용되는 트랜스젠더라는 개념의 의미를 ‘태어난 지정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으로 해설했다. 이러한 의미 하에서 트랜스젠더만의 고유한 경험과 감정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이 트랜스젠더를 하나의 전형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트랜스젠더 내에서도 의료적 트랜지션의 차이, 정체성의 차이, 신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젠더 디스포리아의 정도와 이에 따른 괴로움, 가정·사회적 환경에 따른 경험도 차별적이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응하는 실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이로 인하여 트랜스젠더 사이에서 갈등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트랜스젠더 내에서 나타나는 다름과 그로 인해 촉발되는 구별짓기, 갈등에 관해 다뤄보고자 한다.

1) ‘찐’과 ‘짹’: 의료적 트랜지션을 둘러싼 구별짓기

앞서 트랜스젠더가 시스젠더 LGB와는 달리 의료적 트랜지션을 경험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의료적 트랜지션은 호르몬 투여, 목소리 수술, 성형 수술(‘남성적’, 혹은 ‘여성적’인 신체 부위를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가까워지게 수술하는 것), 고환 적출, 자궁 적출, 성전환 수술(SRS, Sex Reassignment Surgery)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중 호르몬 투여는 의료적 트랜지션의 초기 단계로, 성전환 수술은 최종 관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트랜스젠더 내부에서 의료적 트랜지션은 지정 성별과 젠더 정체성의 괴리로 나타나는 신체적 디스포리아를 줄이거나, 젠더 정체성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트랜스젠더가 의료적 트랜지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트랜스젠더 내에서도 의료적 트랜지션을 선택하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호르몬, 성전환수술, 성형 수술 등 모든 의료적 트랜지션을 경험하는 트랜스젠더도 존재하는 반면, 호르몬 투여만 하는 트랜스젠더도 존재하며, 아예 의료적 트랜지션을 거치지 않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의료적 트랜지션이 트랜스젠더 내부에서 ‘구별짓기’의 준거로 이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지정 성별과 자신의 젠더 정체성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면 모두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는 시각도 있는 반면, 의료적 트랜지션을 거쳐야만 ‘진(진짜) 트랜스젠더라고 보는 시각도 커뮤니티 내에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의료적 트랜지션을 거치지 않는 이들을 ‘깍(가짜) 트랜스젠더라고 칭하고 배제하는 구별짓기가 일어난다.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 MTF는 성기 수술을 해야 **성별정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법원에서. 그런데 또 FTM은 되게 성기 재건 수술이 되게 힘들어서. 성기 수술까지는 안 하고 이제 재판 넘어가서 한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게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약간 **비수술 트랜스젠더도 트랜스젠더로 인정해줘야 되냐**. 어쨌든 저는 그래도 **의료적인 것까지 마친 분들이 성별정정이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 면담참여자 A

이러한 구별짓기의 양상은 트랜스젠더 갤러리와 면담에서 모두 목격된다. 트랜스젠더 갤러리에서 의료적 트랜지션을 준거로 한 구별짓기와 관련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트랜스젠더에는 트랜스여성, 트랜스남성뿐만 아니라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도 분명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성정체성을 이분법적으로 정의하고 이것에 자신의 신체를 ‘맞춰가는’ 의료적 트랜지션이 트랜스젠더임을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트랜지션은 어디까지나” 트랜스젠더 갤러리, 2021년 9월 11일). 의료적 트랜지션이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반해 의료기술의 한계나 경제적 부담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적 트랜지션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를 ‘트랜스젠더’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감을 표현하거나, 의료적 트랜지션을 거치지 않는다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기에 의료적 트랜지션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다(“남자가 호르몬” 트랜스젠더 갤러리, 2021년06월11일). 이 연구의 면담에서도 비수술 트랜스젠더가 트랜스젠더가 맞느냐에 관한 논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의료적 트랜지션 여부와 정도에 따라 ‘트랜스젠더다움’을 정의하려는 논쟁과 갈등이 트랜스젠더 공동체 내부에 실재하고 있다.

애초에 의료적 트랜지션을 둘러싼 구별짓기와 그에 따른 갈등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수많은 차이가 개인 간에 존재하지만, 차이가 차별이나 갈등으로 연결되어야 할 필연성은

없다. 하여, 트랜스젠더 간의 특정한 다름이 갈등으로 승화되고 있다면, ‘왜’ 그 다름이 중요시되는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추정해볼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믿는다. 첫째, 현재 한국사회의 제도적 성별정정이 바로 이 의료적 트랜지션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성별정정은 트랜스젠더들에게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수단이며, 제도가 시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를 그 젠더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토대가 된다. 의료적 트랜지션을 성별정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하지만 현재 트랜스여성의 경우 성별정정을 위해서는 의료적 트랜지션, 그 중에서도 성전환수술이 관례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트랜스남성의 경우 자궁적출을 해야만 성별정정이 가능하다. 한국사회의 제도가 트랜스젠더를 인정하는 범위를 의료적 트랜지션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준을 내면화하여 트랜스젠더 내부에서도 일부가 의료적 트랜지션을 받은 사람과 그럴 의사가 있는 사람을 진정한 트랜스젠더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의료적 트랜지션 과정이 혹독한 고난을 수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료적 트랜지션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구별짓기의 준거로 간주된다. 의료적 트랜지션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호르몬을 투여한 후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성전환 수술을 받으면 전신 마취를 하고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거친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다. 이는 환자에게 죽음을 연상할 정도의 정신적 부담과 신체적 고통을 초래한다. 이로 인하여, 모든 트랜스젠더들이 의료적 트랜지션의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건강 혹은 신체적인 부담으로 인해 수술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저는 여자로 살고 싶어서 수술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태어난 그 몸 그대로 살면 진짜 죽어버리는 게 나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감정을 보통은 못 이해할 거예요. 진짜로 죽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로 많이 죽어요. 그 정도 절박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수술한 거거든요. (중략) 저는 **수술을 안 했더라도 언젠가 하고 싶어 하면,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디스포리아와, 지금 약간 갇혀 있는 느낌이기도요, 몸 안에. 그래서 이걸 빨리 벗어던지고 싶은, 탈출하고 싶은 그 욕구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 면담참여자 J

‘트랜스젠더임’은 말 그대로 개인의 정체성이기에 꺼내어 보여줄 수 없고, 따라서 ‘진정으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 현실에서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트랜스젠더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적 트랜지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는 것은 ‘진짜 트랜스젠더’임을 증명하는 가장 엄밀하고 객관적인 기

준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적 트랜지션을 거친다는 것은 트랜스젠더가 되려는 의도가 진실됨을 증명하며, 그 사람이 진정으로 트랜지션을 하기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판별하기에 적절한 기준점으로 트랜스젠더 사이에서 믿어지고 있다. 특히나 극심한 젠더 디스포리아를 경험하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전환수술을 ‘필수’로 여기기도 한다. 이는 젠더 디스포리아가 극심한 트랜스젠더들의 경우 성전환수술을 통해 젠더 디스포리아를 해소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에, 어떤 트랜스젠더에게는 의료적 트랜지션이 선택의 문제일 수 있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들은 만약 젠더 디스포리아가 극심하지 않아 성전환 수술을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들 스스로는 트랜스젠더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본인은 그들의 경험에 공감하지 못하겠다고 서술하기도 한다.

저희 커뮤니티에서 보면은요 의료적 트랜지션을 하고 싶는데 하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난치병을 앓고 계시거든요. 이게 크론병처럼 양성 종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소화기 안에. 근데 그게 **여성호르몬이 작용하면은, 공격적 종양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 악성 종양 그러니까 암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미 지금도 대장 전체를 절제를 하셨고. 그런데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의료적 트랜지션을 진행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트랜스젠더가 아니고 트랜스섹슈얼이 아니다. 의료적 그런 변화를 감행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 면담참여자 Q

그러나 의료적 트랜지션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에는 분명 차이가 있으며, 의료적 트랜지션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도 트랜스젠더마다 다르다. 우선, 의료적 트랜지션은 상당한 신체적, 건강상의 부담을 수반하기에 의료적 트랜지션을 성전환수술까지 희망하더라도 이를 모두가 행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도의 진실성이나 갈망의 정도와 관계없이, 신체적 디스포리아를 극심하게 느끼더라도 의료적 트랜지션을 ‘할 수 없다’. 위 면담에서 언급된 사례 속 인물은 의료적 트랜지션의 초기 단계로 여겨지는 호르몬 투여도 하지 못하기에 의료적 트랜지션에 따른 ‘진짜 트랜스젠더’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나, 젠더 디스포리아라는 트랜스젠더 고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의료적 트랜지션의 문제는 트랜스젠더 개인이 온전히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의사의 진단이 요구됨을 고려해야 한다. 호르몬 투여를 위해서는 정신과에서 ‘F64.0(성전환증)’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에게 알려질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에 방문해 공식적 진단을 받기 어렵고, 트랜

스젠더를 위한 호르몬 투여를 ‘허용’하는 병원도 많지 않다. 내가 본인이 ‘트랜스젠더임’을 확실하게 인식해 성전환 수술을 시도하더라도, 정신과 의사가 수술 승인을 거부하거나 건강 상태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렇듯 개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개인의 건강 상태, 의료체계 내에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료적 트랜지션을 경험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의료적 트랜지션의 경제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먼저 정신과 진단을 받는 것부터 복잡한 의학적 검증의 과정이다. 면담참여자 B는 본인이 많은 금액을 지불해서 몇 주간 입원, ‘정밀 진단’을 받음으로써 겨우 진단을 받아냈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이혜민, 박주영, 최보경(2018)에 따르면 호르몬 투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성주체성장애 진단을 받는 비용을 묻는 문항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25만원~49만원이 지출된다고 답했다. 트랜스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가슴수술에 532만원, 고환 제거 수술에 297만원, 성기 성형수술에 1515만원, 안면성형 수술에 1160만원, 목소리 성형 수술에 656만원, 기타 수술에 133만원을 지출한다고 답했다. 트랜스남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가슴수술에 369만원, 난소 자궁제거 수술에 398만원, 성기 성형 수술에 2057만원, 안면성형수술에 367만원, 기타 수술에 1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언급된 모든 의료적 처치를 했을 때 트랜스여성은 평균적으로 4293만원, 트랜스남성의 경우 3291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매달 투여하는 호르몬 비용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듯 의료적 트랜지션은 큰 경제적 부담을 야기한다. 이외에도 수술 사후적인 치료나 수술 이후 공백기 동안의 생계 보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모든’ 의료적 트랜지션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1억에 육박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의료적 트랜지션은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여타의 제도적인 지원도 전무하다. 또한 트랜스젠더는 커밍아웃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한 가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설령 개인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더라도 서류상 기재되는 성별과 패싱 등의 문제로 취업이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처럼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의료적 트랜지션을 개인의 의지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다소 현실적이지 않다. 의료적 트랜지션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와, 필요한 의료적 트랜지션 종류에 관한 판단도 트랜스젠더마다 다르다.

사실 사람마다 개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는 호르몬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수술은 어디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희망하는 수술 범위도 다** 다르고 해서 이제 **수술이 두려운** 사람들은 “호르몬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혹은 나는 **죽어도 디스포리아가 더 심하다** 해가지고 “무조건 정정까지 끝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 면담참여자 S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라면 성별 이분법 체제 내에서의 의료적 트랜지션을 통해 (이분화된) 특정 성별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 인식에 답답함을 표현한다.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중에는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신체를 추구하지 않으며, 의료적 트랜지션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중에서도 지정 성별에서 나타나는 외적 특징이 도드라지지 않는 경우 성전환 수술은 하더라도 성형 수술은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또한 호르몬 투여는 개개인별로 효과가 상이한데 이때 가슴이 커지거나 목소리가 낮아지는 등 호르몬의 효과가 ‘잘 받아서’ 굳이 수술을 받지 않아도 젠더 디스포리아가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트랜스남성의 경우 성전환 수술이 매우 어렵고, 또 수술 후 관리도 상당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어 이를 시도하는 것이 더 큰 부담이 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트랜스젠더 각자의 고유한 상황과 경험이 존재하고, 지향하는 정체성 또한 다양하기에 개인별로 의료적 트랜지션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고 있다. 의료적 트랜지션 - 특히 성전환 수술이라는 획일적 기준이, 과연 이들 중 일부를 ‘트랜스젠더가 아니’라고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단, 의료적 트랜지션이라는 구별짓기의 준거를 완전히 와해시켜야 한다고 결론내리기 전에, 이 구별짓기가 왜 생겨났는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구별짓기와 갈등이 트랜스젠더가 주류사회에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증명해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분법적 젠더 구조를 기반으로 사고하며 트랜스젠더가 그들의 젠더 정체성을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라거나,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를 ‘변태’로 칭하며 지정 성별로만 바라보는 혐오 담론이 남발되고 있다. 의료적 트랜지션을 거치지 않은 트랜스젠더를 ‘트랜스 고양이’, ‘트랜스 장애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며 폄하하는 담론이 LGBT 갤러리 내에도 존재했다.

차별과 혐오는 편견으로 고착화되어 트랜스젠더의 금전적 문제, 취업 문제, 대인관계 등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주류 사회에 대해, 혹은 주류 사회 속에서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착각’하는 것이 아님을, 자신의 정체성이 실재함을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의 젠더 정체성처럼 ‘보이기 위한’ 각종 노력을 하며, 공식적-제도적으로 인정된 트랜스젠더의 기준을 스스로와 다른 트랜스젠더들에게도 요구하기도 한다. 결국 의료적 트랜지션은 트랜스젠더들에게 신체적 디스포리아를 해소하기 위한 기제이면서, 트랜스젠더로서 사회에서, 트랜스젠더 내부 커뮤니티에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으로 다가온다. 일상적으로 자신의 몸, 사회적 혐오, 각종 제도와 투쟁하고 있는 트랜스젠더는 그 투쟁과 함께 ‘트랜스젠더임’을 증명하기를 요구받으며, 그 증명의 근거를 의료적 트랜지션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근거는 트랜스젠더의 내부적 타자화를 수반한다.

2) 취향과 정체성: 트랜지션 '의도'를 둘러싼 구별짓기

트랜스젠더들은 의료적 트랜지션을 통해 신체의 변화를 일으키며, 사회적으로는 패싱, 법적으로는 성별정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트랜지션을 한다. 트랜스젠더마다 경험하는 트랜지션 과정은 상이하나, 이때 트랜지션을 하는 '의도'가 '진짜 트랜스젠더'인지 '가짜 트랜스젠더'인지를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젠더 디스포리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트랜지션을 행하는 '진짜 트랜스젠더'가 존재하는 반면, 성적 목적으로 트랜지션을 행하거나 젠더 정체성의 괴리를 해소하는 것에 진심이 아닌 '가짜 트랜스젠더'도 있다고 믿고 있다. 일부 면담참여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가짜 트랜스젠더'는 평소에는 지정 성별의 정체성대로 살다가 성행위 혹은 성적 어필을 위해 일시적으로 여장/남장을 하는 존재이거나, 정체성의 문제가 아닌 취향의 문제로 트랜지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 중 가장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성적 목적으로 트랜지션을 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시디(크로스드레서, crossdresser)와 교집합을 가지는 집단으로 흔히 생각된다.

의료적 트랜지션 문제와 트랜지션 의도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의료적 트랜지션을 거치지 않는 경우, 혹은 가슴 수술 등 '일부' 의료적 트랜지션만 하고 '최종적인 단계'로 알려진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트랜스젠더로서 정체성의 괴리를 해소하는 문제에 진심이 아니거나, 심지어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악용'하고 있는 이들로 간주되기도 한다. 일부 면담참여자들이 의료적 트랜지션을 '악용'할 수 있다고 지목한 대표적인 대상은 바로 시디로, 흔히 '여장 남자', 혹은 '남장 여자'로 호명되는 집단이다.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실천하는 '패싱'과 시디의 '여장/남장'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다. 패싱의 경우 특정한 젠더 정체성을 사회에 보여주어야 하는, 더 진지하고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인 반면, 시디의 남장 혹은 여장은 취향의 차원으로 선택적인 취미 혹은 놀이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트랜스젠더의 시각에서 시디는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집단이 아니라고 개념화하고 있으며, 시디는 특정한 취향을 실천하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트랜스젠더는 시디 중 일부가 가슴 수술, 호르몬 투여 등의 의료적 트랜지션을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트랜지션이 젠더 디스포리아 해소라는, 자신의 본래적인 젠더 정체성을 실현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에 반해, 평소에 지정 성별로 살아가면서 단순히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의료적 트랜지션을 한다고 생각되는 시디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트랜스젠더는 자신들이 실존적 괴로움, '생존의 문제'로 인해 여러 부작용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의료적 트랜지션을 하는 반면, 시디는 이를 단순히 성적 도구로 보고 '가볍게' 의료적 트랜지션을 한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거부감을 느낀다.

여장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섞여서 오해받는 게 좀 싫어요. (중략) 보면은, 화장실에서 몰카나 여장 하고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거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mtf들도 같이 오해 받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일단 다니면서 조심하고 다니고 주변에서 다 이해해 주고 하니까는 그런 건 별로 못 느끼긴 하는데 보면 혹시나 **나도 저런 식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불안하죠.**

- 면담참여자 H

온라인 커뮤니티와 면담 모두에서 트랜스젠더들의 시디에 대한 타자화가 잘 드러난다 (“女화장실 들어간” 트랜스젠더 갤러리, 2021년 8월 28일). 이는 ‘진정한 트랜스젠더’가 아닌 이들이 트랜지션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반영하고 있다. 몇몇 면담자와 트랜스젠더 갤러리의 작성자들은 사회에서 부르는 멸칭을 그대로 적용해 시디를 ‘여장 변태’라고 부르기도 하며(“여기깬 애들” 트랜스젠더 갤러리, 2021년 07월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트랜스젠더는 누구보다 여장 변태로 비춰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면담 과정에서 스스로를 트랜스여성으로 소개한 H 또한 이러한 ‘오해’에 거부감을 표출했다.

그런 게 이제 한 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아세요? 2018년인가 2017년인가. 워마드에서, ‘사랑의 비너스’라는 여장 남자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게 공공연하게 올라오는 걸 보고, (워마드 회원들이)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 사람들은. 워마드에서 (여장 남자 커뮤니티 게시물들을) 박제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올라오는 딱 **여장 남자, 트랜스젠더 그냥 짝 다 몽둥그려가지고. 막 뒤통수 수술 했냐, 안 했냐 그렇게 자기들끼리 조리돌립 해가면서.** 그게 한 번 진짜 큰 이슈였어요. 그게 진짜... 저를 포함한 트랜스젠더들에게는 좀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아마 그 이후부터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이, TERF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 면담참여자 B

이 역시 시디의 여장/남장은 진정한 정체성이 아닌 취향의 차원이며, 성적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법촬영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 성범죄를 일으키는 존재로 시디를 생각하는 트랜스젠더의 인식을 보여준다. 또한, ‘문제적’ 행동을 한 시디와 트랜스젠더가 구분되지 않은 채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면담참여자도 있다.

이처럼 시디는 트랜스젠더가 아님에도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그들의 상황, 혹은 이익에 맞게 악용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시디가 성적 욕망의 해소를 위해 트랜지션의 과정을 차용한다는 것도 트랜스젠더 전체에 ‘성적인 목적으로 트랜지

션을 한다'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난받는다. 이렇듯 트랜스젠더는 시디들의 행위로 인해 실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진짜' 트랜스젠더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의료적 행위의 '의도'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트랜지션의 의도를 둘러싼 구별짓기 역시 그것이 '왜' 일어나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본질적인 원인은 다수 사회에서 시디와 트랜스젠더를 구분하지 않고, 트랜스젠더도 '여장 남자' 혹은 '남장 여자'의 범주로 묶어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에 작성된 “女화장실 들어간 ‘여장남자’ 처벌 안 될 수도...이유가?”라는 기사(오윤주, 2021)는 분명 트랜스젠더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에서 이들을 “여장 남자”라고 칭하며, 단순 여장과 트랜스젠더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만약 시디와 트랜스젠더가 확실히 구분되고, 사회도 이러한 구분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두 집단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본다면, 트랜스젠더 역시 본인의 정체성이 왜곡될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의도를 중심으로 ‘진정한 트랜스젠더’를 가려내려 하고 시디를 타자화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범주들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시디에 관한 편견이 트랜스젠더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화장실 이용에 관한 것이다. 현행법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침입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다. 그렇기에 단순히 용변 해결, 혹은 시설 이용을 위해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출입한 것이라면 처벌 받지 않는다. 그러나 주류 사회에서는 용변 해결을 목적으로 젠더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트랜스젠더와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여장 혹은 남장을 한 채로 화장실에 출입하는 시디를 구별하지 않고 이들 모두를 지정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는 변태로 뭉뚱그려 바라본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을 트랜스젠더들도 분명 인지하고 있기에, 그들과 자신들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결국 트랜스젠더 내부의 구별짓기와 시디에 대한 타자화는 소수자의 다양성에 대한 주류 사회의 무지에서 비롯되고 있다.¹⁴⁾

3) 가시화 논쟁: 경험의 차이로 비롯된 의견 차이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 즉 트랜지션은 여러 양상으로 나타난다. 의료적 트랜지션, 사회 내에서 자신의 젠더 정체성으로 보이기 위한 패싱, 법적·제도적 성별정정은 대표적인 트랜지션의 방식이며, 그 중에서도 성별정정은 트랜지션의 가장 최종적인 단계로 인식된다. 트랜스젠더 중에서도 특히 바이너리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의 궁극적인 목표가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

14) 단, 이때 일부 트랜스젠더들의 인식대로 ‘시디’와 ‘트랜스젠더’가 실제의 개인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구분될 것이냐는 문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는 7장 결론 및 제언에서 논한다.

렵게 ‘그냥 남자 여자(시스젠더)’ 사이로 섞여들어서 사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트랜지션이 모두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에, 트랜스젠더 내에서도 트랜지션을 진행 중인 트랜스젠더, 법적·사회적 트랜지션을 모두 거친 후 트랜스젠더임을 숨기고 시스젠더로 살아가고 있는 ‘스텔스’, 트랜지션을 모두 거쳤으나 트랜스젠더임을 공개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픈리’라는 구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분은 트랜스젠더들 간에도 현재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이 다르고, 그렇기에 요구하는 의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트랜지션 ‘중’일 때는 지속적으로 의료적 트랜지션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 머무르더라도, 트랜지션을 ‘모두 마쳤다면’ 스텔스가 되어 기존 트랜스젠더 지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커뮤니티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부 스텔스의 경우 완전히 시스젠더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트랜스젠더들과의 인연을 끊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서술한 면담참여자도 있다. 이는 트랜스젠더와 지속적으로 교류할 시 바이너리 시스젠더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트랜스젠더임이 ‘발각’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듯 서로가 현재 처한 경험과 상황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들이 가장 크게 대립할 수 있는 주제는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가시화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의제이다. 이때 ‘가시화’란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과 그 집단의 존재를 주류 사회에 알리고, 이들이 경험하는 의료적 트랜지션, 편견, 차별, 젠더 이분법에 대한 저항 등을 사회적 의제로 상정하여 사회적·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시화와 관련한 의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트랜스젠더는 시스젠더로 살아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태이며, 이를 가시화했을 때 시스젠더로 살아가는 미래에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즉, 스텔스가 트랜지션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시스젠더 사회에 완전히 편입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영원히 트랜스젠더로만 비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가시화는 현재 사회적 패싱이 되고 있는 트랜스젠더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트랜스젠더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도기적인 상태를 굳이 가시화를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구글에다가 트랜스젠더지만 치면은요, 트랜스젠더 구별법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굳이 숨어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핀셋으로 짚어 가지고 “어, 너 트랜스젠더네”라고 짚을만한 거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당연히 피해가 간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가 가는 게 당연하죠.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가시화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싱이 되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 손 모양이 어찌네 저찌네 자세히 살펴보면서 눈썹 뼈가 튀어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확 보기 시작하면은요, 참 그거는. 그 순간 이제.

스텔스가 아니라도. 패싱이 되는 어느 정도 패싱이 되는 트랜스젠더에게도 위협이고 완전히 스텔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협이기 때문에. 가시화에 대해서는 되게 강하게 반대하는 편입니다. - 면담참여자 Q

이렇듯 트랜지션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미래에 시스젠더로 살아갈 때를 우려하여 가시화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시화 되지 않는 것이 집단의 미래를 위해서는 안 좋을 수 있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서술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결국 가시화를 하는 것이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제도 내의 편입을 가능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트랜스젠더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스텔스들은 자신의 젠더 정체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가시화된다면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스텔스가 주류 사회에 녹아들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시화를 안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떠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않고, 차별의 눈초리가 지속되더라도 그것보다 스텔스로서 트랜스젠더가 아닌 시스젠더로 살아가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둔다는 공통점이 존재했다.

그런가 하면, 가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면담참여자도 많았다. 이들은 트랜지션 중인 트랜스젠더를 가시화할 때 이들이 트랜스젠더인 것 이전에 '사람'인 것을 부각하여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저는 가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트랜지션을 거쳐서 시스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중략)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트랜지션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트젠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 같이 트젠이니까, 가시화를 통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과격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인식을 바꿔주거나 그러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때 약간 이런 사람들은 다 성적인 곳에서만 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화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면담참여자 P

위 면담참여자는 트랜스젠더의 이미지가 성매매와 결부되어 있는 현실에서, 트랜스젠더 내의 다양성과 다양한 범주를 가시화할 때 편견이 타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랜스젠더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리고,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일 뿐임을 주류사회가 인지한다면 트랜스젠더가 겪는 취업에서의 차별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트랜스젠더가 경험하는 의료적 트랜지션 과정에서의

경제적 궁핍 문제를 가시화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고 싶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결국 트랜스젠더가 경험하는 사회 내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존재가 알려지고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면담참여자들은 거의 모두가 트랜지션을 진행중인 트랜스젠더였다. 스티스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에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었으나, 트랜스젠더 갤러리 문헌조사 혹은 면담참여자의 서술을 통해 이들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트랜지션 중인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의견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앞서 가시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사례로 인용한 경우도 트랜지션을 진행중인 트랜스젠더의 진술이다. 이러한 의견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트랜지션을 진행중인 트랜스젠더'와 '스티스' 사이의 경험과 지향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임은 분명하나, 이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만으로 개인의 의견이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궁극적으로 시스젠더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지(논바이너리의 경우 아니기 때문), 현재 경험하는 차별을 감수할 수 있는지, 현 상황에 대한 변화 의지 등 가치관의 측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논쟁은 결국 한국 사회의 존중 부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트랜지션을 진행중인 트랜스젠더도, 스티스도, 오픈리도 모두 인간이기에 당연히 그들의 삶의 양식과 정체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지금의 트랜스젠더 내부 논쟁에는 결국 트랜스젠더가 가시화되었을 때 스티스로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를 '색출'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날 것임이 전제되고 있다. 트랜지션 중인 트랜스젠더는 트랜스젠더라고 정체성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트랜지션을 모두 거친 트랜스젠더 역시 법적·제도적 보호 속에서 시스젠더와의 차별을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의제가 모두 존중되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랜스젠더가 가시화되어 트랜지션 과정에서의 제도적인 혐오에 맞서 싸우는 것도, 트랜지션 이후 특정한 젠더 정체성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트랜스젠더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 내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라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주지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

트랜스젠더 내부의 구별짓기와 갈등은 결국 트랜스젠더의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압력에 기인한다. 의료적 트랜지션의 경우, 정체성의 존재 자체를 의심받는 상황 속에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증명해야 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의도성 논쟁의 경우, 소수자의 다양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이들을 몽똥그려 비난하는 사회의 혐오와 차별로부터 갈등이 심화된다. 가시화의 문제 역시, 사회가 트랜스젠더를 사회의 일부로 수용하지 않고 트랜지션 중인 트랜스젠더를 차별, 혐오하고, 스티스로 살아가는 트랜스젠더를 색출하여 타자화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다. 트랜스젠더 내부

의 구별짓기는 사회적 압력으로 발생하고,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기에, 이들의 갈등은 무조건 비난되거나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옳지 않다. 원인이 되는 주류 사회의 폭력적 구도에 대한 성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7. 결론 및 제언 - 단순해질 수 없는 다양성에 대하여

‘LGBT’로 묶여서 호명되던 LGB와 T 사이 경험의 차이는, ‘트랜스젠더’라고 묶여서 불리는 집단 내부의 경험의 차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 차이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LGB와 T 사이의 관계는, 트랜스젠더 사이의 관계는, 구별짓기와 갈등은 무엇을 함의하는가? 무엇이 문제로 지적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질문을 제시한 것은, 이들 질문 하나하나에 대한 답이 이 연구가 어떤 성격의 연구로 규정될 것이며, 당사자들에게 이 연구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질문에 답하기 전에 본 연구가 어떠한 연구인지, 어떠한 연구여야 하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권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본문에서 제기된 구별짓기나 갈등의 문제에 대해 어떤 차원에서든 일반화된 당위적 결론을 제시하는 것을 유보하고자 한다. 연구 수행 중 깨달은 트랜스젠더 의제의 다양성이,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단순화된 명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성소수자 사이의 구별짓기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는 연구도, LGBT가 차이를 무시하고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아니다. 누가 ‘진짜’ 트랜스젠더이고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연구도 될 수 없다.

본 연구는 은폐되고 뭉뚱그려진 차이에 대한 연구이다. 소수자 사이에 분명한 경험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LGBT’나 ‘트랜스젠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를 때마다 묵살되었던, 이들 사이의 차이와 관계를 조망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드러난, 트랜스젠더를 중심으로 한 성소수자 간 경험의 다양함과 그에 기반한 무관심, 갈등, 구별짓기는 모두 그 자체로 이 연구의 결론이다. 다른 자체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이기에, 연구의 궁극적 제언 역시 ‘소수자 간 완전한 갈등 해소’라거나 ‘모든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제기될 수 없다. 오히려 이 연구에서는 소수자 간 갈등 자체를 온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LGBT 사이의, 그리고 트랜스젠더 내 정체성과 관련된 갈등은 각 정체성의 사회적 지위 확립을 위한 ‘정체성 투쟁(identity crisis)’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랜스젠더임’ 혹은 ‘트랜스젠더다움’을 규정하려는 경합하는 담론은 그 자

체로 ‘트랜스젠더’란 무엇인지, 어떤 소수자인지가 단순히 몽뚱그려지지 않고 소수자 커뮤니티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혹은, 어떤 면담참여자의 서술처럼 이전에 한국 사회 안에서 ‘케이’로 몽뚱그려졌던 성소수자 집단이 점점 세밀하게 분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도기적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분명 성소수자 간의 차이와 그 차이에 기반한 관계는 인권과 연관되었을 때 시사하는 점이 있다. 1) 관계의 양상이 다수 대 소수의 구도를 띠며 혐오와 차별의 성격을 띠 때, 이는 분명한 인권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는 점. 2) 성소수자 간 차이는 그 차이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의제들이 만들어지며, 그래서 어떤 논의가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 3) 성소수자 간 차이가 문제적 갈등과 차별로 승화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소수자임’에 의한 것이며 다수 사회와의 연관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먼저, LGBT 내에서, 그리고 트랜스젠더 내에서도 경험의 차이에 기반한 관계의 양상이 다수 대 소수의 권력적인 구도를 가지며 전개될 때, 이에 따라 혐오와 차별이 양산될 때, 이는 특정 집단 혹은 개인의 존중 받을 권리가 억압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해소될 필요가 있다. LGBT의 구도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트랜스젠더 내부 구별짓기 규범에 의해 소외되는 개인에 대해서도 이 차별적 구도가 존재한다. 진정으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간과되며, 왜곡된 이미지가 덧씌워질 여지가 생겨난다. 따라서, 사회적 담론 속에서 몽뚱그려지는 성소수자 내에 ‘소수자 중 소수자’가 존재하며, 이들의 이야기와 의제가 억압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당사자가 아닌 연구자들이 당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참여자가 이 혐오와 차별에 대해 무엇을 ‘원했는지’를 말하자면, 경험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 그 차이는 소수자로서 경험의 공유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상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에서 비롯되는 혐오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차이가 왜곡되지 않는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많은 연구참여자가 바라고 있었다. 성소수자 간 차이를 묵살시키지 않는 공감과 연대의 가능성은 면담 기록 곳곳에 남아 있었다.

다만 본론에서 언급된 ‘시디’의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한 측면이 있다. 시디는 트랜스젠더 내부 담론에서 배척되곤 하지만, 그렇다고 시디가 트랜스젠더와의 권력 구도에서 소수의 위치에 서게 되는지는 의문스럽다. 시디에 대한 트랜스젠더의 반응은 다수자의 억압이라기보다는, 시디가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역반응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디가 트랜스젠더 내부 담론에 의해 어떠한 소외를 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트랜스젠더의 시각에서 소수자 내 주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견지했기 때문에, 시디라는 집단이 타자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개념적으로 시디와 트랜스젠더가 구분된다고 여겨지지만, 실제 개인의 차원에서는 (특히 커뮤니티 내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가능성

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일부 트랜스젠더의 시각에서 서술된 시디와 트랜스젠더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그 양상이 단순한 다수 대 소수의 권력구도로 요약될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문에서 논의했듯이 시디와 트랜스젠더 간 구별짓기와 갈등의 양상은 결국은 이들을 한데 뭉뚱그려서 ‘여장변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인식하는 사회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시디와 트랜스젠더 간 실제의 관계가 어떠한지와는 관계 없이, 트랜스젠더라는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탄생한 이 뭉뚱그림 자체는 완전한 해소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성소수자 간 경험과 이야기의 차이를 그들 간의 본질적 차이로 생각하지는 않되, 그 차이으로부터 어떤 서로 다른, 뭉뚱그려지지 않은 구체적 의제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야 한다. 성지향성에 대한 소수자이나, 성적체성에 대한 소수자이나에 따라서, 성적체성에 대한 소수자 중에서도 어떠한 구체적 정체성을 가지며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 놓인 집단 혹은 개인인지에 따라서 그들이 제기하는 ‘차별 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의료적 트랜지션을 겪는 많은 트랜스젠더에게 있어서 성전환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트랜지션 전 과정에 대한 의료보험제도의 적용은 시급한 의제로서 제기되나, ‘스텔스’로서 살아가는 트랜스젠더 중 일부는 의료보험제도에 편입되는 것이 논의됨으로써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적인 시선이 증가할 것을 꺼려하기도 한다. ‘의료적 트랜지션을 거치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어느 성별의 화장실을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화제에 있어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젠더 정체성 대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과, 사회적 규범을 고려했을 때 제도적으로 인정된 성별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 대립할 수 있다. 이렇듯 성소수자 간에, 특히 트랜스젠더 간에도 의제의 충돌이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LGBT 갤러리 내의 일부 담론처럼 이를 ‘소모적인’ 내부 분쟁으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성소수자 간 경험과 상황이 서로 다르므로, 당연히 의제의 차이는 존재한다. 의제의 차이를 간과하지 않으며, 그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소모적이라 인식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간 차이가 문제적인 갈등과 차별로 승화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소수자임’으로 인해 주어지는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트랜스젠더는 단지 트랜지션 과정이나 생활 상에 존재하는 어려움을 넘어서, 항시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의 ‘존재’ 자체를 의심받는 위치에 놓여 있다. 여전히 트랜스젠더를 단지 ‘여장 변태’, ‘잃어버린 자매’, ‘자신을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째미로 간주하는 혐오적인 시선들이 존재한다. 트랜스젠더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정체성의 존재에 대한 인정(recognition)을 위해 ‘트랜스젠더임’을 구성하는 기준들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구별짓기가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수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성소수자 간 구별짓기를 파악하지 않는 것은, 그 구별짓기가 ‘왜’ 일어나느냐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 보다 젠더 포용적인 사회였다면, 어떤 젠더인지에 관계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회였다면, 과연 누가 트랜스젠더이고 아닌지, 트랜스젠더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구성될 필요가 있었을까? 애초에 그 입증의 필요성이 없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질문할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 간 갈등을 만들어내는 준거 틀 자체도 다수 사회의 인식과 구조가 삽입되어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적 트랜지션이 ‘트랜스젠더임’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트랜스젠더임’을 ‘인증’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다수 사회의 성별 이분법적 구조와, 그렇게 이분화된 여성/남성에 대해 구성되어 있는 이상적 상(想, image)은 트랜스젠더가 어떠한 삶을 살고 무엇을 추구하게 되는지와 더불어 트랜스젠더 간 구별짓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분법적 성별 구조 하에 트랜스젠더는 ‘간성’으로 분류되며 소외당하고, 소외된 트랜스젠더 내부적으로도 이분화된 양성을 정체성으로 가지는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이 나뉘어지게 된다. 트랜스젠더의 몸이 이분화된 양성의 이상적 상에 합치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패싱의 경험은 달라지며, ‘간성적인’ 몸(예를 들어, 호르몬 주사는 맞았으나 성전환수술은 하지 않은)에서 ‘멈춘’ 트랜스젠더는 다수 사회 속에서도,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속에서도 타자화될 수 있다. 성소수자 내부 갈등 속에 삽입된, 이러한 다수 사회의 논리에 대해 성찰적 시각이 필요하며, 이것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쩌면 이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여러 면담참여자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개선, 즉 단지 이미지의 고양을 뜻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의 존재 자체를 알리기를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경로로 제시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가 다수 사회에 고착화되고, 그것이 성별이분법적 구조와 함께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으로 삽입되어 왜곡된 인식을 만들어내, 트랜스젠더의 삶을, 그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소외시키고 있다. 트랜스젠더를 잘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 이들과 다른지, 그들 내부적으로는 어떤 삶의 다양성이 존재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그 인식을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별첨 1> 심층면담 목록

면담참여자	(본인서술) 정체성	연령	면담 시일	면담 방식	기타
A	트랜스여성	20대	21.08.19.	대면	
B	트랜스여성	20대	21.08.21.	대면	
C	논바이너리	30대	21.08.21.	대면	
D ¹⁵⁾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E, F	트랜스남성, 젠더퀴어	20대, 20대	21.08.23.	대면	2인이 동시에 대면 면담 진행
G	트랜스여성	20대	21.08.25.	대면	
H	트랜스여성	모름	21.08.26.	비대면(ZOOM)	
I	트랜스여성*	20대	21.08.26.	대면	*편의상 자신을 분류하라면 '트랜스여성'이라고 서술. 그러나 아직 고민 중이라고도 서술.
J	트랜스여성	30대	21.08.27. 21.08.29.	대면	1차/2차 대면 면담 진행.
K	트랜스여성	20대	21.08.27.	비대면(ZOOM)	
L	트랜스여성	30대	21.08.29.	비대면(ZOOM)	
M	트랜스여성	30대	21.08.29.	대면	
N	논바이너리*	20대	21.08.29.	대면, 비대면(서면)	"굳이 분류를 하라면 트랜스여성"에 가깝기도 하다고 서술. 1차 대면 면담, 2차 비대면(서면) 면담 진행.
O	트랜스여성	20대	21.08.30.	대면	
P	트랜스여성	20대	21.08.31.	대면	
Q	트랜스여성	20대	21.09.02.	대면	
R	젠더퀴어	모름	21.09.05.	비대면(ZOOM)	
S	트랜스여성	20대	21.08.26.	비대면(ZOOM)	

*면담참여자들의 이름은 모두 익명화하여 표기하였다. 표에서 (본인서술) 정체성 열은 면담참여자들 중 트랜스여성의 비율이 높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각 면담참여자들의 이야기가 트랜스여성/트랜스남성/논바이너리 등으로 분류되어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지 않는다.

15) 연구보고서에 대한 면담참여자 피드백 과정에서 면담자 익명화 명칭 'D'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비공개할 것을 요청받아, 이와 같이 표기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 이길호. (2012). 우리는 디씨: 디시, 잉여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의 인류학 / 이길호 지음.
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음. (2018).
Goffman, 윤선길., 정기현., 윤선길, & 정기현. (2009). 스티그마: 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 /
어빙 고프만 지음 ; 윤선길, 정기현 [공] 옮김.
Mardell, & 팀 이르다. (2017). LGBT 첫걸음 / 애슐리 마텔 지음 ; 팀 이르다 옮김.
Stryker, S., 제이, & 루인. (2016). 트랜스젠더의 역사: 현대 미국 트랜스젠더 운동의 이론, 역
사, 정치 / 수잔 스트라이커 지음 ; 제이, 루인 [공] 옮김.

[논문]

- 김준우. “트랜스젠더의 경험을 통해 본 젠더 정체성 형성 과정.”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서울
루인 (2006). 젠더를 둘러싼 경험들 gender dysphoria. 여/성이론(15), 289-304
루인 (2010). 규범이라는 젠더, 젠더라는 불안. 여/성이론(23), 48-75
루인 (2018). 젠더로 경험/불화하는 정치학. 여/성이론(38), 101-131
박정은, 정서진, & 남궁미. (2020). 트랜스젠더와 젠더비순응 내담자의 상담 경험. 한국심리학
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499-1526.
백형의, 배은경, 안은미, 권지성 (2012). 성전환여성(MTF)의 생애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사
회과학연구, 28(3), 123-151
성지현 (2020). 한국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과 쟁점 — 트랜스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 포기 사
건을 돌아보며. 마르크스21, (36), 51-70.
손인서 (2018). 트랜스젠더의 젠더정체성 구성. 경제와 사회, 198-228
손인서, 이해민, 박주영, & 김승섭. (2017).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트랜지션과 의료서비스 이용.
한국사회학, 51(2), 155-189.
이강원 (2013). 젠더와 트랜스섹슈얼리즘. 비교문화연구, 19(1), 5-39
이세희. (2021). 왜 ‘우리’는 분노하는가?: 온라인 인종(차별)주의 담론 정치와 민족주의. 비교
문화연구, 27(1), 299-355.
이호림, Yi Horim, 이해민, Lee Hyemin, 윤정원, Yoon Jung Won, . . . Kim Seung-sup.
(2015). 한국 트랜스젠더 의료접근성에 대한 시론. 보건사회연구, 35(4), 64-94.
이효민 (2019). 페미니즘 정치학의 급진적 재구성: 한국 ‘TERF’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
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4(3), 159-223
장지은. (2021).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에 의한 경계 긋기와 새로운 실천 과제 -행위적 실재론
을 중심으로-. 국내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정혜숙, & Chong Hye Suk. (2020). 성소수자 청년의 커밍아웃 의미의 재구성: “그냥 온전한

- 나를 보여주는 길”. 사회복지연구, 51(1), 139-171.
- Chong, E., & Mohr, J. (2020). How Far Can Stigma-Based Empathy Reach? Effects of Societal (In)equity of LGB People on Their Allyship With Transgender and Black Peopl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90(6), 760-771.
- Davidson, M. (2007). Seeking refuge under the umbrella: Inclusion, exclusion, and organizing within the category Transgender. *Sexuality Research & Social Policy*, 4(4), 60-80.
- Lee, H., Park, J., Choi, B., Yi, H., & Kim, S. (2018). Experiences of and barriers to transition-related healthcare among Korean transgender adults: Focus on gender identity disorder diagnosis, hormone therapy, and sex reassignment surgery. *Epidemiology and Health*, 40, E2018005.
- Morrison, E. (2010). Transgender as Ingroup or Outgroup? Lesbian, Gay, and Bisexual Viewers Respond to a Transgender Character in Daytime Television. *Journal of Homosexuality*, 57(5), 650-665.
- Seamont, M. (2018). Becoming “The Man I Want to Be:” Transgender Masculinity, Embodiment, and Sexuality.
- Towle, E., & Morgan, L. (2002). ROMANCING THE TRANSGENDER NATIVE. *GLQ*, 8(4), 469-497. Seeking Refuge under the umbrella

[신문기사]

- 오윤주. (2021. 03월 03일,) ‘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숨진 채 발견. (한겨레). 검색일 9월 23일, 2021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5309.html#csidx57eecd40de676fcae83f88f07799591
- 이소현. (2021년. 08월 26일) 女화장실 들어간 ‘여장남자’ 처벌 안 될 수도...이유가?. (법률N미디어). 검색일 9월 17일, 2021년. <https://blog.naver.com/naverlaw/222484334831>
- 임재우. (2021. 02월 25일) 교사·정치인·퀴어활동가...김기홍의 ‘보이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한겨레). 검색일 9월 23일, 2021년.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4633.html>
- 장진웅. (2021. 08월 19일) 변희수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10월 선고 (대전일보). 검색일 9월 23일, 2021년.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84603

[인터넷 사이트]

- 논비. (2021. 09월 11일) [일반] 트랜지션은 어디까지나 선택임. 트랜스젠더 갤러리. 검색일 9월 17일, 2021년,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g74&no=20977>
- ㅇㅇ. (2021) [질문] 남자가 호르몬, 성전환 수술 안해도. 트랜스젠더 갤러리. 검색일 9월 17일, 2021년.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g74&no=11732&s>

- 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EC%9D%B8%EC%A0%95&page=4
- ○. (2021) [mtf정보] 女화장실 들어간 ‘여장남자’ 처벌 안 될 수도.... 트랜스젠더 갤러리. 검색일 9월 17일, 2021년.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g74&no=18967&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EC%97%AC%EC%9E%A5%EB%82%A8%EC%9E%90&page=1
 - ○. (2021년) [일반]여기겔 애들을 무슨 여장변태쯤으로 보나본데. 트랜스젠더 갤러리. 검색일 9월 17일, 2021년.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g74&no=13464&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ED%8A%B8%EB%9E%9C%EC%A7%80%EC%85%98&page=8

